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576-01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아카이브 구축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자료집 22
조선왕조실록 기사자료집 (12)

2012. 9.

- 목 차 -

1. 숙종실록 <1> 기사자료집 : 숙종 즉위년 ~ 숙종 24년 12월 1

1. 숙종실록 <1> 기사자료집

숙종실록 <1> 기사자료집 : 숙종 즉위년 ~ 숙종 24년 12월

| 출처 | 내용 | 원문 |
|--|--|--|
| <p>숙종 1권, 즉위년(1674 갑인 / 청 강희(康熙) 13년) 8월 19일(경술) 1번째기사</p> | <p>대상(大喪)1) 이 대비전(大妃殿) 국상(國喪) 3년 안에 발생한 이유로써 왕세자가 제사상은 흰 것을 사용하고 전물(奠物)은 소찬(素饌)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한가 아니한가를 물으니, 예조(禮曹)에서 말하기를, “예문(禮文)을 상고하건대, 제상 탁자를 흰 것을 사용하는 것은 증거로 삼을 만한 것이 없지만, 초상(初喪)에는 흰 것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례의(五禮儀)》에 국상(國喪)의 초상에는 소찬(素饌)을 사용하다가 우제(虞祭)에 이르러서는 육찬(肉饌)을 겸해 사용하도록 했는데, 더구나 이번 대행왕(大行王)2) 의 상(喪)은 인선 왕후(仁宣王后) 3년상 안의 우제(虞祭) 전에 있으니, 마땅히 소찬(素饌)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중궁(中宮)이 교지(教旨)를 내리기를, “우제 전의 제전(祭奠)은 마땅히 소찬을 사용해야 할 것이지만, 대행왕(大行王)이 생존해 계실 때 백관(百官)들의 정청(廷請)으로 인하여 이미 상선(常膳)3) 을 회복하여, 내소(內所)에서 제수(祭需)를 올릴 적에 상선(常膳)으로써 드렸으니, 이런 뜻을 외부(外部)에 고지(告知)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였다.</p> | <p>庚戌/以大喪出於大妃殿國恤三年內，王世子問床卓用白，奠物用素當否，禮曹言：“考禮文，床卓用素無可據，而初喪用白爲宜。《五禮儀》，國恤初喪用素饌，至虞祭兼用肉饌，況此大行之喪，在仁宣王后三年內，虞祭前當用素饌。”中宮教曰：“虞祭前祭奠，當用素饌，而大行臨御時，因百僚廷請，已復常膳。自內所供祭需，以常膳進之，此意不可不告知于外耳。”</p> |

| | | |
|--|---|--|
| | | |
| <p>숙종 1권, 즉위년(1674 갑인 / 청 강희(康熙) 13년) 8월 20일(신해) 4번째기사</p> | <p>왕세자가 하령(下令)하기를, “소렴전(小斂奠) 중에 유밀과(油蜜果)의 밖을 둘러싼 기둥 위에 담배진이 낭자(狼藉)하므로 진설할 수 없으니, 도로 내어 주라.” 하였다. 원상(院相)이 이를 맡은 내섬시(內贍寺) 관원을 잡아다 추문(推問)하고, 본시(本寺)10 제조(提調) 및 빈전 도감(殯殿都監)의 당상관(堂上官)·낭관(郎官)을 추고(推考)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p> | <p>王世子下令曰：“小斂奠中，蜜果外圍柱上，南草液狼藉，不可陳設，還爲出給。”院相請當該內贍官拿推，本寺提調及殯殿都監堂郎推考，從之。</p> |
| <p>숙종 1권, 즉위년(1674 갑인 / 청 강희(康熙) 13년) 8월 27일(무오) 1번째기사</p> | <p>팔도(八道)의 승군(僧軍) 2천 6백 50인을 징발하여 각자 1개월의 식량을 가지고서 산릉(山陵)에 부역(赴役)하도록 명하였다.</p> | <p>戊午/敎發八道僧軍二千六百五十人，自齋一月糧，赴役于山陵。</p> |
| <p>숙종 1권, 즉위년(1674 갑인 / 청 강희(康熙) 13년) 8월 28일(기미) 3번째기사</p> | <p>총호사(摠護使)가 각 아문과 각영(各營)의 미포(米布)와 은자(銀子)를 거두어 모군(募軍)의 부역 대가로 줄 것을 청하니 허락하였다.</p> | <p>摠護使啓請取來各衙門、各營米布銀子，以爲募軍赴役之地，允之。</p> |
| <p>숙종 1권,</p> | <p>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과 왕대비전(王大妃殿)에서 언서(諺書)로써 약방(藥</p> | <p>辛酉/大王大妃、王大妃殿以諺書下敎</p> |

| | | |
|--|---|---|
| <p>즉위년(1674 갑인 / 청 강희(康熙) 13년) 8월 30일(신유) 1번째기사</p> | <p>房)에 교지(教旨)를 내려, 대전(大殿)께서 권도(權道)를 따르기를 빨리 권하라는 뜻을 유시(諭示)하니, 약방 제조(藥房提調) 허적(許積)이 입대(入對)하기를 청하고, 좌의정 김수항(金壽恒)·우의정 정지화(鄭知和)도 또한 입시(入侍)하였다. 허적 등이 되풀이하면서 힘써 청하니, 임금이 통곡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능히 밥을 먹고 있는데, 경(卿) 등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가?” 하였다. 허적(許積) 등이 물러가서 또 권도(權道)를 따르기를 계청(啓請)하니, 답하기를, “내가 어린 나이로 슬퍼서 부르짖고 가슴을 치면서 망극(罔極)한 나머지 경(卿) 등의 청대(請對)로 인하여 갑자기 생각 밖의 차마 듣지 못할 말을 듣게 되니, 오장(五臟)이 찢어지는 듯하여 다만 스스로 목이 메어 울 뿐이다. 내가 없던 병이 더 생기게 되었으니, 경(卿) 등은 다시는 이러한 무익(無益)한 말을 하지 말라.” 하였다.</p> | <p>于藥房，諭以亟勸大殿從權之意。藥房都提調許積請對，左議政金壽恒、右議政鄭知和亦入侍。積等反復力請，上痛哭曰：“予能進食，卿等何爲出此言？”退又啓請從權，答曰：“予以沖年，哀號攀擗，罔極之餘，因卿等之請對，遽聞慮外不忍聞之說，五內如裂，只自嗚咽。添予所無之疾，卿等更勿爲如此無益之言。”</p> |
| <p>숙종 1권, 즉위년(1674 갑인 / 청 강희(康熙) 13년) 9월 1일(임술) 3번째기사</p> | <p>하교(下敎)하기를, “사위(嗣位)한 후에 진하(陳賀)하는 방물(方物)의 물선(物膳)은, 두 분 자전(慈殿) 외에는 봉진(封進)하지 말라.” 하였다.</p> | <p>下敎曰：“嗣位後，陳賀方物物膳，兩慈殿外，勿爲封進。”</p> |
| <p>숙종 1권, 즉위년(1674 갑인 / 청 강희(康熙) 13년) 9월 20일(신사) 2번째기사</p> | <p>호조 판서(戶曹判書) 민유중(閔維重)이, 개성부(開城府)는 올해에 곡식이 여물지 않고 또 청나라 사신(使臣)을 세 번 겪었으므로, 속오미(束伍米) 5두(斗)를 감해 줄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p> | <p>戶曹判書閔維重以開城府今年失稔，且三經清使，請減束伍米五斗，從之。</p>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속중 1권, 즉위년(1674 갑인 / 청 강희(康熙) 13년) 9월 24일(을유) 6번째기사</p> | <p>장령(掌令) 조세환(趙世煥)이 상소하기를, “옛날에 이윤(伊尹)이 태갑(太甲)에게 고하기를, ‘그 덕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소공(召公)이 성왕(成王)에게 고하기를, ‘빨리 덕을 삼가시어 백성을 화(和)하게 하소서.’ 하였으며, 주자(朱子)가 송나라 효종(孝宗)에게 고하기를, ‘천하의 큰 근본을 세우는 것은 백성의 힘을 연후에야 근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하여 맑은 정치로 나라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노성(老成)한 인물을 맞아 등용하고 유일(遺逸)을 찾아 구하여서 날로 성학(聖學)을 강명(講明)한다면, 반드시 성躬(聖躬)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성총(聖聰)을 개발(開發)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고, 또 말하기를, “오늘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정치로서 세초(歲抄)67) 와 조적(糶糶)68) 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진실로 이때에 있어 덕음(德音)을 환발(渙發)69) 하사 연례(年例)로 행하는 세초에서 도고(逃故)70) 의 충정(充定)을 일체 정파(停罷)하시고, 서서히 풍년을 기다려서 임자년71) 이전부터 내려오는 포흠(逋欠)을 모두 깨끗이 면제하신다면, 거꾸로 매달리는 듯한 위급함을 풀 수 있습니다.”하고, 또 내수사(內需司)의 폐단을 진술하여 내수사가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隣徵)72) ·족징(族徵)73) ·백골 징포(白骨徵布)74) 를 대신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복주(覆奏)케 하니, 내수사의 일에 대해 아뢰기를, “때로 남는 것을 내어 민역(民役)에 보충(補充)한다면 빛이 있고 사(私)가 없는 정치가 될것이니, 청컨대, 성상께서 재량하여 처리하소서. 제도(諸道)의 왕년(往年)의 도고의 허액(虛額)을 충정하는 것은 모두 정지하고, 신해년75) 이전의 징수할 곳이 없는 신역(身役)은 금년을 한하여 탕감(蕩減)하며, 신구(新舊)의 조적은 재해(災害)를 입은 경중(輕重)을 헤아려 등급을 나누어 수봉(收捧)하게 하소서.”하였다.</p> | <p>掌令趙世煥上疏曰： 昔者伊尹告太甲曰：“惟新厥德。” 召公告成王曰：“疾敬德誠小民。” 朱子告宋孝宗曰：“立天下之大本曰，愛養民力。” 其揆一也，而必須親賢講學，遜志時敏，然後端本澄源，制治保邦。伏望延登耆成，搜訪遺逸，日與講明，則必能導迪聖躬，開發聖聰。 又曰： 今日病民之政，未有過於歲抄與糶糶。誠於此際，渙發德音，年例歲抄、逃故充定，一切停罷，徐待豐年，壬子以前流來逋欠，悉令蕩滌，則可解倒懸之急。 又陳內司之弊，請以內司所納，代隣族、白骨之徵。上令備局覆奏，內司事則以爲：“時出羨餘，以補民役，有光無私之政，請上裁處。諸道往年逃故虛額充定，並停止，辛亥以上指徵無處之身役，限今年蕩減，新舊糶穀，量度被災之輕重，分等收捧。”</p> |
|--|---|--|

| | | |
|---|--|--|
| <p>숙종 1권, 즉위년(1674 갑인 / 청 강희(康熙) 13년) 10월 3일(계사) 3번째기사</p> | <p>홍주(洪州) 고을에서 배에 실은 세미(稅米) 5백여 석(石)이 모두 떠내려가자, 경기 감사(京畿監司)가 장계(狀啓)를 올려,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를 가두고 이를 징수할 것을 청하자, 임금(上)이 고의로 잃은 것이 아님을 들어 놓아보내게 하려고 하였다.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만약 완전히 놓아주는 길을 연다면 후폐(後弊)를 막기 어려울 것이니, 마땅히 본 고을로 하여금 보방(保放)하여 징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 <p>洪州官所載稅米五百餘石，盡爲漂失。京畿監司狀請囚禁監官、色吏徵捧之，上以非故敗，欲令放送，許積曰：“若開全釋之路，後弊難防。宜令本官，保放徵捧。”上從之。</p> |
| <p>숙종 1권, 즉위년(1674 갑인 / 청 강희(康熙) 13년) 10월 12일(임인) 2번째기사</p> | <p>안주(安州)의 유민(流民) 임오금(林吾金)이 그 아내에게 이르기를, “먹을 곡식이 없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하고 드디어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 도신(道臣)109) 이 이를 임금께 보고하였다. 이 해에 양서(兩西)110) 에 더욱 흉심한 흉년이 들고, 안주·숙천(肅川) 등 몇 고을은 거의 적지(赤地)가 되어, 죽는 자가 서로 잇달았는데도, 수령(守令)이 숨기고 아뢰지 않았다. 임금이 비망기(備忘記)을 내리기를, “고(孤)가 어린 나이로, 문득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만나 밤낮으로 슬피 울 뿐이다.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데, 팔로(八路)111) 가 흉년이 들어 대명(大命)112) 이 멈추려 하고, 백성이 기한(飢寒)을 괴로와하며 스스로 목매어 죽기까지 하였으니, 고(孤)는 더욱 당황하고 놀라 근심 걱정을 견디지 못하여 먹고 쉬는 것이 편치 않다. 각도(各道)의 감사(監司)와 병사(兵使)로 하여금 나의 지극한 뜻을 체념(體念)하게 하여, 우리 적자(赤子)로 하여금 죽어서 구령을 메우는 근심을 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고(孤)가 지극히 바라는 바다. 이 뜻으로 승지(承旨)가 내 대신 글을 지어 즉시 분부하라.”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인심(人心)을 감동시키는 것으로 위대하신 왕의 말씀만 한 것이 없습니다. 관례에 따라 대신 짓게 하는 것은 도리어 문구(文具)로 돌아갈 뿐이니, 청컨대 비망기로서 직접 고하여 알리소서.”하니, 이 말에 따랐다.</p> | <p>安州流民林吾金謂其妻曰：“無穀可食，生不如死。”遂自縊而死，道臣以聞。是歲，兩西尤甚凶歉，安肅等數邑，幾於赤地。死者相繼，而守令匿不以聞。上下備忘記曰：“孤以沖年，奄遭天崩之慟，日夜痛泣而已。君以民爲天，民以食爲天，而八路失稔，大命近止。民苦飢寒，至於自縊而死，孤尤不勝警惶憂懼，食息靡寧。其令各道監兵使，體予至意，使我赤子，得免填壑之患，孤之至望也。以此意，承旨代草，趁卽分付。”政院啓曰：“感動人心，莫如大哉之王言。循例代草，反歸文具，請以備忘直爲播告。”從之。</p> |

| | | |
|---|--|--|
| <p>숙종 1권, 즉위년(1674 갑인 / 청 강희(康熙) 13년) 10월 12일(임인) 3번째기사</p> | <p>각 고을에 명하여, 군병(軍兵)과 노비(奴婢)의 신역(身役)으로 포(布)를 징수하는 유(類)에 대해, 신해년(113) 이전에 거둘 것 중에서 미수(未收)된 것은 다소를 물론하고 모두 견감하며, 갑인조(甲寅條)로서 재해(災害)를 입은 고을에서 2필(匹)이나 3필을 바쳐야 하는 자는 모두 1필을 감하고, 1필을 바쳐야 하는 자는 반필을 감하며, 군보미(軍保米) 12두(斗)를 바쳐야 하는 자는 2두를 감하며, 정미년(114) 부터 신해년까지의 조곡(糶穀)을 포함(逋欠)하고서 유망(流亡)하거나 절호(絶戶)된 자에게는 모두 제감(除減)하게 하였다. 선혜청(宣惠廳)이 관할하는 제각사(諸各司)의 물종(物種)은 을묘년(115) 9월까지를 한도로 하여 계속 감하며,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는 선혜청으로 하여금 1년의 지용(支用)을 계산하여서 마땅한 만큼만 헤아려 감손(減損)시켰으며, 경기(京畿)는 흉년이 더욱 심한 데다 역역(力役)이 갑절이나 무겁기 때문에 특별히 연례(年例)로 진상하는 호표피(虎豹皮)를 감하고, 또 군병의 세초(歲抄)를 정지하였다. 허적이, 사복(嗣服)의 처음에, 이 덕음(德音)이 있게 되면 실혜(實惠)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서 묘당(廟堂)의 제신(諸臣)과 조진(條陳)할 것을 강구하여 임금께 아뢰어서 행한 것이다. 임금이 이조 판서(吏曹判書) 홍처량(洪處亮)에게 이르기를, “이같은 일을 봉행하는 것은 감사와 수령에게 달렸으니, 반드시 사람을 가려서 차임해 보내야 합니다. 사신(使臣)을 보내어 염문(廉問)할 것이니, 만약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관(銓官)의 장(長)이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하니, 홍처량이 황축(惶縮)하여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다.</p> | <p>命各邑軍兵、奴婢有身役徵布之類，辛亥以上未收者，勿論多少，竝蠲之。甲寅條被災邑應納二疋、三疋者，并減一疋，一疋者減半疋，軍保米應納十二斗者減二斗，自丁未至辛亥糶穀逋欠，在流亡絕戶者，并令除減。宣惠廳所管諸各司物種，限乙卯九月仍減，田稅大同，令宣惠廳計一年支用，量宜減損，以京畿失稔尤甚，力役倍重，特減年例上進虎豹皮，且停軍兵歲抄。許積以嗣服之初，有此德音，不可無實惠，故與廟堂諸臣，講究條陳，稟於上而行之。上謂吏曹判書洪處亮曰：“如此之事，奉行在於監司、守令，必須擇差。後當發使廉問，若有不治之人，則銓官之長，難免其責。”處亮惶縮不敢對。</p> |
| <p>숙종 1권, 즉위년(1674 갑인 / 청 강희(康熙) 13년)</p> | <p>방기(邦畿)153) 는 근본(根本)의 땅인데, 금년에 재해(災害) 입은 것이 특히 제도(諸道)보다도 심한데다가 왕릉 역사가 계속되고 칙사 행차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민력(民力)이 이미 고갈되었습니다. 금년의 조곡(糶穀)을 참작하여 감</p> | <p>正言趙宗著啓請郭世禎遠竄，又請還收李秀彥、姜碩昌、金光瑄等罷職不敘之命。又啓曰：“頃日筵中，自上有所</p> |

| | | |
|------------------------------|--|---|
| <p>10월 25일(을묘) 2번째기사</p> | <p>봉(減捧)154) 한다 하나 감하는 것이 반드시 얼마 없을 듯하며, 목은 조곡을 비록 정밀히 조사하여 탕감하게 한다 하여도 그 나머지를 오히려 독촉해서 거두어들인다면, 감하는 것은 지극히 적고 거두는 것은 매우 많을 것이니, 가진 것 없는 헐벗은 백성에게서 결코 거두어들일 리가 없습니다. 청컨대 경기의 목은 조곡을 명년 가을로 물려서 거두고, 봄·가을의 대동미(大同米)와 전세(田稅)는 더욱 마땅히 견감(蠲減)하여 절반으로 거두시어 조가(朝家)의 덕의(德意)를 보이소서.”</p> <p>하고, 또 주자(朱子)가 남강(南康)에 있으며, 성자현(星子縣)의 조세(租稅) 감면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청한 일을 인용하며 ‘이 일은 모름지기 임금의 뜻으로 결단하여야만 하니, 만약 유사(有司)와 더불어 의논한다면 반드시 경비(經費)를 근심하여 계교(計較)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임금이 광세건·이수언 등의 일에 대해서는 윤택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아된 대로 따랐다. 며칠 있다가 허적이 들어가 아뢰기를, “전날 부역을 견감한 거사(舉事)는 사복(嗣服)하는 처음에 이 흉년을 만났으므로 비망(備忘)의 전교(傳敎)가 빈말로 돌아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신(諸臣)과 더불어 상확(商確)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사간원에서, 경기의 전세와 대동미를 반감(半減)해 주기를 청하여 윤택을 받았으니, 대간(臺諫)이 백성을 구제하는 뜻은 진실로 좋은 뜻입니다만, 사세(事勢)를 상세히 아는 것은 당사자만 못합니다. 이런 계청같은 것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였다면, 신 등이 비록 재식(才識)은 없으나, 마땅히 제신들과 더불어 의논하여 품하였을 것인데, 곧장 ‘아된 대로 따르다.’고 하셨으니, 아마도 혹 그릇됨이 있을 듯합니다. 선왕조(先王朝)에서는, 대계(臺啓)나 소장(疏章)이 민역(民役)이나 변통(變通)하는 일에 관계된 것은, 반드시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케 하라.’는 말씀으로 비답(批答)을 내리셨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 허적이 이 말이 비록 까닭이 있어서 나온 것이나, 대각(臺閣)의 의논을 만약 일체(一</p> | <p>頭御史廉問時, 守令若有不治者, 當罪銓官之教, 此誠勅厲之盛意也。 取考《大典》, 則東班三品以上、西班二品以上, 各薦堪爲守令者, 若犯贓污、敗常之罪, 則竝坐舉主。 而比年以來, 此法廢弛, 守令之薦, 全不愼擇, 致有猥雜之患。 注擬之失, 似不可專責於銓官, 請自今一依《大典》, 守令若有不治及犯罪者, 薦主摘發竝罪。 邦畿, 根本之地, 今年被災, 特甚於諸道。 加以陵役連仍、勅行絡繹, 民力已竭。 今年糶穀, 雖參酌減捧, 所減想必無幾。 舊糶雖令精查蕩減, 其餘猶爲督捧, 則所減至少, 所捧甚多, 赤立之民, 決無收捧之理。 請京畿舊糶, 退捧於明秋, 春秋大同田稅, 尤宜蠲減, 折半收捧, 以示朝家德意。” 又引朱子在南康, 乞賜星子縣租稅事以爲: “此事須斷自上意, 若與有司議之, 則必恤其經費, 有計較吝惜之心。” 上於世槿、秀彥等事不允, 餘皆依啓。 居數日, 許積入奏曰: “頃日蠲役之舉, 蓋爲嗣服之初, 值此凶歉, 不可使備忘之教, 歸於空言, 故與諸臣商確定奪矣。 今諫院請京畿田稅大同減半蒙允, 臺諫救民</p> |
|------------------------------|--|---|

| | | |
|---|--|--|
| | <p>切)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한 뒤에 시행한다면, 이는 대간이 더욱 가벼워지고 대신의 권한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니, 또한 폐단이 없을 수 없다.”하였다.</p> | <p>之意，誠是好意，而詳知事勢，不如當事之人。如此之啓，令廟堂議處，則臣等雖無才識，當與諸臣相議覆稟，直爲依啓，則恐或有誤着之事。先王朝則臺啓疏章，事係民役及變通事，必以令廟堂議處爲批矣。”上曰：“唯。”積之此言，雖有爲而發，然臺閣之論，若一切令廟堂議處後施行，則是臺諫益輕，而大臣之權漸重，亦不能無弊也。</p> |
| <p>숙종 1권, 즉위년(1674 갑인 / 청 강희(康熙) 13년) 11월 16일(을해) 1번째기사</p> |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국휼(國恤)에 있어서 발인(發靱)하기 전에는 모든 일을 생시와 같이 하니, 동지(冬至) 절일(節日)에도 표리(表裏)184) 를 봉진(封進)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절일의 봉진은 비록 의거할 만한 전례(前例)는 없으나, 기해년185) 국휼 때 효묘(孝廟)의 탄일(誕日)에 전례에 의하여 표리를 봉진하였고, 대신(大臣) 이하 백관(百官)들이 곡림(哭臨)한 일이 있었으니, 지금 이 동지의 표리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봉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대답하기를,“그대로 하라.”하였다. 또 아뢰기를,“삼명일(三名日)의 방물(方物)과 물선(物膳)은 양대비전(兩大妃殿) 외에는 모두 임시로 감(減)하였습니다. 이번 동지가 빈전(殯殿)에서 발인(發靱)하기 전에 있으니, 방물과 물선을 만약 생시(生時)같이 한다면 봉진하는 것이 합당치 않을 듯하지만, 아랫사람이 감히 독단하여 할 수는 없으므로 마땅히 미리 품(稟)하여 정했어야 할 것인데, 어두운 소치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가 지일(至日)186) 이 이미 박두했습니다. 만약 봉진한다면 외방(外方)에 이를 알릴 즈음에 비록 정일(正日)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추후하여 봉진토록 해야 하는데, 방물은 이미 평일(平日)에 감한 것이기 때문에 종말에 가서 처치하기가 또한 매우 어렵게 되었으니, 다만 물선(物膳)만을 봉진하게 하는 것이 정례(情禮)에</p> | <p>乙亥/禮曹啓曰：“國恤發靱前凡事，象生時爲之。冬至節日表裏，似當封進矣。節日封進，雖無可據之前例，而已亥國恤時，孝廟誕日表裏，依例封進，而大臣以下百官，有哭臨之舉。今此冬至表裏，亦依此例封進乎？”答曰：“依爲之。”又啓曰：“三名日方物物膳，兩大妃殿外，竝皆權減矣。今此冬至，在於殯殿未發靱之前，方物物膳，若象生時，則似不當封進。而自下不敢擅便，所當預先稟定，而昏謬不察，至日已迫。若爲封進，則知委外方之際，雖未及正日，使之追後封進，而方物則既是平日所減，未終處置，亦甚難便，只以物膳封進，似合情禮。”答曰：“依。”</p> |

| | | |
|---|--|--|
| | <p>합당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의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p> | |
| <p>숙종 1권, 즉위년(1674 갑인 / 청 강희(康熙) 13년) 11월 24일(계미) 2번째기사</p> | <p>상평창(常平倉)의 쌀 5백 석을 평안도(平安道)에 내어주어 이를 기민(飢民)들에게 나누어 주어 구제하게 하고, 강계(江界) 등 24읍도 모두 수미(收米)와 세두(稅豆)를 감하여 거두게 하고, 조금 넉넉한 내지(內地) 18읍에는 수미 3두씩을 감하여 거두도록 하였는데, 이는 본도(本道)의 흉황(凶荒)이 다른 도(道)에 비하여 더욱 심하였기 때문이다.</p> | <p>以常平廳米五百石，出給平安道，分賑飢民。江界等二十四邑，並減收米稅豆，稍優內地十八邑，減收米三斗，以本道凶荒，比他道尤甚故也。</p> |
| <p>숙종 1권, 즉위년(1674 갑인 / 청 강희(康熙) 13년) 12월 2일(신묘) 2번째기사</p> |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당상(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허적(許積)이 아뢰기를,</p> <p>“호서(湖西)의 대동법(大同法)은 1결(結)에 12두(斗)로 정했는데, 몇 해 전부터 혹은 흉년으로 온행(溫幸)206 으로 감해 주어 타사(他司)에서 대용(貸用)까지 하고 있는데도, 궁핍함을 걱정하던 나머지 혁과(革罷)하자는 의논이 있기까지 하였는데, 호서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듣고 2두를 더 정하고 혁과하지 말 것을 청원하여, 조정에서 그 원에 의해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금년은 연사(年事)가 또 흉황(凶荒)한데 부역을 더 정한 것이 갑자기 이러한 때를 당하였으니, 우선 금년은 너그럽게 보아주고 명년부터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였다. 지성균(知成均) 김석주(金錫胄)와 대사성(大司成) 남구만(南九萬)이 임금에게 아뢰기를,</p> <p>“선비를 대하는 방도는 조정의 사부(士夫)와 달라서 그 기운을 꺾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관(館)을 비운 유생(儒生)들을 도로 들어가게 하소서.”</p> | <p>引見大臣、備局堂上。許積言：“湖西大同，定以一結十二斗，而自頃以來，或以年凶、或以溫幸減之，以至貸用他司，常患艱乏，至有革罷之議。湖西之民間之，願加定二斗而勿罷，朝廷依其願，而第今年事又凶荒，加定之役，遽當此際，宜姑寬今年，自明年定行。”知成均金錫胄、大司成南九萬白于上曰：“待士之道，與朝士異，不宜摧折。請空館儒生，許令還入。”並從之。利川民李宗業捉其妻奸夫於奸所，見逸之後，數日捕得，撲殺之，其妻自殺。刑曹以爲：“宗業之捕殺，在於奸所見逸之後第三日，與律文有異，宜用殺人律。”上因政院之啓，更命用登時殺死之律，刑曹又執法奏之。許積曰：“奸夫婦登時殺死，在法勿問，蓋其形跡分明也。一有低昂，必貽後</p> |

| | | |
|-----------------------------|--|---|
| | <p>하니, 임금의 모두 다 그대로 따랐다. 이천(利川) 백성 이종업(李宗業)이 그 아내의 간부(奸夫)를 간통하는 장소에서 붙잡았다가 놓친 뒤 수일 만에 다시 잡아 박살(樸殺)하였는데, 그 아내는 자살(自殺)하였다. 형조(刑曹)에서 말하기를,</p> <p>“이종업이 잡아서 죽인 것은 간통한 장소에서 놓친 지 제3일이었으니, 율문(律文)과 다른 것이 있으므로, 살인률(殺人律)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정원(政院)의 계사로 인하여 다시 등시살사율(登時殺死律)207) 을 적용하도록 명하니, 형조에서는 또 법을 고집하여 아뢰었다. 허적이 아뢰기를, “간부(奸夫)와 간부(奸婦)를 등시살사하는 것은, 법에 묻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는 대개 그 형적(形跡)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오름내림이 있으면 반드시 뒷날에 폐단을 끼칠 것입니다. 지금 이 이종업의 일은 그 형적이 명백한데, 만약 살인의 율을 적용한다면 과연 억울하게 될 것입니다. 선조(先祖)에서도 또한 이와 같은 옥사(獄事)가 있었는데, 계복(啓覆)208) 할 때에 특별히 감사(減死)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니, 임금이 감사하고 정배(定配)하도록 하였다. 수찬(修撰) 이하진(李夏鎭)이 아뢰기를, “지금 민간(民間)에서는 밥을 지어먹지 못하는 자가 많아서, 전의 적곡(糶穀)을 감면하라는 명이 있었지만, 또한 갖추어 바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으로는 경술년(209) 과 신해년(210) 이상은 모두 탕감시키고자 한다.” 하였다. 허적은 아뢰기를, “지금 받지 못한 것은 모두 경술·신해년 이상의 곡식입니다. 만약 모두 탕감한다면 나라를 다스릴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남구만(南九萬)은 탕감해야 한다고 힘써 말하였으나, 임금은 묘당(廟堂)에서 난처해 한다 하여 윤허하지 아니하였다.</p> | <p>弊。而今此宗業事，形跡明白，若用殺人之律，則果爲冤枉矣。先朝亦有如此獄，而啓覆時特命減死矣。” 上命減死定配。修撰李夏鎭曰：“卽今民間絕火者多，舊糶雖有減捧之令，而亦難備納。” 上曰：“予意則庚辛以上，欲皆蕩滅矣。” 許積曰：“卽今未捧，皆是庚辛以上之穀。若皆蕩滅，則無以爲國矣。” 南九萬力言蕩滅之宜，上以廟堂難之，不許。</p> |
| <p>숙종 1권, 즉위년(1674 갑인 /</p> | <p>약방(藥房)에서 아뢰기를, “소선(素膳)을 진여한 지가 이미 보름이 되었으니, 지금부터 상선(常膳)을 회복하기를 청합니다. 날마다 제사를 지내시면 반드시</p> | <p>藥房啓曰：“素膳進御，已至一望，請自今復常膳。逐日行祭，必致添傷，</p> |

| | | |
|---|---|--|
| <p>청 강희(康熙) 13년 12월 15일(갑진) 3번째기사</p> | <p>시 손상을 더하실 것입니다. 내일 삼우(三虞)는 청컨대 섭행(攝行)토록 명하소서.”하니, 임금이 답하기를,“아직 대단한 질병이 없으니 우제(虞祭)에 어찌 참여하지 않겠느냐? 복선(復膳)하는 일은 자교(慈教)가 지극히 간절하시니, 힘써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새삼 더욱 망극(罔極)하다.”하였다.</p> | <p>明日三虞，請命攝行。” 答曰：“姑無大段疾病，虞祭何可不參？復膳事，慈教至切，不得不勉從，尤復罔極。”</p> |
| <p>숙종 1권, 즉위년(1674 갑인 / 청 강희(康熙) 13년) 12월 16일(을사) 1번째기사</p> | <p>약방(藥房)에서 자전(慈殿)께 복선(復膳)할 것을 계청(啓淸)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대신(大臣)이 2품 이상을 거느리고 빈청(賓廳)에 모여 청하고, 왕자(王子)도 또한 종신(宗臣)들을 거느리고 청했는데, 5일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억지로 따랐다.</p> | <p>乙巳/藥房啓請慈殿復膳，不許。 大臣率二品以上，會賓廳陳請，王子亦率宗臣請之，至第五日，始勉從。</p> |
| <p>숙종 1권, 즉위년(1674 갑인 / 청 강희(康熙) 13년) 12월 18일(정미) 1번째기사</p> | <p>임금이 친히 효경전(孝敬殿)에서 사우제(四虞祭)를 친행하고, 하교(下教)하기를“효경전에 공상(供上)하는 꿩과 생선은 기해년의 예(例)에 의하여 3년을 한정하고 계속하여 봉진(封進)하도록 분부하라.”하였다.</p> | <p>丁未/親行孝敬殿四虞祭。 下教曰：“孝敬殿供上雉鮮，依己亥年例，限三年仍爲封進事分付。”</p> |
| <p>숙종 2권, 1년(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1월 3일(임술) 1번째기사</p> | <p>임금이 야대(夜對)하였다. 《강목(綱目)》 250 제1권을 강독(講讀)하고 입시(入侍)한 신하들에게 각각 황감(黃柑) 한 그릇을 내렸다. 검토관(檢討官) 임상원(任相元)이 나아가 말하기를, “송시열(宋時烈)이 의례(儀禮)를 의논한 것이 과연 그러니, 오늘 죄를 논의하는 것은 참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송시열이 선왕(先王)을 폄박(貶薄)하였다고 한다면 억울함이 없지 않을 것이니, 합계(合啓)하여 귀양보내기를 청한 것은 지나침을 면하지 못합니다. 송시열은 나이가 이제 70이고 또 대신(大臣)인데, 먼 곳에 귀양보냈다가 불행한 일이 있게 되면 아름다운 일이 아닐 듯하니, 편의대로 전리(田里)에 가서 남은 나이를 마치게 하면 어찌 성덕(盛德)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송준길(宋浚吉)·이유태(李惟泰)는 의논드린 사람이기는 하나 별로 주장한 일이 없으니, 추탈(追奪)하고 삭출(削黜)251) 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은 부드럽고 착하여 흠이 없으며, 송시열은 효종께서 예</p> | <p>壬戌/上夜對，講《綱目》第一卷。 賜入侍諸臣黃柑各一器。 檢討官任相元進曰：“宋時烈之議禮果誤，今日之論罪誠是矣。 然若以時烈爲貶薄先王，則不無其冤。 合啓請竄，未免太過。 時烈年今七十，且是大臣，若竄逐遠地，有所不幸，則恐非美事。 使之任便田里，以終餘年，豈非盛德事乎？ 宋浚吉、李惟泰雖是獻議之人，別無主張之事，追奪削黜，未知其可。 浚吉柔善無疵，時烈，孝廟禮遇之臣，不宜深罪。” 上曰：“時烈蒙孝廟禮遇，不思</p> |

| | | |
|---|---|---|
| | <p>우(禮遇)하신 신하이니, 엄하게 죄주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송시열은 효종의 예우를 입었는데도 보답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서자(庶子)라는 폄칭(貶稱)을 가하였으니,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는가?” 하자, 임상원이 말하기를, “신은 송시열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효종을 폄박하였다고 논한다면 그 본정(本情)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였다. 그래서 이수경(李壽慶)·남천한(南天漢)이 인피(引避)하고 임상원을 헐뜯었다.</p> | <p>圖報，反加庶子之貶稱，豈可無罪乎？” 相元曰：“臣非以時烈爲無罪，論以貶薄孝廟，則非其本情矣。”於是，李壽慶、南天漢引避，醜詆相元。</p> |
| <p>숙종 2권, 1년(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1월 23일(임오) 2번째기사</p> |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당상(堂上)을 인견(引見)하였는데, 윤휴(尹鑄)도 같이 들어갔다. 허적(許積)이 황해 감사(黃海監司) 윤계(尹堦)의 장계(狀啓)에 따라 수안(遂安)의 군병(軍兵)을 곡산(谷山)에 옮기고 다시 평산 부사(平山府使)가 영장(營將)을 겸하게 하기를 청하였다. 곡산 일대는 서북(西北)의 요로(要路)이므로 선조(先朝)에서 장단(長湍)의 적벽(赤壁)으로부터 위쪽에 관방(關防)을 설치하려 하였는데, 이제 유혁연(柳赫然)을 시켜 무신(武臣) 중에서 계려(計慮)가 있는 자를 찾아서 가서 형세를 보고 차차 방편을 의논하게 하였다. 또 삼남(三南)347) 과 제주(濟州)의 순무사(巡撫使)는 농사철이 되기 전에 보내고 북한 산성(北漢山城) 터에는 총융사(摠戎使) 김만기(金萬基)·형조 판서(刑曹判書) 오시수(吳始壽)를 시켜 같이 가서 살피고, 성을 쌓는 일을 빨리 의논하게 하기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다 따랐다. 임금이 윤휴의 소(疏)를 허적에게 주어 읽게 하고 말하기를, “이것은 모두가 시급한 일이니, 제신(諸臣)과 상의하여 거행하라.” 하였다. 소는 모두 조(條)인데, 첫째는, “지난 경술년(348)·신해년(349)의 기근(飢饉)과 역질(疫疾) 때에 국가에서 조적곡(糶糶穀)을 흠어 주고 죽을 장만하여 구제하였는데 당초에 일체 탕감(蕩</p> | <p>○引見大臣、備局堂上。 尹鑄亦同入。 許積以黃海監司尹堦狀啓，請移遂安軍兵於谷山， 更以平山府使兼營將。 谷山一帶乃西北要路，先朝欲以長湍赤壁以上，設置關防，令使柳赫然，得武臣中有計慮者，往見形勢，徐議方便。 又請三南及濟州巡撫使，趁農前發送。 北漢山城基址，令摠戎使金萬基、刑曹判書吳始壽，同往看審，速議築城，上皆從之。 上以尹鑄疏，授許積使讀之曰：“此無非急時之務，與諸臣相議舉行。”疏凡九條。</p> <p>一曰。 向者庚辛飢疫，國家散糶設糜而救之。 初有一切蕩減之令，而中爲有司所格，失信於民大矣。 今莫若大</p> |

滅)하라는 영(令)이 있었으나 중간에서 유사(有司)에게 저지되었으므로 백성에게 신의를 잃은 것이 큼니다. 이제 크게 탕적(蕩滌)하는 것만 못하니, 팔도에 사신을 나누어 보내어 읍리(邑里)에 백성을 모아 덕의(德意)를 선유(宣諭)하고 그 문권을 내어다가 불사르고 또 어리거나 죽은 사람에 대한 징포(徵布)를 면제하도록 하여 큰 은혜와 큰 신의를 보이소서. 또 명하여 그 고통과 억울한 일을 물어서 제거하고 그 행의(行義)가 있거나 기로(耆老)350) 이거나 재지(才智)가 있거나 권용(拳勇)351) 한 자를 물어서 수록(收錄)하여 위에 아뢰고, 탐포(貪暴)한 수령(守令)과 무단(武斷)하는 토호(土豪)도 한대(漢代)의 자사(刺史)가 육조(六條)352) 로 엄찰(廉察)한 제도처럼 검거하여 탄핵해야 합니다. 또 사방의 백성이 모두 제 뜻을 정부(政府)나 헌부(憲府)에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하고, 또 정부의 검상(檢詳) 등의 관직을 회복하여 조종(祖宗)의 법처럼 형옥(刑獄)을 청리(清理)353) 하게 하소서. 또 형옥의 일한(日限)을 중외(中外)에 반포하여 일한 전에 아뢰고 처결하게 하고, 헌관(憲官)을 보내어 살펴서 전처럼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중략-

허적(許積)이 한 번 다 읽고 나서 먼저 환자[還上]의 일을 논하여 여러 신하들과 함께 탕감(蕩減)하여서는 안된다는 정상을 힘껏 말하였는데 윤휴(尹鑄)가 말하기를,

“환자는 곧 왕안석(王安石)의 청묘법(靑苗法)363) 이고 상평(常平)364) 은 곧 조종(祖宗)의 성법(成法)인데, 환자를 파(罷)하지 않으면 백성이 보전될 수 없는 형세이고 상평을 시행하면 백성을 침학하는 폐단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하고, 허적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를 파하고 상평을 시행하면 백성이 편히 살지 못할 것입니다. 상평법은, 중국[中原]에서는 일정한 규례가 있으므로 사고 팔기가 어렵지 않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백성의 버릇이 교사(巧詐)하여 시가의 높낮이

蕩滌之，分遣使臣於八路，聚民邑里，宣諭德意，出其券而焚之。且許除兒弱、物故徵布，以示大恩大信。又命問其疾苦、枉屈而蠲除之；詢其行義、耆老、才智、拳勇者而收錄之，以聞于上。守臣之貪暴、土豪之武斷者，亦可舉劾之，如漢刺使六條廉察之制。又令四方之民，咸得自言其情於政府若憲府，又復政府檢詳等官，清理刑獄，如祖宗之典。且以刑獄日限，頒示中外，趁限奏決，委憲官覺察，俾無如前遲滯。二曰。古者人君遇大事，有致民大詢之舉。臣謂殿下亦宜一日御象魏門樓，大集都中坊里大小士民壯少、父老等，分命近侍，咨以大荒、大札、陵役、客使，憂勞閔弔之意，詢其疾苦、冤枉，表其耆老、行義，命有司賜以秩級、米布、酒食，如漢世元年賜給牛酒，方春賑貸之制。命出輕繫、掩骼埋骸，以行春令，如周家之制；出獄囚問之間，脫桎梏如大禹泣辜之義。又令蠲除獄中，給以薪炭，時時賜湯沐，如宋氏之制。此亦悅民心之一事也。三曰。開言路者，所以決壅蔽、通民情也。我國喉司，從前有還出給

가 무상하게 바뀌고 또 예와 이제는 마땅한 것이 다르니, 결코 시행할 수 없겠습니다.”하고, 윤희가 말하기를,“이 백성을 삼대(三代)365)의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방도는 오직 위에서 시키기에 달려 있습니다. 산성(山城)366)과 강도(江都)367)의 곡식을 백성은 함정처럼 생각하니, 어찌 폐법(弊法)이 아니겠습니까?”하고, 허적이 언짢아 하며 말하기를,“백성을 갓난 아이가 젖을 바라는 것처럼 생각하니,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환자는 살피 내어서 탕감하고 상평은 먼저 한 고을에 시험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하고, 윤희가 김석주(金錫胄)를 돌아보며 말하기를,“상평은 사책(史冊)에 미법(美法)이라 일컬었거니와, 환자는 결코 그대로 둘 수 없는데, 부학(副學)의 생각은 어떠합니까?”하고, 김석주가 말하기를,“전에 갑창(甲倉)의 곡식 2천 석(石)으로 은(銀) 2백 냥을 샀다가 이제 도로 본곡(本穀)을 사려 하니, 원수(元數)에 미치지 못하여 지극히 난처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말하면, 상평법은 시행하기 어려울 듯하고, 환자는 본디 미법인데 어찌하여 반드시 과해야 하겠습니까?”하고, 권대운(權大運)이 말하기를,“봄에 은(銀)·포(布)를 샀다가 가을에 혹 흉년이 들어 곡식을 사지 못하면, 군사가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먹이겠으며, 백성이 굶주릴 때에 어떻게 진휼(賑恤)하겠습니까?”하고, 윤희가 말하기를,“죄다 흠어 줄 것 없으니, 상평곡(常平穀)을 적당히 두어서 군향(軍餉)으로 하면 무슨 방해될 것이 있겠습니까?”하였다. 허적이 또 사신을 보내어 백성의 질고(疾苦)를 묻는 일을 논하여 말하기를,“질고(疾苦)를 묻고도 시행하지 못하면, 인심(人心)을 크게 잃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략-

之制，且近日又有禁防一事，非明目達聰之道也。臣謂如此禁令，宜一切去之，辭職疏外，勿令還給，使有懷者，皆得自言。且我國有館學、草野連名封章之例，此不無雷同和附，眩亂刼制之弊，宜命自今以後，凡有所懷，咸得各自陳疏，不必成群。或有扶同伐異者，必處其罪實。今日正士習、祛朋黨之一事也。又自前四方民庶之言，上聞者非不多，而自上不能一一記憶行之，下之該司，又終爲防塞之歸。臣謂自今宜如朱文公之言，命近臣之忠正通明者三四人，寓直殿門，凡有章疏，必令省闕檢討，日以宣聞于聰聽，仍就上前，畫爲條貫，以次施行。四曰。我國取士，專在科舉，而科舉之法，未必得士。在平世固非急先務，況於危亂之日乎？且今大荒大恤，民力蕩竭。臣謂今歲大比，且可退之以俟歲實，而命政府草教四方，諭以閔恤剋省之意。且令百司八路，通均料理，節縮浮費，以體聖上愛民恤費之心。更令三公、六卿及臺閣、侍從、方伯、府州縣令，各薦行誼、智慮、拳勇、技藝各一人，如得其人，寵以爵賞；如不得人，則施

| | | |
|--|--|--|
| | | <p>以罰俸奪秩之律，庶幾可收一時之功。</p> <p>五曰。近來國綱解弛，朝廷分付，守令不為舉行。往年還上，【還上，俗語糴穀之稱。】分減蕩除，田稅大同，減半不捧，既有成命，而亦有不奉命令者云。臣謂上項焚券，御史之行，各別舉覈奏聞，重施其罰。其清修惠化者，亦為簡聞褒賞，以為勸懲之地。</p> <p>六曰。古者稅以足食，賦以足兵。蓋分戶口田結，而各有所出也。我國則凡干賦役，皆責之於田結，此所以重困農民也；又別定軍士名號，使之納布，此又侵虐兵卒也。臣愚之意嘗以為，必須分別田戶，以為出賦稅之法，然後始可有兵民蘇息之望。然此等稅布，皆係國家經費，有不可無端減去者。近來流民入山峽者，在處皆然。今若盡為搜出，以為國用，可以充襁褓、白骨之徵布矣。</p> <p>七曰。我國無土着之法，民之飛走，若鳥獸然。今宜更申見行五家統之制，略如管氏內政，無問土着、流民，都城內外，一以此法管束之，無或如前日逃隱之弊，則庶幾上下相維，民知畏戢。然後出役差軍之法，唯上之所欲為而不亂，此實治民詰戎之</p> |
|--|--|--|

| | | |
|--|--|--|
| | | <p>大本也。八曰。古者有庶子之官，中古有郎衛之職。今宜略倣此制，悉收錄京外大小臣僚子弟及已出身、未出身者，不問兩班、庶孽，彙別成冊，屬之摠府，就其中簡拔，名以摠府郎，其四方異才及上書可用人等，皆總之于此，使之分番直衛。又不分文武，講之以《孝經》、《大學》、司馬、孫武等書，弓馬車乘等技，以備執戟宿衛之任。巡徼京師之職，擇其秀者，入為郎僚，出宰百里，其徒隸兵卒，則可分出訓局數百人以充之。既可以漸復五衛之制，亦可為廣收人才，臨事緩急之用，此禦侮備患之一事也。九曰。民不可去兵，國不可忘武。武備之道，步不及馬，馬不及車。車者所以成軍立陣，有國之大器也。我國武備，素無此制，雖有千里之疆、萬旅之衆，而恒凜凜有不保之憂。宜急勅訓局、御營、守禦、摠戎等廳，疾速造作，令士卒調習。且令外方監兵營及大府州有材力處，如制造成，小縣邑暨民間，隨意造成，居常調習，以代牛馬之勞，于以治農、輦積，亦必有大賴矣。又曰：殿下果能於今日，克自警責，大加振</p> |
|--|--|--|

| | | |
|--|--|--|
| | | <p>作，凜乎常存祇栗欽翼之心，學問以開之，剛大以持之，凝神儲思，辨擇是非，務以出於至善，庶乎群黎百姓，無不悅豫，上帝鬼神，收還威怒</p> <p>云云。 積讀了一遍，先論還上事，與諸臣力言不可蕩滅之狀，鑄曰：“還上乃安石青苗之法， 常平乃祖宗成法。不罷還上， 則民無可保之勢； 設行常平， 則可無虐民之弊矣。” 積曰：“不然， 若罷還上而設常平， 則民不聊生矣。 常平之法， 中原則有一定之規，買賣不難，而我國則民習巧詐，市直高下，變遷無常。 且古今異宜，決不可行。” 鑄曰：“斯民也，三代之所以直道而行，唯在上之所使。 山城、江都之穀，民視若陷穽，豈非弊法乎？” 積忿然曰：“民視之如嬰兒之望乳，寧有此理？ 還上則查出蕩滅，常平則先試一邑無妨。” 鑄顧金錫胄曰：“常平，史稱美法，還上則決不可仍存。 副學之意何如？” 錫胄曰：“頃以甲倉穀二千石，貨銀二百兩，今欲還買本穀，則不及於元數，極為難處。 以此言之，常平之法恐難行。 還上自是美法，何必</p> |
|--|--|--|

| | | |
|--|--|---|
| | | <p>罷之？”權大運曰：“春買銀布，秋或失稔，不得買穀，則軍興何以饋餉，民飢何以賑之？”鑄曰：“不必盡散，量儲常平之穀，以為軍餉，有何妨乎？”積又論遣使問民疾苦事曰：“問其疾苦而不得施之，則乃大失人心之道也。”錫胄曰：“不必別遣使臣，監司下去時，言送可矣。”鑄曰：“此乃聳動之舉也。”又論四方民懇冤于政府及憲府事，積曰：“憲府則今亦有呈訴之事，政府則署事之罷久矣。”鑄曰：“刑獄檢詳之規，則尚存矣。”積曰：“刑獄甚重，故祖宗朝使檢詳，看詳獄訟清理，今宜留意修舉。”鑄曰：“獄訟久滯乃近來痼弊，徒配以上，大臣委檢詳察之，而屢省乃成可矣。”積曰：“刑獄日限，則宜更申飭。”上唯唯。又論門樓殿坐事，積曰：“此則甚好。”權大運曰：“此恐有亂雜之弊。有所詢問，而皆歸不施，則必有罔民之怨矣。”諸臣皆如大運言。鑄曰：“可行者行之，不可施者置之。民亦有人心，豈必稱冤？”錫胄曰：“人君當施以實惠，此則近於文具，且恐有匿名書矣。”鑄曰：“大意既好，則行之可也。小小節目，何必</p> |
|--|--|---|

| | | |
|--|--|--|
| | | <p>盡拘？若以問民疾苦爲有弊，則只殿坐可矣。” 積曰：“此乃爲民惻怛之意，何可謂之文具？” 錫胄曰：“纔過五月之制，以素扇素繖，臨御門樓，未知何如。而餽以牛酒，尤爲未安。” 積曰：“此非遊觀之比，似無所妨。” 鑄曰：“昔康王卽位，延入翼室，乃示民卽位之儀也。卽今天災孔棘，人心渙散，乃於元年正月，親臨慰諭，以示哀痛惻怛之意，於禮無妨，而於事不可廢矣。” 積曰：“此事無害，當與他大臣議行之。” 又論言路事，積曰：“言事之疏，既有捧入之命，而儒生疏使不得聯名，未知何如。” 吳始壽曰：“議論不同者，使之各陳，有同臺諫避嫌之規，非朝家分付之事。如有黨同伐異者，自朝家施罰可矣。” 積曰：“隨其所見，各自陳疏，乃所以勸其爭也，尤致紛紜。朝家是非公正，且擇師儒之長，則可無此弊。” 鑄曰：“儒生之罰，旣令蕩滌，而洪有臯、柳櫻、尹善道，尙在付黃之中云，極可痛也。” 積曰：“朝官不得施儒罰，從前申飭，而頃日又罰柳壽芳。儒生所爲駭愕，痛懲宜矣。” 上唯唯。又論疏章，令近臣省</p> |
|--|--|--|

| | | |
|--|--|---|
| | | <p>閱施行事，積曰：“果若此言，則安用大臣與承旨?” 鑄曰：“不必別出官員，使承旨、玉堂主掌可矣。” 又論科舉事，積曰：“不可廢之意，曾已陳達矣。” 吳挺緯曰：“得入之道，唯在科舉。雖亂離顛沛之際，亦所不廢。” 鑄曰：“亂離中設科，前史譏之。平世則可也，此何等時也?”</p> <p>-하략</p> |
| <p>숙종 2권, 1년(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2월 7일(을미) 2번째기사</p> | <p>이구천(李救天)이라는 자가 술과 과일 두어 그릇으로 승릉(崇陵)에 사사로이 제사 하였으므로, 임금이 듣고 크게 놀라서 나래(拿來)하여 추국(推鞠)하는데, 허적(許積)이 아뢰기를,“추국의 사체(事體)가 매우 중대하니, 삼성 추국(三省推鞠)396) 의 예(例)를 써야 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 <p>有李救天者，以酒果數器，私祭崇陵。上聞之大駭，拿來推鞠。許積啓：“推鞠事體太重，宜用三省鞠例。”上從之。</p> |
| <p>숙종 3권, 1년(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3월 14일(임신) 2번째기사</p> | <p>선왕께서, ‘버려두고 묻지 않으면 징계되어 두려워하게 할 수 없고, 힐문(詰問)하게 되면 복창을 해치게 될까 염려된다.’고 생각하셨으므로, 우선 대령(待令)하게 하셨으나, 늘 일의 자취가 드러날까 염려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대간(臺諫)이 알면 반드시 논계(論啓)할 것이고, 대계(臺啓)가 있으면 나도 구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선처하려고 생각하여 미루어 나가고 결단하지 아니하시다가 문득 승하시게 되었다. 승하시신 뒤에 상업이 비로소 스스로 들어왔는데, 패란(悖亂)한 말이 궁중을 진동하므로, 내가 망극한 중에 그 분한 것을 금하지 못하였다. 또 복창 형제가 또한 습렴(襲斂)의 집사(執事)로 바야흐로 내간(內間)에 있으므로, 다시 전일과 같은 변이 있을까 염려하여, 주상께 파직하여 내치도록 말하였으나, 주상은 어릴때부터 저들 형제가 출입하여 함께 놀아서 애정이 도타운데, 그것이 손상될까 염려하여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이제는 이런 판부를 내리셨다. 선왕께서 이 일을 보고 덮어주려고 힘쓰</p> | <p>牌招金佑明，不至。上命大臣、備局諸宰引見。許積、權大運及判義禁張善澂、知事柳赫然、兵曹參判申汝哲、大司憲金徽、大司諫尹深、副應教李夏鎭皆來會，吳挺緯、吳始壽、金錫胄稱病不至。承旨鄭重徽引諸臣而入夜對廳。爲三年引接之所，而乃房一間，廳三間也。常時引見，則撤去戶閣，上御房內南向，是日則以閣隔之，上御廳外東向坐，兩宦侍稍下，西向設大臣席，廳下甃上東向設諸宰席。時已昏黑，殿上燭光煌煌。大臣以下</p> |

졌기 때문에, 이제 와서 도리어 알 수 없는 일로 구함(構陷)한 것으로 돌아가니, 내 마음의 아픔을 어떻게 이르겠는가? 내가 선왕의 뜻을 몸받아 그 죄를 덮어 주려 하는 것도 될 수 없으므로, 안에서 상업에게 힐문하기를, ‘내가 본 일을 네가 감히 속이고 숨겨서 선왕께서 함해(陷害)하신 것으로 돌리느냐? 네가 정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형장(刑杖)을 써야 할 것이고, 네 부모도 보전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더니, 상업이 날날이 정직하게 공초(供招)하였다. 그 말은 이리이러한데 말하기 더럽다. 인선 대비의 초상에 염습(斂襲)할 때에 복창이 의대(衣櫛)를 펴고, 저도 옆에 있었는데, 손이 제 편으로 오면 문득 서로 잡게 되었고, 또 나인과 왕자 등 못사람이 모인 가운데에서는 뒤에서 치맛자락을 잡으므로 제가 놀라서 피하였는데, 그 뒤에 복창이 저에게 말하기를, ‘나는 연련한 정이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돌아보지도 않고 나를 피하느냐?’ 하여 서로 저항하였으나 마침내 꺾박당하였다 한다. 또 서찰을 왕래한 일을 물었더니, 윤여(輪輿)를 배설(排設)할 때에 복창이 쪽지를 떨어뜨렸는데, 글 가운데에는 상사(相思)의 정을 극진히 말하였다 한다. 선왕께서 친족을 친근히 하시는 의리 때문에 덮어 주려 한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으니, 내가 죽어서 모르고 싶다.”

하고, 이어서 또 울면서 말하기를,

“모진 목숨이 이제까지 죽지 않고 이런 망극한 변을 당하였다. 그들은 이미 선조(先朝)에서 드러났는데, 지금에 와서 숨기어 마치 선왕께서 함해하신 것인 듯이 하니, 어찌 마음 아프지 않겠는가? 귀례(貴禮)의 일은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으나, 더러운 말이 많이 있다. 지난해 봄 내가 병이 위중하여 거의 죽어 갈 때에 선왕께서 바야흐로 망극하신 중에 계시어, 복창 형제를 시켜 병후(病候)를 알아보게 하셨으므로 밤낮으로 안에 있었는데, 복평이 늘 차[茶]를

入就席，俯伏閤內。有婦人哭聲，始知慈殿出臨也。積曰：“此何故也？臣等惶恐不知所措。”上曰：“予不知內間事，故慈殿欲言福平兄弟之事，出臨於此矣。”大運曰：“此乃非常之舉，臣等不當入侍。”積曰：“慈殿欲有下教之事，則臣等固當聽受。殿下宜入內，請止其哭。”積與諸臣退伏堂下，上入閤內。移時哭止，上出閤坐，諸臣復入侍。慈殿發言，積、大運離席，向閤伏而聽之。慈殿曰：“未亡之人無意在世，每以未死爲恨。今有不測之事，關係先朝，不得不言于大臣。先王之篤愛福昌兄弟，外臣所知也。宮中禮貌極嚴，而予亦體先王之至意，待之無間矣。今者此輩所犯，予所詳知，若至彰露，恐就死地，故予欲從便處之，而主上幼沖，不知曲折。以予爲誣陷，固不足關，而先王愛待此輩之意，將歸虛地。見其判付之言，即欲歸死於先陵之側，而顧念先王之所倚重者，領相也。當其大漸之時，以世子年幼，國事靡托爲憂，及聞領相之來，喜而謂予曰：‘手足既來，予雖病，無憂。’此言今猶在耳。此生雖不足恤，

요구하여 마시고 나서는 종지를 남겨두었다가 귀례가 찾으러 가면 복평이 말하기를, ‘번번이 차를 찾으려면 어찌하여 친히 가져오지 않느냐?’ 하고는 손을 잡아 희롱하자, 귀례가 아주 가까운 곳이라 시녀(侍女)가 많이 있다고 거절하고는 여러번 회상전(會祥殿)의 월랑(月廊)에 가서 만났는데, 억지로 꺾박하여 따르게 되었다 한다. 이것은 선왕께서 친히 들으신 것이고 내가 잘 아는 것인데, 이제는 함해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선왕께서 영상을 대우하신 것으로 말하면 내가 아는 바이거니와, 믿고 존중하는 뜻을 늘 말씀하시고, 그 이름까지 부르며 말씀하시기를, ‘허적이 있으니 나에게는 근심이 없다.’ 하였으니, 지금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어린 임금을 돕고 신료(臣僚)를 살피서 내가 바라는 바에 어그러지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은 오직 영상에게 달려 있다. 그 밖의 입시한 신하들도 누구인들 선왕께서 맡겨 부리시고 선왕의 녹(祿)을 먹은 자가 아니겠는가? 정신이 어지러워 나라의 일에 생각이 미칠 겨를이 없어도 모진 목숨이 이제까지 구차하게 남아 있는 것은 신하들이 어린 임금을 도와서 세상을 태평하게 하는 것을 보고서 선왕께 가서 고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 번 죽으려 하였으나, 참고 죽지 않은 것이다. 대신과 삼사(三司)·비국(備局)의 신하들은 다 내 말을 들었으니, 소견을 죄다 말해야 한다. 이 일이 과연 무함이며 내 이 거동이 지나침을 면하지 못하겠는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당하고부터 남을 대할 낮이 없어 시녀가 앞에 있더라도 낮을 들고 싶지 않았으나, 이제 이 일을 당하여 선왕의 누가 될까 염려되므로, 한 몸의 시비(是非)를 헤아리지 않고 신하들에게 한 번 드러내어 밝히고 나서 죽는 것이 쾌할 따름이다.”

先王之親愛此輩，而欲爲掩覆者，反爲誣陷之歸，若不暴白而死，則無以見先王於地下，所以姑忍一死，而欲一陳於大臣矣。主上在春宮時，只勤於學問而已，不預他事，安知內間之事乎？內人常業，人物本來無形。仁宣大妃初喪，兩王子及福昌兄弟，入治喪事，其時福昌與常業有不測之事，而予方病重，未及詳知矣。仁宣大妃私藏器物，先王罔極之中，與諸公主親自區處，福昌亦入侍，見常業氣色殊常，先王覺之，言於予曰：‘我所目見之地，此輩顯有不安之色。衆目所覩，若至現露，則必爲福昌之禍，自今無令相近可也。’予以爲此言不可煩說，招老尙宮分付曰：‘常業有駭異舉措，汝必善爲伺察。’厥後再三入來，有綢繆尋覓之色。先王以爲：‘男女之慾，人所難制。今見福昌氣色，必生大患。’七夕茶禮，自內設行，親臨之時，兩王子、福昌兄弟爲執事，內人奉祭物以進，常業見福昌失色，福昌注視常業，不自覺其首之回也。先王極用驚駭，以處置爲憂。予屢請以他事黜之，而以仁宣大妃嘗信任之故，不忍黜矣。

| | | |
|--|--|--|
| | | <p>常時內人以事出外，則以御筆書出字於鐵牌，然後始出。一日常業稱病，請浴椒，先王無心之中書出字。其後見內人出外置簿，問之曰：‘內人金氏誰耶？’尚宮以常業對。先王大驚曰：‘此何言耶既？出渠家，與之相從，而至於生子，則難以掩覆速為招入。’自內屢次招之，而稱托不來。先王遣別監，問何故出去，則稱以魂殿尚宮使之出去。先王招問尚宮，尚官對以不知。先王以為：‘置而不問，則無以懲畏，若至詰問，則恐害福昌。’故姑使之待令，而常恐事跡現露，言于予曰：‘臺諫若知，則必有論啓。若有臺啓，則我亦不能救矣。’思欲善處，而遷延未決，遽至昇遐。昇遐之後，常業始自入來，悖亂之言，震動宮中。予於罔極之中，不勝其忿。且福昌兄弟，又以襲斂執事，方在內間，恐其復有如前日之變，言于主上，使之罷職放送，而主上自在幼時，彼兄弟出入從遊，情愛篤至，恐其傷害，不聽予言，今乃有此判付。以先王目覩此事，務欲掩覆，到今反為構陷不測之歸，予心之痛，何以為喻？予之體先王之意，欲掩其罪</p> |
|--|--|--|

| | | |
|---|---|---|
| | | <p>者, 亦不可得, 故自內窮詰常業曰: ‘予所目覩之事, 汝敢欺隱, 歸先王於陷害之地乎? 汝不直言, 當用刑杖, 汝之父母, 亦不得保全。’ 云, 則常業一一直招, 其言如此如此, 言之醜矣。 仁宣大妃初喪斂襲時, 福昌展布衣襪, 渠亦在傍, 手及渠邊, 遽至相握。 又於內人及王子衆會之中, 自後把握裳裙, 渠驚遑躲避。 其後福昌言于渠曰: ‘吾有戀戀之情, 而汝何邁邁避我?’ 相持抵抗, 終見逼迫云。 又問書札往來之事, 則輪輿排設時, 福昌落下小紙, 書中極道相思之情云。</p> <p>하략</p> |
| <p>숙종 3권, 1년(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3월 26일(갑신) 1번째기사</p> |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이어서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는데, 광성 부원군(光成府院君) 김만기(金萬基)도 청대(請對)하여 같이 들어갔다. 허적(許積)이 훈련 대장(訓練大將) 유혁연(柳赫然)과 함께 강도(江都)472) 자연도(紫煙島)에 가서 형세를 보겠다고 청하고, 또 외방(外方)의 봉수(烽燧)473) 중에 수리되지 않은 것이 많은데, 서북의 두 도를 먼저 살펴야 하겠다 말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오정위(吳掟緯)가 말하기를, “손후업(孫厚業)은 우리 나라의 폐단을 없앤 자의 아우인데, 신이 불러서 보고 하교(下教)하신 대로 쌀과 베[布]를 주었습니다.”하자, 허적이 말하기를, “손후업이 바라는 것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형 손후권(孫厚權)이 들어 보내기를 청하였다 하니, 만상군관(灣上軍官)이라 가호(假號)하여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손후업은 월초(月初)에 이정(李</p> | <p>○甲申/御晝講。 仍引見大臣、備局諸宰。 光城府院君金萬基請對同入。 許積請與訓練大將柳赫然, 往見江都紫烟島形勢, 又言: “外方烽燧多不修舉, 西北二道, 先爲察視。” 上可之。 吳掟緯曰: “孫厚業, 除弊我國者之弟也。 臣招見, 依下教給米布矣。” 積曰: “厚業所望, 不止於此, 其兄厚權請入送云。 假號灣上軍官以送如何?” 上從之。 厚業, 月初, 楨白於筵中者也, 爲楨之腹心。 金錫胄言: “讓寧大</p> |

| | | |
|--|--|---|
| | <p>楨)이 연중(筵中)에서 아뢴 자인데, 정의 심복이다. 김석주(金錫胄)가 말하기를, “양녕 대군(讓寧大君)의 10대손인 이인망(李仁望)은 백집사(百執事)에 합당하나, 가난하여 사우(祠宇)를 세우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허적이 돌아보고 작은 소리로 말하기를, “이 이인망은 이항(李沆)의 매부인 듯합니다.” 하였다. 허적은 이항의 이종 형제인데, 짐짓 잘 알지 못하는 체하여 임금이 이항의 매부임을 알게 하려 한 것이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평(持平) 이항(李沆)인가?” 하자, 허적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양녕은 다른 대군들과는 달라서 참으로 주(周)나라의 태백(泰伯)과 같은 지극한 덕이 있으니, 관가에서 사우를 지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이하진(李夏鎭)이 뒷줄에서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를, “이인망은 벼슬을 제수하여 제사를 받들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이하진은 이항의 종숙(從淑)이고 이인망과도 족친이 된다.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이때에 허질(許秩)이 곡물(穀物)을 특별히 장만하여 바치고 승자(陞資)되었다 하여 대간(臺諫)이 바야흐로 도로 거두기를 청하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허질 등의 자급을 도로 거두자는 일은 내가 알지 못하겠다. 허질은 곡물 8천석을 특별히 장만하였다. 이에 앞서 1천 석을 장만한 자도 가자(加資)하였는데, 이제 이렇게 하니 내가 알지 못하겠다.” 하자, 허적이 낫빛을 변하여 말하기를, “신의 아우의 일이므로 신이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상받기를 바란다”고 말하는데, 사대부가 어찌 바라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p> | <p>君十代孫李仁望，可合百執事，而貧不能建祠宇。” 積顧而微語曰：“此李仁望，似是李沆妹夫也。” 積卽沆母從兄弟，而故爲未詳知之狀，欲上知爲沆妹夫也。 上曰：“持平李沆耶？” 積曰：“然矣。讓寧非他大君比，實有周泰伯之至德，宜自官建祠。” 李夏鎭從後列起坐言曰：“李仁望宜除職以奉祀。” 夏鎭，沆之從叔，與仁望亦爲族也。 上竝從之。 時，許秩以別備穀物陞資，臺諫方請還收。 上曰：“許秩等還收事，予未曉也。 許秩別備穀八千石，前此一千石者，亦加資，而今乃如此，予未曉也。” 積厲色曰：“臣弟之事，臣不敢言，而但以希賞爲言，士夫寧有希望之事乎？”</p> |
| <p>숙종 3권, 1년(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4월 1일(기축) 1번째기사</p> | <p>부제학(副提學) 홍우원(洪宇遠)이 상소(上疏)하기를, “신이 든건대 《역경(易經)》의 가인괘(家人卦) 단사(象辭)에 이르기를 ‘여자가 안에서 위치를 바르게 하고 남자가 바깥에서 위치를 바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남자의 자리는 바깥에 있고 여자의 자리는 안에 있기 때문에, 부인(婦人)은 안에서 위치를 바르게 하여 바깥의 일을 간섭하지 않아서 전제(傳制)하는 뜻이 없고 삼종(三從)497)의 도리가 있습니다. 진실로 이 도리를</p> | <p>----- ----- ----- --</p> |

| | | |
|--|---|--|
| | <p>여기면 《역경》의 여자가 안에서 위치를 바르게 하고 남자가 바깥에서 위치를 바르게 한다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겠습니까.</p> <p>지금 이정(李楨)과 이연(李樞) 등의 더러운 행위는 참으로 근고(近古)에 없었던 변고(變故)였습니다. 그를 치죄(治罪)하는 데 진실로 법률을 잘못 쓴 점이 있으면 대신(大臣)들은 마땅히 진달해야 할 것이고, 대관(臺官)들은 반드시 쟁집(爭執)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성(慈聖)께서 갑자기 전실(殿室)에 남아서 친히 창문을 사이에 두고 계시니 신하들이 전도(顛倒)되어 모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먼 지방에서 보고 들으면 어찌 놀라지 않겠습니까? 무릇 아버지에게 과실이 있음에도 이를 간(諫)하여 중지시키지 못하고서 마침내 의리(義理)에 어긋난 데에 귀착(歸着)하게 하는 것은 자식의 허물이라 하겠습니까. 《역경》의 고괘(蠱卦)의 구이효(九二爻)에 이르기를 ‘어머니의 일[蠱]을 주관[幹]함이니 고집[貞]해서는 안된다.’ 하였는데, 정이(程頤)의 전(傳)에 이르기를, ‘자식은 어머니에게 마땅히 유순함으로써 보좌 인도하여 의리에 맞게 하여야 하는데, 순히 하지 못하여 패고(敗蠱)를 초래하는 것은 자식의 죄이다.’ 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옳은 말이므로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 마땅히 가슴에 새겨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殿下)께서는 ‘어머니의 일을 주관함이니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깊이 생각하시어 일이 의리에 맞고 이치에 해로움이 없도록 처리하시면, 자성(慈聖)께서 허물을 두 번 저지르지 않으시는 덕(德)이 장차 태임(太妊)·태사(太姒)의 아름다운 덕과 같이 될 것입니다. 신이 김우명(金佑明)의 상소(上疏)를 보니 맹자(孟子) 어머니의 가르침에 ‘이간(離間)하는 말을 막으라.’는 등의 말이 있기에 신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전하의 모자(母子) 사이는 자애(慈愛)뿐이고 효성(孝誠)뿐이니 혐의(嫌疑)하고 이간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생기겠습니까? 설사 참소하고 적해(賊害)하는 사람이 있어 맑은 풍화(風化)를 교란(交亂)하려 한다면, 마땅</p> | <p>○朔己丑/副提學洪字遠上疏曰：</p> <p>臣聞《易》之《家人》之象曰：“女正位乎內，男正位乎外。”夫男位在外，女位在內。是以婦人正位乎內，不預外事，無專制之義，有三從之道。苟違是道，有違於《大易》內外之義矣。楨、樞等汚蠱之行，實近古所未有之變。治之苟失其律，大臣當陳之，臺官必執之。而慈聖粹御殿室，親自隔窓，臣隣顛倒，竝失所措，遠外瞻聆，安得不駭也？凡親有過舉，不能諫止，而終爲非義之歸，則子之過也。在《易》蠱之九二曰：“幹母之蠱，不可貞。”程頤傳之曰：“子之於母，當以柔巽輔導，使得於義，不順而致敗蠱，則子之罪也。”至哉，言乎！斯實事親者之所當服膺而勿失者也。願殿下深惟幹蠱不可貞之義，使事合於義，無害於理，則慈聖不貳過之德，將與妊、姒</p> |
|--|---|--|

| | | |
|--|---|--|
| | <p>히 전하에게 들어와 고하여 엄하게 국문(鞫問)하여 교란을 만들어낸 죄를 바로잡게 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문자(文字)에 표시하고 소장(疏章)에 나타내어 사람들의 귀에 들리고 눈에 뜨이게 하여 먼 곳이나 가까운 곳까지 전파(傳播)함으로써 양궁(兩宮) 사이에 참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해야 하겠습니까? 가만히 국구(國舅)를 위하여 그가 깊이 생각지 못했음을 애석하게 여깁니다.”</p> <p>하였다. 답하기를,</p> <p>“내가 아직 어린 나이로 자성계 성의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니, 깊이 부끄러움만 더할 뿐이다.”</p> <p>하였다. 홍우원(洪宇遠)은 젊을 때 조행(操行)으로 이름이 났었고, 효종조(孝宗朝)에 바른 말을 올려서 죄를 받았는데, 그것이 청의(淸議)에 높이 인정(認定)되었기에 송시열(宋時烈) 등이 전조(銓曹)의 장(長)으로 있을 적에 옥당(玉堂)에 끌어들였다. 그러나 조경(趙綱)이 상소(上疏)를 올리자 홍우원이 잇달아 일어나서 윤선도(尹善道)를 편들어 당시의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였었다. 이 때에 이르러 윤휴(尹鑄)가 당(唐)나라 장간지(張柬之)에게 비하여 급히 등용(登用)하기를 주청(奏請)하였다. 홍우원이 아직 이르지 않았을 적에 사람들은 그가 본래 바른말 하기로 이름이 있었기에 논의(論議)함이 응당 기울어지고 위험한 데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이르게 되자 쌓인 분한(忿恨)이 마음속에 있었기에 허목(許穆)·윤휴 등과 어울려서 자기들끼리의 참혹한 의론을 내세워 주장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제 이 상소(上疏)를 올림에 이르러서는 이수경(李壽慶) 등의 선창(先倡)이 되었다. 서인(西人)들이 벼슬에서 물러간 이가 많았던 일로써 말하기를,</p> | <p>匹休矣。 臣見金佑明之疏， 有孟母之教， 格於間言等語， 臣不勝駭然。 殿下母子之間， 止慈止孝， 嫌間何自而生？ 設有讒賊之人， 欲爲交亂， 清風所當入告殿下， 嚴加鞫問， 以正交構之罪， 斯乃可矣。 何爲形諸文字， 著之章疏， 播於耳目， 傳於遠近， 有若兩宮之間真有是事者也？ 竊爲國舅， 惜其不深思也。</p> <p>答曰：“予以冲年， 誠意不盡之致， 深加慙惡焉。” 宇遠少以操行名， 孝宗朝以直言獲罪， 大爲淸議所許。 宋時烈等長銓， 引入玉堂， 及趙綱上疏， 宇遠繼起， 右善道， 見斥於時。 至是， 尹鑄比之張柬之， 請急用。 宇遠未至， 人以其素有直名， 謂論議不應， 至傾險。 及至， 積忿在中， 與穆、鑄等， 合自中慘刻之論， 無不主張， 至上此疏。 爲壽慶等之先倡， 以西人多退去， 常曰：“西人見癸亥年， 故如是， 而豈每每然乎？” 其狠毒如此。 初， 顯廟天性篤友， 無他貴介， 親愛三福， 出入非時， 或令射的、或侍曲宴， 朝夕在側， 末年乘間浸及時事。 淸嗜酒無行而已，</p> |
|--|---|--|

| | | |
|--|--|---|
| | <p>“서인들이 계해년(498)의 일을 보았던 까닭으로 이같이 하지만 어찌 매양 그렇게 되겠는가?”</p> <p>하였으니, 그의 아주 잔인(殘忍)한 것이 이와 같았다. 전에 현종(顯宗)께서는 천성(天性)이 우애(友愛)가 돈독하였는데 다른 친척이 없어서 삼복(三福)을 친애하고 사랑하여 어느 때든 드나들게 하여 혹은 활쏘는 데 데려가고 혹은 곡연(曲宴)에 모시도록 하여 아침 저녁으로 옆에 있게 하였기에 말년(末年)에는 조용한 틈을 타서는 시사(時事)에 대하여 말하기도 하였다. 연(漣)은 술마시기를 좋아하여 소행이 없을 뿐이지만, 정(楨)과 남(楠)은 몰래 좋지 못한 마음을 품고 후한 뇌물을 가지고 가만히 내궁(內宮)에게 잘 보이려 하였다. 그러기에 궁내에서 약간이나마 일을 맡은 자들은 복창궁(福昌宮)이나 복선궁(福善宮)의 비단옷을 입지 아니한 자가 없었다. 또는 재화(財貨)를 가지고 자주 임금의 측근(側近)에게 뇌물을 바쳐 마음을 기울여 받들고 대접했으며 초당(韶堂)과 나인(內人)은 그 뇌물을 좋아하여 염탐해 주는 이가 많았다. 그러기에 비록 집에 있는 날이라도 임금의 일동 일정(一動一靜)을 손발 같이 보고해 주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의 외삼촌 오정창(吳挺昌) 등도 밤마다 모여서 모의(謀議)를 하며 기회를 기다렸다. 그러기에 간사하고 더러운 무리들이 그 문(門)에 쫓아가 아부하게 되니, 외간(外間)에서는 대부분 이를 매우 근심하였다. 임금이 춘궁(春宮)에 있었을 적에 정(楨) 등이 매양 모시고 지냈다. 내시(內侍) 김현(金鉉) 등이 춘궁 안에 있는 강석(講席)에 참여하기를 권하였기에 정 등이 김현과도 서로 깊은 관계를 맺었다. 임금이 즉위(即位)함에 이르러는 민간(民間)에서 뜯소문이 많았다. 김현이 그의 무리 조희맹(趙希孟)과 더불어 임금의 측근에 함께 모시어서 추기(樞機)를 맡았고, 남(楠)은 대전관(代奠官)으로서 항상 빈전(殯殿)에 있었기에 매양 날이 어두워진 뒤에는</p> | <p>楨、楠陰懷禍心，潛以厚賂行媚于內宮人。稍任事者，無非衣福昌、福善宮錦衣者。又以貨財，數遺近習，傾心承接，韶璫與內人悅其餉，多爲中訶。雖其在家之日，君上一動一靜，無不飛報。舅挺昌等，昏夜聚謀伺隙，而邪人穢夫，趨附其門，外間多深憂之。上在春宮，楨等每娛侍，闖人金鉉等，勸講於內，楨等又深相締結。及上即位，民間喧言，鉉與其黨趙希孟，共侍左右，典樞機。楠以代奠官，常在殯殿，每於昏後，入至御次，與上共臥起，侵曉乃出，與二闈合。鉉、希孟竝陰賊巧慧，而鉉頗解文字。又有阿保尹尙宮，仁廟宮人也。爲趙賊所讒，黜居麟坪宮。孝廟爲世子時，嘗進膳於仁廟，趙賊抽銀籤子，插魚湯曰：“銀入湯，色變異甚矣。”是時，禍機甚急，尹氏適入宮進曰：“魚湯乘熱淬銀，色無不變。請以他魚試之於前。”仁廟卽令試之，果然。於是仁廟覺悟，東宮得無事。孝廟以尹氏爲忠直，卽位後，卽召入內。嘗命元孫生，必以爲保母。尹氏敏慧，博洽書史，然性陰險。先王嘗進御羊肉，多與公主，</p> |
|--|--|---|

| | | |
|--|---|--|
| | <p>임금이 계신 곳에 들어가서 임금과 더불어 함께 눕고 일어나고 하다가 새벽 녘에야 궁에서 나왔다. 그래서 김현·조희맹 두 내시와 결합(結合)하였다. 김현 과 조희맹은 모두 음흉(陰凶)하고 간사한 꾀가 있었으며 더욱이 김현은 자못 문자를 알았다. 또 아보(阿保) 윤상궁(尹尙宮)이 있었으니 그는 인조(仁祖)의 궁인(宮人)이었으나 조적(趙賊)502) 의 참소[讒]를 받고서 내침을 당해 인평 궁(麟坪宮)에 살았다. 효종(孝宗)이 세자(世子)로 있을 때에 일찍이 인조에게 수라를 올렸다. 그때에 조적이 은으로 된 첩자(籤子)를 뽑아서 생선탕[魚湯] 에 쫓으면서 말하기를,</p> <p>“은이 탕(湯)에 들어가자 빛깔이 변하니 매우 괴이(怪異)하다.”</p> <p>하였다. 이때 화란이 생길 조짐이 아주 급박하였는데 윤씨가 마침 궁에 들어 왔다가 이를 보고 말하기를,</p> <p>“열(熱)을 받은 생선탕에 담그면 은의 빛깔이 죽어서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다른 생선탕으로 앞에서 시험하여 보십시오.”</p> <p>하였다. 인조가 곧 그대로 시험하게 하였더니 과연 그러하였다. 이에 인조께 서 깨달았기에 동궁(東宮)이 무사(無事)하게 되었다. 효종은 이러한 윤씨를 충 직(忠直)한 자로 여겼기에 즉위(即位)한 뒤에 궁내로 불러들였으며, 일찍이 명 (命)하기를,</p> <p>“만일 원손(元孫)을 낳게 되면 반드시 보모(保母)로 삼을 것이다.”</p> <p>하였다. 윤씨는 민첩하고 슬기로워서 서사(書史)를 널리 통달하였으나 성품이</p> | <p>而少與上。 以上未經痘， 羊肉甚熱， 慮其有傷， 而公主雖愛， 而不重， 故多 與之。 尹氏從後言：“羊肉亦有得食者 矣。” 先王聞而怒， 語慈聖曰：“此人， 他日必離間君母子， 欲重罪之。” 慈聖 救解而止。 尹氏久在麟坪宮， 楨等兄 弟皆其所撫育， 而楨等事尹氏盡誠， 故 情愛甚篤。 至是， 尹氏爲上所信重， 專摠內政。 柎及尹氏一心， 與鉉等相 爲表裏， 謀易朝政， 盡去舊臣， 引用南 人， 以成其勢。 日夜譽南讒西， 至曰： “某可爲某官， 某可置某罪。” 恐慈聖 知之， 每爲欺隱。 柎深沈有智數， 上 在沖年， 爲其所眩惑。 始， 閔維重論 戚里隧道事， 孝宗深慮易世之後， 爲山 人禍階， 嘗教慈聖曰：“爾叔明似無可 憂， 【指金佐明。】 爾父必有報復之心， 汝須知之。” 至是， 慈聖思孝廟之教， 且知孝廟待宋時烈誠禮， 故常救時烈， 柎等患之， 協謀交構。 先王寢疾， 憂 上沖弱， 託於諸公主曰：“世子年幼， 惟恃姊妹， 善爲指導。” 及是， 二公主 畏禍， 不敢深言， 獨寅平公主無夫家連 累之憂， 扶上涕泣極諫， 上不納。 柎 等聞之， 大怒詈喝。 自後， 諸公主惴</p> |
|--|---|--|

| | | |
|--|---|---|
| | <p>음험(陰險)하였다. 선왕(先王)께서는 진어(進御)하시던 양고기를 공주(公主)에게 많이 나누어 주고 임금에게는 조금만 준 적이 있었다. 그것은 임금이 그때 아직 천연두(天然痘)를 앓기 전이라서 열이 무척 많은 양고기는 혹 해로움이 있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이고, 공주는 비록 사랑스럽지마는 중하지는 않았던 까닭으로 많이 준 것이다. 그런데 윤씨가 뒤에서 말하여 주어 양고기를 얻어 먹은 것이 있었다. 선왕께서 이러한 것을 듣고 성내에 자성(慈聖)에게 말하기를,</p> <p>“이 사람은 훗날에 반드시 임금의 어머니와 자식 사이를 이간(離間)질할 것이오.”</p> <p>하여, 중한 죄를 주려 하였으나 자성께서 구해 주어서 처벌을 그만두었다. 윤씨가 오랫동안 인평궁(麟坪宮)에 있었기에 정(楨) 등 삼형제는 모두 그가 어루만져 키웠으므로 정 등은 윤씨를 지성껏 섬겼고, 그러기에 정(情)과 사랑이 매우 두터웠다. 이때에 이르러 윤씨는 임금이 믿고 중하게 여기자 내정(內政)을 오로지 총관(總管)하였다. 그래서 남(柟)과 윤씨는 한마음이 되었고, 김현(金鉉) 등과는 서로 안팎이 되어서 조정(朝廷)의 정체(政體)를 바꾸기를 모의하여 옛 중신(重臣)들을 모두 제거하고 남인(南人)을 끌어들이어서 그 세력(勢力)을 이루려고 밤낮으로 남인(南人)을 칭찬하고 서인(西人)을 참소하였으며, 심지어는,</p> <p>“아무개는 아무 벼슬을 시켜야 하고 아무개는 아무 죄를 주어야 한다.”</p> <p>고까지 말하였다. 그러나 자성(慈聖)이 이 일을 알까 두려워서 매양 속이고 숨기었다. 남(柟)은 침착하고 슬기가 있었고 임금은 어린 나이므로 그에게 현</p> | <p>慄, 不敢出入。柟等進言: “先王欲罪時烈。” 慈聖明其不然, 而不能得。慈聖一日夢見先王, 震怒責上曰: “明年二月, 士禍大起。” 驚悟, 益憂之。至因山後, 柟始出, 與大將柳赫然, 乘昏相從, 諷御營大將申汝哲速令解兵權, 晝夜奔走, 汲汲如狂, 蹤跡詭秘, 形勢大張, 人莫測其所爲, 而群不逞之徒, 多陰屬心於柟者。崇善君澂等密啓慈聖, 請謹上水刺, 慈聖與中宮, 必先嘗而後乃進。柟惡慈聖在上, 不得盡如其計, 陰教卜者入宮言: “慈聖姓金, 金克木, 與上同居一宮不吉。” 謀欲遷之他宮, 宮中只知有柟及尹尙宮, 而不知有上及慈聖也。宦官徐後行與其徒數人約曰: “何可以由宦者亡國之語, 遺後世乎?” 共伺鉉等與柟等相通之跡, 而與共上下。於是朝野洶洶, 以爲朝夕必有變。金佑明始與柟等, 共斥宋時烈, 已而, 見柟等意趣非常, 內外黨與已成, 始驚悔涕泣。楨使燕, 還渡江, 中路遺柟書, 誤傳于佑明家, 其書有一事圖之, 二事未圖, 今須入來之語, 佑明見之甚訝。繼聞柟與鉉書, 請差使臣, 鉉白上, 差定吳挺緯。又</p> |
|--|---|---|

| | | |
|--|---|---|
| | <p>혹(眩惑)되었다. 처음에 민유중(閔維重)이 척리(戚里)의 수도(隧道)에 대한 일을 논하였을 적에 효종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 산인(山人)503) 이 화(禍)를 당할까 깊이 염려하시어 일찍이 자성(慈聖)에게 교시(敎示)하기를,</p> <p>“너의 숙부(叔父)는 총명하니 염려될 것이 없을 듯하지만, 【김좌명(金佐明)을 가리킨다.】 너의 아버지는 반드시 보복(報復)할 마음을 가질 것이니 너는 이를 알아야 한다.”</p> <p>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자성께서는 효종의 교시를 생각하시고 또 효종께서 송시열을 성심과 예절로써 대우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송시열을 구하여 보살피려 하였다. 남(柁) 등이 이를 근심하여 온갖 모의(謀議)로 죄를 없으려 하였다. 선왕(先王)께서 병으로 누웠을 때 임금의 어리고 약한 것을 근심하여 여러 공주(公主)들에게 부탁하기를,</p> <p>“세자의 나이 어리니 오직 너희 자매(姊妹)들만 믿는다. 너희들이 잘 도와 주어야 한다.”</p> <p>하였다. 그러나 이때를 당하여 두 공주는 화(禍)가 미칠 것이 두려워서 감히 간절히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는데 유독 인평 공주(寅平公主)만은 남편의 집이 연루(連累)될 근심이 없었다. 그래서 임금을 붙들고 চে읍(涕泣)하면서 극력(極力) 간하였으나 임금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남(柁) 등이 이 말을 듣고 크게 성내어 꾸짖고 욕하였다. 이 뒤로부터 여러 공주들은 겁을 먹고 몸조심을 하여 감히 대궐에 드나들지 못하였다. 남 등이 임금께 아뢰기를,</p> <p>“선왕(先王)께서 송시열에게 죄를 주려고 했습니다.”</p> | <p>急欲收攬兵權，說右明曰：“大監之姪，可合吏判，如我形貌好者，可合爲兵判。”尹鑄又欲變易宿衛。於是佑明事事驚疑，謀欲去柁等，見上溺愛，無可奈何。楨卽佑明姪女婿，佑明子爲楨姪婿，而乃發楨、榿淫亂事。楨等家中多美人，而必與內人相奸。佑明畏其陰懷兇計，欲行霍顯之謀於杯勺也，白慈殿，言于上，請斥退之，上不聽。佑明憂懼不知所爲，乃露章言之，其所謂格於間言者，蓋指尹尙宮也。始，楨等下獄，柁入獄謂二兄曰：“誰敎爲偏論乎？”尹尙宮大呼於上前曰：“何爲殺此曖昧之人乎？”上之放釋楨等判付，卽柁所草而密上者也。穆、鑄、夏鎮、愈等，知上惡佑明請對，將構陷佑明以誣上之罪。時，佑明將大敗，柁等將益盛，國事將不測。慈殿之慟哭諭群臣，以內間事至急故也。於是楨、榿被竄，南人稍沮，柁等謀少解。鑄忿忿言于上曰：“宜管束慈聖動靜，慎無如此舉措。”宇遠亦鑄黨，故譏斥慈聖，深咎佑明，實憾楨、榿之得罪也。</p> |
|--|---|---|

| | | |
|--|--|--|
| | <p>하니, 자성(慈聖)이 그렇지 않았음을 밝히려고 했으나 하지 못했다. 자성이 어느날 꿈에 보니 선왕(先王)께서 진노(震怒)하시어 임금을 꾸짖으며 말하기를,</p> <p>“내년 2월에 사화(士禍)가 크게 일어날 것이다.”</p> <p>하였다. 놀라 깨어서는 크게 더욱 근심하였다. 인산(因山)을 마친 뒤에 남(柁) 등이 비로소 나와서 대장(大將) 유혁연(柳赫然)과 더불어 어두운 밤을 타 서로 만나서 어영 대장(御營大將) 신여철(申汝哲)을 풍유(諷諭)하여 빨리 병권(兵權)을 해면(解免)하게 하는 등 밤낮으로 분주(奔走)하여 조금 조금히 서둘기를 마치 미친 것 같았으며, 종적(蹤跡)이 속임수가 많고 비밀스러워서 형세가 크게 떨치기에, 사람들은 그의 하는 것을 헤아려 알 수가 없었지만 여러 불량(不良)한 무리들은 가만히 남(柁)에게 마음으로 붙좃는 자가 많았다. 송선군(崇善君) 이징(李澁)이 자성에게 밀계(密啓)하여 올리는 수라[水刺]를 조심하기를 청하니, 자성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반드시 먼저 맛을 본 뒤에 그제야 임금께 올렸다. 남(柁)은 자성(慈聖)이 위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자기의 계책(計策)대로 되지 못할 것을 미워하여 가만히 점장이를 시켜 궁(宮)에 들어와서 말하게 하기를,</p> <p>“자성(慈聖)의 성이 김(金)이니 쇠는 나무를 이긴다[金克木]. 그러므로 자성(慈聖)이 임금과 함께 한 궁에 사는 것은 길(吉)하지 못하다.”</p> <p>하는 말을 퍼뜨려서 자성을 다른 궁으로 옮기게 할 것을 도모(圖謀)하였다. 그때의 궁중에서는 다만 남(柁)과 윤상궁의 존재만 알았을 뿐, 임금과 자성</p> | |
|--|--|--|

| | | |
|--|---|--|
| | <p>(慈聖)의 존재는 알지 못하였다. 환관(宦官) 서후행(徐後行)이 그의 무리 두서너 사람과 약속하기를.</p> <p>“어찌 환관(宦官)들 때문에 나라를 망쳤다는 말을 후세(後世)에 전하게 하겠는가?”</p> <p>하고, 이들은 함께 김현(金鉉) 등이 남(楠) 등과 더불어 서로 통하는 자취를 살펴서 그들과 함께 왔다갔다 하니, 이에 조정과 민간에서 모두 흥흥(洶洶)하여 조석(朝夕) 사이에 변고(變故)가 일어날 것으로 여겼다. 김우명(金佑明)은 처음에는 남(楠) 등과 더불어 함께 송시열(宋時烈)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얼마 아니되어 남(楠) 등의 마음 먹음이 상도(常道)에 벗어나 안팎으로 당파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고는 비로소 놀라고 뉘어져서 체읍(涕泣)하였다. 정(楨)이 연경(燕京)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압록강을 건너오면서 중로(中路)에서 남(楠)에게 보낸 편지가 김우명의 집으로 잘못 전하여졌다. 그 편지의 내용에 ‘한 가지 일은 도모(圖謀)하였지만 두 가지 일은 아직 도모하지 못하였기에 모름지기 들어와야만 한다.’는 말이 있었다. 김우명이 이를 보고 몹시 의아하였는데, 잇달아 들리는 소식에는 남(楠)이 김현에게 편지를 보내어 사신을 차출할 것을 주청(奏請)하게 하자, 김현이 임금께 아뢰어서 오정위(吳挺緯)를 차정하였다는 것이다. 또 빨리 병권(兵權)을 모아 잡으려고 김우명(金佑明)을 달래어 말하기를,</p> <p>“대감(大監)의 조카는 이조 판서(吏曹判書)가 적임(適任)이고, 나와 같이 풍채가 좋은 사람은 병조 판서(兵曹判書)를 시켜야 한다.”</p> <p>하였다. 윤휴(尹鑄)도 왕궁의 숙위(宿衛)를 바꾸려 하였다. 이에 김우명은 일</p> | |
|--|---|--|

마다 모두 놀라고 의심스러워 남(柟) 등을 제거(除去)할 생각을 가졌으나, 임금(金)이 너무나 사랑하고 있음을 보고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정(楨)은 곧 김우명(金佑明)의 조카 사위이고 김우명의 아들은 정(楨)의 조카 사위가 되지만, 정(楨)·연(漣)의 음란한 일을 고발(告發)하였다. 정(楨) 등의 집안에는 미인(美人)이 많았는데도 반드시 궁녀들과 더불어 서로 간통하였다. 김우명은 그들이 음흉한 계책을 품고서 곽현(霍顯)이 배작(杯勺)에 꺾하던 일(504)을 행할까 두려워하여 자전(慈殿)에 아뢰어 임금에게 말하여 물리치기를 간청하였다. 그러나 임금이 이를 듣지 아니하니 김우명이 근심하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이에 장소(章疏)에 드러내 말하였다. 그 글에 이간하는 말을 막아야 한다고 한 것은 대개 윤상궁을 가리킨 것이다. 처음에 정(楨) 등이 옥에 갇혔을 적에 남(柟)이 옥에 들어가서 두 형에게 말하기를,

“누가 시켜서 이따위 치우친 논소(論疏)를 올렸는가?”

하였고, 윤상궁은 임금의 앞에서 크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애매(曖昧)한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까?”

하였다. 임금이 정(楨) 등을 석방(釋放)한 판부(判付)는 곧 남(柟)이 초(草)를 잡아 비밀히 임금께 올린 것이다. 허목(許睦)·윤휴(尹鑄)·이하진(李夏鎭)·권유(權愈) 등은 임금이 김우명(金佑明)을 싫어하는 줄을 알고 청대(請對)하였는데, 이는 김우명이 임금을 속였다는 죄로써 뒤집어 씌우려 한 것이다. 그때에 김우명은 크게 몰락하게 되고 남(柟) 등은 더욱 강성하게 되었으니 나라의 일이 장차 어떻게 될지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에 자전(慈殿)께서 통곡(慟哭)하면서 여러 신하들을 깨우쳤으니, 궁안의 일이 매우 급박(急迫)하여졌기 때문

| | | |
|--|--|--|
| | <p>이다. 이에 정(楨)과 연(漣)은 귀양을 가게되고 남인(南人)의 세력이 조금 꺾여져서 남(南) 등의 모의(謀議)가 조금 해이(解弛)해졌다. 이에 윤희가 분하게 여겨 임금에게 아뢰기를,</p> <p>“자성(慈聖)의 동정(動靜)을 마땅히 관속(管束)하여 이와 같은 거조(舉措)가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p> <p>하였다. 홍우원(洪宇遠)도 또한 윤희의 당파인 까닭으로 자성(慈聖)을 비난 배척하고 김우명을 매우 미워했으나, 이는 참으로 정(楨)과 연(漣)이 죄를 얻은 것을 원망하였기 때문이다.</p> | |
| <p>숙종 3권, 1년(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5월 16일(갑술) 7번째기사</p> | <p>청(淸)나라 사람 다섯 명이 두만강(豆滿江)가에 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한인(漢人)으로서 영고탑으로 옮겨왔는데 너무나 굶주려서 거의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밥을 빌어먹기 위하여 여기에 왔다.”</p> <p>하였다. 회령 부사(會寧府使)가 군관(軍官)을 시켜 한 말 남짓한 쌀을 가져다 주며 즉시 돌아가라 하고는 그들이 영고탑(寧固塔)으로 옮겨온 까닭을 물으니, 그들이 답하기를, “영고탑(寧固塔)의 갑군(甲軍)으로서 군공(軍功)이 있으면 예(例)에 따라 인구(人口)를 상(賞)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왕(吳王)652)의 군사가 일어난 뒤로부터는 한인(漢人)이라 이름하면 모두 죽이려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가만히 조선에 의탁(依托)하고 싶지만 조선에서 거절함이 이와 같아서 처음 계획이 허사(虛事)로 돌아갔습니다.” 하였다. 또 영고탑 가운데 갑군(甲軍)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금년 정월에 갑군 1천 명이 초출(抄出)되어 대장(大將)이 영솔(領率)하여 갔었고, 2월에 또 3백 인을 초출하여 갔으며, 3월에 또 2백 인을 초출하여 갔으므로, 남아 있는 군사는 늙고 약한 자 겨우 3백여 인 뿐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오왕(吳王)의 군사가 대부분 몽고(蒙古)와 연합하여 청(淸)나라 군사를 여러</p> | <p>淸人五名來到豆滿江邊言：“我是漢人，移來寧固塔，阻飢濱死，爲乞食到此。”云。會寧府使令軍官，持給斗米，令卽歸，且問移來寧塔之故，答曰：“寧塔甲軍有軍功，則例賞人口。自吳王兵起，名漢人則皆將戮之，故竊願託朝鮮，而阻擄如此，初計歸虛。”又問寧塔甲軍多小，答曰：“今年正月，甲軍一千人抄出，大將領去，二月又抄三百人，三月又抄二百人，留兵老弱僅三百餘人。”又言：“吳王軍多，與蒙古合，屢敗淸兵，恢復必在秋前。”問：“蒙古屬淸國，豈與三桂合？”答曰：“蒙古初隨淸兵，淸敗，投吳王。他蒙古亦皆背淸，欲投吳王耳。”又問：</p> |

| | | |
|--|--|---|
| | <p>차례 패퇴시켰으니, 중원(中原)을 회복하는 일은 반드시 가을 전에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그래서 묻기를,“몽고는 청나라에 복속(服屬)하고서 어찌 오삼계(吳三桂)와 연합하였는가?”하니, 그가 대답하기를,“몽고가 처음에는 청나라 군사를 따랐지만 청나라가 패전하여 오왕에게 투항(投降)하자 다른 몽고도 모두 청나라를 배반하고 오왕에게 투항하려고 합니다.”하였다. 다시 묻기를,“청나라 군사가 강성한데 어찌해서 패전했는가?”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오왕이 부교(浮橋)를 만들어 놓고 흙으로 그 위를 덮어서 마치 군사와 말이 가고 오고하는 모양이 약한 것같이 보이게 해서 청나라 군사가 이 꾀에 빠져 부교를 건너가 서로 싸우다가 부교가 무너져서 그만 패전하였습니다.”하였다. 그래서 다시 묻기를,“청나라 군사가 패전하였으니 혹 우리에게 구원병(救援兵)을 요청하겠는가?”하니, 그가 대답하기를,“영고탑의 아동(兒童)들로 하여금 그 남쪽의 하루 길 거리인 백현(栢峴)을 지키게 하여 조선을 방비하고 있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조선 사람은 거짓이 많기에 구원병을 요청할 수가 없다.’ 합니다.”하였다. 다시 묻기를,“북경(北京)이 패전하면 황제는 어느 곳으로 돌아갈 것인가?”하니, 그들이 돌을 가지고 땅을 치면서 말하기를,“그러한 때를 당하면 우리도 황제를 때려죽이겠소.”하였다. 그들의 이름을 물으니 대답하지 않고 죽을 쑤어서 요기(療飢)를 시켰더니 절하여 사례하고 가버렸다.</p> | <p>“清兵盛，何爲敗？” 答曰：“吳王造浮橋，用土覆之，如軍馬往來狀示弱誘之，清陷術中，度橋相戰，橋崩而敗。” 又問：“清兵敗則或請兵於我乎？” 答曰：“使寧固塔兒童，戍迤南一日程栢峴，防朝鮮。且清人皆言：‘朝鮮人多詐，不可請兵。’云。” 又問：“北京敗，皇帝安歸？” 以石扣地曰：“當此時，我亦可打殺。” 問其名，不答。 炊粥療飢，拜謝而去。</p> |
| <p>숙종 3권, 1년(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5월 22일(경진) 6번째기사</p> | <p>서부(西部)의 양녀(良女) 영정(英正)이 스스로 진술(陳述)하기를, “성상께서 탄생하신 지 7일 안에 궁에 들어와서 젓을 먹여드리기를 70여 일을 하였습니다.” 하고, 한(漢)나라 선제(宣帝) 때에 곽징경(郭徵卿)의 일을 인용하여 말을 하였다. 이 일을 예조(禮曹)에 내리니, 예조에서는 분수에 지나치는 일이라 하여</p> | <p>○西部良女英正自陳上誕生七日內，入宮進乳七十餘日，引漢宣帝時郭徵卿事以爲言。 事下禮曹，以僭越，請勿施，上曰：“其功不貲。 令該曹優給米布。” 後，寺婢爭陳進乳功，竝子女免賤者六七人，人病其濫踰。 識者以爲，許穆自陳曾爲建儲疏， 彼賤流不足責</p> |

| | | |
|---|--|--|
| | <p>은혜를 베풀지 말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그의 공이 작지 않다.”</p> <p>하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쌀과 포(布)를 넉넉히 주게 하였다. 이 일이 있는 뒤로 시비(寺婢)들이 젓을 먹여 드렸다는 공을 다투어 말하여서 그들의 아들 딸까지 면천(免賤)한 자가 예닐곱 사람이나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 분수에 지나친 것을 근심하였다. 식자(識者)들은 허목(許穆)이 일찍이 세자를 세우자는 소를 올렸다고 스스로 말하였으니, 저 천한 무리들은 나무랄 것도 못된다고 말하였다</p> | <p>也。</p> |
| <p>숙종 4권, 1년(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윤5월 1일(무자) 3번째기사</p> | <p>문신(文臣)의 당상관(堂上官)으로서 시종직(侍從職)에 있는 사람의 아버지 이초로(李楚老) 등 7인에게 통정 대부(通政大夫)를 가자(加資)하였고, 전(前) 판서(判書) 남용익(南龍翼) 등 30여 인의 어머니에게는 먹을 물건을 차등있게 하사하였다. 그리고 경외(京外)를 통틀어서 귀한 이나 천한 이를 가리지 않고 나이 80세 되는 이는 계급(階級)을 더하여 준 것이 모두 1만 수천 인이나 되었는데, 홀로 전(前) 대사간(大司諫) 이규령(李奎齡)의 아버지 이휘조(李徽祚)만은 이규령(李奎齡)이 빈청(賓廳)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율허(允許)되지 아니하였다.</p> | <p>加文臣堂上侍從父李楚老等七人通政，賜前判書南龍翼等三十餘人母食物有差。通京外無論貴賤，以年八十加階，竝一萬數千人。獨前大司諫李奎齡父徽祚，以奎齡參賓廳會啓，不許。</p> |
| <p>숙종 4권, 1년(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윤5월 9일(병신) 2번째기사</p> | <p>명(明)나라 사람 한등과(韓登科)·유태산(劉太山)·김장생(金長生) 등이 상언(上言)하여 양자(糧資)를 얻고자 말하기를,</p> <p>“〈신들은〉 모두 중원(中原)713) 에서 표령(飄零)해 온 사람으로서 본국(本國)에 붙어서 산 지 이미 40여 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큰 흉년을 만나서 구학(溝壑)에 떨어져 죽을 것이 박두(迫頭)하였습니다. 신(臣) 한등과(韓登科)는 나이 80세이고, 유태산(劉太山)은 나이 59세이며, 김장생(金長生)은 나이 60</p> | <p>大明人韓登科、劉太山、金長生等上言，願得糧資曰：“俱以中原飄零之人，寄托本國，已過四十餘年。值此大無，溝壑迫頭。臣登科年八十，太山五十九，長生六十，異國之人，日薄西山。登科，壬辰征倭時備禦韓宗功之孫，豈無微勞之可紀乎？”下戶曹。戶曹請</p> |

| | | |
|---|---|--|
| | <p>세입니다. 이국(異國)의 사람으로서 해가 서산(西山)에 임박하였습니다. 한등과는 임진년(714)의 왜(倭)를 정벌했을 적에 비어(備禦)에 가담했던 한중공(韓宗功)의 손자입니다. 어찌 기록할 만한 조그마한 공로(功勞)가 없다고 하겠습니까?”</p> <p>하매, 호조(戶曹)에 내렸다. 호조에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참작하여 내려 주기를 청하니, 임금(君)이 윤허하였다.</p> | <p>酌給衣食之資，允之。</p> |
| <p>숙종 4권, 1년(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6월 21일(무인) 2번째기사</p> | <p>자전(慈殿)이 청풍 부원군(淸風府院君)의 상(喪)을 당한 뒤로는 미음마저도 절대로 들지 않아도 기식(氣息)이 엄엄(奄奄)하였다. 약방(藥房)에서 문후(問候)를 드리니, 자전(慈殿)이 언문 글로 답하기를,</p> <p>“살아서 쓸모가 없고 죽어야 할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 있는 것이 고통스럽다. 이제 나라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들 하지마는, 내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나라에 유익함이 있다면 어찌 한갓 애통(哀痛)한 것만을 생각하여 이렇게 하겠는가? 차마 들을 수 없는 욕(辱)이 선왕(先王)에게 미치었고, 나로 말미암아 주상(主上)의 성덕(聖德)에 해로움이 많구나. 이제까지 살아 있는 탓으로 차마 이와 같은 말을 들은지라 오직 속히 죽기로 정하였는데, 또 망극(罔極)한 변을 만났으니 어떻게 마음을 정해야 할런지 모르겠다. 정신이 혼미하여 오직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고서 죽기로 정하였다.”</p> <p>하였다. 좌우(左右)에서 이 글을 보고 얼굴빛을 잃었다. 허적(許積)이 말하기를,</p> <p>“차마 들을 수 없는 욕(辱)’이라 하신 것은 반드시 박헌(朴憲)의 말로 연유한 것이니, 이놈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p> | <p>○慈殿自淸風喪後，絕不進粥飲，氣息奄奄。藥房問候，慈殿以諺書答曰：“生無用，死爲可之人，以至今生存爲痛。今以顧見國事爲言，予存而少有益於國，則何可徒思哀痛而爲此乎？不忍聞之辱，及於先王，由予而有害於主上聖德多矣。以至今生存之故，忍聞如此之言，惟以速死爲定。又遭罔極之變，不知何以定懷。精神昏迷，惟以閉口不言，而死爲定矣。”左右見書失色。許積曰：“不忍聞之辱，必由朴憲之說，以此漢而有此事。”都承旨李弘淵勸積入侍陳達，積遂入閣，托疾還出。積雖歸罪於憲，時群奸素怨不得志於先朝，卑陵先王，誣以昏弱。始壽至於做出犬戎之言，終成受制強臣之誣。慈教不忍聞之辱，蓋指此，而忍聞如此之言，指憲也。初，慈殿知諸</p> |

| | | |
|---|---|--|
| | <p>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이홍연(李弘淵)이 허적에게 입시(入侍)하여 그 아뢰 것을 권하니, 허적이 드디어 함문(閤門)에 들어갔다가 병을 핑계하고 도로 나왔다. 허적이 비록 박헌에게 죄를 돌리더라도 당시의 못 간사한 무리들은 본래 선조(先朝)에서 뜻을 얻지 못하였음을 원망하여 선왕(先王)을 낮게 보고 능멸하면서 혼약(昏弱)하다고 무망(誣罔)하였다. 오시수(吳始壽)는 견용(犬戎)852)의 말까지 지어냈으며, 마침내는 강한 신하에게 제약을 받았다는 무함(誣陷)을 하기에 이르렀다. 자전(慈殿)의 하교에 ‘차마 들을 수 없는 욕(辱)’이란 대개 이를 가리킨 것이며, ‘차마 이와 같은 말도 들어야 했다.’ 한 것은 박헌의 〈소를〉 가리킨 것이다. 당초에 자전(慈殿)은 여러 공자(公子)853)들이 은밀히 화(禍)를 일으킬 마음을 가졌음을 알고 독병(毒餅)의 변(變)이 있을까 두려워서 임금의 음식(飲食)을 모두 친히 장만하여 가지고 손수 갖다 드렸었다. 그리고 임금이 사특한 자에게 속임당하는 것을 보고 여러번 말씀하였다. 여러 남인(南人)들이 듣고 이를 미워하여 공공연하게 〈자전을〉 모함하고 헐뜯으며 돌아보고 꺼리는 것이 없었으니, 유독 박헌(朴憲) 한 사람만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왕실(王室)이 어리고 미약하여 간사한 도적들이 이를 넘보았다. 다행히 자성(慈聖)의 현명(賢明)함에 힘입어서 간사한 사람들이 그래도 꺼리는 바가 있었기에 국가가 유지해 왔고 사림(士林)도 참화(慘禍)를 면하게 되었다. 기묘년854)의 명현(名賢) 김식(金湜)은 실로 자성(慈聖)의 선조(先祖)가 되니, 자성(慈聖)이 사림(士林)을 구호한 것은 실상 그 원류(源流)의 소자출(所自出)이 있다고 하겠다. 〈자성의〉 언문 글이 바깥에 전파되서, 여항(閭巷)의 부인들까지도 이를 보는 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p> | <p>公子陰蓄禍心，恐有毒餅之變，上所飲食，皆親自備具，手爲之胼胝，以上見欺讒慝，屢爲言。衆南聞而惡之，公肆誣毀，無所顧忌，不獨濫一人爲然也。時，王室幼弱，奸賊睥睨，賴慈聖賢明，奸人猶有所憚，國家得以維持，而士林得免慘禍。己卯名賢金湜，實爲慈聖先祖，慈聖救護士林，實有源流所自。諺書傳播於外，閭巷婦人見者，無不流涕。</p> |
| <p>숙종 4권, 1년(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9월 4일(기축)</p> | <p>옥당관(玉堂官)을 야대(夜對)하고 여러 신하들에게 감·배 한 쟁반을 하사하였다.</p> | <p>○己丑/夜對玉堂官， 賜諸臣梨柿一盤。</p> |

| | | |
|---|---|---|
| 1번째기사 | | |
| 숙종 4권, 1년(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9월 9일(갑오) 1번째기사 | 옥당관(玉堂官)을 야대(夜對)하고, 윤희(尹鑄)를 특별히 명하여 같이 들어오도록 하였는데, 장차 물러가려 하자, 각각 배·감 한 쟁반과 윽무죽[薏苡粥] 한 그릇씩을 내려 주었다. | 甲午/夜對玉堂官。 尹鑄特命同入。 將退，各賜柿梨一盤，薏苡粥一器 |
| 숙종 4권, 1년(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9월 24일(기유) 1번째기사 | <p>사헌부(司憲府)에서 말하기를,</p> <p>“지난번에 사재감(司宰監)에서 포(脯)를 만들 소 13척(隻)을 재살(宰殺)하여 머리·발·내장·갈비·뼈·껍질·기름을 팔기를 허락하고 금하지 말게 하는 일을 본부(本府)에 보고하였는데, 이제 본감(本監)의 하인(下人)들이 정육(正肉)을 훔쳐서 본감 안에서 굽고 삶다가 어수선하게 붙잡혔으니, 일이 지극히 놀랍고 해괴합니다. 청컨대, 중중 과죄(從重科罪)1011) 하고, 입직(入直)한 관원은 먼저 파면한 뒤에 추고(推考)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上)이 하인을 나문(拿問)하고 수금(囚禁)하여 중하게 처벌하도록 명하였다. 고례(古例)에는 비록 열 마리의 소를 잡을지라도 반드시 소 한 마리를 제조(提調)에게 바쳤는데, 윤희는 열 세 마리의 소에 다만 한 마리만 바친 것이 적다고 하여 성을 내어 꾸짖고, 이동규(李同揆)를 부추겨서 나가 금란(禁亂)하여 죄를 없게 하였으며, 내장과 껍질·기름이 백간(白簡)에까지 오르니, 보는 자가 전하여 웃었다. 윤희가 탐오(貪污)의 심함이 재부(宰夫)1012) 와 더불어 소 머리를 닦으면서 사람을 중상(中傷)하니, 사람들이 모두 침을 뱉고 더럽게 여겼다.</p> | ○己酉/憲府言：“頃日，司宰監以造脯牛十三隻宰殺，頭足、內腸、脅骨、皮油，許賣勿禁事，報本府。乃者本監下人，偷取正肉，炮燂於本監之內，狼藉被捉，事極驚駭。請從重科罪，入直官先罷後推。”上命拿問下人，囚禁重處。古例，雖殺十牛，必納牛一頭於提調，而鑄以十三牛，只納一頭爲少，發怒嗔責，嗾李同揆，使出禁亂而構罪。內腸、皮油，至騰白簡，見者傳笑。鑄貪污之極，與宰夫爭牛頭，中傷人，人皆唾鄙。 |
| 숙종 4권, 1년(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 성균관(成均館)에서, 상사례(庠射禮)를 행하였는데 입격자(入格者)가 61인이라고 말하였다. 제주(祭酒) 윤희(尹鑄)의 아들 윤은제(尹殷濟)·윤하제(尹夏濟) 등 | 成均館言：“行庠射禮，入格者六十一人。”祭酒鑄子殷濟、夏濟等，亦參是 |

| | | |
|---|--|---|
| <p>14년) 9월 27일(임자) 2번째기사</p> | <p>도 이 모임에 참여하였다. 윤희가 소 몇 마리를 잡고 술 10곡(斛)을 빙게 하여, 윤희와 홍우원(洪宇遠)이 시관(試官)이 되고 허목(許穆)을 손님으로 맞이하여 즐겁게 술을 마시고 파하였다. 처음에 윤희가 사례(射禮)를 행할 것을 청하고, 날마다 무부(武夫)를 맞이하여 유생(儒生)에게 말타고 활쏘는 것을 가르치게 하니, 용의(戎衣)를 입고 시위[弦]를 당기는 자가 벽수(璧水)1033)에 가득 차서 현송(絃誦)의 땅이 용마(戎馬)의 마당으로 변하여 몹시 분잡(紛雜)하였다. 윤희의 여러 아들이 모두 무예(武藝)를 잘하여, 윤희가 연중(筵中)에서 사례(射禮)에 입격한 자에게 모두 문과 급제(文科及第)를 줄 것을 청하니, 사람들이 아들을 위해 급제를 도모한다고 말하였는데, 권대운(權大運)이 이를 막았다. 이때에 이르러 맞힌 수를 써서 들이니, 임금이 보고 곧 내리고는 시상(施賞)하지 아니하자, 윤희가 몹시 실망하였다.</p> | <p>會也。鑄令推牛數首，釀酒十斛，鑄與宇遠爲試官，邀許穆爲賓，歡飲而罷。初，鑄請爲射禮，日邀武夫，令教儒生騎射，戎衣控弦者，填滿璧水，絃誦之地，變爲戎馬之場，甚爲紛雜。鑄諸子俱善武藝，鑄於筵中，請射禮入格者，竝賜文科及第，人謂爲子圖第，大運防之。至是書入中數，上覽而卽下，不爲施賞，鑄甚失望。</p> |
| <p>숙종 4권, 1년(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10월 24일(무인) 1번째기사</p> | <p>약방에서 또 입진(入診)하였다. 이때 임금의 열후(熱候)는 이미 물러갔으나, 반점(斑點)이 있기 때문에 허적 등이 두증(痘證)1078) 임을 의심하고, 주사(朱砂)를 먹으면 쉽게 투출(透出)할 수 있다 하여 올리기를 청하여 임금이 복용하였다.</p> | <p>○戊寅/藥房又入診。時，上熱候已退，而以有斑點之故，積等疑爲痘證，以服朱砂，則可易透出，請進之，上進服。</p> |
| <p>숙종 4권, 1년(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10월 29일(계미) 3번째기사</p> | <p>복선군(福善君) 이남(李柟)은 이정(李楨)1100) ·이연(李樞)1101) 의 사건이 있는 뒤 절대로 조알(朝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는데, 윤희(尹鑄)·오정창(吳挺昌) 등이 비로소 다시 써서 헌관(獻官)으로 삼으니, 이로부터 궁금(宮禁)에 출입하기를 예전과 같이 하였다. 이보다 앞서 선왕(先王)께 병환이 있고, 왕실(王室)이 단약(單弱)한데, 남(柟) 등의 형제가 많고 성하여 나라 사람이 모두 위외(危疑)함을 품었으니, 선왕께서 대점(大漸)1102) 하던 날에는 한편의 조사(朝士)들이 이미 그 문(門)에 가득찼었다. 임금이 처음 즉위(卽位)하여, 남(柟) 등이 비상(非常)을 엿보았는데, 정(楨)·연(樞)이 귀양가자, 그 무리가 조금 꺾였으나, 남(柟)이 비록 집안에 있을망정 안으로는 환관과 결탁하고 밖으</p> | <p>福善君柟自楨、樞事後，絕不參朝謁。鑄、挺昌等，始復用爲獻官。自是，出入宮禁如故。先是，先王寢疾，王室單弱，而柟等兄弟衆盛，國人皆懷危疑。屬先王大漸之日，一邊朝士，已盈其門。上初卽位，柟等辟睨非常，及楨、樞竄，其黨少沮，而柟雖在家，內連保關，外仗鑄、穆，黨援猶盛。柟素爲嶺南人所宗，有嶺人崔德基者上</p> |

| | | |
|---|---|--|
| | <p>로는 윤희·허목(許穆)을 의지하여 당원(黨援)이 오히려 성하였다. 남(南)은 본래 영남 사람들에게 존승받았는데, 영남 사람 최덕기(崔德基)라는 자가 상소(上疏)하여 위망(威望)이 있는 종실(宗室)로 영남(嶺南)에 나와서 진무(鎭撫)할 것을 청하였으니, 바로 남(南)을 가리킨 것이었다. 윤희 등이 자주 서로 모이면서 자취가 매우 음비(陰秘)하였으니, 윤희는 산림(山林)에서 일어나 바야흐로 표치(標致)를 스스로 높게 하려는데, 사람들이 그 형상을 알 것을 두려워하여 문득 그 관복(冠服)을 고치고 밤중을 이용하여 오정일(吳挺一)의 첩(妾)의 집에 모여서 남(南) 등과 더불어 서로 보았다. 윤희의 이름은 해를 찌르는 형상을 응하였는데, 임금의 청문(聽聞)을 현혹(眩惑)시켜 밖으로는 오랑캐를 친다는 이름을 핑계하고서 종친과 결합하기를 꾀하니, 못사람의 마음이 흥흥(洶洶)하여 화(禍)가 급박(急迫)할까 두려워하였다. 김만기(金萬基)와 김석주(金錫胄)가 그 집을 기찰(譏察)하니, 윤희도 사람을 시켜 두 김(金)의 집을 기찰하였다. 이때 임금께서 병환이 나니, 내수(內豎)의 무리가 소주(燒酒)를 복용하여 추위를 막을 것을 청하고, 정(楨)의 집으로 하여금 진공(進供)하게 하자, 임금이 받아들여도록 명하였다. 장선징(張善澂)이 이를 듣고 초주(椒酒)의 변(變)1103) 이 있을 것을 의심하여 허적(許積)에게 말하니, 허적이 그 일이 탄로될 것을 알고 그만두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p> | <p>疏，請以有威望宗室，出鎭嶺南，卽指南也。鐫等數相聚會，迹甚陰秘。鐫起自山林，方高自標，致恐人知其狀，輒變其冠服，乘夜會于吳挺一妾家，與南輩相見。鐫名應刺日之象，眩惑君聽，外託伐胡之名，謀結宗親，衆心洶洶，恐禍急。金萬基、金錫胄譏察其家，鐫亦令人譏察兩金之家。時，上未寧，內豎輩請服燒酒禦寒，令楨家進供，上命取入。張善澂聞之，疑有椒酒之變，以語許積，積知其事露，不得止之。</p> |
| <p>속중 4권, 1년(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11월 18일(임인) 2번째기사</p> | <p>저녁에 입진(入診)하고 허적(許積)이 기거(起居)를 물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밤에 4경(四更)까지 글을 읽다가 5경에 비로소 잠을 잤고, 일어나서 곧 밥을 먹고는 이내 주장(晝講)에 나왔는데, 먹은 것이 소화가 아니되어 구토를 하게 된 것이다.” 하였다. 허적이 섭양(攝養)하는 뜻을 진달하고, 인하여 심수량(沈壽亮)의 상소에, ‘차라리 군부(君父)를 저버릴지언정 스승의 은혜는 잊을 수 없다.’는 말을</p> | <p>○夕，入診。許積問起居，上曰：“去夜讀書至四更，五更始寢，覺卽進食，仍出晝講，食不消以致嘔吐也。”積陳攝養之意，仍言：“沈壽亮疏，無寧負君父，不忘師恩之語，且拿問似過矣。”金錫胄、李同揆亦言之，上命收拿命，仍存削黜。</p> |

| | | |
|---|--|--|
| | 하고, 또 나문(拿問)하는 것은 지나칠 듯하다고 하였는데, 김석주(金錫胄)와 이동규(李同揆)도 이를 말하니, 임금이 명하여 나치(拿致)하도록 한 명을 거두고, 삭출(削黜)은 그대로 두게 하였다. | |
| 숙종 5권, 2년(1676) 병진 / 청 강희(康熙) 15년) 2월 5일(정사) 1번째기사 | 비국(備局)에서 구황(救荒)의 일 때문에 하교(下敎)한 것에 대하여 회계(回啓)하기를, “청컨대, 해서(海西)의 세수미(稅收米)로서 응당 탁지(度支)1279) 에 바쳐야 할 것을 2만 5천 석은 관서(關西)에 나누어 주고, 1만 6천 석은 해서에 나누어 주며, 기전(畿甸)의 세수미는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서 징수하고, 그 대용(代用)은 진휼청(賑恤廳)의 삼남(三南)에서 운반해 온 쌀로써 선혜청(宣惠廳)에 채워 주게 하소서.” 하였는데, 윤허하였다. | ○丁巳/備局以救荒事下敎， 回啓請：“以海西稅收米應納度支者， 分給二萬五千石於關西， 一萬六千石於海西， 畿甸收米， 待秋收捧， 其代以賑恤廳三南運來之米， 充給於宣惠廳。” 允之。 |
| 숙종 5권, 2년(1676) 병진 / 청 강희(康熙) 15년) 3월 8일(경인) 5번째기사 | 반궁(泮宮)1325) 에 감자(柑子)를 내려주고 선비를 시험하여 이시만(李著晩)에게 급제(及第)를 주었다. | ○頒柑泮宮試士， 賜李著晩及第。 |
| 숙종 5권, 2년(1676) 병진 / 청 강희(康熙) 15년) 3월 18일(경자) 1번째기사 | 하교하기를, “어제 등대(登對)할 때에 좌상(左相)이 반록(頒祿)의 일을 진달하였는데, 마침 열(熱)이 오르고 편치 아니한 증세가 있어서 이치를 논하면서 수작(酬酌)하는 일을 하지 못하였다. 지금 다시 생각하건대, 경술년1334) ·신해년1335) 이래로 흉년이 거듭 들어서 곡식은 적고 백성은 많으니, 계속해 구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죽(粥)을 마련하기까지 하였으나, 역시 고루 베풀지 못하여 부자(父子)가 서로 보전되지 못하고 부부가 서로 헤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죽 | ○庚子/下敎曰：“昨日登對時， 左相以頒祿事陳達， 而適有熱升不安節， 不得論理酬酌矣。 到今更思， 自庚辛以來， 饑荒荐臻， 穀少民多， 無以繼賑。 至於設粥， 亦不能均施， 父子不相保， 夫婦相離散， 救死不贍。 復設祿俸， 雖曰忠信重祿， 似非其時。 姑觀來秋豐凶之如何， 更爲稟啓。” |

| | | |
|--|---|---|
| | <p>음을 구제하기에도 넉넉하지 못한데, 다시 녹봉(祿俸)을 베푸는 것은 비록 ‘충신(忠信)으로 대우하고 녹(祿)을 중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때가 아니다. 잠시 오는 가을의 풍년·흉년이 어떠한가를 보아서 다시 품계(稟啓)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 |
| <p>숙종 5권, 2년(1676) 병진 / 청 강희(康熙) 15년) 6월 14일(을축) 2번째기사</p> | <p>하교하기를, “자진(慈殿)께서 평복(平復)하셨으니, 이는 더할 수 없는 큰 경사이며 전고(前古)에 드문 바이다. 팔도(八道)의 방물(方物)을 비록 감제(減除)하였다 하더라도 이번만은 봉진(封進)할 일을 예조(禮曹)에 분부하라.”</p> <p>하였다.</p> | <p>○下教曰：“慈殿平復，乃是莫大之慶，前古所罕。八道方物，雖減除，今番則封進事，分付禮曹。”</p> |
| <p>숙종 6권, 3년(1677) 정사 / 청 강희(康熙) 16년) 1월 4일(신사) 1번째기사</p> |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영의정(領議政)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이옥(李沃)이 올린 잠은 모두 옛사람들의 격언(格言)입니다. 단지 칭찬하여 권장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마땅히 채택하여 써주는 실속이 있으셔야 합니다.”</p> <p>하고, 검토관(檢討官) 유명견(柳命堅)이 아뢰기를, “듣건대, 지난 겨울에 초피(貂皮) 무역을 1백 60여 벌이나 되도록 많이 하고, 또 은그릇을 만드느라 2백여 냥(兩)의 은을 대내(大內)에 들여온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었다면, 검소하지 않음이 심한 일입니다.”</p> | <p>○辛巳/御晝講。領議政許積曰：“李沃所進之箴，皆古人格言，不但嘉獎而已，宜有採用之實。”檢討官柳命堅曰：“聞前冬貂皮貿易，多至一百六十餘領。且以銀器造成，有二百餘兩銀入內之事。此事果有之，乃不儉之甚也。”積曰：“外間或慮過施私恩於近習。若如此，則尤可憂也。”特進官金萬基曰：“銀器則非內用也。尙方銀器多破傷，不堪用，故今方新造。新造後，舊器則還下戶曹，以銀用之矣。”積曰：“今聞此言，固無妨矣。”</p> |

| | | |
|--|--|--|
| | <p>하고, 허적이 아뢰기를,</p> <p>“외부에서들은 근습(近習)1594) 에게 사사 은혜를 지나치게 베푸시는 것이라 염려하는데, 만일 그러한 것이라면 더욱 근심스러운 일입니다.”</p> <p>하고, 특진관(特進官) 김만기(金萬基)가 아뢰기를,</p> <p>“은그릇은 대내에서 쓰려는 것이 아니라, 상방(尙方)의 은그릇이 부수어진 것이 많아 쓸 수가 없으므로, 바야흐로 지금 새로 만드는 것이고, 새로 만든 다음에는 옛 그릇은 도로 호조(戶曹)에 내리어 은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p> <p>하고, 허적이 아뢰기를,</p> <p>“지금 이 말을 들어보면 실로 방해로울 것이 없겠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고치고 없었다면 더욱 힘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p> <p>하였다. 시독관(侍讀官) 강석빈(姜碩賓)이 또 내국(內局)1595) 에서 약을 지어 내라는 수량이 그전보다 배나 많아졌다는 뜻으로, 외람하게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기를 청했다. 임금(上)이 제신(諸臣)들의 말에 있어 하나같이 그렇다고만 할 뿐이었다.</p> | <p>有則改之，無則加勉宜矣。”侍讀官姜碩賓又以內局藥物帖下之數，倍多於前日之意，請戒濫用，上於諸臣之言，皆唯唯而已</p> |
| <p>숙종 6권, 3년(1677 정사 / 청 강희(康熙) 16년) 1월 9일(병술) 3번째기사</p> | <p>옥당관(玉堂官)을 야대(夜對)했다. 참찬관(參贊官) 권해(權璿)가 아뢰기를,</p> <p>“요사이 민간(民間)에서는 황무지를 모두 새로 개간한 땅이라고 하므로, 원망하는 소리가 자못 많습니다. 바야흐로 지금 핵실(覈實)해 내고 있으니, 답사하여 바로잡은 뒤에 지금의 것이나, 그전의 것이나 모두 진재(陳災)로 해주는</p> | <p>○夜對玉堂官。參贊官權璿曰：“近來，民間以蓬蒿之地皆入新墾，呼怨頗多。今方覈出，而查正後，竝給今舊陳災好矣。”上曰：“當與度支之臣議處。”璿又言：“辭令當務簡重，而褒</p> |

| | | |
|--|---|---|
| | <p>것이 좋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마땅히 탁지(度支)1596) 의 신하와 의논하여 처리하겠다.”</p> <p>하였다. 권해가 또 아뢰기를,</p> <p>“사령(辭令)1597) 은 마땅히 간단하면서도 목직함을 힘써야 하고, 포폄(褒貶)에 관한 말은 더욱 마땅히 절실하고 잘 맞게 해야 할 것입니다.”</p> <p>하고, 시독관 유명현(柳命賢)이 아뢰기를,</p> <p>“요사이 승진과 발탁(拔擢)이 너무 졸급하게 되는데 또한 마땅히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고, 또한 반드시 초입사(初入仕)를 잘 가린 다음에야 수령(守令)에 적임자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제신(諸臣)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리도록 명하니, 유명현이 아뢰기를,</p> <p>“조종조(祖宗朝)에는 옥당관의 대우가 매우 우악(優渥)하여, 문종(文宗)께서는 밤이면 더러 친림(親臨)하시어 성삼문(成三問)의 자를 부르시기까지 했으니, 이는 훌륭한 일입니다.”</p> <p>하였다. 유명현이, 사관(史官) 이한명(李漢命)에게 쓸 만한 계려(計慮)가 있으</p> | <p>貶之言，尤當切中矣。”侍讀官柳命賢曰：“近日陞擢太遽，亦宜慎重。而且必擇初入仕，然後守令可以得人。”上命賜諸臣酒饌。命賢曰：“祖宗朝待玉堂甚優。文宗夜或親臨，至呼成三問之字，此盛事也。”命賢稱史官李漢命有計慮可用，請使陳達所懷，上問漢命。漢命以勤學、愛民、納諫及愛惜爵賞，慎重辭令等說敷奏。時賜酒過多，諸臣沈醉，多失儀。碩賓吐茵僵臥，乃命罷黜。</p> |
|--|---|---|

| | | |
|---|---|---|
| | <p>니 생각하고 있는 바를 진달하게 하도록 청하자, 임금(이한명)에게 물었더니, 이한명이 근학(勤學)·애민(愛民)·납간(納諫) 및 작상(爵賞)을 아껴야 하고 사령(辭令)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아뢰었다. 이때 내린 술이 너무나 많아 제신들이 몹시 취하여 예의를 잃는 수가 많았고, 강석빈(姜碩賓)은 자리에다 토하고 누워 버리므로, 과하고 나가도록 명하였다.</p> | |
| <p>숙종 6권, 3년(1677 정사 / 청 강희(康熙) 16년) 2월 18일(을축) 3번째기사</p> | <p>옥당관(玉堂官)을 야대(夜對)했다. 이날 전라도 유생(儒生) 양몽거(楊夢舉) 등이 상소하여, 고 상신(相臣) 정철(鄭澈)의 관작을 추탈(追奪)하기를 청했다. 승지 조사석(趙師錫)이 퇴각(退却)하려 하자 권해(權璫)가 안된다고 고집하므로, 조사석이 다투다가 되지 않아 그제야 말을 잘 만들어 입계(入啓)했다. 입대(入對)할 때에 당하여 권해가 또한 아뢰기를, “정철이 정여립(鄭汝立)의 반역 옥사(獄事)로 인하여 현명한 선비들을 무함(誣陷)하면서, 선비들을 죽인다는 이름을 선조(宣祖)에게 돌리려고 했었는데, 선조께서 뒤에야 깨달으시고서, ‘간사한 정철, 악독한 정철’이라는 분부가 있으셨고, 그때에 화를 입은 사람들이 허다히 호남(湖南) 사람이었기 때문에 호남의 사론(士論)이 지금까지 통분하게 여겨 이런 상소를 진달하게 된 것입니다.”하고, 옥당의 오시대(吳始大)·민취도(閔就道) 등이 모두 이 말을 옳다고 하였으며, 또한 두 승지가 상지(相持)하다가 어두워진 뒤에야 입계(入啓)한 것을 그르게 여기니, 임금이 이르기를,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다사(多士)들이 진달하는 상소를 어찌 받지 않을 수 있는가?”하였다. 이어 제신(諸臣)에게 술과 음식을 내리며 조사석을 데어오라고 명초(命招)하여 함께 음식을 들도록 하며, 조사석이 나아가 엎드리며 아뢰기를, “호남 유생들의 상소는 신(臣)이 들은 말과는 크게 다르기에 신이 퇴각하려 한 것인데, 동료(동료)가 안된다고 고집하여, 어두워진 뒤에야 입계했으니, 진실로 황송한 마음 간절합니다. 신이 이미 계사(啓辭)에도 진달했습니다마는, 인조조(仁祖朝)에 정철을 신원(伸冤)할 적에 명신(名臣) 석보(碩輔)들도 불가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p> | <p>○夜對玉堂官。是日，全羅道儒生楊夢舉等上疏，請追奪故相臣鄭澈官爵。承旨趙師錫欲退却之，權璫執不可。師錫爭之不得，乃措辭入啓。及入對，璫又言：“澈因鄭汝立逆獄，誣陷賢士，乃欲以殺士之名，歸之宣廟。宣廟後乃覺悟，有奸澈、毒澈之教，其時被禍者多湖南人，故湖南士論，含痛至今，有此陳疏矣。”玉堂吳始大、閔就道等，皆是其言。又以兩承旨相持，昏後入啓爲非，上曰：“無論是非，多士陳疏，何可不捧也？”仍賜諸臣酒饌，命招師錫入來，與共飲食。師錫進伏曰：“湖儒疏，與臣所聞大異。臣欲退却，而同僚執不可，昏後乃啓，良切惶恐。臣既以啓辭陳達，而仁祖朝伸冤鄭澈也，名臣碩輔無一人言其不可。到今百年後，請追奪，寧有是理？澈非但元無殺士之事，臣則既知其爲忠清耿介之君子，不得不如是陳達矣。”璫</p> |

| | | |
|---|--|---|
| | <p>다. 지금 백년이 된 뒤에야 추탈하기를 청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정철은 원래 선비들을 죽인 일이 없을 뿐만이 아닙니다. 신이 이미 그는 충성스럽고 청렴하고 지조가 굳은 군자로 알고 있기에 이렇게 진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하고, 권해가 아뢰기를,“신과 조사석이 각각 생각하고 있는 바를 진달했으니, 성상께서 재량하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하였다. 가주서(假注書) 윤세기(尹世紀)가 나아가 엎드리며 아뢰기를,“신은 직이 비록 가관(假官)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미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어찌 월조(越俎)의 혐의만 피하느라 진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이어 진달하기를“정철은 충성스럽고 청렴하고 지조가 굳었음은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일입니다. 최영경(崔永慶)의 죽음에 있어서도 본시 털끝만치도 나직(羅織)한 일이 없었습니다. 선비를 죽인 것으로 죄안(罪案)을 만들게 된 것은 곧 억지로 씌운 것입니다.” 하매 조사석이 직권(職權)을 벗어나 일을 논한 것을 들어 추고(推考)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 이튿날 양몽거 등의 상소에 답하기를,“이 일의 옳고 그름은 그대로 놓아두고 논하지 말라. 일찍이 인조조에 참작하여 의정(議定)한 것이고, 세월이 이미 오래 되었으니, 변경하여 고칠 수 없다.”하였다. 양몽거 등이 재차 상소하니, 답하기를,“지금 50년이나 된 뒤에야 어찌 이처럼 번거롭게 하느냐? 내가 생각하기에 매우 해괴하다.”하였다.</p> | <p>曰：“臣與師錫，各以所懷陳達，以俟睿裁。”假注書尹世紀進伏曰：“臣職雖假官，既有所懷，寧避越俎之嫌，而不爲陳達乎？”仍陳澈忠清耿介，國人所知，崔永慶之死，本無一毫羅織之事，至以殺士爲罪案者，是抑勒也。”師錫以越職論事，請推考，從之。翌日，答夢學等疏曰：“此事是非，姑捨勿論。曾在仁廟朝，參酌議定，年歲已久，不可撓改。”夢學等再疏，答：“以到今五十年之後，何如是煩撓乎？予甚駭異。”</p> |
| <p>숙종 6권, 3년(1677 정사 / 청 강희(康熙) 16년) 2월 27일(갑술) 1번째기사</p> | <p>임금이 장차 적전(籍田)에서 친경(親耕)하려 하여 장엄(裝嚴)1633) 이 끝났는데, 큰 비가 온종일 내려 거행하지 못했다. 대신이 날짜를 고쳐 물리어 거행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었는데, 그 이튿날 승릉(崇陵)의 봉분(封墳)이 비로 인해 무너졌음을 듣고 드디어 거행을 정지하도록 명했다. 당초에 우의정 허목(許穆)이 아뢰기를, “친경은 곧 삼대(三代) 시절의 아름다운 법이므로 마땅히 거행하여 백성들이 관감(觀感)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허목이 또 상소하기를,</p> | <p>○甲戌/上將親耕籍田，裝嚴訖，大雨終日，不果行。大臣請改日退行，從之。翌日聞崇陵封墓，因雨崩頽，遂命停行。初，右議政許穆言：“親耕乃三代美法，宜行之，使民觀感。”上許之。穆又上疏言：</p> <p>禮，正月元日奏黃鍾，歌大呂，舞雲</p> |

| | | |
|--|---|---|
| | <p>“예법이 정월 원일(元日)에는 황종(黃鍾)을 연주하고 대려(大呂)를 노래하고 운문(雲門)을 춤추며 천자(天子)가 상제(上帝)에게 기곡(祈穀)1634) 할 때 후직(后稷)을 배향(配享)하고 원신(元辰)1635) 을 가리어 몸소 너사(耒耜)를 지고 삼공(三公)·구경(九卿)·제후(諸侯)·대부(大夫)를 거느리고 적전에 나아가 몸소 갈되, 천자는 삼퇴(三推)1636) 하고 삼공은 오퇴(五推)하고 제후와 대부는 구퇴(九推)하고 돌아와, 태침(太寢)에서 술잔을 들고 삼공·구경·제후·대부가 모두 술을 마시는데, 이를 노주(勞酒)라 합니다. 구퇴한 뒤에는 농부(農夫)가 마무리합니다. 옛적에 동(種)1637) ·육(耜)1638) 종자를 후궁(后宮)에 간수한 것은, 씨를 전하여 퍼지게 되는 상서로움이 있기 때문이었고, 생으로 바쳐 왕을 도와서 교제(郊祭)와 체제(禘祭)를 올리게 했었으니, 이는 제왕들의 훌륭한 예절입니다.”하고, 이어 한(漢)나라와 진(晉)나라 때의 고사 및 우리 나라 중종(中宗)·명종(明宗)이 친경을 한 예절을 일일이 들며 아뢰기를, “왕자(王者)의 상서는 풍년 드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선농단(先農壇)에 제사하고 몸소 1천 이랑의 적전을 갈아 보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 기곡(祈穀)하기도 하고 또한 몸소 술선하기를 보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우악(優渥)하게 답했다. 영상(領相)·좌상(左相) 및 병조 판서 김석주(金錫胄)와 예조 판서 이지익(李之翼) 등이 알성(謁聖) 및 영릉(寧陵) 행행(行幸)과 남별전(南別殿)의 작헌례(酌獻禮)는 모두들 마땅히 봄 동안에 거행해야 함을 여러 차례 말하며 친경은 다음 해로 물러 거행하기를 청했고, 허적·권대운이 또 천연두(天然痘)가 마구 번지고 있음을 들어 물러 거행하기를 청하며, “우상(右相) 역시 한 번은 거행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올해에 거행했으면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까지 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적이 또 아뢰기를,</p> <p>“마음만 태만해지지 않고 황천(皇天)을 대한 듯이 해가면 비록 친경하지 않더라도 백성들이 자연히 감화(感化)되고 연사가 자연히 풍년들게 되는 것입니</p> | <p>門。天子祈穀于上帝，配以后稷，乃擇元辰，天子躬載耒耜，帥三公、九卿、諸侯、大夫，躬耕帝籍，天子三推，三公五推，諸侯、大夫九推，反執爵于太寢。三公、九卿、諸侯、大夫皆銜命曰：“勞酒。”九推之後，農夫終畝。古者藏種耜之種于后宮，以其有傳類蕃孳之祥也，生而獻之，以佐王共郊禘，此帝王盛節也。</p> <p>仍歷舉漢、晉故事及我中宗、明宗親耕之禮曰：</p> <p>王者之瑞，莫如豐年。祀先農，躬籍千畝，所以爲百姓祈穀，而亦示以身先之也。</p> <p>上優答之。領左相及兵判金錫胄，禮判李之翼等，屢言謁聖及寧陵行幸，南別殿酌獻禮，皆當行於春間，請退行親耕於後歲。積、大運又以痘疾熾盛，請退行，至謂：“右相亦以爲不可不一行，非必欲今年行之也。”上皆不納。積又言：“一心不懈，對越皇天，則雖不親耕，民自感化，歲自豐登。不然</p> |
|--|---|---|

다. 그렇지 않고서 형식으로 거행한다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하고, 참찬(參贊) 홍우원(洪宇遠)이 또한 아뢰기를, “친경은 진실로 훌륭한 일인 것입니다마는, 다만 지금 민간의 원성이 길거리에 널려 있는데, 이런 때에 친경을 하신들 어찌 관감(觀感)하게 되겠습니까? 마땅히 먼저 백성들이 편하게 될 국정을 시행하면서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 거행하셔야 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살펴 듣지 않고 예의(銳意)하여 거행하기로 하며, 번거로운 예문을 삭제하고 모든 일을 간략하게 하도록 명했다. 대신이, 도감(都監)도 설치하지 말고 노주연(勞酒宴)1639) 도 차리지 말며, 또 전례에는 친경을 한 뒤 과거를 보였었지만 《오례의(五禮儀)》에 실려 있는 것은 아니니 또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2월 상해일(上亥日)은 아직도 추워 성상께서 밤을 새울 수 없으실 것이니, 상해일에는 예(例)대로 관원을 보내 선농제(先農祭)를 거행하게 하고, 날을 가려 친경을 하시고서 이어 기곡(祈穀)하는 뜻으로 따로 한 제사를 차리기 바랍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허목이 또 아뢰기를, “옛적에는 대순(大詢)1640) 의 예(禮)도 있었습니다.”하매, 허적 등이 아뢰기를, “《오례의》에 실려 있지 않는 일은 또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구경하는 사람들을 금하지 말기를 청하니, 윤희했다. 이때 사민(士民)들이 친경하는 날짜가 정해진 것을 듣고 먼 지방에서까지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매우 많았었다. 이날 새벽에 신농씨(新農氏)와 후직(后稷)의 위판(位版)을 모셔다가 제단 위에 봉안(奉安)하고 제물(祭物)과 의장(儀仗)을 모두 갖추었는데, 비바람이 크게 일어 온종일 그치지 않아, 관경대(觀耕臺)에 설치한 어좌(御座)의 오악(五岳) 그림 병풍이 모두 찢어지므로, 대신이 아뢰기를, “논밭이 질척거려 걸코 친경하시기 어렵겠으니, 마땅히 날이 개어 건조되기를 기다렸다 하셔야 하겠습니다.”하였다. 마침 송릉(崇陵)의 사초(莎草)가 비로 인해 무너져 능 형태가 부수어졌다. 임금이 떨며 두려워하고 놀래어 애통해 하므로, 허적 등이 아뢰기를, “이번(異

而行以文具, 則不如不爲.” 參贊洪宇遠亦言: “親耕固盛舉, 而但今民怨載路, 此時親耕, 有何觀感? 宜先行便民之政, 待民蘇息而行之。” 上皆不省, 銳意行之, 命刪去繁文, 凡事從簡。大臣請勿設都監, 勿行勞酒宴。且前例親耕後設科, 而不載於《五禮儀》, 亦宜勿設, 從之。又以爲二月上亥日尙寒, 自上不可經宿, 請於上亥, 依例遣官, 行先農祭, 擇日親耕, 仍以祈穀之意, 別設一祭, 從之。穆又言: “古有大詢之禮。” 積等以爲: “不載《五禮儀》, 事又難行。” 從之。又請勿禁觀光人, 許之。時, 士民聞親耕有日, 自遠方來觀者甚衆。是日曉, 奉出神農、后稷位版, 安于壇上, 祭物儀仗皆具, 而風雨大作, 終日不止, 觀耕臺所設, 御座五岳屏, 皆裂破。大臣言: “田野泥濘, 決難親耕。宜俟晴乾而行之。” 適崇陵莎草, 因雨傾圮, 陵形墮損, 上震懼驚痛。積等言: “變異適在親耕之日, 宜小心恭默, 以答天譴。” 上曰: “爲民祈穀, 且欲勸農矣。畢竟至此, 奈何? 且將奉審崇陵, 親耕宜停之。” 積等言: “親耕後, 固

| | | |
|--|---|--|
| | <p>變)이 마침 친경하시려는 날에 생겼으니, 마땅히 조심(小心)하고 공묵(恭默)하여 하늘의 꾸지람에 응답해야 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백성을 위해 기곡(祈穀)하고 권농(勸農)하려 했던 것인데 결국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리고 장차 승릉을 봉심(奉審)하려 한다. 친경은 마땅히 정지해야 한다.”하매, 허적 등이 아뢰기를,“친경을 하신 다음에는 본시 경기(京畿)의 수미(收米)와 전세미(田稅米)를 각각 2말씩 감해 주어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했었습니다. 비록 지금 친경은 정지하게 되었지만 마땅히 그대로 세미는 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나의 뜻도 진실로 그렇게 여긴다.”하고, 드디어 감해 주었다. 이때 제주(祭酒) 윤희(尹鑄)가 상소하기를,“친경 때 과종(播種)하는 곡식이 아홉 가지인데 대부분 이때 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경하고 과종한 다음에 부득이 갈아버리고 다시 심어야 한다고 했었으니, 이때 심어야 하는 곡식을 심으소서.”하고, 또 노주연(勞酒宴)도 거행하기를 청하고 또 친잠(親蠶)도 시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예조(禮曹)로 하여금 대신들과 의논하도록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과종한 다음에 다시 갈아버림은, 절목(節目)에 마련된 것이 아니기에, 어디에 의거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하고, 대신이 또한 아뢰기를,“노주연은 비록 《오례의》에 실려 있기는 하지만, 정월·동지와 같은 가장 중요한 모임에도 오히려 폐하고 거행하지 않은 것은 연사가 풍년과 흉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폐(全廢)하는 것은 섭섭하게 여겨, 기로(耆老) 및 친경 때 따라온 서민들에게는 술과 음식을 먹이도록 했었으니, 이는 또한 노주의 의의를 대략 모방한 것입니다. 친잠은 비록 옛 예법이기는 하지만, 《오례의》에는 실려 있지 않은 것이고, 그 내용에 ‘내관(內官)을 갖춘다.’는 한 조항은 더욱 오늘에 있어서는 거론할 것 없는 것입니다.”하였다. 윤희가 다시 상소하기를,“다시 갈아버리는 것은 곧 잘못하고 있는 사례인데, 어찌 절목(節目) 속에 실려 있겠습니까? 이는 조정이 살피지 않고 전인(甸人)들이 하는 대로 맡겨 두므로 그랬</p> | <p>欲除減京畿收米、田稅米各二斗，以慰民矣。 親耕今雖停，宜仍減稅。”上曰：“予意固然。”遂減之。 時，祭酒尹鑄上疏言：</p> <p>親耕播種之穀，凡九種，多非今時所種。 故親耕播種之後，不得已翻耕收穫云。 請以今時宜種之穀種之。</p> <p>且請行勞酒宴，又請行親蠶。 上令禮曹，議大臣。 禮曹以爲：“播種後翻耕，非磨鍊節目，未知何所據而云。”大臣亦以爲：“勞酒宴雖載《五禮儀》，如正至會之最重者，猶廢不行，以時有豐儉故也。 然猶以全廢爲歉，耆老及從耕庶人，命饋以酒食，此亦略倣勞酒之義也。 親蠶雖古禮，而不載於《五禮儀》，其中備內官一款，尤不當舉論於今日。”云。 鑄復上疏曰：</p> <p>翻耕乃謬例，豈載於節目中乎？此不過朝廷不之察，任甸人所爲爾。 且既有非時之種，則決無生成之理，不可不變通也。 至於勞酒，則禮固有隨時豐殺者，然其大經所在，所以治神人、和上</p> |
|--|---|--|

| | | |
|--|--|---|
| | <p>던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미 때가 아닌 것을 심었다면 결코 싹이 나서 자라게 될 리가 없으니, 변통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노주에 있어서도 예법은 본래 시기에 따라 풍성하게도 간략하게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원칙으로 말하면神明(神明)과 사람의 사이가 다스려지고 상하(上下)의 관계가 화합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사가 흉년인 것 때문에 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에서 북쪽으로는 여산(廬山)의 계학(溪壑)1641) 을 채워야 하고 남쪽으로는 교악(蛟鰲)의 먹이1642) 를 주어야 하는데, 가운데서는 미려(尾閭)의 누설1643) 이 금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신(群臣)들이 마땅히 이에 있어서 음양(陰陽)을 섭리(燮理)하여 연사(年事)가 충족해지게 하고, 예의를 밝히고 부비(浮費)를 억제할 방도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구구하게 공식(公食)하고 의향(儀享)하고 하는 예절을 삭감하는 것을 절약으로 여겨 경솔하게 선왕(先王)들의 전례(典例)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친잠(親蠶)은 비록 《오례의》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또한 ‘선잠단(先蠶檀)에 제사하고 섭사(攝事)한다.’는 문구(文句)가 있고, 우리 나라 열성(列聖)들께서 또한 거행하여, 성종(成宗)께서 6년에는 친경(親耕), 8년에는 친잠하셨고, 중종(中宗)께서는 8년에 친경하고 이해에 친잠도 하셨으며, 선조(宣祖)께서도 5년에 친경하고 친잠하시어, 이미 거행해온 전례임을 분명하게 고찰할 수 있으니, 마땅히 그대로 준행해야 합니다. 이른바 ‘내관을 갖춘다.’는 말은 더욱 신(臣)의 본의가 아닌 말입니다. 《예기》에 ‘제사는 반드시 부부가 친히 지내는 것이다.’ 한 것은, 내외(內外)의 관(官)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하였는데, 상소를 입계(入啓)했을 때 이미 친경을 정지하기로 의논했었기에, 임금이 정지했다는 뜻으로 답했다.</p> | <p>下者，不可以年時之貧儉而廢焉。 今國家北填廬山之壑，南投蛟鰲之食，中不禁尾閭之泄。 群臣於此，宜思燮理陰陽，充美年時，明禮義，抑浮費之道可也， 不當區區割削於公食儀享之禮，以爲節損，而輕廢先王之典也。 親蠶雖不載《五禮儀》，亦有祭先蠶攝事之文，而我列聖亦行之。 成廟六年親耕，八年親蠶； 中廟八年親耕，其年親蠶； 宣廟五年親耕、親蠶。 已行之典，斑斑可考，正宜遵而行之。 所謂備內官之說，尤非臣本意。 禮曰：“祭也者，必夫婦親之。” 所以備內外之官也。</p> <p>疏入而親耕已議停矣。 上以停止之意答之。</p> |
| <p>숙종 6권, 3년(1677) 정사 / 청 강희(康熙) 16년) 4월 13일(기미)</p> | <p>대신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했다. 이때 경상 좌수영(慶尙左水營) 군졸이 무역(貿易)에 관한 일로 인해 3인이 목매어 죽었었다. 임금이 듣고 매우 놀라고 참혹하게 여겨, 전후의 수사(水使)들을 잡아다가 추문(推問)</p> | <p>○引見大臣、備局諸臣。 時，慶尙左水營軍卒，因貿易事，三人縊死。 上聞甚驚慘，命拿問前後水使。 至是，</p> |

| | | |
|---|--|--|
| <p>4번째기사</p> | <p>하도록 명했었는데, 이에 이르러 좌의정 권대운(權大運)이 임금께 아뢰기를,</p> <p>“전후의 수사들을 모두 죄증은 너무 과할 듯하니, 이세선(李世選)·양우급(梁禹及) 등 범한 죄가 현저한 사람은 원래 마땅히 죄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지만 그 나머지는 잡아다가 추문할 것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 뒤에 양우급은 장 일백(杖一百)과 탈고신(奪告身)으로 의율(擬律)했다가 대간(臺諫)의 논계(論啓)에 따라 정배(定配)했다. 목내선(睦來善)이 아뢰기를,</p> <p>“봉상시(奉常寺)의 자성(棗盛)1664) 으로 쓰는 서직미(黍稷米)를 매양 칙사(勅使)를 영접할 때면 진배(進排)하도록 하는데, 제향에 쓰는 것을 칙사 대접에 쓰는 것은 사체에 지극히 미안한 일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이 뒤로는 칙사가 올 때 쓰는 것을 호조로 하여금 변통하여 사다가 쓰도록 명했다.</p> | <p>左議政權大運白上曰：“盡罪前後水使，似太過。 李世選、梁禹及等所犯顯著者，固當治罪，而其餘不必拿問。” 上從之。 後，禹及以杖一百，奪告身議律，因臺啓定配。 睦來善言：“奉常寺棗盛所用黍稷米，每令進排於勅使迎接時。 祭享所用，用之勅使所供，事極未安。” 上命今後勅使時所用，自戶曹變通貿易。</p> |
| <p>숙종 6권, 3년(1677 정사 / 청 강희(康熙) 16년) 6월 11일(병진) 2번째기사</p> | <p>한재(旱災) 때문에 자신을 책망하는 분부를 내리고, 지금부터 피정전(避正殿)·감선 철악(減膳撤樂)·금주(禁酒) 등의 일을 명하고 또한 해조(該曹)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하였다.</p> | <p>○以旱災， 下教責己， 命自今避正殿， 減膳、撤樂、禁酒等事， 亦令該曹舉行。</p> |
| <p>숙종 6권, 3년(1677 정사 / 청 강희(康熙) 16년) 7월 16일(신묘) 3번째기사</p> | <p>세(稅)로 거둔 소금 1천 섬을 경상도에 주어 진제(賑濟)하는 물자에 보태도록 명했다.</p> | <p>○命給稅鹽一千石于慶尙道， 補賑資。</p> |
| <p>숙종 6권, 3년(1677 정사 / 청 강희(康熙)</p> | <p>논에 심은 목맥(木麥)1764) 에 대한 세(稅)를 면제하였다.</p> | <p>○除水田木麥之稅。</p> |

| | | |
|---|---|---|
| <p>16년) 9월 27일(신축) 3번째기사</p> | | |
| <p>숙종 6권, 3년(1677) 정사 / 청 강희(康熙) 16년) 11월 10일(계미) 1번째기사</p> | <p>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청(淸)나라 사신(使臣)을 전송하였다. 이날 바람이 몹시 불고 추우니, 임금이 추위를 이기지 못하여 진선문(進善門) 안에 다 가마를 멈추게 하고, 가마 위 사면의 휘장을 내리도록 명하였다. 승지(承旨) 유명현(柳命賢)이 나아와 말하기를,“위의(威儀)에 관계됨이 있어 내릴 수 없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또 모선(毛扇)을 찾아서 바치도록 명하니, 김석주(金錫胄)가 자신이 쥐고 있던 모선을 바쳤다. 장전(帳殿)에 이르자 임금의 안색이 매우 차서 술 한 잔을 올렸더니 한기(寒氣)가 그제서야 조금 풀렸다. 잠시 있다가 청나라 사신이 이르렀으므로, 임금이 계단을 내려가 자리로 영접해 들어서 다례(茶禮)을 베풀어 끝마치고 그와 더불어 읍(揖)하였으며, 또 계단을 내려가 송별하였다. 임금이 궁(宮)에 돌아오자 대신(大臣)에게 이르기를,“한기가 사람을 침범하여, 만약 모선(毛扇)이 없었다면 아마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하였다.</p> | <p>○癸未/上幸慕華館送淸使。 是日大風寒，上不勝寒凜，駐輦于進善門內，命垂輦上四面帳。 承旨柳命賢進曰：“有關威儀，不可垂也。” 上又命索進毛扇，金錫胄以其所把毛扇進之。 及至帳殿，玉色甚寒，進酒一杯，氣乃小舒。 俄而淸使至，上下階迎入座，設茶罷，與之揖。 又下階送之。 上還宮，謂大臣曰：“寒氣逼人，若無毛扇，殆不能堪矣。”</p> |
| <p>숙종 6권, 3년(1677) 정사 / 청 강희(康熙) 16년) 11월 21일(갑오) 1번째기사</p> |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두분 자전(慈殿)께의 진연(進宴)은 이미 무사하게 예(禮)를 거행하였으니, 은혜를 미루어 내려 주는 법이 없을 수 없다. 위로는 대부(大夫)·사(士)로부터 아래로는 서민(庶民)·천민(賤民)에 이르기까지, 서울이나 외방을 논하지 말고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쌀을 내려 주고, 80세 이상이면 가자(加資)하며, 정명공주(貞明公主)1807) 와 인흥 부인(仁興夫人)과 정사 공신(靖社功臣)1808)의 처(妻)나 아들로써 살아있는 자는 옷가지와 음식물을 넉넉하게 내려 주어, 노인(老人)을 대접하고 친족(親族)을 친애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우참찬(右參贊) 윤휴(尹鑄)가 말하기를,</p> | <p>○甲午/御晝講。 上曰：“兩慈殿進宴，既已無事行禮，不可無推恩之典。 上自大夫士，下至庶賤，無論京外，年七十以上賜米，八十以上加資，貞明公主及仁興夫人及靖社功臣妻與子生存者，優賜衣資米饌，以示老老親親之義。” 右參贊尹鑄曰：“我朝賦稅之法，不甚稽古，田稅之外，更有賦貢之科，而不分田與民，專出之於民結。 是以農民重困，而倖民尙佯。 行之既久，稅納日輕，貢入日重，上無以應用，下殆有</p> |

| | | |
|--|--|---|
| | <p>“우리 나라 부세(賦稅)의 법은 옛 일을 상고하지 않아서, 전세(田稅) 이외에 다시 공부(貢賦)의 조목이 있어 토지와 백성을 나누지 않고 오로지 민결(民結)1809) 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농민(農民)은 이중으로 괴로움을 당하는데 운 좋은 사람은 놀고 있는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전세(田稅)의 납부는 날로 가벼워지고 공물(貢物)을 받아들이는 것은 날로 무거워지는데, 위에서는 응용함이 없고 아래에서는 명(命)을 거의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더욱이 용병(冗兵)1810) 은 날로 늘어나고 공역(供億)은 날로 많아지는데, 또 백성을 모아서 군사로 삼고 공역(公役)이라 이름하여 신포(身布)를 요구하니, 진실로 배불리 먹고 건강해지며 분발해서 기세가 대단해져 가지고 임금에게 적이 되는 자에게 대항하기를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하물며 도망하거나 사망한 자도 모두 면하도록 허락받지 못하여 대정(代定)하기를 책임지우기 때문에, 그 집이 이미 부서지고 그 뼈가 이미 썩었는데도 고아나 과부·경독(熒獨)으로서 요행히 생존한 자는 예전처럼 징수를 독촉받게 되며, 한 사람이 도망하거나 죽으면 그 해(害)가 이웃까지 미칩니다. 또한 상사(上司)에서는 군역(軍額)이 빈 것과 포(布)가 모자라는 것을 위하여 매년 세초(歲抄)1811)의 명령을 내리는데, 백성의 수는 한정이 있어 수령(守令)이 가혹하게 침학(侵虐)하니, 백성들은 어린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응하게 됩니다. 수령은 해마다 더하여 그 신역(身役)을 내게 되니, 이는 실로 백성의 큰 해(害)이며 왕정(王政)의 큰 폐단입니다. 신은 삼가 너그럽게 구휼(救恤)할 사목(事目)의 조목을 갖추어 성상께서 보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사목(事目)은 다음과 같습니다.</p> <p>무릇 군병(軍兵)·공천(公賤)은 올해인 정사년(丁巳年) 이전의 신역(身役)이나 포흠(逋欠)1812) 한 것은 모두 면제해 줍니다. 전에 군병·공천으로서 신역(身</p> | <p>不堪命者。況冗兵日增，供億日廣，又取民爲軍，名以公役，責之身布，固難望其飽健奮迅，敵王所愾。況其逃亡、物故者，皆不許免，而責其代定。故其家已破，其骨已朽，而孤寡熒獨之幸存者，徵督如舊，一人逃故，而害及隣族。又上司爲軍額之闕、徵布之縮，每下歲抄之令，而民數有限，守令苛虐，民抱孩提，垂涕泣而應之。守令增年而出其身役，此實民生之巨害，王政之大弊。臣謹條具寬恤事目，以俟睿覽。”其事目云：</p> <p>凡軍兵公賤，今丁巳以上身役逋欠者，竝爲蕩滌。曾前軍兵公賤有身役之類，物故而未有公文者，令里有司，合同都副尹，一一查出，錄其某年物故，報于守令，轉報于監司，該曹去其名籍，除其身布，令本官成給物故公文，吏胥之阻撻者，隨現重治。軍士兒弱者，自十五歲以下，錄其實年于元案，亦令里有司，查出報使，如物故之例，除名軍案，俟其年滿充役。自今以後，年未滿十五者，切勿定役。逃亡者亦爲查出，如或隱漏而有去處，令所在官，徵</p> |
|--|--|---|

| | | |
|--|--|--|
| | <p>役)이 있었던 무리로서 사망하였으되 공문(公文)이 없는 자는, 마을의 유사(有司)로 하여금 도부윤(都副尹)과 합동으로 일일이 조사해내서 모년(某年)에 사망하였다고 적어 수령(守令)에게 보고하고 감사(監司)에게 옮겨 전하면, 해조(該曹)에서는 명적(名籍)1813) 에서 삭제하고 그 신포(身布)를 면제하며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사망하였다고 공문을 만들어 주게 하되, 아전으로서 막는 자는 드러나는대로 중하게 다스리도록 합니다. 군사(軍士) 가운데 어린아이인 자로서 15세 이하이면 원안(元案)에 그 실제 나이를 기록하고, 역시 마을의 유사(有司)로 하여금 조사해내어 보고하게 하는 것은 사망한 자의 예(禮)와 같으며, 군안(軍案)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서 군역(軍役)에 충당하도록 하여, 이제부터 이후로 나이가 15세 미만인 자는 일체 군역에 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도망한 자도 조사해내되, 혹 은루(隱漏)하여 간 곳이 있으면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그 신역(身役)을 징수하게 하고, 만약 간 곳이 없으면 즉시 그 신역을 면제하고 절대로 인족(隣族)을 침해하여 징수하지 말도록 합니다. 무릇 백성으로서 이사한 자가 있으면, 각기 그 통수(統首)가 이정(里正)에게 알리고 도부윤(都副尹)이 관사(官司)에 알려서 이사한 공문(公文)을 만들며 소재관(所在官)에 희부하도록 하여 그 신역(身役)을 징수하게 하되, 이사하고서도 공문이 없는 자는 또한 이임(里任)으로 하여금 적발(摘發)하여 벌포(罰布) 1필(匹)을 징수하도록 합니다. 그 가운데 신역(身役)이 있는 자는 예(例)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무릇 백성으로서 유리(流離)한 자도 수령(守令)의 침학(侵虐)으로 말미암아 그 거주지에 안주할 수 없게 한 것이니, 신역(身役)에서 도망한 자는 또한 본관(本官)의 수령으로 하여금 할봉(割俸)조비(措備)하여 숫자대로 상납(上納)하게 하고 절대로 이웃을 침해하여 징수하지 말도록 하며, 반드시 그 도망자(逃亡者)가 나타난 후에야 그만두도록 합니다. 그 본관(本官)에서 도망 물고(物故), 새로 이사한 자의 대납(代納)을 만약 30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이임(里任)과 수령(守令)을 가장 무거운 벌로 과</p> | <p>其身役，如無去處，卽除其役，切勿侵徵於隣族。凡民有移徙者，各其統首聞于里正，都副尹聞于官，作移去公文，令到付於所在官，令徵其身役。移去無公文者，亦令里任摘發，徵罰布一疋，其有身役者，依例徵捧。凡民之流離，亦由於守令之侵虐，使不得安其居也。其逃亡之身役，亦令本官守令，割俸措備，依數上納，切勿侵徵於隣族，必其逃亡者現出，然後乃已。其本官之代納逃亡、物故、新徙者，若不於三十日內報聞，則里任及守令，從重科罪。逃亡、物故、兒弱等役布，既爲蠲除，則經用必不足。今年則令各衙門，隨其闕乏之數，量出所儲以助之，明年則行戶布口算之法，以爲大正其本，爲民長久之計。臣又按，還上一事，非古法也。周有賒貸之法，漢有賑貸之令，皆所以通民有無、恤民困急者也。漢宣用常平之法，而民甚便之，及晚宋乃有青苗之法，而民始怨苦。蘇軾所謂：“其與之也，雖良民，不免妄用；及其收之也，鞭撻必用，而官府多事。”者，實切至之論也。我國《大典》有常平之制，而無還上之</p> |
|--|--|--|

| | | |
|--|---|---|
| | <p>죄(科罪)하도록 합니다. 도망·몰고·아약(兒弱) 등의 역포(役布)를 면제하게 되면 경비가 반드시 부족하게 될 것이니, 금년에는 각 아문(衙門)으로 하여금 그 부족한 수에 따라 저장한 바를 헤아려 내어서 보조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호포(戶布)를 인구에 따라 계산하는 법[口算]을 시행하여 그 근본을 크게 바꾸도록 해서 백성을 위한 장구(長久)한 계책으로 삼도록 하소서.</p> <p>신이 또 환상(還上)의 한 가지 일을 살펴보면, 예전의 법이 아닙니다. 주(周)나라에는 사대(賒貸)의 법이 있었고, 한(漢)나라에는 진대(賑貸)의 영(令)이 있었으니, 모두 백성의 있고 없는 것을 통하게 하고 백성의 곤란하고 급한 것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漢)나라 선제(宣帝)가 상평(常平)의 법을 쓰자 백성들이 매우 편하게 여겼는데, 만송(晩宋)에 이르러 청묘법(靑苗法)1814)이 있게 되자 백성들이 처음으로 원망하고 고통스럽게 여겼습니다. 소식(蘇軾)이 말한 바, ‘줄 때는 비록 양민(良民)이라 하더라도 헛되게 쓰는 것을 면치 못하고, 거둘 때는 반드시 쓸 것이라고 채찍질하듯 독촉하니, 관부(官府)에 일이 많다.’고 한 것은 실제로 절실한 말입니다. 우리 나라의 《대전(大典)》에는 상평(常平)의 제도는 있으나 환상(還上)의 법은 없습니다. 환상(還上)은 대개 근세에 시작된 것인데, 실제 왕안석(王安石)의 청묘법(靑苗法)을 모방하여 때에 따라 거두고 풀어 주는 것이니, 향현(鄉縣)의 부호(富戶)가 장리(長利)1815)를 놓는 일이지 본래 임금된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아닙니다. 오늘날 관부(官府)에 일이 많고, 관리가 간사하고 탐욕스러우며, 백성들이 근심하고 괴로와하며, 도호(逃戶)가 나라의 반이나 되며, 출고 굶주린 자가 감옥에 가득 차는 것은 모두 이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크게 들어 나라 일이 경황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 갑자기 논의할 수는 없으나, 그 조적(糶糶)1816)을 징수하는 어려움과 가난한 백성이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폐단은 평년(平年)보다 심한 바가 있습니다. 신</p> | <p>法。還上蓋肇於近歲，而實倣王安石之靑苗，乘時斂散，鄉縣富戶長利之事，本非王者所宜行也。今日官府之多事、官吏之奸濫、兵民之愁痛、逃戶之半國、凍餒之滿獄，悉由於此也。今連歲大侵，國事卒卒，有不可遽論於是者。然其糶糶徵納之艱，貧民愁痛之弊，有甚於平歲。臣愚以爲，凡八路被災尤甚者，宜一切勿收，以待償於來秋。雖曰有賑政之需，與其既取而還與之以耗費之，無寧因其在民而遂與之，以行清淨之惠也。且今年木花稍實，可通貿易前歲京倉常平穀之未散者及諸州縣倉穀之有餘儲者。常平本穀存留者，宜許民買賣，而減其直於市價以利民。又出於方春糶貴之時，以作來秋貿穀之本，則常平之法，亦有馴致之道，而還上之弊，亦可以少省矣。</p> <p>又曰：</p> <p>天降禍亂，國運中否，至于庚辛，飢饉之慘，振古所無。加之無父無君之說，橫挈一世，宗廟不尊，紀綱大壞，國勢岌岌。聖上卽位之初，首黜罪人，</p> |
|--|---|---|

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대개 팔도(八道)에서 재해(災害)가 더욱 심한 곳은 일체 징수하지 말고 내년 가을에 상환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비록 진휼 정책(賑恤政策)에 필요한 물자가 있어야 하기는 하지만, 이미 받았다가 다시 주어서 소비하는 것보다는 백성에게 있는 것에 의하여 그대로 주어서 청정(淸淨)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낫겠습니다. 또 금년에는 목화(木花)가 조금 충실하게 되었으니, 전해에 경창(京倉)의 상평곡(常平穀)으로 흠어 주지 않은 것 및 여러 주(州)·현(縣)의 창곡(倉穀)에 여분의 저장에 있는 것과 사고파는 것을 통할 수 있습니다. 상평(常平)은 본래 곡식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을 백성들에게 매매하도록 허락하여 시가(市價)의 값을 감해서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봄에 사들인 쌀이 귀해졌을 때 내어서 내년 가을 사들일 곡식의 자본으로 삼는 것이니, 또한 순치(馴致)1817)의 도리가 있으며, 환상(還上)의 폐단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이 화란(禍亂)을 내려 국운(國運)이 중도에 막혔다고들 말하는데, 경신년(1818)에 이르러서는 기근의 참상이 예전에 없었던 바이며, 거기에 더하여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다는 설(說)이 온세상에 횡행하여, 종묘(宗廟)는 존숭(尊崇)되지 않고 기강(紀綱)은 크게 무너졌으며 나라의 형세는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성상(聖上)께서 즉위하신 초에 먼저 죄인(罪人)을 물리쳐 조정(朝廷)을 맑게 하고 포핍(逋欠)을 면제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구제하였으며, 무기(武器)를 정비하여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대비로 삼고, 백성들의 숫자를 모두 연합하여 정치의 기강으로 삼았습니다. 또 날마다 경연(經筵)에 나가서 성현(聖賢)의 학문을 강구(講求)하고 백성들의 폐해를 힘써 구제하여 너그럽게 사랑하는 교지(教旨)를 수차 내리셨으니, 이것이 어찌 우리 나라 억만년의 무궁한 경사가 아니겠습니까? 신이 크게 근심하는 바 또 일찍이 이러한 몇 가지에 있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대개 죄인을 물리쳤다고는 하나, 조정이

以清朝廷; 蕩除逋欠, 以救民生; 修飭戎器, 以爲禦侮之備; 摠聯民數, 以爲治理之紀。 方且日御經筵, 講求聖賢之學, 勤求民瘼, 屢下優恤之教, 此豈非我國家, 億萬年無疆之休哉? 抑臣之所大憂者, 又未嘗不在乎茲數者。 蓋罪人雖黜, 而朝廷未盡正, 民志未盡服。 其徒黨私人, 尙懷覬覦嘗試之計, 其甚者又操不事之心, 自詭爲向背之圖。 逋欠雖曰蕩滌, 而有司可吝惜, 守令奸貪, 民未蒙實惠。 戎器雖若修飭, 而卒伍未鍊, 利器不畜, 有不足以備陰雨, 而戡禍亂者。 民數雖若摠聯, 而疾苦未除, 綱紀未布, 恐不足以保民生而成治化也。 經筵雖日御, 而卒卒晷刻, 論說章句, 顧何足以究聖人之心法, 明保世之大猷? 寬恤雖屢下, 而弊政未祛, 實惠難行, 顧何足以壯邦本, 行厚下之政也? 歷考前代帝王, 始初雖若清明, 而終至於昏亂, 衰亡傾覆而不可救者, 蓋由於操心不剛, 行事不誠, 而又不謹乎終始之際也。 仰惟聖明, 念茲在茲, 勿怠勿荒。 殿下之行五統、紙牌之法者, 蓋將以除民患、均賦役也。 其法行之一年矣。 除患、均

| | | |
|--|---|---|
| | <p>모두 바르게 되지 않았고 백성의 마음도 모두 복종하지 않아서, 그 도당(徒黨)의 사인(私人)이 오히려 분수에 넘치는 일을 바라서 한번 시험해 보려는 계책을 품고 있으며, 심한 자는 또 섬기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향배(向背)하려는 계책을 꾸미고 있습니다. 포핌(逋欠)을 면제한다고는 하나, 유사(有司)가 인식하고 수령(守令)이 간사하고 탐욕스러워 백성이 실제 혜택을 입지 못합니다. 무기(武器)를 만약 정비한다 하더라도 군졸이 숙련되지 않고 예리한 무기를 쌓아두지 않으면 음우(陰雨)에 대비하고 화란(禍亂)을 그치게 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백성의 숫자를 만약 모두 연합한다고 하더라도, 질고(疾苦)가 없어지지 않고 기강이 펴지지 않는다면 백성의 생활을 보장하고 치화(治化)를 이루기에는 부족할 듯합니다. 경연(經筵)에 날마다 나아간다고는 하나, 시간을 허둥지둥 보내면서 장구(章句)를 논하여 말하니, 돌아보건대, 성인(聖人)의 심법(心法)을 연구하고 세상을 보전하는 큰 계책을 밝히기에 어찌 족하겠습니까? 너그럽게 사랑하는 정치에 어찌 족하겠습니까? 너그럽게 사랑하는 교지를 수차 내린다고는 하나, 피폐한 정치를 없애지 못하고 실제 혜택이 시행되기 어렵다면, 돌아보건대 나라의 근본을 견고하게 하고 아랫사람에게 후하도록 시행하는 정치에 어찌 족하겠습니까? 전대(前代)의 제왕(帝王)을 두루 상고해 보면, 처음에는 비록 맑고 밝은 것 같다가도 결국에는 혼란에 이르게 되었으니 쇠망(衰亡)하여 전복되더라도 구할 수 없었던 것은, 대개 마음가짐이 강건하지 않고, 일을 행함이 성실하지 않으며 또 시작하고 끝맺을 때를 삼가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의 공적이 있는 것만을 생각하시며 태만하지 말고 황음(荒淫)하지 말도록 하소서.</p> <p>전하(殿下)께서 오통(五統)1819) · 지패(紙牌)1820) 의 법(法)을 시행하신 것은, 대개 장차 백성의 근심을 없애고 부역(賦役)을 고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p> | <p>賦之法，不爲兼舉，則彼五統、紙牌者，特爲貪官苛吏厲民之階，而殿下發政施仁之舉，未免得其一而失其二，有其始而無其終也。苟殿下加意於此而決行之，則向所謂服民志、究實惠、保民生、固邦本、戡禍亂者，未嘗不在於斯，而撥亂救民之功，實無讓於古哲王矣。</p> <p>上嘉納之，令廟堂稟處。</p> |
|--|---|---|

| | | |
|---|---|---|
| | <p>습니다. 그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는데, 근심을 없애고 부역을 고르게 하는 법을 겸해서 받들어 행하지 않았으므로, 저 오통·지패는 다만 탐욕스럽고 가혹한 관리가 백성을 학대하는 발판이 되어, 전하께서 정치를 시행하고 인정을 베푸시는 일은, 하나를 얻고 둘을 잃으며 시작은 있으나 그 끝이 없음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진실로 전하께서 여기에 뜻을 두시어 결단코 시행하신다면, 앞서 말한 바 백성의 뜻을 복종시키고 실제 혜택을 생각하며 나라의 근본을 건고하게 하고 화란(禍亂)을 평정하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며, 난리를 평정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공(功)은 실로 예전의 현명한 임금에게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가상하게 여겨서 받아들이고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p> | |
| <p>숙종 7권, 4년(1678 무오 / 청 강희(康熙) 17년) 10월 3일(경오) 2번째기사</p> |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허적(許積)이 경기(京畿)의 우심(尤甚)한 읍(邑)은 추등(秋等)의 수미(收米) 6두(斗)를 봉납(捧納)하여 본읍(本邑)에 유치하였다가 조곡(糶穀)으로 삼아 기민(飢民)을 진구(賑救)하고, 춘등(春等)의 6두(斗)는 특별히 전감(全減)하며, 그 다음의 읍은 춘등에 3두를, 그 나머지는 모두 춘등에 1두를 감(減)하고, 백관(百官)의 반록(頒祿)도 지난해에 의하여 각각 1두(斗)를 감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모두 옳게 여기었다. 좌의정(左議政) 권대운(權大運)이 아뢰기를,</p> <p>“남양(南陽)의 대부도(大阜島)와 인천(仁川)의 자연도(紫燕島)에서는 옛날에 사슴을 사냥하여 진상(進上)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람의 거주가 점점 성(盛)하여 사슴이 거의 절종(絶種)되다시피 하여 비싼 값으로 무역하여다 납부하므로 실로 고질된 폐단이 되었으니, 청컨대 금년을 한하여 권도로 감하소서,”</p> | <p>○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許積請：“京畿尤甚邑秋等收米六斗，捧留本邑爲糶穀，賑救飢民；春等六斗特爲全減。 其次邑減春等三斗，其餘皆減春等一斗。 百官頒祿，依上年各減一斗。” 上竝可之。 右議政權大運以南陽大阜島、仁川紫燕島，舊有臘鹿進上之規，而卽今人居漸盛，鹿幾絕種，重價貿納，實爲痼弊，請限今年權減。 上命永罷之。</p> |

| | | |
|--|--|---|
| | 하니, 임금의 명하여 영구히 혁파하게 하였다. | |
| 숙종 8권, 5년(1679 기미 / 청 강희(康熙) 18년) 3월 21일(병진) 2번째기사 | 임금이, 이혼(李焜)과 이엽(李焜), 그리고 그 어머니와 아내가 배소(配所)로 갈 때 지나는 고을마다 인부·말·음식 등 일체의 공제를 각별히 거행할 것을 명했다. | ○上命焜、焜母與妻，隨往配所時，所經邑夫馬供饋等事，各別舉行。 |
| 숙종 8권, 5년(1679 기미 / 청 강희(康熙) 18년) 11월 10일(신축) 3번째기사 | <p>일전에 임금이 《서경(書經)》 홍범(洪範) 조를 읽다가 기자(箕子)의 일에 감격을 받아 별도로 근시(近侍)를 보내어 그 사당에 제사를 올리고자 하여 예조를 시켜 대신에게 물으니, 대신들이 모두 도덕을 높이고 성인(聖人)을 사모하는 도리에 합당하다고 대답하므로, 임금이 도승지에게 명하여 가서 제사지내게 하고 제문은 대제학에게 지어 올리게 하였다. 그런데 예조에서 또 아뢰기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사전(祀典)에 역대의 시조(始祖)는 중사(中祀)에 기재되어 제물은 소뢰(小牢)2214) 를 썼고, 문선왕(文宣王)2215) 도 또한 중사에 기재되어 있으나 제물은 양 대신 소를 썼으며 찬품(饌品)의 많고 적음도 현격히 다르니, 오늘날 기자(箕子)가 역대 시조의 반열에 있고 보면 마땅히 소뢰를 써야 하나, 임금이 별도로 근시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는 것은 그 뜻이 도덕을 높이고 성인을 사모하는 데 있고 보면, 예전에 태뢰(太牢)2216) 로써 공자(孔子)의 사당에 제사한 것과 같으므로, 특별히 태뢰를 쓰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고 하니, 임금이 옳다고 하고, 이날에 옥당(玉堂)의 관원을 소대(召對)케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정유악(鄭維岳)에게 이르기를,</p> <p>“기자(箕子)의 사당에 경(卿)이 가서 제사를 올려야 하겠으니, 부디 극진히 정성을 드리고 사당이나 무덤에 무너진 곳이 있으면 일일이 써서 아될 것이며, 후손 중에 녹용(錄用)할 만한 자가 있거든 또한 조사하여 아뢰라.”</p> | ○日前，上講書《洪範》，感箕子事，欲別遣近侍，祭其廟，令禮曹問于大臣。大臣皆以合於尊道、慕聖之義爲對。上命都承旨往祭，祭文令大提學製進。禮曹又以爲：“《五禮儀》祀典，歷代始祖載於中祀，祭用小牢，文宣王亦載中祀，而以牛代羊，饌品多寡亦懸殊。今箕子在歷代始祖之列，則當用小牢，而自上別遣近侍致祭，意在尊道、慕聖則與古之太牢祀孔子者同，似當特用太牢。”上可之。是日，召對玉堂官。上謂都承旨鄭維岳曰：“箕子廟卿當往祭，須極致誠。廟宇墳塋，如有頽圯處，一一書啓。後孫中可用者，亦探聞。”維岳曰：“檀君、東明王廟，亦在箕子廟傍，自世宗朝春秋祭以中牢，此亦可一體致祭。”上可之。維岳仍請簡其驥從，歷觀西路形勝，上 |

| | | |
|---|--|---|
| | <p>하였다. 정유악이 아뢰기를,</p> <p>“단군(檀君)과 동명왕(東明王)의 사당도 기자의 사당 옆에 있어, 세종(世宗) 때부터 봄가을에 중외(中宰)2217) 로써 제사를 올렸습니다. 여기에도 전부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의 좋다고 하였다. 정유악이 이어 따라갈 사람을 선발하여 서로(西路)의 형승(形勝)을 두루 살펴볼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것도 윤택하였다.</p> | <p>亦許之。</p> |
| <p>숙종 9권, 6년(1680) 경신 / 청 강희(康熙) 19년) 1월 6일(병신) 1번째기사</p> | <p>비변사(備邊司)에서 황해도(黃海道)의 좁고 험한 길목의 고개를 지키는 일과 영변(寧邊)의 성(城)에 양곡을 저장하는 일들의 사목(事目)을 계획 작성해서 재가를 얻었다. 그 사목(事目)에,</p> <p>“1. 동선(洞仙) 일대의 좁고 험한 길목 고개를 지키는 일은 근처 둔전(屯田)의 병졸을 모집 작대(作隊)해서 하고, 그 둔(屯)의 장(長)은 혹은 첨사(僉使) 만호(萬戶)를 승진시키거나 혹은 그 별장(別將)의 칭호를 그대로 두되, 모두 군사 임무를 잘 아는 자를 가리어 보낼 것. 둔곡(屯穀)은 속하여 있는 곳에 명령해서 종전대로 맡아 다스리게 할 것.</p> <p>1. 수안(遂安)의 총명둔(聰明屯)은 민오리(民五里)·건은치(件隱峙), 동대현(東大峴)의 세 영(嶺) 근처에 있으니 총명둔으로 하여금 세 영을 나누어서 지키게 할 것.</p> <p>1. 수안(遂安)의 방원(防垣)은 가장 중요한 길목이어서 위에 명을감령(明兀岬嶺)·이령(泥嶺)·여차령(汝次嶺) 등의 세 영이 있으니, 문산(文山) 이소둔(二所</p> | <p>○丙申/備局磨鍊黃海道嶺隘防守及寧邊城儲穀等事目啓下， 其事目一曰。洞仙一帶嶺隘防守， 以近處屯田募卒作隊爲之， 而其屯長， 或陞僉使、萬戶， 或仍其別將之稱， 皆以曉解軍務者擇送， 屯穀令所屬處依前句管。 一曰。遂安聰明屯， 在於民五里、件隱峙、東大峴三嶺近處， 以聰明屯使之分守三嶺。 一曰。遂安防垣最是要路， 而上有明兀岬嶺、泥嶺、汝次嶺等三嶺， 以文山二所屯， 移置於防垣洞口， 而革屯監， 改以萬戶， 使之兼守三嶺。 一曰。板積院在遂安、瑞興之界， 乃中和、黃州、祥原衆路之會， 而處於大峴、馬躡、良坡三嶺洞口。 且近件隱峙、東峴兩嶺路， 此最要衝必守之地，</p> |

| | | |
|--|--|---|
| | <p>屯)을 방원(防垣)의 동구(洞口)에 옮겨 두고, 둔감(屯監)2264) 을 폐지하여 만호로 고쳐서 세 영(嶺)을 겸해서 지키게 할 것.</p> <p>1. 판적원(板積院)은 수안(遂安)과 서흥(瑞興)의 경계에 있어서, 곧 중화(中和)·황주(黃州)·상원(祥原)의 여러 길이 합하는 곳이고, 대현(大峴)·마유(馬踰)·양파(良坡) 세 영(嶺)의 동구에 있다. 또 건은치(件隱峙)·동현(東峴) 두 영에 가는 길에 가까워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반드시 지키어야 할 땅인데, 그 근처에 다만 감영(監營) 선적둔(善積屯)이 있으니 이 둔을 판적(板積)에 옮겨 설치하고, 별장(別將)에 소모(召募)라는 칭호를 더하여서 가리어 보낼 것.</p> <p>1. 위라둔(位羅屯)은 양파령(良坡嶺) 안에 있어서 비록 밖에 판적의 수비가 있으나 영 안에도 또한 방비가 없을 수 없다. 둔소(屯所)는 옛 곳에 그대로 두고, 만호(萬戶)를 설립해서 과수를 보고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p> <p>1. 신당둔(新塘屯)과 병풍둔(屏風屯)을 합하여 한 진(鎭)을 만들고, 만호를 설치해서 하여금 자은(自隱)·독현(秃峴)·노파(老峽) 등 세 영을 과수하게 할 것.</p> <p>1. 소기(所己)·범한(凡汗)의 두 둔(屯)도 또한 합하고 만호 한 사람을 두어서 하여금 산리령(酸梨嶺)을 지키게 할 것.</p> <p>1. 자비령(慈悲嶺)은 영로(嶺路)가 매우 험준해서 적(賊)이 반드시 들어올 땅은 아니다. 영 아래에 자비사(慈悲寺)가 있으니, 사변이 있으면 본관(本官)에서 군졸 약간 명을 정해 보내서 지키는 중[僧]과 더불어 힘을 합하여 수비하고 감영(監營)과 병영(兵營)에서는 적당하게 군사를 첨가할 것.</p> | <p>而其近處只有監營善積屯，以此屯移置於板積，而別將加召募之號擇差。 一曰。 位羅屯在於良坡嶺內，雖外有板積之守，而嶺內亦不可無備。 屯所則仍存舊處，設立萬戶，以把守應接。 一曰。 新塘屯、屏風屯合爲一鎭，而設置萬戶，使之把守自隱、秃峴、老峽等三嶺。 一曰。 所己、凡汗兩屯，亦合置萬戶一人，使守酸梨嶺。 一曰。 慈悲嶺嶺路極險，非賊必入之地，而嶺下有慈悲寺，有事則本官定送軍卒若干人，與守僧合力守備，監、兵營量宜添兵。 一曰。 黃州之易界、蕪草乃兩嶺路狹傍，有深源寺，寺下有頭用屯，屯監仍舊號擇送，率屯卒與寺僧，分守兩嶺，而賊勢強盛，則監、兵營亦爲添兵。 一曰。 慈悲、深源兩寺，本官勿侵雜役，使僧徒安集，以爲緩急之用。 一曰。 佛地屯在黃州之城古介內，東三屯在黃州之上山嶺下。 此兩屯亦仍別將之號，而擇人差遣，使之各守當嶺，而敵勢若盛，則監、兵營添兵防守。 一曰。 件隱峙、安心峴、舊洞仙三嶺介在黃鳳之間，而近處無屯，有事則監司、兵使遣兵防守。 一曰。</p> |
|--|--|---|

| | | |
|--|--|--|
| | <p>1. 황주(黃州)의 역계(易界)·무초(蕪草)의 두 영(嶺)은 길이 좁고 옆에 심원사(深源寺)가 있다. 절 아래서 두용둔(頭用屯)이 있으니, 둔감(屯監)은 옛 칭호를 그대로 두고 가려 보내어, 둔졸(屯卒)과 절의 중을 거느리고 두 영을 나누어서 지키되, 적의 세력이 강성하면 감영(監營)과 병영(兵營)에서 또한 군사를 더 보낼 것.</p> <p>1. 자비사(慈悲寺)와 심원사(深源寺)의 두 절에 대해서는 본관(本官)에서는 잡역(雜役)을 시키지 말고, 중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모여서 위급한 때의 소용이 되게 할 것.</p> <p>1. 불지둔(佛地屯)은 황주(黃州)의 성고개(城古介) 안에 있고, 동삼둔(東三屯)은 황주의 상산령(上山嶺) 아래에 있다. 이 두 둔(屯)도 또한 별장의 칭호를 그대로 두고 사람을 가리어 보내고 하여금 각각 맡은 영을 지키게 하되, 적의 세력이 만약 강성하면 감영과 병영에서 군사를 더 보내어 지킬 것.</p> <p>1. 건은치(件隱峙)와 안심현(安心峴)과 구동선(舊洞仙)의 세 영은 황주와 봉산(鳳山)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근처에는 둔이 없으니, 사변이 있으면 감사(監司)와 병사(兵使)가 군사를 보내어 지킬 것.</p> <p>1. 동선(洞仙)과 극성(棘城)은 정방 산성(正方山城)이 그 사이에 있으니, 병사는 정방 산성으로 들어가서 과수를 보고, 극성은 바다와 들에 임하여 있어서 자못 넓어 지키기가 어려우니, 나무를 많이 심어서 본도(本道)2265)의 우후(虞候)로 하여금 맡아서 기르게 할 것.</p> <p>1. 동선(洞仙) 및 여러 영은 반드시 나무가 있어야만 지키는 데 유의할 것인</p> | <p>洞仙、棘城則正方山城在其兩間，兵使入正方把守，而棘城際海，野頗廣難守，多種樹木，使本道虞候句管長養。一曰。洞仙及諸嶺，必有樹木，可有益於防守，而今火田遍滿，山嶺濯濯。使本官嚴禁火田，竝禁山火及斫伐之患，兵使使虞候，春秋巡審，本道監司以此爲守令殿最。一曰。嶺隘所屬萬戶、別將，一體自本道殿最，而黜陟與奪之際，必先議知於體府。一曰。屯卒召募時，依各屯例，只以流民募集作隊，而本官原籍之民，則一切不許入屬，以杜本官失民丁之弊。一曰。防垣、板積兩處萬戶、別將，勢難固守，防垣則谷山府使主之，板積則遂安郡守主之，各率邑兵來守。而瑞興則雖不能專力於板積，必須相機接應，俾無掣肘之患。一曰。遂安、谷山前屬瑞興大峴山城，而今嶺隘守備最繁，兩邑倉穀、軍器，雖置大峴，而邑宰邑兵，則專守於嶺隘。一曰。監司僻處海曲，形勢隔絕，命令不能趁時相通，今宜於瑞興山城，設行營，若有敵患，監司，來駐此城，以爲嶺隘應援。若有海警，仍駐首陽本城接應事，永爲定</p> |
|--|--|--|

| | | |
|--|--|--|
| | <p>데, 지금 화전(火田)이 산 꼭대기까지 널리 팍 차 있어서 민둥산이 되어 버렸다. 본관으로 하여금 화전을 엄금하고 아울러 산불도 금하고 벌목(伐木)의 근심도 없게 해야 한다. 병사는 우후(虞候)로 하여금 봄과 가을에 순행하여 살피게 하고, 본도 감사는 이로써 수령(守令)에 대해서 성적 평가의 기준을 삼을 것.</p> <p>1. 영애(嶺隘)에 속한 만호와 별장은 일체 본도로부터 성적을 평가하되, 물리치고 승진시키고 주고 뺏을 때에는 반드시 먼저 상의해서 체부(體府)에 알릴 것.</p> <p>1. 둔(屯)의 군사를 모집할 때에는 각둔의 전례에 의한다. 다만 유랑(流浪)하는 백성을 모집하여 떼를 짓고, 본 고을에 원적(原籍)을 둔 백성은 일체 입속(入屬)함을 허가하지 않아서 본 고을이 민정(民丁)을 잃는 폐단을 막을 것.</p> <p>1. 방원(防垣)과 판적(板積) 두 곳의 만호, 별장은 형편상 굳게 지키기가 어려우니, 방원은 곡산 부사(谷山府使)가 맡고 판적은 수안 군수(遂安郡守)가 맡되, 각각 고을의 병졸을 거느리고 와서 지키고, 서흥(瑞興)은 비록 판적에 전력을 다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기회를 살피서 접응(接應)하여 서로 간섭해서 제지(制止)되는 근심이 없게 할 것.</p> <p>1. 수안과 곡산은 전에는 서흥의 대현 산성(大峴山城)에 속하여 있었는데, 지금은 영의 수비가 가장 긴요하므로, 두 고을의 창고 곡식과 군기(軍器)는 비록 대현에 두더라도 고을 수령과 고을의 병졸은 전적으로 영의 길목을 지킬 것.</p> | <p>式。 一曰。 寧邊鐵甕城甚完， 而倉穀甚少。 令監司從速運入城屬各邑所儲及近處屯倉於城內， 而本府外倉， 亦爲撤入， 使之恒存數萬人三四朔之糧事， 分付本道。</p> |
|--|--|--|

| | | |
|--|---|--|
| | <p>1. 감사(監司)가 궁벽하게 해곡(海曲)2266) 에 처하여 형세가 막히고 끊어져서 명령이 능히 때에 맞추어 서로 통하지 못할 것이니, 지금 마땅히 서흥 산성(瑞興山城)에 행영(行營)2267) 을 설치해서 만약 적의 환란이 있으면 감사가 이 성에 와서 주둔하여 영의 수비를 응원하고, 만약 바다의 경보(警報)가 있으면 그대로 수양(首陽) 본성(本城)에 머물러서 대처(對處)하는 일을 영구히 정한 법으로 할 것.</p> <p>1. 영변(寧邊)의 철옹성(鐵甕城)은 매우 튼튼하지만, 창고 곡식이 매우 적다. 감사로 하여금 속히 성에 속하여 있는 각 고을에 저장된 곡식과 근처의 둔(屯) 창고에 저장된 곡식을 성 안으로 운반하여 들여오고 본부의 외창(外倉)에 있는 곡식도 또한 거두어 들여와서 항상 수만 명의 3, 4개월분의 양식이 있게 하는 일로 본도에 분부하라.”</p> <p>하였다.</p> | |
| <p>숙종 9권, 6년(1680) 경신 / 청 강희(康熙) 19년) 2월 3일(계해) 1번째기사</p> | <p>반궁(泮宮)2273) 에 감(柑)을 나누어 주고 유생(儒生)에게 제술(製述)을 시험 보였는데, 이사명(李師命)이 수석을 차지하였으므로 과거에 급제한 자격을 주었다.</p> | <p>○癸亥/頒柑泮宮，試儒生製述，李師命居魁，賜第。</p> |
| <p>숙종 9권, 6년(1680) 경신 / 청 강희(康熙) 19년) 2월 18일(무인) 1번째기사</p> | <p>명안 공주(明安公主)의 혼례를 행하였다. 승지(承旨)를 보내어 술을 하사하였다.</p> | <p>○戊寅/行明安公主昏禮，遣承旨宣醞。</p> |
| <p>숙종 9권, 6년(1680) 경신 / 청 강희(康熙) 19년) 3월 23일(임자) 1번째기사</p> | <p>대신과 비변사 당상관을 인견(引見)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원정(李元禎)이 허적에게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할 때에 미곡과 포목을 넉넉하게 주어 서 잔치의 소용에 돕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안석과 지팡이 주기를 미처 시행하지 못하였는데, 조정이 바뀌어서 허적이 한강(漢江) 밖</p> | <p>○壬子/引見大臣、備局堂上。吏曹判書李元禎請於許積賜几杖時，優給米布，俾助宴需，上從之。【賜几杖未及行，而朝廷變易，積迸出江外，仍不得</p> |

| | | |
|---|---|---|
| <p>숙종 10권, 6년(1680 경신 / 청 강희(康熙) 19년) 8월 3일(기미) 1번째기사</p> | <p>으로 쫓겨나갔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었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당상관(堂上官)을 인견(引見)하였다.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신의상(申翼相)의 상소문 가운데 ‘명기(名器)2640) 가 날로 가벼워진다.’고 말한 것은 진실로 사리에 합당하여, 이미 이를 칭찬하고 장려하도록 우악(優渥)한 내용으로 비답(批答)하였는데, 박신규(朴信圭)를 형조 판서에 특별히 제수한 것 또한 이때에 나왔으니, 하정(下情)에 의혹스러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간신(諫臣)의 상소문 가운데 명기(名器)를 아끼라는 말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박신규가 일찍이 승지(承旨)가 되었을 적에 그 의복을 보고 청렴함을 알 수가 있었다. 하직(下直)하는 수령(守令)을 인견할 때에 선사(善事)2641) 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언급하였더니, 박신규가 말하기를 ‘수령이 선사하는 것은 진실로 금단(禁斷)할 수가 있는 것이니, 뇌물을 주는 것을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폐단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가 쓸 말한 줄을 알았다. 마침 형조 판서의 빈자리가 있었던 까닭에 뽑아서 등용한 것뿐이다.” 하였다. 호조 판서 민유중(閔維重)이 아뢰기를, “충청도·황해도 두 도에서 기유년(2642) 에 양전(量田)2643) 하지 못한 각 고을의 양전을 끝마칠 일은 지난해에 본조의 계품(啓稟)으로 인하여 ‘내년으로 물려 행하라.’고 분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전하는 일은 매우 중대하므로 해</p> | <p>行。】 ○己未/引見大臣、備局堂上。 金壽恒曰：“申翼相疏中言，名器日輕云者，誠爲切當，既爲優批嘉獎。 朴信圭刑判特除，又出此際，下情不能無惑。” 上曰：“諫臣疏中，惜名器之言是矣。而朴信圭曾爲承旨時，見其衣服，可知其清。 下直守令引見時，以不爲善事之意言及，則信圭以爲，守令善事者，固可禁斷，而不受賂遺，則可無此弊云。 故知其可用，適有刑判之闕，故擢用耳。” 戶曹判書閔維重曰：“忠清、黃海兩道己酉未量各邑畢量事，往年因本曹啓稟，以明年退行爲教，而量田之舉甚重，連歲飢饉之餘，恐有擾民之弊。” 壽恒亦以民力未蘇爲難，上曰：“姑待明年更稟。” 維重曰：“御營軍上番者，每習砲射於興德洞。 此事始於二十年前，本非舊日教場也。 其地左貞陵右聖廟，放砲喧聒，甚爲未安。 且國都設置方位，各有攸當。 東則太廟、文廟，西則社稷壇，北則厲壇。 如行刑、閱武之事，皆屬陰，故乃行於西北方，其意有在。 且御營軍習操於沙河里，此乃王城之東，陽明之</p> |
|---|---|---|

| | | |
|--|---|---|
| | <p>마다 잇달아 기근이 든 끝에는 백성들을 소란스럽게 할 폐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p> <p>하고, 김수항 또한 민력(民力)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여 어렵겠다고 말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우선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계품(啓稟)하라.”</p> <p>하였다. 민유중이 아뢰기를,</p> <p>“어영군(御營軍) 가운데 상번(上番)2644) 하는 자가 매양 흥덕동(興德洞)에서 포(砲)쏘기를 연습하는데, 이러한 일이 20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나, 본래 옛날의 교장(敎場)2645) 이 아닙니다. 그 땅 왼쪽의 정릉(貞陵)과 오른쪽의 성묘(聖廟)가 포(砲)를 쏘기 때문에 시끄러우니, 매우 미안(未安)합니다. 또 국도(國都)에는 방위를 설치하여 각기 해당하는 바가 있으니, 동쪽에는 태묘(太廟)·문묘(文廟)가, 서쪽에는 사직단(社稷壇)이, 북쪽에는 여단(厲壇)이 이에 해당됩니다. 형벌을 시행하거나 열무(閱武)하는 일 같은 것은 모두 음(陰)에 속하기 때문에 곧 서방이나 북방에서 시행하니, 그 뜻이 달리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영군이 사하리(沙河里)에서 조련(操鍊)하는데, 이곳은 곧 왕성(王城)의 동쪽으로서 양명(陽明)한 방위이니, 어찌 조련하는 땅으로 알맞겠습니까?”</p> <p>하고, 민정중(閔鼎重)이 아뢰기를,</p> <p>“효종조[孝廟朝]에 삼청동(三清洞)을 국도(國都)의 진산(鎭山)2646) 아래에 있다고 하여 병사를 모아서 포(砲)를 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그</p> | <p>方，豈宜習操之地？”閔鼎重曰：“孝廟朝以三清洞爲國都鎭山之下，不許聚兵砲射。厥後軍門屢請，亦作敎試之場。若此類，皆不可矣。”金錫胄曰：“興德洞砲射，果未安，請擇他處，移設砲射。沙河里本非敎場，孝廟嘗幸穆陵，晝停此處，以爲可合敎場，仍作御營習陣處矣。露梁有訓局敎場，兩軍門習陣，列不相值。宜罷沙河里敎場，亦於露梁習陣。”上從之。領中樞金壽興曰：“上年五月廿五日，大臣、三司請對入侍，亟請宋時烈邦刑也，許積極論時烈之罪狀，至曰：‘寧陵遷奉時，壙中有水之狀、蟲蛇出入之跡，時烈終始諱之。’又曰：‘及其啓陵時，執事之人出入壙中者，衣帶盡濕，出而拂拭，則時烈見而嗔怒。’云，此其意，必欲構成時烈之罪。臣於其時，待罪摠護使，遷陵時顛末，臣固詳知。而卽今入侍諸臣之中，金萬基、閔維重俱是其時都監堂上，終始同參，此兩人亦可知其言之誣罔矣。當初啓陵前一日，先王引見臣，臣以啓陵後，不可只令都監堂上奉審之意陳達，則自上命原任大臣、三司之官奉審。臣詣陵所後，</p> |
|--|---|---|

| | | |
|--|---|---|
| | <p>후 군문(軍門)에서 여러 번 칭하여 또한 가르치고 시험보는 교장(教場)으로 만들어버렸지만, 이와 같은 따위는 모두 불가(不可)합니다.”</p> <p>하고, 김석주(金錫胄)가 아뢰기를,</p> <p>“흥덕동(興德洞)에서 포(砲)를 쏘는 것은 과연 미안하니, 다른 곳을 골라서 포를 쏘는 곳을 옮겨 설치하도록 하소서. 사하리는 본래 교장이 아니었는데, 효종께서 일찍이 목릉(穆陵)2647) 에 거둥할 적에 이곳에 주정(晝停)2648) 하시다가, 교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고, 이어서 어영청에서 습진(習陣)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량(露梁)에 훈국(訓局)2649) 의 교장이 있어서 양쪽 군문(軍門)에서 습진하지만, 으레 서로 만나지 아니하니, 마땅히 사하리 교장을 혁파하시고, 또 노량에서 습진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중추(領中樞) 김수흥(金壽興)이 아뢰기를,</p> <p>“지난해 5월 25일에 대신(大臣)과 삼사(三司)2650) 에서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면서, 송시열(宋時烈)의 방형(邦刑)을 급하게 칭하였습니다. 허적(許積)이 송시열의 죄상(罪狀)을 극렬히 논하였는데, 심지어 이르기를 ‘영릉(寧陵)2651) 을 천릉(遷陵)할 때에 광중(曠中)에 물기가 있는 모양과 벌레·뱀이 드나든 흔적을 송시열이 시종 숨겼습니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계릉(啓陵)할 때에 집사관(執事官)2652) 가운데 광중에 출입하는 자들이 의대(衣帶)가 다 젖었으므로 나와서 물기를 털었는데, 송시열이 이를 보고 진노(嗔怒)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그 뜻이 반드시 송시열이 죄를 없애서 씌우려고 한 것입니다. 신이 그때에 총호사(摠護使)2653) 로 있었으므로 천릉할 때의 전후 사정을 신이 진실로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시(入侍)한 여러</p> | <p>又爲狀請，令來會陵下二品以上，並與三司諸官，全數奉審。 及梓宮奉出之後，王子、大臣以下，又入曠中，更加詳審，仍爲聯名狀啓。 伊時廷臣之進去者，幾至半朝廷，役夫之數，亦且累百，則衆所目覩，焉可誣也？ 且孝廟臨御時，親近內侍輩，幾盡出去，趙希孟、徐後行外，年少內官亦多執事者。 梓宮之將奉出也，臣以右相，入曠中，行拭梓宮之事，仍與內官輩奉出。 苟有沾濕之事，此輩亦豈不陳達於先王乎？ 意在構罪，白地猝辦如是，自上亦必下燭其時事狀，而恐或未詳，故敢達矣。” 維重曰：“承旨任相元亦以玉堂官進參，可以知之矣。” 相元曰：“臣果進參，而目覩其無水患矣。” 壽興袖出一紙曰：“此奉審時聯名狀啓也。 內間亦必有儀軌，而或恐未經睿覽，膽來矣。” 中官受而進于御前。 壽興曰：“此事自有源委，寧陵石物，屢有罅隙，年年塗灰，群下固已憂慮矣。 靈林令翼秀上疏之後，一種議論有曰：‘遷陵之後，宋時烈當先被重罪。’ 蓋孝廟大喪時，有宜用水原之議，而群議多以水原爲不合，以其爲畿輔重鎮，形勢不</p> |
|--|---|---|

신하 중에서 김만기(金萬基)·민유중(閔維重)은 모두 그 당시 도감 당상(都監堂上)으로서 시종 같이 참여하였으니, 이 두 사람도 또한 그 말이 무망(誣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초에 하루 전날 선왕(先王)께서 신(臣)을 인견(引見)하셨는데, 신이 계룡한 뒤에 단지 도감 당상만으로 봉심(奉審)하게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진달(陳達)하였더니, 위에서 원임 대신(原任大臣)과 삼사(三司)의 관원에게 명하여 봉심하게 하였습니다. 신이 능소(陵所)에 이른 뒤에 또 장청(狀請)2654 하여 능(陵) 아래에 와서 모인 2품 이상으로 하여금 모두 삼사(三司)의 여러 관원과 함께 전수(全數)가 봉심하도록 하였습니다. 재궁(梓宮)이 나온 뒤에도 왕자(王子)·대신 이하가 또 광중에 들어가 다시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어서 연명(聯名)하여 장계(狀啓)하였습니다. 그때 조정의 신하 가운데 그곳에 나아간 자가 거의 조정의 반수에 이르렀고 역부(役夫)의 숫자 또한 수백 명이었으니, 여러 사람이 목격한 것을 어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효종[孝廟]께서 임어하실 때에 친근한 내시(內侍)들이 거의 다 나갔는데, 조희맹(趙希孟)·서후행(徐後行) 외에 나이 어린 내관(內官) 또한 집사자(執事者)가 많았습니다. 재궁을 장차 받들어 내올 즈음에 신이 우상(右相)으로서 광중에 들어가서 재궁을 터는 일을 하였으며, 이어서 내관(內官)들과 받들고 내왔는데, 물기에 젖은 일이 있었다면 이 무리들도 어찌 선왕(先王)께 진달(陳達)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뜻이 죄를 얹어 씌우려는 데 있어 덕도 없이 이와 같이 꾸며대었으나, 위에서 또한 반드시 그때 일의 형편을 통촉하고 계실 터이지만, 혹시 잘 알지 못하실까 염려되므로 감히 진달(陳達)하는 것입니다.”

하고, 민유중이 아뢰기를,

“승지 임상원(任相元)도 또한 옥당관(玉堂官)으로서 나아가서 참여하였으니,

便, 而且不無日後五患之慮故也。 此亦初非時烈之議也。 咸陵府院君李澥、延陽府院君李時白二人, 力主是論, 而時烈有所言及矣。 逮有遷陵之議, 而全歸其罪於時烈以爲, 勸用此地之人, 當受其罪。 上年積之請罪時烈者, 蓋有所從來矣。” 壽恒曰: “以水原爲不可用者, 非特李澥、李時白而已, 故相臣李景奭、李厚源、元斗杓諸人, 亦皆力爭矣。” 壽興曰: “梓宮合木事, 亦爲歸罪於時烈, 至曰: ‘啓陵後, 梓宮有頤, 則時烈當受其罪。’ 以此兩款, 欲爲嫁禍於時烈, 而及其啓陵也, 壙中無事, 梓宮漆色不渝, 板材聯附處, 少無罅隙。 或有無聊而不悅者, 楨、栴兄弟辭色, 最爲不平矣。” 維重曰: “遷陵後, 臣親自封標, 都監堂上金徽、郎廳鄭維岳及中官等, 出來看審。 奉出外梓宮, 則甚爲乾燥, 若有水患, 則其時金徽等, 豈不啓聞耶?” 萬基曰: “積之所謂蟲蛇出入之跡者, 蓋指石間罅隙, 有蛇退之皮, 而裳石下地正處小石, 有微濕之氣, 故石塊及土, 伊時中官, 褰袂封進, 此則元非壙中近處也。 至於外梓宮內遺衣服, 亦

| | | |
|--|---|---|
| | <p>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상원이 말하기를,</p> <p>“신도 과연 나아가서 참여하였는데 물기의 걱정이 없었던 것을 목격하였습니다.”</p> <p>하였다. 김수흥이 종이 한 장을 꺼내며 아뢰기를,</p> <p>“이것이 봉심(奉審)할 적에 연명(聯名)한 장계(狀啓)입니다. 내간(內間)에도 또한 반드시 의궤(儀軌)가 있을 것이지만, 혹시 예람(睿覽)을 거치지 아니하였을까 염려하여 베껴 왔습니다.”</p> <p>하니, 중관(中官)이 받아서 어전(御前)에 바쳤다. 김수흥이 아뢰기를,</p> <p>“이 일은 스스로 전후 사정이 있습니다. 영릉(寧陵)의 석물(石物)에 여러 차례 틈이 벌어졌으므로 해마다 석회를 발랐었는데, 여러 아랫사람들이 진실로 우려하였습니다. 영림령(靈林令) 이익수(李翼秀)가 상소한 뒤에 일종의 의논이 있기를 ‘천릉(遷陵)한 뒤에 마땅히 송시열이 먼저 중죄(重罪)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대개 효종(孝宗)의 대상(大喪) 때에 수원(水原)에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논이 있었으나, 여러 사람의 의논은 수원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가 많았으니, 그것은 수원이 기보(畿輔)의 중진(重鎭)이라 형세가 불편하고 또 후일에 다섯 가지 걱정거리[五患]가 없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처음에 송시열의 의논이 아니었으며, 함릉 부원군(咸陵府院君) 이해(李澥)·연양 부원군(延陽府院君) 이시백(李時白) 두 사람이 힘써 이러한 의논을</p> | <p>似微有濕氣，而此則壙中久閉，薰蒸例致如此，而梓宮漆色宛然，只一隅手掌大，似欠光明矣。” 壽興曰：“壙中奉審時，柁手撫外梓宮內，而言曰：‘東邊有濕氣。’云。 臣亦同在壙中，故以手撫之，則有若人身上汗氣，蓋亦薰蒸之致，而內外梓宮之間，所用衣櫛甚多，未及取出也。 雖似有濕氣，及置壙外，旋即乾燥。 其中紅染衣櫛，不渝如新，故竝爲封進新陵封閉之日，皆爲還用矣。 又聞積以爲：‘啓陵時，時烈不欲渠之入見，先囑摠護使，以渠在十里外村舍爲辭。’云，此事亦有曲折矣。 臣之以啓陵事，出往舊陵也，先王引見臣，臣以許積來到陵下，可共奉審之意陳達。 當其開壙也，臣屢送郎廳於積處，請入來進參，則積在作門外，托以情勢難安，終不入來，而啓陵後，臣復以封陵時領議政例爲率執義封標，則啓陵時開封，領相亦宜爲之，請自朝廷指揮云，則自上下諭于臣及許積處，使之依此舉行，而以有旨中滯之故，積乃以未見下諭爲辭，固請不來。 此外又有誣罔事，尹鑄所撰先王行狀以爲，先王將欲親臨於啓陵時，金壽興、</p> |
|--|---|---|

| | | |
|--|--|---|
| | <p>주장하였고 송시열이 언급한 것도 있었는데, 천릉(遷陵)의 의논이 있게 되자, 그 죄를 송시열에게 온통 뒤집어 씌우면서 말하기를, ‘이러한 땅에 쓰자고 권한 사람은 마땅히 그 죄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허적(許積)이 송시열을 죄주자고 청하였던 것은 대개 소종래(所從來)가 있었습니다.”</p> <p>하고, 김수항이 아뢰기를,</p> <p>“수원에 쓸 수 없다고 한 자는 비단 이해·이시백뿐만 아니었기 때문에 상신(相臣) 이경석(李景奭)·이후원(李厚源)·원두표(元斗杓) 등 여러 사람도 또한 모두 힘써 간쟁(諫爭)하였던 것입니다.”</p> <p>하였다. 김수홍이 아뢰기를,</p> <p>“재궁을 합목(合木)한 일도 또한 송시열에게 죄를 돌렸으며, 심지어 ‘계릉(啓陵)한 뒤에 재궁에 탈이 있으면, 송시열이 마땅히 그 죄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조문을 가지고 송시열에게 그 화(禍)를 전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릉하게 되자, 광중(壙中)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고 재궁의 칠색(漆色)이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판재(板材)를 이어붙인 곳도 조금도 틈이 없었습니다. 혹 무료(無聊)하여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정(李楨)·이남(李柟) 형제(2655)의 말씨와 얼굴빛이 가장 불평하였습니다.”</p> <p>하고, 민유중이 아뢰기를,</p> <p>“천릉한 뒤에 신이 친히 봉표(封標)(2656) 하였고, 도감 당상(都監堂上) 김휘(金徽)·낭청(郎廳) 정유악(鄭維岳)과 중관(中官) 등이 나와서 간심(看審)하였습</p> | <p>張善激力止之云，豈非可駭之甚者乎？臣之出往舊陵也，先王引見下教曰：‘欲於啓陵日舉動。’及至啓陵之後，先王下諭于臣曰：‘猝得腰痛，不得親臨，哀痛罔極。有面議事，成殯後卿即入來。’下諭中所謂面議者，以梓宮之內，恐有空缺，欲爲開蓋而驗之者，故入城之路，歷見許積，共議此事，則積以爲：‘親見士夫家遷葬甚多，雖年久者，棺中萬無空缺之理。今若開蓋，則又將改梓宮，事體未安。’云。臣以許積所言仰達，仍陳重大之意，則命勿開蓋，只令加漆，仍下教曰：‘初欲親往，不意啓陵日望哭拜起之際，猝有所傷腰痛甚苦，不得親往奉審。’云，而鑄之白地猝辦，如是誣罔之狀，誠可痛心。自上親臨，有何利害於臣身，而必欲止之乎？”錫胄曰：“臣於向日，與積相接之時頻數，凡係近年事，無言不及，而至於遷陵時水患云云之說，未嘗出口頭，此必筵中猝辦之言也。”上曰：“積既賜死，而以他事言之。次玉獄事時，俊己乃是其奴，而掩置其家，終始牢諱，其他欺誣之狀，不言可知。到今予已知其欺誣，大臣諸臣，有何引</p> |
|--|--|---|

| | | |
|--|--|--|
| | <p>니다. 외재궁(外梓宮)을 받들어 내오니 매우 건조하였는데, 만약 물기의 걱정이 있었다면, 그때 김휘 등이 어찌 계문(啓聞)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p> <p>하였다. 김만기가 아뢰기를,</p> <p>“허적의 이른바 ‘벌레와 뱀이 드나든 흔적’이란 것은 대개 돌 사이의 틈에 뱀이 허물벗은 껍질이 있는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상석(裳石) 밑의 땅에 바로 있었던 작은 돌에 습기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돌덩이와 흙을 그때 중관(中官)이 보자기에 싸서 봉진(封進)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광중 가까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외재궁 안에 남은 의복 또한 습기가 조금 있는 듯 하였으나, 이것은 광중이 오랫동안 닫혀 있었으므로 더운 수증기가 으레 이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궁의 칠색의 완전하였고, 다만 한쪽 구석에 손바닥 크기만큼 빛이 바랜 것 같았을 뿐입니다.”</p> <p>하고, 김수흥이 아뢰기를,</p> <p>“광중(壙中)을 봉심(奉審)할 때에 남(柁)이 외재궁 안을 손으로 만지면서 말하기를, ‘동쪽 가장자리에 습기가 있다.’고 하였는데, 신도 또한 광중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손으로 그 곳을 만져보았더니, 마치 사람 몸 위에 땀 기운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개 또한 더운 수증기의 소치(所致)였습니다. 그러나 내재궁(內梓宮)과 외재궁(外梓宮) 사이에 사용된 의대(衣襯)가 매우 많았지만 미처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중에 붉게 물들인 의대는 변하지 않고 새것과 같았기 때문에 아울러 봉진했고, 신릉(新陵)을 봉해서 단는 날에 모두 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들으니, 허적이 이르기를 ‘계릉(啓陵)할 때에 송시열은 자신이 들어가 보고 싶어하지 아니하여 먼저 총호사(摠護使)에게 부탁하고</p> | <p>嫌之事? 且闕中有先朝備忘記冊子, 遷陵時果以腰痛, 不得親臨。 鑿之所謂金某、張某力止之說, 予亦知其誣罔矣。” 鼎重曰: “梓宮聯板, 本非時烈之事, 而論者又謂己亥大喪, 用時烈之議, 小斂時不爲結絞, 故不得已用聯板。 此則禮有小斂時, 面上不爲結絞, 大斂時結絞之文, 故時烈引此以達。 而一邊之論, 以此歸罪矣。” 壽恒曰: “自內以日氣甚熱, 恐有浮氣爲教, 故大臣與時烈相議, 以爲事勢如此, 不必拘於禮文, 旋即結絞。 其間時刻不久, 豈以不爲結絞而有此附板之事哉? 況梓宮之不足, 非但高廣爲然, 長亦不足, 此豈不爲結絞之致耶?” 壽恒以經費匱竭, 凡事務從節省, 請權停會盟宴, 上從之。 故事, 功臣會盟後, 上親臨頒軸, 【即功臣教書軸。】仍設宴。 舊功臣嫡長、忠義並與宴, 靡費萬許。</p> |
|--|--|--|

| | | |
|--|---|--|
| | <p>는, 자신은 10리 밖의 촌사(村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였다.’고 합니다만, 이 일은 또한 곡절이 있습니다. 신이 계릉하는 일 때문에 구릉(舊陵)으로 나아갔을 때 선왕께서 신을 인견(引見)하셨는데, 신은 허적이 능(陵) 아래에 이르렀으므로 함께 봉심할 수 있다는 뜻을 진달(陳達)하였습니다. 그 광중을 열 때에 신이 여러 번 낭청(郎廳)을 허적에게 보내어 들어와 진참(進參)하도록 청했는데, 허적은 작문(作門)2657) 밖에서 정세(情勢)가 편안하지 못하다고 핑계하고 끝내 들어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계릉한 뒤에, 신이 다시 ‘봉릉(封陵)할 때에는 영의정(領議政)이 으레 집의(執義)를 거느리고 봉표(封標)하는 것이므로 계릉할 때에도 개봉(開封)하는 일을 영상(領相)이 또한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조정에서 지휘하소서.’ 하니, 위에서 신과 허적에게 하유(下諭)하여 이에 의해서 거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지(有旨)가 중간에서 지체되었기 때문에 허적은 하유하신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며 굳이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또 무망(誣罔)한 일이 있습니다. 윤휴(尹鑄)가 편찬한 선왕(先王)의 행장(行狀)에서 ‘선왕께서 장차 계릉할 때에 친림(親臨)하고자 하였으나, 김수흥(金壽興)·장선징(張善澂)이 힘써 이를 정지시켰다.’고 하는데, 어찌 심히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구릉(舊陵)으로 나갈 적에 선왕께서 인견(引見)하시고 하교(下敎)하시기를, ‘계릉하는 날 거동(舉動)하고자 한다.’고 하셨으나, 계릉할 때가 된 후에 선왕께서 신에게 하교하시기를, ‘갑작스레 요통(腰痛)을 얻어서 친림(親臨)할 수가 없으므로 애통하기 그지없다. 직접 의논할 일이 있거든 성빈(成殯)한 뒤에 경(卿)이 즉시 들어오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하유(下諭)하신 중에 이른바 ‘직접 의논하라.’고 한 것은 재궁 안에 이지러진 것이 있을까 염려하여 뚜껑을 열어 검사하여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성(入城)하는 길에 허적을 차례로 만나서 이 일을 함께 의논하였더니, 허적이 말하기를 ‘사대부 집에서 천장하는 것을 친히 본 적이 매우 많은데, 비록 세월이 오래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棺) 가</p> | |
|--|---|--|

| | | |
|--|---|--|
| | <p>운데가 이지리질 리가 만무하다. 지금 만약 뚜껑을 열면, 또 장차 재궁을 바꾸어야 할 것이니, 사체(事體)에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허적이 말한 것을 앙달(仰達)하고, 이어서 중대하다는 뜻을 진달(陳達)하였더니, 명하여 뚜껑을 열지 말고 다만 칠(漆)을 더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처음에는 친히 왕립하려 하였으나, 생각지도 않게 계룡하는 날 망곡(望哭)하며 절하고 일어나고 할 즈음에 갑작스레 다친 허리의 통증이 너무 괴로워서 친히 가서 봉심(奉審)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희가 터무니없이 이처럼 갑자기 뒤집어씌우니, 무망(誣罔)한 모양이 진실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위에서 친림하시는 것이 신의 몸에 무슨 이해 관계가 있어서 반드시 이를 정지시키고자 하였겠습니까?”</p> <p>하였다. 김석주가 아뢰기를,</p> <p>“신이 지난날 허적과 더불어 서로 접할 때가 자주 있어서 무릇 근년에 관계된 일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천룡할 때에 물기 운운(云云)한 말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입밖에 낸 적이 없으니, 이것은 반드시 연석(筵席)에서 갑자기 한 말일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허적이 이미 사사(賜死)되었지만 다른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차옥(次玉)의 옥사(獄事) 때에 준기(俊己)가 바로 그의 종이었는데, 그의 집에 숨겨 주고 시종 굳게 숨겼으니, 그 밖의 속이고 무망(誣罔)한 형상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 지금 나는 이미 그가 속이고 무망한 것을 알고 있는데,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무슨 인혐(引嫌)할 일이 있겠느냐? 또 대궐 안에는 선조(先朝)의 비</p> | |
|--|---|--|

| | | |
|--|---|--|
| | <p>망기(備忘記) 책자가 있다. 천릉할 때에 과연 요통 때문에 친림하지 못하였는데, 윤희가 김모(金某)·장모(張某)가 힘써 정지시켰다고 말한 것은 나도 또한 그가 무망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p> <p>하였다. 민정중이 아뢰기를,</p> <p>“재궁의 연판(聯板)은 본래 송시열의 일이 아니었는데, 논의하는 자가 또 기해년(2658) 대상(大喪) 때에 송시열의 의논을 써서 소렴(小斂)할 때에 결교(結絞)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연판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릅니다. 이것은 예(禮)에, ‘소렴할 때에 면상(面上)에는 결교하지 아니하고, 대렴(大斂)할 때에 결교한다.’는 글이 있기 때문에 송시열이 이것을 인용하여 계달(啓達)하였는데, 한쪽에서의 의논은 이것을 가지고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p> <p>하고, 김수항이 아뢰기를,</p> <p>“안에서 ‘일기가 몹시 더워서 부기(浮氣)가 있을까 염려된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대신과 송시열이 서로 상의하여 말하기를 ‘일의 형세가 이와 같으니 반드시 예문(禮文)에 얽매일 것이 없다.’고 하고, 도로 즉시 결교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이의 시각이 오래 되지 않았는데, 어찌 결교하지 않았다 하여 이렇게 부판(附板)할 일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재궁의 부족은 높이와 너비만이 그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길이도 부족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결교하지 아니한 소치이겠습니까?”</p> <p>하였다. 김수항이 경비가 고갈되기 때문에 모든 사무를 절약하고 줄이기 위해 회맹연(會盟宴)을 임시로 정지하자고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고사(故</p> | |
|--|---|--|

| | | |
|---|--|---|
| | <p>事)에, 공신(功臣)이 회맹(會盟)한 뒤에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축(軸)을 내려 주고 【즉 공신 교서(功臣敎書)의 축(軸)이다.】 이어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구공신(舊功臣)의 적장(嫡長)과 충의(忠義)가 모두 연회에 참여하였으므로, 허비하는 경비가 만냥(萬兩)으로 계산되었다.</p> | |
| <p>숙종 10권, 6년(1680 경신 / 청 강희(康熙) 19년) 윤8월 19일(을사) 3번째기사</p> | <p>경술년(2751)과 을묘년(2752)의 일을 이일선(李一善)에게 탐문(探問)하라고 명하였는데, 호조 판서 민유중(閔維重)이 탐문한 뒤에 청대(請對)하니, 대신(大臣)들도 또한 같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이일선에게 물었을 때 무어라고 하던가?”</p> <p>하니, 민유중이 말하기를,</p> <p>“신이 이일선에게 ‘황제께서 이남(李柟)과 말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니 ‘황제가 건청문(乾淸門)에 앉아서 사신을 불러들였습니다. 황제가 사신에게 「등정(登程)한 것이 며칠이나 되며, 연세(年歲)는 얼마인가?」라고 묻고 또 「그대 나라의 신하(臣下)들이 착하지 못하여 백성들을 못살게 군다.」고 하였는데, 이밖에 다른 이야기는 없었다.’ 하였습니다.”</p> <p>하니,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p> <p>“신하들이 착하지 못하다는 말은 강신(強臣)에게 제어 받는다는 따위의 말과는 구별이 있습니다. 또 신하가 비록 착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외국(外國)의 일을 청주(淸主)가 어떻게 하여 알겠습니까?”</p> <p>하고, 민정중(閔鼎重)이 말하기를,</p> | <p>○命以庚戌、乙卯年事，探問李一善。戶曹判書閔維重探問後請對，大臣亦同入。上曰：“問於一善則云何?” 維重曰：“臣問一善曰：‘皇帝之與柟言者云何?’ 曰：‘皇帝坐乾淸門，招使臣入，皇帝問使臣登程幾日，年歲幾何，又言爾國臣下不善，侵困百姓云，而此外無他說話。’ 金壽恒曰：“臣下不善之說與受制強臣等語有別。且臣下雖不善，外國之事，淸主何以知之?” 閔鼎重曰：“若乙卯致祭說話一節，加於一節矣。” 上曰：“曾前招問乙卯弔勅時諸譯，則皆以爲：‘張孝禮言：「先王常時，每在遼豫中，而早歲昇遐，故有此別樣致祭。」’云，而至於臣強之說，則始壽之外，無他得聞者矣。庚戌說話則今不須更問，而致祭說話一款，問於孝禮可知。使臣廻還後，始可得詳悉矣。” 蓋此言始發於庚戌柟之奉使時，及吳始壽爲弔勅遠接使，而適有再度致祭之舉，始壽遂託胡皇言，以實柟語。及</p> |

| | | |
|--|---|--|
| | <p>“을묘년에 치제(致祭)한 이야기 같은 것은 거기에다 보탬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전에 을묘년 조칙(吊勅) 때의 여러 역관(譯官)을 불러서 물었더니, 모두 ‘장효례(張孝禮)가 「선왕(先王)께서 보통 때 언제나 위예(違豫) 중에 계시다가 젊은 나이로 승하(昇遐)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달리 치제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였는데, 신하가 강하다고 하는 말에 이르러서는 오시수(吳始壽) 외에는 아무도 들은 자가 없었다. 경술년의 이야기는 지금 모름지기 다시 물어 볼 것도 없으나, 치제한 이야기는 장효례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신이 되돌아 온 뒤에라야 비로소 상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것이다.”</p> <p>하였다. 대개 이 말은 처음에 경술년에 남(柁)이 봉사(奉使)하던 때에 나왔는데, 오시수가 조칙 원접사(弔勅遠接使)가 되자 마침 두 번 치제하는 일이 있었으므로, 오시수가 마침내 오랑캐 황제의 말이라 칭탁하였으나, 사실은 남(柁)의 말이었다. 남(柁)이 역적으로 복주(伏誅)되자, 조정에서 비로소 그 일을 의심하여 사신의 행차 때에 이일선의 무리에게 탐문(探問)하라고 명하였는데, 사신이 돌아오기 전에 이일선이 마침 사칙(查勅)2753 을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민유증을 시켜 이것을 물어보게 한 것이었고, 이일선의 대답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김수항(金壽恒)이 또 말하기를,</p> <p>“금년의 농사는 처음에는 풍년이 들 전망이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연달아 풍수(風水)의 재해(災害)가 있어서, 양남(兩南)2754 지방은 흉년이 들지는 않겠으나, 그 밖의 다른 도(道)에는 재해를 입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기미년</p> | <p>柁逆誅，朝廷始疑其事，命於使臣之行，探問一善輩，而使臣未及還，一善適隨查勅出來，故使維重問之，一善所答如此云。壽恒又言：“今年農事，初有豐登之望，而不幸連有風水之災，兩南則雖不至失稔，其他各道，多有被災之處。己未以前諸般身役，若一時督捧，則民必不堪，請姑停捧。畿甸及湖西內浦各邑糶穀逋欠最多，而諸道新舊糶穀，有難一時收捧，亦姑停，只準捧當年分給之數爲當。”上從之。壽恒又言：“邊國翰送鷹於楨、柁兄弟之事，曾發於高山察訪姜碩昌狀啓中。武弁與宗班，蹊逕自別，而私相交結，事極可駭，不可不拿問矣。”上從之。承旨趙嘉錫因言：“官妓之不得率畜，明有禁令，而士夫間亦多冒禁。左相鄭知和今方率畜咸興妓，戶判閔維重亦率畜平壤妓，刷還之令，宜自此始。”又言主第營建之非，趙綱黜享之宜，上不省。翌日，大臣金壽恒、閔鼎重以斥名大臣爲非，嘉錫曰：“昔朱雲請斬張禹，吾之斥名，有何不可？”因怒而起出。壽恒請推，上以輕大臣，特罷之。臺諫請還收，不從。</p> |
|--|---|--|

| | | |
|--|---|--|
| | <p>2755) 이전에 제반 신역(身役)을 만약 일시에 봉납(捧納)하게 한다면, 백성들이 반드시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청컨대 우선 봉납하는 것을 정지시키소서. 기전(畿甸)과 호서(湖西) 지방의 내포(內浦)의 각 고을에서 적곡(糶穀)2756)의 포흠(逋欠)이 가장 많은데, 여러 도의 신구(新舊)의 적곡을 일시에 거두어 바치도록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니, 또한 우선 정지시키소서. 다만 봉납(捧納)에 준(准)하여 당년에 분급(分給)할 숫자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김수항이 또 말하기를,</p> <p>“변국한(邊國翰)이 이정(李楨)·남(楠) 형제에게 매[鷹]를 보낸 일이 일찍이 고산 찰방(高山察訪) 강석창(姜碩昌)의 장계(狀啓)에서 밝혀졌습니다. 무사[武弁]와 종실[宗班]은 가는 길이 서로 다른데, 사사로이 교결(交結)하였으니, 일이 지극히 놀랍습니다. 잡아와서 심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승지 조가석(趙嘉錫)이 인하여 말하기를,</p> <p>“관기(官妓)를 거느리고 살 수가 없는 것은 분명히 금령(禁令)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부(士大夫) 사이에는 또한 금령을 범하는 자가 많습니다. 좌상(左相) 정지화(鄭知和)가 지금 바야흐로 함흥 기생을 데리고 살고 있으며, 호조 판서 민유중(閔維重)도 또한 평양 기생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쇄환(刷還)의 명령은 마땅히 이들로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p> <p>하고, 또 말하기를,</p> <p>“공주(公主)의 제택을 영건(營建)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조경(趙綱)을 출항</p> | |
|--|---|--|

| | | |
|---|---|--|
| | <p>(黜享)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p> <p>하였으나, 임금이 읽어 보지 아니하였다. 다음날 대신 김수항(金壽恒)·민정중(閔鼎重)이, 대신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니, 조가석이 말하기를,</p> <p>“옛날 주운(朱雲)은 장우(張禹)를 목베자고 청하였는데, 내가 이름을 지적한 것 무엇이 불가(不可)한 점이 있는가?”</p> <p>하고, 노여워하면서 일어나서 나가자 김수항이 추국(推鞠)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대신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여 특별히 그를 파직시켰다. 대간(臺諫)에서 명령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p> | |
| <p>숙종 10권, 6년(1680 경신 / 청 강희(康熙) 19년) 윤8월 23일(기유) 3번째기사</p> |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당상관(堂上官)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p> <p>“이번에 국정의 여러 신하들이 올린 서계(書啓)에 대해 논상(論賞)하라는 교지(教旨)가 있었으나, 이번의 추국(推鞠)은 이미 전의 사건에 관계되고, 또 여러 신하들이 추국에 참여한 것은 자기 직분(職分) 안의 일인데, 무슨 기념할 만한 공로가 있다고 반드시 논상하려는 것입니까?”</p> <p>하고, 우의정 민정중(閔鼎重)도 잇달아서 이를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것은 선대 왕조의 구례(舊例)이고, 또 당초 옥사(獄事)의 실정이 지금에 이르러서야 다 드러났으니, 공로를 기념하는 은전을 그만둘 수가 없다.”</p> | <p>○引見大臣、備局堂上。 領議政金壽恒言：“茲者有鞠廳諸臣書啓論賞之教，而今番推鞠，既係前事。 且諸臣參鞠，自是職分內事，有何可紀之勞，而必爲論賞乎？” 右議政閔鼎重亦繼而爲言，上曰：“此是先朝舊例， 且當初獄情，到今畢露，紀勞之典，不可已矣。” 兵曹判書金錫胄言：“京畿失稔，營官需及使客奉供米，連年權減者，請仍爲減給。” 上從之。 上曰：“頃日筵中，承旨趙嘉錫以兩界官妓刷還事陳達，故有依事目，禁止之命矣。 更思之，左相因此不安， 其在事體， 不可無優待之</p> |

| | | |
|--|--|---|
| | <p>하였다. 병조 판서 김석주(金錫胄)가 말하기를,</p> <p>“경기가 실농(失農)하였으므로, 영수미(營需米)와 관수미(官需米) 및 사객(使客)의 봉공미(奉供米)로서 매년 임시로 줄일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줄여서 지급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지난날 경연(經筵) 중에서 승지 조가석(趙嘉錫)이 양계(兩界)의 관기(官妓)를 쇄환(刷還)하는 일을 진달하였기 때문에 사목(事目)에 의하여 금하라는 명령을 내렸었다. 그런데 다시 이를 생각해 보니, 좌상(左相)이 이로 인하여 불안해하므로 사체(事體)에 있어서 우대(優待)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다. 또 좌상이 노병(老病) 중에 곁에서 부축 간호할 사람이 없다면 또한 염려스러울 것이다. 관기 한 사람을 쇄환할 것인가의 여부는 관계되는 바가 그리 긴급하지 않으니, 쇄환하는 중에 거론하지 말라.”</p> <p>하였다. 김수항이 또 말하기를,</p> <p>“전 강서 현령(江西縣令) 조근(趙根)이 지난해 송상민(宋尙敏)의 옥사(獄事)에 체포당하여 형(刑)을 받고 정배(定配)되었습니다. 성명(聖明)께서 그 억울한 것을 통촉(洞燭)하시고 특별히 명하여 용서해서 석방하셨으나 지금 당자가 죽었습니다. 일찍이 선조(先朝)에서 시종(侍從)을 지냈었으니, 마땅히 긍휼(矜恤)하는 방도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p> <p>하고, 민정중·김석주도 또한 이것을 가지고 청하니, 임금이 명하여 직첩(職牒)</p> | <p>道。且左相老病中，傍無扶護之人，則亦爲可慮。一官妓刷還與否，無甚關緊，此則勿爲學論於刷還中。”壽恒又言：“前江西縣令趙根，去年被逮於宋尙敏獄事，受刑定配矣。聖明下燭其冤，特命宥釋，而今者身死。曾經先朝侍從，宜有矜恤之道矣。”鼎重、錫胄亦以爲請，上命還給職牒，別致賻。根剛直有文學，甚爲宋時烈所重。纔見清時，遽爾殞沒，善類惜之。故壽恒等筵白如此。上又曰：“宋尙敏之爲師訟冤，其情可恕。欲施矜恤之典，而儒生無職名可以還給，何以則可耶？”錫胄曰：“尙敏爲其師訟冤，雖知國有重律，而觸冒進言，蓋其意本欲爲師致死，刑戮、竄殛，置之度外矣。其時適與有瀆投書之變相會，終至鍛鍊成獄。天威嚴重，有論以逆律之教，至今國人莫不歎其節，而哀其死。今者聖明既燭事狀，若命除其罪名，則豈非美事？”鼎重曰：“尙敏本意，非欲毀已定之邦禮，以其師被人構誣，將陷死地爲至冤，極陳其受誣曲折，故不得不推本禮論而言。臣於前日，既已略陳於榻前矣。爲師訟冤，</p> |
|--|--|---|

| | | |
|--|--|--|
| | <p>을 돌려 주고 따로 부의(賻儀)를 보냈다. 조근은 강직하고 문학(文學)이 있어서 송시열(宋時烈)이 매우 중히 여겼는데, 막 청세(淸世)를 만나자마자 갑작스레 죽었다. 선류(善類)가 이를 애석하게 여겼기 때문에 김수항 등이 경연(經筵)에서 이와 같이 아뢰었던 것이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p> <p>“송상민(宋尙敏)이 스승을 위하여 억울함을 하소연한 그 정의는 용서해줄 만하다. 공훈하는 은전을 베풀고 싶은데, 유생(儒生)은 돌려줄 직명(職名)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p> <p>하니, 김석주가 말하기를,</p> <p>“송상민이 그 스승을 위하여 억울함을 하소연하였는데, 비록 국가에 엄중한 율(律)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위험을 무릅쓰고 진언(進言)하였으니, 대개 그 뜻은 본래 스승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였으므로 형륙(刑戮)·찬극(竄極) 따위는 도외시(度外視)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이유정(李有溍)이 투서(投書)의 변(變)과 서로 맞닥뜨려서, 마침내 단련(鍛鍊)하여 옥사(獄事)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천위(天威)가 엄중하시어 역율(逆律)로 논하라는 교지(教旨)가 계셨는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라 사람들이 그 절개에 감탄하고 그 죽음을 슬퍼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성명(聖明)께서 이미 사건의 정상을 통촉(洞燭)하셨으니, 만약 그의 죄명(罪名)을 없애라고 명하신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p> <p>하고, 민정중이 말하기를,</p> <p>“송상민의 본뜻은 이미 정해진 나라의 예(禮)를 허물어뜨리려고 하였던 것이</p> | <p>而身被逆名，實爲冤痛。 今若去其逆律二字， 則此足爲伸冤矣。” 上曰：“宋尙敏除其罪名， 子孫勿禁錮， 以示開釋之意。” 宋尙敏， 宋時烈同宗庶派， 居家孝友， 有卓絕之行。 師事時烈， 惟以窮經玩理爲心， 以父命， 黽勉就場屋， 中生員， 遂不赴學。 家貧竝日而食， 貌常泰然。 被鞫杖訊， 顏色不變， 竟死杖下， 吏胥輩亦皆歎服， 至是伸冤。</p> |
|--|--|--|

| | | |
|---|--|---|
| | <p>아니라, 그 스승이 남에게 무함을 당하여 장차 사지(死地)에 빠지려고 하였으므로, 지극히 원통하게 여겨 그 무고를 받은 곡절(曲折)을 극진하게 진술하였기 때문에 예론(禮論)을 궁구하여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이 전일에 이미 어탑(御榻) 앞에서 대략 아뢰었습니다만, 스승을 위하여 억울한 것을 하소연하다가 자신이 역적 이름을 뒤집어 썼으니, 실로 원통한 일입니다. 지금 만약 그 ‘역률(逆律)’이란 두 글자를 없애신다면 이것으로도 족히 신원(伸冤)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송상민에게 그 죄명(罪名)을 없애 주고, 그 자손도 또한 금고(禁錮)하지 않도록 하여 용서하고 석방하는 뜻을 보여 주도록 하라.”</p> <p>하였다. 송상민(宋尙敏)은 송시열(宋時烈)의 동종(同宗)의 서파(庶派)이었다. 집에 있을 때는 효도하고 우애스러워 남보다 빼어난 행실이 있었고, 송시열을 스승으로 섬겨 오로지 경서(經書)를 궁구(窮究)하고 그 이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 두었다. 그 아버지의 명령으로 억지로 장옥(場屋)2762)에 나아가서 생원(生員)에 합격하였으나, 마침내 과거(科擧)에는 응시하지 아니하였다. 집이 가난하여 하루에 한 끼를 먹었으나 모습은 항상 태연하였다. 국문(鞫問)을 당할 적에 장신(杖訊)하였으나 안색(顏色)이 변하지 아니했고 결국 장(杖)을 맞고 죽었는데, 이서배(吏胥輩)들도 또한 모두 탄복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신원(伸冤)되었다.</p> | |
| <p>숙종 10권, 6년(1680 경신 / 청 강희(康熙) 19년) 10월</p> | <p>주강(晝講)에 나아가서 특별히 명하여 영상(領相)·우상(右相)과 양사(兩司)에서 각각 1원(員)씩 같이 들어오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 <p>○御晝講。 特命領・右相、兩司各一員同入。 上曰：“焜、焜無罪而久處瘴鄉。 頃日朴致道及日昨李哲皆疏言之</p> |

| | | |
|----------------------|--|--|
| <p>11일(병신) 2번째기사</p> | <p>“이훈(李焜)·이엽(李煬)이 죄가 없는데도 오랫동안 장기(瘴氣)가 서린 시골에 처하게 하였으나, 지난날에 박치도(朴致道)와 어저께 이석(李皙)이 모두 상소하여 이를 말하였다. 비록 갑자기 완전 석방을 할 수가 없지만, 양이(量移)하고자 하는데 어떠하겠는가?”</p> <p>하니, 김수항(金壽恒)·민정중(閔鼎重)이 모두 말하기를,</p> <p>“이배(移配)한다면 반드시 굳이 쟁론(爭論)할 것도 없는데, 완전 석방하는 것은 미안(未安)합니다.”</p> <p>하고,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들도 또한,</p> <p>“대신들의 말한 것이 옳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명하여 그 도(道) 안에서 가까운 땅으로 이배(移配)하게 하였다. 임금이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송시열(宋時烈)을 수일 안에 입경(入京)시키라고 하고, 호조(戶曹)에 명하여 식물(食物)과 시탄(柴炭)을 수송하게 하였다. 민정중(閔鼎重)이 말하기를,</p> <p>“지난날에 허적(許積)의 무리들이 이계(李娃)를 신원(伸冤)시켰는데, 이것은 더욱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계는 나라의 일을 피인(彼人)2807) 들에게 다 고하였으므로, 인조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멸족(滅族)의 주벌(誅罰)을 더하고, 그 종부(從父)·형제(兄弟)까지 수금(囚禁)하라.’고 하였으나, 대신들이 수의(收議)한 것으로 인하여 다만 그 부자만을 주살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허적은 말하기를, ‘이계는 곧 매국(賣國)이지 반국(叛國)이 아니다.’라고 하여,</p> | <p>矣。雖不可猝然全釋，欲爲量移何如？金壽恒・閔鼎重皆言移配則不必固爭，而全釋則未安矣。三司諸臣亦以大臣言爲是。上命移配其道內近地。上以領中樞府事宋時烈當於數日間入京，命戶曹輸送食物柴炭。鼎重曰：“向日許積輩伸冤李娃，尤爲無據。娃盡告國事於彼人，仁祖以爲宜加赤族之誅，限其從父兄弟囚禁矣。因大臣收議，只誅其父子，而積以爲娃乃賣國而非叛國也，還其籍沒。仁祖寢疾不爲郊迎，則娃愬以無病。又告潛通天朝，賣國之罪，與叛國何異？此當初所以置之逆律者也。宜令刑官，考出其時文書，還置逆律矣。”上曰：“予未詳其顛末矣。今聞卿言，罪狀如許，殊可驚愕。還收初命，仍前置逆律。”壽恒曰：“頃日金萬重請外方監司以下，諸別星狎妓者，申飭禁斷。其意實惡向來淫縱之風，而國家宜行永久可遵之事，禁而不行，則徒傷國體，且必有苟且之事矣。”上曰：“設爲禁令，而不能如令，則反虧國體。宜令臺諫，糾正其尤甚沈湎者。”鼎重以故副提學李端相有恬退向學之操，請特加褒贈之</p> |
|----------------------|--|--|

| | | |
|--|---|----------------|
| | <p>그 적몰(籍沒)한 것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인조께서 병환으로 누웠으므로 교영(郊迎)하지 못하였는데, 이계가 ‘병이 아니라.’고 참소하였으며, 또 ‘명(明)나라와 몰래 내통한다.’고 였으니, 매국(賣國)의 죄와 반국(叛國)은 무엇이 다르니까? 이것은 당초에 그를 역율(逆律)에 두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마땅히 형관(刑官)으로 하여금 그때의 문서(文書)를 꺼내어 상고하게 하여 역율(逆律)에 도로 두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나는 그 전말(顛末)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는데, 지금 경의 말을 들으니, 죄상(罪狀)이 저와 같으므로 아주 깜짝 놀랐다. 처음의 명령을 도로 가두고 전처럼 그대로 역율(逆律)에 두도록 하라.”</p> <p>하였다.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p> <p>“지난날에 김만중(金萬重)이 청하기를, ‘외방(外方)의 감사(監司) 이하 여러 별성(別星)2808) 가운데 기생을 가까이하는 자들에게 금단(禁斷)할 것을 신칙(申飭)하소서.’라고 하였는데, 그 뜻은 실로 종래의 음란하고 방종한 풍속을 싫어하여 국가에서 영구히 준수할 만한 일을 시행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금단하여도 시행되지 않는다면 한갓 나라의 체모만 상(傷)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구차(苟且)스러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금령(禁令)을 베풀다고 하더라도 능히 금령과 같이 할 수가 없다면 도리어</p> | <p>典, 上從之。</p> |
|--|---|----------------|

| | | |
|---|---|--|
| | <p>나라의 체모만 이지러지게 되니, 마땅히 대간(臺諫)으로 하여금 그 가운데 가장 심하게 기생에게 빠진 자를 규찰하여 바로잡도록 하라.”</p> <p>하였다. 민정중이,</p> <p>“고(故) 부제학(副提學) 이단상(李端相)이 조용히 물러나서 학업에 열중한 지조(志操)가 있으니, 칭컨대 포상(褒賞)하고 증직(贈職)하는 은전을 특별히 더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 |
| <p>숙종 10권, 6년(1680 경신 / 청 강희(康熙) 19년) 10월 12일(정유) 3번째기사</p> | <p>다시 명나라에서 흘러온 사람 한등과(韓登科)·유태산(劉太山) 등에게 의자(衣資)를 내려 주고, 이어서 명하여 생전(生前)에 한하여 요(料)를 주게 하였다. 두 사람은 일찍이 을묘년(2809) 에도 아울러 의식(衣食)의 하사(下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때에 이르러 다시 상언(上言)하여 은전을 빌었던 것이다. 호조에서,</p> <p>“한등과는 나이가 늙었으니, 한등과에게만 요(料)를 주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p> <p>“똑같이 흘러 들어온 중국인들이다.”</p> <p>하고, 특별히 명하여 일체로 제급(題給)하게 하였다.</p> | <p>○復賜大明流來人韓登科、劉太山等衣資，仍命限生前給料。兩人曾於乙卯，竝蒙衣食之賜，至是復上言丐恩。戶曹以登科年老，請只給登科料，上以同是流落之漢人，特命一體題給。</p> |
| <p>숙종 10권, 6년(1680 경신 / 청 강희(康熙)</p> | <p>평안 병사(平安兵使) 이세화(李世華)가 교지에 응하여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p> | <p>○丙申/平安兵使李世華應旨上疏，略曰：</p> |

| | | |
|-----------------------------------|--|--|
| <p>19년) 12월 11일(병신) 1번째기사</p> | <p>“화기(和氣)를 손상기키고 원망을 사는 것이 옥수(獄囚)보다 더 심한 것은 없습니다. 신이 여러 번 주부(州府)를 맡았으므로, 외방의 일을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혹 살인에 관계된 일이거나 강상(綱常)을 범한 사건들은 해마다 옥사(獄事)가 쌓이고 밀려서 끝날 날이 없습니다. 고을의 원이나 도의 감사들은 죄명만을 예사롭게 보고 실제의 죄상은 규명해보지도 않은 채 ‘가형(加刑)’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문서(文書)를 보고하는 예사 제목의 말로 삼고 있으므로 오래 끈 것은 10년이 지나고 가까운 것도 6년, 7년, 8년이 못되는 것은 없으며 고의적으로 나쁜 짓을 한 자로서 죽여야 할 죄인이라면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지체될 수도 있겠습니까만 본의 아닌 잘못으로 의심이 가는 무리까지도 재판조차 받아 보지 못하고 마침내 옥중(獄中)의 귀신이 된다면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바라건대 각도에 거둬 타이르시어 별도로 자세히 조사, 죄의 진실 여부와 가볍고 무거운 정상에 따라 적은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큰 문제는 역마(驛馬)로 알리게 한다면 여러 도에 적채(積滯)된 죄수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니 어찌 감응(感應)의 효과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재물도 곡식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장마와 가뭄이 잇따르고 부역(賦役)이 감소되었는데도 모든 용도는 크게 줄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안팎의 재력은 날로 줄어들고 있으니 만약에 많은 무리를 동원하거나 백성을 구제해야 할 일이 있게 된다면 손을 묶어 두고 앉아서 구경만하는 경우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신은 바라건대 전하께서 몸소 먼저 검소한 것으로 아랫사람들을 인도하시어, 안으로는 궁중의 사치를 금하고 밖으로는 각사(各司)의 번거로운 형식을 과감하게 고쳐서 적은 양의 곡식이나마 저축하였다가 후일 한 되 한 말의 용도에 대비하고, 한 자 한치의 베를 저축하였다가 후일 한 자 한치의 용도에 대비하게 하면 아마도 도움되는 바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p> | <p>傷和致怨，莫甚於獄囚。 臣屢典州府，慣見外方事，或事係殺越，迹犯綱常者，積年滯獄，究竟無日。 邑倅、道臣，泛觀罪名，不究實狀，加刑二字，爲文報間例題之語。 久者過十年，近不下六七八年，怙終應死之罪，則輸情爲限，猶可遲難。 而至於嘗災可疑之徒，未蒙疏辨，終作獄中之鬼，則豈不冤乎？ 臣願申飭各道，另加詳覈，罪之疑信，情之輕重，小者自決，大者驛聞，則諸道滯囚，賴此蒙宥，豈無感應之效乎？ 財粟，國之根柢也。 水旱相仍，賦役連減，而凡百用度，未聞大段節省。 內外財力，日就耗削，若有動衆賑民之舉，則將未免爲束手而坐，可勝歎哉？ 臣願殿下躬先節儉，導率群下，內而宮禁，斥去華美；外而各司，痛革煩文，蓄升斗之穀，以備日後升斗之用；儲尺寸之布，以備日後尺寸之用，則或不無所補矣。</p> <p>又曰：</p> <p>京中軍門及他道戎務，頗有專力修治之</p> |
|-----------------------------------|--|--|

| | | |
|--|---|--|
| | <p>하였다. 또 말하기를,</p> <p>“경중(京中)의 군문(軍門)과 타도의 군무는 상당히 힘을 기울여 다스렸는데도 전연 포기하고 앉아서 패망하기를 기다리듯 한 것은 본도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본도의 이른바 장수와 군사라는 것은 모두가 유명 무실한 자들입니다. 명색이 ‘장수’라는 것은 서로(西路)의 큰길에 두고 허물어진 성벽 중에 앉아 기계(器械)를 수리하려고 하면, 번거롭게 한다는 소문이 들릴까 감히 마음을 내지 못하고, 부대를 정돈하려고 하면 기밀이 누설될까 두려워 어물어물 날짜만 보내고 있습니다. 명색이 ‘군사’라는 것은 각처에 흩어 놓고서 1년에 한 차례만 모여서 연습하는 일이 없으므로 사수(射手)는 활을 당기거나 화살을 쏘는 법도 모르고, 총수(銃手)들을 화약을 장전하거나 총을 쏘는 방법도 모르니, 이래가지고서도 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같이 한 도의 군사인데도, 신의 군영에 소속된 정초장무대(精抄壯武隊)와 수영패(隨營牌) 같은 유들은 1년에 바쳐야 하는 신포(身布) 2필 외에도 이따금 차역(差役)이 있는 등, 한가지뿐이 아닌 데 반해, 순안사(巡按使)의 군영에 소속된 착호군(捉虎軍)은 1년에 바치는 것이 1필뿐이고 다른 잡역은 전연 없습니다. 그 때문에 순안사 병영의 착호군 숫자는 날로 증가하는데 신의 군영에 소속된 군사는 날로 감축됩니다. 지금 본도의 형편이 침체되어 실시하기가 어렵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나라의 서쪽 관문이라 버려둘 수 없다고 여기신다면 결코 그 방식을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도내에 있는 여러 종류의 군사는, 착호군·요군(遼軍)·정초장무대·수영패를 막론하고 하나로 통합, 한차례 점검하는데, 먼저 긴장한 장정 3분의 1을 뽑아서 정군(正軍)을 만들어 신포(身布)를 면제하고 연습에만 열중하게 하며, 순안(順安) 이남 순영(巡營) 부근에 있는 군사는 순영에 소속시키고, 숙천(肅川) 이북 병영(兵營) 부근에 있는 군사는 병영</p> | <p>事，而全然拋棄，坐待覆敗，未有如本道之甚者。本道之所謂將與卒，皆是有名無實者也。名之曰將，而置於西關孔道，坐於崩城破壁之中，欲修治器械，則恐煩聽聞，不敢放意；欲整頓部領，則恐泄事機，媿媿度日。名之曰卒，而散在各處，無一年一度聚會練習之舉，射手不知彎弓發矢之法；銃手不知藏放藥丸之妙，其可謂卒乎？同是一道之軍，而臣營所屬精抄、壯武隊，隨營牌之類，一年備納，身布二疋之外，種種差役，不一其端。巡營所屬捉虎軍，一年所納，只是一疋，而他無雜役。以此之故，巡營捉虎之額，日漸增益，臣營所屬之軍，日漸減縮。今以本道勢所壓屈，難於設施則已，若以爲國之西門，不可等棄，則決不當仍用此套。道內諸色之軍，毋論捉虎、遼軍、精抄、壯武，隨營牌合而爲一，一番點視，先抄丁壯者三分之一，作爲正軍，除其身布，專意練習，順安以南巡營附近之軍，則屬於巡營；肅川以北兵營附近之軍，則屬於兵營，輪次立番，饋糧訓誨，以爲朝令夕發之地。次以餘數三分之二爲收布之軍，分送監兵</p> |
|--|---|--|

에 소속시킵니다. 그리하여 돌려가며 차례로 번을 서게 하는 한편, 양식을 대어주고 교육을 시켜서 아침에 명령하면 저녁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3분의 2는 신포를 거두는 군대로 삼아 감영과 병영에 나누어 보내, 한편으로는 정군을 구제하는 자본으로, 한편으로는 영문(營門)에서 쓰는 물품으로 삼고, 비변사의 용도(用度) 또한 참작하여 분정(分定)한다면 군정이 거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군역도 공평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현재 나라에 큰일이 있고 때는 추운 겨울철을 만났는데, 졸곡(卒哭) 전에 군사를 점검하고 재주를 시험하는 것을 일찍이 규례가 없었으며, 졸곡 후에는 조문(弔問)하는 칙서(勅書)가 또 이를 것이고 농사철도 닥쳐오게 되므로 본도의 군무는 아마 다스려질 날이 없을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비록 군대의 위용을 크게 떨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병영에서 돌아가며 번을 서는 군사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점검하여 궁수(弓手)에게는 활쏘는 법을 익히게 하고, 총수(銃手)에게는 총쏘는 법을 익히게 하여 기예를 전폐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 압록강가 여러 진에 형세와 신설 봉수(烽燧)의 편리 여부에 대한 문제 같은 것은 해가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칙서가 아직 이르기 전, 농사철이 아직 닥치기 전에 백의(白衣)와 소관(素冠)으로 수행원을 간략하게 데리고서 차례로 순행하며 살펴보고 계문(啓聞)하여도 큰 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그 상소가 묘당(廟堂)에 회부되었는데 묘당에서 다시 아뢰어 모두 그 대로 행하도록 윤허해 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營，一以爲接濟正軍之資；一以爲營門需用之物，備局用度，亦有所參酌分定，則軍政庶有實效，軍役亦無不均矣。

又言：

卽今國有巨創，時值嚴冬，卒哭之前，點軍試才，曾無規例。卒哭之後，則弔勅又至，農節亦迫，本道軍務，殆無修舉之日。臣之愚計，雖不可盛張軍儀，而營下輪入番之軍，則依前坐點，使弓手習射，銃手習放，俾不至專廢技藝。且如江邊列鎮之形勢，新設烽燧之便否，稍待歲翻，趁勅行未到，農事未屆，白衣素冠，簡驕率，次次巡審啓聞，似無大害。

疏下廟堂。廟堂覆奏，竝請許施，上從之。

| | | |
|--|--|---|
| <p>숙종 10권, 6년(1680) 경신 / 청 강희(康熙) 19년) 12월 21일(병오) 4번째기사</p> | <p>부수찬(副修撰) 박태보(朴泰輔)가 상소하여 양자간 어머니가 노쇠하여 병든 상황을 말하고 수령이 되어 봉양하기를 청하였는데, 그 상소를 이조에 회부시키니, 복주(覆奏)하여 말하기를,</p> <p>“본관(本館)에 사람이 모자라므로 사정(私情)은 간절하더라도 가볍게 허락하기 어렵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사정은 아무리 간절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모자라는 때를 당하여 경악(經幄)의 신하를 가볍게 외직에 허락할 수는 없다고 하고 호조에 명하여 의복감과 음식물을 주게 하였다.</p> | <p>○副修撰朴泰輔上疏，言所後母尹衰病狀，乞縣爲養。疏下吏曹，覆奏言：“本館乏人，私情雖切，有難輕許。”上以私情雖懇，值此乏人之時，經幄之臣不可輕許外補，命戶曹題給衣資食物。</p> |
| <p>숙종 10권, 6년(1680) 경신 / 청 강희(康熙) 19년) 12월 25일(경술) 3번째기사</p> | <p>수찬 박태손(朴泰遜)이 상소하여 한 고을에 보임(補任), 아버이 봉양에 편리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해조(該曹)에서 복주(覆奏)하여 허락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옥당(玉堂)에 사람이 모자란다고 하여 윤택하지 않고 옷감과 음식물을 내려주게 했다.</p> | <p>○修撰朴泰遜上疏，乞補一縣，以便養親。該曹復奏，請許之，上以玉堂乏人不許，命賜衣資食物。</p> |
| <p>숙종 10권, 6년(1680) 경신 / 청 강희(康熙) 19년) 12월 26일(신해) 3번째기사</p> | <p>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p> <p>“금년 경기(京畿) 지역의 흉년은 다른 도에 비해 가장 심합니다. 각 고을이 다 그러합니다만 교동(喬桐)이 더욱 참담합니다. 청컨대 36고을의 대동미(大同米) 6두(斗) 중 2두를, 경신년 12월부터 신유년 11월까지의 여러가지 신역(身役)으로 3필을 받쳐야 할 자에게는 한 필을, 각 아문(衙門)의 노비, 제색(諸色)의 군보(軍保)를 쌀로 상납(上納)해야 할 자에게도 3분의 1을 감해 주시고, 교동 전 고을에 대해서는 쌀을 거두는 것과 신역을 아울러 완전히 감해 주소서. 내사(內司)·상방(尙方)의 노비와 양국(兩局)의 군병(軍兵)에 대해서도</p> | <p>○備局：“以今年畿甸失稔，比諸道最甚，各邑同然，而喬桐尤慘。請減三十六邑大同米六斗中二斗，自庚申十二月至辛酉十一月，諸般身役納三疋者減一疋，各衙門奴婢及諸色軍保以米上納者，亦減三分之一，而喬桐一邑，則收米、身役並請全減，內司、尙方奴婢，兩局軍兵一體施行。”上從之。</p> |

| | | |
|--|--|---|
| | <p>일체 시행하게 하소서.”</p> <p>하였는데,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p> | |
| <p>숙종 11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1월 23일(정축) 2번째기사</p> | <p>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를 돌아보고 말하기를,</p> <p>“지난번에 영부사(領府事) 송시열이 환과 고독(鰥寡孤獨)에게는 특별히 대동전세(大同田稅)를 견감해 줄 일을 진달(陳達)한 바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p> <p>하였는데,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이 청하기를,</p> <p>“모든 백성 가운데 의탁할 곳이 없는 자를 가려내어 호역(戶役)을 감하고, 노인(老人)은 특별히 식물(食物)을 주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민정중(閔鼎重)이 말하기를,</p> <p>“오시수(吳始壽)의 일은 본말(本末)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억단(臆斷)하고는 스스로 뜻이 자세히 살피는 데 있다고 하며, 당초에 추국(推鞠)하는 데 참여(參與)하여 실상(實狀)을 자세히 안다는 말을 제멋대로 배척하고, 이것을 발설하지도 못하게 하였으니, 국체(國體)를 무너뜨리고 손상(損傷)시킨 바가 작지 아니합니다. 그 까닭을 구핵(究覈)해 보면 추안(推案)을 얻어 보지 못한 소치(所致)이니, 신이 조신(朝臣)에게 추안을 내어 보일 것을 두 번이나 청한 것은 진실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삼사(三司)에서 일어나서 떠드는 것으로 보건대, 더욱 내보여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옥정(獄情)을 환히 알게</p> | <p>○引見大臣、備局堂上。上顧謂諸臣曰：“頃日宋領府事以鰥寡孤獨特蠲大同田稅事，有所陳達。何以則可乎？”左議政閔鼎重請抄出四民之無依者，減其戶役，老人則特給食物，上從之。鼎重言：“吳始壽事，不知本末之人，懸料臆斷，自謂意在詳審，而揮斥當初參鞠，詳知實狀之言，使不得發口，其在國體，壞損非細。究厥所由，則無非不得取看推案之致。臣之所以再請出示推案於朝臣者，良以此也。以今三司起鬧見之，尤不可不出示，使皆洞知獄情矣。”右議政李尙眞、兵曹判書閔維重皆以爲然，上命出示。尙眞言從前遇災之日，例有審理之舉。卽今京外獄囚多滯，宜令斯速處決。吏曹參判李敏叙曰：“外方疑獄之積滯者甚多。若其有罪，不當淹滯；如涉冤枉，亦必感傷和氣。”上命以此下諭于諸道監司，使之斯速處決。刑曹疑獄文案，則先爲聽理啓稟，與大臣同議。</p> |

| | | |
|--|---|--|
| | <p>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였는데, 우의정(右議政) 이상진(李尙眞)·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유중(閔維重)이 모두 옳게 여기니, 임금(李)이 명하여 내보이게 하였다. 이상진(李尙眞)이 말하기를,</p> <p>“중전에 재난(災難)을 만나는 날에는 으레 심리(審理)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외(京外)에 옥수(獄囚)가 많이 판결이 지체되어 있으니, 마땅히 속히 처결(處決)하게 하소서.”</p> <p>하고, 이조 참판(吏曹參判) 이민서(李敏敘)가 말하기를,</p> <p>“외방(外方)에 적체(積滯)된 의옥(疑獄)이 매우 많은데, 만약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오래 지체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원왕(冤枉)에 관계되면, 또한 반드시 화기(和氣)를 손상[感傷]시킬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로써 제도 감사(諸道監司)에게 하유(下諭)해서 속히 처결(處決)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형조(刑曹)에서 의옥 문안(疑獄文案)은 먼저 심리 판결(審理判決)해서 계품(啓稟)하되, 대신(大臣)과 함께 의논하도록 하였다.</p> | |
| <p>숙종 11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2월 22일(병오) 2번째기사</p> | <p>지문(誌文)에 이르기를,</p> <p>“삼가 우리 현종 대왕(顯宗大王)을 생각하건대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깊이 생각하셔서 미리 우리의 금상 전하(今上殿下)를 세워 세자(世子)를 삼으시고, 이미 또 옛 제왕(帝王)의 흥망 성쇠(興亡盛衰)가 비필(妃匹)로 말미암지 않는 바 없음을 생각하셨는데, 비필(妃匹)의 어짙은 대개 족성(族姓)의 덕미</p> | <p>○誌文曰：</p> <p>恭惟我顯宗大王深惟宗社大計，豫建我今上殿下爲世子。 既又以爲，古之帝王其興替，莫不由妃匹，而妃匹之賢，蓋本於族姓之德美， 蜀塗莘摯是也。</p> |

| | | |
|--|--|--|
| | <p>(德美)에 근본하니, 축(蜀)·도(塗)·신(莘)·지(摯)3044) 가 바로 그러하다. 이에 우리 인경 왕후(仁敬王后) 김씨(金氏)께서 간택[睿簡]을 받으시어, 신해년(3045) 4월 초3일 갑신에 대혼(大婚)의 정례(正禮)를 갖추니, 우리 전하께서 머물고 계시던 제궁(齊宮)에서 친영(親迎)하셨다. 예(禮)를 마치자, 종묘(宗廟)에 고(告)하였으며, 중외(中外)의 군자(君子)들에게 반교(頒教)하시기를, ‘황류(黃流)의 술을 받힘에 옥찬(玉瓚)에 담기에 합당하니,3046) 믿을 것인저!’ 하셨다.</p> <p>삼가 살펴보건대, 김씨(金氏)의 적관(籍貫)은 전라도(全羅道) 광주(光州)인데, 그 원류(源流)가 대개 신라(新羅)의 김성(金姓)에서 나왔다. 왕(王)에게 왕자(王子) 흥광(興光)이 있었는데, 장차 국란(國亂)이 있을 것을 알고 스스로 광주(光州)에 피하였다. 그후 잇달아 8대가 평장사(平章事)가 되자, 사람들이 그 사는 곳을 평장동(平章洞)이라고 불렀다. 본조(本朝)에 와서 휘(諱) 김국광(金國光)은 우리 세조 대왕(世祖大王)을 섬겨 좌의정(左議政)이 되고 광산 부원군(光山府院君)에 봉해졌다. 아들 휘 김극유(金克兪)는 벼슬이 대사간(大司諫)이었고, 그 증손(曾孫) 휘 김계휘(金繼輝)는 벼슬이 대사헌(大司憲)으로서 총명(聰明)하고 박달(博達)하여 선조조(宣祖朝)의 명신(名臣)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아들 휘 김장생(金長生)은 학문(學問)과 도덕(道德)으로써 세상의 유종(儒宗)이 되었고, 벼슬이 참판(參判)이었는데, 영의정(領議政)에 추증(追贈)되고 시호(諡號)는 문원공(文元公)으로, 이분이 왕후(王后)의 고조(高祖)가 되신다. 그 아들 휘 김반(金槃)은 일찍이 대사헌(大司憲)이 되어 간흉(奸凶) 이계(李桂) 등을 논박(論駁)하여 배척(排斥)하고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을 구출(救出)한 것으로서 춘추 대의(春秋大義)를 밝혔다. 그리고 그 아들 휘 김익겸(金益兼)은 생원시(生員試)에 장원 급제(壯元及第)하고, 병자년(3047)·정축년(3048)의 변란(變亂) 때 마음속으로 구차하게 모면(謀免)하는 것을 부끄럽</p> | <p>於是, 我仁敬王后金氏克膺睿簡, 辛亥四月初三日甲申, 克備大婚正禮。 我殿下親迎于所館之齊宮, 禮畢告于宗廟。 頒教中外君子曰: “黃流之薦, 宜于玉瓚, 其信矣乎!” 謹按, 金氏籍全羅道光州, 其源蓋出於新羅金姓王。 有王子興光, 知國將亂, 自遷于光。 其後連八代爲平章, 人號其居爲平章洞。 本朝諱國光, 事我世祖大王爲左議政, 封光山府院君。 子諱克兪, 官大司諫。 其曾孫諱繼輝, 官大司憲, 聰明博達, 爲宣廟朝名臣。 其子諱長生, 以學問道德爲世儒宗, 官參判, 贈領議政, 諡文元公, 是爲后高祖。 其子吏曹參判諱槃, 嘗爲大司憲, 論斥奸凶李桂等, 以救文正公金尙憲, 以明《春秋》大義。 其子諱益兼, 生員狀元, 丙丁之亂, 心恥苟免, 立謹於江都。 其配我宣廟外曾孫尹姓也。 是生萬基, 嘗爲兵曹判書、大提學, 娶郡守韓有良女。 參判與生員, 皆葬忠清道懷德縣之貞民里, 術人曰: “必有德如任姒者生焉。” 后果以崇禎紀元之三十四年辛丑九月初三日乙卯寅時, 誕降于京師會賢坊私第。 既誕, 呱聲絕</p> |
|--|--|--|

게 여겨 강도(江都)에서 입근(立謹)3049) 하였는데, 그 배필(配匹)이 우리 선조(宣祖)의 외증손(外曾孫) 윤성(尹姓)이며, 이분이 김만기(金萬基)를 낳으셨다.

〈김만기는〉 일찍이 병조 판서(兵曹判書)·대제학(大提學)이 되었고, 군수(郡守) 한유량(韓有良)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참판(參判)과 생원(生員)을 모두 충청도(忠淸道) 회덕현(懷德縣)의 정민리(貞民里)에 장사(葬事)지냈는데, 술인(術人)3050) 이 말하기를, ‘반드시 덕행(德行)이 있는 임사(任姒)3051) 같은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하였는데, 왕후(王后)께서 과연 숭정(崇禎) 기원(紀元) 34년 신축년(3052) 9월 초3일 을묘 인시(寅時)에 경사(京師) 회현방(會賢方) 사제(私第)에서 태어나셨다. 그런데 이미 태어났으나, 울음소리가 끊어져 희미하므로, 집안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염려하였는데, 의원이 말하기를, ‘다친 곳은 없고 성질(性質)이 그러합니다.’ 하였다. 이미 말을 배워서 말을 가볍게 꺼내지 아니하나, 꺼내면 반드시 이치가 있었다. 그리고 보행은 더디고 느렸으며, 함부로 뜰 계단을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타고난 존귀(尊貴)함이 있었다. 동배(同輩)와 서로 만났을 때 곁에 있는 자들이 병아리를 희롱하거나 공기놀이를 하거나 배[梨]·밤[栗]을 다루거나 엇과 떡을 갖거나 간에 평소 꼼짝도 않은 채 단정히 앉아 보지 않은 것같이 하였으며, 함께 먹을 때에는 반드시 기다렸다가 모두 모인 후에야 먹었다. 또 화려[芬華]한 물건을 애호(愛好)하지 아니하였고, 의복(衣服)이 비록 때가 묻고 해졌다 하더라도 싫어하는 적이 없었으며, 곱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있어도 부러워하는 빛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 주려고 하면, ‘좋다.’ 하면서 절대로 아까와하는 적이 없었다. 나이 7, 8세가 되자, 집안에 깊숙이 들어앉아 나가지 아니하고 예(禮)를 익혀 10세가 되니, 또 조달(早達)하였다. 일찍이 혼인(婚姻)이 있었는데, 마침 노인네[耆艾]들이 모여 구

稀, 家人或且憂。醫者曰: “無傷也。性質然也。” 既學語不輕發, 發必有理。致行步徐遲, 亦不輒下庭階, 自有天然尊貴。相見同輩, 在傍者弄雜戲, 爭梨栗取飴餅, 常凝然端坐, 若無覩也。與之共食, 必待其咸集, 然後乃食。又不愛芬華之物, 衣服雖垢弊而無斃, 有着鮮好者, 亦無歆艷色。己之所有, 長者欲移以與人, 則曰可也, 絕無靳焉。年及七八, 深藏不出, 視禮之十年, 則又早矣。嘗有婚姻, 會耆艾聚觀, 又有請與看花者曰: “彼家隣且親也。” 皆不肯曰: “恐或有外人也。” 父母曰: “是若非女子, 則當爲名儒, 以繩前烈矣。” 自是, 德性日就, 溫恭和粹, 莊重齊遜, 人不見有傲惰之容, 鄙俗之言, 六親咸異之。未幾, 承膺德選, 時蓋十歲也。先大王嘉其周折中度, 應對得宜。諸女官皆曰: “倪天之妹也。” 既選在別宮, 父時往入, 始授以《小學》書, 只授音讀一遍, 便通其義, 讀不錯一字, 輒又成誦。兼看《內訓》一閱, 終不忘喜聽人說, 古今嘉言、善行, 早夜不倦。既上奉三宮四聖, 克盡誠敬, 晨夕定

경하고는 또 꽃구경을 하자고 청하는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저 집은 이웃이고, 친척이다.’ 하였으나, 모두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혹시라도 외부의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고 하였다. 그러자 부모(父母)가 말하기를, ‘만약 여자가 아니라면, 마땅히 명유(名儒)가 되어 전열(前烈)3053) 을 이어받았을 것이다.’ 하였는데, 이로부터 덕성(德性)이 날로 진보하여 온공(溫恭)하고 화수(和粹)하며 장중(莊重)하고 공손해서, 사람들은 오만하고 게으른 용모(容貌)와 비속(鄙俗)한 말이 있음을 보지 못하니, 육친(六親)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 덕선(德選)3054) 을 받게 되니, 이때 대개 10세였는데, 선대왕(先大王)께서 두루 절충[折中]하고 응대(應對)하는 바가 마땅함을 가상(嘉尚)하게 여기셨으며, 여러 여관(女官)들로 모두 말하기를, ‘천제(天帝)의 누이 동생과 같다.’3055) 하였다. 이미 간선(簡選)되어 별궁(別宮)에 있을 때 부친이 때때로 들어가서 비로소 《소학(小學)》을 가르쳤는데, 단지 한번 음독(音讀)만 가르쳤으나, 그 뜻을 익숙하게 통하였으며,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읽었고, 또 문득 암송(暗誦)하였다. 그리고 겸해서 《내훈(內訓)》을 한번 보고는 끝내 잊지 않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고금(古今)의 가언(嘉言)과 선행(善行) 듣기를 좋아하여,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미 위로 삼궁(三宮)과 사성(四聖)을 받드는 데 정성(精誠)과 공경(恭敬)을 다하였고, 혼정 신성(昏定晨省)3056) 을 감히 몸이 아프다고 해서 혹시라고 폐하는 적이 없었으며, 종일 곁에서 모시면서 공경하고 삼가니, 사성(四聖)께서 권애(眷愛)하심이 매우 돈독하였다. 그러나 은혜에 친狎(親狎)하고 사랑을 믿는 뜻은 털끝만큼도 마음속에 가지지 아니하였다. 일찍이 정사(政事) 때문에 선대왕(先大王)께서 종일 별전(別殿)에 계시니, 왕후(王后)께서 유모(孺慕)3057) 함을 금하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갑인년3058) 에 거듭 대상(大喪)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애모(哀慕)함이 예(禮)에 넘치니, 시어(侍御)하던 사람들로서 그 순지(純至)한 성효(誠孝)에 감탄하지 않는 자가

省, 罔敢以疾病而或廢。 終日侍側, 油油翼翼, 四聖眷愛深篤。 然狎恩恃愛之意, 一毫不萌于內。 嘗以政事, 先大王終日于別殿, 后不勝孺慕, 至於釀涕焉。 甲寅荐遭兩大喪, 哀慕踰禮, 侍御之人莫不歎其誠孝純至。 於是正位中壺, 陞判書爲領敦寧府事, 封光城府院君, 母韓封爲西原府夫人。 生員, 仁廟朝已贈持平, 至是加贈領議政, 後以光城保社勳, 追封光源府院君。 配尹受夫人眞誥。 后既承主內治, 必敬必慎, 必以古聖妃爲法, 如後世不求私家恩澤, 不足言也。 常以輔助聖德爲心, 宴私不形乎動靜; 箴警不絕乎燕申。 我殿下嘗曰: “予賴內助者實多。” 諸主皆尊屬其接待, 曲有禮意, 御內史恩威竝濟, 人皆愛而畏之。 服御凡百, 必戒侈靡。 通書本家, 安否外不及餘事, 所問者稼穡枯興、疾疫熾熄、民生疾苦而已。 水旱災異, 益軫危惕, 其戒懼之意, 溢於言色, 誠心惻怛, 可以感天也。 是雖我殿下刑家之則, 協于風火之象, 而我聖妃天質之美、家法之懿, 寔不可誣也。 自甲寅以後, 賊臣誣悖, 謀所以動搖, 始勸以

| | | |
|--|---|---|
| | <p>없었다.</p> <p>이에 중곤(中壺)에 정위(正位)하니, 판서(判書)를 승진시켜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로 삼고 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에 봉하였으며, 그 어머니 한씨(韓氏)를 서원 부부인(西原府夫人)에 봉하였다. 생원(生員)은 이미 인조조(仁祖朝)에 지평(持平)에 추증(追贈)되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영의정(領議政)을 가증(加贈)하고, 후에 광성 보사(光城保社)로 훈록(勳錄)하고, 광원 부원군(光源府院君)으로 추봉(追封)하였으며, 부인 윤씨(尹氏)는 부인(夫人)의 고신[眞誥]을 받았다.</p> <p>왕후(王后)께서 이미 궁내(宮內)의 일을 이어받아 주장해 다스리게 되었는데, 반드시 공경하고 삼가면서 옛날의 성비(聖妃)를 모범삼아 후세(後世)에 사가(私家)의 은택(恩澤)을 구하지 않은 것은 족히 말할 것도 없다. 항상 성덕(聖德)을 보필(輔弼)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아 연사(宴私)의 뜻이 동정(動靜)에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잠경(箴警)이 연거(燕居)에 끊이지 아니하니, 우리 전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조(內助)에 힘입은 바가 진실로 많았다.’ 하셨다. 존속(尊屬)을 접대(接待)하는 데 여러 가지로 주장하는 것이 모두 곡진하여 예의로운 마음이 있었고, 내사(內史)를 다스리는 데 은혜와 위의를 아울러 갖추니,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였으며, 복어(服御)의 여러 가지 일은 반드시 분수에 넘치게 사치한 것을 경계하였다. 그리고 본가(本家)에 서간(書簡)을 통하면서 안부(安否) 이외의 일에는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묻는 것은 농사[稼穡]가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질병(疾疫)이 치열한지 누그러졌는지 민생(民生)의 질고(疾苦)에 대한 것일 따름이었다. 수재(水災)와 한재(旱災)의 재이(災異)는 위급하고 두려운 데 더욱 진념(軫念)하셔서,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뜻이 말씀 가운데 가득했으며, 성심(誠心)으로 가엾게 여겨 슬</p> | <p>親耕，繼以親蠶，備嬪御，蓋將媒進妖艷，以爲離間計也。幸而風雷動威，親耕既不成，而奸謀中沮，豈后德協天地，受其陰騭耶？厥後，又托禮論，將屠戮一二臣，以逮光城，然後因以上及焉。當是時，后能安土、敦仁，不自危，而惟宗社是憂，終至於玉度無玷，雖賴我殿下神聖睿智，而亦豈其誠孝之德，上感祖宗而然歟？庚申十月邁痘瘡，憂念聖躬，自忘其疾痛，至發於夢語。父府院君從女醫入診，則必力疾起坐，收束致敬，肩背聳直，如不病時。及其大漸，精神猶不少爽。竟以其二十六日辛亥亥時，昇遐于慶德宮之會祥殿。時，上奉慈殿，殿下移御昌慶宮，訃聞震悼傷慟，命內御凡月制日制之類，皆自內具備。蓋體平日慈儉之心，不欲煩撓市肆也。群臣上諡曰仁敬，按註，施仁服義曰仁，夙夜儆戒曰敬。陵號曰翼，殿曰永昭。卜得吉，以辛酉二月二十二日丙午卯時禮葬。廡衛儀物，皆從省約。陵在京畿高陽郡，去都城二十里。而近臣謹竊伏念，韓愈曰：“《詩》歌《碩人》，爰紱宗親。《戴記》論娶婦，必擇孝</p> |
|--|---|---|

| | | |
|--|---|---|
| | <p>퍼하시느 바가 하늘을 감동시킬 만하였다. 이에 우리 전하께서 만약 형벌하시 고자 하면 풍화(風火)의 조짐을 두려워하셨으니, 우리 성비(聖妃)의 타고나신 자질(資質)의 아름다움과 가법(家法)의 훌륭한 함은 진실로 속일 수가 없다.</p> <p>갑인년(3059) 이후로 적신(賊臣)이 무함(誣陷)과 패역(悖逆)으로 동요(動搖)시 킬 것을 피하여, 처음에는 친경(親耕)을, 이어서 친잠(親蠶)을 권하고, 빈어(嬪 御)를 갖추게 하였으니, 이것은 대개 장차 요염(妖艷)을 미끼로 하여 진출(進 出)해서, 이간(離間)하는 계책을 삼으려고 한 것이었다. 그런데 다행히 바람과 우레(雨雷)가 위세를 떨치는 바람에 친경(親耕)이 이미 이루어지지 못하고 간 교한 음모가 중도에서 저지(沮止)되니, 어찌 왕후(王后)의 덕성(德性)이 천지(天地)를 두려워하여 음졸(陰隲)을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후 또 예론(禮 論)3060) 을 청탁하여 장차 한두 신하(臣下)를 도륙(屠戮)하려 하는데, 광성(光城)에 미친 뒤에 따라서 그 이상에까지 미쳤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왕후(王后)께서는 평안(平安)하고 돈인(敦仁)하셔서 스스로 위대하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종사(宗社)를 걱정하여 옥도(玉度)에 허물이 없었으니, 비록 우리 전하 의 신성(神聖)하신 예지(睿智)에 힘입었다 하나, 또한 효성스러운 덕행(德行) 이 위로 조종(祖宗)을 감동(感動)시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경신년(3061) 10월에 두창(痘瘡)3062) 에 걸렸는데, 상감을 염려하여 스스로 아픈 것조차 잊었다. 헛소리[夢語]를 하는 데까지 이르러 부원군(府院君)이 여의(女醫)가 진맥(診脈)하는 데 따라 들어가면, 반드시 병을 참고 일어나 앉으면서 몸을 단정히 하여 공경(恭敬)을 다하였는데, 어깨와 등을 곧바로 세우는 것이 병들 지 않았을 때와 같았다. 대점(大漸)함에 이르러서 정신(精神)이 조금도 흐려지 지 아니하더니, 마침내 26일 신해 해시(亥時)에 경덕궁(慶德宮)의 회상전(會 詳殿)에서 승하(昇遐)하셨다. 이때 위로 자전(慈殿)의 뜻을 받들어 전하께서 창경궁(昌慶宮)에 이어(移御)하셨었는데, 부음(訃音)을 듣고 몹시 슬퍼하고 상</p> | <p>悌，世有行義者。” 臣謹按，我聖妃原其族出，實王者之後，而歷高麗五百年，蟬聯燁燁，及至本朝，名卿大儒，祖孫相望，末乃克生聖女，來婦京室，聿成內治，以助王化。源大川豐，理則宜然，而倘非我顯考神聖，雖甚盛德，曷膺簡選哉？始也，仁宣大妃曰：“文元金公，實我先考文忠公師也。今予與其孫，皆爲王家婦，亦一奇也。” 嗚呼！我聖妃氏族德行嘉美之會，其盛若此，宜其永綏福祿，使我臣民，同被慈濡，而上天不仁，遽闕遐齡，令我三聖，悲悼於上，臣民號慕於下，豈所謂神者誠難明，而理者不可推者耶？雖然，仁者善之長；敬者德之基；翼者思慮深遠。今所上諡與陵號，克著其實，而在天於昭，令聞不已，孔聖所謂，大德必得其名者非耶？抑臣於此，竊有所深感而重悲者，記昔嘗侍聖祖于別殿，指示我先大王所居之東閣，而深歎聖嗣之遲期，及其天佑宗祚，我殿下誕生，則聖祖已不及見矣。逮我聖妃恭承宗事，則常謂則百有慶，以慰我聖祖在天之靈矣。乃今坤儀遽缺，甲觀不關，以聖妃之德之行，終不克蒙聖祖之遺</p> |
|--|---|---|

| | | |
|--|--|------------------------------|
| | <p>심해 하시고는 내어(內御)에게 명하여 모든 월제(月制)와 일제(日制)의 일은 모두 궐내(闕內)에서 구비(具備)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대개 평일(平日)에 인자(仁慈)하고도 검소(儉素)하셨던 마음을 본받아 저자[市律]와 같이 번거롭고 요란하지 않고자 함이었다.</p> <p>군신(群臣)이 시호(諡號)를 올리기를 인경(仁敬)이라 하였는데, 주(註)를 살펴 보건대, 인자함을 베풀고 의(義)를 행한 것을 인(仁)이라 하고,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경계(儆戒)한 것을 경(敬)이라 한다. 능호(陵號)를 익릉(翼陵)이라 하고, 전우(殿宇)를 영소전(永昭殿)이라 하였다. 길(吉)한 날을 가려 신유년 2월 22일 병오 묘시(卯時)에 예장(禮葬)하였는데, 흠위(廡衛)와 의물(儀物)은 모두 간략한 것을 따랐다. 능(陵)은 경기도(京畿道) 고양군(高陽郡)에 있는데, 도성(都城)에서 20리가 된다.</p> <p>근신(近臣)이 가만히 엿드려 생각해 보건대, 한유(韓愈)가 말하기를, ‘《시경(詩經)》에서는 석인(碩人)3063) 을 노래하여 이에 종친(宗親)을 서술하였고, 《예기(禮記)》에서는 아내를 얻는 것을 논하여 반드시 효제(孝悌)를 가려서 대대로 행의(行義)있는 자라야 한다.’고 하였는데, 신이 삼가 우리 성비(聖妃)를 살펴보건대, 그 세족(世族)의 출신을 추구해 보면, 진실로 왕자(王者)의 후예(後裔)로서, 고려(高麗) 5백 년 동안 이어져 오며 찬란하게 빛났고, 본조(本朝)에 와서는 명경 대유(名卿大儒)가 조손(祖孫)에 서로 잇달아서, 마침내 성녀(聖女)가 태어나 경실(京室)3064) 에 와서 내치(內治)를 성취하고 왕화(王化)를 도왔으니, 근원(根源)이 크고 내[川]가 풍성한 것은 마땅히 그러한 것이지만, 만약 신성(神聖)하신 우리 현종(顯宗)이 아니었더라면, 비록 성덕(盛德)이 많다 하더라도 어떻게 간선(簡選)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처음에 인선대비(仁宣大妃)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원(文元) 김 공(金公)은 진실로 우리 선</p> | <p>澤，嗚呼，痛哉！【領中樞府事宋時烈製進。】</p> |
|--|--|------------------------------|

| | | |
|------------------|--|------------------|
| | <p>고(先考) 문충공(文忠公)의 스승이었는데, 이제 내가 그 자손(子孫)과 함께 왕가(王家)의 지어미가 되었으니, 또한 한결같이 기이하다.’ 하셨다.</p> <p>아! 우리 성비(聖妃)의 씨족(氏族)의 덕행(德行)과 아름다운 일들이 이와 같이 성대(盛大)하였으니, 마땅히 길이 복록(福祿)을 누리시면서 우리 신민(臣民)으로 하여금 인자하신 은택(恩澤)을 함께 입게 할 것인데, 하늘이 불인(不仁)하셔서 갑자기 하령(遐齡)3065) 을 막으시어 우리 삼성(三聖)으로 하여금 위에서 비도(悲悼)하게 하시고, 아래로 신민(臣民)으로 하여금 울부짖게 하시니, 어찌 이른바 신(神)이란 진실로 밝히기 어렵고, 이치란 추고(推考)할 수 없다는 것인가? 비록 그렇다고 하나, 인(仁)이란 선행(善行)의 으뜸이고, 경(敬)이란 덕행(德行)의 기틀이고, 익(翼)이란 사려(思慮)가 깊고 원대한 것으로서, 지금 올린 시호(諡號)는 능호(陵號)와 더불어 실상(實狀)을 잘 나타내었으므로, 하늘 위에서 빛날 것이며, 영문(令聞)이 그쳐지지 않을 것이니, 공성(孔聖)께서 말한 바 대덕(大德)은 반드시 그 이름에서 얻는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이에 신은 가만히 깊이 느껴 거듭 슬퍼하는 바가 있는데, 기억하건대, 옛날에 일찍이 성조(聖祖)를 모시던 별전(別殿)에서 우리 선대왕(先大王)께서 거처(居處)하시던 동합(東閣)을 가리키면서 성사(聖嗣)의 시기가 늦어짐을 깊이 한탄하셨는데, 하늘의 종방(宗祔)을 도우심에 미쳐서 우리 전하께서 탄생(誕生)하셨지만, 성조(聖祖)께서는 이미 미처 보지 못하셨다. 그래서 우리 성비(聖妃)께서 공손히 종사(宗事)를 받드는 데 미치면, 항상 말씀하시기를, ‘많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성조(聖祖)의 영혼을 위로해 드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곤의(坤儀)가 비게 되어 갑관(甲觀)3066) 을 열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성비(聖妃)의 덕행(德行)으로써도 끝내 성조(聖祖)의 유택(遺澤)을 입지 못하게 되었으니, 아! 슬프도다.”</p> | |
| 숙종 11권, 7년(1681) | 청사(淸使) 한림 시독 학사(翰林侍讀學士) 우유(牛鉉)·종실 이등 시위(宗室二 | ○淸使翰林侍讀學士牛鉉、宗室二等 |

| | | |
|--|---|--|
| <p>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4월 2일(을유) 2번째기사</p> | <p>등侍衛 각라아이도(各羅阿爾圖)가 조제(弔祭) 때문에 입경(入京)하니, 임금이 서교(西郊)에 나아가 맞이하고, 인정전(仁政殿)에 돌아와 접견(接見)하여 다례(茶禮)를 베풀고 파(罷)하였다.</p> | <p>侍衛覺羅阿爾圖以弔祭入京。 上出迎于西郊，還至仁政殿接見，設茶而罷。</p> |
| <p>숙종 11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4월 8일(신묘) 2번째기사</p> | <p>교리(校理) 심수량(沈壽亮)·임영(林泳), 부교리(副校理) 오도일(吳道一)·수찬(修撰) 송광연(宋光淵) 등이 청대(請對)하였다. 심수량 등이 한재(旱災)가 몹시 참혹(慘酷)하므로 덕(德)을 닦아 하늘의 노여움에 답할 것을 청하였는데, 그 근본은 학문(學問)에 귀착(歸着)되고, 또 뜻을 세우는 것으로 학문(學問)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 어진이를 부르고, 간언(諫言)을 받아들이고, 몸소 절약하여 검소(儉素)하고, 용병(冗兵)을 도태시키는 등의 일을 진계(陳啓)하니, 임금이 모두 가납(嘉納)하였다. 인해서 어공(御供)3124 가운데 긴요하지 않은 물건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주(稟奏)하여 해아려 줄이도록 명하였다. 또 명일(明日)에 금부(禁府)·형조(刑曹)의 죄수(罪囚)들을 소결(疏決)하도록 명하였다.</p> | <p>校理沈壽亮·林泳、副校理吳道一、副修撰宋光淵等請對。 壽亮等以旱災孔慘，請修德以答天怒，而其本則歸之學問，又以立志爲學問之本。 又陳招賢納諫，躬節儉汰冗兵等事。 上皆嘉納之。 仍命御供中不緊之物，令諸曹稟奏裁減。 又命於明日，疏決禁府、刑曹罪囚。</p> |
| <p>숙종 11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4월 20일(계묘) 2번째기사</p> | <p>정사(正使)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과 부사(副使)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숙(李翹)을 보내어 별궁(別宮)에서 납징례(納徵禮)를 거행하고, 인해서 승지(承旨)를 보내어 일을 주장(主掌)한 여러 신하들에게 선운(宣醢)하였다.</p> | <p>○遣正使領議政金壽恒、副使兵曹判書李翹，行納徵禮于別宮。 仍遣承旨，宣醢於執事諸臣。</p> |
| <p>숙종 11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5월 2일(갑인) 4번째기사</p> | <p>대사헌(大司憲) 이단하(李端夏)가 상소(上疏)하여 스스로 심기(心氣)의 병(病)이 있어서 직무(職務)를 감당할 수 없다하여, 본래 겸하고 있던 여러 직임(職任)을 체임(遞任)해 줄 것을 빌고, 또 말하기를, “신이 선조(先祖)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상하(上下)에서 시끄럽게 떠들었던 것은 오로지 태평(泰平)함을 다스리는 방도를 제일의 뜻으로 삼는다는 것이었으나, 대개 20여년 동안을 보건대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번갈아 들고, 풍년이 들었던 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음양(陰陽)이 화합(和合)하</p> | <p>○大司憲李端夏上疏， 自陳有心氣之病，不堪職務，乞遞本兼諸任，且曰： 臣自先朝至今日，強聒於上下者，惟以治泰之道爲第一義。 蓋見，二十餘年間，水旱交災，絕無豐登之歲，此由陰陽不和而然也。 如欲使陰陽調和，則捨泰之義而何從哉？ 聖學講書，固有次</p> |

| | | |
|--|--|---|
| | <p>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했던 것이니, 만약 음양이 조화(調和)되게 하려면, 태평하게 한다는 뜻을 버리고서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성학(聖學)의 강서(講書)는 진실로 차례[次第]가 있으나, 인군(人君)이 하늘을 본받아 도리(道理)를 행하려면 《주역[義易]》의 뜻에 일찍이 통달(通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시험삼아 역경(易經)의 건(乾)·곤(坤)·비(否)·태(泰)·구(姤)·복(復) 등의 괘(卦)를 취하여 때때로 열람(閱覽)하시고, 음양(陰陽)이 진퇴(進退)하고 길흉(吉凶)이 소장(消長)하는 이치를 깊이 속마음에 묵존(默存)3150) 하시면, 사람의 정사(正邪)와 세상의 치란(治亂)이 거의 점차 밝아질 것입니다.”</p> <p>하고, 또 말하기를,</p> <p>“신이 신해년(3151) 여름에 저축[積貯]하는 계책을 진소(陳疏)하여, 도하(都下)에서 군사를 양성하는 것을 줄이고, 사창(社倉)을 권면하여 설치하고, 부민(富民)을 권장(勸獎)하는 등 공사(公私)로 하여금 모두 저축이 있게 할 것을 청하였었는데, 신이 아뢴 것과 같이 10년 동안에 공사(公私) 간에 절약[節縮]하였다면, 개장(蓋藏)3152) 이 어찌 오늘날과 같이 애통(哀痛)한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신이 또 진계(陳啓)하여, 솔잎을 복식(服食)하는 방법을 가르치되, 도민(都民)으로부터 시작하여 두루 나라 안에 미치게 할 것을 청하였으며, 또 탐전(榻前)에서 진달(陳達)하여, 경외(京外)에 진휼소(賑恤所)를 설치할 것을 청하면서, 모두 솔잎을 복용하면 진제미(賑濟米)를 줄일 수 있고, 진휼소를 혁파한 후에도 굶주린 백성들이 스스로 그 방법을 알게 되어 또한 굶어 죽을 걱정이 없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창(社倉)은 신의 향리(鄉里)에 설치하였었고, 솔잎은 신이 몸고 복식(服食)했던 것이므로, 이로써 미루어 온 나라 안에 시행할 만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묘당(廟堂)으로 하여금</p> | <p>第, 然人君體天行道, 《義易》之旨, 不可不早通。 伏願試取《易經》乾坤否泰姤復等卦, 時時覽閱, 使陰陽進退、吉凶消長之理, 默存乎淵衷, 則人之邪正, 世之治亂, 庶幾漸明也。</p> <p>又曰:</p> <p>臣於辛亥夏, 疏陳積貯之策, 請減都下養兵, 勸設社倉, 勸獎富民, 使公私交有積貯。 如臣所請, 十年之內, 公私節縮, 則蓋藏豈至如今日之哀痛也? 臣又陳教民服松葉之方, 請自都民而始, 遍及國中。</p> <p>又於榻前陳達: “請京外設賑之所, 皆用松葉, 則賑米可省, 罷賑後饑民自知其方, 亦無餓死之患。 社倉則設於臣之鄉里; 松葉則臣親自服食, 以此知其可推行於國中也。 令廟堂採施。” 備局覆奏: “社倉曾已頒布事目, 請更令諸道, 着實奉行。 松葉服食, 請令該廳, 前頭設賑時, 試依此行之, 且載入於救荒方。” 上允之。 其後無施行之實。</p> |
|--|--|---|

| | | |
|---|--|--|
| | <p>채택(採擇)하여 시행하게 하소서.”</p> <p>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기를,</p> <p>“사창(社倉)은 일찍이 이미 사목(事目)을 반포(頒布)하였으니, 청컨대 제도(諸道)로 하여금 착실하게 봉행(奉行)하게 하소서. 술읖을 복식(服食)하는 것은 청컨대, 혜청(該廳)으로 하여금 앞으로 진휼소를 설치할 때 이에 의거해서 시험하여 행하도록 하고, 또 구황방(救荒方)에 써 넣게 하소서.”</p> <p>하니, 임금(王)이 윤허(允許)하였으나, 그후 시행되는 실상이 없었다.</p> | |
| <p>숙종 11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5월 2일(갑인) 5번째기사</p> | <p>이 날이 곧 책비(冊妃)하는 길일(吉日)이었다. 초엄(初嚴)3153) 후에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 빈청(賓廳)에 나아가 아뢰기를,</p> <p>“지진(地震)의 변괴(變怪)가 여러 날 동안 거듭 일어났고, 더욱이 책비(冊妃)하는 날을 당하여 재이(災異)가 이와 같으니, 전하께서 수정(修省)하시는 도리에 있어서 안연(晏然)하게 행례(行禮)할 수가 없으며, 대례(大禮)를 재이(災異)가 있는 날에 그대로 거행하는 것도 또한 미안(未安)할 듯합니다. 일관(日官)이 앞으로 길일(吉日)이 있다고 말하였으니, 오늘의 책례(冊禮)를 후일로 미루어 거행하여 경구(警懼)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p> <p>하였는데, 임금이 앞으로의 길일을 물으니, 11일이라고 대답하자, 임금이 일기가 도운 때임을 염려하여 하루 이틀 동안에 잇달아 거행하는 것이 어려울 듯하므로, 이날에 대례(大禮)를 그대로 거행하되, 선온(宣醞) 등의 일은 정지하고 줄이도록 하였다. 대신(大臣)들이 다시 그날 일찍 시각을 정하여 거행할 것을 청하자, 임금이 윤허(允許)하였다가, 잠시 후에 또 하교(下敎)하기를,</p> | <p>○是日卽冊妃吉日也。初嚴後，領議政金壽恒詣賓廳啓曰：“地震之變，疊出於數日之內，而況當冊妃之日，災異如此，在殿下修省之道，不可晏然行禮。大禮之仍行於遇災之日，亦似未安。日官言，前頭亦有吉日，今日冊禮，退行於後日，以示警懼之意似宜。”上問前頭吉日，對以十一日。上慮時氣正熱，而一兩日之間似難連行，大禮欲於是日仍行，而停減宣醞等事。大臣復請於其日，早定時刻而行之，上許之。俄又下敎曰：“日期若退，則教命文當改織造，而工役必不及，兩慈殿之意，極以退期爲難。且此非出於豐亨豫大之舉，今雖仍行，似</p> |

| | | |
|--|---|---|
| | <p>“기일(期日)을 만약 늦춘다면 교명문(敎命文)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공역(工役)이 반드시 두 분 자전(慈殿)의 뜻에 미치지 못할 것이니, 기일을 늦추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듯하다. 또 이 일이 풍형 예대(豐亨豫大)3154) 한 일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지금 비록 거행한다 하더라도 수정(修省)하는 도리에 크게 해로운 바는 없을 듯하다.”</p> <p>하자, 여러 대신(大臣)들이 또한 이미 기일을 늦추었다가 그대로 거행하는 것은 비록 지극히 전도(顛倒)된 것이라고 하나, 교명문(敎命文)을 고쳐 만드는 것이 과연 시기에 미치지 어렵고, 자지(慈旨)가 또 이와 같으니, 그대로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선온(宣醞) 등의 일은 하교(下敎)에 의거하여 정지하고 줄이도록 청하였다. 또 재이(災異)를 만났으므로 재이를 없앨 방안을 묻도록 하니, 여러 대신과 2품 이상이 명을 받들어 제회(齊會)하였는데, 대신들이 책비례(冊妃禮)를 거행한 후 형세가 등대(登對)하기 어렵다 하여 명일(明日)을 기다려 입대(入對)할 것을 청하니, 임금의 모두 그대로 따랐다.</p> | <p>無大害於修省之道。” 諸大臣亦對以既退仍行，雖極顛倒，敎命文改織，果難及期。 慈旨又如此，仍行似宜，而宣醞等事，請依下敎停減。 且以遇災詢訪消弭之策，諸大臣及二品以上，承命齊會。 大臣以爲：“冊妃行禮後，勢難登對，請待明日入對。” 上竝從之。</p> |
| <p>숙종 11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5월 3일(을묘) 2번째기사</p> | <p>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를 인견(引見)하고 재이(災異)를 없앨 방안을 물으니,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 지난 겨울에 계달(啓達)한 군신(君臣) 상하(上下)가 ‘사(私)’란 한 글자를 타파(打破)해야 한다는 말을 거듭 아뢰어 진계(陳戒)하고, 또 말하기를,</p> <p>“지진(地震)의 변괴(變怪)는 그 감응(感應)이 하나만이 아닙니다. 혹 여알(女謁)이 성행(盛行)하거나, 혹 여주(女主)가 정사(政事)에 관여하거나, 혹 환관[閹豎]이 권세를 부리는 데서 오는 것이니,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은 그 일이</p> | <p>○引見大臣、諸臣，問消災之策。 領議政金壽恒復申前冬所達君臣上下打破一私字之說陳戒，且曰：“地震之變，其應不一。 或女謁盛行，或女主干政，或閹豎用事。 此數事，不可以無其事而忽之。 卽今大婚當前，尤宜加戒。” 上嘉納之。 左議政閔鼎重等諸臣皆言，今不必更求別策，只就前冬以後諸臣所</p> |

| | | |
|--|---|---|
| | <p>없다는 것으로써 소홀히 여길 수 없으며, 지금 대혼(大婚) 바로 전이니, 더욱 더 경계하심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 등이 여러 신하가 모두 말하기를,</p> <p>“지금 특별한 방책(方策)을 구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지난 겨울 이후 여러 신하가 진계(陳啓)한 것을 좇아 시행할 만한 것을 시행하심이 옳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대신(大臣)에게 명하여 서로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조판서(吏曹判書) 김석주(金錫胄)가 기인 공물(其人貢物)3175)의 지공(支供)하기 어려운 폐단(弊端)을 진계(陳啓)하기를,</p> <p>“영소전(永昭殿) 익릉(翼陵)에 진배(進拜)하는 물품(物品)이 제일 많은데, 대개 한결같이 온돌(溫突)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기인(其人) 1명이 하되, 그 값이 1년에 4백여 석의 쌀에 이릅니다. 그런데 중궁전(中宮殿)에서 마련(磨鍊)을 더하여 또 1명을 늘렸지만, 신 등은 아래에서 감히 재손(裁損)할 수 없으니, 성상께서 살펴 처리하시면 수천 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중궁전(中宮殿)에 들인 기인(其人)의 수를 죽 적어 들이도록 하라. 두 분 자전(慈殿)께서도 각도(各道)의 방물(方物)을 또한 줄이고자 하신다는 하교(下敎)가 있었으니, 아울러 써서 들이는 것이 좋겠다.”</p> | <p>陳者，可施者施之可也。 上命大臣相議施行。 吏曹判書金錫胄陳其人貢物難支之弊曰：“永昭殿、翼陵進排之物最多，蓋一溫突所入，爲其人一名，其價一年至四百餘石米， 而中宮殿加磨鍊， 又增一名。 臣等不敢自下裁損，自上察處， 則可減數千石矣。” 上曰：“中宮殿所納其人之數，列書以入。 兩慈殿各道方物，亦有欲減之教， 竝書入可也。” 錫胄又極陳三南各邑戰船濫費物力，終歸無用之狀曰：“閔維重每欲於沿海諸島各衙門設屯處，擇形便置鎮將，以造戰船，而各邑，則只於海邊要害處置船，其餘竝罷。 若然則戰船之數不縮，而靡費可省矣。” 鼎重曰：“元均多聚戰船，沈海而遁。 李舜臣以十餘艘破賊，而所用之船，亦皆臨急造作。 將不得人，則船雖多，亦安用哉?” 上命相議變通。 行大司成金萬重引烹弘羊，天乃雨之說，力言吳始壽不可容貸之狀曰：“王者所居之位，應皇天承祖宗，雖罪關自己者，猶不可自私其身，有所容貸，況罪關先王之人乎? 自上雖以慈聖好生之德爲教，而慈聖亦與殿下，同承宗廟，其不可有所容</p> |
|--|---|---|

| | | |
|--|--|---|
| | <p>하였다. 김석주가 또 삼남(三南) 각 고을의 전선(戰船)이 물력(物力)을 낭비하면서도 마침내 쓸모 없는 지경에 귀착된 실상을 극진하게 진계(陳啓)하기를,</p> <p>“민유중(閔維重)이 매년 연해(沿海)의 여러 섬의 각 아문(衙門)에서 둔진(屯陣)을 설치한 곳에, 형편에 따라 진장(鎭將)을 두어 배를 만들게 하고, 각 고을에는 다만 해변(海邊)의 요해처(要害處)에만 배를 두고 나머지는 모두 혁파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선의 수를 줄이지 않고도 허비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였는데, 민정중(閔鼎重)이 말하기를,</p> <p>“원균(元均)이 전선(戰船)을 많이 모아 바다에 침몰(沈沒)시키고 달아났으나, 이순신(李舜臣)이 십여 척으로 적(賊)을 격파(擊破)하였는데, 쓰인 배는 또한 모두 위급한 상황에 임하여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장차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배가 비록 많다 하더라도 또한 어디에 쓰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명하여 상의(相議)해서 변통(變通)하도록 하였다. 행 대사성(行大司成) 김만중(金萬重)이 ‘홍양(弘羊)을 삶아야 하늘이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3176)’ 하는 말을 인용(引用)하여, 오시수(吳始壽)는 용서할 수 없다는 실상을 극력 말하기를,</p> <p>“왕자(王者)가 거(居)하는 지위(地位)는 하늘에 응하고 조종(祖宗)에게 이어받은 것이니, 비록 죄가 자기에게 관계된 것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사사롭게 하여 용서하는 바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인데, 하물며 죄가 선왕(先王)에 관계된 사람이 있어서 이겠습니까? 성상께서 비록 자성(慈聖)의 살리기를 좋아하시는</p> | <p>貸也，與殿下無異矣。始壽所爲，與李焯事相類，而以仁祖至仁，曾不貸焯。以此觀之，先王在天之靈，宜無赦於始壽。若以好生而容貸始壽，則國中更無死罪人矣。” 壽恒曰：“萬重所陳，明白洞快。大抵用刑之道，濫刑與屈法，同其失矣。” 鼎重亦繼之。萬重又曰：“向日之人，其所犯輕者，朝廷固宜收用，諸臣亦宜和合。而其中干係惡逆之類，雖以罪無現著，不置刑辟，而亦宜屏逐之，豈可使同朝相合乎？” 仍及金德遠不可復紱之意，蓋以金錫胄請收用德遠及睦來善故也。上不聽。李尙眞請放焯、焯，上曰：“予固知其無罪，而仍置者，實出於深長之慮。” 尙眞又請題給貞明公主食物，命該曹輸送米布。</p> |
|--|--|---|

| | | |
|--|--|--|
| | <p>덕으로 가르침을 삼으셨다 하나, 자성께서도 전하와 함께 종묘(宗廟)를 이어 받으셨으니, 용서함이 있어서 안되는 것은 전하와 다름이 없습니다. 오시수(吳始壽)의 소위(所爲)는 이계(李桂)의 일(3177)과 서로 비슷한데, 인조(仁祖)께서는 지극히 인자하시면서도 일찍이 이계를 용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로써 살펴보건대, 하늘에 계신 선왕(先王)의 영혼(靈魂)도 마땅히 오시수를 용서하심이 없으실 것입니다. 만약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덕으로 오시수를 용서하신다면, 나라 가운데 다시 죽여야 할 죄인(罪人)이 없게 될 것입니다.</p> <p>하자, 김수항이 말하기를,</p> <p>“김만중이 진계(陳啓)한 바가 명백하고 통쾌합니다. 대저 형벌을 시행하는 도리에 있어서 남형(濫刑)과 굴법(屈法)은 그 잘못이 같습니다.”</p> <p>하였는데, 민정중이 또한 잇달아 이를 말하였다. 김만중이 또 말하기를,</p> <p>“지난날의 사람으로 그 범한 것이 가벼운 자는 조정(朝廷)에서 진실로 거두어 임용함이 마땅하고, 여러 신하들도 또한 마땅히 화합(和合)해야 하겠지만, 그 가운데 악역(惡逆)에 관계된 무리는 비록 드러난 죄가 없어서 형벌(刑辟)3178)으로 처치(處置)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한 조정에서 서로 화합(和合)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p> <p>하고, 인해서 김덕원(金德遠)은 다시 서용(敍用)할 수 없다는 뜻에 언급이 있었는데, 대개 김석주가 김덕원(金德遠)과 목내선(睦來善)을 거두어 임용할 것을 청하였기 때문이었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상진(李尙眞)이 이훈(李焜)과 이엽(李焜)을 풀어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 |
|--|--|--|

| | | |
|--|---|---|
| | <p>“내가 진실로 그가 무죄(無罪)함을 알면서도 그대로 두는 것은 진실로 심장(深長)한 염려에서 나온 것이다.”</p> <p>하였다. 이상진이 또 정명 공주(貞明公主)에게 식물(食物)을 제급(題給)할 것을 청하니, 해조(該曹)에 명하여 쌀과 포(布)를 실어 보내도록 하였다.</p> | |
| <p>숙종 11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5월 13일(을축) 1번째기사</p> | <p>임금이 어의궁(於義宮)에 나아가서 전안례(奠雁禮)를 거행하고, 오시(午時)에 환궁(還宮)하였다. 왕비(王妃)가 예궐(詣闕)하여 신시(申時)에 동뢰연(同牢宴)3190) 의 예(禮)를 거행하였는데, 의절(儀節)은 한결같이 《오례의(五禮儀)》의 상의(常儀)와 같이 하였다.</p> | <p>乙丑/上詣於義宮，行奠雁禮，午時還宮。王妃詣闕，申時行同牢宴禮，儀節一如《五禮儀》常儀。</p> |
| <p>숙종 11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5월 22일(갑술) 7번째기사</p> |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경연(知經筵) 이민서(李敏敘)가 말하기를,</p> <p>“신축년3232) 이후로 항상 한재(旱災)가 많았는데, 신해년3233) 에 이르러 지극하였으며, 신해년 후 10여년 동안 한 번도 풍년(豐年)이 들지 아니하였습 니다. 올해에 또 이와 같은데, 조정(朝廷)에서 민은(民隱)에 진념(軫念)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시세(時勢)에 구애받아 그릇된 법규(法規)를 혁파하기 어려 워하고, 민폐(民弊)를 혁파하는 것이 없고, 함부로 취렴(聚斂)하는 것을 제거 시키지 못하니, 민원(民怨)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체옥(滯獄)의 폐단은 외 방(外方)이 더욱 심해서 죄명(罪名)이 조금 무거우면 관리(官吏)들이 즉시 처 결(處決)하지 않고 혹 10년에 이르기도 하니, 마땅히 경외(京外)에 신칙(申飭) 하여 이러한 폐단을 혁파(革罷)하게 하소서.”</p> <p>하고, 교리(校理) 오도일(吳道一)이 또한 말하기를,</p> | <p>○御晝講。知經筵李敏叙曰：“自辛丑以後，常多旱災，至辛亥而極矣。辛亥後十餘年，一未豐熟，今年又如此。朝廷非不軫念民隱，而時勢所拘，謬規難擺，民弊無以革祛。暴斂不除，民怨不已。滯獄之弊，外方尤甚，罪名稍重，則官吏不卽處決，或至數十年。宜申飭京外，俾革此弊矣。”校理吳道一亦曰：“蠲暴斂疏，滯獄之政，固宜講究，而本領則在於人君勤學，而近因多事，御筵不頻，恐有歉於修省之道。”上皆嘉納。敏叙曰：“吏受賂絹一匹以上者罪死，此唐法也。今則至於自公計給人情債，奸猾何所憚哉？若</p> |

| | | |
|--|--|---|
| | <p>“함부로 가혹하게 취렴(聚斂)하는 것을 줄이고 체옥(滯獄)을 풀어 주는 정사(政事)는 진실로 마땅히 강구(講究)해야 하나, 그 본령(本領)은 인군(人君)이 부지런히 학문(學問)을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일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경연(經筵)에 자주 나아가지 아니하시니, 수성(修省)하는 도리에 혐의로우미 있을까 두렵습니다.”</p> <p>하니, 임금(李熙)이 모두 가납(嘉納)하였다. 이민서가 말하기를,</p> <p>“관리(官吏)로서 견포(絹布) 1 필(匹) 이상을 뇌물로 받은 자의 죄를 사형(死刑)에 처하는 것에 당법(唐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공공연히 인정채(人情債)를 헤아려 주는 데 이르렀으니, 간활(奸猾)하여 무엇을 꺼려하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폐단(弊端)을 혁파(革罷)하지 않는다면 비록 흠민(恤民)의 정사(政事)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실효(實効)가 없을 것입니다.”</p> <p>하니, 승지(承旨) 이인환(李寅煥)이 말하기를,</p> <p>“신이 일찍이 양양(襄陽)을 맡았을 때 보니, 진상(進上) 1태(駄)에 인정(人情)이 5태(駄)나 되었습니다. 이서(吏胥)의 폐단을 만드는 것이 이에 이르렀습니다.”</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듣고 보니, 지극히 놀랍다. 각별하게 엄중히 신칙(申飭)하도록 하라.”</p> <p>하였다. 부제학(副提學) 남이성(南二星)이 말하기를,</p> | <p>不革此弊，則雖有恤民之政，皆無實效矣。” 承旨李寅煥曰：“臣曾任襄陽見之，進上一駄，人情爲五六駄，胥吏爲弊至此矣。” 上曰：“聞極敬駭。各別嚴飭。” 副提學南二星曰：“卽今上下所爲，皆歸文具。大臣所論，只若干減稅減糴，而有司每惜經費，終無實惠。先自上供，雖一肉一菜，痛加裁省。朝士祿俸亦減，一切以節用恤民爲務，然後庶可維持矣。” 上曰：“忠信重祿，所以勸士。旣減於辛亥，又何可減也？各殿所供，亦令書入，當有所減省矣。” 敏叙曰：“如魂殿諸宮家進香，必用人參正果及龍眼等稀貴之品，其費過百金云，如此事宜從簡矣。且古者，賢君宮中澣濯之衣，非外人所見，自然有教導之效。漢文不作露臺，宋仁宗不殺羊，此可爲後世法。卽今主第踰越法制，而其實則過大無用。祖宗朝則只給其價，私自營構，而今雖不能如此，宜減間架，以省工費矣。” 上答以戒誨切實，而主第旣令停役，亦減其間架矣。</p> |
|--|--|---|

“지금 위 아래에서 하는 바가 모두 외형적인 문식(文飾)에만 귀착(歸着)되고, 대신(大臣)들이 논하는 바도 단지 약간 감세(減稅)·감적(減糶)만 하려는 것이나, 유사(有司)가 매번 경비(經費)를 아껴 마침내 실제로 받는 은혜(恩惠)가 없습니다. 먼저 성상(聖上)의 어공(御供)부터 한 가지 고기와 한 가지 야채라 하더라도 힘껏 다 재량(裁量)하여 줄이고, 조사(朝士)의 녹봉(祿俸)도 또한 일체 줄여서 절용(節用)하여 홀민(恤民)하는 데 힘쓴 후에라야 거의 유지(維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충성되고 신망(信望)이 있는 이에게 녹(祿)을 후하게 함은 선비를 권면(勸勉)케 하는 까닭이다. 이미 신해년(3234)에 줄였는데, 또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는가? 각전(各殿)에 지공(支供)하는 것도 또한 써서 들이도록 하였으니, 마땅히 줄인 것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민서(李敏紘)가 말하기를,

“혼전(魂殿)과 같이 여러 궁가(宮家)에서 진향(進香)할 때 반드시 인삼(人蔘)·정과(正果) 및 용안(龍眼) 등 희귀(稀貴)한 물품을 쓰는데, 그 비용(費用)이 백금(白金)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마땅히 간소함을 따라야 합니다. 또 옛날의 현군(賢君)은 궁중(宮中)에서 옷을 빨아 입었는데, 외부의 사람들이 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연히 교도(教導)의 효험이 있었습니다. 한(漢)나라 문제(文帝)는 노대(露臺)3235)를 쌓지 아니하였고, 송(宋)나라 인종(仁宗)은 양(羊)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일들이 후세(後世)의 법이 될

| | | |
|--|---|---|
| | <p>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주(公主)의 저택은 법제(法制)를 넘었는데, 실제로는 너무 커서 쓸모가 없습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는 다만 그 값만 주고 사사롭게 영건(營建)하도록 하였는데, 지금은 비록 이와 같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마땅히 간가(間架)를 줄여서 공비(工費)를 덜어야 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경계하여 가르친 바가 절실한데, 공주의 집은 이미 공역(工役)을 정지하도록 하였고, 또한 그 간가(間架)도 줄이도록 하였다.”</p> <p>하였다.</p> | |
| <p>숙종 11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5월 22일(갑술) 8번째기사</p> | <p>이보다 앞서 관서(關西)에 해마다 잇달아 흉년이 들었는데, 여섯 고을이 더욱 심하였다. 그래서 굶주린 백성 가운데 가족(家族)은 있으나 전지(田地)가 없는 사람, 가족은 없으나 전지가 있는 사람, 가족과 전지도 없이 유랑하며 빌어먹는 사람 등 3등으로 나누어 혹 양식(糧食)을 주거나 혹 조곡(糶穀)을 주었는데, 그후 유랑하며 빌어먹는 자들은 모두 탕감(蕩減)하도록 허락하였으며, 이때에 이르러 또 도신(道臣)의 계문(啓聞)으로 인해서 다시 전지가 없는 사람을 조사하여 일체 견감(鑷減)하도록 하니, 그 곡식이 1천 6백 30여 석이었다 한다.</p> | <p>○先是，關西連歲失稔，六邑尤甚。飢民中有族而無田者，無族而有田者，無族、無田而流丐者，分三等或給糧，或給糶。其後流丐之類，竝許蕩減。至是又因道臣啓聞，更查無田者，一體鑷之，其穀一千六百三十餘石云。</p> |
| <p>숙종 11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6월 2일(계미) 1번째기사</p> | <p>대사성(大司成) 김만중(金萬重)이 상소(上疏)하기를,</p> <p>“학교(學校)에 벌(罰)이 있는 것은 대개 송(宋)나라 유현(儒賢)들의 향약(鄉約)에 과실(過失)을 서로 규계(規戒)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논은 다만 학교(學校)에서 시행될 수 있지, 나라에까지는 미칠수가 없습니다. 유생(儒生)을 정과(停科)3248)로 벌한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p> | <p>○癸未/大司成金萬重上疏曰： 學校之有罰，蓋出於宋儒鄉約過失相規之意，然其議祇可行於學校，不可達於邦國。儒生之以罰停科，其來已久，而近日施罰尤濫。國家取人，只有科</p> |

| | | |
|--|---|--|
| | <p>요사이 벌을 베푸는 것은 더욱 외람됩니다. 국가에서 인재를 뽑는 것이 단지 과거(科擧) 한 가지 길만 있는데, 연소(年少)하고 경예(輕銳)한 무리로 하여금 통하게 하거나 막는 권한을 조종케 하여, 조정(朝廷)을 덕의(德意)가 막혀 베풀어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유생을 벌할 때에는 손도(損徒)3249)·삭직(削籍) 같은 것은 한결같이 향약(鄉約)의 뜻을 본떠서 과실을 서로 규계(規戒)하는 바탕으로 삼고, 미처 벌(罰)을 해면(解免)하기 전에는 학궁(學宮)의 과제(課製)에 나아갈 수 없게 하고, 국시(國試)에 있어서는 조사(朝士)로서 삭직(削職)된 사람이 부과(赴科)하는 예와 같이 모두 부과하도록 허락하소서. 악행(惡行)이 있어서 부거(赴擧)하는 데 합당하지 못한 자는 저절로 사관(四館)의 정거(停擧)가 있습니다.</p> <p>서원(書院)을 설치한 뜻이 아름답지 않은 바 아니나, 그 수(數)가 너무 많아서 한 고을에 7, 8군데에 이르고, 한 도에 8, 90군데에 이릅니다. 서원(書院)의 성대함은 영남(嶺南)만 한 곳이 없는데, 널리 전토(田土)를 점유(占有)하고 한정(閑丁)을 많이 모아들였습니다. 권력(權力)은 매번 수신(守臣)보다 높은 데 있고 많은 사람이 모여 놀면서 담소(談笑)하되, 서로 경박한 의논만 하고, 아랫사람들은 술과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써 일삼으니, 사습(士習)이 아름답지 못함을 염려할 만합니다. 그리고 공사 간에 모두 재력(財力)이 곤핍(困乏)하여 궤갈(匱竭)된 때를 당하였으니, 또한 제도(制度)를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지금 서원(書院)이 지극히 많고, 성조(聖朝)에 숭상(崇尚)하여 보답하는 은전(恩典)이 또한 이미 남음이 없을 정도입니다. 설령 유현(儒賢)이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자연히 조금 후세(後世)의 공의(公議)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여겨지니, 이제 마땅히 일률적으로 정지하고, 상청(上請)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도록 하소서. 오로지 이미 설치한 서원 가운데 미처 편액(扁額)을 내려주지 아니하였으나, 그 가운데 도덕(道德)을 존숭(尊崇)할 만</p> | <p>擧一路, 而乃使年少輕銳之輩, 操其通塞之權, 使朝廷德意, 遏而不宣, 自此以後, 儒罰如損徒削籍之類, 一倣鄉約之意, 以爲過失相規之資, 未解之前, 不得輒赴學宮課製, 至於國試, 則皆許赴如朝士削職人赴科之例。 其有惡行, 不合赴擧者, 自有四館之停擧。 書院之設意, 非不美而其數過多, 一邑至有七八處, 一道至有八九十處。 書院之盛, 無如嶺南, 廣占田土, 多聚閑丁。 權力每在守臣之右, 而群居游談, 相與爲浮薄之論, 下者徒以酒食舖餽爲事, 士習之不美, 固已可憂。 而當公私俱困, 財力匱竭之時, 亦不可不稍爲之定制也。 臣謂, 目今書院極多, 聖朝崇報之典, 亦已無遺矣。 設有儒賢繼出, 自可稍俟後世公議, 今宜一例停止, 勿許上請, 唯已設書院, 未及賜額, 而其中道德可尊者, 許令請額, 而亦不得疊設。 古者市廛有賦, 所以抑末業也。 國家唯令成均館, 收其若干魚菜, 以饋儒生。 近因平市署啓辭, 一切禁斷, 設令館奴收聚時, 有所橫濫, 唯當卽其弊而嚴勅之, 不宜竝與祖宗朝養士之規而廢之也。</p> |
|--|---|--|

| | | |
|--|---|---|
| | <p>한 사람은 청원(請願)하도록 허락하되, 또한 겹쳐서 설치하지 못하게 하소서.</p> <p>옛날에 시전(市廛)에 부세(賦稅)가 있었던 것은 말업(末業)3250) 을 억제(抑制)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오로지 성균관(成均館)으로 하여금 약간의 고기와 야채를 거두어 유생(儒生)을 대접하도록 하였는데, 근래에 평시서(平市署)의 계사(啓辭)로 인해서 일체 금단(禁斷)하였습니다. 설령 관노(官奴)가 거두어 모을 때 함부로 외람되게 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오로지 그 폐단을 곧 엄중하게 신칙(申飭)해야 할 것이요, 아울러 조종조(祖宗朝)에서 선비를 양성한 규례(規例)와 함께 폐지(廢止)함은 마땅하지 못합니다.”</p> <p>하니, 답하기를,</p> <p>“진소(陳疏)한 세 조목(條目)이 절실하지 않은 것이 없다. 서원(書院)을 겹쳐 설치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명백하게 수교(受教)에 있는데, 편액(扁額)을 시끄럽게 칭하는 것이 오늘과 같은 적이 없었으니, 특별히 신칙(申飭)을 더하여 남상(濫觴)에 이르지 않게 하겠다. 두 가지 일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p> <p>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다시 아뢰기를,</p> <p>“사자(士子)로서 벌(罰)을 받은 자에게 이제 만약 새 법령(法令)을 만들어 국시(國試)에 나아가도록 허락한다면, 경중(輕重)의 취사(取舍)에 반드시 소란스러워 처치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유적(儒籍)에서 이름을 삭거(削去)하였는데, 태연하게 유자(儒者)의 의관(衣冠)을 입은 채 예유(禮囿)3251) 에 들어가게 함은 아마도 사절(士節)을 닦는 도리가 아닐 듯하며,</p> | <p>答曰：“疏陳三條，罔非切實。書院之不得疊設，明有受教，而請額之紛紜，莫如今日。另加申飭，俾不至於濫觴。兩件事，令廟堂稟處。”備局復啓以爲：“士子被罰者，今若創爲新令，許赴國試，則輕重取舍，必有鬧擾難處之端。且名削儒籍，而偃然服儒衣冠，入禮園，恐非礪士節之道。唯在任教胄者，常常曉諭，學校之罰，切戒過濫。其已罰者，觀其輕重久近，以次解除。市收魚菜，以饋儒生，纔禁還許，市民終難支堪。朝家既設養賢庫，又給菜田漁場，特賜諸海島收稅。本館奴婢，其數甚多，以其貢木，歸之本館，而各處折受，則屬之養賢庫，從其實入，勘會於地部，催徵之際，皆自地部句管。如是而猶有不足，則令地部繼粟繼肉，亦合養士之禮。”上可之。書院事，下禮曹，禮曹覆奏以今後，院宇禁其新設，雖有可合院享之人，稍待年豐，百度復舊之日稟定。</p> |
|--|---|---|

| | | |
|---|---|---|
| | <p>오로지 교주(敎胄)를 맡은 사람이 평소 효유(曉諭)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학교(學校)의 벌이 너무 외람됨을 간절하게 경계하셨으니, 이미 벌한 자는 가벼운지 무거운지 오래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차례차례 해제(解除)하소서. 저자에서 고기와 야채랑 거두어 유생을 먹이게 한 일은 이제 막 금하자마자 도로 허락한다면, 저자의 백성들이 마침내 지공(支供)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가(朝家)에서 이미 양현고(養賢庫)를 설치하였고, 또 채전(菜田)과 어장(漁場)을 주고, 특별히 해도(海島)의 수세(收稅)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본관(本館)의 노비(奴婢)는 그 수가 매우 많으니, 그 공목(貢木)을 본관에 돌리고, 각처의 절수(折受)는 양현고(養賢庫)에 붙이되, 실제로 들어오는 데 따라 지부(地部)에서 모으게 할 것이며, 독촉하여 징수(徵收)할 즈음에 모두 지부에서 맡아서 관장(管掌)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고도 오히려 부족(不足)한 것이 있으면 지부로 하여금 속미(粟米)와 고기를 잇대어 주게 하는 것이 또한 선비를 양성하는 예(禮)에 합당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서원(書院)의 일은 예조(禮曹)에 내렸는데, 예조에서 다시 아뢰기를,</p> <p>“이후로 원우(院宇)를 새로 설치하는 것을 금하소서. 비록 서원(書院)에다 배향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풍년이 들어 모든 법도(法度)가 복구(復舊)될 날을 기다리게 하소서.”</p> <p>하고, 품정(稟定)하였다.</p> | |
| <p>숙종 11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6월 16일(정유)</p> | <p>선혜정(宣惠廳)에서 양남(兩南)의 사전(四殿)에 지공(支供)하는 삭선(朔膳)3266) 을 헤아려 줄이고, 각종 절가(折價) 및 감영(監營)·수영(水營)·병영(兵營)과 각 고을의 관수(官需), 사객(使客)의 지공(支供), 전선가(戰船價)·병선</p> | <p>○宣惠廳裁減兩南四殿朔膳，各種折價及監·兵·水營、各邑官需、使客支供、戰兵船價等米之數，區別錄啓，以</p> |

| | | |
|--|---|--|
| <p>2번째기사</p> | <p>가(兵船價) 등의 미곡(米穀)의 수량을 구별해서 녹계(錄啓)하여 정식(定式)으로 삼았으니, 국용(國用)이 부족(不足)하기 때문이었다. 호남(湖南)은 원수(原數)가 총 6만 2백여 석(石)인데 줄인 것이 1만 5천 6백여 석이고, 영남(嶺南)은 원수가 총 4만석인데 줄인 것이 9천 5백 80여 석이었다.</p> | <p>爲定式，以國用不足也。 湖南原數總六萬二百餘石， 所減一萬五千六百餘石； 嶺南原數總四萬石零， 所減九千五百八十餘石。</p> |
| <p>숙종 11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6월 21일(임인) 2번째기사</p> | <p>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거듭 아뢰기를, “이달 초5일에 광풍(狂風)이 불고 폭우(暴雨)가 내렸는데, 각 고을이 똑같았습니다. 진주(晉州)에서는 민가(民家) 가운데 표몰(漂沒)하거나 무너진 것이 3백여 호이고, 공우(公宇)의 무너진 것이 40여 간(間)이었습니다. 함양(咸陽)에서는 민가[閭家] 50여호가 떠내려갔고, 물이 서문(西門)에서 성(城)을 들이치고 들어와서 성내(城內)에 범람하여 관사[廩舍]가 또한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니, 임금이 일이 몹시 놀랍고도 참혹하다 하여 본도(本道)로 하여금 아무양곡을 획급(劃給)하여 각별히 구제(救濟)하도록 하였다. 또 5월 28일부터 6월 초5일까지 영천(榮川)·예안(禮安)·안동(安東)·예천(醴泉)·풍기(豐基)·진보(眞寶)·봉호(奉化) 등의 고을에 혹 2, 3차례 혹 한 차례 지진(地震)이 일어났다고 도신(道臣)이 계문(啓聞)하였다.</p> | <p>○慶尙道觀察使申啓言：“本月初五日，狂風暴雨，各邑同然，而晉州則民家漂沒，頽塌者三百餘戶，公宇毀圮者，四十餘間。 咸陽則閭家五十餘戶漂去，水自西門衝城而入，泛溢城內，廩舍亦多頽傷。” 上以事甚驚慘，令本道劃給某樣穀，各別救濟。 又自五月二十八日至六月初五日，榮川、禮安、安東、醴泉、豐基、眞寶、奉化等邑，或二三次，或一次地震。 道臣以聞。</p> |
| <p>숙종 11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6월 23일(갑진) 1번째기사</p> |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 이단하(李端夏)가 대사헌(大司憲)이었을 때 말한 혁폐청(革弊廳)에 관한 상소(上疏)를 가지고 품주(稟奏)하기를, “상소 가운데 군제(軍制)를 변통(變通)하는 것과 호포(戶布)를 시행(施行)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였는데, 호포(戶布)는 이단하(李端夏)가 애초에 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가, 후에 향곡(鄉曲)의 물정(物情)을 보고는 결코 시행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또 ‘조종조(祖宗朝)에서 정한 제</p> | <p>○甲辰/引見大臣及備局諸宰。 領議政金壽恒以李端夏爲大憲時，言革弊廳疏稟奏曰：‘疏內言軍制變通及戶布難行，而戶布則端夏初亦以爲可行，後見鄉曲物情，決知其不可行，故其言如此矣。 又言祖宗朝定制至矣。’ 今不必別樣變通。 若申明順贊之法，則雖減逃故、兒弱之布， 可無經費不足之患</p> |

| | | |
|--|--|--|
| | <p>도(制度)가 지극하니, 지금 와서 별양(別樣)의 변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충순위(忠順衛)·충찬위(忠贊衛)의 법(法)을 거듭 밝힌다면 비록 도고(逃故)·아약(兒弱)의 포(布)를 줄인다 하더라도 경비(經費)가 부족(不足)한 걱정을 없앨 수 있습니다.’고 하였다 하는데, 이말은 진실로 옳지만 옛날과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만약 하루에 아침에 갑자기 채상(宰相)의 자제(子弟)로서 글과 무예(武藝)를 닦지 않은 자가 입번(入番)하면 숙위(宿衛)를 삼고, 입번하지 않을 경우 포를 징수(徵收)한다면, 외방(外方)의 충찬위(忠贊衛)·충순위(忠順衛)는 모두 유음 자손[有蔭子支]이라, 군역(軍役)과 다름이 없게 되어 반드시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니, 조종(祖宗)의 법을 경속하게 바꾸어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소견(所見)을 진달(陳達)하게 하소서.”</p> <p>하니,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은 말하기를,</p> <p>“이 일이 비록 구전(舊典)이라 하더라도 지금 만약 글과 무예를 닦지 않는 자로써 정한다면, 교생(校生)과 같은 바가 있으므로 태강(汰講)은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듣건대 조종조(祖宗朝)에서 생원(生員)·진사(進士)가 충순위(忠順衛)로서 입번(入番)하는 것은 많았으나, 성묘(聖廟)에 수직(守直)하는 것은 적었다고 하는데, 전하는 말이 비록 이와 같다 하더라도 상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경재(卿宰)의 자제(子弟)부터 먼저 소속된 곳이 있으면 정연[井井]하여 어지럽지 않을 것이니, 그 말이 어찌 옳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 오랫동안 폐지(廢止)하였던 것을 닦아서 밝히는 것은 진실로 경장(更張)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p> <p>하고, 영돈녕(領敦寧) 김만기(金萬基)는 말하기를,</p> | <p>云, 此說固是矣。而古今異宜, 若一朝使宰相子弟不文不武者, 入番則爲宿衛; 不入番則徵布。外方之忠贊、忠順皆是有蔭子支, 而無異軍役, 則必無不怨之理, 不可以祖宗之法, 而輕易行之。請令諸臣, 各陳所見。”左議政閔鼎重曰: “此事雖是舊典, 而今若不文、不武者定之, 則有同校生, 汰講不可行也。曾聞, 祖宗朝生進以忠順入番則多, 而聖廟守直則少云。傳說雖如此, 亦有不可詳者。若自卿宰子弟, 先有屬處, 則井井不亂, 其言豈不是也, 而今欲修明於久廢之餘, 實與更張無異矣。”領敦寧金萬基曰: “端夏所陳之疏, 至誠磨度, 爲國深慮之言也。然戶布之難行, 只慮騷擾, 而所論順贊之法, 臣恐尤難於戶布也。”諸臣皆以爲難行, 上曰: “諸議如此, 今姑置之。”戶曹判書鄭載嵩曰: “卽今經用, 決無可繼之道。戶曹綿布二千同, 亦出於累年儲蓄, 已移用一千同。此後則更無出處, 須節縮用度, 庶可支矣。”壽恒曰: “頃日李敏叙疏, 亦以減衛兵爲言, 此非獨爲賑資, 經用亦可使裕矣。”鼎重曰: “曾在先朝, 議變</p> |
|--|--|--|

| | | |
|--|--|---|
| | <p>“이단하가 바친 상소는 지극한 정성으로 법도(法度)를 마련한 것으로서 나라를 위해 심려(深慮)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호포(戶布)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단지 소요스러운 것을 염려한 것인데, 논한 바의 충순위(忠順衛)·충찬위(忠贊衛)의 법을 신은 호포를 시행하는 것보다 더욱 어렵게 생각합니다.”</p> <p>하고, 여러 신하들도 모두 시행하기 어렵다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우선 그대로 두도록 하라.”</p> <p>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정재송(鄭載嵩)이 말하기를,</p> <p>“지금 경용(經用)을 잇낼 수 있는 도리가 결코 없습니다. 호조(戶曹)의 면포(綿布) 2천 동(同)도 여러 해 동안 저축(儲蓄)한 데에서 나왔는데, 이미 1천 동을 옮겨 썼습니다. 이후로는 다시 나올 곳이 없으니, 모름지기 용도(用度)를 절약[節縮]해야 거의 지탱할 수 있습니다.”</p> <p>하자, 김수항은 말하기를,</p> <p>“지난날 이민서(李敏敘)도 상소(上疏)하여 위병(衛兵)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오로지 진대(賑貸)할 밀천 뿐만 아니라, 경용(經用) 또한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고, 민정중은 말하기를,</p> | <p>都下兵制，設立別隊，欲如御營之法。而都下軍則減其數，欲只爲標下，此策最善，而其時持難者，故相臣李滄也。若欲變通，無逾於此，而須先定軍數，欲增其數，則促其番；欲減其數，則緩其番，別隊未滿之前，加上御軍則事可行矣。” 吏曹判書金錫胄曰：“京軍猝減爲難矣。” 鼎重曰：“定制之後，只當有闕勿補，豈可猝然汰減乎？” 萬基曰：“別隊之初設也，議者以御營，稱爲自持糧之軍，依其法而爲之。初意欲罷砲手前部一千，以此補之矣。到今無別隊一千上番，以補前部之事。蓋別隊戶保，僅及御營之半，而御營上番，止於一千，則別隊雖欲以一千上番，其可得乎？且別隊此數僅能成之，而外方之怨已多。設或加定如御營之數，其所上番，當不過一千，豈可以此，減砲手三千乎？” 錫胄曰：“御營上番之限頗寬，只得倍數，則可上三千石矣。” 壽恒曰：“端夏疏中變通軍制一款，則諸臣論議已發，而臣智慮淺短，未得善策，然終不可不變通矣。” 鼎重曰：“雖以兵力言之，恒留都下，不習勞苦，不如輪番之軍矣。” 壽恒曰：</p> |
|--|--|---|

| | | |
|--|--|--|
| | <p>“일찍이 선조(先朝)에서 도하(都下)의 병제(兵制)를 변통(變通)할 것을 의논한 적이 있었는데, 별대(別隊)를 설립(設立)하여 어영(御營)의 법(法)과 같이 하고자 하였고, 도하(都下)의 군사는 그 액수(額數)를 줄이고 다만 표하군(標下軍)을 삼고자 하였으니, 이것이 최선(最善)의 방책이었으나, 그때 고(故) 상신(相臣) 이완(李滄)이 어렵게 여겼습니다. 만약 변통(變通)하고자 하면, 이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모름지기 먼저 군사의 액수를 정하고, 그 액수를 늘리고자 하면 번(番)을 재촉할 것이며, 액수를 줄이고자 하면 번(番)을 늦추어 별대(別隊)가 미처 차기 전에 상번(上番)의 어영군(御營軍)을 더하면 일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고, 이조 판서 김석주는 말하기를,</p> <p>“경군(京軍)은 갑자기 줄이기가 어렵습니다.”</p> <p>하고, 민정중은 말하기를,</p> <p>“제도(制度)를 정한 후에는 단지 궐원(闕員)이 있어도 마땅히 보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도태시켜 줄일 수 있겠습니까?”</p> <p>하고, 김만기가 말하기를,</p> <p>“별대(別隊)를 처음 설치하였을 때 의논하는 사람이 어영군(御營軍)은 스스로 양식을 가지고 오는 군사라고 일컬었고, 그 법에 의거하여 시행하려고 하였으니, 처음의 뜻은 포수(砲手)의 전부(前部) 1천 명을 혁파(革罷)하고, 이로써 보충하고자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별대 1천 명이 상번(上番)하</p> | <p>“其次陳《周易》泰卦之義，而凡事必須詳密寬裕然後，可以弊革。人安者，所謂包荒也，剛果勇斷然後，可以決事者，所謂勇馮河也。深思遠慮，不遺細事及在遠賢才者，所謂不遐遺也。朋亡者，先祛己私之謂也。此爲治國要法，自上所宜體念，而在群下，亦是警惕處，其言好矣。” 末端以爲：“宜如先正臣成渾上疏，置革弊廳，使有才識之臣任之，此亦有所見。第彼時則未有備局，今則備局所職，乃是軍民變通事也。雖別設革弊廳，不過以備局諸臣爲其堂上矣。” 上曰：“今雖別立廳號，當與備局爲一司，不必別設，只着實做事可矣。” 鼎重曰：“孝廟朝亦令以備局堂上，不兼多事之職，不過數月，還復如舊。有他務之人，不得專意之慮則是矣。” 禮曹判書呂聖齊曰：“王妃喪三年內，朝夕上食有無及練祭節目，竝令考于實錄矣。朝夕上食，則有仁祖朝磨鍊啓辭，此爲可據，而練祭則章敬、懿仁、仁烈王后之喪俱無可考，昭憲、恭惠王后之喪皆有練禫。蓋王后之喪，若有世子，則應行練禫，而卽今事勢有異，請詢于大臣以定。”</p> |
|--|--|--|

| | | |
|--|--|---|
| | <p>여 전부(前部)를 보충하는 일이 없으며, 대개 별대의 호보(戶保)는 겨우 어영군의 반에 미치는데, 어영군의 상번(上番)은 1천 명에 그치니, 별대가 비록 1천 명이 상번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별대의 이 액수는 겨우 이를 수 있다고 하나, 외방(外方)에서 원망하는 바가 이미 많고, 설혹 더 정하여 어영군의 액수와 같이 한다 하더라도 상번(上番)은 마땅히 1천 명에 지나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이로써 포수 3천 명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p> <p>하고, 김석주가 말하기를,</p> <p>“어영군의 상번(上番)하는 한계는 자못 관대하여, 단지 갑절의 액수를 얻으면 3천 석을 웃돌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고, 김수항은 말하기를,</p> <p>“이단하(李端夏)의 상소(上疏) 가운데 군제(軍制)를 변통(變通)하는 일은 여러 신하들이 논의(論議)를 이미 내었는데, 신은 지려(智慮)가 얕고도 짧아서 좋은 계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변통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p> <p>하고, 민정중은 말하기를,</p> <p>“비록 병력(兵力)으로 말하더라도 항상 도하(都下)에 머물면서 노고(勞苦)를 익힐 수는 없으니, 번갈아 입번(入番)하는 군사만 못할 것입니다.”</p> <p>하였다. 김수항이 말하기를,</p> | <p>壽恒曰：“禮十一月而練，十三月而祥，十五月而禫。雖是期服，有三年之義故也。自上服制，初若一從古禮，則宜無難處之事。而今則自上服制已盡，且與祖宗朝有王世子時不同，群臣之服則本是不杖墓，無行練之事。獨守侍陵官當有變除之節，而只爲守侍陵官行練祭，亦未知如何。且練時當造練主改虞主，而若不行練，則似當至祥改主。若不欲全廢三年之義，則仍行練禫，恐或得宜。”鼎重曰：“大抵練祭之義，爲有服練之人，而今者只爲守侍陵官變除之節，設行練祭，似爲重大。且祭則行於魂殿，而守侍陵官則在陵所，不得來參，亦未知果合於禮意否也。”聖齊曰：“若無練則守侍陵官去負版、辟頌、衰，當在何時乎？”壽恒曰：“大段節目，又在改主一款，此是變禮之大者，下詢知禮儒臣而處之得矣。”上曰：“禮有十一月而練，十三月而祥，十五月而禫之文，則闕而不行，亦似未安，收議於知禮儒臣。且令玉堂，博考典禮而行之可也。”聖齊曰：“《五禮儀》，禫後始有祭時用樂之節。禫祭節目，亦宜講定矣。”上</p> |
|--|--|---|

| | | |
|--|--|--|
| | <p>“《주역(周易)》 태괘(泰卦)의 뜻을 차례로 진계(陳啓)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상밀(詳密)하고 관대[寬裕]한 후에야 폐단(弊端)을 혁개(革改)하여 사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이니, 이른바 ‘포황(包荒)3269’ 이요, 강과(剛果)3270) 하여 용단(勇斷)한 후에야 일을 결단(決斷)할 수 있으니, 이른바 ‘용빙하(勇憑河)3271)’ 이고, 심사 숙고(深思熟考)하고 원려(遠慮)하여 자질구레한 것도 남김이 없고 먼 곳에 있는 현재(賢才)에까지 미치는 것이 이른바 ‘불하유(不遐遺)3272)’ 입니다. 그리고 붕망(朋亡)3273) 은 먼저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니, 이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요법(要法)입니다. 성상(聖上)께서는 마땅히 체념(體念)하시면 여러 신하들이 또한 경계하여 삼가하는 곳이니, 유익한 말입니다.”</p> <p>하고, 말단(末端)에 이르기를,</p> <p>“마땅히 선정신(先正臣) 성훈(成渾)의 상소(上疏)와 같이 혁폐청(革弊廳)을 설치하고, 재식(才識)이 있는 신하를 위임하는 것도 또한 소견(所見)이 있는 것이나, 다만 그때에는 비국(備局)이 없었지만, 지금은 비국의 직임(職任)이 있으니, 곧 이것도 비국의 여러 신하들로 그 당상(堂上)을 삼는 데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지금 비록 특별히 청(廳)의 이름을 세운다 하더라도 마땅히 비국과 한 관사(官司)가 될 것이니, 특별히 설치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일을 착실하게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p> | <p>曰：“服雖期，而有三年之義，故有練有禫。若行練，則亦宜行禫矣。” 行副護軍趙師錫曰：“章敬、懿仁兩王后喪，則臣僚祥後服吉，仁烈王后喪，則服淺淡，祥後服色，亦有不同矣。” 聖齊曰：“此亦當一體收議矣。” 上可之。仍命領府事處，則遣史官問之。應教李濡曰：“先正臣宋浚吉道德學問，爲士林之所推仰，法當舉易名之典，而聞其平日戒子孫，使勿請諡，故子孫不得上請云，朝家合有特諡之舉矣。” 上曰：“雖因其自謙之言，子孫不爲請諡，而在朝家尚德之道，豈可無易名之典乎？” 壽恒曰：“議諡之規，必待本家進呈諡狀，而曾在宣廟時，先正臣李滉之賜諡也，先正臣李珣以爲：‘滉德行在人耳目，不必待其諡狀’云，故其時無狀而賜諡。今此宋浚吉言行事蹟，聖明之所親見，朝臣之所共知，雖無諡狀，特爲賜諡，恐無不可矣。” 鼎重曰：“先正臣金集議諡時，亦用此例矣。” 上曰：“雖無諡狀，特爲贈諡。” 是日上以驪陽府院君閔維重仍兼諸務，實非偶然，而一向遜避，特命牌招同入。維重再招不進，上筭辭職待罪，</p> |
|--|--|--|

| | | |
|--|---|--------------------|
| | <p>하였다. 민정중이 말하기를,</p> <p>“효묘조(孝廟朝)에서도 비국 당상(備局堂上)으로 하여금 일이 많은 직임(職任)을 겸하게 하지 아니하였다가, 몇 달이 지나지 아니하여 도로 옛날같이 회복시켰습니다. 다른 직무(職務)가 있는 사람은 오로지 그 직무에 뜻을 두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p> <p>하고, 예조 판서(禮曹判書) 여성제(呂聖齊)는 말하기를,</p> <p>“왕비(王妃)의 상(喪)에 3년 안에 조석(朝夕)으로 상식(上食)이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와 연제(練祭)의 절목(節目)을 아울러 실록(實錄)에서 상고하게 하소서. 조석(朝夕)의 상식(上食)은 인조조(仁祖朝)에서 마련(磨鍊)한 계사(啓辭)가 있으므로, 이에 의거할 만한데, 연제(練祭)는 장경 왕후(章敬王后)·의인 왕후(懿仁王后)·인렬 왕후(仁烈王后)의 상(喪)에서 모두 상고할 수가 없었으며, 소헌 왕후(昭憲王后)·공혜 왕후(恭惠王后)의 상에서는 모두 연제(練祭)와 담제(禫祭)가 있었으니, 대개 왕후의 상에 만약 세자(世子)가 있으면 응당 연제와 담제를 거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세(事勢)가 다른 바가 있으니, 청컨대 대신(大臣)들에게 물어 보시고 정하소서.”</p> <p>하고, 김수항은 말하기를,</p> <p>“《예기(禮記)》에는 11개월 만에 연제가 있고, 13개월 만에 상제(祥祭)가 있고, 15개월 만에 담제(禫祭)가 있다고 하였으니, 비록 이것이 기년복(基年服)이라 하더라도 3년의 의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상께서 복제(服制)를 만약 애초에 한결같이 고례(古禮)를 따르셨더라면, 의당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없</p> | <p>上優批懇諭，令速行公。</p> |
|--|---|--------------------|

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상께서는 이미 복제(服制)를 다하셨으며, 또 조종조(祖宗朝)의 왕세자(王世子)가 있었던 때와 같지 아니하므로, 군신(群臣)의 복(服)은 본래 부장기(不杖基)로서, 연제(練祭)를 거행할 일이 없고, 오로지 수릉관(守陵官)·시릉관(侍陵官)만 마땅히 변제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인데, 다만 수릉관(守陵官)·시릉관(侍陵官)에게만 연제를 거행하게 하는 것이 또한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연제 때에는 마땅히 연주(練主)3274) 를 만들고, 우주(虞主)3275) 를 고쳐야 하는데, 만약 연제를 거행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상제 때 신주(神主)를 고쳐야 할 듯하며, 만약 3년의 의리를 완전히 폐지(廢止)한다면 그대로 연제(練祭)와 담제(禫祭)를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민정중은 말하기를,

“대저 연제(練祭)의 의리는 복(服)이 있어 연제를 거행하여야 할 사람을 위한 것이므로, 지금은 다만 수릉관·시릉관의 변제(變除)하는 절차를 위하여 연제를 설행(設行)하는 것이 중대할 듯합니다. 또 제사(祭祀)는 혼전(魂殿)에서 거행해야 하는데, 수릉관·시릉관은 능소(陵所)에 있으므로 와서 참여할 수가 없으니, 또한 과연 예의(禮意)에 합당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여성제는 말하기를,

“만약 연제가 없으면, 수릉관·시릉관이 부관(負版)·벽령(辟領)·최복(衰服)을 벗어야 하는데, 마땅히 어느 때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고, 김수항이 말하기를,

| | | |
|--|---|--|
| | <p>“큰 절목(節目)은 또 신주(神主)를 고치는 일에 달려 있는데, 이것은 크게 예(禮)를 변동(變通)하는 것이니, 예를 아는 유신(儒臣)에게 하문[下詢]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예기(禮記)》에 11개월 만에 연제를 거행하고, 13개월 만에 상제(祥祭)를 거행하고, 15개월 만에 담제(禫祭)를 거행한다는 글이 있으니, 꺾(闕)하고 거행하지 않는 것은 또한 미안(未安)할 듯하다. 예(禮)를 아는 유신(儒臣)에게 수의(收議)하도록 하고, 또 옥당(玉堂)으로 하여금 전례(典禮)를 널리 상고하게 하여 거행하는 것이 옳겠다.”</p> <p>하였다. 여성제가 말하기를,</p> <p>“《오례의(五禮儀)》에 담제 후에 비로소 제사지낼 때 음악을 쓴다는 절목(節目)이 있으니, 담제의 절목을 또한 마땅히 강정(講定)해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비록 기년복(基年服)이라 하더라도 3년의 의리가 있기 때문에, 연제가 있고 담제가 있는 것이니, 만약 연제를 거행한다면, 또한 마땅히 담제도 거행해야 할 것이다.”</p> <p>하였다. 행부호군(行副護軍) 조사석(趙師錫)이 말하기를,</p> | |
|--|---|--|

“장경 왕후(章敬王后)·의인 왕후(懿人王后) 두 분 왕후(王后)의 상(喪) 때에는 신료(臣僚)들이 상제(祥祭) 후에 길복(吉服)을 입었고, 인렬 왕후(仁烈王后)의 상(喪) 때에는 천담복(淺淡服)을 입었었으니, 상제(祥祭) 후의 복색(服色)이 또한 같지 않습니다.”

하자, 여성제가 말하기를,

“이것도 또한 마땅히 일체로 수의(收議)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기고, 인해서 영부사(領府事)의 처소에 사관(史官)을 보내어 이를 묻게 하였다. 응교(應教) 이유(李濡)가 말하기를,

“선정신(先正臣) 송준길(宋浚吉)은 도덕(道德)과 학문(學問)으로 사림(士林)에 추앙(推仰) 받았으므로, 법(法)에 의거해 마땅히 역명(易名)의 은전(恩典)이 있었어야 하는데, 듣건대, 평일에 자손에게 경계하여 시호(諡號)를 청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자손들이 상청(上請)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조가(朝家)에서 특별히 시호를 내리는 일이 있어야 합당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스스로 겸사(謙辭)하는 말로 인하여 자손(子孫)들이 시호를 청하지 않았다고 하나, 조가(朝家)에서 덕(德)을 숭상하는 도리에 있어서 어떻게 역명(易名)의 은전(恩典)이 없을 수 있겠는가?”

| | | |
|--|--|--|
| | <p>하였는데, 김수항이 말하기를,</p> <p>“시호(諡號)를 의논하는 규례(規例)는 반드시 본가(本家)에서 시장(諡狀)을 바치기를 기다려야 하나, 일찍이 선조조(宣祖朝) 때 선정신(先正臣) 이황(李滉)에게 시호를 내리는 데 대해 선정신이 이이(李珥)가 말하기를, ‘이황의 덕행(德行)은 사람들의 이목(耳目)에 드러나 있으므로, 반드시 시장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때에는 시장 없이 시호를 내렸습니다. 지금 송준길이 언행(言行)과 사적(事蹟)은 성명(聖明)께서 친히 보셨고, 조신(朝臣)들도 모두 아는 바이니, 비록 시장 없이 특별히 시호를 내린다 하더라도 불가(不可)함이 없을 듯합니다.”</p> <p>하고, 민정중이 말하기를,</p> <p>“선정신 김집(金集)의 시호를 의논하였을 때에도 이 예(例)를 썼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비록 시장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히 시호를 추증(追贈)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이날 임금이 여양 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閔維重)에게 그대로 여러 직무(職務)를 겸하게 한 것은 진실로 우연한 것이 아닌데, 한결같이 손피(遜避)3276 하자, 특별히 명하여 패초(牌招)를 올려 함께 들어오도록 하였으나, 민유중이 두 번의 부름에도 나아가지 않은 채, 차자(笱子)를 올려 사직(辭職)하고 대죄(待罪)하니, 임금이 우악(虞渥)한 비답(批答)을 내려 간절히 타이르며 속히 행공(行公)하도록 하였다.</p> | |
|--|--|--|

| | | |
|--|--|--|
| <p>숙종 11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6월 25일(병오) 1번째기사</p> | <p>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가 계청(啓請)하기를, “각 고을의 조곡(糶穀)은 우선 먼저 창고에 남은 수량(數量)에서 혹 그 반을 제외하거나 3분의 1을 제외하고는 기민(飢民)을 진제(賑濟)하고 모맥(牟麥)이 제일 심하게 흉년이 든 고을에서는 모적(牟糶) 3분의 1을 거두고 나머지 고을에서는 다만 절반만 거두게 하소서.” 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다시 아뢰니, 윤허하였다.</p> | <p>○丙午/平安道觀察使啓請，各邑糶穀，就一番留庫之數，或除其半，或三分除一，以濟飢民。牟麥失稔最甚邑，牟糶捧三分之一，餘邑只捧折半。備局覆奏，許之。</p> |
| <p>숙종 12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7월 5일(병진) 2번째기사</p> | <p>영소전(永昭殿)의 연담(練禫)3286) 절목(節目)을 외방에 있는 유신(儒臣)들에게 문의(問議)하자, 전(前) 집의(執義) 박세채(朴世采)·윤증(尹拯)은 모두 사양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집의 이상(李翔)이 의논드리기를, “전하(殿下)께서 행하신 것이 왕조(王朝)의 예(禮)입니다. 복(服)이 이미 다하여 다시 연(練)의 복이 없다면 연(練)이 제사가 됨은 참으로 이른바 그 실상은 없고 그 이름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날의 성인이 제작한 것으로 만고(萬古)에 공통으로 시행하는 경례(經禮)이며 감히 폐기하지 못할 것이니, 어찌 예를 아껴 양(羊)을 희생으로 바치는 풍습을 보존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만 일 년 안에 두 번 제사지내는 것이 연제(練祭)가 아니면 한 번은 빠지게 되고 밤나무 신주(神主)로 바꾸는 것도 연제가 아니면 다른 기회가 없으니, 이는 더욱 폐지할 수 없을 듯합니다. 상후(祥後)에 일제(日祭)를 베푸는 것과 같은 데 이르러서는 사가(私家)의 예(禮)로써 말한다면 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왕가(帝王家)의 전례(典禮)는 사가와는 다릅니다. 만약 조종조(祖宗朝)의 근거할 만한 조문이 있으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예경(禮經)》에 이른바 ‘군자(君子)는 예를 행함에 있어 모두 그 나라에서 예전에 하던 것처럼 하여 조심스럽게 그 법을 정비해서</p> | <p>○以永昭殿練禫節目，問議于在外諸儒臣。前執義朴世采、尹拯皆辭不對。執義李翔獻議以爲：“殿下所已行者，王朝之禮也。服之既盡，更無可練之服，則練之爲祭，眞所謂無其實而有其名也。然此爲前聖所制，萬古通行之經禮，不敢廢之者，亦豈非愛禮存羊之意也？況其年內再祭，非練則闕一；栗主之換，非練則無期，此尤似不可廢。至若祥後日祭之設，以私家禮言之，不行者當然也。然帝王家典禮，與私家不同，若有祖宗朝可據之文，則仍行似無不可。禮經所謂君子行禮，皆如其國之故，謹修其法審行云者，恐此之謂也。” 領中樞宋時烈以爲：“當初大臣請行十</p> |

| | | |
|------------------|---|--|
| | <p>살펴 행한다.’는 것이 아마도 이것을 말한 듯합니다.”</p> <p>하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송시열(宋時烈)은 의논드리기를,</p> <p>“당초에 대신(大臣)이 11개월 만에 연제(練祭)를 지내고 13개월 만에 대상(大祥)을 지내고 15개월 만에 담제(禫祭)를 지내는 예를 행하도록 주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였으면 오늘날의 일은 의심할 것이 없을 터인데, 그대로 시행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주자(朱子)가 변례(變禮)를 논하면서 말한 ‘근본 강령이 바르지 않아 모든 일이 함께 구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제·대상·담제의 의의가 살아있는 사람이 입는 복(服)을 변경시키거나 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오늘날의 연제는 진실로 시행할 것이 없으니, 만약 죽은 사람에게 제사지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폐지하거나 빠뜨리는 것은 진실로 서운합니다. 또 예를 아껴 양을 보존하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p> <p>하자,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p> <p>“지난번 옥당(玉堂)에서 아뢴 내용에 폐할 수 없다는 뜻을 이미 모두 말하였으며, 이번의 송 영중추부사(宋領中樞府事)와 집의(執義) 이상(李翔)의 예를 아껴 양을 희생으로 바치는 풍습을 보존한다는 설명은 바로 나의 뜻과 부합된다. 대체로 11개월 만에 연제(練祭)를 지내고 13개월 만에 대상(大祥)을 지내고 15개월 만에 담제(禫祭)를 지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바꿀 수 없는 제도이다. 지금 만약 복(服)을 변경시키거나 제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을 핑계대고 연제를 행하지 않는다면 인정과 예의의 부족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으며, 일의 이치로 헤아리건대 삼년상(三年喪)의 의의를 완전히 폐할 수 없다. 연제와 담제의 절목을 혜조(該曹)로 하여금 마련하여 거행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 <p>一月練，十三月祥，十五月禫之禮。如此則今日事，無所可疑，而既不得行，此朱子所以論變禮而曰：‘本領未正，而百事俱礙’者也。又凡練祥禫之義，主於生者之變除，則今日之練，誠無所施矣。若主於祀享亡者之意，則廢闕誠爲缺然，且無愛禮存羊之意。”云。上下敎曰：</p> <p>頃日玉堂啓辭，已悉不可廢之意，今者宋領府事、執義李翔愛禮存羊之說，正符予意。夫十一月而練，十三月而祥，十五月而禫，實古今不易之制也。今若諉以無變除之節，而不行練祭，則情禮之欠缺，莫此爲甚。揆以事理，不可全廢三年之義。練禫節目，其令該曹磨鍊舉行。</p> |
| 숙종 12권, 7년(1681) |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송시열(宋時烈)이 물러나 시골[田里]에 있으면서 월 | ○領中樞府事宋時烈以退在田里，不受 |

| | | |
|---|--|---|
| <p>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7월 11일(임술) 3번째기사</p> | <p>급으로 주는 곡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도신(道臣)이 장계(狀啓)하여 아뢰자, 임금이 본 고을로 실어 보내도록 명하였다. 송시열이 금년 봄에 조정을 떠난 뒤 임금이 본도(本道)로 하여금 달마다 늬숙(廩粟)과 어육(魚肉)을 지급하도록 하자, 송시열이 여러번 소(疏)를 올려 극력 사양하다가, 그 뒤에는 비록 감히 끝까지 사양하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모두 근방의 산사(山寺)에 머물러 두게 하고 말하기를,</p> <p>“만약 굶주림을 만나게 되면 삼가 가져다 먹으면서 임금의 은혜를 받들겠다.”</p> <p>하였다.</p> | <p>月廩。道臣狀聞，上命本縣輸送。時烈自今春去朝後，上使本道，月給廩粟魚肉，時烈屢疏力辭。其後雖不敢終辭，皆留置於旁近山寺曰：“若值飢餓，則謹當取食，以承上眷。”云。</p> |
| <p>숙종 12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7월 19일(경오) 1번째기사</p> | <p>동래부(東萊府)의 상인(商人) 조필만(趙必萬)이 쌀과 콩을 몰래 왜관(倭館)에 팔았는데, 일이 발각되자 나와 자복하였으나, 왜관문 밖에서 효시(梟示)하였다.</p> | <p>○庚午/東萊府商人趙必萬以米豆潛賣於倭館，事覺就服，梟示館門外。</p> |
| <p>숙종 12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7월 21일(임신) 2번째기사</p> | <p>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 윤지선(尹趾善)이 장계(狀啓)하여, 선정신(先正臣) 김정국(金正國)이 지은 경민편(警民編) 및 고(故) 상신(相臣) 정철(鄭澈)이 지은 권민가(勸民歌)를 다수(多數) 인출(印出)하여 각 고을에 나누어 보내어, 부녀[婦孺]들로 하여금 심상(尋常)하게 외우고 익히도록 하여 사모하여 본받게 하는 바탕을 삼게 하며, 조금이라도 올바른 행동이 있는 자는 별도로 방문(訪問)하여 더러는 식물(食物)을 지급하고 더러는 연역(煙役)3298) 을 줄여 주도록 청하자, 비국(備局)에 내려 복주(覆奏)하게 하고 그것을 허락하였다. 이보다 앞서 명천(明川)의 여인(女人)이 자식을 낳아 살해하려고 하였는데 이웃 사람이 구원하였다. 이 사건을 아뢰자, 임금이 처음에는 그가 인륜을 허물어뜨렸다고 하여 사형시키는 율(律)을 적용하려고 하다가, 대신의 의논을 인해서 그 여인을 멀리 귀양보내도록 하고, 도신(道臣)에게 명하여 풍속을 변경</p> | <p>○咸鏡道觀察使尹趾善狀請以：“先正臣金正國所撰《警民編》及故相臣鄭澈所作《勸民歌》，多數印出，分送各邑，使婦孺輩，尋常誦習，以爲慕倣之地。稍有行誼者，別爲訪問，或給食物，或減烟役。”下備局，覆奏許之。先是，明川女人產子，欲殺害，爲隣人所救。事聞，上始以其敗倫，欲用死刑，因大臣議，遠配其女。仍命道臣，商量變俗之道稟聞，故趾善有是請。</p> |

| | | |
|---|---|--|
| | <p>시킬 방법을 헤아려서 품지(稟旨)하여 아뢰도록 명하였기 때문에 윤지선이 이러한 주청을 한 것이다.</p> | |
| <p>숙종 12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8월 6일(병술) 3번째기사</p> | <p>밤에 옥당(玉堂)의 관원을 소대(召對)하였다. 참찬관(參贊官) 이인환(李寅煥)이 말하기를,</p> <p>“요즈음 바람으로 인한 재해(災害)가 매우 혹독하여 장차 흉년이 들 것입니다. 청컨대 조심하는 마음을 더하여 널리 진휼하고 구제하는 계책을 묻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것을 옳게 여겼다. 시독관(侍讀官) 박태손(朴泰遜)이 다시 송시열(宋時烈)·박세채(朴世采) 등 지방에 있는 여러 학자들을 부르도록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마땅히 더욱 정성과 예(禮)를 더하여 초치(招致)해 맞을 것이다.”</p> <p>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물러나려고 하자, 임금이 그들을 머물게 하여 술과 안주를 하사(下賜)하고 내시(內侍)에게 명하여 술잔을 돌리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밤이 된 뒤에 강론(講論)을 하면 조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야대(夜對)를 하였다. 가까이서 술을 마시는 사이에 화기가 풍성하여 집안 사람의 예(禮)와 같음이 있으니, 효종조(孝宗朝)에 자주 야대를 내린 것은 이 때문이었다. 비록 술을 마시고 실수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마땅히 관대하게 용서할 터이니, 그대들은 각각 자신의 주량(酒量)에 맞추어 모두 마시도록 하라.”</p> | <p>○夜, 召對玉堂官。 參贊官李寅煥言: “近日風災甚酷, 年事將歉, 請加惕念, 博詢賑救之策。” 上可之。 侍讀官朴泰遜請更召宋時烈、朴世采等在外諸儒, 上曰: “當益加誠禮, 而招延諸臣。” 將退, 上留之, 賜酒饌, 命內侍行杯。 上曰: “夜後講論, 可得從容, 故特爲夜對。 咫尺盃酒之間, 藹然有家人之禮。 孝宗朝頻賜夜對者, 以此也。 雖有酒失, 予當寬假, 爾等各自稱量盡飲。” 酒八行, 諸臣或失儀。 泰遜陳私懇, 乞外補, 養八十歲外祖母。 寅煥言法例, 父母外不得爲養乞郡, 榻前陳懇又格外, 請推考。 上笑曰: “酒後異於常時, 勿推。 情事惻然, 特令依施。” 夜深乃罷。</p> |

| | | |
|---|--|---|
| | <p>하였다. 술이 여덟 차례 돌자 여러 신하들이 더러 위의를 잃었다. 박태손이 개인적인 일을 진술하기를,</p> <p>“외직(外職)에 보임(補任)되어 80세 된 외조모(外祖母)를 봉양하기를 간절히 빕니다.”</p> <p>하자, 이인환이 말하기를,</p> <p>“법례(法例)에 부모(父母)외에는 봉양을 위하여 결군(乞郡)할 수 없으며, 임금 앞에서 간절히 진술하는 것 또한 격식 밖이니, 청컨대 추고(推考)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기를,</p> <p>“술을 마신 뒤에는 평상시와 다르니, 추고하지 말라. 그리고 사정이 가없으니, 특별히 원하는 대로 하라하도록 하라.”</p> <p>하였다. 밤이 깊어서야 자리를 꺾하였다.</p> | |
| <p>숙종 12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8월 7일(정해) 1번째기사</p> | <p>도총부 도사(都摠府都事) 이집(李諶)과 역관(譯官) 이경화(李慶和) 등을 차출하여 바다에서 표류해온 청(淸)나라 사람 고자영(高子英) 등 26인(人)을 안동(眼同)하여 청나라로 들여보냈다. 표류해 온 사람들은 양호(兩湖)에서 경사(京師)로 호송되었는데, 도성(都城)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바로 서로(西路)3315) 로 향하게 하였다. 홍제원(弘濟院)에 도착해서는 1, 2일간 휴식(休息)하도록 허락하고 예조(禮曹)에 명하여 주식(酒食)을 대접하도록 하면서, 역관(譯官)을 파견하여 위로하고 유시하며 그들을 진송하도록 하였다. 그리고</p> | <p>○丁亥/差都摠府都事李諶、譯官李慶和等， 管押漂海淸人高子英等二十六人， 入送淸國。 漂人等自兩湖， 送于京師， 不令入城， 直向西路。 其到弘濟院也， 許休息一兩日， 命禮曹饋酒食， 遣譯官慰諭而送之。 且錄各人姓名、年歲、居住、所帶資裝物件及漂</p> |

| | | |
|--|---|---|
| | <p>각인(各人)의 성명(姓名)·연세(年歲)·거주지(居住地)·행장 물건[資裝物件]과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빠져죽은王大章 등 여섯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예부(禮部)에서 이자(移咨)3316) 하였다. 이경화 등이 안동하여 함께 가는 즈음에 피국(彼國)의 사정(事情)을 탐문(探問)하여 비국(備局)에 서면(書面)으로 보고하기를,</p> <p>“정남왕(靖南王) 경정충(耿精忠)이 복건(福建)을 진압하고서 오삼계(吳三桂)가 거사(舉事)하였다는 것을 듣고 역시 모반[叛]하였는데, 정금(鄭錦)과 마음을 같이 하기로 약속하였다가, 갑자기 그의 장수 서도위(徐都尉)의 참소를 듣고 정금을 허여하지 않아 마침내 그와 화목하지 못하여 날마다 전쟁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뒤에 정금이 광둥(廣東)을 공격하여 조주(潮州)와 혜주(惠州) 등 4부(府)를 얻었으며, 경정충도 절강(浙江)과 강서(江西) 등의 주(州)를 소유하고 또 강남(江南)·휘주(徽州)·영국부(寧國府)를 얻어 군사와 말이 강성(強盛)함이 남방(南方)을 진동(震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도위가 비밀리 청나라와 내통(內通)하여 내응(內應)하니 이 때문에 청나라 군사가 크게 승리하고 얻었던 주부(州府)가 모두 청나라의 소유가 되고 정남(靖南)의 형세는 위축되어 청나라에 투항하였다고 했습니다. 청나라에서는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금을 공격하여 격퇴시켜 자진해서 힘쓰도록 하였기 때문에 복건과 광둥이 모두 평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오삼계는 운남(雲南)·귀주(貴州)·사천(四川) 등 세 성(省)에 웅거하고 있으면서 또 협서(陝西)와 호광(湖廣)을 얻어 호남(湖南)·장사(長沙)·장덕부(長德府) 등의 지역에다 군사를 주둔시키고 진격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청나라에서 친왕(親王)3317) 을 보내어 늘 악주(岳州) 등의 지역에서 교전(交戰)하였었는데, 강희(康熙) 16년(1677)에 오왕(吳王)이 성도부(成都府)에서 병(病)으로 죽자, 17, 8년 사이에 악주 지역에서 오병(吳兵)이 크게 패배하여 사천(四川)으로 물러나 지키게 되니 호남(湖南)의 여러</p> | <p>海時滄死人王大章等六人姓名，移咨禮部。慶和等押去偕行之際，探問彼國事情，書報備局曰：</p> <p>靖南王耿精忠鎮福建，聞吳三桂舉事亦叛，約與鄭錦同心，旋聽其將徐都尉之讒不許，錦遂與之不睦，日尋干戈。後錦攻廣東，得潮州、惠州等四府，精忠亦有浙江江西等州。又得江南徽州寧國府，士馬強盛，南方震動。徐都尉密通于清內應，以此清兵大捷，所得州府盡爲清有。靖南勢蹙投清，清仍使攻退鄭錦以自效，故福建、廣東皆平。三桂據有雲南、貴州、四川等三省，又得陝西、湖廣，乃於湖南長沙、長德府等處駐兵不進。清遣親王，常交戰於岳州等地。康熙十六年，吳王病死於成都府。十七八年間，岳州之間吳兵大敗，退保四川，湖南諸府，復歸于清。邇年以來，則各守邊圉，未聞有交戰之事。所用錢號，謂之裕民，而未聞有國號。定南王孔有德無子而死，有一女襲封王，以其夫孫延齡爲將軍，駐廣西。延齡見三桂之變亦叛，後與三桂不睦被殺，後未聞聲息。平</p> |
|--|---|---|

부(府)가 다시 청나라로 되돌아갔으며, 요즈음에 와서는 각각 변방을 지키면서 교전하였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이고 있는 돈[錢]은 유민(裕民)이라고 하는데, 국호(國號)가 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정남왕(定南王) 공유덕(孔有德)은 아들 없이 죽었는데 딸이 왕위를 계승하여 그의 남편 손연령(孫延齡)을 장군(將軍)으로 삼아 광서(廣西)에 주둔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손연령도 오삼계(吳三桂)의 변(變)을 보고 역시 모반하였으나 뒤에 오삼계와 화목하지 못하여 살해당하였으며, 그 뒤에는 소문[聲息]을 듣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남왕(平南王)이 죽은 뒤에 아들 안달공(安達公)이 물려받아 역시 청나라에 모반하였으나, 뒤에 술에 취해서 머리를 깎아 버리자 여러 장수들도 따라서 머리를 깎았는데, 술이 깨어 난 뒤 그대로 투항(投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정금(鄭錦)은 바로 정국신(鄭國信)의 아들인데, 정국신이 홍광제(弘光帝)를 받들어 남경(南京)을 지키다가 청나라 군사가 복건(福建)까지 추격해 오자, 홍광제는 죽고 정국신은 절강(浙江)의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 웅거하였다가 순치(順治) 17년(1660)에 군사 30만을 통솔하여 남경을 공격해서 포위하였는데, 청나라에서 저항하였으나 당해낼 수 없었으므로 정국신이 마침내 남경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나라에서 군사 20여 만을 보내어 남경으로 향하게 하였으므로 정국신이 패배하여 남은 군사 10만과 도망하여 대환(臺環)으로 들어가 스스로 성지(城池)를 조성(造成)하고 영력(永曆)3318) 연호(年號)를 사용하였으며, 순치 18년(1661)에 정국신이 죽고 아들 정금이 계승하여 그 섬을 지켰다고 하였습니다. 강희 13년(1674)에 정남왕(靖南王)이 보기를 요청하자 정금이 복건에 왔다가 천주(泉州)·장주(漳州) 두 주를 얻었으며, 또 광둥(廣東)의 조주(潮州)·혜주(惠州) 등 4부(府)를 얻었는데, 강희 16년(1677)에 정남왕이 총독(總督) 요희지(姚希之)와 힘을 합하여 공격하여 격

南王則死後，子安達公襲封，亦叛于清，後因醉剃髮，衆將亦從之，酒醒仍投降。鄭錦卽國信之子，國信奉弘光帝守南京，清兵追至福建，弘光歿，國信仍據浙江海中。順治十七年，率兵三十萬，攻圍南京，清不能抵當，國信遂取南京。清遣兵二十餘萬，趣南京，國信敗，以殘兵十萬，走入臺環，自造城池，用永曆年號。十八年，國信死，子錦嗣守其島。康熙十三年，因靖南王請見，錦來到福建，得泉、漳二州，又得廣東潮、惠等四府。十六年，被靖南王與總督姚希之並力攻退，退歸本島。而清萬提督者，鎮四明海口，有兵馬十餘萬、戰船千餘，故錦不敢出兵來犯。臺環島在海中極遠之地，臺環與大苑，南音相近，故或互稱之。又問朱氏有無，曰：“永曆與一子，爲吳三桂所執，被殺於雲南，朱三太子，清人遍國搜捕而不得，屢有拿得之說，而皆僞也。去歲彗出，光射於南，有人謠言，天子當出其方。清國欲推治謠言者，而中止云。

| | | |
|---|---|---|
| | <p>과당하였으므로 후퇴하여 본도(本島)로 되돌아왔는데, 청나라의 만제독(萬提督)이란 자가 사명 해구(四明海口)를 진압하고 병마(兵馬) 10여 만과 전선(戰船) 1천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금이 감히 군사를 내어와서 침범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대환도(臺環島)는 바다 가운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대환과 대원(大苑)이 남음(南音)3319)에 서로 가깝기 때문에 더러는 서로 부르는 이름이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주씨(朱氏)가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더니, 말하기를, ‘영력(永曆)3320)이 한 아들과 오삼계(吳三桂)에게 붙잡혀서 운남(雲南)에서 살해당하였으며, 주씨의 삼태자(三太子)는 청나라 사람들이 온 나라에 수색하여 체포하도록 하였으나 체포하지 못했으며, 여러번 잡았다는 말이 있었으나 모두 거짓이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혜성(彗星)이 나와 남방(南方)에 비쳤으므로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천자(天子)가 그 지방에서 출현한다.’고 하였으므로, 청나라에서 그 말을 유행하도록 한 사람을 추문하여 다스리려고 하다가 중지하였다고 하였습니다.”</p> <p>하였다.</p> | |
| <p>숙종 12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8월 8일(무자) 2번째기사</p> |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여성제(呂聖齊)가 말하기를,</p> <p>“국상[國恤] 3년 안의 제사(祭祀)에는 비록 포혜(脯醢)를 쓴다는 규정이 없으나, 지금 영소전(永昭殿)에는 친히 임어(臨御)하시니 일반 사례와는 다릅니다. 예문(禮文)에 의거하여 포혜를 쓰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p> <p>하고,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동지경연(同知經筵) 이단하(李端夏)도 함께 말하기를,</p> <p>“국조(國朝)의 3년 안의 제사에 소(素)3321)를 쓰는 것은 고례(古禮)가 아님</p> | <p>○御晝講。禮曹判書呂聖齊言：“國恤三年內，祭祀雖無用脯醢之規。而今永昭殿親臨，有異常例，依禮文用脯醢似宜。”左議政閔鼎重、同知經筵李端夏皆言：“國朝三年內，祭祀用素非古禮，用脯醢無不可。”上可之。聖齊言：“順懷世子墓在敬陵、新陵之間，拜陵時宜遣官致祭。”上問於鼎重而從之。端夏曰：“近日旱餘風災害稼，民事罔知爲計。臣於史事纂修之際，</p> |

| | | |
|--|--|---|
| | <p>니다. 그러니 포혜를 쓰는 것은 불가(不可)함이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그것을 옳게 여겼다. 여성제(呂聖齊)가 말하기를,</p> <p>“순회 세자(順懷世子)3322) 의 묘(墓)가 경릉(慶陵)3323) 과 신릉(新陵) 사이에 있으니, 능(陵)에 참배(參拜)할 때 관원(官員)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p> <p>하자, 임금이 민정중(閔鼎重)에게 물어보고 그대로 따랐다. 이단하(李端夏)가 말하기를,</p> <p>“요즈음 가뭄이 든데다 또 바람으로 인한 재해가 농작물을 해쳐서 농사[民事]가 어떠할지 알 수 없습니다. 신이 사기(史記)에 관한 일을 찬수(纂修)하던 즈음에 고(故) 판서(判書) 민응형(閔應亨)이 기해년(3324) 에 아뢴 말을 보건대, 이 사람은 바로 노성인[耆舊]으로 <국가를> 근심하고 사랑하는 신하입니다. 그의 말이 진실로 오늘날 시행[施用]하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감히 한통(通)을 기록하여 바칩니다.”</p> <p>하고, 드디어 소매 속에서 꺼내어 임금 앞에 두고서 읽기도 하고 진달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대체로 민응형이 선조(先朝)에 흉년의 재앙을 만났을 때 절약하고 줄이는 것을 힘쓰며 군사의 액수를 감소하는 등의 일을 아뢴 것이었다. 이단하가 말하기를,</p> <p>“군사의 체제를 변통(變通)하는 일은 신이 일찍이 여러번 진달하였습니다. 국가의 한 해 수입은 겨우 12만 석(石)인데, 8만 석이 오로지 군사를 양성하는</p> | <p>見故判書閔應亨己亥間陳白之言，此人卽耆舊，有憂愛之臣。其言誠合今日之施用，故敢錄一通以獻耳。” 遂出諸袖中，置上前，且讀且達。蓋應亨在先朝，遇災荒時，以務節省、減兵額等事，陳白者也。端夏曰：“變通兵制事，臣曾亦屢陳。而國家歲入，僅十二萬石，而八萬石專歸於養兵之需，使國用常匱，而無用之卒，坐糜廩料，天下寧有是理？” 鼎重曰：“應亨在孝宗朝，屢以宜減兵額之意陳達，而自上方有大志，以兵爲重，故不得變通。今則惟在上心之自斷耳。壬辰以後，輦下訓局兵額不過三千，至于今日，其數漸至增益。又有馬兵、旗手、御營軍等名，額滿十三番，雖略有減罷，而五千兵則恒留輦下矣。今當自上酌量，定其堪爲宿衛之數，然後汰減其餘。軍制旣變通，則地部經費，自可不乏。兵貴其精，何必以多爲務？國家歲入過半，歸於軍食，而經用常乏，不得不取民無制，端夏言是也。” 端夏又讀應亨所陳舟師及外方兵政積弊之說曰：“東伍兵，通計一國爲二十餘萬，殊不精鍊，軍裝辦備之際，多賣田業，不能聊</p> |
|--|--|---|

| | | |
|--|--|--|
| | <p>수요(需要)로 돌아가 국가의 비용(費用)을 언제나 모자라게 하면서 쓸모없는 군졸은 앉아서 녹봉[廩料]을 허비하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p> <p>하고, 민정중(閔鼎重)은 말하기를,</p> <p>“민응형이 효종조(孝宗朝)에 여러번 군사의 액수를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을 진달하였지만, 효종께서 바야흐로 <북벌하려는> 큰 뜻을 두시어 병사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변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직 성상의 마음으로 스스로 결단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임진년(3325) 이후 연하(輦下)3326) 훈국(訓局)3327) 의 군사 액수는 3천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 수요가 점점 불어났으며, 또 마병(馬兵)·기수(旗手)·어영군(御營軍) 등의 이름이 있어 액수가 13번(番)에 차니, 비록 약간의 감축과 혁파가 있었다 하더라도 5천의 군사는 언제나 연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상께서 참작하고 헤아리시어 그 숙위(宿衛)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숫자를 정하심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한 뒤에 그 나머지를 도태시켜 줄여버리고, 군사 체제가 변통되면 지부(地部)3328) 의 경비(經費)는 저절로 모자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군사는 정예(精銳)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하필이면 숫자 많은 것을 힘쓰십니까? 국가 1년 수입이 절반이 넘도록 군사의 식량 비용으로 돌아가 경상(經常) 비용이 언제나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백성들에게 일정한 제도없이 거둬들이고 있으니, 이단하의 말이 옳습니다.”</p> <p>하였다. 이단하가 또 민응형(閔應亨)이 진달한 바 주사(舟師) 및 외방(外方)의 군사 정책에 누적된 폐단에 대한 설명을 읽고서 말하기를,</p> <p>“속오병(束伍兵)의 통계(統計)가 전국에 20여 만 명이나 되지만 별로 정교하</p> | <p>生。今若擇其丁壯爲實兵，而汰其餘爲保，則皆當爲精兵。雖有外寇，以此可以備禦，有事則畿輔諸鎮兵，可以朝令夕發。若其常時輦轂宿衛之兵，則以親臣領之，不過三數千足矣。今者雜色軍兵，屬於扈衛者，殆近一萬。國家明知其養此無用之卒，耗竭國力，而猶不變通，臣每中夜憂嘆，不能寐也。”上曰：“古語云：‘國無三年之蓄，國不爲國。’今國家儲蓄常乏，每遇凶歲，救民無策，以致民困益甚。一年租賦，過半歸於兵食，豈不欲有所變通，而有難猝行更變，故持難矣。今卿等縷縷陳說如此，從當深思，詳議而處之。”上又語諸臣曰：“夫婦恩義至重，而當初疾病及喪事時，予不幸緣於拘忌，終不得躬視，予心悲悼，迨不能已。若以事體言之，當展謁於長陵，況寧陵甫已遷奉，尤宜展拜。而不但情禮如此，兩陵皆經日往來之地，當此歉歲，恐有弊端，故將欲展謁敬陵，而仍詣新陵者此也。”又曰：“拜陵時，從官戎服中插羽一款，何以爲之乎?”鼎重曰：“此華飾也，似不當插。”上命勿插羽。</p> |
|--|--|--|

게 단련되지 않았으며, 군장(軍裝)을 장만하고 준비하는 즈음에 전지[田業]를 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뢰하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만약 그 장정[丁壯]을 가려서 견실한 군사를 만들고 그 나머지는 도태시켜 보(保)로 삼는다면, 모두 정예한 병사가 될 것입니다. 비록 외적의 침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로써 미리 준비하여 방어 할 수 있을 것이며, 사변(事變)이 있을 경우 기보(畿輔)3329) 여러 진(鎭)의 군사를 아침에 명령을 내려 저녁이면 징발할 수 있으니, 평상시 연곡(輦轂)3330) 에서 숙위(宿衛)하는 군사는 가까이 모시는 신하가 그들을 거느리게 하되 수삼 천(數三千) 명에 지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지금 잡색 군병(雜色軍兵)으로 호위(扈衛)하는 데 소속된 자가 거의 1만 명에 가까운데, 국가에서 이렇게 쓸모없는 군졸을 기르느라 국력(國力)이 소모되고 고갈되는 것을 명백하게 알면서도 오히려 변통하지 않으시니, 신은 밤중마다 근심하고 탄식하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국가에 삼 년 동안 쓸 수 있는 저축이 없으면 국가는 국가로서의 구실을 못한다.’고 하였다. 지금 국가의 저축이 언제나 부족하여 흉년을 만날 적마다 백성을 구제할 계획이 없어 백성이 더욱 심하게 곤궁했다. 1년 조세[租賦] 중에 절반이 넘는 양이 병사들의 식량으로 돌아가는데 어찌 변통하고 싶지 않겠는가? 갑자기 변경시켜 시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과단성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미루었던 것이다. 이제 경(卿)들이 누누이 진달하여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마땅히 깊이 생각하고 상세하게 의논하여 처리 하겠다.”

하고, 임금이 또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 | | |
|--|--|---|
| | <p>“부부(夫婦)는 은혜와 의리가 지극히 중한데, 당초에 질병(疾病)이 들었을 때와 상사(喪事)를 당했을 때에 내가 다행스럽지 못하게 구기(拘忌)하는 것 때문에 끝내 몸소 가서 보살피지 못하였으므로, 내 마음의 슬픔을 견뎌 낼 수가 없다. 일의 체모로써 말한다면 장릉(長陵)3331)에 전알(展謁)하는데, 더구나 영릉(寧陵)3332)은 겨우 천봉(遷奉)3333)하기를 마쳤으니 더욱더 전배(展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정과 예(禮)에만 이와 같을 뿐 아니라, 두 능(陵)은 모두 하루를 경과하면서 갔다 와야 하는 지역이므로 이러한 흉년을 당하여 아마도 폐단이 있을 듯 하므로, 장차 경릉(敬陵)에 전알하고 그대로 신릉(新陵)으로 나아가려던 것이다.”</p> <p>하고, 또 말하기를,</p> <p>“능(陵)에 참배할 때 수종(隨從)하는 관원들의 용복(戎服) 중에 깃털을 꽂는 사항은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p> <p>하였다. 민정중(閔鼎重)이 말하기를,</p> <p>“이것은 화려한 장식이니, 꽂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깃털은 꽂지 말도록 명하였다.</p> | |
| <p>숙종 12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8월 8일(무자) 3번째기사</p> | <p>사헌부(司憲府)에서, 장원서 별제(掌苑署別提) 정유석(鄭有錫)은 사람 됨됨이가 어리석고 처신하는 것이 거칠고 비루하고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흉포하며, 기회를 타서 이[虱]처럼 붙잡는다고 탄핵하면서 사판(仕版)3334)에서 삭제하여 버리도록 청하였다. 그리고 공홍 수사(公洪水使) 윤시달(尹時達)이 쌀 1</p> | <p>○憲府劾: “掌苑別提鄭有錫爲人愚駘, 行己麤鄙, 教子逞凶, 乘時蝨附, 請削去仕版。 公洪水使尹時達運米百餘石於京口, 終無置處, 軍布二十餘同輸送</p> |

| | | |
|---|---|---|
| | <p>백여 석(石)을 경구(京口)에 운반(運搬)하였으나 끝내 둔 곳이 없으며, 군포(軍布) 20여 동(同)을 경중(京中)에 수송하였으므로 잡아다 추문(推問)하도록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가 뒤에 모두 따랐다.</p> | <p>京中，請拿問。”上不從，後竝從之。</p> |
| <p>숙종 12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8월 9일(기축) 2번째기사</p> | <p>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정언(正言) 이세백(李世白)이 말하기를, “민역(民役) 가운데 내사(內司)3335)에 소속된 노비(奴婢)의 신공(身貢)이 가장 고달파서 봉납(捧納)할 때 소모하는 비용이 본색(本色)에 비하여 몇 갑절이나 되어 유망(流亡)하는 이가 많으며, 침해(侵害)가 이웃의 친족에게도 미치고 심하게는 더러 온 면(面)이 그 피해를 입습니다. 청컨대 주관(主管)과 내관(內官)을 엄격하게 경계하여 이러한 폐단이 없게 하시고, 만일 다시 이전의 습관을 계속하는 자가 있으면 지방인 경우는 감사(監司)가 장계로 아뢰도록 허락하고, 도성 안의 경우는 대간(臺諫)으로 하여금 논계(論啓)하도록 하소서.” 하고,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도 이세백(李世白)의 말을 옳게 여기자, 임금이 별도로 거듭 경계하도록 명하고, 만일 내사(內司)에서 침학(侵虐)하는 것이 드러난 자는 중중(從重)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였다. 인해서 이세백이 영동(嶺東)에서 진공(進供)하는 어물(魚物)에 대하여 절기(節期)에 어긋나 봉진(封進)하기 어려운 폐단을 진달하고, 퇴봉(退封)을 허락하거나 더러는 대봉(代封)을 명령하도록 청하였는데, 민정중도 그렇게 말했다.</p> | <p>○御朝講。 正言李世白言：“民役之中，內司奴婢身貢偏苦，捧納之際，耗費比本色倍蓰，多有流亡，侵及隣族。甚或舉一面被其害，請嚴飭主管內官，俾絕此弊。 如有復踵前習者，外則許監司狀聞，內則令臺諫論啓。”左議政閔鼎重亦以世白言爲是， 上命別爲申飭，內司如有侵虐現露者，從重科罪。世白仍陳嶺東進供魚物背節難封之弊，請許退封、或令代封，鼎重亦以爲然。</p> |
| <p>숙종 12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8월 9일(기축) 3번째기사</p> | <p>이보다 먼저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김우석(金禹錫)이 양서(兩西)의 공역(公役)3336)이 균등하지 않은 것과, 본도(本道)의 쇠[鐵]가 생산되는 각 고을의 치우치게 고달픈 폐단 및 각 아문(衙門)과 여러 궁가(宮家)의 둔전(屯田)·어전(魚箭)·염분(鹽盆)에 대하여, 또 새로 설치한 여러 진(鎭)에 군사를 모집하는 등의 없애기 어려운 병폐를 조목조목 나열하여 장계로 아뢰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고, 그가 진달한 바에 의거하여 식례(式例)3337)를 변경시켜 백성들의 재력을 지탱하고 보존하는 바탕으로 삼도</p> | <p>○先是，黃海觀察使金禹錫條列兩西應役之不均，本道產鐵各邑偏苦之弊及各衙門、諸宮家屯田、魚箭、鹽盆，新設諸鎭募軍等弊瘼狀聞。 至是，備局覆奏請：“依其所陳，更變式例，以爲支保民力之地。 長淵之慶安君家屯田，載寧之明惠、明善、明安三公主家屯</p> |

| | | |
|--|--|---|
| | <p>록 청하였다. 또 장연(長淵)의 경안군(慶安君) 집안의 둔전(屯田)과 재령(載寧)의 명혜(明惠)·명선(明善)·명안(明安) 세 공주(公主) 집안의 둔전은 모두 금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뒤에 설치되었으니 다른 사례에 의거하여 혁파하도록 청하고, 웅진현(甯津縣)의 어전(魚箭)·염분(鹽盆) 중에 훈련 도감(訓練都監)과 수어청(守禦廳) 그리고 이소의(李昭義)와 이숙의(李淑儀) 및 양 공주(公主)의 집안에 빼앗겼던 것은 아울러 혁파하여 본읍(本邑)에 도로 소속시킬 것을 청하자, 임금이 그대로 따랐으나 특별히 세 공주(公主) 집안의 세 곳은 그대로 두었다.</p> | <p>田，俱設於禁令之後，請依他革罷。甯津縣魚箭、鹽盆之見奪於訓練都監、守禦廳，李昭儀、李淑儀及兩公主家者，請竝革罷，還屬本邑。”上從之，特存三公主家三處。</p> |
| <p>숙종 12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8월 10일(경인) 5번째기사</p> | <p>사관(史官)이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송시열(宋時烈)에게 가서 유시(諭示)하고, 되돌아와서 송시열의 병세를 아뢰자, 임금이 어의(御醫)에게 약물(藥物)을 가지고 가서 보살피도록 명하였다.</p> | <p>○史官往諭領中樞府事宋時烈，還言時烈病狀，上命御醫，齎藥物往視。</p> |
| <p>숙종 12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8월 23일(계묘) 2번째기사</p> |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상(宰相)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상진(李尙眞)이 가뭄이 든 것으로 인해 명안 공주(明安公主)의 새 집을 영건(營建)하는 역사를 파(罷)하도록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또 선왕(先王)의 태실(胎室)을 고쳐서 다시 봉(封)하는 역사는 크니 그것도 명년(明年) 가을이 되기를 기다리자고 말하였으나, 임금이 일의 체모에 미안(未安)하다고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여성제(呂聖齊)가 말하기를, “《오례의(五禮儀)》 왕비상(王妃喪)에는 연제(練祭) 뒤 조석 상식(朝夕上食)에 곡(哭)하는 예(禮)가 없습니다. 그러니 금번의 경우에는 인선 왕후(仁宣王后)의 국상시[國恤時] 예(例)에 의거하여 마련(磨鍊)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것을 옳게 여겼다. 이상진이 팔도[八路]에 소 전염병[牛疫]이 날로 심해지고 있으니 경외(京外)의 도사(屠肆)에 <도살을> 금단(禁斷)하도</p> | <p>○引見大臣、備局諸宰。右議政李尙眞以凶歉，請罷明安公主新第營建之役，上不許。又言：“先王胎室，改封役鉅，亦待明秋。”上以事體未安不許。禮曹判書呂聖齊曰：“《五禮儀》王妃喪練祭後，朝夕上食無哭禮，而今番則依仁宣王后國恤時例，當爲磨鍊矣。”上可之。尙眞以八路牛疫日熾，請禁斷京外屠肆，上從之。戶曹判書鄭載嵩請減尙方貿易、內局質藥不緊者，上命退與尙方、內局提調，相議停減。是後，自內特命減省者亦多。尙眞又言：“陵幸時所用，遮帳所入綿布</p> |

| | | |
|--|---|--|
| | <p>록 청하자,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정재송(鄭載嵩)이 상방(尙方)3350) 에서 무역(貿易)하거나 내국(內局)3351) 에서 무역하는 약(藥) 중에 긴요하지 않은 것은 줄이도록 청하자, 임금이 물러가서 상방 제조(尙方提調)·내국 제조(內局提調)와 서로 의논하여 정지시키거나 줄이도록 명하였다. 이 뒤에는 대내(大內)의 특별 명령으로 줄이게 한 것도 많았다. 이상진(李尙眞)이 또 능(陵)에 행차할 때 쓰이는 차장(遮帳)에 들어가는 면포(綿布)와 마포(麻浦)가 10동(同)에 밀돌지 않으며, 차장의 노끈도 값이 3백 냥(兩)에 이르니, 그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일본(一分)의 폐단이라도 제거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하자, 임금이 그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영(令)을 내렸다.</p> <p>대사헌(大司憲) 조사석(趙師錫)이 말하기를,</p> <p>“지금 공주(公主)의 집을 새로 짓는 일로 늙은 대신(大臣)이 누누(縷縷)이 진달하고 청하였지만 끝내 윤택하여 따르시기를 아끼시니, 어리석은 백성은 아는 것이 없어 틀림없이 장차 말하기를, ‘조가(朝家)에서 우리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드시 원망과 한탄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적에 편입된 가난하고 궁핍한 백성들은 나가서 전지[田畝]를 보고는 돌아와 처자[妻孥]와 마주앉아 울고 있습니다. 비록 침해하거나 소요하는 일이 없더라도 오히려 곤란이 극도에 달하여 허덕이면서 다른 일을 돌볼 겨를이 없는데, 어찌 어여쁘게 여기고 염려하지 않겠습니까?”</p> <p>하고, 인해서 깊이 흐느끼어 눈물을 글썽이며 누누(縷縷)이 그치지 않으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내가 농사[民事]를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공주의 집을 새로 짓는 일은</p> | <p>麻布，不下十同，遮帳之索亦價至三百兩，宜仍用舊件，以除一分之弊。”上令仍用舊件。大司憲趙師錫曰：“今以主第事，白首大臣，縷縷陳請，而終靳允從。愚民無知，必將曰：‘朝家不恤于我。’怨咨必多矣。編戶貧窮之民，出視田畝歸，與妻孥對泣。雖無侵擾之事，猶且盼盼然救死不贍，豈不當矜念哉？”仍感慨欲涕，縷縷不已。上曰：“予非不念民事，而主第事，則有難以予意專斷者。當更思而處之。”尙眞曰：“司僕正崔商翼之弟以非理就訟，槐山郡守鄭弼祥以無異大黨論題。【俗謂獷悍賊徒爲大黨。】商翼拜憲職，以他事論弼祥。國家置臺閣，豈爲報私怨之地哉？”上曰：“身居臺閣，懷嫌論人，殊甚無據，拿問定罪。且令本道覈處。”</p> |
|--|---|--|

| | | |
|---|---|---|
| | <p>나의 의사대로만 결단하기는 어려우니, 다시 생각해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겠다.”</p> <p>하였다. 이상진(李尙眞)이 말하기를,</p> <p>“사복시 정(司僕寺正) 최상익(崔尙翼)의 동생이 도리에 어긋난 것으로 재판을 받으려고 법정에 나아가자, 괴산 군수(槐山郡守) 정필상(鄭弼祥)이 대당(大黨)과 다름이 없다고 논제(論題)하였는데, 【세속에서 포악한 도적의 무리를 대당(大黨)이라고 한다.】 최상익이 사헌부(司憲府)의 직임(職任)에 임명되자, 다른 일로 정필상을 논박하였습니다. 국가에서 대각(臺閣)을 설치한 것이 어찌 사사로이 원수를 갚는 곳으로 삼고자 해서였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자신이 대각(臺閣)에 있으면서 혐의를 품고 남을 논박하니, 너무나 터무니가 없다. 잡아다 추문(推問)하여 죄(罪)를 정하고 또 본도(本道)에 명을 내려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 |
| <p>숙종 12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9월 8일(정사) 1번째기사</p> |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상(宰相)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 이단하(李端夏)의 차자(笱子) 내용을 인하여 청하기를,</p> <p>“각 아문(各衙門)의 곡물(穀物) 원수(元數)를 본아문(本衙門)에 하문하여 참작해서 수효를 정하고, 진휼청(賑恤廳)으로 하여금 취(取)해다 활용하게 하소서.”</p> | <p>○丁巳/引見大臣、備局諸宰。 領議政金壽恒因李端夏笱辭，請各衙門穀物元數，問於本衙門，參酌定數，使賑廳取用。 左議政閔鼎重、右議政李尙眞繼之，上命參酌定數啓下。 尙眞又言：“閔維重無他職事， 宜差賑恤廳提調，</p> |

| | | |
|--|--|---|
| | <p>하였는데,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우의정(右議政) 이상진(李尙眞)이 그것을 잇따라 말하니, 임금(上)이 참작해서 수효를 정하여 계하(啓下)하도록 명하였다. 이상진이 또 아뢰기를,</p> <p>“민유중(閔維重)은 다른 직사(職事)가 없으니, 진휼청 제조(賑恤廳提調)로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맡아서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上)이 김수항(金壽恒)에게 하문하였다. 김수항이 말하기를,</p> <p>“민유중은 사무(事務)에 아주 익숙하며, 진휼청(賑恤廳)은 단지 전곡(錢穀)만 관리하니, 그 불가함을 알지 못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p> <p>“이것은 조금도 혐의스럽게 여길 것이 없다. 민유중을 진휼청 당상(賑恤廳堂上)으로 임명하여 그로 인하금 맡아서 관장하도록 하라.”</p> <p>하였다. 헌납(獻納) 오도일(吳道一)이 말하기를,</p> <p>“민유중을 진휼청 당상으로 삼은 것은 참으로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연(經筵)과 비국(備局) 등의 직임도 그대로 띠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p> <p>하니, 임금(上)이 답하지 아니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여성제(呂聖齊)가 영릉</p> | <p>使之句管。” 上問於壽恒， 壽恒言：“維重諳練事務， 而賑廳只管錢穀， 未知其不可。” 上曰：“此則少無所嫌。 閔維重差賑廳堂上， 使之句管。” 獻納吳道一言：“維重爲賑廳堂上， 固無不可， 而至於經筵、備局等任， 不當仍帶。” 上不答。 禮曹判書呂聖齊稟寧陵表石題式， 壽恒請前面書以孝宗大王寧陵， 後面書以某年遷奉， 以仁宣王后祔葬紀實， 上可之。 道一陳關西內奴事， 還寢成命， 深累聖德。 校理沈湍亦繼之， 上不納。</p> |
|--|--|---|

| | | |
|--|---|---|
| | <p>표석(寧陵表石)의 제식(題式)을 아뢰자, 김수항(金壽恒)이 청하기를,</p> <p>“전면(全面)에는 효종 대왕 영릉(孝宗大王寧陵)이라고 쓰고, 후면(後面)에는 모년(某年)에 천봉(遷奉)한 것과 인선 왕후(仁宣王后)를 부장(附葬)한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좋게 여겼다. 오도일(吳道一)이 관서 내노(關西內奴)에 대한 일을 진달하면서 성명(成命)을 도로 정지시킨 것은 성덕(聖德)에 대단한 누(累)가 된다고 하고, 교리(校理) 심유(沈濡)도 잇따라서 그것을 말하였으나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p> | |
| <p>숙종 12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9월 23일(임신) 1번째기사</p> | <p>비국(備局)에서 함경도 감사(咸鏡道監司) 윤지선(尹趾善)이 장계로 논한 재해를 입은 고을에 대하여 <부세 등을> 덜어주거나 변통하는 일을 가지고 복주(覆奏)하기를,</p> <p>“청컨대 재해를 당한 것이 더욱 심한 육진(六鎭) 각 고을의 여러 가지 신역(身役)과 응당 납부하여야 할 전세(田稅)·공물(貢物) 및 삼색 노비(三色奴婢)의 신공(身貢)을 아울러 전부 감하도록 허락하시고, 그 다음 안변(安邊) 등 아홉 고을은 그 절반을 감하게 하소서. 그리고 남도(南道)의 조금 풍년이 든 여러 고을에 있는 곡식을 북도(北道)의 백성들에게 옮겨서 지급하고, 관서(關西)의 본도(本道)와 경계를 접한 여러 고을에 있는 관향곡(管餉穀)3407 을 남도로 옮겨다 진구(賑救)하는 경비로 삼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 <p>○壬申/備局以咸鏡監司尹趾善狀論被災邑蠲減變通事覆奏請，被災尤甚六鎭各邑，諸般身役應納田稅、貢物及三色奴婢身貢，竝許全減。其次安邊等九邑，減其一半，而以南道稍稔諸邑所在穀，移給北道之民，以關西之與本道接界諸邑所在管餉穀，移轉南道，以爲賑救之用，上從之。</p> |
| <p>숙종 12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p> | <p>여러 도(道)에서 삭선(朔膳)하는 물품의 종류를 임시로 줄이도록 명하였다. 연신(筵臣) 홍만중(洪萬鍾)·임영(林泳) 등이 일찍이 여러 도에서 임금에게 바치</p> | <p>○命權減諸道朔膳物種。筵臣洪萬鍾、林泳等，嘗陳諸道御供不繁物種太</p> |

| | | |
|--|--|---|
| <p>20년) 10월 7일(병술) 3번째기사</p> | <p>는 물건 중에 긴질하지 않은 물건의 종류가 매우 많은데, 이렇게 재해와 흉년이 잇단 때를 당하여 성상의 마음으로 결단하여 거의 대부분을 줄여서 백성들의 폐해를 가엾게 여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달하고, 또 양 자전(慈殿)에 공진(供進)하는 물선(物膳) 중에 매우 긴질하지 않은 것은 역시 품지(稟旨)하여 정지시키고 줄이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자, 임금(上)이 그것을 허락하고, 여러 도에서 꼭 바쳐야 할 삭선(삭선) 물품 종류의 가짓수를 죽 적어 들이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4전(殿)에서 모두 가져다 보고 그 물품의 종류 가운데 긴질하지 않은 것과 백성들의 병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임시로 줄이도록 한 것이 많았다.</p> | <p>多, 當此災荒連仍之日, 宜斷自聖心, 大段減省, 以恤民弊。 且言: “兩慈殿供進物膳中, 不甚關緊者, 亦宜稟旨停減。” 上許之。 命列錄諸道應進朔膳物種之數以入。 至是, 四殿皆自內就其物種中不緊者及有民瘼者, 多所權減。</p> |
| <p>숙종 12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10월 9일(무자) 6번째기사</p> | <p>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유상운(柳尙運)이 장계로 여러 고을에서 재해를 입은 상황을 진달하고, 인해서 백성들의 구실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기를 빌자,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기를,</p> <p>“청컨대 가장 혹심한 다섯 고을의 경우는 전세(田稅)로 거둬들이는 쌀과 제반 신역(身役)과 신공(身貢)을 전부 덜어 주되, 신적(新糶)은 3분의 1만 바치게 하소서. 매우 심한 여덟 고을의 경우는 거둬들이는 쌀에서 두 말을 감하여 바치게 하고, 신역과 신공은 절반만 거두어 바치게 하되, 신적은 3분의 2만 바치게 하소서. 그 다음의 스물 세 고을의 경우는 거둬들이는 쌀에서 한 말을 감하여 바치게 하고, 신역과 신공은 3분의 2만 바치게 하되, 신적은 기준대로 바치게 하소서. 재해를 당한 경중(輕重)을 따지지 말고 신역으로 당연히 한 필(匹) 반을 바쳐야 하는 자에게는 그 반필을 감해 주고, 당연히 한 필을 바쳐야 하는 자에게는 전례(前例)대로 감해 주지 마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 <p>○平安道觀察使柳尙運狀陳列邑被災之狀, 仍乞蠲免民役。 備局覆奏, 請最酷五邑, 則全減田稅收米、諸般身役身貢, 而新糶捧三分之一; 尤甚八邑, 則收米減捧二斗, 身役身貢折半收捧, 而新糶捧三分之二; 其次二十三邑, 則收米減捧一斗, 身役身貢捧三分之二, 而新糶準捧。 勿論被災輕重, 身役之應納一疋半者, 減其半疋, 應納一疋者, 依前例勿減, 上從之。</p> |
| <p>숙종 12권, 7년(1681</p> | <p>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정시성(鄭始成)이 장계로 각 고을에서 재해를</p> | <p>○江原道觀察使鄭始成狀陳各邑被災</p> |

| | | |
|--|--|--|
| <p>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10월 9일(무자) 7번째기사</p> | <p>입은 상황을 진달하고, 인해서 구실을 줄이고 백성을 진휼하는 일도 적당한 것을 논하자,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기를,</p> <p>“영동(嶺東)에서 매우 심하게 재해를 당한 일곱 고을의 경우는 제반 신역(身役)을 전부 감해 주고, 영서(嶺西)에서 재해를 매우 심하게 당한 여섯 고을의 경우는 제반 신역의 절반을 감해 주며, 단지 당해 연도조의 적곡(糶穀)은 절반만 거두어 바치게 하고, 신역으로 당연히 한 필(匹) 반을 바쳐야 할 자는 반 필을 감해 주고 당연히 한 필을 바쳐야 할 자는 논하지 말며, 대동미(大同米)3464) 열 말인 경우는 다섯 말을 감해 주소서. 영동(嶺東)에서 매우 심한 고을의 세폐목(歲幣木)3465) 과 대동포(大同布)는 아울러 전부 감해 주고, 어부(漁夫)와 염한(鹽漢)3466) 에게서 거둬들이는 세금도 해당 조(曹)와 아문(衙門)으로 하여금 특별히 감해 주도록 하소서. 영동과 인접하여 있는 영서의 조금 풍년이 든 여러 고을에서 바치는 적곡(糶穀)은 본도(本道)로 하여금 참작해서 수효를 정하여 영동으로 옮겨서 진휼하도록 하고, 원주(原州) 등 세 고을은 금년에 진휼청(賑恤廳)에서 지급한 쌀 5백 석(石)을 상납(上納)하지 말도록 하고, 바치는 대로 모아서 진휼하는데 보충하도록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 <p>狀，仍論蠲役賑民事宜。備局覆奏，請嶺東被災尤甚七邑，則全減諸般身役，嶺西被災尤甚六邑，則半減諸般身役。只以當年條糶穀，折半收捧，而身役之應納一疋半者減半疋，應納一匹者勿論。大同十斗米減五斗，嶺東尤甚邑歲幣木大同布，並爲全減。漁夫鹽漢收稅，亦令該曹、該衙門，特爲減除。嶺西之與嶺東接近稍稔諸邑所捧糶穀，令本道參酌定數，移賑嶺東。原州等三邑今年所給賑廳米五百石，令勿上納，隨其所捧，留補賑資，從之。</p> |
| <p>숙종 12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10월 17일(병신) 1번째기사</p> |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경연사(知經筵事) 김석주(金錫胄)가 말하기를,</p> <p>“재량하여 줄이는 일은 신이 바야흐로 민유중(閔維重)과 서로 의논하여 강구(講究)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술년(3482) 과 신해년(3483) 의 재해와 흉년 때 재량하여 줄였던 것을 예전대로 회복시키지 않은 것이 많아 다시 대단하게 재량하여 줄일 수는 없습니다. 올해에는 영동(嶺東)에서 더욱 심하게 재해를 당해 바닷가의 고기잡이하는 가호(家戶)는 도망하여 흩어진 것이 많으니,</p> | <p>丙申/御晝講。知經筵金錫胄言：“裁減事，臣方與閔維重相議講究，而庚辛災荒時所裁省，多未復舊，無復可以大段裁減者矣。今年嶺東被災尤甚，濱海漁戶散亡居多，尤宜軫念。見先朝丙午年謄錄，自上特減嶺東朔膳，而兩慈殿朔膳，則使自京廳，貿取封進矣。</p> |

| | | |
|--|--|--|
| | <p>더욱 진념(軫念)하심이 마땅합니다. 선조(先朝) 병오년(3484)의 등록(謄錄)을 보니 성상께서 특별히 영동의 삭선(朔膳)을 줄여 주시고, 두 자전(慈殿)의 삭선은 경청(京廳)에서 바꾸어다 봉진(封進)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감히 아래에서 주청하지 못하니, 성상께서 대내(大內)에 있는 그 당시의 문서(文書)를 가져다 보시고 침작하셔서 처리하신다면 좋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바닷가의 백성들이 떠돌아다니며 흩어진다고 하니 진실로 매우 가엾다. 영동에서 각전(各殿)에 바치는 삭선 물품의 종류는 병오년의 전례에 의거하여 1년 동안 기한하여 정지하도록 하되, 양(兩) 대비전(大妃殿)의 삭선은 선혜청(宣惠廳)에서 처리하여 값을 지급하고 봉진하도록 하라.”</p> <p>하였다. 그 뒤에 선혜청에서 값을 마련하였는데 쌀이 1천 5백여 석(石)이었다. 김석주가 또 말하기를,</p> <p>“인경 왕후(仁敬王后) 3485 소상(小祥) 때 예조의 상복(喪服)을 벗는 의주(儀註)에 ‘제사를 지낸 뒤에 바로 길복(吉服)을 입는다’는 글귀가 있습니다. 비록 사대부(士大夫) 집안으로 말하더라도 휘일(諱日) 3486 에는 반드시 채식[素] 하며 의대(衣帶)를 정제하고 그 날을 보내는데, 더구나 상일(祥日)이었습니까? 인정과 예의에 미안합니다. 들으니 고(故) 상신(相臣) 정태화(鄭太和)의 집안에 인열 왕후(仁烈王后) 3487 소상(小祥)에 상복(喪服)을 변경하던 때의 일기(日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상일(祥日)에 그대로 천담복(淺淡服)을 착용하였다가 이튿날에야 비로소 상복을 벗었다고 하였으니, 여기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인정과 예의에 적합할 듯합니다.”</p> | <p>此事不敢自下有請，而若自上取覽其時文書在內者，參酌處之則好矣。” 上曰：“濱海之民，舉將流散云，誠甚惻然。嶺東各殿朔膳物種，依丙午例，限一年停止。而兩大妃殿朔膳，自宣惠廳料理給價封進。” 其後惠廳磨鍊其價，爲米一千五百餘石。錫胄又言：“仁敬王后小祥時，禮曹除服儀註，有祭後卽吉之文。雖以士夫家言之，諱日必以素衣帶，終其日，況祥日乎？情禮未安。聞，故相臣鄭太和家有仁烈王后小祥變服時《日記》，而其時則祥日仍着淺淡服，翌日始卽吉云。依此行之，恐合情禮。” 上曰：“該曹儀註，想是一遵《五禮儀》，故如是也。祥日卽吉，果未安。祥日則着淺淡服，翌日卽吉事，儀註中改之以入。” 於是，禮曹改儀註以入，而以祥日已迫，撥馬行會於外方。</p> |
|--|--|--|

| | | |
|---|---|---|
| |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해조(該曹)의 의주(儀註)는 생각하건대, 바로 한결같이 오례의(五禮儀)를 따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듯하다. 상일(祥日)에 상복(喪服)을 벗는 것은 정말 미안하다. 상일에는 천담복(淺淡服)을 착용하고 이튿날에 상복을 벗는 일을 의주(儀註) 중에서 고쳐 들이도록 하라.”</p> <p>하였다. 이에 예조(禮曹)에서 의주를 고쳐서 올리니, 상일(祥日)이 이미 임박하여 파발마[撥馬]로 외방(外方)에 행회(行會)하도록 하였다.</p> | |
| <p>숙종 12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10월 17일(병신) 3번째기사</p> | <p>예조(禮曹)에서 5현(五賢)을 종사(從祀)할 때에 양무(兩廡)의 상탁(床卓)을 재단하여 깎거나 무우(廡宇)를 첨가하여 만드는 일의 당부(當否)를 대신에게 의논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김수흥(金壽興)·정지화(鄭知和) 등이 말하기를,</p> <p>“문묘(文廟)의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에 배열한 상탁은 평상시에도 남아 있는 곳이 있으니, 비록 조금 재단하여 깎아 낸다 하더라도 찬품(饌品)이나 기물(器物)의 수효를 줄이는 것과 같이 미안(未安)한 것은 아니니 변경시켜 옮기고서 봉안(奉安)하여도 불가한 것은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외부의 의논이 이미 이렇게 하는 것을 구차스럽도록 간략하게 한다고 여기니, 종사(從祀)하는 막중(莫重)한 의식을 자세히 살펴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한두 칸을 넓히는 것 또한 적합하지 않은 시기에 하는 것과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아울러 첨가하여 만들도록 한 뒤에 봉안하게 하시면 거의 <성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는 없을 것입니다.”</p> | <p>○禮曹以五賢從祀時，裁削兩廡床卓與添造廡宇當否，議于大臣。領議政金壽恒、左議政閔鼎重、行判中樞府事金壽興·鄭知和等以爲：“文廟東西廡所排床卓，常有餘地，雖略爲裁削，非如饌品器數減損之爲未安。推移奉安，恐無不可，而外議既以此爲苟簡，則莫重從祀之儀，不可不審處。一二間恢拓，又非舉贏之比，竝令添造後奉安，庶無未盡之嫌。”上從之。</p> |

| | | |
|---|---|---|
| | <p>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p> | |
| <p>숙종 12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10월 21일(경자) 2번째기사</p> |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 함께 입시(入侍)하였다.</p> <p>임금이 바야흐로 빈풍시(飭風詩)를 강독하는 것을 인해서 말하기를,</p> <p>“당 태종[唐宗]의 무일 산수도(無逸山水圖) 전후(前後)가 다른 것은 단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태함을 경계한 것입니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숙(李翹)의 집안에 농가사시(農家四時)의 그림 병풍이 있는데, 관람(觀覽)하기에 적합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청컨대 옥당(玉堂)으로 하여금 들여오게 하여 본을 떠서 병풍을 만들어 올리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옹계 여겼다. 김수항이 또 말하기를,</p> <p>“학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 귀중한 것은 식견이 몸에 배도록 끊임없이 하는 것이며, 욕심대로 마구 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받아들였다. 김수항이 또 말하기를,</p> <p>“강원 감사(江原監司) 정시성(鄭始成)이 장계하여 내국(內局)3488) 에 춘등(春等)으로 바치는 인삼(人蔘)을 적당히 줄여 줄 것을 청하였는데, 백성을 염려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참작하여 줄여 주는 거사가 있어야 하겠습니까.”</p> | <p>○御晝講。 領議政金壽恒同入，因上方講《飭風》詩言：“唐宗《無逸山水圖》前後之異，只在一念傲怠。 兵曹判書李翹家有《農家四時圖》屏，宜備觀覽， 請令玉堂取入， 移模作屏以進。” 上可之。 壽恒又言：“講學貴在涵泳玩繹，不可貪多務得。” 上納之。 壽恒又言：“江原監司鄭始成狀請節減內局春等納人蔘，其在軫民之道，宜有參酌許減之舉。” 上命於三十斤，減其半。 侍講官宋光淵曰：“恭靖大王追上廟號，實曠世之盛舉，而或以位版之刮去改書爲未安， 而廟號諡號， 既已追上， 則改題位版， 恐合事宜。 伏聞， 孝宗朝仁烈王后祔廟時， 亦有加上徽號， 改題位版之例。” 上曰：“若以刮改爲未安， 而不行改題， 則位版所題， 將與祝文所稱有異， 恐似未安。 且有仁烈王后位版改題之例， 今亦依此行之似當。” 壽恒曰：“諡號當載於冊寶， 而廟號則祝辭之外， 他無可書之處。 改題位版， 似不可已， 而但太廟列聖位</p> |

| | | |
|--|---|---|
| | <p>하니, 임금이 30근(斤)에서 그 절반을 감하도록 명하였다. 시강관(侍講官) 송광연(宋光淵)이 말하기를,</p> <p>“공정 대왕(恭靖大王)의 묘호(廟號)를 추가하여 올리는 일은 실로 세상에 드문 성대한 거사입니다. 그런데 더러는 위판(位版)을 깎아 버리고 고쳐서 쓰는 것을 미안(未安)하게 여깁니다. 묘호와 시호(諡號)를 이미 추가하여 올렸으니 위판을 고쳐서 쓰는 것은 적합한 일인 듯합니다. 삼가 듣건대 효종조(孝宗朝) 인열 왕후(仁烈王后) 부묘시(祔廟時)에도 가상(加上)한 휘호(徽號)를 위판에다 고쳐서 쓴 전례가 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만약 깎아 버리고 고쳐서 쓰는 것을 미안하게 여겨 고쳐 쓰지 않는다면, 위판에 쓰인 것이 장차 축문(祝文)에서 일컫는 것과 다를 터이니, 아마도 미안할 듯하다. 그리고 인열 왕후의 위판을 고쳐서 쓴 전례가 있으니, 지금도 여기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p> <p>하였다.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p> <p>“시호(諡號)는 당연히 책보(冊寶)3489)에 기재되어 있으며, 묘호(廟號)의 경우는 축사(祝辭) 외에 달리 쓸 말한 곳이 없으니, 위판을 고쳐서 쓰는 것은 불가한 듯합니다. 다만 태묘(太廟)의 열성(列聖) 위판에 쓰인 것이 축사에서 일컫는 바와 서로 틀리는 것이 많지만 일찍이 고쳐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 대왕의 위판만 고쳐서 쓰는 것은 다르다는 혐의가 없지 않으니, 여러 대신과 지방에 있는 유신(儒臣)에게 물어보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p> | <p>版所題，多與祀辭所稱相左，而曾未克改題。今於恭靖大王位版，獨行改題，不無異同之嫌。宜詢於諸大臣及在外儒臣。”上可之。</p> |
|--|---|---|

| | | |
|---|---|--|
| |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p> | |
| <p>숙종 12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10월 23일(임인) 2번째기사</p> | <p>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상(宰相)들을 인견(引見)하였다. 그 때 우의정(右議政) 이상진(李尙眞)이 전주(全州)에서 분황(焚黃)3496) 하고 조정에 돌아와 등대(登對)하여 연도(沿途)의 재해와 흉년의 참상을 목격한 실상을 진달하고, 외방(外方)의 사노비(寺奴婢)에게 쌀을 바치고 천인(賤人)의 신분을 면제시켜 주도록 허락하여 각 고을의 진휼하는 수요에 보충하도록 청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일의 체모가 중대하고 어렵다고 했지만, 김석주(金錫胄)가 혼자 그것이 무방(無妨)하다고 말하자,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p> <p>“요즈음 형조에서 회계(回啓)한 것을 인하여 부안(扶安) 사람 박동명(朴東溟)에게 특별 전교가 있기까지 하였으니 합당한 처분(處分)에 여긋나서, 너무나 아랫사람들이 평소 성명(聖命)에게 바라던 바가 아닙니다. 신이 듣건대 궁가(宮家)에서 사들인 전지는 본래 수십 결(結)인데, 차인(差人)3497)의 무리가 박동명의 전지를 침탈하여 차지한 것은 거의 2백여 결에 이르지만, 그들이 궁가에 세금으로 바치는 것은 한 해에 수십 석(石)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먼 지방의 백성들에게 원망을 사서 성덕(聖德)에 누(累)를 끼치는 것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신이 어찌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 제갈양(諸葛亮)이 한(漢)나라가 세 나라로 나뉘어지는 때를 당하여 부흥시키고 다스리는 계책을 논하면서,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이 일체(一體)가 되는 것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궁중과 부중 사이에 언제나 다르게 갈라지는 폐단이 있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p> | <p>○引見大臣、備局諸宰時，右議政李尙眞自全州焚黃還朝，登對陳沿途災荒之慘目，請許外方寺奴婢納米免賤，以補各邑賑需。諸臣多以爲，事體重難，金錫胄獨言其無妨，上從之。領議政金壽恒言：“近因刑曹回啓，扶安人朴東溟至有特教。處分乖宜，甚非群下平日所望於聖明者。臣聞，宮家所買田，本是數十結，而差人輩侵占朴東溟之田，殆至二百餘結，其納稅於宮家者，一年不過數十石。而因此斂怨於遠民，貽累聖德至此，臣何敢不言？昔諸葛亮當漢家三分危急之時，論興撥之謨，而不過以宮府一體爲言。今日宮府之間，每有岐異之弊，可不戒哉？”尙眞及吏曹判書金錫胄言：“令本道打量其經界，則可以覈實。”上曰：“大臣所陳得宜，其令本道別定剛明官，打量處之。”尙眞曰：“湖南、湖西各邑，前年糶穀多數收捧處，則與他道未捧之邑，宜有區別。而今年新分給糶穀，竝令准捧，事涉不均，民多呼冤。”上</p> |

| | | |
|--|--|---|
| | <p>하고, 이상진(李尙眞) 및 이조 판서(吏曹判書) 김석주(金錫胄)는 말하기를,</p> <p>“본도(本道)로 하여금 그 경계(經界)를 타량(打量)3498) 하게 한다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대신이 진달한 바가 적당하다. 본도로 하여금 별도로 강직하고 명민한 관원을 정하여 타량해서 처리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이상진(李尙眞)이 말하기를,</p> <p>“호남(湖南)과 호서(湖西) 각 고을의 지난해 적곡(糶穀)을 많이 거둬들인 곳은 다른 도(道)의 거둬들이지 못한 고을과는 당연히 구별이 있어야 하는데도, 금년에 새로 나누어 준 적곡을 모두 기준대로 받아들이게 하니, 일이 균등하지 않아 원통하다고 부르짖는 백성이 많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구적(舊糶)을 바친 것이 많은 고을은 신적(新糶)을 3분의 1만 바치도록 명하였다. 이상진(李尙眞)이 말하기를,</p> <p>“박성익(朴性義)은 그의 죄(罪)를 논한다면 귀양보내는 것이 참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소(疏)를 올린 유생(儒生)을 귀양보내는 것은 본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혼조(昏朝) 때에 처음으로 그런 일이 있었으며, 몇 해 전 성명(聖明)께서 바야흐로 어리시어 여러 간신들이 조정의 대권을 잡고 있을 때 두세 명의 유생이 귀양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고쳐서 새롭게 하였</p> | <p>命舊糶多捧之邑，則捧新糶三分之一。尙眞言：“朴性義論其罪，則固合流竄，而第疏儒竄配，本非美事，昏朝時創有之。頃年聖明方在沖齡，群奸當朝，有數三儒生竄配之事。今既更化，復蹈前事，豈不惜哉？群議雖峻，臣則終未知其合當。”上不聽。壽恒請許遞執義李翔職，以從其意，使得以出入筵席，上許之。</p> |
|--|--|---|

| | | |
|--|--|--|
| | <p>는데, 다시 지난 일을 이어 받으니 어찌 애석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 의논이 아무리 준엄하다고 하더라도 신은 끝내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모르겠습니다.”</p> <p>하였으나, 임금의 들어주지 않았다. 김수항이 집의(執義) 이상(李翔)의 직임을 체임하도록 허락하여 그의 뜻을 따라 연석(筵席)에 드나들 수 있도록 할 것을 청하자, 임금이 허락하였다.</p> | |
| <p>숙종 12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11월 1일(경술) 3번째기사</p> |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p> <p>“이번 인경 왕후(仁敬王后) 담제(禫祭) 뒤의 제례(祭禮)는 한결같이 올해년 3513) 인열 왕후(仁烈王后) 국상[國恤] 때의 담제 뒤의 사례에 의거하여 거행하는 것이 적당한데, 본조(本曹)에는 상고할 만한 문서(文書)가 없으며, 실록(實錄)에도 드러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풍악을 잡히는 것을 거론(學論)하지는 않았지만, 《오례의(五禮儀)》의 사시(四時)·납일(臘日) 및 속절(俗節)·삭망(朔望)에 혼전(魂殿)에 섭사(攝事)하는 의식을 상고하여 보니 소주(小註)에 만약 내간상(內艱喪)을 먼저 당했을 경우 15개월 만의 담제를 지낸 뒤의 제사에는 제복(祭服)을 입고 풍악을 잡히며, 초하루의 제사에는 풍악은 없고 음복(飲福)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영소전(永昭殿)의 담제 뒤 제사는 종묘(宗廟)의 제사 의식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런데 영소전과 익능(翼陵)의 참봉(參奉)이 조석 상식(朝夕上食) 때에 당연히 천담복(淺淡服)으로 행사했다면, 오향제(五享祭) 및 속절·삭망의 제사에 참여할 때의 복색(服色)은 헌관(獻官)과 달라서는 안됩니다. 청컨대 오향제 등의 제사 때에는 한결같이 헌관의 복색에 의거하여 행사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p> | <p>○禮曹啓曰：“今此仁敬王后禫後祭禮，當一依乙亥仁烈王后國恤禫後例舉行，而本曹無可考文書，《實錄》亦無見處。至於用樂一款，不爲學論，而考見《五禮儀》，魂殿四時、臘及俗節、朔望攝事儀小註，若內喪在先，則十五日禫後祭，服祭服，用樂。朔祭則無樂，有飲福。今永昭殿禫後祭，當依卽今宗廟祭儀行之，而但永昭殿、翼陵，參奉在朝夕上食時，當以淺淡服參行，則五享及俗節、朔望參祭時服色，不可與獻官有所異同。請令五享等祭時，一依獻官服色參行。”上可之。</p> |

숙종 12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11월 1일(경술)
 5번째기사

공조 참판(工曹參判) 최관(崔寬)이 소(疏)를 올리기를,
 “신이 어제 영소전(永昭殿)의 삭제 헌관(朔祭獻官)으로 임명되었는데, 밤이 깊어 수복(守僕)이 와서 말하기를 ‘상제(祥祭) 전의 삭망제(朔望祭)에는 조가(朝家)에서 1품(品) 헌관(獻官)을 차출 파견하여 세 번 잔을 올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번 삭제(朔祭)에는 조가에서 단헌관(單獻官)으로 고쳐 파견하였으니, 상제 전에 삼헌(三獻)하던 것과는 다릅니다. 이번 삭제는 당연히 종묘 삭제(宗廟朔祭)의 단헌(單獻)하는 것과 다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고 하기에, 신이 예조의 정식(定式)을 물으니, 별도로 정탈(定奪)한 것은 없다고들 하였습니다. 막중한 일을 감히 마음대로 단정할 수 없어 영의정(領議政)에게 물었더니, 사세가 급박하여 비록 계품(啓稟)하여 정탈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종묘 삭제와 같이 단헌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지만 결단하여 정할 수 없으니, 헌관이 참작해서 행례(行禮)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신이 반복해서 생각해 보니 종묘 삭망제(宗廟朔望祭)에는 단헌관을 차출하여 언제나 단작(單酌)만 올리는데, 이제 영소전도 단헌관으로 개차(改差)하였으니, 응당 종묘에 단헌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듯하기에 감히 단작으로 행례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록 갑작스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아마도 변경시켜 고치는 절차에 부합되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삭제는 상제(祥祭) 뒤 처음으로 당하는 것이니 혹시라도 예의에 어긋난다면 뒷날 삭망(朔望)의 제사가 점점 예를 그르치게 될 것이니, 신이 억측으로 결단하여 함부로 행한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임금이 답(答)하기를,
 “일이 바쁘고 급박하여 미처 품지(稟旨)하여 결정하지 못한 것은 형세가 그러

○工曹參判崔寬上疏言：
 臣昨差永昭殿朔祭獻官，夜深守僕來言：“祥祭前朔望祭，則朝家差遣一品獻官，獻三酌矣。及今朔祭，則朝家改遣單獻官，與祥前三獻有異。今朔祭，當與宗廟朔祭單獻無異同。”臣問禮曹定式，則別無定奪之事云。莫重之事，不敢擅斷，問於領議政，則答以事勢急遽，雖未及啓稟定奪，然似當如宗廟朔祭單獻，而此不可斷定，獻官參酌行禮爲當。臣反覆思之，宗廟朔望祭，差單獻官，常獻單酌。今永昭殿亦改差單獻官，則當與宗廟單獻，似無異同，故敢以單酌行禮。此雖急遽致然，竊恐未合於變改之節。且今日朔祭，遽當祥後之初，若或違禮，則日後朔望之祭，漸至誤禮。乞治臣臆斷妄行之罪。
 上答曰：“事出忙迫，未及稟定，其勢然矣。卿何俟罪？仍念，祥後單獻，與祥前三獻有異。今後朔望之奠，依太廟之制，只獻單酌，似合事宜。依此舉行。”禮曹啓曰：“祥祭已過，故

| | | |
|--|---|--|
| | <p>했기 때문이다. 경(卿)이 무엇 때문에 죄를 기다리는가? 인해서 생각하건대 상제 뒤에 단헌하는 것은 상제 전에 삼헌(三獻)하는 것과 다름이 있으니, 이 뒤로 삭망(朔望)에 제물(祭物)을 올릴 때에는 태묘(太廟)의 제도에 의거하여 단지 한 잔만 올리는 것이 사의(事宜)에 적합할 듯하니, 여기에 의거하여 거행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p> <p>“상제(祥祭)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삭망(朔望) 때에 헌관(獻官) 1원(員)을 차출하여 보내고 종묘의 예(例)에 의거하여 단헌(單獻)으로 행례(行禮)하는 것은 바로 당연히 행해야 할 일이라 별도로 품지(稟旨)하여 결정할 것이 없는데, 헌관이 소(疏)를 진달하는 데 이르고 성비(聖批)에 단지 단작(單酌)을 드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전교하셨으니, 이제 여기에 의거하여 거행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다만 듣건대 지금 상식(上食) 때에 상제 것처럼 잇따라 세 잔(盞)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제 삭망에 단지 단작만 행하는 것이 이미 상제 후라고 하여 줄인 것이라면, 유독 상식에만 그대로 세 잔을 올리는 것은 아마도 예(禮)에 적합하지 않을 듯합니다. 대체로 상제 뒤의 상식은 바로 임시 방편으로 행하는 예인데, 이렇게 경중(輕重)에 방해(妨礙)되는 단서가 있으니, 이것도 당연히 줄이는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청컨대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 행 관중추부사(行版中樞府事) 김수흥(金壽興)·정지화(鄭知和), 우의정(右議政) 이상진(李尙眞) 등이 의논하기를,</p> <p>“영소전(永昭殿)의 상제(祥祭) 뒤 삭망제(朔望祭)에 이미 한 잔 올리는 예를 행하였다면, 상식(上食) 때에 잇따라 세 잔을 올리는 것은 참으로 경중(輕重)</p> | <p>朔望時差送獻官一員，則依宗廟例，單獻行禮，乃是應行之事，別無可以稟定。而獻官至於陳疏，聖批以只獻單酌，合宜爲教。今當依此舉行，而第聞，卽今上食時，依祥前連奠三盞云。今朔望之只行單酌，既以祥後而有所減殺，則獨於上食，仍獻三盞，恐未合禮。蓋祥後上食，乃權行之禮，而有此輕重妨礙之端，此亦當有減殺之節。請議大臣。” 領議政金壽恒、行判府事金壽興。鄭知和、右議政李尙眞等議以爲：“永昭殿祥後朔望祭，既行一獻，則上食時連奠三盞，誠有輕重失序之嫌。此蓋仍用初喪以來遵行之禮而然，念祥後上食，雖出權宜，舉哀一款，亦既停廢，則奠酌之節，亦宜有殺。” 上命於朝夕上食時，只奠一盞。</p> |
|--|---|--|

| | | |
|---|---|--|
| | <p>의 차례를 잃은 혐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초상(初喪) 이래로 준행하던 예(禮)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상제 뒤의 상식이 비록 임시 편의에서 나온 것이라도 하더라도 거애(擧哀)하는 일 역시 이미 정지시켜 폐(廢)하였다면 잔을 올리는 절차도 줄이는 것이 적당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조석 상식(朝夕上食) 때에 단지 한 잔만 올리도록 명하였다.</p> | |
| <p>숙종 12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11월 10일(기미) 4번째기사</p> | <p>이보다 앞서 임금이 대신의 진달(陳達)로 인하여 모든 용도(用度)를 특별히 진휼청(賑恤廳)에 상의(商議)하여 재단하여 줄이도록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민유중(閔維重)·김석주(金錫胄) 등이 경술년(3529) 과 신해년(3530) 에 이미 시행한 문서를 상고하여 각사(各司)의 물종(物鍾) 중에 긴요하고 긴요하지 않은 것과 많고 적음을 참작[參量]하여 줄일 만한 것은 줄이도록 하는 별단(別單)을 입계(入啓)하였다. 금년 12월부터 명년 11월까지 1년을 기한하여 그 가미(價米)를 헤아려서 줄이도록 하였는데, 줄인 총계는 9천 3백여 석(石)이었다. 각처의 소목(燒木)·탄목(炭木) 및 지지(紙地) 등의 물건도 신해년 전례에 의거하여 금년 12월부터 명년 11월까지 줄일 가미의 총계가 7백 70여 석이며, 대동포(大同布)가 28동(同)여 필(匹)이었다.</p> | <p>○先是, 上因大臣陳達, 凡百用度, 特令自賑恤廳, 商議裁減。 至是, 閔維重、金錫胄等考庚戌辛亥已行文書, 參量各司物種緊歇多少, 可減者減之, 別單入啓。 自今年十二月, 至明年十一月, 限一年量減, 其價米所減, 總計九千三百餘石。 各處燒炭木及紙地等物, 亦依辛亥年例, 自今年十二月, 至明年十一月, 所減之價, 計米七百七十餘石, 大同布二十八同餘匹。</p> |
| <p>숙종 12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11월 18일(정묘) 1번째기사</p> | <p>며칠 전에 여성제(呂聖齊)가, 영소전(永昭殿)의 담제(禫祭) 뒤 산릉(山陵)에는 그대로 곡읍(哭泣) 절차를 적용하는데, 혼전(魂殿)에는 음악을 연주하니 길흉(吉凶)이 서로 뒤섞인다고 연석(筵席)에서 아뢰고, 대신(大臣)과 유신(儒臣)에게 묻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것을 허락하였다. 예조(禮曹)에서 대신과 유신에게 의논하니,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 행 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김수흥(金壽興)·정지화(鄭知和)는 의논드리기를,</p> <p>“《오례의(五禮儀)》의 내간상(內艱喪)은 11개월 만에 연제(練祭)를 지내고, 13개월 만에 상제(祥祭)를 지내며, 15개월 만에 담제(禫祭)를 지내는 제도는</p> | <p>○丁卯/日前呂聖齊筵白: “永昭殿禫後, 山陵尙用哭泣之節, 而魂殿則用樂, 吉凶相雜, 請問於大臣、儒臣。” 上許之。 禮曹議于大臣、儒臣。 領議政金壽恒、行判中樞府事金壽興、鄭知和議曰: “《五禮儀》內喪十一月練, 十三月祥, 十五月禫之制, 一遵古禮。 十五月之後, 則三年之制已畢。 祭享用樂, 此固當然之禮, 固無可疑。</p> |

한결같이 고례(古禮)를 따른 것이니, 15개월 뒤에는 3년의 예제(禮制)가 이미 끝이 난 것이므로 제향(祭享)에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예(禮)이며, 의심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도록 그대로 상식(上食)을 행하는 것은 가까운 전례(前例)를 따라서 행하는 데서 나온 것으로 일시적인 방편이며, 산릉(山陵)에서 곡(哭)하는 예는 또한 선현(先賢)의 삼년상(三年喪)을 마친 뒤에도 산소에 올라가 곡을 한다는 예문(禮文)을 모방한 것이니, 이 때문에 문득 3년의 예제를 마치지 않은 것이라 하여 마침내 담제 뒤에 응당 행하여야 할 예를 폐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은 의논드리기를,

“《오례의(五禮儀)》의 담제 뒤에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바로 예의 일정한 것이며, 오늘날 상식(上食)을 그대로 시행하고 산릉(山陵)에서 거애(擧哀)하는 것은 임시 편의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변경할 수 없는 것을 따르면서 임시적인 것을 폐할 수 없었던 일은 옛날에도 있었으나, 임시적인 것을 인하여 도리어 불변의 도에 대하여 의심을 하는 것은 이러한 이치가 없을 듯합니다. 더구나 산릉(山陵)과 혼전(魂殿)은 사체(事體)와 정례(情禮) 역시 저절로 동일하지 않으니, 수릉(守陵)하거나 시릉(侍陵)하는 관원이 즉시 길(吉)한 쪽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여기에서 연유하였다면 의절(儀節)에 다름이 있는 것은 크게 방해되지 않을 듯합니다.”

하고, 이상진(李尙眞)의 의논도 상식(上食)하는 것이 이미 임시 편의에서 나왔고, 곡례(哭禮)도 모방한 바이니, 이것으로 불변의 도를 변경시킬 수는 없다고 하였다. 박세채(朴世采)는 의논드리기를,

至於今日，仍行上食，出於遵行近例，一時權宜之道。而山陵哭禮，又倣先賢三年後上塚亦哭之文，不可以此，便爲三年之制未畢，而遂廢禫後應行之禮也。” 左議政閔鼎重議曰：“《五禮儀》禫後用樂，乃禮之常。而今日之仍行上食，山陵舉哀，出於權宜之制，遵常而不能廢乎權者，古亦有耳。因權而反以致疑於常，恐無是理。況山陵與魂殿，事體情禮亦自不同。守侍之官，不卽從吉，既由於此，則儀節之有異，似不大妨。” 李尙眞議亦以爲：“上食既出權宜，哭禮亦有所倣，則不可以此變禮之常。” 朴世采議曰：“經禫之後，山陵之哭泣，魂殿之上食，皆出於一時之權宜，則正古所謂，亡於禮者之禮也。況其他大祭之用樂，本具於《五禮儀》之文，雖未知能合於其動也中之義，而恐有所不得廢者。” 司業李翺議曰：“臣之愚見，無變於前日所獻之議矣。今朝家雖以祖宗朝可據節目，而不撤几筵，至於哭禮，似不可行。” 尹拯辭不對。上下教曰：“十五月禫後用樂，乃經常之禮也。三年上食，山陵哭禮，或出權宜，或倣古文，

| | | |
|------------------|---|---|
| | <p>“담제(禫祭)를 지낸 뒤 산릉(山陵)에서 곡읍(哭泣)하거나 혼전(魂殿)에서 상식(上食)하는 것은 모두 한때의 임시 편의에서 나온 것이니, 바로 옛날에 이른바, 예(禮)에도 없는 예(禮)인 것입니다. 더구나 다른 대제(大祭)에 음악을 쓰는 것은 본래 《오례의(五禮儀)》의 조문(條文)에 갖추어져 있으니, 비록 그 행동이 예에 적중하다는 뜻에 잘 부합될는지 모르겠으나 폐할 수 없을 듯합니다.”</p> <p>하고, 사업(司業) 이상(李翔)은 의논드리기를,</p> <p>“신(臣)의 어리석은 견해로는 지난날에 올렸던 의논에 변경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비록 조정[朝家]에서 조종조(祖宗朝)의 근거할 만한 절목(節目)이라고 하여 궤연(几筵)3545) 을 철거하지 않았지만, 곡례(哭禮)는 시행하지 않아야 할 듯합니다.”</p> <p>하고, 윤증(尹拯)은 사양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임금이 전교를 내리기를,</p> <p>“15개월 만에 담제(禫祭)를 지낸 뒤에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항상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 예이다. 3년 동안 상식(上食)하고 산릉(山陵)에서 곡례(哭禮)를 하는 것이 혹 임시 편의에서 나온 것이며, 혹 옛날의 예문(禮文)을 모방한 것이라면, 어떻게 한때의 임시 방편 때문에 응당 행하여야 할 예제(禮制)를 폐할 수 있겠는가? 예문에 의거하여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p> | <p>則烏可以一時之權道， 廢應行之禮制乎？ 其依禮文， 用樂可也。”</p> |
| 숙종 12권, 7년(1681) | 비변사(備邊司)에서 도성 근처가 기근으로 곤궁하니 방민처(坊民處)에서 으레 | ○備邊司以都下飢困， 請除坊民處例捧 |

| | | |
|---|--|---|
| <p>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12월 6일(을유) 4번째기사</p> | <p>바치는 장빙미(藏氷米)를 없애 주도록 하고, 진휼청(賑恤廳)으로 하여금 잘 따져서 나누어 주도록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 <p>藏氷米，令賑恤廳料理劃給，上從之。</p> |
| <p>숙종 12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12월 11일(경인) 4번째기사</p> | <p>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 윤지선(尹趾善)이 장계(狀啓)로 북관(北關)3584)의 흉년으로 인해 굶주리는 상황을 진달하기를,</p> <p>“곡식을 옮겨서 구휼하는 거사가 없으면 경성(鏡城) 이북의 백성들은 장차 남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p> <p>하고, 또 곡물(穀物)을 모으고 세초(歲抄)를 정지하는 일의 편의(便宜)를 조목 조목 나열하여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지휘(指揮)하도록 밀자, 비국에서 복주(覆奏)하기를,</p> <p>“관서(關西)와 경계를 접한 고을에서 옮겨온 곡식을 참작해서 나누어 주도록 하며, 통정 대부(通政大夫)와 가선 대부(嘉善大夫)의 공명첩(空名帖)3585) 3백 장(張)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만들어서 보내도록 하며, 또 세초(歲抄)를 정지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 <p>○咸鏡道觀察使尹趾善狀陳北關飢荒狀以爲：“若無移粟之舉，鏡城以北之民，將無孑遺。”又條列聚穀物、停歲抄便宜，乞令備局指揮。備局覆奏請以關西接界邑移轉穀，參酌劃給，通政、嘉善空名帖三百張，令該曹成送，又停歲抄，上從之。</p> |
| <p>숙종 12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12월 12일(신묘) 1번째기사</p> | <p>고(故) 청풍 부원군(淸風府院君) 김우명(金佑明)의 집안에서 장차 연시(延誼) 하려 하니, 임금이 잔칫날 내외(內外)에 선운(宣醞)과 1등악(一等樂)을 내리도록 명하고, 그날에 삼공(三公)과 원임(原任) 이하는 모두 잔치에 나가도록 명하였다.</p> | <p>○辛卯/故淸風府院君金佑明家將延誼，上命於宴日，內外宣醞，賜一等樂。至日，又命三公、原任以下竝赴宴。</p> |
| <p>숙종 12권, 7년(1681</p> | <p>임금이 특별 전교로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송시열(宋時烈)에게 유시(諭示)하</p> | <p>○上以特教，諭領中樞府事宋時烈曰：</p> |

| | | |
|--|---|---|
| <p>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12월 12일(신묘) 2번째기사</p> | <p>기를,</p> <p>“지난번에 추위를 무릅쓰고 먼 길을 걸은 나머지 병이 더욱 심해져서 달을 넘기도록 낮지 않고 오래 끈다는 소문을 듣고서 놀랍고 염려스러워 마음을 놓지 못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신명(神明)이 도와주심을 의뢰하여 갑자기 약(藥)을 쓰지 않아도 효험을 보게 되었으니, 나의 기쁨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보잘것없는 물품으로 나의 정성을 대략이나마 표했었는데, 사례(謝禮)하는 전문(箋文)을 봉(封)하여 올리니, 도리어 부끄럽다. 경(卿)은 더욱 조섭(調攝)을 잘하여 천천히 봄날씨가 따뜻해지기를 기다려 빨리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음을 되돌려서 조용히 돌아와 나의 미치지 못한 점을 바로잡도록 하라.”</p> <p>하였다.</p> | <p>“頃者冒寒跋涉之餘，一疾轉劇，彌月沈綿。聞來驚慮，未嘗少弛，幸賴神明之陰騭，遽見勿藥而有效，予心喜幸，何可量哉？不腆之物，略表予誠，而至封謝箋，還切慙慙也。卿其益加善攝，徐待春日之載陽，亟回遐心，從容登途，以匡不逮。”</p> |
| <p>숙종 12권,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12월 13일(임진) 1번째기사</p> | <p>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p> <p>“궁가(宮家)의 자산(資産)은 중인(中人) 1백 가(家)의 자산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곤궁하고 재화가 고갈되었으며 변괴와 재이가 겹친 때를 당하여, 비록 현재 살아 있는 공주(公主)의 집안이라 하더라도 진실로 절약하여 덜고 재단하여 줄이며 사치하고 화려한 습관을 억제하도록 힘써야 마땅할 것입니다. 더구나 명선 공주(明善公主)·명혜 공주(明惠公主) 두 공주는 불행하게도 일찍 죽어 미처 가정을 가지지 못했으니, 제수(祭需) 외에는 달리 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보탬이 없는 비용을 만들어 한없는 폐단을 후세에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더구나 주장하여 관리할 사람이 없는데도 내시[閹豎]들의 손에 맡겨두시니, 피폐한 백성들의 피와 땀을 흘려 얻은 이익이 모두 이 무리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청컨대, 두 궁가(宮家)의 토전</p> | <p>○壬辰/諫院啓言：“宮家資産，足爲中人百家之資。當此民窮財竭，變異層疊之日，雖時存公主之家，固宜節損裁省，務抑侈靡之習。況明善、明惠兩公主，不幸早世，未及有家，祭需之外，無他可用。何必爲無益之費，以貽不貲之弊乎？況無主管之人，而付諸閹豎之手，殘民膏血，盡歸此輩囊囊。請兩宮家土田臧獲，可供祭需之外，一併革罷，移用於賑民之資。” 答曰：“兩公主不幸早卒，先王常加憐悼，別構祠宇，仍存田庄者，不特爲一時香火而</p> |

| | | |
|--|--|--|
| | <p>(土田)과 장획(臧獲) 중에 제수(祭需)를 제공할 만한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혁파하여 백성을 진휼(賑恤)하는 자본으로 옮겨 활용하게 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p> <p>“두 공주가 불행하게도 일찍 죽었으므로, 선왕(先王)께서 언제나 가련하게 여겨 슬퍼하시면서 별도로 사우(祠宇)를 지어 전장(田庄)을 그대로 보존하게 한 것은 한때의 제사를 위하려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대체로 뒷날 대군(大君)으로 하여금 각각 제사를 받들도록 하여 영구토록 유전(流傳)하게 하려는 뜻이라고 하신 또렷한 옥음(玉音)이 지금까지 귀에 남아 있는데, 어떻게 차마 선왕(先王)께서 남기신 뜻을 저버리고 마침내 혁파하라는 영(令)을 내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아뢴 내용 중에, ‘제수(祭需)를 제공할 만한 정도를 제외하고’라는 등의 말이 있는데, 이것은 더욱 그렇지 못하다. 두 궁가의 전장(田庄)으로 이미 혁파한 것이 많아 세입(歲入)이 점점 줄어들었는데, 지금 또 약간(若干)의 제수로 제공할 것만 덜어내고 일제히 혁파한다면, 그것은 이른바 그 명목은 있으나 그 실상은 없다는 것이다. 돌아보건대 수용(需用)에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p> <p>하였다.</p> | <p>已。蓋欲使他日大君，各爲奉祀，永久流傳之意也。丁寧玉音，尙今在耳，胡忍負先王之遺意，而終令革罷乎？啓辭中雖有可供祭需之外等語，而此則尤有不然者。兩宮田庄，已多革罷，歲入漸縮，而今又除出若干祭需，一併革罷，則正所謂有其名而無其實，顧何補於需用哉？”</p>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1월 14일(임술) 1번째기사</p> | <p>임금이 정명 공주(貞明公主)의 수연(壽宴) 때에 선운(宣醞)3692) 하라고 명하자,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p> <p>“대내(大內)에서 선운(宣醞)하는 것은 밖에서 선운하는 것과 다르기는 하나, 이처럼 흉년이 들어 재물이 궁할 때에 이미 연수(宴需)를 주었는데 또 선운을 명하는 것은 지나침을 면하지 못합니다.”</p> | <p>○壬戌/上命貞明公主壽宴時宣醞。政院啓以自內宣醞，雖異外宣，當此歲饑財匱之時，既給宴需，又命宣醞，未免濫觴。上以壽宴時宣醞，曾有舊例，不從</p> |

| | | |
|--|---|---|
| | <p>하니, 임금이 수연(壽宴) 때의 선은은 구례(舊例)가 있었다 하여 따르지 않았다.</p> |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1월 15일(계해) 2번째기사</p> | <p>제주(濟州)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목사(牧使) 신경윤(愼景尹)이 연해(沿海)의 곡식 1만여 석(石)을 얻어서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게 해 주기를 청하고, 또 말하기를,</p> <p>“땅은 좁은데 말이 많아서 잘 먹여 기르지 못하니, 못난 말을 뽑아내어 연해의 각 고을에 나누어 팔아서 진구(賑救)의 밑거리에 보태게 하소서.”</p> <p>하였는데, 비변사(備邊司)에서 복계(覆啓)하기를,</p> <p>“진휼청(賑恤廳)을 시켜 잘 요리하여 급히 선곡(船穀)을 날라다가 그 급한 것을 구제하게 하고, 못난 말을 뽑아 파는 것은 마지못한 사정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구별을 정밀하게 하기 어려워서 손실이 염려되니, 시행하지 마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 <p>○濟州饑荒。 牧使愼景尹請得沿海穀萬餘石， 以濟饑民。 又言地狹馬多， 不善喂養， 請抄出駑駘， 分賣沿海各邑， 以補賑資。 備邊司覆啓， 請令賑恤廳， 從長料理， 急運船穀， 以濟其急。 劣馬抄賣， 雖出於不得已， 區別難精， 耗失可慮。 請勿施， 從之。</p>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1월 15일(계해) 3번째기사</p> | <p>동래 부사(東萊府使)가 치계(馳啓)하기를,</p> <p>“왜선(倭船)이 와서 말하기를, ‘통신사행(通信使行)의 절목(節目)을 강호(江戶)에서 보내어 왔는데, 거기에 「관백(關白)이 미처 일광산(日光山)에 가 뵈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의 사신(使臣)이 먼저 분향(焚香)하는 것은 미안하니, 일광산의 분향과 엄유원(嚴有院)의 치제(致祭) 등을 모두 하지 말고, 폐백(幣帛)·향촉(香燭)만을 가져오고, 등롱(燈籠)·화병(花餅)·제수(祭需) 따위 물건을 다시 더 장만하여 보내지 말라.’ 하고, 또 「중전에는 사행(使行)을 지공(支</p> | <p>○東萊府使馳啓曰：“倭船來言：‘通信使行節目， 自江戶送來。’ 云。 關白未及往展於日光山， 他國使臣先行焚香未安。 日光山焚香， 嚴有院致祭等事， 竝勿爲之， 只齋幣帛香燭， 勿復備送燈籠、花餅、祭需等物。” 又曰：“從前使行支供飲食皆熟設， 三大使曾不下筋， 水陸供億， 便歸虛地。 今欲以乾</p> |

| | | |
|--|---|---|
| | <p>供)하는 음식은 다 익힌 것으로 장만 하였으나, 세 사신이 수저를 대지도 않아서 물과 뜰에서 나는 음식의 공역(供億)이 허사로 돌아갔으므로, 이제는 마른 것으로 닳새에 한 번씩 보내려 하거니와, 이따금 마지못하여 익힌 것으로 장만하는 곳이 있어서 입에 맞지 않더라도 애써 받아 주기 바란다.» 하고, 또 「기계(器械)를 받쳐드는 여러 집사(執事) 이외의 긴요하지 않은 사람은 많은 수를 데려올 것이니, 포함한 수가 3, 4백 인을 넘지 않게 하되, 의관(醫官)·역관(譯官)은 한두 사람을 더 데려와도 무방하나 의관은 반드시 기술이 정통한 자를 가려야 한다.» 하고, 또 표피(豹皮)·생저포(生苧布)·백저포(白苧布)·꼬리가 있는 향초피(鄉貂皮)·양피(羊皮)·대추[大棗]와 몸을 온전히 갖춘 죽은 범[虎] 한 마리를 요구하였는데, 범은 온전한 것을 구하기 어려우면 범 한 마리의 뼈 전부를 갖추어 보내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p> <p>하였는데, 예조(禮曹)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되 표피는 수를 줄여서 허락하기를 청하니,</p> <p>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에 앞서 역관(譯官) 변이표(卞爾標)가 대마주(對馬州)에서 가지고 온 도주(島主) 평의진(平義眞)의 서계(書契)에 이르기를,</p> <p>“내년에 통신사(通信使)가 대군(大君)의 계업(繼業)을 축하하러 오겠으나, 그 서계(書契)와 별폭(別幅)은 글이 신중해야 하고 물건이 정비(精備)해야 합니다. 평의진(平義眞)이 봉작(封爵)을 이어받고 나서 처음으로 성대한 사신 행차가 우리 땅에 들어오는 때를 당하였는데, 우리 가종(家從) 가운데에서 마침을미년(3693)의 예를 아는 자는 다 늙어서 일을 맡지 못하거니와, 이번 일행(一行)은 귀국(貴國)도 그러할 것으로 생각하나, 본국(本國)의 풍습은 폐주(弊州)가 잘 아는 바이니, 시의(時宜)에 따라 헤아려서 지휘(指揮)하여 예(禮)가</p> | <p>物, 五日一送, 間有不得已熟設處, 縱不適口, 須勉受之。” 又曰: “奉持器械諸執事外不緊人, 不必優數帶來。都數毋過三四百人, 醫譯加率一二人無妨, 醫必擇術精者。 又求豹皮、生苧布、白苧布, 有尾鄉貂皮、羊皮、大棗、死虎全體一頭虎。 若難得全體, 則一虎之骨, 願備數覓送。” 禮曹請依請施行, 而貂皮減數許之, 上從之。 先是, 譯官卞爾標還自對馬州, 賣來島主平義眞書契曰: “來歲有通信使來, 爲賀大君之繼業。 然其書契暨其別幅文, 須慎重, 物須精備。 義眞襲封爵後, 始值盛价入我之日, 而我家從之中, 適識乙未年例者, 皆給背鯢齒, 不得執役。 今番一行, 想貴國亦爾然, 而本國習尚, 弊州所諳也。 須遵時宜, 商量指揮, 禮成事遂, 則隣好久益厚矣。” 島主及奉行, 俱有別單, 條列使行節目, 求請物件。 禮曹啓曰: “嚴有院者, 卽日本先大君廟號也。 請得御筆扁榜, 雖有前例, 事甚重大。 令廟堂稟處。” 又謂: “燈籠、樂器等物, 一遵舊例, 而燈籠銘字, 先示草本 模樣高低, 要從我制。 此亦有例, 宜令</p> |
|--|---|---|

| | | |
|--|--|---|
| | <p>이루어지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호(隣好)가 오래도록 더욱 두터워질 것입니다.”</p> <p>하였는데, 도주(島主)와 봉행(奉行)에게서 모두 별단(別單)이 있었고, 사행(使行)의 절목(節目)과 청구하는 물건을 조목으로 열거(列舉)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p> <p>“엄유원(嚴有院)이란 곧 일본(日本)의 선대군(先大君)의 묘호(廟號)입니다. 어필(御筆)의 편방(扁榜)3694) 을 얻기를 청하는 것은 전례(前例)가 있기는 하나 일이 매우 중대하니, 묘당(廟堂)을 시켜 여쭙어서 처치하게 하소서. 또 ‘등룡(燈籠)·악기(樂器) 따위 물건은 한결같이 구례(舊例)를 따르되 등룡(燈籠)의 명자(銘字)는 먼저 초본(草本)을 보여 주고 모양과 고저(高低)는 우리 제도에 따르기 바란다.’ 하였는데, 이것도 전례가 있으니, 승문원(承文院)을 시켜 가려 내어 등초(謄草)하여 보내야 하겠습니까. 또 ‘권현당(權現堂)·대유원(大猷院) 두 곳에는 분향만 해야 하고 엄유원(嚴有院)에는 치제(致祭)한다.’ 하였으니,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하겠습니까. 또 ‘예조(禮曹)의 인지(印紙)3695) 몇 장을 가져오라.’ 한 것은 공명첩(空名帖)을 말하는 것인 듯한데, 역관(譯官)이 이미 쟁집(爭執)하였으니, 여전히 거절해야 하겠습니까. 대판성(大板城)과 양도(兩都)3696) 에서 지대(支待)하는 관원에게 사신(使臣)이 치경(致敬)하는 일과, 왜인(倭人) 고사(篙師)3697) 가 세 사신의 배에 나누어 타서 바닷물과 바람을 살피는 일과, 통신사가 저들 땅에 이른 뒤에 일행(一行)이 타는 말[騎馬]을 몰아 달려서 죽게 하지 말 것과, 일행의 인원이 관소(館所) 밖을 마구 다니며 금하는 물건을 몰래 매매하거나 문에 침을 뱉고 기둥에 새기는 짓을 못하게 하는 일과, 사행(使行)은 반드시 5월 안에 배를 띄워야 한다는 따위 몇 가지는 사신에게 분부하여 이에 따라 거행하게 하고, 글을 잘하고 글씨를</p> | <p>承文院，撰出謄草以送。”又謂：“權現堂、大猷院兩處，只可焚香，而嚴有院致祭，宜依此施行。”又謂：“禮曹印紙數張賚來者，似是空名帖之謂也。譯官既已爭執，宜仍前防塞。大阪城及兩都支待官員處，使臣致敬事及倭篙師分載三使船，以候潮占風事及信使到彼中後，一行所騎馬，勿使驅馳，人致徑斃事及勿令一行人役，橫行館外，潛商禁物，唾戶刻楹事及使行必於五月內發船等數件，分付使臣，依此舉行。能文、能書、能畫、能馭、善射、善騎有膂力者，率來事宜，分付該曹擇送。”又謂：“上上官三員，如良醫譯加員無妨，勿帶無用人云。”上上官者，乃指堂上譯官也。堂上、堂下譯官及醫官等，加送無妨。事係變通，請令廟堂稟處。勿帶無用人一款，分付使臣、奉行等。別單有曰：“三宗室暨執政數員處，三使餽物多品，而木綿、胡桃、栢子、花席、油菴、雪綿、佩香、清心元等物，非東都官人所用，其他鷹、蓼、虎豹、貂羊皮、青黍皮、白照布、筆墨、綾段、色紙、魚皮、菘豆、白蜜、小刀爲可云。所謂</p> |
|--|--|---|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리고 말을 잘 부리고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타고 완력이 있는 자를 데려가는 일은 해조(該曹)에 분부(分付)하여 가려 보내야 하겠습니까. 또 ‘상상관(上上官) 3원(員)은 양의(良醫)·양역(良譯) 같으면 인원을 더하여도 무방하나, 쓸데없는 사람은 데려오지 말라.’ 하였는데, 상상관(上上官)이란 당상 역관(堂上譯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상 역관·당하 역관(堂下譯官)과 의관(醫官) 등을 더 보내어도 무방하겠으나, 변통(變通)에 관계되는 일이니, 묘당(廟堂)을 시켜 어쭙어서 처치하게 하고, 쓸데없는 사람을 데려오지 말라는 것은 사신(使臣)에게 분부하소서.

봉행(奉行) 등의 별단(別單)에 ‘세 종실(宗室)과 집행(執政) 몇 사람에게 세 사신이 보내 주는 물건이 여러 가지인데, 목면(木綿)·호도(胡桃)·백자(柏子)3698)·화석(花席)·유둔(油菴)·설면(雪綿)3699)·패향(佩香)·청심원(淸心元) 따위 물건은 동도(東都)3700)의 관인(官人)이 쓰는 것이 아니며, 그 밖의 매[鷹]·삼(蔘)·호피(虎皮)·표피(豹皮)·백조포(白照布)·붓[筆]·먹[墨]·능단(綾段)·색지(色紙)·어피(魚皮)·녹두(菘豆)·백밀(白蜜)·소도(小刀)는 괜찮다.’ 하였는데, 세 종실(宗室)이라 한 것은 그들의 대납언(大納言) 등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미 쓸데없다고 한 물건은 보내 줄 것 없거니와, 초피·표피 같은 것은 혹 전례에 없던 것이라도 먼 데 사람의 청을 전혀 거절할 수 없으니, 간략하게 마련하여 보내야 하겠습니까. 또 ‘세 사신[三使]의 배[船]에 쓸 대삭(大索)3701)·철정(鐵釘)3702)은 폐주(弊州)에서 실어 보내고 세 사신의 의롱(衣籠)도 스스로 만들겠다.’ 하였는데, 저들을 시켜 만들게 하는 것은 매우 구차하니, 사신을 시켜 정밀하게 만들도록 힘써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 ‘대군(大君)에게 보내는 서계(書契)는 궤(櫃)에 담되 정하게 만들어야 하고 사신 일행의 하졸(下卒)은 새옷을 입어야 하며, 폐백마(幣帛馬)·예단마(禮單馬) 외에 3, 4필(匹)을 더 보내되 털빛[毛色]은 박(駮)3703)·이(驪)3704)·자류

三宗室, 卽指渠大納言之類, 旣云無用之物, 不必餽之。如貂、豹等種, 或前例所無, 而遠人之請, 不可全然防塞, 宜從略磨鍊送之。” 又曰: “三使船大索鐵釘, 自弊州載送, 三使衣籠, 亦當自造云, 使彼造辦, 殊涉苟且。令使臣, 務要精緻, 俾不貽笑。” 又曰: “大君前書契, 入盛櫃子, 須精造。使臣一行下卒, 須着新衣, 幣帛禮段馬外, 三四匹加送, 而毛色願得駮驪紫騮。禮單鷹五十連外, 願加十連, 竝依願許施。燈籠樂器, 今番則獨致祭于嚴有院, 各造一件以送。執政、奉行等十人外, 加錄四人, 竝請贈給。請令廟堂稟處。” 備邊司以爲: “扁榜一款, 依例許施。醫譯加送亦從之。禮單幣帛馬疋加送, 前例所無, 不可聽許。執政、奉行等加錄, 情態難測, 姑令依他磨鍊, 令使臣觀勢善處。” 禮曹又啓: “禮單幣帛馬, 雖不可加送, 恐有病蹇之弊。依乙未年例, 令慶尙道預備二三匹, 臨時換送。執政、奉行中, 若有遞易, 使臣到彼後, 書契改書難便, 職姓名姑勿書填以送。” 從之。

| | | |
|------------------|--|-------------------|
| | <p>(紫驪)3705) 를 얻기 바라고, 예단옹(禮單鷹) 50연(連) 외에 10연을 더 바란다.’ 한 것은 모두 바라는 대로 주도록 허가하소서. 등롱(燈籠)·악기(樂器)는 이번에는 엄유원(嚴有院)에만 치제(致祭)하니, 각각 한 건씩만 만들어 보내야 하겠습니다. 집행(執政)·봉행(奉行) 등 10인 이외에 4인을 더 적어서 아울러 증급(贈給)을 청한 것은 묘당(廟堂)을 시켜 여쭙어서 처치하게 하소서.”</p> <p>하고,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p> <p>“편액[扁榜]의 일은 전례에 따라 시행하도록 허가하고, 의관·역관을 더 보내는 것도 들어 주되, 예단마(禮單馬)·폐백마(幣帛馬)를 더 보내는 것은 전례에 없던 일이므로 들어주어서는 안 되겠고, 집행(執政)·봉행(奉行) 등 더 적은 것은 정태(情態)를 헤아리기 어려우므로 우선 그에 따라 마련하고 사신을 시켜 형세를 보아 선처하게 하소서.”</p> <p>하고, 예조(禮曹)에서 또 아뢰기를,</p> <p>“예단마·폐백마는 더 보낼 수 없더라도 병드는 폐단이 있을는지 모르니, 을미년(3706)의 예(例)에 따라 경상도로 하여금 2, 3필(匹)을 미리 준비하였가 임시하여 바꾸어 보내고, 집행·봉행 가운데에 갈린 사람이 있으면 사신이 저 곳에 이른 뒤에 서계(書契)를 고쳐 쓰기 어려울 것이니, 직성명(職姓名)을 우선 써 넣지 말고 보내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 |
| 숙종 13권, 8년(1682) |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 | ○辛未/引見大臣、備局諸宰。 領議 |

| | | |
|--|---|---|
| <p>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1월 23일(신미) 1번째기사</p> | <p>政)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p> <p>“호포(戶布)는 본디 절목(節目)을 먼저 강구하려 한 것이고 이제 문득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니, 아래에 쟁집(爭執)하는 자가 있더라도 안정시켜야 할 뿐이고 지나치게 희로(喜怒)를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인데, 접매 옥당(玉堂)의 처치(處置)에 대한 비지(批旨)가 이미 뜻밖에 나왔거니와, 어제 또 헌관(憲官)을 특명으로 체차(遞差)하였으니, 참으로 지나칩니다. 위에서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만 타이르고 마셔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반드시 죄주셔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대간(臺諫)이 편리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논하기만 한다면 괜찮겠으나, 도신(道臣)을 논죄(論罪)하는 데 이르러 시비가 이처럼 전도(顛倒)되면 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p> <p>하였다. 이에 앞서 여양 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閔維重)이 남한(南漢)의 수어사(守禦使)를 혁파(革罷)하고 강화(江華)의 예(例)에 따라 유수(留守)를 내기를 청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김수항이 아뢰기를,</p> <p>“산성(山城)의 모든 일은 오로지 수어사에게 속하고, 광주 부윤(廣州府尹)은 간섭하는 것이 없으므로, 전란에 임하여 응변(應變)할 수 없고, 또 경성(京城)에 설치된 군문(軍門)이 너무 많아서 폐단이 적지 않으니, 신의 뜻은 민유중의 의논을 따르고자 합니다.”</p> <p>하고, 민정중(閔鼎重)도 그 말을 옳다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 <p>政金壽恒曰：“戶布本欲先講節目，而今不可遽行。下雖有爭執者，唯宜安靜，不當過示喜怒。頃日玉堂處置，批旨既出意外，昨又特遞憲官，誠爲過當。自上只可論其不然而已，何必罪之？”上曰：“臺諫若只論便否則可，至於論罪道臣，是非顛倒若此則國無可爲之事矣。”先是，驪陽府院君閔維重請罷南漢守禦使，依江華例，出留守。至是，壽恒奏言：“山城凡事，專屬守禦使，廣州府尹無所干攝，臨亂無以應變。且京城所設軍門太多，弊端不少。臣意欲從維重議。”閔鼎重亦是其言，上曰：“守禦之設，粵自仁祖朝，意必有在，不可猝罷。”兵曹判書金錫胄曰：“自昔戰爭之時，何曾定其據守處乎？雍丘令張巡亦臨亂，守睢陽耳。何必預出留守，往駐其城，然後得乎？不可以些少弊端，而遽罷也。”金萬基亦助錫胄之言，上素重錫胄，不從諸大臣言。鼎重曰：“今日本初令致祭，旋又請停，料必有事端。聞，今關白與其兄不相能，使臣之去，不可全然不知。請令譯舌，探問倭館。”壽恒曰：“既不致祭，御筆不當送。”禮曹判書</p> |
|--|---|---|

| | | |
|--|---|--|
| | <p>“수어사를 둔 것은 인조(仁祖) 때부터이고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갑자기 혁파할 수 없다.”</p> <p>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석주(金錫胄)가 말하기를,</p> <p>“예전부터 전쟁할 때에 어떻게 일찍부터 웅거하여 지킬 곳을 정하였겠습니까? 옹구령(雍丘令) 장순(張巡)도 전란에 임하여 수양(睢陽)을 지켰을 뿐입니다. 어찌하여 반드시 유수(留守)를 미리 내어 그 성(城)에 가서 머무르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은 폐단 때문에 문득 혁파할 수는 없습니다.”</p> <p>하고, 김만기(金萬基)도 김석주의 말을 도우니, 임금이 평소에 김석주를 의중(倚重)하였으므로 여러 대신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민정중이 말하기를,</p> <p>“이제 일본(日本)에서 처음에는 치제(致祭)하게 하였다가 곧 또 그만두기를 청하니, 반드시 사단(事端)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듣건대 지금 관백(關白)이 그 형(兄)과 사이가 좋지 않다 하는데, 사신(使臣)이 갈 때에 전혀 몰라서는 안 되겠으니, 역관(譯官)을 시켜 왜관(倭館)에서 알아보게 하소서.”</p> <p>하고, 김수항이 말하기를,</p> <p>“치제하지 않게 되었으니, 어필(御筆)은 보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p> <p>하고, 예조 판서(禮曹判書) 여성제(呂聖齊)가 말하기를,</p> | <p>呂聖齊曰：“樂器亦不當送。”上命探問之。又以從事官申晷有病，命改差，以朴慶後代之。因吏曹判書李翻言，命廟堂抄選州牧可合人。又因金錫胄言，命京圻尤甚邑大同收米一結減二斗，次邑減一斗。壽恒言：“生民休戚，係守宰。李元成之特除樂安郡守，臣等亦以爲不可矣。自上既允臺啓，而復有換差之教，臣竊惑焉。聞，其人不堪莅民，且以功勞言之，靖社功臣亦有終不得守令者矣。”鼎重亦言之，上納之。又因壽恒言，陞大興縣爲郡，以先王胎室在其地故也。</p> |
|--|---|--|

| | | |
|---|---|--|
| | <p>“악기(樂器)도 보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王)이 알아보게 하라고 명하였다. 또 종사관(從事官) 신엽(申翬)이 병이 있기 때문에, 개차(改差)하라고 명하여 박경후(朴慶後)로 갈음하였다. 이조판서(吏曹判書) 이숙(李翹)의 말에 따라 묘당(廟堂)에 명하여 주목(州牧)에 합당한 사람을 뽑게 하였다. 또 김석주의 말에 따라, 경기(京圻)3721)의 가장 기근이 심한 고을에서는 대동미(大同米)를 거둘 때에 1결(結)에서 2두(斗)를 감하고, 그 다음으로 심한 고을에서는 1두를 감하라고 명하였다. 김수항이 말하기를,</p> <p>“백성의 고락은 수령(守令)에게 달려 있으므로, 이원성(李元成)을 특명으로 낙안군수(樂安郡守)에 제수(除授)한 것은 신(臣)들도 옳지 않게 여겼거니와, 위에서 이미 대관(臺官)의 계청(啓請)을 윤택(允)하셨는데, 다시 환차(換差)하라는 분부가 계셨으니, 신은 의혹됩니다. 듣건대 그 사람은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거니와, 또 공로로 말한다면 정사공신(靖社功臣)이라도 끝내 수령이 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p> <p>하고, 민정중도 역시 이것을 말하니, 임금이 받아들였다. 또 김수항의 말에 따라 대흥현(大興縣)을 군(郡)으로 높였는데, 선왕(先王)의 태실(胎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다.</p> |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1월 25일(계유) 6번째기사</p> | <p>비변사(備邊司)에서 공홍감사(公洪監司)의 장문(狀聞)에 따라 호남(湖南)의 대동여미(大同餘米) 5천 석(石)을 본도(本道)에 옮겨 주고, 안흥진(安興鎭)의 군향(軍餉)을 진수 가져다가 진휼(賑恤)에 보태기를 청하였다.</p> | <p>○備邊司因公洪監司狀聞，請以湖南大同餘米五千石，移給本道，而安興鎭軍餉，使盡數取用以補賑。</p> |
| <p>숙종 13권, 8년(1682)</p> |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경연(知經筵) 여성제(呂聖齊)가 아뢰기를,</p> | <p>○御晝講。 知經筵呂聖齊陳前夜入對</p> |

| | | |
|--|--|--|
| <p>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2월 2일(경진) 2번째기사</p> | <p>“전일 밤에 입대(入對)한 신하들이 술을 마시고 예의를 잃었는데, 아래에서는 굳이 사양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취하였고, 위에서는 짐작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내리셨으니, 위아래가 서로 잘못된 것입니다.”</p> <p>하였다.</p> | <p>諸臣飲酒失儀，下不能固辭而過醉；上不能斟酌而過賜，上下交相失也。</p>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2월 3일(신사) 3번째기사</p>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2월 3일(신사) 3번째기사</p> | <p>○以公洪、江原兩道賑事方急，命守令赴道內鄉試。</p>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2월 21일(기해) 4번째기사</p> | <p>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 도(道)의 각 고을에 명하여 기미년(3747) 이전의 갖가지 군포(軍布)·보미(保米) 및 내사(內司)와 여러 각사(各司)의 노비(奴婢)의 신공(身貢) 3748 을 가을까지 기한을 물려서 받게 하였다.</p> | <p>○以年凶，命諸道各邑己未以上各色軍布、保米及內司、諸各司奴婢身貢，待秋退捧。</p>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2월 21일(기해) 6번째기사</p> | <p>양서(兩西)에 잇따라 흉년이 들고 노사(虜使) 3750 가 거둬 나오기 때문에, 관향 모미(管餉耗米)를 평안도에 2천 석(石), 황해도에 1천 석 내어 주라고 명하였다.</p> | <p>○以兩西荐饑、虜使疊到，命出給管餉耗米，平安道二千石，黃海道一千石</p>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2월 25일(계묘) 2번째기사</p> | <p>영운령(靈雲令) 이의천(李義天)과 운흥수(雲興守) 이절(李稅)이 덕사(德寺)에서 창기(娼妓)를 끼고 술취해서 소란하였는데, 덕사는 덕흥 대원군(德興大院君)의 재궁(齋宮)이다. 종부시(宗簿寺)에서 아뢰니, 파직하라고 명하였다.</p> | <p>○靈雲令義天、雲興守稅，挾娼醉挈于德寺。寺即德興大院君齋宮也。宗簿寺以聞，命罷職。</p>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2월 27일(을사) 1번째기사</p> | <p>청(淸)나라 사신이 돌아갔다. 김수항(金壽恒)이 청대(淸對)하여, 반송사(伴送使) 김덕원(金德遠)을 그대로 다음에 올 칙사(勅使)의 원접사(遠接使)로 차출하기를 청하였다. 이때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유상운(柳尙運)이 사은사(謝恩使)에 제배(除拜)되었는데, 김수항이 또 평안 병사(平安兵使) 이세화(李世華)를</p> | <p>○乙巳/淸使歸。金壽恒淸對，請以伴送使金德遠，仍差後勅遠接使。時，平安觀察使柳尙運拜謝恩使，壽恒又請以平安兵使李世華移拜監司，上許之。</p> |

| | | |
|---|---|--|
| | <p>世華)를 감사(監司)로 옮겨 제배하기를 청하니, 임금(李)이 윤허하였다. 이상진(李尙眞)이 차자(筭子)를 올려 유상운이 서방의 일에 익숙함을 아뢰고 사은사의 직임을 갈아서 그대로 맡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미 병사(兵使)로 갈음하게 하였다 하여 윤허하지 않았다. 김수항이 말하기를,</p> <p>“송시열(宋時烈)이 월름(月廩)을 받지 않고 달마다 받는 것을 산사(山寺)에 쌓아둔다 합니다.”</p> <p>하였다. 대개 여느 때에 특별히 술과 고기를 내리는 것은 내리는 뜻에 맞으나, 달마다 평소의 녹봉(祿俸)을 내리는 것은 그 뜻에 반드시 불안하므로 그렇게 하였을 것인데, 임금이 말하기를,</p> <p>“다음에 유념하여 처치하겠다.”</p> <p>하였다. 김수항이 또 말하기를,</p> <p>“추고(推考)받는 사람은 함답(緘答)하기 전에는 으레 감히 상소할 수 없으므로, 선조(先朝)에는 추고받는 자가 상소하여 변명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요즘 점점 해이해지니, 신칙(申飭)시켜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명하여 추고받고 함답(緘答)하기 전에 올린 소장(疏章)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p> | <p>李尙眞筭陳尙運練熟西事， 請遞使任， 而仍任之， 上以爲既令兵使代之， 不許。 壽恒言：“宋時烈不受月稟， 每朔所受， 積置山寺云。 概常時別賜酒肉， 則有合於周之之義， 而月賜常祿， 則其意必不安， 故如是矣。” 上曰：“後當留念處之。” 壽恒又言：“被推人緘答前， 例不敢陳疏， 故先朝曾有被推者疏辨之禁。 近漸解弛， 宜令申飭。” 上命被推未緘前疏章， 毋得捧入。</p>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2월 29일(정미)</p> |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사(知事) 김석주(金錫胄)가 청하기를,</p> <p>“강화(江華)의 각 진보(鎭堡)의 관원 교지(官員教旨) 가운데에는 월곳이 진관</p> | <p>○丁未/御晝講。 知事金錫胄請江華各鎭堡官員教旨中， 勿以月串鎭管書之， 而改以德浦爲主鎭， 諸鎭皆屬之永</p> |

| | | |
|--------------|--|---|
| <p>1번째기사</p> | <p>[月串鎭管]이라고 쓰지 말고, 덕포(德浦)를 주진(主鎭)으로 고쳐서 여러 진(鎭)을 다 여기에 붙이고, 영종(永宗)·안흥(安興)은 이제 보장(保障)의 중지(重地)가 되었으므로, 의례 독진(獨鎭)을 만들어 진관(鎭管)의 호칭을 없애야 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김석주가 또 말하기를,</p> <p>“근래 군역(軍役)에 충정(充定)된 자 중에 선현(先賢)의 자손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자가 많습니다. 안(安)을 성(姓)으로 하는 자는 다 안유(安裕)의 자손이라 하고, 한(韓)을 성으로 하는 자는 다 기자(箕子)의 후예(後裔)라 하여 거짓말을 한 자취를 엄폐할 수 없는 자가 있으니, 이 뒤로는 기자(箕子)의 자손으로는 선우씨(鮮于氏)만을 정역(定役)하지 말도록 허가하고, 안유의 후예 가운데에서 제사를 받들고 무덤을 수호하는 자 외에는 면역(免役)을 허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김석주가 말하기를,</p> <p>“상주(尙州)의 고(故) 진선(進善) 신석번(申碩蕃) 형제는 모두 행의(行誼)로 칭찬 받는데, 을묘년(3753) 봄에 신석번이 나이 여든이기 때문에 당상(堂上)에 올랐으나, 교지(教旨)가 도착하기 전에 문득 먼저 죽었으니, 이제 본품(本品)에 상당한 실직(實職)으로 특별히 증직(贈職)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고부(古阜)·흥해(興海) 두 고을은 문관(文官)·무관(武官)을 번갈아 차임(差任)하라고 명하였는데, 민유중(閔維重)의 말에 따른 것이었다. 또 여러 신하의 말에 따라 의관(醫官)에게 명하여 약을 가지고 가</p> | <p>宗。 安興今爲保障重地， 例作獨鎭， 宜去鎭管號， 上從之。 錫胄又言：“近來充定軍役者， 多有冒稱先賢子孫， 以安爲姓者， 皆稱安裕子孫； 以韓爲姓者， 皆曰箕子後裔， 冒僞之迹， 有不可掩者。 今後箕子子孫， 則只許鮮于氏勿爲定役；安裕後裔中， 奉祀守塚者外， 宜勿許免。” 上許之。 錫胄曰：“尙州故進善申碩蕃兄弟， 俱以行誼見稱。 乙卯春， 碩蕃以年八十陞堂上， 而教旨未到， 遽先身死。 今以本品相當實職， 特贈似好。” 上從之。 命古阜、興海兩邑以文武交差， 從閔維重之言也。 又因諸臣言， 命醫官賣藥物， 往護宋時烈病。 賜故相臣洪命夏、李行遠妻紬布米豆魚錯。 時， 大臣筵白， 兩臣俱清白， 身後家事益旁落， 妻孥不免飢寒， 故有是命。</p> |
|--------------|--|---|

| | | |
|---|---|---|
| | <p>서 송시열(宋時烈)의 병을 구호하게 하였다. 고(故) 상신(相臣) 홍명하(洪命夏)·이행원(李行遠)의 아내에게 명주[紬]·베[布]·쌀[米]·콩[豆]·물고기 따위를 내렸는데, 이때 대신(大臣)이 경연(經筵)에서 ‘두 신하가 모두 청백하였으므로, 죽은 뒤에 가사(家事)가 더욱 어려워져서 처자(妻子)가 굶주림과 추위를 면하지 못한다’고 아뢰었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다.</p> |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3월 2일(경술) 2번째기사</p> | <p>문안사(問安使)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이 의주(義州)에 이르러 양서(兩西)에서 칙수(勅需)를 장만하기 어렵다 하여, 관항 모미(管餉耗米)를 제급(題給)3754 하여 이를 밀천으로 삼게 할 것을 청하였는데, 비변사(備邊司)에서 청하기를,</p> <p>“해서(海西)에 모미(耗米) 5백 석을 더 주고, 관서(關西)에 있는 요군포(遼軍布)를 양서(兩西)에 나누어 주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 <p>○問安使左議政閔鼎重到義州，以兩西勅需難措，請題給管餉耗米以資之。備邊司請加給耗米五百石于海西，以關西所在遼軍布分給兩西，上從之。</p>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3월 2일(경술) 3번째기사</p> | <p>주청 겸 동지사(奏請兼冬至使)의 선래 장계(先來狀啓)3755)가 들어왔는데, 별단(別單)에 대략 이르기를,</p> <p>“예부 필첩식(禮部筆帖式) 오응봉(吳應鵬)이 본부(本部)의 청시랑(淸侍郎) 액성격(額星格)의 뜻을 와서 전하기를, ‘그대 나라의 주청 방물(奏請方物)을 장차 황제에게 진달(陳達)하려 하였으나, 도로 돌려보내어 왔다. 방물(方物) 1종(綜)을 예부(禮部)의 당상(堂上)에게 주도록 허락하는 것이 관찮겠다.’ 하기에, 신(臣)들이 허락하지 않았더니, 오응봉이 또 말하기를, ‘책봉(冊封)을 청하는 주본(奏本) 가운데에 책립(冊立)이라는 두 자(字)가 있는 것이 매우 예(禮)에 맞지 않으므로, 주본이 본부에 내려오는 날에 당상이 아뢰어 탄핵하기로 결의(決意)하였다……’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공갈하여 뇌물을 요구하는 밀거리로</p> | <p>○奏請兼冬至使先來狀啓入來，別單略曰：</p> <p>禮部筆帖式吳應鵬以本部淸侍郎額星格之意來言：“爾國奏請方物，將欲陳達于皇帝，還爲發回。方物一綜，許給于禮部堂上爲可云。”臣等不許。吳應鵬又言：“請封奏本中，有冊立二字，大不合禮。奏本下部之日，堂上決意題參。”云云。欲以此爲恐喝索賂之地，臣等言：“甲寅奏請時，亦用</p> |

| | | |
|--|---|--|
| | <p>삼으려 하기에, 신들이 말하기를, ‘갑인년(3756)의 주청 때에도 책립(冊立)이라는 두 자(字)를 썼으나 죄받은 일이 없었다.’ 하니, 오응봉이 말하기를, ‘갑인년의 너희 나라 문서(文書)가 지금 본부(本部)에 있는데 그 두 자(字)가 없다.’ 하였는데, 신들이 명백하게 가리켜 증거를 달 문서가 없으므로 역관(譯官)들을 시켜 뇌물을 줄 뜻을 던지시 보였더니, 오응봉이 또 액성격(額星格)의 뜻을 와서 전하기를, ‘2천 금(金)이 아니면 안 된다.’ 하기에, 역관들을 시켜 여러 가지로 간청하여 차차 액수를 줄여 8백 50금(金)을 써서 드디어 멈출 수 있었습니다. 예부(禮部)의 제본(題本)을 얻어 보니, ‘갑인년 왕후(王后)의 봉작을 청할 때에는 예물(禮物)이 없었으므로 이번 방물은 여기에 온 사신에게 도로 줍니다.’ 하였습니 다. 4종(綜)의 방물을 실어 나르는 샅이 3백 여 금(金)이나 될 것이므로 관향곡(管餉穀)을 팔아 장만한 은(銀)을 옮겨서 채웠 습니다.”</p> <p>하고, 또 말하기를,</p> <p>“북경(北京)은 운남(雲南)·귀주(貴州)가 평정된 뒤부터 위아래가 서로 경하하 여 문득 태평을 즐기는 꼴이 되니, 병란이 일어난 뒤로 감손(減損)하던 일을 모두 예전대로 회복하고, 누로(樓櫓)·대사(臺榭)도 수리하라는 영이 있었습니 다. 이번에 심양(瀋陽)으로 행순(行巡)한 것은 능침(陵寢)에 가 뵈는 것 외에 울랄(兀剌) 지방에서 대렵(大獵)하려는 것이라 합니다.”</p> <p>하고, 또 말하기를,</p> <p>“유구국(琉球國) 사신(使臣)이 바야흐로 회동관(會同館)에 우거할 때 신 등이 정금(鄭錦)의 사정을 알고자 하여 역관(譯官) 김희문(金喜門)으로 하여금 여러</p> | <p>冊立二字， 無見罪之事。” 應鵬言：“甲寅年爾國文書， 時在本部， 而無此二字。” 臣等以無明白指證文書， 使譯輩微示給賂之意。 應鵬又以額星格之意來言：“非二千金則不可。” 使譯輩多般懇乞， 次次減數， 用八百五十金， 遂得停止。 得見禮部題本， 則甲寅王后請封時， 曾無禮物， 今此方物， 還付來使云。 四綜方物載運之價， 將至三百餘金， 以管餉買辦銀， 推移充補。</p> <p>又曰：</p> <p>北京自雲、貴平定之後， 上下相慶， 遽作豐亨豫大之態， 兵興後裁損之事， 一併復舊， 樓櫓臺榭又有修治之令。 今此瀋陽之行， 展省陵寢外， 欲爲大獵于兀刺地方云。</p> <p>又曰：</p> <p>琉球國使臣， 方寓於會同館。 臣等欲知鄭錦事情， 使譯官金喜門多般探問， 喜門與琉球使通事福建人謝宣， 書札往復， 辭說頗多， 而鄭錦則丁巳年間， 大</p> |
|--|---|--|

| | | |
|--|--|--|
| | <p>가지를 탐문하게 하였더니, 김희문과 유구사(琉球使)의 통사(通事)인 복건(福建) 사람 사선(謝宣)이 서찰(書札)을 왕복하여 말한 것이 자못 많았으니, 정금(鄭錦)은 정사년(3757)에 대장군(大將軍) 화석강친왕(和碩康親王)이 군사를 거느리고 민(閩)에 들어가 오룡강(烏龍江)에서 그와 크게 싸웠는데, 정금이 크게 패하여 죽은 군졸이 20여 만이었고, 남은 수천여 인만이 몰래 달아나海道(海道)로 들어갔다 합니다. 섬 이름은 곧 태만(台灣), 일명 동녕(東寧)이며, 복건(福建)에서 동남으로 5천여 리 되는 곳에 있는데, 지세는 두 산이 성문(城門)처럼 마주 솟아 있고, 그 가운데에 돌다리[石橋] 하나가 있으며, 그 안으로 들어가면 18일정(日程)의 육로(陸路)가 있고, 땅이 메말라서 물산(物産)이 넉넉하지 못하고, 또 사는 백성도 매우 적다 합니다. 정금의 군사는 다 처자가 없으므로 부녀 한사람의 값이 수백 금(金)이나 되고, 섬 사람의 복색은 다 명(明)나라의 제도를 따른다 합니다. 전에 정금이 복건 총독(福建總督)에게 답한 글에, ‘본도(本島)는 바람을 받은 배가 남으로는 고료(高遼)까지 가고 북으로는 동영(東瀛)까지 가니, 어느 곳인들 둔소(屯所)를 개척할 수 없으며, 어느 곳인들 군사를 모을 수 없겠는가? 선왕(先王)부터 나에 이르기까지 쟁집(爭執)하는 것은 삭발(削髮) 두 자(字)뿐인데, 태만(台灣)은 바다 밖에 멀리 있어 중국의 판도(版圖)에 들어가지 않고, 섬 안은 백성이 유통하고 상고(商賈)가 모여들며 의관(衣冠)이 훌륭한 것이 중국보다 못하지 않으니, 태왕(太王)이 빈(邠)에 천도(遷都)한 것에 비하지는 못하겠지만, 백성을 늘리고 재물을 불리고 가르치면 또한 만세에 망하지 않을 기업(基業)을 세울 수 있다. 이것은 다 그대로 사자(使者)가 눈으로 본 것인데, 내가 어찌하여 작위(爵位)를 생각하겠으며, 어찌하여 강토(疆土)를 탐내겠기에 이 삭발하는 일을 감수하겠는가?’ 하였다 합니다. 이 글은 정금을 따라 섬에 들어갔던 명(明)나라 유신(遺臣)의 손에서 나왔는데, 이따금 있는 서찰이 빈빈(彬彬)3758) 하여 볼 만하다 합니다.”</p> | <p>將軍和碩康親王率師入閩，與之大戰于烏龍江，鄭錦大敗，士卒死者二十餘萬，只剩得數千餘人，竄入海島。島名即台灣，一名東寧，在福建東南五千餘里，地勢兩山對峙如城門，中有石橋一坐，進入其內，則有十八日程陸路，土地瘠薄，物產不敷，且居民尠少，鄭錦之兵皆無妻子，婦女一人之價，至於數百金。島中人服色，悉從明制。前者鄭錦答福建總督書云：“本島風帆所指，南極高遼，北止東瀛，何處不可以開屯，何地不可以聚兵乎？自先王以至不佞，所爭者只是削髮二字。台灣遠在海外，不入於中國版圖，島中人民流通，商賈輻奏，衣冠之盛，不輸於中土。雖未能遽比於太王之遷邠，而生聚教訓，亦可以樹萬世不磨之基業。此皆貴价所目覩者，不佞何慕乎爵位，何貪乎疆土，而甘爲此削髮之舉哉？”此書出於明朝遺臣，隨鄭錦入島者之手，往往書札，彬彬可觀云。</p> |
|--|--|--|

| | | |
|--|--|--|
| | 하였다. | |
| 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3월 6일(갑인) 2번째기사 | 영남(嶺南)은 기근이 심하여 전세(田稅)를 바치기 어려우므로, 도신(道臣)의 장청(狀請)에 따라 베[布]로 대납하게 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 ○以嶺南飢甚，田稅難奉，囚道臣狀請，許令以布代納。 |
| 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3월 10일(무오) 1번째기사 | 영창군(瀛昌君) 이침(李沈) 등이 노사(虜使)에게 별연(別宴)을 행하려 하였으나, 노사가 병을 핑계하여 나오지 않고, 찬반(饌盤)만을 받고는 반드시 국왕을 만나기를 바라므로, 도감(都監)에서 임금의 기후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친히 접대하여 보낼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튿날 내전(內殿)에서 음식을 보내어 후대(厚待)하는 뜻을 보였는데, 김수항(金壽恒)의 말에 따른 것이었다. | ○戊午/遣瀛昌君沉等，將行別宴于虜使，虜使稱病不出，只納饌盤，必要更接國王。都監以上候若一分減歇，當親接以送爲答。翌日自內殿送饌，以示厚待之意，從金壽恒言也。 |
| 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3월 14일(임술) 1번째기사 | 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3월 14일(임술) 1번째기사 | ○壬戌/平壤府城中火，延燒民家三百四十四戶。命行恤典，以管餉米四百石分賑，限一年減役 |
| 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3월 24일(임신) 2번째기사 | 함경북도(咸鏡北道)에서 기근을 고하고 곡식을 옮겨 주기를 청하니, 평안도 영원(寧遠)·양덕(陽德)·맹산(孟山) 등의 곡식을 함경남도로 옮겨 주고 남도의 곡식을 북도로 옮겨 주었다. | ○咸鏡北道告饑，請移粟，以平安道寧遠、陽德、孟山等穀，移給咸鏡南道，南道穀移給北道。 |
| 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4월 27일(갑진) 1번째기사 |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 “군제(軍制)를 변통하는 일은 이제 여쭙어 청해야 하겠는데, 신의 앞은 소견은 전에 이미 대략 아뢰었으니, 좌상(左相)에게 하문하소서.” 하자,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이 말하기를, | ○甲辰/引見大臣、備局諸臣。領議政金壽恒曰：“軍制變通事，今當稟定，而臣之淺見，前既略陳，請下詢于左相。”左議政閔鼎重曰：“訓局軍兵，徒費廩料，與市人無別，不可爲緩急之用。故先王爲此之慮，設立訓局別隊，欲爲漸次加數，上下輪番，一如御營軍 |

| | | |
|--|--|---|
| | <p>“훈국(訓局)의 군병(軍兵)은 누료(廩料)를 소비할 뿐이고, 시정인(市井人)과 다를 것이 없어서 급할 때에 쓸 수 없으므로, 선왕(先王)께서 이 때문에 염려하여 훈국 별대(訓局別隊)를 설립(設立)하고 점차 그 액수를 늘려 어영청(御營廳) 군사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상번(上番)·하번(下番)이 번갈게 하고는 그 원군(元軍)을 폐지하여 향식(餉食)의 폐단을 줄이려 하셨으나 미처 변통하지 못하였는데, 만약에 정초 별대(精抄別隊)를 합하여 한 군려(軍旅)를 만든다면 훈국(訓局)의 군제(軍制)는 끝내 변통할 희망이 없을 것이니, 어찌 선조(先朝)의 본의와 크게 서로 어그러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첫째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군문(軍門)이 매우 많아서 호령이 한결같지 않으므로 식자(識者)가 본래 이를 근심하였는데, 또 하나의 큰 군문을 설치하면 폐단을 끼치는 것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불편한 것입니다. 군사를 거느리는 직임은 마땅한 사람을 얻기 어렵거니와, 금위영(禁衛營)이라 칭하고 나면 본병(本兵)을 시켜 주관(主管)해야 할 것인데, 본병의 장관은 그 문지(門地)와 명망을 가릴 뿐이므로 반드시 군무(軍務)를 잘 아는 사람이 못될 것이고, 또 자주 갈릴 걱정도 있으니, 더욱 장수를 임명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세째 불편한 것입니다. 신(臣)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크게 변통하여 선조(先祖)의 본의에 따르는 것만 못하겠습니다.”</p> <p>하니, 김수항이 말하기를,</p> <p>“한 도(道)에 호포(戶布)를 시행하는 법은 아직도 근거 없는 의논에 막혀 있으므로, 오늘날의 나라의 기강과 백성의 심정으로는 그 제도를 크게 바꾸기 어려울 듯하니, 크게 변통하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선 해조(該曹)의 절목(節目)에 따라 군사의 양식을 절약하는 여지로 삼으면 충분히[十分] 진선(盡</p> | <p>之制，罷其元軍，以省餉食之弊，而未及變通矣。 若以精抄、別隊，合爲一軍，則訓局軍制，終無變通之望。 豈不與先朝本意，大相謬乎？ 此一不便也。 我國軍門太多，號令不一，識者固已憂之，而又置一大軍門，貽弊必多，此二不便也。 將兵之任，得人爲難。 既稱禁衛營之後，當使本兵主管，而本兵之長，只擇其地望，未必是曉解軍務之人。 且有數遞之患，尤非任將之道，此三不便也。 以臣妄慮，莫如大變通，以遵先朝本意也。” 壽恒曰：“一道戶布之法，尙爲浮議所沮，以今日國綱、人心，恐難大變其制。 與其不能大變通，姑依該曹節目，以爲節縮軍食之地，則雖非十分盡善，可救目前之急。 而至於軍門太多，將才難得等語，誠如鼎重所達矣。” 兵曹判書金錫胄曰：“先朝設立別隊之本意，臣亦知之。 苟能盡易長征，作爲更番，自食保米，不費國廩，則可謂計之善者。 然而以今訓局形勢論之，則既不可猝變；以今朝廷論議言之，則又欲見其速效，不得不爲此小變之策耳。 訓局元軍之減去者，七百有奇，則歲省料米六</p> |
|--|--|---|

| | | |
|--|--|---|
| | <p>善)한 것은 아니라도 눈앞의 급한 것은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고, 군문(軍門)이 매우 많다는 말과 장재(將才)를 얻기 어렵다는 말 등은 참으로 민정중(閔鼎重)이 아뢴 바와 같습니다.”</p> <p>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석주(金錫胄)가 말하기를,</p> <p>“선조(先朝)에서 별대(別隊)를 설립한 본의를 신도 알거니와, 참으로 장정(長征)을 죄다 바꾸어 경번(更番)으로 만들어 스스로 보미(保米)를 먹고 국廩(國廩)을 소비하지 않을 수 있다면 좋은 계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훈국(訓局)의 형세로 말하면 이미 문득 바꿀 수 없을 것이고, 지금의 조정(朝廷)의 논의로 말하면 또한 그 빠른 보람을 보려 할 것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금 변통하는 계책을 만든 것입니다. 훈국(訓局)의 원군(元軍)에서 줄어들 자가 7백 남짓이라면, 해마다 줄어들 요미(料米) 6천 7백 80여 석(石)을 호조(戶曹)에 도로 붙여서 삼수량(三手糧)3780) 이 모자랄 걱정을 없앨 수 있을 것이고, 해마다 줄어들 의포(衣布) 1백 27동(同)이 이제 본국(本局)의 여분의 베[布]가 되어 호조(戶曹)에서 중순(中旬)의 상격(賞格)으로 쓰는 것을 같음할 수 있을 것이며, 병조(兵曹)에 도로 붙일 정초군(精抄軍)의 보미 5천 8백 70여 석(石)에서 받아들일 베가 2백 35동 쯤 되는데 이것도 경비에 보태어 쓸 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보람을 당장 볼 수 있으니, 참으로 전혀 변통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훈국(訓局)의 군줄을 어찌하여 또 천수(千數)를 줄이지 않느냐고 하나, 신이 전·후 상대(廂隊)에 쓸 자와 안팎의 직숙(直宿)에 종사할 자를 헤아려 보니, 대저 5천의 액수에서 다시 줄이면 참으로 그 모양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또 신이 장정(長征)을 문득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개 경번(更番)의 제도는 으레 두 달을 기한으로 삼으므로 한 해 동안에 6번을 세워야 하는데, 번(番)마다 5천은 채워야 하므로 5천</p> | <p>千七百八十餘石，還于戶曹，可無三手糧不足之患。歲省衣布一百二十七同，今爲本局羨布，可代戶曹中旬賞格之費，精抄保還屬兵曹者，五千八百七十餘石，所捧布可二百三十五同，亦足補用於經費。此等小效可以立見，實有愈於全不變通矣。或言訓局之卒，何不又減千數云，而臣較量前後廂隊之用及內外直宿之役，若夫更減於五千之數，則實難成其貌樣。且臣以長征爲不可猝變者，蓋更番之制，例以兩朔爲限，一年之間，當立六番，每番之軍，當滿五千。五六三十，合爲三萬，而三萬戶首之保，又當爲九萬，三與九合，都數爲十二萬矣。以卽今閑丁之難得，從何搜出十二萬之數乎？砲手之類，生長京輦，人物伶俐，裝束鮮明，常時使用，有勝於外方之軍。臣以爲，訓局元軍終不可盡罷也。” 上遍問於諸臣，禮曹判書南龍翼、左參贊呂聖齊對以不知便否。判尹鄭載嵩、吏曹判書李翹、都承旨李師命右錫胄議，獨刑曹判書李翹以爲不可。上命依該曹節目行之。壽恒曰：“在前精抄廳別設時，有都提調一員；訓局設立之初，亦</p> |
|--|--|---|

| | | |
|--|--|---|
| | <p>에 6을 곱하면 합하여 3만이 되고, 3만 호수(戶首)의 보인(保人)이 또 9만이 돼야 하니, 3만과 9만을 도합한 액수는 12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한정(閑丁)을 얻기 어려운데 어디에서 12만의 수를 찾아 내겠습니까? 포수(砲手)의 부류는 서울에서 생장(生長)하여 인물이 영리하고 장속(裝束)이 선명하므로 상시(常時)에 사용하기에 외방(外方)의 군사보다 나으니, 신은 훈국(訓局)의 원군(元軍)은 끝내 죄다 폐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신하들에게 두루 물었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남용익(南龍翼)·좌참찬(左參贊) 여성제(呂聖齊)는 편리한지 편리하지 않은지를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판윤(判尹) 정재송(鄭載嵩)·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숙(李勳)·도승지(都承旨) 이사명(李師命)은 김석주(金錫胄)의 의논에 편들고, 형조 판서(刑曹判書) 이익(李翊)만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임금이 해조(該曹)의 절목(節目)에 따라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김수항이 말하기를,</p> <p>“전에는 정초청(精抄廳)을 따로 설치할 때에 도제조(都提調) 1원(員)이 있었고, 훈국(訓局)을 설립하던 처음에도 도제조와 군색 제조(軍色提調)가 있었습니다. 이번 금위영(禁衛營)의 군사를 거느리는 직임을 병판(兵判)이 맡게 하더라도, 다른 제조(提調)를 따로 내서 구관(句管)시켜야 할 듯합니다.”</p> <p>하였는데, 김석주(金錫胄)가 말하기를,</p> <p>“본병(本兵)의 구례(舊例)로는, 모든 군정(軍政)의 호령에 관계되는 일을 모두 판서(判書)에게서 나오고 버금가는 관원은 간여하지 못하는데, 또 이 일까지 겸하면 일의 권한이 너무 크므로 나누어 맡는 것이 있게 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니, 도제조(都提調)와 제조를 모두 차출해야 하겠습니까.”</p> | <p>有都提調及軍色提調。今此禁衛營將兵之任，雖使兵判爲之，而似當別出他提調，使之句管矣。” 錫胄曰：“本兵舊例，凡係戎政號令之事，俱出於判書，而佐貳之官不得與焉。若又兼此事，則事權太重，不可不使有所分，都提調及提調，竝爲差下可矣。” 上從之。 壽恒曰：“判府事金壽興筭，啓下備局矣。” 仍以筭中所建白者，逐條論難，或施或不施。 至崇獎儒賢一款，壽恒曰：“尹拯、朴世采、李翔等節操卓異，學識高明，而至於李翔，自孝廟朝已被知遇。不幸頃者，竄謫遠地，歷受險苦，年且衰暮。自上特加軫念，使此三人者，竝蒙超擢之典，則亦聖上尊賢崇儒之道也。” 上曰：“李敏叙曾達此意，而予於多事中未遑矣。卿言又如此，後政當體念焉。” 壽恒曰：“高城郡守趙持謙文才學識，罕有其比。雖以一時議論之失，出補外邑，而固不可久廢。且讀書堂抄啓，已有成命，卽今可合之人，恐無過於持謙者。但方在外任，則例不得抄啓，合有變通之道矣。” 上命遞付京職。 鼎重曰：“林泳文學，流輩所推，而近日</p> |
|--|--|---|

| | | |
|--|--|---|
| | <p>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 김수항이 말하기를,</p> <p>“판부사(判府事) 김수흥(金壽興)의 차자(劄子)가 비국(備局)에 계하(啓下)되었습니다.”</p> <p>하고, 이어서 차자 가운데에 건백(建白)한 것을 조목에 따라 논란하여 혹 시행하기로 하고 시행하지 않기로 하기도 하였다. 유현(儒賢)을 승장(崇獎)하는 일에 있어서는 김수항이 말하기를,</p> <p>“윤증(尹拯)·박세채(朴世采)·이상(李翔) 등은 절조(節操)가 뛰어나고 학식이 고명(高明)한데, 이상(李翔)으로 말하면 효종(孝宗) 때부터 이미 지우(知遇)를 받았으나, 불행히도 접때 먼 곳으로 귀양가서 험난한 일을 겪고 나이도 늙었으니, 위에서 특별히 염려하여 이 세 사람이 모두 초탁(超擢)하는 은전(恩典)을 받게 하시면, 또한 성상께서 어진 사람을 존중하고 선비를 숭상하는 도리가 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민서(李敏敘)가 전에 이 뜻을 아뢰었는데, 내가 일이 많은 가운데에 겨를이 없었다. 경(卿)의 말이 또 이러하니, 다음 정사(政事) 때에 체념(體念)하겠다.”</p> <p>하였다. 김수항이 말하기를,</p> | <p>政目間，久未蒙天點，下情莫不疑惑矣。”壽恒亦言：“多識古事，莫如泳。若置經幄，則必有所補。”上然之。壽恒曰：“曾因江華留守李選書啓，丁丑死節人沈說、李時稷贈諡事有命，而兩臣贈職或參判、或承旨。依宋象賢例，先贈正二品職，贈諡宜矣。”上可之。禮曹判書南龍翼曰：“聖廟陞黜之舉，既已涓吉。陞黜事由，先告于大成殿，十位黜版，則埋安於殿後淨潔處。李珥、成渾祠堂，各在鄉家，依前例遣官賜祭，教書等事，知委舉行。”上從之。壽恒曰：“東西庶配享中，蔡沈在於眞德秀之下；胡安國在於張栻之下，位次先後，未免倒置，宜竝釐正矣。”上曰：“可。”鼎重曰：“康津定配罪人申命圭有九十老母，病篤垂絕，而命圭罪名甚重，雖不可輕議放釋，而孝理之下，許令給由歸訣，似合於《大典後續錄》：‘入居罪人有父母篤疾者，特許除往還給由一朔。’之義矣。”上命一月給暇。錫胄曰：“別軍職抄擇，終有所難便者，未敢奉命矣。”上命勿抄。</p> |
|--|--|---|

| | | |
|--|--|--|
| | <p>“고성 군수(高城郡守) 조지겸(趙持謙)은 문재(文才)·학식(學識)이 그와 견줄 만한 자가 드무니, 한때 의논의 잘못 때문에 외방(外方) 고을에 보임(補任)되기는 하였으나, 진실로 오래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또 독서당(讀書堂)에 보낼 사람을 뽑아 아뢰라고 이미 명하셨는데, 지금 합당한 사람으로는 조지겸보다 나은 자가 없을 듯 합니다마는, 바야흐로 외임(外任)에 있으면 으레 뽑아 아릴 수 없으니, 변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갈아서 경직(京職)을 주라고 명하였다. 민정중(閔鼎重)이 말하기를,</p> <p>“임영(林泳)은 문학(文學)으로 동배[流輩]에게 추앙받는데, 근일 정사의 계목(啓目)에서는 오래 성상의 낙점(落點)을 받지 못하니, 아랫사람들의 심정이 모두 의혹 됩니다.”</p> <p>하자, 김수항도 말하기를,</p> <p>“고사(古事)를 많이 아는 것으로는 임영(林泳) 만한 사람이 없으니, 경악(經幄)에 두면 반드시 보탬이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김수항이 말하기를,</p> <p>“일찍이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선(李選)의 서계(書啓)에 따라 정축년(3781)에 사절(死節)한 사람 심현(沈愼)·이시직(李時稷)에게 증시(贈諡)할 것을 명하셨는데, 두 신하의 증직(贈職)은 참판(參判) 또는 승지(承旨)로 하여 송상현(宋象賢)의 전례에 따라 먼저 정2품(正二品)의 벼슬을 주고 증시하는 것이 마</p> | |
|--|--|--|

| | | |
|--|--|--|
| | <p>땅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남용익(南龍翼)이 말하기를,</p> <p>“성묘(聖廟)에 승배(陞配)하고 출향(黜享)하는 일은 이미 길일(吉日)을 가렸으니, 승배하고 출향하는 까닭을 먼저 대성전(大成殿)에 고하고, 10위(位)의 위판(位版)을 내어 보내면 전후(殿後)의 깨끗한 곳에 묻어야 할 것입니다. 이이(李珣)·성혼(成渾)의 사당(祠堂)이 각각 고향 집에 있으니, 전례(前例)에 따라 관원을 보내어 사제(賜祭)하고, 교서(敎書) 등의 일을 알리어 거행하게 해야 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김수항이 말하기를,</p> <p>“동무(東廡)·서무(西廡)에 배향(配享)된 사람 가운데에서 채침(蔡沈)은 진덕수(眞德秀) 아래에 있고, 호안국(胡安國)은 장식(張栻)의 아래에 있으므로,位次(位次)의 앞뒤가 거꾸로 놓인 것을 면하지 못하니, 모두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그리하라.”</p> <p>하였다. 민정중이 말하기를,</p> | |
|--|--|--|

| | | |
|---|--|---|
| | <p>“강진(康津)에 정배(定配)된 죄인 신명규(申命圭)는 아흔이 된 늙은 어미가 병이 위독하여 죽게 되었는데, 신명규의 죄명이 매우 중하므로 풀어 줄 것을 가며이 의논할 수는 없으나, 효도를 행하시는 성상 밑에서는 말미를 주어 돌아가서 작별하게 하는 것이 《대전속록(大典續錄)》에 ‘입거 죄인(入居罪人) 중에서 병이 위독한 부모가 있는 자에게는 가고 오는 날짜를 제외하고 한 달의 말미를 주는 것을 특별히 허가한다.’ 한 의리에 맞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의 한 달의 말미를 주라고 명하였다. 김석주가 말하기를,</p> <p>“별군직(別軍職)을 뽑는 것은 끝내 어려운 것이 있어서 감히 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뽑지 말라고 명하였다.</p> |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5월 26일(계유) 1번째기사</p> | <p>임금이 가뭄으로 인하여 정전(正殿)을 피하고 감선(減膳)3851) 하였으며 음악을 정지하였다. 인하여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이르기,</p> <p>“소자(小子)는 보잘것 없는 한 몸으로서 외람되게 어렵고 큰 왕통(王統)을 지키며 백성의 위치를 맡고 있으니, 밤낮으로 두려워하면서 편안하게 거처할 겨를없이 조종(祖宗)의 위업(偉業)을 떨어뜨릴까 염려하고 있다. 단지 재주가 거칠고 덕(德)이 적은 것으로 말마암아 미미한 정성이 천심(天心)에 감동하지 못하고 실제 혜택이 백성들에게 충분하지 않아서, 홍수와 가뭄, 바람과 서리의 재해(災害) 및 사람이 요사하고 물체의 괴이한 변고(變故)가 달마다 일어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극도에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끝이 없는 것은 예전에 없었던 바이다. 절후가 여름철의 성장할 때에 이르렀는데도 한 달이 지나도록 항상 가물어서 추수(秋收)의 희망이 끊어져서 천명(天命)이 가까이 이르</p> | <p>○癸酉/上以旱災，避正殿、減膳、撤樂。仍下備忘記曰：“小子以藐然一身，叨守艱大之統，托乎兆民之上，日夕危懷，不遑寧處，恐墜祖宗之業。只緣才疎德薄，微誠罔格于天心；實惠未究於下民，水旱風霜之災、人妖物怪之變，式月斯生，至今日而極矣。今茲極無，振古所無，節屆南訛，浹月恒暘，西成望斷，大命近止。靜言思之，由予不穀，哀我民斯，何辜于天？憂心如惓，若恫在己。寧欲溘然而無知也。嗚呼！今茲致災，職在寡昧，而</p> |

| | | |
|--|--|--|
| | <p>렀다. 고요히 생각건대 나의 선(善)하지 못한 때문인데, 불쌍한 우리 백성들이 하늘에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근심스러운 마음이 속을 태우듯하여 고통이 내 몸에 있는 듯하니 차리리 갑자기 죽어서 모르는 체하고 싶구나. 아아! 이제 재앙을 초래한 것은 오로지 과인(寡人)에게 있으나, 또한 어찌 백관(百官)을 권장하고 서로 경계하라는 도리가 없겠는가? 아! 그대 여러 신하들은 나의 소간(宵旰)3852) 하는 근심을 본받아 자기의 사심(私心)을 버리고 모두 동료들과 화합하도록 힘써서 조금이라도 하늘의 견책에 응답하여 현재의 난국을 구제하도록 하라.”</p> <p>하고, 이어서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대신 초안(草案)하게 하였다. 승정원에서 바로 비망기를 널리 알리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p> | <p>亦豈無責厲群工，交相儆戒之道乎？咨爾大小臣隣，體予宵旰之憂，克去己私，務盡寅協，少答天譴，以濟時艱。”仍命政院代草。政院請直以備忘播告，從之。</p>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6월 20일(병신) 1번째기사</p> | <p>임금이 대제학(大提學)을 불러서 호당(湖堂)에 선발된 사람들을 배율(排律)3880) 로 시험하여 차등있게 상(賞)을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 다음날 내정(內庭)에서 선운(宣醞)하고, 인하여 은배(銀盃)를 내려 주어서 호당(湖堂)에 두도록 명하였다.</p> | <p>○丙申/上命招大提學，以排律試湖堂被選人，賞賜有差。翌日，宣醞於內庭，仍賜銀盃，命置湖堂。</p>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7월 5일(경술) 1번째기사</p> | <p>이보다 앞서 임금이 한재(旱災)로 인하여 정전(正殿)을 피하고 감膳(減膳)하고 음악을 정지하였었는데, 이날 임금이 정침(正寢)으로 돌아와서 상膳(常膳)으로 회복하고 전과 같이 격고(擊鼓)하였다.</p> | <p>○庚戌/先是，上因旱災，避正殿、減膳、輟樂。是日，上還御正寢，復常膳，擊鼓如前。</p>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7월 11일(병진) 1번째기사</p> | <p>통신사(通信使) 윤지완(尹趾完) 등이 치계(馳啓)하기를, “사신(使臣) 일행(一行)이 지난달 18일에 길을 떠나 24일 대마도(對馬島)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주(島主)가 잔치를 베풀어 접대(接待)하고 별지(別紙) 1폭(幅)을 써서 보냈기 때문에, 그 글을 베껴서 성장께 보냅니다. 그 별폭(別幅) 가운데 의견을 말한 것이 무릇 다섯 조목으로서, 모두 일행(一行)의 뜻을 엄하게 신칙(申飭)하였는데, 그 중 축전주(筑前州)에서 서적(書籍)을 잠상(潛</p> | <p>○丙辰/通信使尹趾完等馳啓以爲：“使臣一行，前月十八日發行，二十四日到對馬島。島主設宴接待，書送別紙一幅，故謄書輸上。”其別幅中措語凡五條，皆嚴飭一行之意，而其中筑前州潛商書籍一款，雖未知實狀如何，而事極驚駭。其條曰：“戊申己酉間，我國筑</p> |

| | | |
|--|--|---|
| | <p>商)3899) 한다는 한 가지 항목은 비록 실상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일이 지극히 놀랍습니다.”</p> <p>하였다. 그 조목에 이르기를,</p> <p>“무신년3900) ·기유년3901) 무렵에 우리 나라 축전주(筑前州)의 호민(豪民)이 배를 위장하여 귀국(貴國)과 몰래 통상(通商)하면서 금지한 물건들을 무역(貿易)하였는데, 그 무리가 수십 인이었습니다. 일이 발각되자 모두 책형(磔刑)3902) 을 당하였고, 많은 수량의 가산(家産)은 몰수하여 관아의 창고로 운반하였는데, 그 가운데 귀국(貴國)의 서적이 또한 많았다고 합니다. 일찍이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세상에 간행(刊行)하였었고, 또 듣건대 《여지지(輿地誌)》 및 《대전(大典)》 등의 책을 관아의 창고[官庫]에 보관하였다 하니, 이번 동도(東都)에 머물러 계실때 간혹 시강관(侍講官)으로 하여금 가서 여러 가지 의문을 증명(證明)하게 하도록 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사실대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그것이 성조(盛朝)의 국금(國禁)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부탁하는 바는 아닙니다.”</p> <p>하였다.</p> | <p>前州豪民僞船，潛通貴國，貿易禁物，其黨數十人，事覺盡就磔刑，家資鉅萬，沒輸官庫。其中貴國載籍亦多云。嘗《東國通鑑》刊行于世，且聞藏《輿地誌》暨《大典》等書于官庫，想今番東都留住之日，或俾侍講官，就證諸疑矣。然則要須答以情實，若其及盛朝關係國禁者，不所憑托之限。</p>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7월 21일(병인) 1번째기사</p> | <p>임금이 두 자전(慈殿)을 위하여 풍정연(豐呈宴)3918) 을 거행하도록 명하였다. 후에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p> <p>“금년에 농사가 또 풍년이 들 가망이 없는데, 풍정(豐呈)의 성대한 예식은 아마도 지나치게 즐기는 데에 관계될 듯합니다. 청하건대 명칭을 진연(進宴)3919) 으로 바꾸고 또한 낭비를 줄이도록 하소서.”</p> | <p>○丙寅/上爲兩慈殿，命行豐呈宴。後，領議政金壽恒言：“今年年事又無豐登之望，豐呈盛禮，恐涉豫大，請改號進宴，且節省浮費。”上可之。</p> |

| | | |
|---|---|---|
| <p>속중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8월 3일(무인) 1번째기사</p> | <p>하니, 임금의 옳게 여겼다.</p> <p>대신(大臣)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를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 공주(公主)의 집을 지을 때 인부(人夫)가 돌을 운반하는 폐단을 아뢰고 우선 역사(役事)를 정지하도록 청하였으며, 평안도(平安道)의 창성(昌城)은 직로(直路)의 중요한 곳이므로 올려서 당상관(堂上官)의 관직을 두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이 이단하(李端夏)가 나라를 근심하여 잊지 못하는 정상을 아뢰고, 후(厚)한 예절로써 부르도록 청하였는데, 김수항(金壽恒)이 또 이어서 아뢰니,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특별히 유시(諭示)해서 부르도록 하였다. 응교(應教) 심수량(沈壽亮)과 정자(正字) 이여(李畬)가 재앙(災殃)에 대응할 도리를 차례로 아뢰고, 진연(進宴)을 정지하도록 청하였다. 김수항이 말하기를,</p> <p>“두 신하의 말이 옳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내가 천재(天災)를 두려워 해야 함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 내년(明年)에 장차 육순(六旬)이 되실 터인데, 새해(新年) 처음의 진연(進宴)을 어떻게 그만둘 수가 있겠는가? 이는 절대로 어쩔 수 없는 데에서 나온 것이니, 끝내 정지할 수는 없다.”</p> <p>하였다. 지평(持平) 김구(金構)가 각사(各司)의 공해(公廩)3920) 및 공주(公主)의 저택, 조사(朝士)의 집을 짓는 역사(役事)를 우선 정지하게 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모두 정지할 것을 허락하였으나, 유독 공주의 집은 공역(工役)이 거의 끝나 간다 하여 금단(禁斷)3921) 하지 말게 하였다. 이후로 김구가 또 연석</p> | <p>○戊寅/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金壽恒陳公主家舍營造時，人夫運石之弊，請姑停役。 以平安道昌城爲直路重地，請陞爲堂上窠，從之。 左議政閔鼎重陳李端夏憂國眷眷之狀，請加敦召。 壽恒又繼之，上命政院別諭召之。 應教沈壽亮、正字李畬迭陳應災之道，請停止進宴。 壽恒曰：“兩臣言是矣。” 上曰：“予非不知天災之可畏，而大王大妃明年將屆六秩，歲首進宴，烏可已耶？此出於萬不獲已，終不可停止也。” 持平金構請各司公廩及公主第宅，朝士家舍營造之役，姑令停止。 上竝許停止，而獨主第以工役幾畢，勿令禁斷。 是後，構又筵白主第之役未完者尙多，宜命一體停罷，上終不從。</p> |
|---|---|---|

| | | |
|---|--|--|
| | (筵席)에서 공주 집의 역사도 완공되지 않은 것이 아직 많으므로 일체 정파하도록 명하심이 마땅하다고 주청(奏請)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따르지 않았다. | |
| 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8월 9일(갑신) 2번째기사 |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p> <p>“금년의 바람과 가뭄 두 가지 재앙은 예전에 없었던 바이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상고해 보니, 을해년(3924) 7월 13일에 크게 바람이 불었는데, 병자년(3925)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연신(筵臣) 홍서봉(洪瑞鳳)·조위한(趙緯韓)이 아뢰기를, ‘일찍이 신묘년(3926) 7월에 크게 바람이 불었는데 열 달 안에 임진년(3927)의 병란(兵亂)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로써 살펴본다면 신묘년·을해년의 일은 모두 지나간 때의 명백한 증험이 되는 것이다. 잔치와 향음을 반드시 전날처럼 해야 하는지는 비록 알 수 없으나, 지금 중국이 바야흐로 혼란스럽고 변방의 근심이 그치지 않고 있다. 혹시 사변(事變)이라도 있게 되면 양향(糧餉)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강도(江都)3928)와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곡식을 여러 고을에 옮겨서 운반하되, 때에 미쳐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면 일이 매우 염려스럽다. 혹은 호조(戶曹)에 저장한 면포(綿布)를 내어서 작미(作米)3929)와 바꾸거나 혹은 다른 도(道)에서 특별히 조치하여 양향(糧餉)을 보충하여서 대비한다는 뜻을 대신(大臣)들에게 말하여, 속히 강구(講究)해서 품처(稟處)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 <p>○御晝講。上曰：“今年風水二災，振古所無。考見《政院日記》，乙亥年七月十三日大風，丙子兵起。其時筵臣洪瑞鳳、趙緯韓奏曰：‘曾在辛卯年七月大風，十朔之內有壬辰之兵。’云。以此觀之，辛卯、乙亥俱爲已往之明驗也。冥應之必如前日，雖未可知，而卽今中國方亂，邊憂未弛，脫有事變，則糧餉最重，而江都、南漢之穀，移轉列邑，趁未收捧，事甚可慮。或以戶曹所儲綿布，出貿作米，或以他道別樣措置，充備糧餉之意，言于大臣，斯速講究稟處。”</p> |
| 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8월 11일(병술) 2번째기사 | <p>헌납(獻納) 오도일(吳道一)·정언(正言) 김만길(金萬吉)이 교지(教旨)에 응하여 차자(劄子)를 올려서, 학문(學問)의 요령은 책을 읽어 아는 데에 이르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논하였다. 또 말하기를,</p> | <p>○獻納吳道一、正言金萬吉應旨上劄，論學問之要，以讀書致知爲本。且曰：先正臣李珣所著《聖學輯要》，進學規</p> |

| | | |
|---|--|--|
| | <p>“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저술한 《성학집요(聖學輯要)》는 학문에 나아가는 규모와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으니, 만약 법연(法筵)3931)의 여가에 이 책을 곁하여 강(講)하신다면 천덕(天德)과 왕도(王道)의 요령에 크게 도움이 되고 이익됨이 있을 것입니다.”</p> <p>하였다. 또한 영부사(領府事) 송시열(宋時烈)과 박세채(朴世采) 등 세 신하를 불러서 반드시 올라운 후에야 그만두도록 청하였다. 또 명안 공주(明安公主)의 집과 금위청(禁衛廳)을 짓는 것은 속히 정지하도록 허가하여 일체 금단(禁斷)하는 뜻을 보이고, 진연(進宴)을 끝내 반드시 새해 처음에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성실로써 하늘에 응답하는 도리가 아니므로, 마땅히 내년을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겠다는 뜻을 중외(中外)에 시원스럽게 보여 주도록 청하였다. 또한 삼사(三司)의 신하가 한 마디 말이라도 뜻을 거스르면 간혹 여러 해가 지나도록 승진을 시키지 않는 것은 옳지 않으며, 유환(劉宦)【바로 유기한(劉起漢)이다.】의 일은 마땅히 유사(有司)에게 맡겨서 공의(公議)를 속히 따라야 할 것임을 말하였다. 끝으로 금영(禁營)에서 새로 별대(別隊)에 소속된 정초군(精抄軍)의 번포(番布)를 거두어 본병(本兵)3932)에게 옮겨 보내어서 지난해에 감한 어린아이·도망자·사망자의 숫자를 보충하고, 황해도와 평안도의 한 고을 안에 진보(鎭堡)를 겹쳐서 설치한 곳은 합병(合併)하거나 혁파(革罷)하며, 북로(北路)3933)에 중신(重臣)을 보낼때 감영(監營)과 병영(兵營)의 쌀과 베[布]를 적당히 내어서 한전(旱田)를 구제하여 급재(給災)해 주며, 상참(常參)·조참(朝參)을 예전대로 회복할 것 등의 일을 청하였다. 임금이 특별히 비답(批答)하고, 가상하게 여겨 받아들였다.</p> | <p>模、經邦制度，無不畢具。 倘於法筵餘暇， 兼講是書， 則於天德、王道之要， 大有所裨益矣。</p> <p>又請招致領府事宋時烈及朴世采等三臣， 必致後已。 又請明安公主第宅及禁衛廳營造， 亟許停止， 以示一體禁斷之意。 而進宴終必設行於歲首， 非應天以實之道， 宜以待明年更議之意， 快示中外。 又言：</p> <p>三司之臣， 一言忤旨， 或至經年斬黜之爲不可， 而劉宦【即劉起漢】事， 宜付有司， 快從公議。</p> <p>末請收禁營新屬別隊精抄番布， 移送本兵， 以補上年所減兒弱、逃故之數。 兩西一邑內鎭堡疊設處， 或合併、或革罷。 北路遣重臣時， 量發監兵營米布， 賑救旱田給災， 常參、朝參復舊等事。 上優批嘉納。</p>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8월 12일(정해)</p> | <p>임금이 함경도(咸鏡道)에서 바람과 홍수의 재해를 참혹하게 입었다는 이유로써 두분의 자전(慈殿) 외에 대전(大殿)·중전(中殿)의 삭선(朔繕)3934)을 금년 동안 한정하여 특별히 정봉(停封)3935)하게 하였다.</p> | <p>○上以咸鏡道慘被風水之災， 兩慈殿外， 大殿中殿朔繕， 限今年特爲停封。</p> |

| | | |
|-------|--|---|
| 3번째기사 | <p>이조 정랑(吏曹正郎) 임영(林泳)이 교지(教旨)에 응하여 만언소(萬言疏)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p> <p>“진연(進宴)의 거행은 진실로 효도하고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자전(慈殿)의 뜻이 이미 스스로 불안(不安)하게 여기시고, 여러 신하들도 간혹 말하고 있는데, 어찌 우선 성명(成命)을 정지하고서 근심이 조금 없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까? 정전(正殿)의 개수(改修)는 비록 본래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말하지만, 단시일(短時日)에 무너져 내릴 염려는 없으며, 오늘날 나라의 정세에 비교하여 보면 오히려 그다지 위험한 것도 아닌데, 어찌 공관(工官)을 거두고 백성을 동원하는 역사(役事)를 즉시 그만두지 않습니까? 오늘날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다만 이와 같다면 이른바 반성하여 수양한다는 것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이른바 나라의 정세라는 것도 또한 형상을 볼 수는 있는 것이 아니고 위급한 상황은 진실로 환하게 보기 어려우니, 신(臣)은 아마도 전하께서 반드시 그 위급함을 환하게 보시지 못하는 듯합니다.</p> <p>신은 청하건대 먼저 나라의 정세가 위급함을 논하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는 천명(天命)을 받는 지 이제 3백 년이 되었는데, 서쪽 오랑캐[西戎]가 날로 치성하고 도이(島夷)3945)가 교활하여 남을 잘 속이니, 만약 변경의 환난이 있게 되면 간사한 무리들이 반드시 난리를 일으켜, 한 곳에서 변경이 있으면 온 나라가 어찌 할 수 없이 흔들려 움직일 텐데, 오늘날의 병력(兵力)과 기강(紀綱)으로써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검약하면 하늘이 도와줄 것이고, 방자하고 사치하면 하늘이 버릴 것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검약하는 일에 크게 노력하시어, 어공(御供)3946)의 그릇·의복으로부터 궁인</p> | <p>○吏曹正郎林泳應旨上萬言疏， 其略曰：</p> <p>進宴之舉， 固出孝愛之情， 而慈旨既自不安， 群臣亦或爲言， 則何不姑寢成命， 以俟憂虞之少間乎？ 正殿修改， 雖云本非不得已， 既無朝夕頽壓之慮， 則其視今日國勢， 猶未甚危也。 何不收回工官， 卽罷動民之役乎？ 今日之警懼， 只如此， 則所謂修省， 亦可知矣。 雖然， 所謂國勢， 亦非有形象之可觀， 危急之狀， 固難灼見， 臣恐殿下未必灼見其危急也。 臣請先論國勢之危急， 我國家受命且三百年， 而西戎日熾， 島夷狡譎， 若有邊患， 好徒必作亂， 一處有警， 舉國必震盪矣。 以今日兵力紀綱， 其能有救乎？ 敬畏儉約， 天所助也；放肆奢泰， 天所棄也。 願殿下， 大爲刻苦儉約之事， 自御供器服， 以至宮人宦寺， 皆減元數之半。 又仰告兩慈聖， 大節損之， 仰告于宗廟， 列聖祭享儀物， 限年權減。 又戒飭宮闈， 痛禁侈習， 召群臣， 戒勿妄費官物於常祿之外。 如是則上穹降監， 必垂矜愍矣。</p> |
|-------|--|---|

(宮人)·환시(宦寺)에 이르기까지 모두 원래 수량의 반을 감하고, 또 두 분의 자성(慈聖)께 우러러 고하고서 크게 절약하고, 종묘(宗廟)에 우러러 고하고서 열성(列聖)3947) 에게 제향(祭享)하는 의물(儀物)은 햇수를 한정하여 임시로 줄이도록 하며, 또 궁궐(宮闕)에 경계하고 타일러서 사치한 관습을 엄하게 금하고, 여러 신하들을 불러서 일정한 봉록(俸祿) 이외에 관물(官物)을 낭비하지 말도록 경계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하늘이 내려다 보시고 반드시 불쌍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대개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검약하는 것은 진실로 오늘날의 근본이 되는 것이지만, 한때의 병통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상의 마음이 한쪽에 치우침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정(朝廷)의 명령이 신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사유(私有)의 재산이 없고, 또 사사로 부리는 하인이 없어야 하는데, 내수사(內需司)의 설치는 이미 사재(私財)의 부고(府庫)3948) 이고, 여러 궁가(宮家)에서 전토(田土)와 노비[臧獲]를 백성과 서로 소송한 것은 전하께서 대부분 특별히 재가를 내려 내수사(內需司)에 주셨습니다. 대간(臺諫)이 아뢰는 글이 연달아 올라왔으나, 오히려 미루기만 하여 천례(賤隸)의 이름자가 간혹 성상의 말씀[玉音]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황폐한 제방[堰]의 득실(得失)이 여러번 임금의 명령에 언급되었으니, 예전에 나라의 군주는 재물의 다과(多寡)를 말하지 않았다는 뜻을 가지고 헤아려 본다면 얼마나 동떨어진 일입니까? 주(周)나라의 내부(內府)와 곧 한(漢)나라의 소부(少府)는 곧 지금의 내수사(內需司)로서 모두 조사(朝士)를 그 관원으로 삼았었는데, 이제 마땅히 사대부(士大夫)를 선택하여 그 관원으로 삼아 외부의 관사(官司)와 똑같이 한다면 나라의 조치(措置)가 환하게 밝아져서 반드시 성덕(聖德)에 도움이 있을 것이니, 어찌 다시 사재(私財)의 허물이 있겠습니까? 이른바 사사로 부리는 하인이라는 것은 곧 환시(宦寺)를 일컫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왕위(王位)를

夫畏敬儉約，固爲今日之本根，而一時之病，又有在焉。 一曰聖心偏私之未祛也；二曰朝廷命令之無信也。 王者無私財，亦無私人。 內司之設，已是私財之府庫，而諸宮家田土臧獲，與民相訟者，殿下多別降判付，決給內司，臺啓連上，尙或持難。 賤隸名字，或形於玉音，荒堰得失，屢勤于聖教，以古者國君不言多寡之義揆之，一何遠也？ 周之內府，漢之少府，乃今之內司，而皆以朝士爲其官。 今宜選擇士夫，爲其官一如外司，則舉措光明，必有助於聖德，豈復有私財之累哉？ 至若所謂私人，乃宦寺之謂也。 殿下嗣位之初，人言一番人進用，蓋由於近宗及此輩人。 又言向來討逆時，此輩亦不爲無功。 竊恨殿下何不獨運乾斷，而使此輩，干與其間耶？ 又況近日此輩，作奸犯科，而殿下不能窮治，外間愈疑此輩勢盛，此尤可恨也。 若夫勳戚之臣，本非可以私人目之，而唯其酬報之舉，或拂衆論，而進擢之命，或出群情之外，則人始不以公道視之矣。 除拜之恩，或先公望，而臨照之下，或不無偏假之念，則人亦始以私人目之矣。 今

| | | |
|--|---|--|
| | <p>계승하신 초기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쪽 사람을 기용한 것은 모두 가까운 종친(宗親) 및 이러한 무리들 때문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지난번 역적(逆賊)을 토벌하였을 때 이러한 무리가 또한 공(功)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만 한스러운 일은 전하께서 어찌 정사의 재결을 혼자 처리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무리로 하여금 그 사이에 관여하게 하는 것인가?’ 하였습니다.</p> <p>또 하물며 근일에 이러한 무리가 간사한 짓을 하고 법을 범하였는데도 전하께서 끝까지 다스리지 않으시니, 외간에서는 이러한 무리의 세력이 성(盛)해졌는지 더욱 의심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더욱 유감스럽습니다. 대개 훈척(勳戚)의 신하는 본래 사사로 부리는 하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는데, 다만 그 노고에 보답하는 거조(舉措)가 혹은 여러 사람의 의논에 어긋나기도 하고, 발탁하는 명령이 간혹 여러 사람의 기대 밖에서 나오기도 하니, 사람들이 비로소 공도(公道)로써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수(除授)하는 은혜가 간혹 공적인 신망(信望)에 앞서기도 하고, 통치하는 아래에 간혹 편벽된 생각이 없지 않으시니, 사람들이 또한 비로소 사사로 부리는 하인으로써 지목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진실로 사유의 재산과 사사로 부리는 하인에 대한 허물을 모두 없애지 못하신다면, 비록 날마다 성지(聖旨)를 내리고 신하들에게 사사로 운 뜻을 없애도록 권면하시더라도, 신은 결단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알겠습니다.</p> <p>경화(更化)3949) 의 초기에는 조정(朝廷)에서 폐단을 개혁할 뜻이 있어 빨리 주현(州縣)으로 하여금 군보(軍保)와 공천(公賤)을 자세히 조사하게 하였으니, 그 덕(德)이 매우 융성하였습니다. 조사해서 알리게 되자, 또한 그 친족(親族)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사하게 하여, 비록 도망하거나 사망한 것을 명백히 알더라도 만약 친족이 되는 자가 있으면 모두 도망자나 사망자로 논하지 않았</p> | <p>殿下苟不能盡祛私財私人之累，則雖日降聖旨，責臣僚以割去私意，臣知其決未易也。更化之初，朝廷有意革弊，亟令州縣，查覈軍保公賤，其德甚盛。及其覈聞，又令覈其親族有無，雖明知其逃故，如有親屬者，並不以逃故論，而逃故者之役布，專責於其切族，則以無多之切族，應不貲之役布，受苦偏重，反不如遍徵疎族隣里之時，猶得以衆力分供也。當初查覈，固將以永永蕩滌，後來只免其年之役，自翌年又徵捧如前。既令查覈，而審其爲逃故，則更以何辭，又令依前出役哉？兒弱比逃故有間，雖其黃口應役，所不可忍。應役自幼者，老除又早，則民之病之，亦稍輕矣。朝廷若慮經費之難繼，則初不舉論猶可也。既令查覈十五歲以下，俄又更令查出十一歲以下，俄又令卽充，其查出兒弱之代，州縣誠有可充者，初豈以兒弱爲軍？此其勢不得不以兒弱代兒弱，而又不明言其爲兒弱。初若爲民，終成罔民，軍布升尺減定之論，發於元老大臣之筮，朝令既慮其必有窒礙，而姑且聽從，遽爲頒示，未經數月，旋即寢罷。是則不但欺民，其</p> |
|--|---|--|

| | | |
|--|--|---|
| | <p>으며, 도망자·사망자의 역포(役布)는 전적으로 그 가까운 친족[切族]에게 요구하였으니, 많지 않은 가까운 친족으로서는 적지 않은 역포(役布)를 감당하느라 편중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소족(疎族)3950) 이나 이웃에게서 두루 징수할 때에 오히려 여러 사람의 힘으로 나누어서 바쳤던 것보다도 도리어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자세히 조사한 것은 진실로 장차 영구히 탕감하려 하였던 것인데, 나중에는 다만 그 해의 역(役)만을 면제해 주고 다음해부터는 또 전과 같이 징수하였으니, 이미 자세하게 조사하도록 하여 도망자·사망자를 살피게 하고는 다시 무슨 핑계로써 또 전에 의거하여 출역(出役)하도록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도망자·사망자에 비하면 차이가 있으나, 비록 어린아이[黃口]라 하더라도 공역(公役)에 응하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바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역에 응한 자는 노제(老除)3951) 도 일찍 해 준다면, 백성들이 병통으로 여기는 것이 또한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조정(朝廷)에서 만약 경비를 잇대기가 어렵다고 염려한다면 애당초 거론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옳았을 것입니다. 이미 자세하게 조사하게 하고서, 15세 이하를 얼마 후에 또다시 조사해 내게 하고 11세 이하를 얼마 후에 또 즉시 충당하게 하였으니, 어린아이를 대신할 자를 조사해 낸다면 주(州)·현(縣)에 진실로 충당할 만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어린아이를 군인으로 삼았기에, 이는 그 형세가 어린아이를 어린아이의 대신으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또 감히 그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백성을 위하는 듯했는데 결국에는 백성을 속인 것입니다.</p> <p>군포(軍布)의 승척(升尺)을 감소시켜 정하자는 논의는 원로 대신(元老大臣)의 차자(笥子)에서 나왔는데, 조정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장애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우선은 그대로 들어주어 갑자기 반포(頒布)하여 보였다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즉시 정지하였으니, 이는 백성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건의한 사람</p> | <p>欺建議之人亦甚矣。凡人無信，尚不能自立，況堂堂大朝，數年之間，節節失信，一至於此，其何以爲國乎？大抵古今爲治之規，自有定法，而言其大要，不過曰君德也、朝政也、安民也、制兵也。故臣論今日之治規曰，必大進聖學、大肅朝綱、大得民心、大修軍政、以後可誠。”以大火將發，非勺水能禦；篤疾跼危，惟瞑眩爲可救也。若論進學之方，則臣自進見之初，輒以立志、力行、致知三者，反覆論之。人苟立志則凡事理之所已知者，必欲力踐；所未知者，必欲求知。而居敬之功，常貫於動靜之間；克己之念，益篤於臨事之際，則力行之要本，其如此而已。因其所知，推而盡之，使無一理一分之未知，是乃致知之謂也。今日國事之日非，實由於朝綱之大頹。若論肅朝綱之目，第一責勉大臣，其次選任官長，次立庶官勤仕之規，次革吏胥弄奸之弊。今日大臣雖皆人望，論其相業，不啻未盡，只務承順，未聞有正色極諫之事。卿大夫豈無能否之別，每拘顏情，不肯嚴明黜陟？民困日甚，而曲從恤費之言，致令殿下德意，不究</p> |
|--|--|---|

| | | |
|--|---|--|
| | <p>을 속인 것이 또한 심합니다. 보통 사람[凡人]도 신용이 없으면 오히려 자립(自立)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공명正大한 조정에서 몇 년 동안에 일의 가득마다 신용을 잃은 것이 한결같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나라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p> <p>대개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치를 하는 법규는 본래 정해진 법이 있으니, 그 대요(大要)를 말한다면 군주의 덕(德), 조정의 정치, 백성의 안정, 군사의 규제에 불과 합니다. 그러므로 신은 오늘날 정치의 법규를 논하면서, 반드시 성학(聖學)을 크게 공부하고 조정의 기강을 크게 엄숙하고 민심(民心)을 크게 얻고 군정(軍政)을 크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런 후에라도 진실로 큰 불[大火]이 장차 일어나게 되면 국자의 물[勺水]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독한 병으로 대단히 위험하게 되면 오직 현기증이 나는 약으로만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p> <p>학문에 나아가는 방법을 논한다면, 신이 나아가서 뵈었던 초기부터 번번이 뜻을 세우고[立志] 힘써 행하고[力行] 알기에 이른다[致知]는 세 가지를 되풀이하야 논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진실로 뜻을 세우면 무릇 일의 도리로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드시 힘써 실천하려고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알려고 하게 되는데, 마음을 바르게 하여 품행을 닦는 공(功)은 항상 기거 동작(起居動作)하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자기의 사욕(私慾)을 눌러 이기려는 생각은 일에 임하였을 때 더욱 돈독해지는 것이니, 힘써 행하는 근본은 이와 같을 따름입니다. 그 알고 있는 바에 따라 미루어서 힘을 다 들여서 한 가지 이치 한 가지 본분도 알지 못하는 바가 없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알기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p> | <p>境外之憂已深，而全無先備之舉。天災如此，而舊例引咎之疏，亦不復得聞，此亦可見其自任之淺也。百官有司，孰非可選任者，而最是六官、三司、國子之長，按藩制闕之臣，尤不可不遴選而久任。略倣漢代五日一休，十日一沐之制，使京司庶官，一旬之內，只許兩日休暇，一從《大典》。盡去吏胥申明移差之規，收納官物之時，一禁點退之事，果能行此，猶可以少革其弊也。得民心之道無他，惟當薄其稅斂而已。今民稅斂，蓋有兩道田役也、身役也，而二役之中，身役尤重。若用臣言，盡滌逃故，姑寬兒弱，則民必欣然有樂生之心矣。至於田役，則從當初定法，減去湖西之二斗，兩南之三斗，此於得民心之道，亦非小益也。今日國勢如此，軍政不可不修，而減去坐食之兵，此其一事也。所謂坐食之兵，乃指訓、御、禁衛三營而言。就今三營，選其丁壯，只留一半，通融水陸，善爲區畫，別飭廟堂，預求將材，不問文武蔭仕，惟求志慮忠實，膽略可任之人，隨宜調用，則縱未必皆得其人，其視全然鹵莽之時，亦庶幾差</p> |
|--|---|--|

| | | |
|--|---|---|
| | <p>오늘날 국사(國事)가 날로 그릇되어가는 것은 실로 조정의 기강(紀綱)이 크게 무너진 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는 조목에 대하여 논한다면, 제일 먼저 대신(大臣)을 권면(勸勉)하고, 그 다음은 관사(官司)의 우두머리를 선택하여 임명하며, 다음은 모든 관원이 부지런히 근무하는 법규를 제정하고, 다음은 서리(胥吏)들이 농간을 부리는 폐단을 개혁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신(大臣)들이 비록 모두 인망(人望)이 있기는 하나, 그 재상(宰相)·대신(大臣)으로서의 사업을 논한다면 미진할 뿐만 아니라, 다만 왕명을 받들어 따르는 데에만 힘쓰고 정색(正色)하여 극진하게 간(諫)한 일이 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경대부(卿大夫)가 어찌 유능한지 무능한지의 구별이 없겠습니까마는, 매양 안면의 인정에 끌려서 출척(黜陟)을 엄하게 밝히려 하지 않아서 백성들의 곤궁이 날로 심하여지는데도 낭비를 근심한다는 말에 급히 따라서 전하의 덕의(德意)를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고, 변경 밖의 근심이 이미 심해지는데도 사전(事前)에 대비하는 일이 전혀 없게 하였습니다. 하늘의 재앙이 이와 같은데도 구례(舊例)대로 책임을 지는 상소를 또한 다시 들어 볼 수가 없으니, 이 또한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적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백관(百官)·유사(有司)가 누군들 선발하여 임용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마는, 가장 육관(六官)·삼사(三司)·국자감(國子監)3952)의 장(長)과 변경을 살피고 도성(都城) 밖을 통솔하는 신하는 더욱이 선택하여 구임(久任)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대(漢代)의 5일 만에 한 번 쉬거나 10일 만에 한 번 쉬게 한 제도를 대략 모방하여, 경사(京司)의 여러 관원으로 하여금 열흘 안에 다만 이들의 휴가를 허가하여 일체 《대전(大典)》에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서(吏胥)를 다 물리치고 이차(移差)3953)의 법규를 거둬 밝혀서, 관물(官物)을 수납(收納)할 때 점퇴(點退)3954) 하는 일을 일체 금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들을 시행할 수 있다면 그래도 그 폐단을 조금은 개혁할 수 있을 것입니다.</p> | <p>勝也。我國山川，多有形險，若使州縣，皆爲據險入保之計，則禦敵保邦之策，宜無過此者。此不可不及時留意也。又念，殿下必欲奮勵作興，爲國家長久計，則非大起一時遺賢，盡採衆人忠謀，不可能也。近日招賢之旨固爲隆重，而若不能期於必致，與共國事，則不過爲虛禮；求言之教懇惻如此，而若不能樂聞切諫，實有採用，則亦終爲虛文，願更留意焉。伏聞有進宴廳姑罷之命，臣不勝感歎，而尙有未歎者。豈姑罷廳號，而稍待星變之少弭，卽欲復行耶？若然則亦不甚誠實矣，伏願快示停罷之意焉。</p> <p>上答曰：“兩慈殿供獻之物，元不豐侈，而矧纔量減之後，又從而裁省云者，豈非未安之甚者乎？宗廟享祀權減之說，是何言耶？昔者子貢欲去告朔之餼羊，夫子恐或此禮之遂亡，而有所惜之。無實妄費，尙且如此，而況大廟享祀，何等大事、何等禮制，而直請裁減，尤極無謂矣。至於不用乾斷，干與其間等事，是何斯言之無根孟浪，一至此哉？朝家待大臣之道，事體自別，而遣</p> |
|--|---|---|

| | | |
|--|--|------------------------------------|
| | <p>민심(民心)을 얻을 수 있는 방도는 다른 것이 없고 마땅히 그 조세(租稅)의 징수를 가볍게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조세(租稅)의 〈징수는〉 대개 양도(兩道)의 전역(典役)과 신역(身役)이 있는데, 두 가지 역(役) 가운데 신역(身役)이 더욱 중합니다. 만약 신(臣)의 말을 채용하여 도망자·사망자의 〈세를〉 모두 없애버리고 우선 어린아이의 〈세를〉 너그럽게 한다면, 백성들이 반드시 기뻐하며 생활을 즐기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전역(田役)에 이르러서는 당초 법을 정한 것에 따라서 호서(湖西)3955)의 2두(斗)와 양남(兩南)3956)의 3두를 줄여서 없앤다면, 이는 민심을 얻는 방도에 있어서 또한 조그만 이익이 아닐 것입니다.</p> <p>오늘날 나라의 정세가 이와 같으므로 군정(軍政)을 정비하지 않을 수 없는데, 놓고 먹는 군사를 모두 없애야 하니, 이것이 그 한 가지 일입니다. 이른바 놓고 먹는 군사라는 것은 바로 훈련 도감(訓練都監)·어영청(御營廳)·금위영(禁衛營)의 삼영(三營)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삼영(三營)에 있어서는 정장(丁壯)을 뽑아 단지 절반만 머무르게 하되, 수군(水軍)과 육군(陸軍)을 융통성 있게 처리하여 구분을 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묘당(廟堂)에 별도로 신칙하여 미리 장수가 될 만한 인재를 구하되, 문관(文官)·무관(武官)·음사(蔭士)를 불문하고 오직 생각이 충성스럽고 성실하며 담력과 책략이 〈장수에〉 임명할 만한 사람을 구하여 마땅한 데에 따라서 뽑아 쓴다면, 비록 반드시 모두 적당한 사람을 얻지는 못할지라도 전연 소홀하였을 때에 비교하면 또한 거의 조금은 나을 것입니다.</p> <p>우리 나라의 산천(山川)은 형세가 험준한 곳이 많이 있으니, 만약 주현(州縣)으로 하여금 모두 험준한 곳에 의거하여 입보(入保)3957) 하는 계책을 삼게</p> | <p>辭之際， 未免詆毀， 予未知其穩當也。” 仍留中不下。</p> |
|--|--|------------------------------------|

한다면, 적(敵)을 방어하고 나라를 보전하는 계책은 마땅히 이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이는 때에 미쳐서 유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분발하여 힘써 진흥(振興)시켜서 국가의 장구(長久)한 계책으로 삼고자 하신다면, 한때의 유현(遺賢)3958) 을 크게 기용하고 여러 사람의 충성스러운 모의를 모두 채용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일에 유현을 초빙하는 뜻이 진실로 융숭하고 정중하지만, 만약 반드시 불려서 국사(國事)를 함께 할 것을 기약 할 수 없다면 헛된 예절에 불과할 것이며, 구언(求言)하는 교지(教旨)가 이와 같이 간절하면서도 만약 절실한 간언(諫言)을 즐겨 듣고서 실제로 채용할 수 없다면 또한 끝내 헛된 문식(文飾)이 되고 말 것이니, 다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듣건대 진연청(進宴廳)을 우선 정파(停罷)한다는 명령이 있으셨다고 하니, 신은 감탄을 금할 수 없는데, 그래도 아직 만족하지 못할 것이 있으니, 어찌 우선 진연청의 이름만 폐지하고서 성변(星變)이 조금 그치기를 차츰 기다려 즉시 다시 시행하려 하십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또한 그다지 성실한 것이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정파하시는 뜻을 시원스럽게 보여 주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두 분의 자전(慈殿)께 바치는 물건은 원래 풍부하고 사치한 것이 아닌데, 하물며 가까스로 헤아려서 감한 후에 또 뒤따라 재량하여 줄여야 한다고 말한 것은 매우 미안(未安)한 것이 아니겠는가? 종묘(宗廟)의 향사(享祀)를 임시로 감한다는 말은 이것이 무슨 말인가? 예전에 자공(子貢)3959) 이 곡삭(告

| | | |
|--|---|---|
| | <p>朔)3960) 에 희생으로 쓰이는 양(羊)을 없애고자 하니, 부자(夫子)3961) 께서 이 예식마저도 마침내 없어질까 하여 애석해한 바가 있었다. 실효가 없이 낭비하는 것도 오히려 또한 이와 같았으니, 하물며 대묘(大廟)의 향사(享祀)는 얼마나 큰 일이고 어떠한 예제(禮制)인데, 재량하여 감하도록 곧바로 청한 것은 더욱 말할 바가 못된다. 군주의 결단을 쓰지 않아서 그 사이에 관여한다는 등의 일에 이르러서는, 어찌 이처럼 근거없이 맹랑한 말이 한결같이 이에 이르렀는가? 조정에서 대신(大臣)을 대우하는 도리는 일의 대체가 본래 특별한 것인데, 계사(啓辭)를 보낸 사이에 험뜯음을 면치 못하였으니, 나는 그것이 온당한지 모르겠다.”</p> <p>하고, 인하여 그 소(疏)를 궁중에 머물러 두고 관계 기관에 내려보내지 않았다.</p> |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8월 20일(을미) 2번째기사</p> |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정언(正言) 유명일(兪命一)이 문신(文臣)으로서 명성과 인망이 있는 자를 교대로 평안도(平安道)의 변방 고을[邊邑]에 임명해 보내어서 진압하도록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다스려지고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이 현명한지 현명하지 못한지의 여하에 달려 있다.”</p> <p>하고, 인하여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상주하여 분부를 받아서 처리하게 하였다. 후에 묘당(廟堂)에서 복계(覆啓)하니, 교대로 임명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았다. 특진관(特進官) 민유중(閔維重)이 선혜청(宣惠廳)에서 추등(秋等)으로 바치는 경기(京畿)의 수미(收米) 2천여 석(石)과 관리청(管理廳)의 군항미(軍餉米)를 파주(坡州)·연안(延安) 등의 고을에 나누어서 방출한 것 2천여 석을 강도(江都)에 수송하도록 청하였다. 또한 공조(工曹)에 소속된 장인(匠人)</p> | <p>○御晝講。 正言兪命一請問以文臣有聲望者，差遣平安道邊邑以彈壓之，上曰：“治不治，惟在其人賢否之如何。”仍令廟堂稟處。 後，廟堂覆啓以間差定式。 特進官閔維重請以宣惠廳秋等所捧京畿收米二千餘石、管理廳軍餉米坡州、延安等邑所分糶者二千餘石，輸送江都。 又請工曹所屬匠人、訓諫都監砲保之在諸道沿海者價布竝作米，一體輸納江都，其代自戶曹，以綿布準給，上竝可之。 上又以江都及京江津船數少，令該曹添造，又命關內立役軍，必以元軍定送。 時，南北俱有邊</p> |

| | | |
|---|---|--|
| | <p>과 훈련 도감(訓練都監)의 포보(砲保)3973)로서 여러 도(道)의 연해(沿海)에 있는 자의 가포(價布)3974)와 아울러 작미(作米)는 일체 강도(江都)로 수송해서 바치고, 그 대가(代價)를 호조(戶曹)에서 면포(綿布)를 가지고 준하여 주도록 청하였다. 임금이 모두 옳게 여겼다. 임금이 또한 강도(江都)와 경강(京江)의 나룻배[津船]의 수효가 적은 이유로써 해조(該曹)로 하여금 더 만들도록 하고, 또 대궐 안에 입역(立役)하는 군사는 반드시 원래의 군사를 정하여 보내도록 명하였다. 이때 남쪽과 북쪽에 모두 변방의 근심이 있었고 인심(人心)이 거의 다 흉흉하고 두려워하였으며, 풍재(風災)와 혜성(彗星)의 변고가 이때에 거듭 나타났고, 또 역적(逆賊)에 대한 옥사(獄事)가 계속해서 일어나 근심거리가 여러 가지였기 때문에 위아래에서 염려하는 바가 이와 같았던 것이다.</p> | <p>憂，人心舉皆凶懼，而風災、彗變，疊出於此時，又逆獄繼起，憂虞多端，故上下之所慮如此矣。</p>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9월 19일(계해) 4번째기사</p> | <p>호군(護軍) 박세채(朴世采)가 서울에 들어와 궐하(闕下)에 나아가서 소를 올려, 허례(虛禮)를 함부로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을 갖추어 진술하니, 임금이 너그럽게 비답하고, 이어 음식물과 떨감을 넉넉히 주도록 명하였다.</p> | <p>○護軍朴世采入城，詣闕下陳疏，備陳不可冒當虛禮之意。上優答之，仍命優給食物柴炭。</p>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9월 21일(을축) 2번째기사</p> | <p>임금이 경안군(慶安君)의 부인(夫人)이 아들의 배소(配所)에 갔다는 말을 듣고, 본도(本道)에 명하여 말과 음식을 지급하도록 하였다.</p> | <p>○上聞慶安君夫人往其子配所，命本道給馬供饋。</p>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9월 24일(무진) 1번째기사</p> |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김진귀(金鎭龜)가 박세채를 꼭 오게 하도록 하라고 청하였다. 이어 아뢰기를, “송시열(宋時烈)이 지금 막 올라왔으니 또 별도의 유지를 내리셔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받아들이고, 이내 사관(史官)을 송시열에게 보내어 반갑고 기쁜 뜻을 전하게 하였다. 사경(司經) 이이명(李頤命)이 공주의 집 짓는 일을</p> | <p>○戊辰/御晝講。侍講官金鎭龜請勉致朴世采，仍曰：“宋時烈今方上來，又宜別諭。”上竝納之。仍遣史官，傳諭欣喜之意於時烈。司經李頤命陳主第停役之後，始允臺啓，有欠誠實之意，上不答。特進官閔維重以賑恤廳遺儲蕩竭，請平安道管餉米一萬石、雜</p> |

| | | |
|--|--|--|
| | <p>그만둔 후에야 비로소 대간의 계달을 윤택한 것은 성실성이 모자란다고 아뢰니, 임금의 답하지 않았다. 특진관(特進官) 민유중(閔維重)이 진휼청(賑恤廳)의 재원이 바닥났으니, 평안도의 관향미(管餉米) 1만 석(石), 잡곡 1만 석, 면포 2백 동(同)과 황해도의 관향미 5천석, 잡곡 1만 석을 진휼청으로 옮겨 보낼 것을 청하니, 임금이 좋다고 하였다.</p> | <p>穀一萬石、綿布二百同，黃海道管餉米五千石、雜穀一萬石移送賑廳，上可之。</p>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10월 6일(기묘) 2번째기사</p> | <p>응교(應敎) 심수량(沈壽亮), 부교리(副校理) 이돈(李墩), 수찬(修撰) 이여(李畬), 박사(博士) 이이명(李頤命)이 청대(請對)하여 진연(進宴)을 잠정적으로 그만두기를 청하여 아뢰기를,</p> <p>“진연을 이미 요사한 혜성(彗星)이 경계의 뜻을 보일 때 정지하였다가, 별의 변고가 조금 사라진 뒤에 다시 시행하려 하는 것은 하늘의 뜻에 응하는 바른 도리가 아닐 뿐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마음을 편하게 하는 효도도 아닙니다.”</p> <p>하고, 재삼 신청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윤택하지 않았다. 입대(入對)가 끝난 후, 임금이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p> <p>“상수(上壽)4003) 의 예(禮)는 실상 희구(喜懼)4004) 의 지극한 정에서 우려 나오는 것인데, 마침 농사가 아주 흉년이 들고 변고가 겹치니, 비록 폐습을 줄이고 소비를 아끼는 조치가 없지는 않았으나, 송구하고 불안한 마음이야 언제 조금이라도 늦춘 적이 있었던가? 유신(儒臣)들이 누누이 아뢰는 말이 진실로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말인 줄 알지만, 막 베풀려다가 그만두기로 하니 마음이 온통 텅 비어서 결단을 쉽사리 내리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뜻을 양 자전(兩慈殿)에게 우러러 아뢰었더니, ‘지금처럼 하늘의 노여움이 급박하게 닥치고 민생이 신음하는 때를 당하여, 한편에서는 진휼하고 한편</p> | <p>○應敎沈壽亮、副校理李整、修撰李畬、博士李頤命請對，請姑停進宴曰：“進宴既停於妖彗示警之時，復行於星變纔減之後，非應天以實之道，亦非事親養志之孝也。”再三陳請，上終不許。罷對後，上下備忘曰：“上壽之禮，實出喜懼之至情，而適值年事之大無、變怪之層疊，雖不無省弊惜費之舉，悚懼不安，曷嘗少弛？儒臣之縷縷開陳，固知憂愛之論，而纔設旋罷，心切缺然，故有所持難矣。卽以此意，仰達于兩慈殿，則當此天怒孔棘，民生殿屎之日，一邊設賑，一邊受宴，誠甚不安，終不如速停之爲愈爲教。今此進宴，退行於明秋，以示兩慈殿懼災恤民之至意。”</p> |

| | | |
|--|--|---|
| | <p>에서는 진연(進宴)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매우 편안하지 않으니, 끝내 빨리 정지시킴만 같지 못하다.’고 거듭거듭 분부하시므로, 지금의 이 진연을 내년 가을로 미루어 양 자전께서 재앙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휼하는 지근한 뜻을 보이려 한다.”</p> <p>하였다.</p> |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10월 7일(경진) 3번째기사</p> | <p>전라도에 재해를 더욱 심하게 입은 10고을의 신역(身役)을 전면 면제해 주고, 대동 수미(大同收米) 5두를 감하였다. 그 이하 여러 고을도 아울러 적당히 감하여 주었으니, 관찰사 이사명(李師命)의 장청(狀請)을 따른 것이다.</p> | <p>○全羅道被災尤甚十邑，身役全減，大同收米減五斗，其次諸邑，並量減。因監司李師命狀請也。</p>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10월 9일(임오) 3번째기사</p> | <p>부수찬(副修撰) 목임일(睦林一)이 상소하여 진연(進宴)을 정지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논하여 말하기를,</p> <p>“내년은 자의 대비(慈懿大妃)의 회갑(回甲)이 되는 해입니다. 민간의 미천한 백성도 부모의 회갑이 되면 술을 거르고 음식을 장만하여 친족을 모아 경하하니, 이는 곧 인정상 그만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장만하고 거창하게 준비하지 않는 잔치라면, 민생을 걱정하고 흉년을 근심하는 뜻에 또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내년엔 또 흉년이 든다면 끝내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으시려 하십니까?”</p> <p>하고, 또 정지호(鄭之虎)의 관작을 추탈하는 것이 그르다는 것을 논하여 말하기를,</p> <p>“추증(追贈)에 관한 것은 오로지 남한 산성에서의 호종(扈從)에 대한 공로인</p> | <p>○副修撰睦林一上疏，論停宴之不可曰：</p> <p>明年適當慈懿大妃回甲之年。閭巷小民，當父母回甲之歲，猶且釃酒設饌，聚族而慶之，此乃人情之所不能已者。既非豐亨豫大之舉，則亦何妨於憂民隱凶之意乎？設令明年又不稔，其將遂廢不行乎？</p> <p>又論鄭之虎追奪之非曰：</p> <p>追贈一款，專以南漢扈從之勞，而強爲贅語，至請追奪，噫嘻！亦太甚矣。</p> |

| | | |
|---|---|---|
| | <p>데, 쓸데없는 말로 억지를 부려 추탈을 청하기에 이르니, 아! 역시 너무 지나칩니다.”</p> <p>하고, 또 아뢰기를,</p> <p>“과방(罷榜)에 대한 논란으로 오늘날 일대 소란판이 벌어졌으니, 이것이 무슨 처사입니까? 회시(會試)에 따라 들어온 사람이 이미 현장에서 많이 잡혔으니, 일일이 적발되었는지를 또한 알 수가 없다면 그 방을 그대로 두는 것은 어찌 구차한 노릇이 아닙니까?”</p> <p>하였다. 이에 답하기를,</p> <p>“상수(上壽)에 예(禮)는 두 자전(慈殿)의 재앙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진휼하는 지극한 뜻을 우러러 본받아 겨우 이제야 물린 것이니, 지금 다시 논의하기는 어렵다. 정지호의 추탈에 대한 주장은 사실 너무 지나쳤고, 과방에 대해서는 그 말이 온당한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p> <p>하였다.</p> | <p>又曰：</p> <p>罷榜之論， 今日一大鬧場， 是何舉措也？ 會試隨從， 既多現捉， 一一摘發， 亦未可知， 則仍存其榜， 豈不苟且乎？</p> <p>答曰：“上壽之禮， 仰體兩慈殿懼災恤民之至意， 纔已退行， 今難更議。 鄭之虎追奪之論， 實涉已甚。 而罷榜一款， 予未知其穩當也。”</p>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10월 12일(을유) 1번째기사</p> | <p>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이 상소하여, 각도의 전세(田稅)로 받아들이는 콩을 감하고 공신(功臣)의 묘비 건립에 부역하는 백성을 징발(徵發)하는 명을 도로 중지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전세(田稅)로 받는 콩은 특령으로 모두 감하고, 부역 일꾼은 사정을 헤아려 수효를 감하도록 하겠다고 비답하였다. 지난날 함경도(咸鏡道) 위에는 한전(旱田)의 재(災)에 세납(稅納)을 면제해 주지 아니하자, 대간(臺諫)과 경연(經筵)의 대신들이 각도에도 전재(田災)에 모두 세납을 면제해 주기를 청하니, 묘당에서 이를 가로막아 다만 전재를 입은 고</p> | <p>○乙酉/左議政閔鼎重上疏， 請減各道田稅大豆， 還寢功臣墓碑役民調發之命。 上答以稅豆， 特令全減， 役軍參酌減數。 先是， 咸鏡一道外， 不給旱田災。 臺諫、筵臣請竝給諸道田災， 而廟堂防塞之， 只許被災邑分輕重， 大豆或減一斗， 或減二斗。 金錫胄請於</p> |

| | | |
|--|--|--|
| | <p>을만 허가하여, 경중에 따라 나누어서 콩을 혹은 1두, 2두를 감하였던 것이다. 김석주가 고(故) 평성 부원군(平城府院君) 신경진(申景禛)의 집에서 비(碑)를 운반할 때에 부역 일꾼 1천 명을 뽑아 주기를 청하였으므로, 민정중은 이를 말한 것이다.</p> | <p>故平城府院君申景禛家運碑時，調給役夫千名，故鼎重言之。</p>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10월 14일(정해) 2번째기사</p> | <p>임금이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송시열(宋時烈)이 서울 근처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수찰을 내리며 승지를 보내어 당부하니, 송시열이 명을 받들어 도성으로 들어와 대궐에 나아왔다. 임금이 특별으로 숙배(肅拜)를 면제하고 인견(引見)하여 기뻐하는 뜻을 말씀하며 머물러 있기를 매우 간곡하게 권하였으나, 송시열은 사퇴(辭退)한 후, 이어 지나온 길에서 본 백성들의 굶주린 상황을 아뢰며, 지성으로 사랑하고 진휼하기를 청하였다. 또 공주(公主)의 저택이 완공된 후에 비로소 대간의 계청을 윤택한 것은 성실한 마음에 결함이 있다고 아뢰니, 임금이 깊이 생각하겠다고 비답하였다. 이어 선운(宣醞)을 내리고 음식물과 땃감을 넉넉하게 주도록 명하였다.</p> | <p>○上聞領府事宋時烈來到近畿，下手札，遣承旨諭之。時烈承命入城，詣闕，上特命除肅拜，引見諭以欣喜之意，仍勸留甚懇。時烈辭謝訖，仍陳歷路民人飢饉之狀，請至誠愛恤。又陳主第完役之後，始允臺啓，有欠誠實之意，上答以體念，仍命宣醞，且優給食物柴炭。</p>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10월 21일(갑오) 3번째기사</p> | <p>임금이 호위하는 장병들이 한데서 밤을 새우고 있으므로 따뜻한 술을 먹이고 거적자리를 내렸다. 이어 각 군문(軍門)에서 쌀과 돈을 내려 주도록 하였는데, 경신년(4026)의 예(例)와 같게 하였다.</p> | <p>○上以扈衛將士徹夜露處，饋溫酒、賜空石，仍令各其軍門，題給米錢，如庚申年例。</p>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10월 28일(신축) 2번째기사</p> | <p>우의정(右議政) 김석주(金錫胄)가 입대(入對)하여 아뢰기를, “신은 일찍이 성상께서 승지를 자주 접견하시라는 뜻으로써 아뢴 적이 있습니다. 듣건대 근래에 승지를 불러 보시고 옥당(玉堂)의 진강(進講)을 겸해서 행하게 하신다고 하니, 이는 선조(先朝) 4032)가 오랫동안 병중에 있어서 경연을 열 수 없었으므로 승지를 입시케 하여 겸해서 행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은 경연의 진강(進講)이 자주 열리고 있는데, 또 공무를 가지고 입시할 때 진강을 병행하려고 한다면, 군신(君臣)이 다 경연에 전념할 수 없게 될 것입니</p> | <p>○右議政金錫胄請對言：“臣曾以頻接承旨之意仰達。聞，近來引接承旨，兼行玉堂進講。蓋先朝長在違豫，不得開筵，故因承旨入侍而兼行矣。今則講筵既已頻開，又欲竝行於持公事入侍之時，則彼此俱不專一經筵。暇日召接承旨，則可不至兩妨矣。”上可之。錫胄又言：“璽賊凶謀情節，比器</p> |

| | | |
|--|---|---|
| | <p>다. 한가한 날 승지를 불러 보신다면 두 가지에 방해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김석주가 또 아뢰기를,</p> <p>“역적 허세의 역모한 정황이 심기원(沈器遠)4033) 에 비하여 더욱 불측한데도 다만 고발한 자가 상변(上變)에 급해서 도당을 자세히 탐지하지 못하여 여태 다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범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염려하여 모조리 엄하게 다스린다면 남용하는 걱정이 없지 않을 것이고, 만약 옥정(獄情)을 밝히지 못한 것을 가벼이 논의하여 쉽게 풀어 준다면 이 역시 역적을 엄하게 토벌하는 뜻이 아닙니다. 드러난 역적의 공초(供招)에 따라 정적(情跡)이 의심스러운 자는 진실로 용서할 수 없지마는, 저들이 때를 잃은 무리라 하더라도 역시 사대부니 어찌 모두 역모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모두 의혹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어 스스로 안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진정시키는 방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심재(沈粹)는 비록 재능은 없으나 스스로 근신하던 사람으로서, 지난날 진교(陳橋)의 설(說)4034) 을 들어 윤휴(尹鑄)를 드러내어 배척한 일로써 좋은 벼슬을 하는 데에 방해를 당하였으니, 이 사람은 진실로 거두어들여야 마땅한데도 근래 대간에서 거듭 탄핵하니, 이는 너무 과격하므로 억제하는 것이 옳겠습니다.</p> <p>목내선(睦來善)은 성격이 비록 각박하고 급하지만 행신은 청간(淸簡)하며, 과거 이조(吏曹)에 있을 때 사람 쓰는 것은 비록 공정하지 않았으나 호조(戶曹)나 제거(提舉) 각사(各司)의 장관에는 직책을 가장 잘 처리할 것이니, 육경(六卿)에 빈 자리가 생기면 마땅히 거두어 쓸 만합니다. 목임일(睦林一)의 소는 고의로 저지른 죄에서 나왔으나, 또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어 쓰는 것이 옳습</p> | <p>遠尤叵測，而但告者急於上變，不能詳探徒黨， 尙未斯得。 若以漏網爲慮，一切嚴治，則不無濫及之患。 若以獄情未明，輕議疏釋，則亦非嚴討之意。 現出賊招情迹可疑者， 則固不可容恕，而彼失時之輩，亦是士夫，豈皆盡入於逆謀乎？ 卽今學懷疑懼，不能自安，不可無鎮定之道也。 沈粹雖無才能，自是謹慎之人， 向以陳橋之說， 直斥尹鑄， 見枳淸路， 此人固宜收拾。 而近者臺諫重加彈劾， 此甚過激， 宜加裁抑。 睦來善性雖刻急， 持身淸簡。 向在銓曹， 用人雖不公， 判度支及提舉各司， 最善舉職。 六卿有窠， 宜可收用。 睦林一之疏， 出於故犯， 亦宜蕩滌用之。 洪宇遠、李袤竄謫多年， 朝暮將死， 亦宜量移， 或減等。” 上許以所論切實。 宇遠等事， 待獄事究竟， 問於他大臣處之。 錫胄又言：“今日講究， 惟在節省， 而若無大變通， 終歸無益。 統計各道田稅大同軍布之實數， 分作十四分， 以十三分爲十三朔所用之需， 其餘一分， 別爲規外策應之資， 每朔以次取用， 絕勿踰月引用， 一切堅守， 無或撓改， 則猶可以支過一歲</p> |
|--|---|---|

| | | |
|--|--|---|
| | <p>니다. 홍우원(洪宇遠)·이무(李袤)는 여러 해 동안의 유배로 곧 죽게 되었으니, 역시 양이(量移)4035) 하거나 감등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은 그 주장이 절실하다고 인정하며, 홍우원 등의 일은 옥사(獄事)가 결말(結末)되기를 기다려 다른 대신에게 물어보고 처리하도록 하였다. 김석주가 또 아뢰기를,</p> <p>“현재 강구해야 할 것은 오직 국가의 경비를 절약하는 데에 있으니, 만약 큰 변통이 없다면 끝내 무익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각도의 전세(田稅)·대동미(大同米)·군포(軍布)의 실제 수량을 모두 계산하여 14등분으로 나누어, 13등분은 13개월간의 소용 물자로 쓰고 그 나머지 1등분은 별도로 두어, 규정 외의 소용에 따라 쓰는 물자로 하여 매달마다 이에 따라 쓰되, 절대로 다음달 것을 당겨 쓰지 말도록 하고 한결같이 철저히 지키어 혹시라도 고치는 일이 없다면, 그래도 한 해를 지탱하여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이 당시 진언(進言)하는 사람들은 모두 경비의 절약만을 앞세워, 줄이고 줄여 덜어내도록 하였으나 끝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는데,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방책을 얻었으나 저축한 것이 부족하여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다.</p> | <p>矣。”上可之。是時，進言者皆以節省爲先，而略略裁減，終無實效。此言最得要道，而蓄儲不足，竟不得行焉。</p>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10월 30일(계묘) 1번째기사</p> | <p>임금이 비망기를 내려 호남(湖南)의 삭선(朔膳)4036) 은 양 자전(慈殿)의 묵외에는 내년 봄까지 봉납(捧納)을 정지하게 하였는데, 이는 호남이 재해를 입은 것이 더욱 혹심했던 까닭이다</p> | <p>○癸卯/上下備忘，湖南朔膳，兩慈殿外，限明春停捧，蓋以湖南被災尤酷故也。</p> |
| <p>숙종 13권, 8년(1682)</p> | <p>통신사(通信使) 윤지완(尹趾完) 등이 왜국(倭國)에서 돌아와 동래(東萊)에 도</p> | <p>○通信使尹趾完等自倭國還，泊東萊。</p> |

| | | |
|--|--|---|
| <p>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11월 7일(경술) 4번째기사</p> | <p>착하여, 먼저 연로(沿路)의 견문(見聞)과 약조(約條)를 거듭 밝힌 일들을 치계(馳啓)하기를,</p> <p>“치계(致祭)하지 못하게 한 한 가지 일은, 관백(關白)이 말하기를, ‘인국(隣國)의 사신이 우리의 능침에 치제하는 것은 사리에 부당하니, 치제하지 말라는 뜻을 조선에 통보하도록 하라.’고 하니, 집행(執政)의 무리들이 간(諫)하기를, ‘인국에서 치제하여 주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된 일이고, 여러 대에 걸쳐서 지켜 온 예(例)이니, 없앨 수 없습니다.’ 하자, 관백이, ‘이미 통보하고서 바로 다시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고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 합니다.</p> <p>관백이 위(位)를 이어받게 된 곡절에 대하여 물었더니, 답하기를, ‘전번의 관백이 후사(後嗣)를 정하지 못하고 죽었으므로, 집행(執政)들이 이를 숨기고 관백의 죽음을 발표하지 않고, 처음에는 관백의 조카를 세우려고 하였으나, 관백의 여러 숙부(叔父)와 아우들이 일을 꾸미지나 아니할까 두려워하여, 다시 황제의 세째 아들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관백에게는 딸 하나가 있는데, 권세가 매우 당당하고 또 그의 무리들도 많습니다. 그 딸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나는 딸자식이기 때문에 위(位)를 이을 수는 없겠지만, 마땅히 내스스로 가려서 세울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지금의 관백을 끌어들여 세우고, 자기의 자식을 약군(若君)으로 삼았습니다. 관백이 이미 양자를 세우고, 집행들의 죄를 논하여 파면시켜 백성으로 삼으니, 그 사람들은 스스로 목을 찢러 죽거나, 대부분 스스로 죽음을 택하였으므로, 그들의 아들에게 승습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p> <p>새로 받은 인(印)과 책봉문(冊封文)을 달라고 하여 보았더니, 지금의 왜제(倭帝)는 원씨(源氏)의 족계(族系)이고, 이른바 왜제의 세째 아들이라고 한 사람</p> | <p>先以沿路聞見及約條申明事馳啓曰：“不爲致祭一款，關白以爲：‘隣國使臣，祭我陵寢，事理不當，勿爲致祭之意，通於朝鮮。’ 報政輩諫曰：‘隣國致祭於我有光，累世遵行之例，不可廢墜。’ 關白以纔已通報，旋又更改爲難，而不聽云。 問關白嗣位曲折，則答以‘前關白不定後嗣而死，執政秘不發喪。 初欲立關白姪子，而爲有關白諸父與弟，恐惹事端，復欲立皇帝第三子。 關白有一女，權勢甚盛，且多黨與，其女大怒曰：「我以女子，雖不得嗣位，當自擇而立之。」 遂援立今關白，仍以渠子爲若君。 關白既立後，論其執政之罪，革職爲民，其人自刎而死，多其自死，許其子承襲。’ 云。 討得新印小冊子披閱，則時倭帝與源氏族系，所謂倭帝第三子云者，卽家光之外孫。 今之若君，又是前關白之外孫，則以外孫而承統，國俗不以爲怪矣。 又有可疑者，諸源之下，列書其子女，女則俱書夫名，獨於前關白之女，不書夫名。 或者以其子爲若君之故，諱而不書耶？ 其俗，同姓至親自相嫁娶。 或者新關白，素與姪女有私，其子是關</p> |
|--|--|---|

| | | |
|--|---|--|
| | <p>은 바로 가광(家光)의 외손자이며, 지금의 약군(若君)은 또한 관백의 외손자였습니다. 그러나 외손으로 가통(家統)을 잇는 것을 그 나라 풍속에서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습니 다. 또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 것은, 여러 원씨의 아래에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죽 적혀 있었고, 딸들에게는 남편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는데, 유독 관백의 딸에게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 다. 어찌면 자기의 자식으로 약군을 삼았기 때문에 남편의 이름을 숨기고 쓰지 않은 것이거나, 그 나라 풍속이 동성(同姓)의 아주 가까운 친족 사이에도 자기들끼리 서로 혼인하므로, 혹시 새로 된 관백이 본시 조카딸과 정을 통하고 지낸 사이로, 그의 아들이란 사람은 관백에게서 태어난 것인지, 그 사이의 일들이란 참으로 억측해 내기 어렵습니 다.</p> <p>신 등이 강호(江戶)에 머물고 있을 때, 주방(廚房)에서 심부름하는 미천한 왜인(倭人)이 있어서, 통사(通事)4057) 를 시켜 은밀히 ‘관백이 새로 들어선 데에 대한 여망(興望)이 어떤가?’ 묻게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관백은 본시 주색(酒色)에 빠져 있던 사람으로 오랫동안 창가(娼家)에 있었는데, 관백이 되어서도 옛날의 행실을 고치지 못하여, 금년 3월에 사냥하러 나갔을 때 사녀(士女)들이 구경을 하였었는데, 어떤 한 사족(士族)의 부인이 금빛으로 장식한 병풍을 둘러치고 붉은 장막을 드리우고서, 침향(沈香)을 피우고 앉아 있었소. 관백이 그의 자색(姿色)이 아름다움을 보고서는, 사치를 금한다는 핑계를 대어 그의 남편을 귀양보내고, 그 부인을 궁중에 들여 앉히니,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고 있소.’ 하였습니 다.</p> <p>지난해 이전에는 흉년이 거의 10년에 걸쳐 들어, 금년 봄과 여름에는 굶어죽은 시체가 길바닥에 널려 있었는데, 이런 판국에 수신사(修信使)를 청하여 오게 했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나라에 원망을 품고 있고, 또 듣자니, 돌림병이</p> | <p>白之所生耶? 其間事狀, 實難臆知。臣等在江戶時, 有廚房給事下倭, 使通事私問關白新立興望如何, 則答曰: ‘關白本以酒色之徒, 長在娼家, 及爲關白, 不改前行。今年三月出獵時, 士女觀光, 有一士族妻, 張金屏, 垂紫幔, 薰沈香而坐。關白見其有姿色, 托以禁奢侈, 竄其夫而納其婦於宮中, 民心不服。’云。去歲以前, 凶荒殆十年, 今年春夏, 則餓莩盈路, 而此時請來信使, 故民皆怨國。且聞癘疫遍熾, 死斃至於六十餘萬, 一歧、對馬兩處, 獨得免云。前日定奪約條事, 臣等見義眞爲人, 不能自主張, 奉行平成昌用事, 其人又不良善, 以口舌相爭, 終恐無成。適有朴再興所親倭人藤成時爲名者, 與成昌親切, 使再興設計, 佯言于成時曰: ‘倭館之犯禁作挈, 前後何限, 而兩件事, 大段可駭, 使臣到江戶, 欲發此事矣。蓋指舊日擲劔於李廷沃及平成太留東萊一年之事也。成時大驚曰: ‘如此則島主將不得免死, 願極力善圖。’自後諸倭哀乞不已。將至江戶, 臣等始令再興, 言其斟酌停止之意, 又言今後嚴立制禮等事, 顯有</p> |
|--|---|--|

| | | |
|--|---|---|
| | <p>전국을 휩쓸어 죽은 자가 60여만 명에 이르렀다는데, 일기도(一歧島)와 대마도(對馬島) 두 곳만이 면하였다고 합니다.</p> <p>지난날에 맺은 조약에 대해서는, 신들이 의진(義眞)을 만났더니, 그 사람됨이 자기의 주장(主張)을 내세우지 못하고, 봉행(奉行)4058) 평성창(平成昌)이 권세를 부리고 있었는데, 그사람 또한 어질고 착하지 못하여, 구설(口舌)로 서로 다투다가는 마침내 성과가 없을 것 같아서, 마침 박재흥(朴再興)이 친하게 지내는 왜인 등성시(藤成時)라는 자가 있어 평성창과 친절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므로, 박재흥을 시켜 피를 부려 등성시에게 거짓으로 말하게 하기를, ‘왜관(倭館)에서 법금(法禁)을 범하고 소란을 피운 것을 전후(前後)로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마는, 지난번의 두 가지 사건만은 대단히 놀라왔던 일이므로, 사신이 강호(江戶)에 이르게 되면 이 일을 말하러 한다.’ 하였는데, 이것은 지난날 이정옥(李廷沃)에게 칼부림을 하고, 평성태(平成太)가 동래(東萊)에 1년 동안 머물렀던 일을 가리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등성시는 깜짝 놀라며 말하기를, ‘그렇게 되면 도주(島主)는 아마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힘을 다하여 잘 도모해 주기 바란다.’고 하더니, 그 뒤부터 여러 왜인들이 애걸(哀乞)하기를 마지않았습니다. 강호(江戶)에 이를 즈음에 신들이 비로소 박재흥을 시켜 참작해서 중지할 뜻을 말하게 하고, 또 이후부터 엄중하게 제례(制禮)를 세운다는 등의 일을 말하였더니, 순종하는 뜻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p> <p>신들이 마도(馬島)4059) 에 돌아와서 봉행(奉行)의 여러 왜인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별차(別差)4060) 를 내보내는 것은 본래 약조(約條)가 아니었는데, 이미 나온 다음에야 접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도답게 지내는 도리가 아니므로, 접대하도록 허락하였던 것인데, 그것이 그만 그릇된 규정[謬規]으로 되어버려서, 이 뒤로는 별차를 내보내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부산관(釜山館)</p> | <p>順從之意。 臣等還到馬島， 招奉行諸倭言： ‘別差出送， 元非約條， 而既來後， 不爲接待， 非相厚之道， 故許令接待， 仍成謬規。 東萊近甚凋弊， 決難支當， 此後則別差勿爲出送。 釜山館倭， 闌出作挈， 至有可駭之事， 嚴立制禮， 如有犯禁者， 自東萊府直通島主， 使之嚴處， 以防此弊。’ 此兩事， 作爲一札， 列書堂上譯官之名， 仍給奉行輩， 蓋欲得其答書， 以爲考信之地。 又與島主相對， 言其大旨， 使與奉行輩， 相議停當。 其後來示答書， 語甚奸黠， 責而不受， 則平成昌以爲： ‘此是撰書人誤着， 非吾輩本意。’ 仍請構草以示， 故略書大旨以給， 則答書專用其文而裁送矣。 請令廟堂， 分付東萊， 使之依此舉行。 三件事中， 兼帶一款， 元非關重， 緩辭求減， 似涉苟且， 故不爲提起云。” 時左相閱鼎重白上： “約條既已申明條列， 刻碑立之館中， 使往來倭人， 明知禁制， 有所畏戢。” 從之。 於是， 東萊府使南益熏啓聞講定約條四件，</p> <p>其一。 禁標定界外， 毋論大小事， 闌</p> |
|--|---|---|

| | | |
|--|---|--|
| | <p>의 왜인들이 제한한 지역을 마구 나와 소란을 피우는 것이 놀랄 만한 사건이 있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제례(制禮)를 엄히 세워 만일 금법(禁法)을 범하는 자가 있게 되면, 동래부에서 직접 도주(島主)에게 통보하여 엄한 형벌에 처하도록 하여, 이 폐단을 막아야 하겠다.’고 하고서, 이 두 가지 일들을 한 장의 문서로 만들어 당상(堂上)과 역관(譯官)의 이름을 나열해 써서 봉행(奉行)의 무리에게 주고, 그들의 답서(答書)를 얻어 증빙할 수 있는 문서로 삼으려 하였고, 도주(島主)와도 서로 만나서 그 대강의 뜻을 말하여, 봉행의 무리와 타당한 방도를 상의하게 하였는데, 그 뒤 보내 준 답서란 것이 말이 몹시 간고하므로 그것을 탓하여 받지 않았더니, 평성창이 말하기를, ‘이것은 답서를 쓴 사람이 잘못 쓴 것이고, 우리들의 본의가 아니다.’고 하면서, 초를 잡아 보여 줄 것을 청하므로 대강만을 적어서 주었더니, 그 답서란 것이 우리가 써준 그 글을 그대로 다듬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청컨대 묘당(廟堂)에서 동래부에 분부하여 이에 근거를 두어 거행하도록 하소서. 세건의 일 중에서, 겸대(兼帶)4061의 한 조항은, 본시 긴요할 일도 아니고, 눈치를 살피가며 감(減)하여 주기를 말하기가 구차스러운 듯하여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p> <p>하였다. 이때 좌상(左相) 민정중(閔鼎重)이 임금에게 아뢰기를,</p> <p>“약조(約條)가 이미 명백하게 거듭 다져졌으니, 조목들을 열거해 새긴 빗돌을 왜관(倭館) 안에 세워, 오가는 왜인들이 금제(禁制)를 알고 두려워 위축(萎縮)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에 동래 부사 남익훈(南益熏)이 의논하여 정한 약조 네 가지를 계문(啓聞)하였는데,</p> | <p>出犯越者，論以一罪。 其二。 路浮稅現捉之後，與受同施一罪。 其三。 開市時，潛入各房，密相買賣者，彼此各施一罪。 其四。 五日雜物入給時，色吏、庫子、小通事等，倭人切勿扶曳毆打事也。</p> <p>趁差倭在館時，欲以此刻碑立之，差倭平眞幸以一罪太重，非渠所可擅斷，歸稟島主，書送制禮爲言，屢度責諭而不聽，竟背約而歸。 倭人之狡詐變幻，有如是者。</p> |
|--|---|--|

| | | |
|--|---|---|
| | <p>“첫째, 금표(禁標)를 세워 경계(境界)를 정해 놓은 것 외에,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함부로 나와 월경(越境)하는 자는 일죄(一罪)4062) 로 논한다.</p> <p>둘째, 노부세(路浮稅)4063) 로 발각되어 붙잡힌 뒤에는, 준 자와 받은 자에게 똑같이 일죄(一罪)를 시행한다.</p> <p>셋째, 개시(開市) 때 각방(各房)에 잠입(潛入)하여 은밀히 사고 파는 자에게는 피차에 각기 일죄(一罪)를 시행한다.</p> <p>넷째, 닷새마다 잡물(雜物)을 들여보내 줄 때에, 색리(色吏)·고자(庫子)·소통사(小通事) 등을, 왜인은 절대로 끌고 다니며 구타하지 말 것이다.”</p> <p>등이었다. 왜사(倭使)가 왜관(倭館)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것을 새긴 빗돌을 세우려고 하였는데, 왜사 평진행(平眞幸)이 일죄는 너무 중하여 그가 마음대로 단안을 내릴 수 없다며, 돌아가 도주(島主)에게 품하여 제례(制禮)를 써 보내겠다고 말하므로, 여러 차례 책망하며 타일렀으나 듣지 아니하고, 마침내 약속을 어기고 돌아가 버렸다. 왜인들의 교활하고 간사하며 변화가 종잡을 수 없음이 이러하였다.</p> |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11월 12일(을묘) 3번째기사</p> | <p>임금이, 고(故) 참의(參議) 송국택(宋國澤)의 처(妻)가 바로 자전(慈殿)4068)의 외조모(外祖母)로서, 나이가 팔순(八旬)이 넘었으므로 남다른 대접이 없을 수 없다 하고서, 본도(本道)에 명하여 의복과 음식물·땀감 등을 넉넉히 보내주도록 하였다.</p> | <p>○上以故參議宋國澤妻， 卽慈殿外祖母， 而年逾八秩， 不可無優異之道， 命本道優給衣資食物柴炭。</p>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p> | <p>대사헌 이단하(李端夏)가 상소하기를,</p> | |

| | | |
|--|--|---|
| | <p>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여도, 비축된 곡식이 탕갈되어 살려낼 방도가 없으니, 이는 진실로 군신(君臣)과 상하(上下)가 마치 수렁과 이슬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구하여야 할 때이다. 그러나 군병(軍兵)은 이미 약간 그 편제를 바꾸었고, 시위(侍衛) 또한 필요 없는 것은 많이 감하였다. 백관의 녹봉을 줄이는 것만은 역시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대하고 두텁게 녹봉을 주라는 뜻이 아니다. 그밖의 변통(變通)할 일들은 묘당(廟堂)에서 품하여 처결하게 하겠다.”</p> <p>하였다. 그 뒤 묘당에서 다시 아뢰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은, 지부(地部)4078) 와 선혜청(善惠廳)으로 하여금 절목(節目)을 의논하여 정하게 하였다.</p> | <p>勅勵朝廷，中外承風，人皆儉約，則民力可省，國儲自裕矣。然必公私交有積儲，雖遇凶歲，國用可繼，民亦可活。臣嘗所達勸獎富民，廣設社會，亦爲是也。</p> <p>上答曰：“爲國陳忠，良用感嘆。連歲大侵，黎民阻飢，積蓄蕩竭，濟活無策，此正君臣上下，如在泥露，一意救民之秋也。然軍兵已少變其制，侍衛又多省冗，百官減稟，亦非忠信重祿之意也。他餘變通事，令廟堂稟處。”其後廟堂覆奏，稅入事，令地部、惠廳，議定節目。</p>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12월 4일(정축) 2번째기사</p> |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특진관(特進官) 민유중(閔維重)·지경연(知經筵) 이단하(李端夏)가 청하기를,</p> <p>“금년의 재감(災減)4147) 은 한결같이 경술년4148) 의 예(例)에 의하여 시행 하소서.”</p> <p>하고, 이어서 용도를 감하고 줄일 몇가지 일들을 품정(稟定)하였다. 또 청하기를,</p> <p>“양서(兩西)4149) 의 대미(大米)4150) 와 소미(小米)4151) 를, 전일에 계청</p> | <p>○御晝講。特進官閔維重、知經筵李端夏請今年災減，一依庚戌年例施行。仍稟定減省數件事，又請兩西大小米，前日啓請運來二萬八千五百餘石外，加得一萬石，以補賑資，上竝可之。先是，端夏以各陵忌辰祭油果及果品所加綵花減去事陳疏。至是又申請，後議大臣，竟從之。</p> |

| | | |
|---|---|--|
| | <p>(啓請)하여 운반해 온 2만 8천 5백여 석 이외에, 1만 석을 더 마련하여 진홀의 자본에 보태소서.”</p> <p>하니, 임금이 모두 옳게 여겼다. 이 앞서 이단하가 각릉(各陵)의 기신제(忌辰祭)에 쓰는 유과(油菓)와 과품(果品)에 첨가하는 채화(綵花)4152) 를 감하여 없애자고 소를 올렸다. 이때에 이르러 또다시 청한 뒤에야 대신들과 의논하고 마침내 그대로 따랐다.</p> |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12월 4일(정축) 3번째기사</p> | <p>공명첩(空名帖)4153) 을 전라도에 팔아 진홀의 자본에 보태도록 허락하였다. 이는 도신(道臣)의 청에 따른 것이다. 대개 공명첩은 60세 이하의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것이 법례(法例)였다. 그러나 흉년이 들어 곡식은 귀하고 응모하는 자는 매우 적어서, 나이와 값을 감하여 50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쌀 여섯 섬[石]을 바치는 자에게 팔도록 하였다.</p> | <p>○許賣空名帖於全羅道，以補賑資，從道臣之請也。 凡空名帖勿許於六十以下，自是法例，而以年凶穀貴，應募者絕少，減年與價，限五十以上，納米六石而賣之。</p>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12월 10일(계미) 1번째기사</p> | <p>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 진홀 제조(賑恤提調) 민유중(閔維重)·이단하(李端夏)·이숙(李翮)·윤계(尹楷)가 청대(請對)하였다. 이 앞서 백관(百官)의 녹봉을 신유년4156) 겨울부터 신축년4157) 의 예(例)에 따라, 삭료(朔料)4158) 로 나누어 주었는데, 호조(戶曹)의 대두(大豆)가 조금 여유가 있어, 금년 여름부터 반록(頒祿)하던 수보다 더 주었다. 민유중 등이 말하기를,</p> <p>“나라의 저축이 이미 탕갈(蕩竭)되었으니, 대두(大豆)도 마땅히 채용의 보충용으로 전환해 들여야 할 것입니다. 청컨대 다시 녹봉을 감하소서.”</p> <p>하였고, 이단하가 청하기를,</p> <p>“왕후 고비(王后考妣)의 사중삭(四仲朔)4159) 과 절일(節日)·기제(忌祭)에 소</p> | <p>○癸未/左議政閔鼎重、賑恤提調閔維重·李端夏·李翮·尹楷請對。 先是，百官祿俸，自辛酉冬，依辛丑年例，以朔料頒給，而以戶曹大豆稍有餘裕，自今夏依頒祿數加給矣。 維重等以國儲既已蕩竭， 大豆亦當入於推移補用中，請還減之。 端夏請王后考妣四仲朔及節日忌祭所用片脯一條， 代定價二斗米，上竝從之。 維重請減其人貢物闕內所供燒木之數曰：“ 大王大妃殿及萬壽殿各有所入，係是疊供。 世子宮所供，仍存於登極之後，昭顯世子及仁宣</p> |

| | | |
|--|--|---|
| | <p>용되는 편포(片脯) 일조(一條)의 값을 쌀 두 말 값으로 정하소서.”</p> <p>하니, 임금의 모두 그대로 따랐다. 민유중이 기인(其人)4160)의 공물(貢物) 중 궐내(闕內)에 바치는 장작[燒木]의 수를 감해 줄 것을 청하여 말하기를,</p> <p>“대왕 대비전과 만수전(萬壽殿)에 각기 들어가는 것은 중첩된 공상(供上)이며, 세 자궁에 바치는 것이 등극(登極)한 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고, 소현 세자(昭顯世子)와 인선 왕후(仁宣王后)4161)에게 바치는 것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으니, 이 또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p> <p>하고, 이어 재감(裁減)할 숫자를 적은 단자(單子)를 올리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인선 왕후의 나인(內人)으로 지금도 생존자가 있으므로 아직은 차마 없앨 수 없으며, 그밖에 들어가는 것들은 모두가 궐내의 쓰임새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자를 자세히 보고 나서 참작해 처리하겠다.”</p> <p>하였다. 이단하가 말하기를,</p> <p>“인선 왕후의 궁녀(宮女)는 모두 내보내거나, 혹은 다른 궁인(宮人)을 뽑아 들 일 때에 여기의 궁인으로 매우도록 하시고, 새로 뽑는 일은 다시 없게 하시면 저절로 줄어들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 말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나,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p> | <p>王后所供， 尚今仍存， 亦未知其由也。” 仍進裁減單子， 上曰：“仁宣王后內人尙有存者， 故姑不忍罷。 他餘所入， 皆以闕內用度不足故也。 單子詳覽後， 當參酌處之。” 端夏言：“仁宣王后宮女竝許放送， 或他宮人揀入時， 以此宮人填數， 勿復新揀， 則自當減額矣。” 上曰：“此言非不美， 而事勢不然。” 端夏又以宗廟所薦天鵝， 捕捉甚難， 價本甚多， 而曾有生雁代封之例， 請以生雉代之。 上以事係祭享， 問議諸大臣。 皆以爲：“天鵝乃太祖大王所嘗進御者， 姑許代封， 不可不待年復舊。” 上可之。 仍召見下直兵使、 守令面勅之。 又命諸承旨， 持公事入侍聽斷。 左副承旨趙持謙請速從全翊戴、 金重夏之啓， 以快人心。 諸承旨皆繼之， 同副承旨徐文重以諫院、 玉堂尙不合辭共爭爲非， 上皆不聽。</p> |
|--|--|---|

| | | |
|--|--|--|
| | <p>하였다. 이단하가 또 말하기를,</p> <p>“종묘에 천신(薦新)하는 고니는 잡기가 매우 어려워 값이 아주 비쌉니다. 지난날 산 기러기를 대신 바친 예가 있었으니, 산 꿩으로 대신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제향(祭享)과 관계되는 일이므로 여러 대신들에게 문의하였다.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p> <p>“고니는 태조 대왕께서 옛날에 잡수셨던 것이므로, 우선은 대신 바치게 하는 것을 허락하더라도, 불가불 풍년을 기다려 다시 복구하여야 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임금이 이어 하직하러 온 병사(兵使)와 수령(守令)을 불러보고, 직임에 나아가 힘쓰라고 일렀다. 또 여러 승지들에게 명하여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시(入侍)하여 재가를 받도록 하였다. 좌부승지(左副承旨) 조지겸(趙持謙)이 청하기를,</p> <p>“전익대(全翊戴)와 김중하(金重夏)에 대한 계(啓)를 속히 따르시어, 사람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소서.”</p> <p>하자, 여러 승지들이 모두 그것을 따라 말하였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서문중(徐文重)이 말하기를,</p> <p>“간원(諫院)과 옥당(玉堂)에서 아직까지 말을 똑같이 하여 함께 다투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p> | |
|--|--|--|

| | | |
|--|--|---|
| | <p>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p> | |
| <p>숙종 13권, 8년(1682) 임술 / 청 강희(康熙) 21년) 12월 28일(신축) 1번째기사</p> | <p>임금이 하교하기를,</p> <p>“팔도[八路]가 이처럼 흉년을 만났으니, 모든 구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각 아문(衙門)의 재화(財貨)도 예전의 예(例)에 따라 참작해서 가져다 사용해야 할 것이나, 내사(內司)4179) 에는 연이은 흉년으로 인하여 세입(稅入)이 크게 줄어, 진실로 전용(轉用)하여 덜어 낼 만한 방도가 없다. 비록 사세가 그렇게 된 데서 연유한 것이지만,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이 일체가 되어야 한다.’4180) 는 의리에 어긋나니, 그 중에서 조금 여유 있게 남은 호초(胡椒)4181) 1백 말, 단목(丹木)4182) 1천 근(斤), 백반(白礬) 3백 근, 호피(虎皮) 10령(令)을 혜청(該廳)에 특별히 내려 진휼의 비용에 조금이나마 보태려 한다.”</p> <p>하였다.</p> | <p>○辛丑/上下教曰：“當此八路飢荒之日，凡所拯濟之方，靡不用極，各衙門財貨，亦依舊例，參酌取用，而內司連因凶歉，稅入大縮，實無推移除出之路。雖緣事勢之適，然實乖宮府一體之義。其中遺儲稍裕者，胡椒一百斗、丹木一千斤、白礬三百斤、虎皮十令特下該廳，以補賑需之萬一。”</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1월 3일(을사) 2번째기사</p> | <p>대신(大臣)과 비변사(備邊司)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이 하늘을 본받아서 때를 관찰하고 학문에 힘써 다스리기를 도모하는 뜻으로써 진계(陳戒)하니, 임금이 가상하게 여겨 받아들였다. 또 동인협공(同寅協恭)4183) 의 뜻으로써 우리러 힘쓰도록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사사롭다[私]는 한 글자가 오늘날의 고치기 어려운 폐단이 되었으니, 마땅히 임금과 신하가 서로 경계해야 할 것이다. 대신들이 이미 힘쓰는 것이 있으니, 나도 마땅히 힘쓰도록 하겠다.”</p> | <p>○引見大臣、備局諸臣。左議政閔鼎重以體天、觀時、典學、圖治之意陳戒，上嘉納之。又以同寅協恭之意仰勉，上曰：“一私字爲今日痼弊，正宜君臣交相儆戒。大臣既有所勉，予亦當勉之。”鼎重請遞李端夏憲長，俾專賑事。時，端夏被特授賑任，而遭人言歸鄉，屢上章不來。上許令姑遞，下別諭促召。因戶曹判書尹堦言，命</p> |

하였다. 민정중(閔鼎重)이 또 이단하(李端夏)의 헌장(憲長)4184 직임을 체차(遞差)하여서 그로 하여금 오로지 진휼(賑恤)하는 일만 맡게 하도록 청하였다. 그 때에 이단하(李端夏)는 특별히 진휼하는 직임을 제수(除授)받았으나 사람들의 평하는 말을 들었으므로 향리(鄉里)로 돌아가서 여러 번 소장(疏章)을 올리고는 오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우선 체차(遞差)하도록 허락하고 특별한 유시(諭示)를 내려서 재촉하여 불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윤계(尹堦)의 말로 인하여 여러 군문(軍門)에서 만드는 월과 군기(月課軍器)4185 를 정지할 것을 명하였다. 그리고 상방(尙方)4186 의 초피(貂皮)의 무역과 내주방(內酒房)의 술과 쌀의 공급(供給)은 모두 신해년(4187)의 예(例)를 따라 반을 줄이게 하였다. 또 가출(加出)했던 대전 별감(大殿別監) 8명을 줄이고, 가정(加定)했던 내포(內圃)의 복마(卜馬) 8필을 줄였으며, 모든 여러 공신(功臣)의 적장자(嫡長子)의 인원 15명을 줄이고, 훈부(勳府)의 관리에게 주는 급료(給料)의 규정을 1년으로 줄였고, 성균관(成均館)의 시탄(柴炭)의 값과 내의원(內醫院)의 청대죽(靑大竹)은 모두 적당히 줄이게 하였다. 이는 대개 흉년이기 때문에 절약(節約)하고 감생(減省)을 한 것인데 유독 긴급(緊要)하지 않은 내관(內官)이나 무예 별감(武藝別監)의 수효를 줄이도록 한 청(請)은 윤택하지 아니하였다. 민정중(閔鼎重)이 말하기를,

“김익훈(金益勳)을 천거하여 어영 대장(御營大將)을 제수하게 한 것은 곧 신 등이 한 일이었습니다. 김익훈(金益勳)은 일찍이 총융사(摠戎使)를 지냈기 때문에 그러한 이력(履歷)으로써 의논하여 천거한 것이니, 신 등이 어찌 사적으로 좋아함이 있어서이겠습니까? 이제 김익훈(金益勳)이 증대한 논박(論駁)을 받고 있어 이치로 보아서 그 직책을 수행하기가 어려우니, 마땅히 변통(變通)을 내려 주셔야 합니다.”

停諸軍門所造月課軍器、尙方貂皮之質、內酒房酒米之供、竝依辛亥年例減半。又除大殿別監之加出者八名、減內圃卜馬之加定者八匹、省諸功臣嫡長之員十五、除勳府吏給料之規、一年成均館柴炭價、內醫院靑大竹、皆從量減。蓋以年凶節省也。獨於不緊內官、武藝別監減數之請不許。鼎重曰：“金益勳之薦授御將、卽臣等事。益勳曾經摠戎使、故以履歷議薦、臣等豈有私好也？今益勳被此重駁、理難供職、宜賜變通。”上許之。蓋益勳之薦爲將任也、鼎重初頗持難、終不能違異、故不安於臺啓、如是引咎云。正言俞命一請以全翊戴罪狀、下詢筵臣。鼎重曰：“三司所爭、乃執法之論也。當初翊戴等勘罪時、臣已言其不可不正法矣。誣告者死、在法當然。翊戴等豈有可生之理乎？情狀比重夏、尤爲絕痛。”諸臣亦皆言翊戴誣告昭然、其罪難貸。上曰：“重夏聞有上變、慮秀胤等之與璽賊相連、以此懼慟來告、而秀胤果有誣上不道之言、則其情不無可恕、不可直用反坐之律。而翊戴與直自上變者有間、當初貸死者以此、而公

| | | |
|--|--|-----------------------------|
| | <p>하니, 임금이 윤희하였다. 대개 김익훈(金益勳)이 천거를 받아 대장(大將)의 소임을 맡게 되었을 적에 민정중이 처음에는 자못 지난(持難)하였으나, 마침내 〈임금의 뜻을〉 어길 수가 없었던 까닭에 대간(臺諫)들의 아뢰에 불안하여서 이와 같이 인책(引責)한 것이다. 정언(正言) 유명일(兪命一)이 전익대(全翊戴)의 죄상을 경연(經筵)의 신하들에게 하문(下問)할 것을 청하였다. 민정중(閔鼎重)이 말하기를,</p> <p>“삼사(三司)에서 논쟁(論爭)하는 것은 곧 법을 준수(遵守)하려는 의논입니다. 당초에 전익대(全翊戴) 등의 죄를 취조하여 정할 때에 신은 이미 법대로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였었습니다. 무고(誣告)한 자를 죽이는 것은 법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니, 전익대(全翊戴) 등이 어찌 살게 될 이치가 있겠습니까? 그 정상(情狀)은 김중하(金重夏)와 비교하면 더욱 절통(絶痛)합니다.”</p> <p>하고, 여러 신하들도 모두 전익대(全翊戴)가 무고(誣告)한 것이 분명하니 그 죄는 용서하기가 어렵다고 말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김중하는 상변(上變)이 있음을 듣고 〈낙서령(洛西令)〉 이수윤(李秀胤) 등이 허새(許璽)의 도적과 서로 연결(連結)될 것을 염려하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겁을 내어 와서 고하였었는데, 이수윤(李秀胤)이 과연 임금을 속이는 부도(不道)한 말이 있었으므로, 그의 정상은 용서하지 않을 수 없으니, 바로 반좌(反坐)4188)의 율(律)을 쓸 수는 없다. 그리고 전익대(全翊戴)는 바로 상변(上變)한 자와는 차이가 있다. 당초에 사형(死刑)을 용서한 것은 이 때문이었는데도 공의(公議)가 오래 될수록 더욱 울발(鬱勃)하므로 끝내 용서할 수가 없으니, 특별히 엄하게 국문(鞫問)하여 처단(處斷)하도록 하라.”</p> | <p>議久而愈鬱，終不可容貸，特爲嚴鞫處斷。”</p> |
|--|--|-----------------------------|

| | | |
|---|---|---|
| | 하였다. |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1월 5일(정미) 5번째기사</p> | <p>좌승지(左承旨) 어진익(魚震翼)이 영부사(領府事) 송시열(宋時烈)에게 전유(傳諭)하고, 돌아와서는 송시열(宋時烈)이 우거(寓居)하는 곳의 황량(荒涼)한 모양을 갖추어 아뢰니, 임금이 본도(本道)에 명하여 음식물(飮食物)과 시탄(柴炭)을 넉넉히 주게 하였다.</p> | <p>○左承旨魚震翼傳諭于領府事宋時烈，既還具奏時烈所寓荒涼之狀，上命本道優致食物柴炭。</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1월 10일(임자) 1번째기사</p> | <p>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과 진휼 제조(賑恤提調) 민유중(閔維重)과 호조판서(戶曹判書) 윤계(尹埜)가 재생(裁省)에 대한 품정(稟定)의 일로써 청대(請對)하여 각각 다른 단자(單子) 네 건을 올리었으니, 액정(掖庭)4196)의 예속(隸屬)들로부터 각사(各司)에 이르기까지 요포(料布)의 물종(物種)들이 재감(裁減)된 것이 많았다. 민유중(閔維重) 등이 또 다섯 군문(軍門)의 군관(軍官)의 군사가 없는 장관(將官)의 수효가 넘치는 자를 헤아려서 감소시키도록 청하였다. 이 뒤에 장신(將臣)들이 말하기를,</p> <p>“만과(萬科)를 설치한 후에 중외(中外)의 무사(武士)들은 관작(官爵)에 한정(限定)이 있어 수용(收用)할 수 없으니, 다만 각 군문(軍門)의 수용(收用)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갑자기 그들을 혁파(革罷)하면 그들의 마음을 잃을까 염려됩니다.”</p> <p>하니, 수효를 감(減)하지 말고 본군문(本軍門)으로 하여금 참작하여 반만 급료(給料)를 주도록 명하였다. 민유중(閔維重) 등이 또 말하기를,</p> <p>“호남(湖南)의 속오군(束伍軍)4197) 으로서 스스로 조총(鳥銃)을 갖춘 자에게 복호(復戶) 1결(結)을 주고, 조총이 없는 자에게는 50부(負)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술년(198)의 재감(裁減) 때에 〈조총을〉 스스로 갖춘 자는 50부(負)로 감하였고, 조총이 없는 자는 제감(除減)하였습니다. 대개 당초에</p> | <p>○壬子/左議政閔鼎重、賑恤提調閔維重、戶曹判書尹埜以裁省稟定事請對，以別單四件進之。掖庭隸屬，以至各司料布物種，多所裁減。維重等又請量減五軍門軍官及無軍將官數濫者。是後，將臣等以爲：“萬科後，中外武士官爵有限，不能收用，只望各軍門之收用。今若猝罷，恐失其心，命勿減，令本軍門，參半給料。”維重等又以爲：“湖南束伍，自備鳥銃者，給復一結，無銃者給五十負，而庚戌裁減時，自備者減五十負，無銃者除減矣。蓋當初因鳥銃之稀貴，募令給復自備，而今則京外所打造者，足可以分給給復之規，宜一切革罷。”上從之。是後，維重以湖西亦有此規，又白罷之。維重又以新出身之分防西北者，當此飢凶，主客俱弊，竝令依前例，以米五石，輸納江都。且濟用監提調，例以戶曹參判兼帶，而遞易頻數，不能看檢，下</p> |

| | | |
|--|--|---|
| | <p>조총이 희귀(稀貴)함으로 인하여 백성을 모집하여 복호(復戶)를 주어서 스스로 갖추게 하였던 것이나, 지금은 경외(京外)에서 타조(打造)하는 것이 나누어 주기에 넉넉합니다. 그러니 복호(復戶)를 주는 규칙(規則)을 모두 혁파(革罷)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 뒤에 민유중(閔維重)이 호서(湖西)에도 이 규칙이 있다 하여 또 임금께 아뢰어서 이를 혁파(革罷)하였다. 민유중(閔維重)이 또 말하기를,</p> <p>“새로 출신(出身)한 이로서 서북(西北)을 나누어 막는 자는 이러한 흉년을 당하여 주인(主人)과 객(客)이 모두 피폐(疲弊)하니, 아울러 전례(前例)에 의하여 쌀 5석(石)을 강도(江都)에 수납(輸納)하게 하소서. 또 제용감 제조(濟用監提調)는 예(例)에 따라 호조 참판(戶曹參判)이 겸무(兼務)하고 있는데, 체역(遞易)이 자주 있어서 보살피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리(下吏)들의 농간(弄奸)이 많이 있습니다. 따로 제조(提調)를 차출(差出)하도록 청합니다.”</p> <p>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민유중(閔維重)이 말하기를,</p> <p>“호남(湖南)의 전결(田結)은 작년에 비하여 줄어든 것이 5만여 결(結)에 이릅니다. 그런데 세두(稅豆)를 이미 전부 감면하였으니, 세미(稅米)로서 마땅히 상납(上納)할 것은 2만 1천여 석(石)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를 모두 견감(蠲減)하여 주고 진청(賑廳)의 곡식으로서 본도(本道)에 있는 것을 이 수량에 준하여 상납(上納)하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p> <p>하고, 윤계(尹堦)는 말하기를,</p> | <p>吏多有弄奸，請別出提調，竝從之。 維重曰：“湖南田結，比上年所縮，至五萬餘結，而稅豆既爲全減，稅米所當納不過二萬一千餘石。不若盡爲蠲減，以賑廳米在本道者，準此數上納。”尹堦曰：“正供不可全減。”上從堦言，命半減，以賑米移給。鼎重等又以爲，焜、焜之初配濟州時，朝家命入送湖南米九十餘石，而今移陸地，不宜繼給，命參酌減給。</p> |
|--|--|---|

| | | |
|--|---|--|
| | <p>“정공(正供)은 전부 감면할 수가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윤계(尹埜)의 말을 따라서 반감(半減)하여 주고 진청(賑廳)의 곡식을 옮겨서 주도록 명하였다. 민정중(閔鼎重) 등이 또 말하기를,</p> <p>“이훈(李焜)4199 과 이엽(李焂)4200 이 처음 제주(濟州)로 유배되었을 때에는 조가(朝家)에서 호남(湖南)의 쌀 90여 석(石)을 들여보내기를 명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지로 옮겨오니, 쌀을 계속하여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p> <p>하니, 참작하여 감해서 주도록 명하였다.</p> |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1월 14일(병진) 3번째기사</p> | <p>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가 삭선(朔膳)4208 을 감봉(減封)한 것을 회복하기를 청하는 장계(狀啓)가 있었기 때문에, 두 자전(慈殿) 이외는 추수(秋收)할 때까지 정봉(停封)하도록 명하였다.</p> | <p>○以咸鏡觀察使朔膳減封者，復舊狀本，命兩慈殿外，限秋成停封。</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1월 19일(신유) 2번째기사</p> |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어영 대장(御營大將) 윤지완(尹趾完)이 청대(請對)하여 같이 들어왔다. 임금이 《시경(詩經)》의 억편(抑篇)을 강론(講論)하다가 ‘벗에게 은혜를 베푼다[惠于朋友]’는 구절에 이르렀는데, 영경연(領經筵) 송시열(宋時烈)이 아뢰기를,</p> <p>“인군(人君)에게는 벗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신하여, 이웃이여!’ 하였으니, 이는 바로 벗의 뜻이 있습니다. 맹자(孟子)는 말하기를, ‘필부(匹夫)를 벗한다.’고 하였으며, 정자(程子)는 말하기를, ‘신하는 벗</p> | <p>○御晝講。御營大將尹趾完請對同入。上講《詩》《抑》篇，至惠于朋友，領經筵宋時烈曰：“人君似無朋友，而《書》曰：‘臣哉隣哉!’便有朋友之義。孟子曰：‘友匹夫。’程子曰：‘友臣。’後世君臣，分義嚴截，無友臣之道，故程子以此勸戒之矣。我朝文宗大王於成三問諸臣，必呼其字，待之如</p> |

| | | |
|--|--|--|
| | <p>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후세(後世)에 군주와 신하의 분수와 의리가 엄하게 구별되어서 신하를 베타는 도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자(程子)가 이것으로써 권하여 경계한 것입니다. 우리 조정에서도 문종 대왕(文宗大王)은 성삼문(成三問) 등의 여러 신하에게 반드시 그들의 자(字)를 불러서 대우하기를 마치 벗과 같이 하셨으므로,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일로 전하여 옵니다.”</p> <p>하였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송시열(宋時烈)이 말하기를,</p> <p>“신이 죄를 기다리는 일이 있습니다. 문순공(文純公)이황(李滉)의 문인(門人)이었던 조목(趙穆)은 이황(李滉)이 죽은 뒤에 그의 자손(子孫)을 보기를 마치 동기(同己)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가 관직(官職)에 있을 적에 지성(至誠)으로 경계하여 과실(過失)을 면하게 하여 주었으므로, 당시나 후세(後世)에서 모두 조목(趙穆)이 그의 스승을 위하여 도리를 다하였다고 일컬었습니다. 신은 문원공(文元公)김장생(金長生)에게서 수학(受學)하였으므로, 그의 손자 김익훈(金益勳)과 신의 정과 뜻이 서로 친한 것은 다른 사람과 자연히 다릅니다. 근일(近日)에 김익훈(金益勳)이 죄를 얻을 것이 매우 중한데, 신이 평소에 경계하지 못하여서 그로 하여금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신은 실지로 조목(趙穆)의 죄인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 일이 경(卿)에게 무슨 혐의가 되겠는가?”</p> <p>하였다. 송시열(宋時烈)이 또 휴치(休致)를 거듭 청하니, 임금이 박세채(朴世采)가 들어온 뒤에 의논하여 허락하겠다고 명령을 내리고서 이를 윤택하지</p> | <p>朋友，至今傳爲美事矣。”講訖，時烈曰：“臣有待罪事矣。文純公李滉之門人趙穆，於滉死之後，視其子孫如同己。其在官時，至誠陳戒，俾免過失。當時、後世咸稱穆爲其師盡道矣。臣受學於文元公金長生，其孫益勳與臣，情意相親，自別於他人矣。近日益勳得罪甚重，臣平日不能規戒，使至於此，臣實趙穆之罪人也。”上曰：“此於卿何嫌也？”時烈又申請休致。上以朴世采入來後，議許爲教而不許之。賑恤堂上閔維重曰：“湖稅既許減半，嶺南似當一體許減，而諸議每以正供之減捧爲難，就收米量減如何？”時烈曰：“減收米，終不如減田稅之尤惠於民。”上命減田稅，每結三斗及三手糧一斗二升，依湖南例，以賑廳米代給。判府事金壽興曰：“臣前以各軍門將官取才調用事陳筭。廟堂請依施，而軍門尚不舉行矣。今若依內三廳例，取才收用，則事甚公正矣。”兵判南九萬請使各軍門大將，會一處取才，上從之。壽興曰：“朱子以賑救，莫如講水利爲言。曾在先朝，別設堤堰司，專管堤堰，而近來此法弛廢，只令戶判兼</p> |
|--|--|--|

| | | |
|--|--|---|
| | <p>아니하였다. 진휼청 당상관(賑恤廳堂上官) 민유중(閔維重)이 말하기를,</p> <p>“호남(湖南)의 세미(稅米)를 이미 반으로 감하여 주도록 윤택하셨으니, 영남(嶺南)도 마땅히 똑같이 감하기를 허락하여야 할 것인데도 여러 사람의 의견이 매양 정공(正供)을 감봉(減俸)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수납(收納)하는 미곡(米穀)을 양감(量減)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송시열이 말하기를,</p> <p>“수납(收納)하는 미곡(米穀)을 양감(量減)하여 주는 것은 전세(田稅)를 감하여 주어서 백성들에게 더욱 혜택(惠澤)을 주는 것만 못합니다.”</p> <p>하였다. 임금이 전세(田稅)를 감하여서 결(結)마다 3두(斗)로 하고, 삼수량(三手糧)4245) 을 1두(斗) 2승(升)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호남(湖南)에 예에 의하여 진휼청(賑恤廳)의 미곡으로서 대신 주게 하였다. 판부사(判府事) 김수흥(金壽興)이 말하기를,</p> <p>“신이 전에 각 군문(軍門)의 장관(長官)을 취재(取才)하는 일로써 차자(筭子)을 올렸더니, 묘당(廟堂)에서 이에 의하여 시행하기를 청하였으나, 군문(軍門)에서 아직도 거행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만일 내삼청(內三廳)의 예(例)에 의하여 취재(取才)하여서 수용(收用)한다면 일이 매우 공정(公正)하겠습니다.”</p> <p>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남구만(南九萬)이 각 군문(軍門)의 대장(大將)들로 하여금 한 곳에 모여 취재(取才)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김수흥(金壽興)이 말하기를,</p> | <p>察。今以備局堂上一員，差堤堰司堂上，使之專意水利，則必有所益。”上允之。趾完曰：“本廳上番軍只一千，而上年既減五百，今又沒數減番，則宿衛甚爲踈虞矣。”上曰：“不可盡數減番，勿減。”</p> |
|--|--|---|

| | | |
|---|--|--|
| | <p>“주자(朱子)는 진휼(賑恤)하여 구제(救濟)하는 것에는 수리(水利)를 강구(講究)하는 것만 함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일찍이 선조(先朝)에 있어서 따로 제언사(堤堰司)를 설치하여 전적으로 제언(堤堰)을 관장(管掌)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이 법이 해이(解弛)해져 폐지되고, 다만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하여금 겸하여 보살피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변사의 당상관(堂上官) 한 사람을 제언사(堤堰司)의 당상관(堂上官)으로 차출(差出)하시어 그로 하여금 수리(水利)에 전적으로 마음을 쓰게 하면 반드시 이익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윤희하였다. 윤지완(尹趾完)이 말하기를,</p> <p>“본청(本廳)의 상번(上番)하는 군사는 다만 1천 명뿐인데도 지난해에 이미 5백명을 감하였습니다. 이제 또 수효 전체의 번(番)드는 〈군사를〉 감하면 숙위(宿衛)가 매우 소홀(疏忽)하게 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수효 전체의 번(番)드는 〈군사를〉 감할 수는 없으니, 감하지 말도록 하라.”</p> <p>하였다.</p> |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1월 25일(정묘)</p> | <p>장령(掌令) 이국방(李國芳)이 소(疏)를 올려 청하기를,</p> <p>“실덕(實德)을 닦아서 천재(天災)에 답하고, 실혜(實惠)를 베풀어서 백성들의</p> | <p>○掌令李國芳疏請修實德，以答天災；施實惠，以副民望；毋拘常例，早分糶穀，亟發諸道軍餉及內司各司之所儲，</p> |

| | | |
|--|---|---|
| <p>2번째기사</p> | <p>기대에 부응(副應)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상례(常例)에 구애하지 말고 적곡(糶穀)을 일찍이 나누어 주며, 여러 도(道)의 군향미(軍餉米)와 내수사(內需司) 등 각사(各司)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빨리 내어서 굶주린 백성들을 살리게 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p> <p>“소(疏)의 맨끝에 말한 일은 매우 간절하고 지극하다. 다만 요즈음 내탕(內帑)에 간직된 것을 내어서 진수(賑需)를 보충하는 날에 일체 주지 못하는 것은 비록 남은 저장이 탕갈(蕩竭)한 데 연유한 것이지만, 내 마음이 불안하여 지금까지도 그치지 않는다.”</p> <p>하였다.</p> | <p>以活飢民。 答曰：“疏末事，言甚切至，而第頃於出帑藏，補賑需之日，不得一體劃給者，雖緣遺儲之蕩竭，予心不安，尙今未弛也。”</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1월 27일(기사) 2번째기사</p> | <p>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과 진휼 당상관(賑恤堂上官) 민유중(閔維重) 등이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였다. 민유중이 아뢰기를,</p> <p>“호서(湖西)는 호남(湖南)과 영남(嶺南)에 비교하면 재황(災荒)이 비록 조금 가볍기는 합니지만, 부역(賦役)을 건감(蠲減)하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심은 백성들을 차별없이 똑같이 사랑하는 뜻이 아닙니다. 청컨대 결(結)마다 거두어들이는 쌀에서 각기 두 말씩을 감하여 주고 본도(本道)의 진휼(賑恤)하는 쌀로써 보충하여 주게 하소서.”</p> <p>하고, 또 말하기를,</p> <p>“청풍(淸風)·단양(丹陽)·영춘(永春) 세 고을은 일찍이 도신(道臣)이 장문(狀聞)</p> | <p>○左議政閔鼎重、賑恤堂上閔維重等請對入侍。 維重白：“湖西視湖南、嶺南，災荒雖稍輕，未施蠲賦之惠，非一視之意也。 請每結收米各減二斗，而以本道賑米充給。” 又言：“淸風、丹陽、永春三邑，曾因道臣狀聞，減二斗，堤川減一斗。 此四邑，則又減二斗太多，只宜減一斗。” 上竝許之。 後，本道監司啓聞以堤川被災無異於淸風等三邑，請更減一斗，許之。</p> |

| | | |
|--|---|--|
| | <p>으로 인하여 두 말씩을 감하여 주었고, 제천(堤川)은 한 말씩을 감하여 주었습니다. 이 네 읍(邑)은 또한 두 말씩을 감하여 주는 것은 너무 많으니, 다만 한 말씩만 감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君)이 모두 윤허하였다. 뒤에 본도(本道)의 감사(監司)가 계문(啓聞)하기를,</p> <p>“제천(堤川)에서 재앙(災殃)을 입은 것이 청풍(淸風) 등 세 읍(邑)과 다름이 없으니, 다시 한 말을 감하여 주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윤허하였다.</p> |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1월 28일(경오) 1번째기사</p> |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일전에 송시열(宋時烈)이 수어사(守禦使)를 혁파(革罷)하는 일로써 임금에게 아뢰기를,</p> <p>“신이 올라올 때에 광주(廣州) 땅에 유숙(留宿)했는데, 백성들이 매우 간절하게 호소하기를, ‘수어사(守禦使)와 부윤(府尹)이 각각 군병(軍兵)과 재부(財賦)를 관장(管掌)하여 서로가 침탈(侵奪)하므로,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니, 수어사를 혁파(革罷)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니, 민정중(閔鼎重)과 김수흥(金壽興) 등도 모두 말하기를,</p> <p>“이미 수어사(守禦使)를 두고서 또 부윤(府尹)을 두어 사무와 권력이 서로 나누어 졌으니, 수어사(守禦使)는 혁파(革罷)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p> <p>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남구만(南九萬)은 말하기를,</p> | <p>○庚午/御晝講。 日前, 宋時烈以守禦使革罷事, 白上曰:</p> <p>“臣來時, 宿廣州地, 百姓呼訴甚懇以爲: ‘守禦使及府尹, 各管軍兵財賦, 互相侵刻, 不堪其苦。’ 云, 不可不罷。” 閔鼎重、金壽興等亦皆言, 既置守禦使, 又置府尹, 事權相分, 守禦使似當罷。 兵判南九萬以爲: “必以地望, 當爲守禦使者爲留守, 則事權歸一矣。” 上令更詢他大臣而處之。 至是, 領相金壽恒白曰: “守禦廳自仁祖朝設立, 其來已久。 上以此持難, 不欲罷, 而到今本廳, 與創設之初不同, 不必膠</p> |

| | | |
|--|--|--|
| | <p>“반드시 지위(地位)와 명망이 마땅히 수어사(守禦使)가 될 만한 사람을 유수(留守)로 삼으면 사무와 권력이 한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다시 다른 대신들에게 물어서 처리하게 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영상(領相)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p> <p>“수어청(守禦廳)은 인조(仁祖) 때부터 설립되었으니,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성상께서 이 때문에 지난(持難)하면서 혁파(革罷)하려고 하지 아니하여 지금에 이르렀지만, 본청(本廳)은 창설하였던 초기(初期)와는 같지 아니하니 반드시 교수(膠守)4265) 할 것이 아니며, 또 이것을 전적으로 혁파(革罷)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경청(京廳)만을 혁파(革罷)하고자 하여 광주(廣州)를 유수(留守)로 삼고, 또 비변사 당상관 1원(員)으로써 주관(主管)하기를 강도(江都)4266) 의 일과 같이 한다면, 수어사(守禦使)는 자연히 있게 될 것이고, 모든 일이 더욱 착실(着實)하여 질 것입니다.”</p> <p>하였었다. 지중추(知中樞) 이상진(李尙眞)도 혁파(革罷)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김수항(金壽恒)이 강도(江都)의 예(例)에 의거하여 경력(經歷) 한 명을 두기를 청하였고, 송시열(宋時烈)은 또 수어사(守禦使) 여성제(呂聖齊)를 유수(留守)로 삼을 것을 청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대개 여러 의견들은 반드시 관질(官秩)이 높고 명망이 무거운 사람으로써 차출(差出)하고자 하였다. 첫번째의 유수(留守)는 정돈(整頓)하고 조치(措置)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송시열이 여성제로써 말을 한 것이다. 승지(承旨) 어진익(魚震翼)이 임진년(4267) 에 순절(殉節)한 사람인 부산 첨사(釜山僉使) 정발(鄭撥)의 후손(後孫)을 거두어 등용하도록 청하였다. 송시열이 또 말하기를,</p> | <p>守。而且此非全然革罷也，只欲罷京廳，而以廣州爲留守。又以備局堂上一員主管，如江都事，則守禦使自在，而凡事尤着實矣。” 知中樞李尙眞亦言其當罷，上從之。壽恒請依江都例，置經歷一員。時烈又請以守禦使呂聖齊爲留守，竝從之。蓋諸議必欲以秩高、望重者差出，初頭留守以爲整頓措置之地，故時烈以聖齊爲言。承旨魚震翼請收用壬辰殉節人釜山僉使鄭撥後孫。時烈又言：“撥之妾愛香死節，其婢一人亦從死，誠罕有之美事。”上命旌閭，收用撥後孫。弘文博士李頤命曰：“自上纔命取入戒酒文而見之，又於都承旨洪萬容疏批，有戒酒之教。今日執義韓泰東飲酒入侍，酒氣襲人，執法之臣，豈容如是？”上曰：“憲官身先犯法，何可糾正他人？泰東遞差。”</p> <p>領府事宋時烈進袖笏，笏凡十二條。</p> <p>一。安民之要，莫切於守令之擇，特戒該曹，一一極選，無或爲人擇官。</p> <p>一。仁祖朝別選清白吏，以勵朝臣，伏願克遵先烈。一。孝廟使該曹，別擇守令，政績之尤者，特賜獎諭，仍或</p> |
|--|--|--|

| | | |
|--|--|--|
| | <p>“정발(鄭撥)의 첩(妾) 애향(愛香)이 절의(節義)를 위하여 죽었고 그의 계집종 한 사람도 따라 죽었으니, 진실로 드물게 있는 훌륭한 일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정려(旌閭)하고, 정발(鄭撥)의 후손을 거두어 등용하도록 명하였다. 홍문관 박사(弘文館博士) 이이명(李頤命)이 말하기를,</p> <p>“성상께서 계주문(戒酒文)을 취하여 들여서 보겠다고 명하고 나서 또 도승지(都承旨) 홍만용(洪萬容)의 소(疏)에 비답하신 데에도 술을 경계하라는 교지(教旨)가 있었습니다. 오늘 집의(執義) 한태동(韓泰東)이 술을 마시고 입시(入侍)하여 술기운이 사람을 침범합니다. 법을 준수(遵守)하는 신하로서 어찌 이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사헌부의 관원(官員)이 몸소 먼저 법을 범하였으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한태동(韓泰東)을 체차(遞差)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영부사(領府事) 송시열(宋時烈)이 소매 속에서 차자(筍子)를 올렸다. 그 차자는 모두 12조목으로 되었는데, 이르기를,</p> <p>“1. 백성을 안위(安慰)하는 요점(要點)은 수령(守令)들을 잘 가려 쓰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해조(該曹)에 경계하시어 날날이 잘 가려뽑도록 하고, 혹 사람을 위하여 관직(官職)을 선택(選擇)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p> | <p>陞遷，或加資秩，此當法者。一。孝廟慮水旱頻作，得水車之制於燕山，頒布民間，而守令一無奉行，民不蒙惠，特下手教嚴飭。《朱子大全》有以車運水，救火穀之說，況水車之便乎？一。府吏胥徒，耗國之大盜，不可汰省也。今兵曹判書南九萬汰去者近百，誣謗朋興，然其利益國家，已不貲矣。亟令諸曹，一例汰省。時俗之語：“掀天動地者，不可下手。”蓋指市井吏胥也。此輩聯通宮掖，實操禍福之權，不可不知也。一。臣及見前輩，得聞其言，有云：“朝紳與市井吏胥交好，則輒阻清望。”今日朝臣祿薄，不與此輩交好，則無以爲生，故鮮能自拔於流俗。以此，此輩一罹罪罰，請囑四起，朝綱之解，職由於此。舜之戒禹曰：“人心惟危。”今日此弊，由於人心流爲人慾之致，特令兩司糾劾焉。一。古語云：“奢侈甚於天災。”今日此弊極矣。奢侈之中，婚姻之費最甚。女家涕出而稱貸以悅壻家；壻家橫目而責辦於女氏，此司馬光、朱子之所深戒者。由此，朝紳無不求乞於守令、闕帥。申飭法司，痛加懲治。</p> |
|--|--|--|

| | | |
|--|--|---|
| | <p>1. 인조(仁祖) 때에 특별히 청백리(清白吏)를 가려뽑아서 조정의 신하들을 장려(獎勵)하였으니, 선열(先烈)을 잘 따라 행하기를 삼가 원합니다.</p> <p>1. 효종(孝宗)께서 해조(該曹)로 하여금 수령(守令)으로서 정치의 업적이 뛰어난 자를 따로 뽑아서 특별히 권장(勸獎)하는 유시를 내렸으며, 혹은 승진(陞進)하여 옮기게 하고 혹은 자질(資秩)을 더하셨으니, 이는 마땅히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p> <p>1. 효종(孝宗)께서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자주 있음을 염려하시어 수차(水車)의 제도를 연산(燕山)에서 얻어서서 민간(民間)에 반포(頒布)하였는데도 수령(守令)들이 한 사람도 받들어 행하는 자가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혜택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수교(手敎)를 내리시어 《주자대전(朱子大典)》에 수레로써 물을 운반하여 불을 끄고 곡식을 구한다는 말이 있는 것을 가지고 엄하게 신칙(申飭)하도록 하소서. 더구나 수차(水車)의 편리함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p> <p>1. 부(府)의 이서(吏胥)들은 나라를 소모시키는 큰 도적이니, 이들은 도태(淘汰)하여 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병조 판서(兵曹判書) 남구만(南九萬)이 도태(淘汰)하여 버린 자가 1백 명에 가깝기에 무방(誣謗)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국가에 이익되는 것이 이미 작지 아니합니다. 빨리 제조(諸曹)에 명령하시어 한결같이 도태(淘汰)하여 줄이도록 하소서. 시속(時俗)의 말에 ‘하늘을 흔들고 땅을 움직이는 자는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하는데, 대개 시정(市井)의 이서(吏胥)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들은 궁궐(宮掖)과 연통(聯通)하여서 실지로 화(禍)를 주고 복(福)을 주는 권력을 잡고 있음을 알지 않아서는 안됩니다.</p> | <p>一。廣州守禦使變通事，亟令大臣議處。一。我朝之盛，莫如中宗己卯。後之論己卯者，首以丘直不入於家爲言。此蓋尚廉、不尚利之大端，而今則不然，以丘直之多寡，爲朝臣趨避之大關，甚可醜也。亟使大臣變通，以絕利源，以勵士風。一。綿布升尺，一依《大典》，爲五升三十五尺。此臣昔年所請施，而終不得行。宋朝諸臣有言：“欲法堯、舜，當法祖宗。”更勅有司，以除飢民割肌之痛。一。當此天災時變，民窮奸熾之日，上下大小，汲汲以救之，猶懼不克，況崇飲成風，置職度外，曷勝寒心？痛下綸音，一切禁斷。一。牛疫之後，所餘無多，而殺之不已。我國之俗，以牛肉爲上味，不得食則如不可生，雖有禁令，而猶不暇顧。若不別爲禁條，以頒中外，則民之失農，甚於旱災矣。程子以歲凶爲殺牛之致，仍歎人之無行。蓋以人食牛力而屠其身，以致怨氣傷和也。文成公李珥平生不食牛肉，故其家尚不以牛肉祭珥。嗚呼，今日何能見如此人乎？伏願以程子、李珥之言，責勵群下焉。</p> |
|--|--|---|

| | | |
|--|--|--|
| | <p>1. 신이 선배(先輩)를 만나 보고서 그 말을 듣게 되었는데, 선배의 말에, ‘조정의 고관(高官)으로서 시정(市井)의 이서들과 서로 좋게 지내면 곧바로 청망(淸望)이 막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정의 신하들은 녹봉(祿俸)이 박(薄)하기 때문에 이들과 서로 좋게 지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유속(流俗)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는 자가 드물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써 이 무리들이 한번 죄벌(罪罰)에 걸리면 청촉(淸囑)이 사방에서 일어나니, 조정의 기강(紀綱)이 해이(解弛)된 것은 오로지 이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순(舜)임금이 우왕(禹王)을 경계하여 말하기를, ‘인심(人心)은 오직 위험하다.’ 하였는데, 오늘날의 이 폐단은 인심(人心)이 흘러서 인욕(人慾)이 되는 소치(所致)인 것입니다. 특별히 양사(兩司)에 명령하여 규핵(糾劾)하게 하소서.</p> <p>1. 옛말에 이르기를, ‘사치(奢侈)는 천재(天災)보다 심하다.’ 하였는데, 오늘날이 폐단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사치 가운데에는 혼인(婚姻)의 비용이 가장 심합니다. 딸 가진 집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빚을 내어다가 사위될 사람의 집을 기쁘게 하는데, 사위의 집에서는 눈을 흘기면서 여자에게 장만하여 오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마광(司馬光)과 주자(朱子)가 깊이 경계한 바입니다. 이 때문에 조정의 고관(高官)들이 수령(守令)이나 곤수(閹帥)4268)들에게 구걸을 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법사(法司)에 신칙(申飭)하여 엄하게 정치(徵治)를 더하도록 하소서.</p> <p>1. 광주(廣州)의 수어사(守禦使)를 변통(變通)하는 일을 빨리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소서.</p> | <p>上使廟堂稟處。是後，壽恒、鼎重等覆啓於筵中：“諸條皆依施，而丘直變通事，流來已久，各司之中，或有或無，或多寡不均。官高祿厚者，不必論其有無，而如諸司小官祿俸甚少，若又減此，無以支過。此論既出於絕利原、勵士風之意，則所當永罷，然有窒礙難便之端，更加商量稟處。綿布升尺事，法典雖如此，近來升尺，比古既細且長。通行已久，猝然復舊，以躡短之布，給軍兵之價，則其怨必多。前有此議，不得變通者，良以此也。似當徐議而處之。”上從之。</p> |
|--|--|--|

| | | |
|--|--|--|
| | <p>1. 우리 조정의 국운(國運)의 융성했던 시기는 중종(中宗)의 기묘년(4269)과 같은 때는 없었습니다. 후에 기묘년을 논하는 자는 먼저 구직(丘直)을 집에 들이지 않은 것으로써 말을 합니다. 이는 대개 청렴을 숭상하고 이익을 숭상하지 않는 큰 단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구직(丘直)의 많고 적은 것을 조정의 신하들이 나아가고 피하는 것의 큰 관문(關門)으로 삼고 있으니, 매우 추하다 하겠습니다. 빨리 대신들로 하여금 변통(變通)하여서 이익이 생기는 근원을 끊고 선비들의 기풍(氣風)을 장려하여 주소서.</p> <p>1. 면포(綿布)의 승척(升尺)을 한결같이 《대전(大典)》에 의거하면 오승포(五升布)는 35척(尺)이 됩니다. 이는 신이 옛적부터 시행하기를 청하셨습니다만,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송(宋)나라 조정의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요·순(堯舜)을 본받으려 한다면 마땅히 조종(祖宗)을 본받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다시 유사(有司)에 신칙(申飭)하여 굶주림 백성들의 살을 베는 고통을 덜게 하여 주소서.</p> <p>1. 이처럼 천재(天災)와 시변(時變)으로 백성들은 빈궁(貧窮)하고 간사(奸邪)함은 치성(熾盛)한 날을 당하여 상하(上下)와 대소(大小)의 관원들이 서둘러서 구제하여도 오히려 잘 될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술을 마시는 것이 풍속을 이루어서 직책을 도외시하니, 어찌 한심함을 금하겠습니까? 윤음(綸音)을 엄하게 내리시어 일체 금단하소서.</p> <p>1. 우역(牛疫)이 있는 뒤로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도 소 잡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의 풍속이 쇠고기를 가장 좋은 맛으로 여겨서 이를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것같이 여깁니다. 비록 금지하는 명령이 있어도 오히려 이를 돌아보지도 않으니, 만약 금지하는 조목(條目)을 따로 만들어서 중외(中</p> | |
|--|--|--|

外)에 반포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실농(失農)이 한재(旱災)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정자(程子)는, ‘연사(年事)가 흉년이 드는 것은 소를 잡는 데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인하여 사람들의 무지한 행동을 탄식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사람이 소의 힘으로 먹고 살면서도 이를 도살(屠殺)함으로써 원한(怨恨)의 기운이 화기(和氣)를 손상하기 때문입니다. 문성공(文成公)이이(李珣)는 평생 쇠고기를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집에는 지금도 쇠고기를 가지고 이이(李珣)에게 제사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오늘날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정자(程子)와 이이(李珣)의 말로써 여러 신하들을 책려(責勵)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이 뒤에 김수항(金壽恒)과 민정중(閔鼎重) 등이 경연(經筵)에서 복계(覆啓)하기를,

“여러 조목을 다 그대로 시행해야 합니다만, 구직(丘直)을 변통(變通)하는 일은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고, 또 각사(各司)의 가운데에 혹은 있고 혹은 없으며 혹은 많고 적어서 균등(均等)하지 못합니다. 관직(官職)이 높고 녹봉(祿俸)이 많은 자는 반드시 그 있고 없음을 논할 것이 없습니다만, 제사(諸司)의 소관(小官)들은 녹봉(祿俸)이 매우 적은데다가 만약 또 이를 감하게 되면 지탱하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의논이 이미 이익이 생기는 근원을 끊고 선비들의 기풍을 장려하는 뜻에서 나왔다면 마땅히 영구히 혁파(革罷)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애됨이 있어 적당하지 못한 단서(端緒)가 있으니, 다시 헤아려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면포(綿布)의 승척(升尺)에 대한 일은 법전(法典)에 비록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근래에 승척(升尺)이 예전에 비교하여 이미 가늘어지고 또 길어진 것으로 통행(通行)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이를 갑작스럽게 예전대로 돌아가서 거칠고 짧은 면포(綿布)를 군병(軍兵)

| | | |
|--|--|--|
| | <p>들의 대가(代價)로 주게 되면 그 원망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전에도 이러한 의논이 있었습시다만 변통(變通)하지 못한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천천히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1월 29일(신미) 2번째기사</p> | <p>전교(傳敎)하기를,</p> <p>“내가 생각하건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몸을 망치는 화(禍)는 한 가지 길로써 찾을 것이 아니지만, 예나 지금이나 술에 빠져서 그 덕(德)을 전복(顛覆)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우리 조종(祖宗)께서 깊이 근심하고 원려(遠慮)하셔서 정녕(丁寧)하게 효유(曉諭)하시어 술의 화(禍)에 대비하신 것이 매우 간절하다고 이를 수 있었다. 그런데 근일(近日)에 여러 신료(臣僚)들이 열성(列聖)들의 남기신 뜻을 본받지 않고 다만 모여서 술 마시는 것만 일삼아서 술을 과음하여 주정(酒醄)이 심하게 시일을 보내면서 위로는 나라의 일을 도외시(度外視)하고, 아래로는 부형(父兄)들에게 근심을 끼치며, 심지어는 패가 망신(敗家亡身)에 이르면서도 태연스럽게 경계할 줄을 알지 못하니, 어찌 크게 한심스럽지 아니한가? 더구나 지금은 하늘이 위에서 성내고 백성들이 아래에서 원망하고 있으니, 군신(君臣) 상하(上下)가 새벽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한마음으로 정치를 도모하여도 오히려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두려운데, 어찌 감히 덕(德)과 예(禮)는 생각하지 않고 술에 방종(放縱)하여서 일을 폐기하기를 이와 같이 방자하고 무엄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또 생각하건대, 해마다 큰 역사(役事)가 있어서 정부와 민간이 텅비어 있는 날에 술과 단술을 만들기 위하여 곡식을 소비하는 것은 낭비를 절약해 줄이는 방법이 아님을 또한 알지 않을 수 없다. 그대들 여러 신료(臣僚)들을 빨리 이 뜻을 본받아 모여서 술 마시는 것을 아주 끊어버리고 그 직책에 부지런하게 시국의 어려움을 널리 구제하도</p> | <p>○敎曰:</p> <p>予惟亡國喪身之禍，非一道而求之，古今罔不由於沈湎於酒，顛覆厥德也。惟我祖宗，憂深慮遠，丁寧曉諭，所以備酒禍者，可謂深切。而近日大小臣僚，不體列聖之遺意，唯事崇飲，沈酗度日。上以置國事於度外；下以貽父兄之憂戚，甚至敗家亡身而恬不知戒，寧不大可寒心哉？矧今天怒於上，民怨於下，君臣上下，早夜孜孜，一心圖治，猶懼其不濟，豈敢不恤德禮，縱酒廢事，若是其放肆無嚴乎？且念，連歲大役，公私赤立之日，爲酒醴以糜穀，非節省浮費之道，又不可不知也。咨爾大小臣僚，亟體此意，痛祛崇飲，恪勤乃職，弘濟時艱。如或不有法禁，猶踵前習者，難免違令之律，竝宜知悉。</p> |

| | | |
|---|---|--|
| | <p>록 하라. 만약 혹시 법금(法禁)이 있지 않다 하여 오히려 전일의 습관을 그대로 따른다면 명령을 어긴 율(律)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두 마땅히 자세히 알도록 하라.”</p> <p>하였다.</p> |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2월 4일(병자) 2번째기사</p> | <p>행 사직(行司直) 박세채(朴世采)가 도성(都城)에 들어와서 소(疏)를 올렸다. 임금이 사관(史官)을 보내어 그를 속히 들어오게 하니, 박세채(朴世采)가 대궐에 나아갔다.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위유(慰諭)하였다. 박세채(朴世采)가 사사(辭謝)하고 이어서 짧은 차자(笱子)를 한 봉(封)을 올리자, 임금이 말하기를,</p> <p>“마땅히 조용하게 펴 보고서 유념(留念)하겠다.”</p> <p>하고, 이어 금중(禁中)에 직숙(直宿)하도록 명하여 찾아 묻는 데 대비(對備)하게 하였다. 또 해조(該曹)로 하여금 음식물을 제급(題給)하게 하였다. 박세채(朴世采)가 올린 차자는 모두 세 조목으로 되어 있었다. 첫째 조목은 사사로 온 욕심이 건강(乾剛)을 방해함을 논하여서 저번 때에 추록(追錄)한 훈적(勳籍)의 일을 그르다고 하였다. 그래서 조광조(趙光祖)가 정국 공신(靖國功臣)에 외람되게 참여한 것을 삭제(削除)하도록 청한 일을 인용(引用)하였다. 둘째 조목은 봉당(朋堂)을 깨뜨리는 길을 논한 것이었다. 그것은 한쪽 사람으로서 역적의 옥사(獄事)나 간당(奸黨)에 관련되지 아니한 자들은 마땅히 참용(參用)해야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었다. 세째 조목은 <청나라에 대한>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는 의리를 논한 것이었다.</p> | <p>○行司直朴世采入城陳疏。上遣史官，使之從速入來。世采詣闕，上引見慰諭，世采辭謝，仍進短笱一封。上曰：“當從容披覽而留念。”仍命直宿禁中，以備訪問。又令該曹，題給食物。世采所進笱子凡三條。其一。論私慾之妨乾剛，以向時追錄勳籍事爲非，而引趙光祖請削靖國功臣濫參事。其二。論破朋黨之道以爲：“一番人非係逆獄奸黨者當參用。”其三。論復讎雪恥之義。</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p> | <p>어의(御醫)에게 명하여 약물(藥物)을 가지고 가서 송시열(宋時烈)의 병을 보살피게 하였다.</p> | <p>○命御醫持藥物，往視宋時烈病。</p> |

| | | |
|---|--|---|
| <p>22년) 2월 4일(병자) 3번째기사</p> | |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2월 5일(정축) 1번째기사</p> | <p>약방(藥房)에서 입시(入侍)하였다. 영상(領相) 김수항(金壽恒)이 청하기를, “태학(太學)에서 교양(教養)하는 절목(節目)은 성균관의 관원(官員)으로 하여 금 문의(問議)하게 하여서 송시열(宋時烈) 및 유신(儒臣)들의 처소에서 강론하 여 정하고, 묘당(廟堂)과 더불어 상의하여 품행(稟行)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경연의 신하가 전에도 이러한 청이 있었기 때문이 다.】 김수항(金壽恒)이 또 말하기를, “지난날 술을 경계하라는 전교는 조정의 신하들에게 모여서 술마시는 습관을 금지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근일에 듣건대, 법사(法司)에서 술을 금하기를 너 무 엄하게 하므로 여염(閭閻)의 백성들이 놀라고 겁이 나서 술단지과 누룩을 땅에 묻어 두는 등의 일이 있다고 합니다. 흥년이 든 해에 술을 파는 것은 생 활에 도움되는 것인데도 이를 혼동하여 금단(禁斷)하는 것은 도리어 원망을 초래하는 데 귀착(歸着)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이일로 인해서 도리어 여염의 소요(騷擾)를 초래하는 것은 매우 마땅하 지 못하다. 이러한 뜻을 명백하게 분부하도록 하라.” 하였다.</p> | <p>○丁丑/藥房入侍。 領相金壽恒請太 學教養節目，令館官問議，講定於宋時 烈及儒臣等處，與廟堂相議稟行。【筵 臣前有此請故也。】從之。 壽恒又言： “頃日戒酒之教， 欲禁朝臣崇飲之習， 而近聞，法司禁酒甚嚴，閭民驚恟，至 有埋置酒器麩子等事云。 凶歲賣酒， 所以資生， 而混同禁斷， 反爲招怨之 歸。” 上曰：“若因此反致閭巷之騷擾， 殊不當。 以此意，明白分付。”</p> |
| <p>숙종 14권, 9년(1683</p> | <p>전라도 어사(全羅道御史) 이동욱(李東郁)이 강도(江都)의 미곡(米穀) 1만 석을</p> | <p>○全羅道御史李東郁請移江都米一萬</p> |

| | | |
|---|--|---|
| <p>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2월 7일(기묘) 2번째기사</p> | <p>전라도(全羅道)에 옮겨 오기를 청하였다. 또 말하기를, “전주(全州)어의궁(於義宮)의 둔장(屯庄)은 민간(民間)의 토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 혁파(革罷)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다.</p> | <p>石于全羅道，又言：“全州於義宮屯庄，多占民田，請罷之。” 竝依施。</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2월 12일(갑신) 1번째기사</p> | <p>부안(扶安)의 사인(士人) 신종제(申宗濟)가 굶주림을 참을 수 없어서 그의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얼음을 뚫고 물에 빠져 죽으니, 도신(道臣)이 계문(啓聞)하였다. 전교(傳教)하기를, “너무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겠다. 본도(本道)에서 각별히 홀진(恤典)을 거행하고, 곡물(穀物)을 그의 족속(族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아주 곤궁한 처지의 목숨을 구제하여 불쌍히 여기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국토(國土)를 지키는 관원(官員)이 백성으로 하여금 굶주려서 죽게 한 것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때에 교체하여 바꾸는 것도 폐단이 있으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영문(營門)으로 잡아와서 곤장(棍杖)을 치게 하라.” 하였다.</p> | <p>○甲申/扶安士人申宗濟不忍饑餓，棄其妻子，鑿氷投水而死。道臣以聞。傳曰：“不覺慘然。自本道各別恤典舉行，分給穀物於族屬，以救涸轍之命，以示軫恤之意。守土之官，使民飢死，難免其責。而此時遞易有弊，令道臣拿致營門決杖。”</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2월 13일(을유) 3번째기사</p> | <p>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진휼청(賑恤廳)의 당상관(堂上官) 민유중(閔維重)이 말하기를, “각사(各司)에 공물(貢物)을 바치는 사람의 폐단이 너무 많으니, 마땅히 헤아려서 감소시키는 처치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별단(別單)을 써서 들</p> | <p>○引見大臣、備局諸臣。賑恤堂上閔維重言：“各司貢物人弊端甚多，當有裁減之舉，故書入別單，而關係內供者，則請自上量減。” 又言：“貢物之價太濫，蜜一石價米五十石，棗一石價</p> |

| | | |
|--|---|---|
| | <p>여서 내공(內供)에 관계되는 것은 성상께서 헤아려 감하시도록 청합니다.”</p> <p>하고, 또 말하기를,</p> <p>“공물(貢物)의 값이 너무나 지나쳐서 풀 한 섬[石]의 값이 미곡(米穀) 50석(石)이고, 대추 한 섬의 값이 미곡 20석이나 되며, 기인(其人)4281)의 공물(貢物)은 각도(各道)에서 많고 적음이 또한 동일하지 않으니, 흉년인 해에는 헤아려서 감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민유중(閔維重)이 또 말하기를,</p> <p>“전라도(全羅道)에서 거두어들이는 미곡(米穀) 2만 석과 군포(軍布)·공장포(工匠布)와 산군(山郡)의 면포(綿布) 8백 50여 동(同)은 결코 징수(徵收)하기가 어렵습니다. 강도(江都)의 미곡 2만 석과 경야문(京衙門)에 저장되어 있는 면포(綿布)를 대출(貸出)하여 충납(充納)한 뒤에 본도(本道)에서 가을을 기다려 추봉(追捧)하여서 환상(還償)하게 하기를 청합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대신(臺臣)에게 유시하기를,</p> <p>“김익훈(金益勳)의 밀계(密啓)는 잘못된 바가 없지 아니하나, 먼 곳에 귀양보낸다는 것은 자못 너무 지나친 듯하였고, 조어(措語)도 알맞지 아니하다. 차마 들을 수 없는 말로써 억지로 죄안(罪案)을 만들기까지 하는 일은 매우 근거가 없다. 전익대(全翊戴)가 직접 무고(誣告)한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초의 처치는 참작한 데에서 나온 것인데도 공의(公議)가 날로 격렬하여서 이를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곧 대계(臺啓)를 윤허(允許)하여 진정(鎮定)</p> | <p>二十石。其人貢物，各道多寡亦不同，凶歲不可不裁減。”上可之。維重又白全羅道收米二萬石及軍布、工匠布、山郡綿布八百五十餘同，決難徵捧，請貸出江都米二萬石，京衙門所儲綿布充納後，自本道使待秋追捧還償。”從之。上諭臺臣曰：“金益勳之密啓，不無所失，而遠竄則殊涉太過，措語亦不稱停。至以不忍聞之說，勒成罪案，事甚無據矣。全翊戴與直爲誣告有間，故當初處置，出於參酌，而公議日激，不可防遏，故即允臺啓，以爲鎮定之地矣。臺論久而益激，益勳且有所失，特爲參酌罷職。須思和平之道，勿爲輾轉過激之論。”掌令金粹五曰：“公議所在，不可不連啓。”仍申前啓，不從。正言金構陳韓泰東飲酒被論之冤，上不省。</p> |
|--|---|---|

| | | |
|--|--|--|
| | <p>하는 바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간(臺諫)들의 논핵이 오래 될 수록 더욱 격렬해지며, 김익훈(金益勳)에게도 잘못된 바가 있으므로, 특별히 참작(參酌)하여 그를 과직(罷職)한다. 모름지기 화평(和平)하는 길을 생각하여 전전(輾轉)하면서 과격한 논핵(論劾)을 하지 말라.”</p> <p>하였다. 장령(掌令) 김수오(金粹五)가 말하기를,</p> <p>“공의(公議)가 있는 것을 연달아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고, 이어서 전에 아뢴 것을 되풀이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였다. 정언(正言) 김구(金構)도 한태동(韓泰東)이 술을 마셨다가 논핵(論劾)을 당한 억울함을 아뢰었으나, 임금이 살피지 아니하였다.</p> |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2월 13일(을유) 4번째기사</p> | <p>영부사(領府事) 송시열(宋時烈)이 부안(扶安)의 사인(士人) 신종제(申宗濟)가 얼음을 깨고 스스로 물에 뛰어든 참상(慘狀)으로 인하여 차자(笱子)를 올리기를,</p> <p>“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이 어찌 책벌(責罰)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신(賊臣) 허적(許積)은 나라를 맡았을 적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린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감사(監司)는 허적(許積)의 뜻을 거스르려 두려워 하였고, 수령은 감사(監司)를 거스르려 두려워하였기에 백성들이 죽은 것이 몇만 명인지를 알 수 없었지만, 이를 철저하게 계문(啓聞)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본현(本縣)에서 감사(監司)에게 숨기지 아니하였고 감사(監司)가 조정에 계문하였으니,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이 그 죄를 면하였다 하겠습니다.”</p> | <p>○領府事宋時烈以扶安士人申宗濟剖冰自投之慘，陳笱以爲：</p> <p>監司、守令烏得免責罰哉？然賊積當國，惡聞年凶民飢之說，故監司恐忤積意，守令恐忤監司，民死不知其幾萬，而無以徹聞。今則本縣不諱於監司，監司以聞於朝，然則監司、守令可贖其罪。</p> <p>又以爲：</p> <p>殿下所引，朱子救荒時，簡其車徒，深</p> |

| | | |
|------------------|---|--|
| | <p>하였다. 또 말하기를,</p> <p>“전하께서 인용(引用)하신 바 주자(朱子)가 흉년을 구제할 때에 수레와 종을 줄이고 깊은 산과 궁벽한 골짜기에서까지 이르지 아니한 데가 없었다고 한 것은 실지로 흉년을 구제하는 급무(急務)입니다. 그런데 수령(守令)들은 관아(官衙)에 앉아 있는 것만 탐하여 중간 흥정꾼들의 재물로 뇌물을 받고는 〈백성들의 실정을〉 묻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신종제(申宗濟)와 같은 일이 있어서 알지 못합니다. 이 한 건(件)을 특령(特令)으로 신칙(申飭)하여 그로 인해서 수령(守令)들로 하여금 백사를 제쳐 놓고 진휼(賑恤)하는 일에 전일(專一)하게 하소서. 또 조가(朝家)에서는 아주 긴급(緊急)한 공사(公事) 이외에는 절대로 외방(外方)에 분부하지 말아서 수령(守令)들로 하여금 전일(專一)한 뜻으로써 다른 데에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소서. 또 듣건대, 기전(畿甸)에서는 아직도 포적(逋糶)을 독촉(督促)한다 하니, 이는 참으로 마땅하지 못합니다. 빨리 정지하도록 명령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p> <p>“해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곤궁하여서 이렇게 놀랍고 비참한 일까지 있으니, 이를 보고서는 오열(嗚咽)함을 깨닫지 못하겠다. 해당 고을의 수령(守令)은 이미 조가(朝家)에서 참작하여 처리하였다. 그리고 봉납(奉納)하기를 정지하는 일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p> <p>하였다.</p> | <p>山窮谷靡所不到者，實救荒之急務。而守令貪於坐衙中商財賄，不爲咨詢，故雖有宗濟之類，無得以知。此一款特令申飭，而仍使守令，棄百事而專一於賑事。又自朝家，切急公事外，切勿分付外方，俾守令一意靡他。又聞，畿甸猶責逋糶，此實非宜，亟令停止。”</p> <p>答曰：“歲飢民窮，有此驚慘之事，看來不覺嗚咽也。該邑守令，已自朝家參酌處置矣。停捧事，令廟堂處之。”</p> |
| 숙종 14권, 9년(1683) | 함경도(咸鏡道)의 감진 어사(監賑御史) 심극(沈極)이 장계(狀啓)를 올려, 각사 | ○咸鏡道監賑御史沈極啓請,各司及本 |

| | | |
|---|---|---|
| <p>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2월 19일(신묘) 4번째기사</p> | <p>(各司)와 본도(本道)의 관노비(官奴婢)로서 미곡(米穀)을 바치는 자에게는 속량(贖良)4285) 을 허락하여 진휼(賑恤)의 쓰임에 보태기를 청하였다. 묘당(廟堂)에서 복주(覆奏)하니, 다만 각사(各司)와 내수사(內需司)의 노비(奴婢)만은 속량(贖良)하기를 허락하지마는, 관노비(官奴婢)는 후일의 폐단에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써 허락하지 않았다.</p> | <p>道官奴婢納米許贖，以補賑用。 廟堂覆奏，只許贖各司及內司奴婢，而官奴婢，以有關後弊，不許。</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2월 21일(계사) 1번째기사</p> | <p>감귤(柑橘)을 내리고 반궁(泮宮)4286) 에서 선비를 시취(試取)하였다. 수석(首席)에 뽑힌 이정명(李鼎命)에게는 곧바로 전시(殿試)에 나가도록 명하였다.</p> | <p>○癸巳/賜柑試士于泮宮， 居首李鼎命直赴殿試。</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2월 24일(병신) 2번째기사</p> | <p>지평(持平) 김석(金皙)이 피혐(避嫌)하여 아뢰기를, “황감과(黃柑科)4304) 는 정시(庭試)4305) ·알성시(謁聖試)4306) ·전시(殿試)4307) 등의 과거(科擧)와는 달라서 대제학(大提學)이 반궁(泮宮)4308) 에 나아가서 글짓기를 시험한 뒤에 외인(外人)을 따라 들어왔으며, 과차(科次)는 또한 외부(外部)의 사람과 서로 통(通)함이 없지 않으니, 일의 체통이 엄하지 못함을 따라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황감시(黃柑試)에서 수석(首席)을 차지한 이정명(李鼎命)은 바로 대제학(大提學) 이민서(李敏敘)의 조카입니다. 숙부(叔父)와 조카는 곧 아버지와 아들 같습니다. 다만 한 사람만을 쓰는 과거에서 그의 아버지가 주장(主張)하고 그 아들이 참여한 것은 비록 그 마음이 한결 같이 공정(公正)한 데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의혹(疑惑)하는 것은 형세가 반드시 그렇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의 말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유생(儒生)들이 허둥지둥 놀랐기 때문에, 신이 그의 <이름을> 삭제(削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논계(論啓)하려고 쪽지를 써서 동료(同僚)들에게 물으니, 동료들이 퍼서 보고는 알았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다음날</p> | <p>○持平金皙避嫌啓曰：“黃柑異於庭試、謁聖、殿試等科，大提學詣泮試製之後，隨外以入科次。 且外人不少相通，則事體之不嚴，從可知矣。 今此黃柑居首李鼎命，即大提學李敏叙之姪子也。 叔姪便同父子，只用一人之科，其父主張，而其子參之，雖其心一出於公正，人心疑惑，勢所必至，國言喧藉，章甫錯愕。 臣以不可不削去之意，欲爲論啓，簡問同僚，則同僚拆見書以謹悉，而仍以明日，欲呈辭疏，勢難聯名爲答。 臣復通以既書謹悉，不可不參之意，而終不肯從。 見輕同僚，何可晏然在臺乎？” 是後掌令金粹五以此引避。 處置遞粹五，而皙出仕。</p> |

| | | |
|--|--|---|
| | <p>에 사직소(辭職疏)를 올리려 했으나, 형세로 보아 연명(聯命)하기가 어렵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신이 다시 이미 알았다고 썼으므로 참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뜻을 연통(連通)하였습니다만, 끝내 기꺼이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동료들에게 경모(輕侮)를 당하였으니 어찌 편안하게 대간(臺諫)에 있겠습니까?”</p> <p>하였다. 이후에 장령(掌令) 김수오(金粹五)도 이로써 인피(引避)하였으므로, 처치(處置)하여 김수오(金粹五)는 체차(遞差)하고, 김석(金皙)은 출사(出仕)하도록 하였다.</p> |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3월 13일(을묘) 3번째기사</p> | <p>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진휼청(賑恤廳)의 당상관(堂上官) 민유중(閔維重)이 선혜청(宣惠廳)의 공물(貢物)을 개정하는 일로써 아뢰기를,</p> <p>“이제 경기(京畿)·강원도(江原道)의 두 도(道)에서 거두어들이는 쌀이 부족하고, 갖가지의 물가(物價)도 삼남(三南)에 비하면 적은 까닭으로 조금 증가(增加)시켰고, 삼남(三南)에는 지나친 까닭으로 또한 감손(減損)시켜서, 오도(五道)를 통틀어 물가(物價)가 균동(均同)하여 가지런하지 못한 근심이 없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거의 선배(先輩) 공안(貢案)을 고쳐 정하는 뜻과 다름이 없을 것이며, 오도(五道)를 통틀어 줄어드는 수량이 2만 수백 석(石)이 됩니다. 신이 일찍이 경술년(4338) 이후에 여러 번 권감(權減)【권감(權減)이라 함은 그 물건의 종류를 감하는 것이다.】한 것과 경신년(4339)에 감분(減分)【감분(減分)이라 함은 물가(物價) 중에 두수(斗數)를 감하는 것이다.】한 것들의 수량을 산출(算出)해 보니, 2만 7천여 석(石)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줄이는 것은 오히려 권감(權減)했던 것이나 감분(減分)했던 것의 수량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두(前頭)의 연사(年事)가 조금 풍년이 들면 갖가지 권감(權減)</p> | <p>○引見大臣、備局諸臣。賑恤堂上閔維重以惠廳貢物釐正事陳白曰：“今京畿、江原兩道收米不足，各樣物價，比三南爲少，故略加增益。三南則太濫，故亦爲之減損，通五道物價均同，無不齊之患，庶與先輩，改貢案之意無異，而通五道所減之數，爲二萬數百石也。臣嘗算出庚戌以後累度權減【權減者減其物種也。】及庚申年減分【減分者就其物價中減斗數也。】之數，爲二萬七千餘石。今此所減，猶不及於權減減分之數，而前頭年事稍稔，各樣權減，次第復舊，則物價均同，貢人輩必無不均之怨矣。”又曰：“臣前日請以忠原陞爲獨鎮，此與新創州郡有異，不過陞號爲防禦使而已。今若設爲獨鎮，</p> |

| | | |
|---|---|--|
| | <p>했던 것을 차례대로 복구(復舊)한다면, 물가(物價)가 균등하여져서 공납(貢納)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균등하지 못하다는 원망이 없을 것입니다.”</p> <p>하고, 또 말하기를,</p> <p>“신이 전일(前日)에 충원(忠原)을 승격(昇格)시켜 독립된 진영(鎭營)을 만들기를 청하였습니다. 이는 새로 창설(創設)하는 주(州)나 군(郡)과는 달라서 칭호(稱號)를 올려 방어사(防禦使)를 두는 데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만약 설치(設置)하여 독립된 진영(鎭營)을 만들면 가흥창(嘉興倉)【가흥창은 충원(忠原)의 강가에 있다.】은 마땅히 고을 안에 옮겨 세워야 하겠으며, 저장한 양곡(糧穀)을 거두어들이고 흠어 주는 것을 한결같이 군향(軍餉)의 예(例)와 같게 한다면, 이는 양곡(糧穀)을 쌓아 환난(患難)에 대비하는 방도에 더욱 적합할 것입니다.”</p> <p>하고,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p> <p>“충원(忠原) 땅은 상류(上流)에 웅거하고 있으며, 또 조령(鳥嶺)의 직로(直路)를 지키고 있으니, 이에 독립된 진영(鎭營)을 설치하여 만들면 위급한 경우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였다. 민정중(閔鼎重)도 옳다고 말하니, 임금(君)이 절목(節目)을 강구(講究)하여 정해서 곧 거행하도록 명하였다.</p> | <p>則嘉興倉【嘉興倉在忠原地江邊。】當移建於邑內，儲穀斂散，一如軍餉之例，此尤合於峙糧備患之道矣。” 金壽恒曰：“忠原地，據上游，且當鳥嶺直路，設爲獨鎭，則可以得力於緩急矣。” 閔鼎重亦以爲是，上命講定節目，卽爲舉行。</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3월 20일(임술)</p> |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 지난 겨울에 북도(北道)에서 풀과 나무가 꽃이 피었으며, 금년 3월에는 여러 도(道)에 눈이 내린 재앙을 가지고 진계(陳戒)하여 갑절이나 더 수성(修省)하기를 청하였다. 또</p> | <p>○御晝講。 領議政金壽恒以去冬北道草木開花， 今年三月諸道下雪之災陳戒， 請倍加修省。 又曰：“仁廟反正，</p> |

| | | |
|--------------|--|---|
| <p>3번째기사</p> | <p>말하기를,</p> <p>“인조(仁祖)께서 반정(反正)하셨던 것이 계해년(4341) 3월에 있었으니, 올해 바로 주갑(周甲)을 맞이했으며, 또 삼월(三月)을 맞이했습니다. 인조(仁祖)께서 난세를 평정하여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시켜서 종묘와 사직을 다시 편안하게 하신 지 지금 60여 년이 되었는데, 나라의 형세가 쇠약해져서는 날로 위태롭고 쇠망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니, 어찌 두려워하여 감개(感慨)함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p> <p>하고 이어서 아뢰기를,</p> <p>“정명 공주(貞明公主)는 80세의 나이로서 아직 지금도 건강하시며 금년은 평상(平常)의 해와 다르니, 【계해년은 인조(仁祖)께서 인목 대비(仁穆大妃)의 지위를 회복시키셨으며, 또 공주(公主)의 혼례를 행하였던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런 흉년을 당하여 비록 사연(賜宴)은 못하더라도 마땅히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은전(恩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p> <p>하였는데, 임금이 해조(該曹)에 명하여 식물(食物)의 의자(衣資)를 넉넉히 지급하게 하였다. 이조 참의(吏曹參議) 박세채(朴世采)가 주자(朱子)의 ‘명년의 태세(太歲)가 군탄(涸灘) 4342) 에 있네.’라고 한 시(詩)를 인용(引用)하여, <청나라에게> 원수를 갚아야 하는 뜻을 누누이 아뢰었다. 또 경연(經筵)에 임하여 강독(講讀)할 때에 임금에게 물음을 내어 논란(論難)하고서 반드시 경연(經筵)의 신하들로 하여금 응대(應對)하게 하고, 혹은 경연(經筵)의 신하들로 하여금 논란(論難)하게 하고서 임금이 뒤따라 변론(辯論)하시기를 청하니, 임금이 모두 가상하게 여겨 받아들였다.</p> | <p>在癸亥三月，今年正值周甲，而又當三月。 仁廟撥亂反正，再安宗社，而到今六十餘年， 國勢委靡， 日就危亡之域， 寧不惕然興感乎?” 仍白貞明公主八耄之年， 尚今無恙， 今年異於常年。</p> <p>【癸亥仁廟復仁穆大妃之位， 且行公主吉禮故云。】 當此凶歲， 雖不可賜宴， 似當有優異之典。 上命該曹， 優給食物、衣資。 吏曹參議朴世采引朱子明年太歲在涸灘之詩， 縷縷陳復讎之義。 又請臨筵講讀之時， 自上發問論難， 而必使筵臣應對之， 或使筵臣論難， 而上從而辨之， 上竝嘉納之。</p> |
|--------------|--|---|

| | | |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3월 24일(병인) 2번째기사</p> | <p>사은사(謝恩使) 김석주(金錫胄)와 유상운(柳尙運) 등이 돌아왔으므로, 임금 그들을 인견(引見)하였다. 김석주(金錫胄)가 연로(沿路)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 을 아뢰고, 관서(關西)의 의주(義州) 등 다섯 고을에는 경신년(4350)의 연조 (年條)로, 용강(龍岡) 등 여섯 고을에는 병진년(4351)의 연조로, 해서(海西)의 각 고을에는 무자년(4352)의 연조로써 관향곡(管餉穀)의 포함(逋欠)을 탕감 (蕩減)하여 줄 것을 청하니, 모두 윤택하였다. 대개 이때에 묘당(廟堂)에서 포 조(逋租)를 탕척(蕩滌)하라는 명령이 연조(年條)로써 한정(限定)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포함(逋欠)이 가장 많았던 해가 혹은 한정(限定)된 해 가운데 들지 못하여서 빈궁한 백성들이 실제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말한 자들 이 대부분 그것의 옳지 못한 점을 말하였다. 김석주(金錫胄)가 양서(兩西)의 민정(民情)을 아뢰었으므로, 이러한 명령이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앞서 해서(海西) 4353)의 어사(御史)가 본도(本道)에서 따로 거두어들이는 미곡(米 穀)을 【대개 해서(海西)에서는 별도로 명나라 장수 모문룡(毛文龍)에게 응대 (應對)하기 위해서 1결(結)마다 별도로 5두(斗)의 쌀을 거두어 들여보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따르고 있다.】 감제(減除)하는 일로 장계(狀啓)를 올려 아뢰 었다. 묘당(廟堂)에서 아뢰기를,</p> <p>“이 공물(貢物)의 값은 원래 과외(科外)로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본도 (本道)에 물어서 처리하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임금이 특명(特命)으로 이를 폐지하였다.</p> | <p>○謝恩使金錫胄、柳尙運等回來。上 引見，錫胄陳沿路民瘼，請蕩減關西義 州等五邑庚申條，龍岡等六邑丙辰條， 海西各邑戊子條，管餉穀之逋欠者，並 許之。蓋是時，廟堂蕩滌逋租之令， 限以年條，故逋欠最多之年，或不入於 限中，窮民未蒙實惠，故言者多言其不 可。錫胄以兩西民情白之，有是命。 先是，海西御史以本道別收米【蓋海西 初爲毛將酬應，每一結別收五斗米入 送，而至今因循。】減除事啓聞。廟 堂啓以此是貢物之價，元非科外之斂， 請詢本道而處之，上特命罷之。</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3월 25일(정묘) 2번째기사</p> | <p>김수흥(金壽興)이 경연(經筵)에서 정명 공주(貞明公主)의 예(例)에 의거하여 정사 공신(靖社功臣) 4367)인 이시백(李時白)과 이후원(李厚源)의 아내에게 음식물을 주도록 청하였다. 【이때 정사 공신(靖社功臣)의 아내로서 생존(生存) 한 자는 다만 이 두 사람뿐이었다.】 또 정사 공신(靖社功臣)의 자손(子孫)으</p> | <p>○金壽興於筵中，請依貞明公主例，給 食物於靖社功臣李時白、李厚源妻。 【時，靖社功臣妻生存者，只此二 人。】又請招集靖社功臣子孫之在朝</p> |

| | | |
|--|--|---|
| | <p>로서 조정에 있는 자를 불러 모아서 술을 하사(下賜)하기를 청하였으나,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얼마 있다가 도승지(都承旨) 정재희(鄭載禧)가 또 그 가운데 직위(職位)가 없는 자를 뽑아서 각기 쌀 1석(石)씩을 주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p> | <p>者賜酒，未果行。已而，都承旨鄭載禧又請抄其中無職者，各給米一石，從之。</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4월 2일(갑술) 1번째기사</p> |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임금(上)이 말하기를, “내가 어제 봉조하(奉朝賀)가 있는 곳에 낙죽(酪粥)4371) 을 보냈더니, 이따금 문밖에 나온다고 하였다. 비록 멀리 간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서운하다.” 하고, 승지(承旨)에게 명령하여 가서 입성(入城)하라는 뜻을 유시(諭示)하게 하였는데, 송시열이 성내(城內)가 번잡하고 시끄러워서 한가하고 고요한 곳에 나아가 조섭하려 한다고 대답하자, 한성부[京兆]에 명령하여 여염집을 빌려주어 들어오도록 하였다.</p> | <p>○甲戌/御晝講。上曰：“昨送酪粥于奉朝賀處，則往往門外云。雖非長往，心亦缺然。”命承旨往諭入城之意，時烈對以城內煩擾，欲就閑靜攝。命京兆，借給閭家，使之入來。</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4월 3일(을해) 1번째기사</p> | <p>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이에 앞서 병조 판서 남구만(南九萬)이 폐사군(廢四郡)【여연(閔延)·무창(茂昌)·자성(慈城)·우예(虞芮)이니, 곧 강변(江邊)의 폐지(廢地)이다.】에 4진(四鎭)을 설치하도록 청하고, 대신 김수항(金壽恒) 역시 편리하다고 여겨 벌써 명령하여 4진의 변장(邊將)을 차출(差出)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대사간(大司諫) 유상운(柳尙運)이 그것의 불편함을 들어 말하기를, “이 지역은 가로로 수백 리를 뻗었고,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서 도로가 막히고 끊어졌습니다. 지금 만약 진을 설치한다면 나무를 베고 길을 통하며 농토를 개간해야 되는데, 신설하는 쇠잔한 진이 이미 적을 막기에 부족하고 도리어 적에게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또 토지를 개간하면 초피(貂皮)와 산삼(山蔘)의 이익도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폐단이 반드시 많아서 국경을 침범하</p> | <p>○乙亥/引見大臣、備局諸臣。先是，兵曹判書南九萬請於廢四郡，【閔延、茂昌、慈城、虞芮，卽江邊廢地。】設置四鎭。大臣金壽恒，亦以爲便，已令差出四鎭邊將。至是，大司諫柳尙運言其不便曰：“此地橫亘數百里，樹木叢雜，道路阻絕。今若置鎭，則當伐木通道，開墾田土，新設殘鎭，既不足以禦賊，而反開賊路。且土地關，則貂參之利絕矣。其弊必多有犯越之患，而重峰疊嶂，四塞不通，雖欲設烽燧，其路無由。此皆不便之端也。”</p> |

| | | |
|--|---|--|
| | <p>는 근심이 있을 것이며, 겹겹이 쌓인 험준한 봉우리가 사방으로 막혀서 통할 수 없으므로, 비록 봉수(烽燧)를 설치하려고 하더라도 시작할 길이 없으니, 이 모두가 불편한 단서입니다.”</p> <p>하니, 남구만이 말하기를,</p> <p>“북로의 초피와 산삼은 삼수(三水)와 갑산(甲山)에서 생산되고, 삼수·갑산에 고을을 설치한 지는 벌써 여러 백년에 이르렀는데도 그 이익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무리 사군(四郡)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아루아침에 단절되겠습니까? 그리고 강변으로 왕래하는 길이 한둘이 아닌데, 적이 어찌해서 꼭 사군을 거쳐서 오겠습니까? 도리어 적의 길을 열어 준다는 말도 그렇지 않습니다. 수목(樹木)이 아무리 가림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찌 사람을 모집하여 들여보내는 것과 같겠습니까?”</p> <p>하니, 여러 신하들 중 유상운(柳尙運)의 말이 온당하다고 하는 이가 많았다. 김수항(金壽恒)이 다시 남구만을 시켜 여러 대신들에게 가서 의논하도록 청하였는데, 이 뒤에 남구만이 여러 대신들에게 가서 물었더니, 우의정(右議政) 김석주(金錫胄)는 유상운의 의논을 주장하여 말하기를,</p> <p>“궁벽한 지역에 실제로 백성을 모집하기 어렵고, 접대하기도 어려우니, 먼저 두 곳에 첨사(僉使)를 두어 형세를 살펴보게 한 뒤에 더 설치하는 것이 옳습니다.”</p> <p>하였고,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은 말하기를,</p> | <p>九萬曰：“北路貂參，出於三、甲，而三、甲設邑，已至累百年，其利不絕。今雖置四郡，豈至一朝斷絕乎？江邊往來之路，非一二則賊來，豈必由四郡乎？反開賊路之說，亦不然矣。樹木雖可爲防蔽，而亦豈如募入人民乎？”諸臣多以尙運言爲便。金壽恒請更令九萬，往議諸大臣。是後，九萬往問諸大臣，右議政金錫胄主尙運議以爲：“窮僻之地，實難募民，又難接待。官員先置二處僉使，觀勢加設爲可。”左議政閔鼎重以爲：“不可不仍設四鎮。”金壽恒、壽興從錫胄言，以先設二鎮爲便，上從之，命設茂昌、慈城二鎮。其後論者多言不便，而南致熏尤力言其非，後二鎮，卒亦罷。</p> |
|--|---|--|

| | | |
|--|--|---|
| | <p>“그대로 사진(四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다.”</p> <p>하였으며, 김수항과 김수흥(金壽興)은 김석주의 말을 따라 먼저 두 진을 설치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니, 임금이 김수항 등의 말을 따라 무창(茂昌)·자성(慈城)의 두진을 설치하도록 명하였다. 그 뒤에 의논하는 자들이 많이들 불편함을 말하였고, 남치훈(南致熏)이 더욱 극력히 그 잘못을 말하므로 뒤에 두진도 마침내 파하였다.</p> |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4월 14일(병술) 1번째기사</p> | <p>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이 그 누이를 문병하려고 김화(金化)에 갔다. 대체로 송시열이 그 때 이미 쉬려고 물러나와 있었기 때문에 출입을 조정에 보고하지 않았다. 임금이 처음에 듣지 못하였다가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이 능원(陵園)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일행을 만나고 돌아와서 아뢰고 약품을 지급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어의(御醫)를 보내어 약품을 가지고 따라가게 하였으며, 또 사관(史官)을 보내어서 빨리 갔다가 돌아오도록 유시하게 하였다.</p> | <p>○丙戌/奉朝賀宋時烈往省其妹病於金化。蓋時烈，時已休退，故出入不告朝廷。上初不聞，左議政閔鼎重行園歸路，遇其行歸白之，請給藥物。上遣御醫，(特) [持] 藥物隨行。又遣史官，諭以斯速往返。</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4월 26일(무술) 2번째기사</p> | <p>강도(江都)의 쌀 6천 석을 호조에 옮기도록 명하였는데, 판서(判書) 윤계(尹堦)가 경비가 부족하다 하여 이렇게 청하였던 때문이다.</p> | <p>○命移江都米六千石于戶曹，判書尹堦以經費不足，有是請。</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4월 29일(신축) 1번째기사</p> |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우의정(右議政) 김석주(金錫胄)가 새로 청국(淸國)으로부터 돌아와 저들 국중의 실정과 형세를 나아가 아뢰기를,</p> <p>“지난날 청주(淸主)4386)가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대주(代州)를 순행한 것은 그 뜻이 대개 서쪽의 달자(獐子)를 염려한 것인데, 순행을 나갈 때 그 형을 시켜 나라를 감독하게 하고 모든 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주문(奏問)하여 시행하라 하였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기강이 크게 문란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남방 사람으로 높은 벼슬에 오른 이가 많고, 절강(浙江) 사</p> | <p>○辛丑/御晝講。右議政金錫胄新自淸國還，進白彼中情形曰：“向日，淸主親率兵出巡代州，其意蓋慮西獐，而出巡時使其兄監國，凡有大事，必奏聞而行之。以此觀之，紀綱不至大紊矣。即今南方人多爲達官，浙江人爲吏部尙書者，即明朝死節臣宋學周之孫也。楊漣之孫、孫閣老之孫皆仕於朝，</p> |

람으로 이부 상서(吏部尙書)가 된 자는 곧 명(明)나라 조정에 사절(死節)한 신하 송학주(宋學周)의 후손이며, 양연(楊漣)의 후손과 손각로(孫閣老)의 후손이 모두 청나라 조정에 벼슬하니, 천하가 명(明)나라를 잊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설령 참된 영웅이 나타나서 하나로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태조 황제(太祖皇帝)의 한번 군사를 일으켜 사막(沙漠)까지 몰아낸 것 같은 일은 역시 쉽게 기약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인심이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남방 군사로 돌아오지 못한 자가 겨우 7분의 1이고, 경정충(耿精忠) 부자(父子)와 상지효(尙知孝) 형제가 그 가족 여러 백명과 함께 모두 사로잡혀 경정충과 상지효 등 여러 사람은 저자에서 참형을 당하였으나, 그의 가동(家童)들은 안치(安置)시켜 두었으니, 이것으로 보면 병력이 아주 약한 지경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해안 방어의 우려가 예측할 수 없으나, 혹은 정금(鄭錦)이 이미 죽고 그 동생이 대신하여 그 무리를 거느린다고도 하는데, 그의 말을 꼭 믿어야 할 지는 모르겠지만, 일본(日本)에서 통보한 것을 보면 오히려 믿을 만합니다. 우리 나라의 지형이 중국과 매우 유사(類似)하여 서산(瑞山)과 태안(泰安)은 중국의 청주(靑州)·제주(濟州)와 같고, 강진(康津)과 해남(海南)은 회수(淮水)·사수(泗水) 지방과 같으며, 제주(濟州)는 절강(浙江)과 같습니다. 우리 나라가 일본과는 비록 강화(講和)에 매여 있어서 아직 틈이 벌어진 것은 없으나, 연해(沿海) 방면의 변고가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여 십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대흥 산성(大興山城)은 천마산(天磨山)에 있는데, 지세가 대단히 험준하며 적이 마음대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만, 매우 궁벽한 지역이라 한갓 스스로 지킬 수는 있으나 성원(聲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세가 원대함이 남한 산성(南漢山城)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승려의 무리를 많이 모집하여 편안히 성중에 머물게 하고, 남한 산성의 예와 같이 환곡(還穀)의 출납을 완전히 승도(僧徒)에게 책임 지웁니다. 또 승도들에게 가자첩(加資帖)을 많이 내어 주어 곡식을 모아 그 수를 채우게 하

天下之忘大明久矣。設令有眞英雄出而混一之，若太祖皇帝之一舉而驅出沙漠，亦未易期也。以此觀之，人心不至大危矣。南方戰士之未得還者，纔七分之一。耿精忠父子、尙知孝兄弟，竝其家累百口皆被獲，斬耿、尙諸人於市，而安置其家僮。以此觀之，兵力不至大弱矣。惟海防之虞，有不可測者，或言鄭錦已死，其弟代領其衆。雖未知其言之必信，而以日本所報觀之，猶可信也。我國地形，大類中國，瑞、泰猶靑、齊也，康、海猶淮、泗也，濟州猶浙江也。我國之於日本，雖羈縻講解，姑無罅隙，而沿海陰雨之備，則不可不十分措意也。且大興山城在天磨山，地勢險絕，賊不得來，而但其地甚僻，徒能自守，而不能爲聲援，故其形勢，遠不及南漢矣。然多募僧徒，安頓城中，糶糴之穀專責僧徒，如南漢例，而且多出僧徒加資帖，募粟以實之似得。”上從之。

| | | |
|--|--|---|
| | 면 적합함을 얻을 듯합니다.” | |
| |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
| 속보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1월 19일(신유) 1번째기사 | 각 군사 아문(軍事衙門)과 이서(吏胥)들의 면신(免新)하는 규례를 혁파하라고 명하였는데, 【면신(免新)은 새로 벼슬에 차임(差任)된 자가 선진(先進)들에게 음식을 차려 대접하거나 물품을 바치는 일이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남구만(南九萬)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대체로 면신(免新)은 구례의 잘못 인습된 것인데, 혹 이로 인하여 파산(破産)하는 자까지 있다고 남구만이 임금에게 말하여 일체 금지하도록 하였다. 또 액정(掖庭)79) 에도 이런 폐단이 있는데, 법령의 시행은 반드시 안에서 밖으로 과급되는 것이므로, 액정에서부터 시작함이 마땅하다고 말하니, 마침내 모두 금지하도록 명하였다. | ○辛酉/命罷軍門、各司與吏胥免新之規。【免新，新差者餉先進及納物。】從兵判南九萬言也。蓋免新，舊例之因謬者，或有因此破産，九萬言於上，一切禁之。又言掖庭亦有此弊，法令之行，必自內及外，宜自掖庭始，遂命並禁。 |
| 속보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2월 2일(갑술) 1번째기사 | 지평(持平) 박태유(朴泰維)·유득일(兪得一)등이 김익훈(金益勳)에게 법을 시행하고 멀리 귀양보내도록 발의(發議)하여 아뢰기를, “김익훈은 간특(奸慝)한 무리로 훈척(勳戚)의 세력을 끼고 외람되게 장수의 직임을 맡았고, 공과 상을 탐하였습니다. 바로 김환(金煥) 등이 염탐할 때에는 상하가 화답하여 응대하여 마침내 고변서(告變書)를 급히 올리기에 이르렀습니다. 허새(許璽)·허영(許瑛) 등의 무리가 비록 흥계를 모의한 것으로 법에 따라 복주(伏誅)되었으나, 증거로 끌어낸 여러 사람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전익대(全翊戴)의 실상에 이르러서는 김익훈과 김환이 거짓으로 통하고 지향하는 뜻이 서로 합하여, 처음에는 군뢰(軍牢)를 보내 밤중에 협박하여 무고하게 하였으며, 마침내 김환과 전익대가 함께 그 집에 나아가 사정을 힐문(詰問)하여 공초(供招)를 받아 구류(拘留)시켰으니, 그간의 허실을 김익훈이 어찌 모를 이치가 있겠습니까? 당초 김환이 전익대를 달래고 협박하여 유명견(柳命堅)의 의심할 만한 자취를 염탐해 내려고 하였는데, 이미 모역(謀逆)한 | ○甲戌/持平朴泰維、兪得一等發金益勳加律遠竄之啓曰：“益勳以奸慝之徒，挾勳戚之勢，濫叨將任，貪覬功賞，乃於煥等譏察之時，上下和應，遂至變書之急上。璽、瑛之徒雖以謀凶伏法，而所引諸人，俱無情實。至於翊戴事狀，益勳與煥機械相通，指意交合，始則給送軍牢，深夜誘脅，致令誣告，末乃煥與翊戴偕詣其門，詰問事情，取供拘留，則其間虛實，益勳豈有不知之理乎？當初煥誘脅翊戴，欲探柳命堅可疑之跡，而既知其謀逆之狀，不爲並告，則翊戴雖欲資緣益勳，誣人自功，爲益勳者所宜斥絶，不得已則使渠上變，事 |

사실을 알고도 함께 고발하지 않았다면, 전익대가 비록 김익훈을 인연해서 남을 무고하여 자기의 공을 세우려고 했더라도, 김익훈으로서는 배척하여 거절했어야 마땅하고, 어쩔 수 없었다면 저로 하여금 상변(上變)하도록 하는 것이 사리에 당연합니다. 그런데 국청(鞠廳)을 설치한 여러 날 뒤에 분명히 허위임을 알고도 고변서를 칭탁하여 비밀리 고발하고 실정을 가렸으니, 그 죄상을 추구해 본다면 전익대와 어찌 멀다고 하겠습니까? 전익대가 이미 승복하였는데 김익훈의 죄를 어찌 관직을 삭탈하여 내쫓는 데 그치겠습니까?…”

하니, 【비답(批答)은 위에 보인다.】 마침내 두 신하를 거제(巨濟)와 진도(珍島)로 내쫓으라는 명이 있었다. 이에 대신과 삼사(三司) 그리고 여러 승지들이 명을 도로 거두도록 힘써 다투었다. 【처음의 사초(史草)와 참고하여 보라.】 대체로 전익대(全翊戴)가 자백함으로써 공론이 다시 격렬하여 이 아뢰이 마침내 발의(發議)되었다. 비록 김수항(金壽恒)이라 하더라도 힘써 해명하여 구원할 수 없었으며, 송시열(宋時烈)도 처음에는 대간(臺諫)의 의논을 옹고 하였고, 청류(清流)들도 흡족히 그를 따랐다. 그 때 마침 송시열이 병이 있어 외부 손님을 대하지 않았는데, 김만기(金萬基) 형제만이 밤낮으로 곁에서 간호하며 김익훈(金益勳)을 위해 애걸하였다. 대저 송시열을 받드는 자들이 지극한 정성을 다하지 않음이 없어서, 때로는 초피(貂皮) 이불과 해송(海松) 죽(粥)을 주었다는 말이 있었다. 송시열도 이미 기운이 쇠약해서 사정(私情)에 끌리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마침내 처음의 견해를 변경하여 젊은 무리들이 김익훈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퍼뜨리며 유득일(兪得一)을 매우 준엄(峻嚴)하게 배척하였고, 민정중(閔鼎重) 역시 이것으로 소원(疏遠)함을 당하였다.

〈송시열이〉 사람을 대하여 번번이, ‘좌상(左相)이 어찌 분명한 외척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므로, 【적(赤)은 방언(方言)에 분명(分明)이라는 말이다.】

理當然。乃於設鞠屢日之後，明知虛僞，托變告密，情節陰秘，原其罪狀，與翊戴何遠哉？翊戴既已承款，則益勳之罪，豈止削黜？”云云。【批見上。】遂有兩臣巨濟、珍島斥補之命，大臣、三司、諸承旨力爭收還。【與初史參看。】蓋自翊戴輸款，公議復激，此啓遂發，雖以金壽恒亦不能出力救解。宋時烈初亦是臺論，清流泠然嚮之會。時烈有病不見客，獨金萬基兄弟，日夜在傍看護，爲益勳哀乞。凡所以承奉時烈者，無不用極，時有貂皮衾、海松粥之說。時烈既氣衰，不能不牽繫情私，遂變初見，揚言少輩將殺益勳，斥得一甚峻。閔鼎重亦以此見疎，對人輒言：“左相豈非赤外戚？”【赤，方言分明也。】鼎重大畏之，遂駸駸折入。少輩又多變前見，附時烈而貳。臺議遂有老少論黨目，名以少論者，趙持謙、崔錫鼎、吳道一、韓泰東、朴泰輔、泰維、林泳、徐宗泰、沈壽亮、申琬、兪得一諸人爲其倡。老論者，李選、李秀彥、李頤命、李奮諸人，而前輩宋時烈、金錫胄以下，右老論者多；右少論者，朴世

| | | |
|--|---|--|
| | <p>민정중이 그 말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빨리 꺾여 들게 되었으며, 젊은 무리들도 많이 앞서의 견해를 변경하여 송시열에게 아부하며 두 마음을 품으므로 대각(臺閣)의 의논이 마침내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의 당목(黨目)이 생겼다. 소론으로 이름한 자는 조지겸(趙持謙)·최석정(崔錫鼎)·오도일(吳道一)·한태동(韓泰東)·박태보(朴泰輔)·박태유(朴泰維)·임영(林泳)·서종태(徐宗泰)·심수량(沈壽亮)·신완(申琬)·유득일(兪得一)등 여러 사람이고, 노론이라고 부르는 자는 이선(李選)·이수언(李秀彦)·이이명(李頤命)·이여(李畬)등 여러 사람이다. 전배(前輩)인 송시열(宋時烈)·김석주(金錫胄)이하 노론을 돕는 자가 많았고, 소론을 돕는 자는 박세채(朴世采)·이상진(李尙眞)·남구만(南九萬)등 여러 사람인데, 노론은 훈척(勳戚)을 끼고 세력으로 억누르며, 청의(淸議)를 가진 자를 많이 말살시켰으므로 이제 송시열을 다시 사류로 여기지 아니하였다.</p> | <p>采、李尙眞、南九萬諸人，而老論挾勳戚，以勢力勝之，持淸議者多致抹撥。於是乎時烈不復爲士類矣。</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6월 10일(신사) 3번째기사</p> | <p>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과 우의정(右議政) 김석주(金錫胄)가 청대(淸對)하였다. 김수항이 말하기를,</p> <p>“신이 당한 경우는 전고(前古)에 거의 없던 바입니다. 심극(沈極)의 일은 비록 스스로 수립(樹立)한 바는 아니나, 전후(前後)로 후욕(詬辱)한 것은 결코 사부(士夫)의 풍습(風習)이 아닙니다. 신이 비록 중망(重望)을 받기에는 부족하나, 그 지위가 대신이니, 조정(朝廷)에 관계됨이 어찌 적다 하겠습니까? 또 박세채(朴世采)의 소(疏)는 말이 채용(採用)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정하는 근거로 삼았는데, 성명(聖明)께서 능히 감히 부르지 못할 신하를 초치(招致)하셨다면, 마땅히 협찬(協贊)하여 일을 같이 하여야 할 것이나, 그 뜻을 펴지 못하게 하여 신하됨을 그만두고 돌아가게 했으니, 신의 어진이를 쫓아낸 죄가 큼니다. 요사이 조론(朝論)이 괴격(乖激)한 것은 오로지 김익훈(金益勳)의 일 때문입니다. 신 등이 삭출(削黜)을 건청(建請)한 것은 대개 진정(鎮靜)시키고자 한 것이었으나, 마침 소결(疏決)4428) 을 당하여 갑자기 방식</p> | <p>○領議政金壽恒、右議政金錫胄淸對，壽恒曰：“臣之所遭，前古罕有。沈極事，雖非所自樹，而前後詬辱，決非士夫風習。臣雖不足見重，而其位則大臣也，有關於朝廷豈少哉？且朴世采疏以言不見用，爲決歸之地。聖明能致所不召之臣，則固宜協贊同事，而使不得展布，致爲臣而歸，臣之逐賢之罪大矣。近日朝論之乖激，只以金益勳事也。臣等之建請削黜，蓋欲鎮靜，而適當疏決，遽命放釋。因此轉激，以至儒臣引嫌乞退，臣之不卽請其還收者，亦見事不明之罪也。左相筮子論益勳事，詳盡的當，而世采亦縷縷於前</p> |

| | | |
|--|--|--|
| | <p>(放釋)하라 명하셨으므로, 이로 인하여 점차 격렬해짐으로써 유신(儒臣)이 인협(引嫌)하고 물러나기를 청하는 데 이르기까지 하였으니, 신이 즉시 환수(還收)할 것을 청하지 못한 것 또한 일을 봄이 밝지 못한 죄입니다. 그리고 좌상(左相)의 차자(筭子)에서 김익훈의 일을 매우 상세하고 적당(的當)하게 논하였으며, 박세채(朴世采) 또한 전석(前席)에서 누누이, ‘삭출(削黜)은 이미 중벌(重罰)이 아니니 방석(放釋)의 더디고 빠름은 진실로 관계될 바가 없다.’고 하였는데, 어찌 반드시 사람들의 말을 완강히 물리치셔서 대신(臺臣)으로 하여금 서로 버티게 하십니까?”</p> <p>하고, 김석주 또한 말하기를,</p> <p>“우선 출벌(黜罰)로 처치해 사람들의 말을 막는 것 또한 무엇이 해로움이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심극(沈極)이 방자하게 능멸하여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으니, 조가(朝家)의 체통(體統)으로 어찌 이와 같은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사세(事勢)를 보아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김익훈의 일은 대신의 말이 이와 같으니 일단 방석(放釋)하지 않겠다.”</p> <p>하였다. 김수항이 말하기를,</p> <p>“며칠 전 연중(筵中)에서 조지겸(趙持謙)이 김익훈의 화약(火藥)에 대한 일을 말하면서 좌상(左相)과 우상(右相)을 들어서 증거로 삼기까지 하였는데, 신은</p> | <p>席，削黜既非重罰，而放釋之遲速，固無所關，何必強拂人言，使臺臣相持乎？” 錫胄亦曰：“姑置黜罰，以杜人言，亦何傷乎？” 上曰：“沈極肆然凌踏，靡所不至，朝家體統，豈容如是？當觀勢處之。益勲事，大臣所達如此，姑勿放釋。” 壽恒曰：“向日筵中，趙持謙言益勲火藥事，至舉左右相爲證。臣固疑左相之何從的知，而爲此言，但持謙既以親自酬酢爲言，故只爲泯默而退。及後見持謙疏，始知左相之言不然矣。” 錫胄曰：“臣於其時，亦意其自御營出給矣，及後詳聞之，乃壽萬得之都監砲手，而非益勲所給云矣。” 壽恒曰：“火藥非獨官府所有，私家亦多儲置者，故壽萬買得於砲手月課防納人處，投之賊家。及事覺籍沒，此物亦入其中，壽萬欲還取其直，呈訓局而大將申汝哲却之。壽萬遂更呈備局，故臣見此而後，始知火藥卽壽萬所自買，非出於軍門者也。” 罷對後，上下教以爲：“掌令沈極趨附時議，凌蔑大臣之罪，不可不懲，遞差，特授孟山縣監，卽日發送。” 政院覆逆，上不允。</p> |
|--|--|--|

진실로, ‘좌상이 어디서 확실하게 알아내어 이런 말을 하는가?’하며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지겸이 이미 직접 수작(酬酢)하였다고 말하였으므로 단지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다가 물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조지겸의 소(疏)를 보고서 비로소 좌상의 말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자, 김석주가 말하기를,

“신이 그 당시에는 또한 어영(御營)에서 내어준 것으로 여겼습니다만, 뒤에 상세하게 들어보니, 곧 한수만(韓壽萬)이 도감 포수(都監砲手)에게 얻은 것이었고, 김익훈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였다. 김수항이 말하기를,

“화약은 단지 관부(官府)에서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가(私家)에서도 또한 많이 비축(備蓄)해 두는 것이므로, 한수만이 포수(砲手)의 월과(月課)4429)를 방납(防納)4430) 하는 사람에게서 사서 적당(賊黨)의 집에 던져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발각(發覺)되어 적몰(籍沒)함에 이르자 이 물건 또한 그 가운데 들어갔으므로, 한수만이 그 값을 되돌려 받고자 하여 훈국(訓局)에 바쳤는데, 대장(大將) 신여철(申汝哲)이 물리치자 한수만이 다시 비국(備局)에 바쳤으므로, 신이 이를 보고 난 후에야 비로소 화약은 한수만이 스스로 산 것이고 군문(軍門)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파대(罷對)한 뒤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장령(掌令) 심극(沈極)이 시의(時議)에 불쫓아 대신(大臣)을 능멸(凌蔑)한 죄

| | | |
|--|---|--|
| | <p>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체차(遞差)하여 맹산 현감(孟山縣監)에 특별히 제수하니, 즉일(卽日)로 발송(發送)하라.”</p> <p>하였다. 정원(政院)에서 복역(覆逆)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p> |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6월 16일(정해) 3번째기사</p> | <p>공조 참판(工曹參判) 박세채(朴世采)가 있는 곳에서 전유 사관(傳諭史官)이 병 때문에 명(命)을 받들지 못한다는 뜻으로 계문(啓聞)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마땅히 내 뜻을 소(疏)의 비답(批答)에 유시(諭示)할 것이니, 사관(史官)은 지금 우선 올라오라.”</p> <p>하고, 의관(醫官)을 보내 약물(藥物)을 가지고 가서 간병(看病)하게 하였다.</p> | <p>○工曹參判朴世采處傳諭史官，以病不得承命之意啓聞，傳曰：“當諭予意於疏批，史官今姑上來。”遣醫持藥物看病。</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6월 29일(경자) 3번째기사</p> | <p>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이 향리(鄉里)에서 상소(上疏)하고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筭疑)》를 올렸다. 【박세채(朴世采)가 송시열(宋時烈)이 찬(撰)한 차의(筭疑)를 올리게 하라고 청하였기 때문에 송시열이 올렸던 것이다.】 그 소(疏)에 이르기를,</p> <p>“위란(危亂)의 단서(端緒)가 하나만이 아니니, 오직 성인(聖人)의 도(道)만이 구(救)할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강(講)하는 바가 경훈(經訓)이 아님이 없으나, 그 문자(文字)는 간약(簡約)하고 의리(義理)는 은밀(隱密)하기 때문에 정신을 기울여서 사색(思索)해야 하므로 싫어하는 마음이 쉽사리 생깁니다. 그러므로 씹어서 음미해 보기도 전에 이미 저절로 하품과 기지개가 나고 졸음이 오니, 생각건대 어찌 능히 쇠고기나 돼지고기가 입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기뻐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주자(朱子)의 글은 특 트이고 시원스러우며 명백하고 곡진해서 전혀 어렵고 거친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뜻이</p> | <p>○奉朝賀宋時烈在鄉上疏，進《朱子大全筭疑》。【朴世采請令時烈進所撰《筭疑》，故時烈進之。】其疏曰：</p> <p>危亂之端非一，而惟聖人之道可救。殿下所講，無非經訓，然其文字簡約，義理微密，費精思索，厭心易生。故未及咀嚼，已自欠伸思睡矣。顧安能歆動權析，若芻豢之悅口哉？惟此朱子書，通透灑落，明白委曲，絕無艱深險阻之態。故義益深而文益暢，理愈密而辭愈達，使人讀之，媿媿猶恐其易終，諷詠之間，不覺其犁然而意會，躍</p> |

길어질수록 글은 더욱 통창(通暢)하고, 이치가 세밀(細密)해질수록 말이 더욱 활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읽게 하면 되풀이한 것이 오히려 쉽게 끝날까 두려워하여 읊조리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전율하듯이 이해가 되고 뿔 듯이 신명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세채(朴世采)의 청은 ‘요점을 알고 납약(納約)4454) 에 급히 하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신이 또 저으기 생각하건대, 본조(本朝)의 입국(立國)은 조·송(趙宋)과 똑같기 때문에 그 말류(末流)의 폐단(弊端) 또한 더불어 서로 비슷합니다. 국세(國勢)의 선약(善弱)도 비슷하고 이서(吏胥)가 탐욕스럽게 방종(放縱)하는 것도 비슷하며, 호강(豪強)한 자가 제맘대로 난폭하게 구는 것도 비슷합니다. 주자(朱子)는 당시에 눈으로 이런 것들을 보았으므로, 말한 바가 매우 절실하고 정성스러워 그 병(病)에 꼭 들어맞는 약(藥)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병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이 약을 버리고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전(傳)에 이르기를, ‘후왕(後王)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가깝기 때문입니다. 옛 성현(聖賢)이 비록 많기는 하나 오늘날에 있어서 주자보다 가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에 잠심(潛心)하시고 깊이 생각하시어 싫어하거나 게으르지 아니하기를, 진정 주자가 매일 연석(筵席)에 있어 더불어 수작(酬酢)하는 것처럼 하신다면, 학문은 날로 진보하고 덕(德)은 날로 일어나 조정을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이야 족히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또한 선후(先後)·완급(緩急)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봉사(封事)4455)는 가릴 것이 없지만, 주차(奏劄)에 이르러서는 행궁편전(行宮便殿) 제이차(第二劄)인 논성학차(論聖學劄)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고, 계미수공(癸未垂拱) 제일차(第一劄)·제이차(第二劄)와 신축연화(辛丑延和) 제일차·제이차와 무신연화(戊申延和) 제오차(第五劄) 및 걸진덕차(乞進德劄) 등을 모두 순서대로 숙독(熟讀) 한 뒤 그 나머지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이 가지고 있

然而神興矣。然則世采之請，可謂知要，而急於納約者。臣又竊念，本朝立國，一如趙宋，故其末流之弊，亦與之相類。其國勢善弱類之，吏胥貪縱類之，豪強恣暴類之。朱子於當時，目見其然，其所言痛切精懇，藥當其病。欲治今日之病，捨是藥何以哉？《傳》曰：“法後王。”何也？以其近也。古聖賢雖多，而其在今日，則莫近於朱子。於此潛心熟復，不厭不倦，真若朱子曰在筵席，相與酬酢，則學日進而德日起，其於正朝廷、安百姓，有不足言者矣。然於其中，亦不無先後緩急之殊。臣意以爲封事則無可擇，而至於奏劄，則行宮便殿第二論聖學劄，最所當先，而癸未垂拱第一第二劄，辛丑延和第一第二劄，戊申延和第五劄及乞進德劄，皆當次第熟讀，而後可及其餘也。今臣所有《劄疑》，非敢效註釋之體，平日讀過之時，有所滯礙，則輒手錄成帙，與士友講質而已。今世采之意以爲，或有補於音義、句讀之間，故略有所取，而仰請如此。故敢繕寫隨劄以進，或不能無補於擇藁之盛德也。然如使世采、李翔等，類侍

| | | |
|---|---|--|
| | <p>는 차의(筭疑)는 감히 주석(註釋)하는 체제를 본뜬 것이 아니라, 평소 읽어나갈 때 막히는 곳이 있으면, 곧 손으로 기록한 것이 질(帙)을 이루어 사우(士友)들과 더불어서 강론(講論)하고 질의(質疑)한 것일 뿐입니다. 지금 박세채의 뜻은 혹 음의(音義)와 구두(句讀)의 사이에 보완한 것이 있으므로, 대략 취할 것이 있으리라 생각하여 이와 같이 우러러 칭찬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사(繕寫)해서 차자(笱子)와 함께 올리니, 혹 목부(牧夫)의 말이라도 채택한다는 성덕(盛德)에 보탬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세채와 이상(李翔)으로 하여금 한가할 때 자주 입시(入侍)하게 하신다면 이것을 일삼으실 것도 없을 것입니다.”</p> <p>하고, 그 아래에서 또 이르기를,</p> <p>“윤拯(尹拯)은 반드시 직명(職名)으로 구속할 것이 아니라 단지 포의(布衣)로서 불러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권상하(權尙夏)는 학술(學術)이 정명(精明)하니 또한 강독(講讀)에 참여하게 할 만합니다.”</p> <p>하니, 답하기를,</p> <p>“반복해서 진달한 말이 명백하고 간절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하게 하니 유념(留念)하여 복응(服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p> <p>하였다.</p> | <p>燕閑，則亦無事於此也。</p> <p>其下又以爲：</p> <p>尹拯不必縻以職名， 只以布衣召見。 權尙夏學術精明， 亦可使備講讀。</p> <p>答曰： 反覆陳說， 明白懇切。 令人感歎， 可不留神而服膺焉？”</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윤6월</p> | <p>우의정(右議政) 김석주(金錫胄)가 청대(請對)하여 말하기를,</p> <p>“지금 쌀값이 크게 뛰어올라 도민(都民)이 주리고 군색(窘塞)하니, 제방미(除</p> | <p>○壬子/右議政金錫胄請對言：“卽今米價踊貴， 都民飢窘， 請以除防米千餘石， 糶賣各塵， 以紓民困。” 且言：</p> |

| | | |
|---|---|---|
| <p>12일(임자) 1번째기사</p> | <p>防米) 1천여 석을 각진(各塵)에 내다 팔아 백성의 곤궁(困窮)함을 풀게 하소서.”</p> <p>하고, 또 말하기를,</p> <p>“전라도 선유 어사(全羅道宣諭御使) 이동옥(李東郁)은 제주(濟州)의 죄인(罪人)을 일체(一體) 구관(句管)4462) 하여 소식(疏釋)하는 일로 이미 조정(朝廷)의 명(命)이 있었는데도 바다를 건너는 것을 싫어하고 꺼려서 품고(稟告)하지 않았으며, 환조(還朝)한 뒤에도 단지 바빠서 거행(舉行)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으니, 진실로 지극히 한심스럽습니다. 청컨대 이동옥을 파직(罷職)시키고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그리고 문반(文班) 참하관(參下官)으로서 적체(積滯)된 자가 몹시 많은데, 사관(四館)4463) 을 통틀어 계산한다면 거의 1백 명에 가깝습니다. 그 가운데 나이가 50에 찬 자는 따로 6품으로 천출(遷出)시키고 나머지는 대신(大臣)에게 문의(問議)하여 적체된 바를 소통(疏通)시킬 방도를 생각하게 하소서.”</p> <p>하고, 또 서북인(西北人)을 탁용(擢用)하여 인심(人心)을 크게 권면(勸勉)시킬 것을 청하니, 임금의 모두 허락하였다.</p> | <p>“全羅道宣諭御史李東郁以濟州罪人一體句管疏釋事，既有朝命，而厭憚越海，不爲稟告，還朝後只以忙不舉行爲言，誠極寒心，東郁請罷職不敍。文參下積滯甚多，通計四館，殆近百人。其中年滿五十者，別令遷出六品，其餘則問議大臣，以爲疏通之道。”又請擢用西北人，激勸人心，上竝許之。</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윤6월 19일(기미) 3번째기사</p> | <p>처음에 임금이 흉년이 들었다 하여, 각 아문(衙門)과 여러 궁가(宮家), 그리고 내사(內司)에 소속된 염분(鹽盆)·선척(船隻)·어전(漁箭)을 재감(裁減)하라 명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호조(戶曹)에서 계하(啓下)하자, 임금이 또 내사 및 여러 궁가의 것으로서 재감하는 데 든 것은 모두 표(標)를 붙여 허락하지 말라 명하고, 외상사(外上司)와 예전의 궁가(宮家) 약간처(若干處)에만 재감할 것을 허락하였다. 승지(承旨) 송창후(宋昌後)가 입대(入對)로 인하여 임금에게 아뢰</p> | <p>○初，上以年凶，命裁減各衙門、諸宮家、內司所屬鹽盆、船隻、漁箭，至是自戶曹啓下。上又命內司及諸宮家之入於裁減者，皆付標不許，而外上司及舊宮家若干處，只許裁減。承旨宋昌後因入對白上曰：“見者恐以此舉爲偏</p> |

| | | |
|---|--|--|
| | <p>기를,</p> <p>“보는 자들이 이 일을 편계(偏係)된 것이라고 할까 두렵습니다. 마땅히 다시 마련(磨鍊)해야 할 것입니다.”</p> <p>하였으나, 임금이 충분히 참작하였다고 하교하고,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삼가 살피건대 왕자(王者)는 법을 만들고 교화(教化)를 베풀어 있어서, 반드시 안에서 밖으로,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해야 하는 것이니, 위에서 능히 몸소 행하지 못하면서 아랫사람에게 사사로움이 없게 하라고 책려(責勵)하기는 어렵다. 지금 한때의 편계(偏係)한 뜻으로 인하여 성덕(聖德)에 누(累)를 끼침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장차 무엇으로써 군공(群工)을 책려하여 보고 느끼는 바가 있게 할 것인가? 아! 애석하도다.</p> | <p>係，宜更爲磨鍊。”上教以既已十分參酌，終不許。謹按，王者作法施教，必自內而外，自近而遠，上不能躬行，而責下之無私難矣。今因一時偏係之意，未免貽累於聖德，將何以責勵群工，有所觀感乎？嗚呼惜哉！</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7월 2일(신미) 1번째기사</p> | <p>헌부(憲府)에서 논하기를,</p> <p>“전라 병사(全羅兵使) 이필(李泌)은 군무(軍務)를 팽개치고 술과 연락(燕樂)에 빠져, 춘초(春初)의 애통(哀痛)하여 조서(詔書)로 선유(宣諭)하였을 때에도 여느 때와 똑같이 풍악을 잡히고 술자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생일 때는 수령(守令)들을 불러다 수물(壽物)을 받고, 스스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 미친 듯이 뛰고 부르짖었습니다. 또 금년 봄 기민(飢民)을 구휼(救恤)하였을 때 기민의 숫자를 거짓으로 불렀는데, 남은 곡식을 둔 곳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청컨대 나문(拿問)하게 하소서.”</p> <p>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p> | <p>○辛未/憲府論全羅兵使李泌拋棄軍務，縱酒燕淫，春初哀痛詔宣諭之時，張樂酣宴，一如平常。且其生日招邀守宰，受其壽物，自爲歌舞，狂蹈亂呼。又於今春賑飢時，虛張飢民名數，剩餘之穀，不知置處，請拿問，不從。</p> |
| <p>숙종 14권, 9년(1683</p> |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를 인견(引見)하였다. 영돈녕(領敦寧) 민</p> | <p>○引見大臣、備局諸臣。領敦寧閔維</p> |

| | | |
|---|--|--|
| <p>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7월 23일(임진) 2번째기사</p> | <p>유중(閔維重)이 말하기를, “양호(兩湖)의 대동미(大同米)를 모두 12두(斗)로 정하였는데, 유독 영남(嶺南)만은 13두로 정하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쓰임을 절제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에 불과하니, 지금 비록 1두를 감하더라도 경비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p> | <p>重曰：“兩湖大同，皆定以十二斗，而獨嶺南定爲十三斗。爲國不過曰節用愛民，今雖許減一斗，可支經用。”上許之。</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8월 3일(임인) 1번째기사</p> | <p>함경도 감진 어사(咸鏡道監賑御史) 심극(沈極)이 도내(道內)의 수령(守令)으로서 곡물(穀物)을 스스로 갖추어 진휼(賑恤)을 잘한 자를 초계(抄啓)하니, 길주 목사(吉州牧使) 목임기(睦林奇)는 가자(加資)하고, 그 나머지에게도 말[馬]과 비단을 하사하였다.</p> | <p>○壬寅/咸鏡道監賑御史沈極以，道內守令自備穀物善賑者抄啓。吉州牧使睦林奇加資，其餘賜馬賜帛。</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8월 23일(임술) 1번째기사</p> | <p>이에 앞서 흉년 때문에 대전(大殿)과 중전(中殿)의 삼명일(三名日)4528) 방물(方物)을 임시로 감(減)하라고 명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예조(禮曹)에서 향상(享上)하는 의식(儀式)을 오랫동안 폐지할 수 없고, 올해는 다소 풍년이 들었다 하여, 동지(冬至)부터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봉진(封進)할 것을 청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농사가 다소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진휼(軫恤)하는 뜻을 잃을 수는 없다. 지금은 그대로 감(減)하도록 하라.” 하였다.</p> | <p>○壬戌/先是，因年凶，命權減大殿、中殿三名日方物。至是，禮曹以享上之儀，不可久廢。今年稍稔，請自冬至，依前封進。傳曰：“不可以穡事稍稔，遽忘軫恤之意，今姑仍減。”</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9월 2일(경오)</p> |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심경(心經)》을 강(講)하였는데, 호씨(胡氏)가 말한, ‘술마십에 그 양(量)이 한계가 없으나 어지러운 데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니, 어지러워지면 안으로는 심지(心志)를 어렵게 하고 밖으로는 위의(威儀)를</p> | <p>○庚午/御晝講。講《心經》。至胡氏說惟酒無量不及亂，亂則內昏心志，外喪成儀處，上曰：“古今敗家亡身，</p> |

| | | |
|---|---|--|
| <p>1번째기사</p> | <p>해치게 된다.’는 데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p> <p>“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산(家産)을 탕진하고 몸을 망치는 것이 모두 이에 말미암았으니, 마땅히 가장 거울삼아 경계해야 할 것이다.”</p> <p>하고, 이어 승지(承旨)에게 효유(曉諭)하기를,</p> <p>“지난번에 술을 경계하라는 뜻을 군공(群工)에게 경칙(警飭)하였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 반드시 해이해졌을 근심이 있다. 외방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관원은 마땅히 깊이 경계해야 할 것이니, 각별히 중외(中外)에 신칙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 <p>皆由於此，最當監戒。” 仍諭承旨曰：“向以戒酒之意，警飭群工，日月已久，必有懈弛之患。 外方臨民之官，尤當深戒，各別申飭中外。”</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9월 5일(계유) 4번째기사</p> | <p>동래부(東萊府)의 아전 최정항(崔挺恒)·여자신(余自信)·권해순(權海順)이 관왜(館倭) 근병위(近兵衛)란 자와 더불어 부동(符同)하여 간계(奸計)를 써서, 왜료미(倭料米) 4백 석과 대두(大豆) 80석, 매[鷹] 4좌(坐)의 가포(價布)를 훔쳐냈는데, 사건이 발각되자 근병위는 왜관(倭館)에서 끝까지 핵문(覈問)하니 취복(就服)하였고, 여자신·권해순은 본부에서 추문(推問)하니 승복(承服)하였으며, 최정항은 이미 물고(物故)하였다. 비국(備局)에서 계청하기를,</p> <p>“여자신(余自信) 등은 예에 의거하여 관문(館門) 밖에서 효시(梟示)하고 적왜(賊倭) 또한 왜관(倭館)으로 하여금 한 곳에서 형(刑)을 집행할 것이며, 최정항은 물고(物故)하였다고는 하나, 여자신 등과 아울러 강도(強盜)의 율(律)로 논(論)하여 처자(妻子)를 몰입(沒入)해 노비(奴婢)로 삼으소서.”</p> | <p>○東萊府吏崔挺恒、余自信、權海順與館倭近兵衛者，符同用奸，偷用倭料米四百石、大豆八十石、鷹四坐價布，事發覺。 近兵衛則自倭館窮覈就服，余自信、權海順則自本府推問承服，崔挺恒則曾已物故。 備局啓請自信等依例梟示於館門外，賊倭亦令倭館一處行刑。 崔挺恒雖已物故，竝自信等論以強盜之律，沒入妻子爲奴婢，從之。</p> |

| | | |
|--|---|---|
| |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
| 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9월 12일(경진) 1번째기사 | <p>밤에 옥당관(玉堂官)을 소대(召對)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해마다 거듭해서 드는데, 그 원인을 궁구(窮究)해 본 즉, 모두 과매(寡昧)의 실덕(失德)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리고 조정이 봉당(朋黨)으로 나뉘어져 이미 괴격(乖激)한 풍습(風習)을 이루었으니, 이 또한 재앙을 불러들이는 길인 것이다. 여러 신하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p> <p>하고, 이어 선은(宣醞)하라 명하고 이르기를,</p> <p>“방금 술을 경계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여러 신하들은 양껏 마시되, 과음(過飲)하지는 말도록 하라.”</p> <p>하였다. 논난(論難)이 《명사(明史)》에 이르자, 말하기를,</p> <p>“우리 나라에 있어서 신종 황제(神宗皇帝)는 실로 망극한 은혜가 있다. 임진란(壬辰亂) 때 만약 신종 황제의 구제(救濟)함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나라가 마땅히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병자년(4533)·정축년(4534)의 일은 비록 부득이한 데서 나왔으나, 대명(大明)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은 분명히 세상이 다하도록 잊을 수 없는 것이다.”</p> <p>하였다.</p> | <p>○庚辰/夜, 召對玉堂官。 上曰: “水旱災沴, 比年荐行, 究其原則皆由寡昧之失德, 而朝著分朋, 已成乖激之風。 此亦召災之道, 諸臣不可不念。” 仍命宣醞曰: “纔有戒酒之命, 諸臣隨量毋過飲。” 論及《明史》曰: “神皇於我國, 實有罔極之恩, 壬辰之亂, 若非神皇之救濟, 則我國當至何如地也? 丙丁事, 雖出不得已, 而慕向大明之心, 正宜沒世而不忘也。”</p> |
| 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 관부사(判府事) 이상진(李尙眞)이 향리(鄉里)에서 상소(上疏)하여 올해의 면전(綿田)에 대해 급재(給災)할 것을 청하고, 또 말하기를, | ○判府事李尙眞在鄉上疏, 請給今年綿田災。 又言: |

| | | |
|---|---|---|
| <p>22년) 9월 18일(병술) 2번째기사</p> | <p>“여러 신역(身役)과 대동 작목(大同作木)4537) 은 결코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청컨대 해사(該司)로 하여금 혹은 헤아려서 감(減)해 주고, 혹은 물려서 봉납(捧納)케 하소서.”</p> <p>하였다. 또 말하기를,</p> <p>“해마다 기근과 흉년이 들어 각 고을에서 산성(山城)의 곡식을 받아 먹는 자가 몹시 많은데, 순창(淳昌) 한 고을은 장차 1만여 석(石)에 이를 것입니다. 청컨대 단지 반만 봉납(捧納)케 하고, 그 나머지는 가을을 기다려서 물려 봉납케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진소(陳疏)한 것이 홀민(恤民)하는 데서 나왔다고 비답(批答)하고,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p> | <p>諸般身役及大同作木，決難備辦，請令該司，或量減或退捧。</p> <p>又言：</p> <p>連歲飢凶，各邑之受食山城穀者甚多，淳昌則一邑將至萬餘石。請只捧一半，其餘則待秋退捧。</p> <p>上批以疏陳出於恤民，令廟堂稟處。</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9월 21일(기축) 1번째기사</p> | <p>헌부(憲府)에서 아뢰기를,</p> <p>“비국(備局)의 사목(事目)에 신구(新舊)의 조곡(糶穀)을 아울러 다 봉납(捧納)케 할 것이나, 그 숫자가 많아 봉납하기 어려운 고을은 본도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전문(轉聞)하게 하여 장차 분수(分數)를 정하여 나누어 주되, 이 또한 단지 새로 분급(分給)한 데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해 동안 포핍(逋欠)된 것이 한 호(戶)에 10여 석을 밀돌지 아니하니,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이는 것으로서는 결코 준비하여 갚기가 어렵습니다. 초출(抄出)하여 품계(稟啓)하라는 명령은 진실로 사세(事勢)를 살펴보고 견감(蠲減)하고자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반드시 봉납할 수 없게 된 뒤에야 견감하는</p> | <p>○己丑/憲府啓曰：“備局事目有新舊糶穀，竝令畢捧，其中數多難捧之邑，則使本道抄出轉聞，將爲定分數減給，而此亦只就新分給而言云。積年逋欠，一戶不下十餘石，以一年所收，決難備償。抄出稟啓之令，固出於觀勢蠲減之意。與其蠲減於必不可捧之後，孰若預爲參酌徵捧，以爲慰悅之道乎？新捧最多之邑，非不知末終之有減，而初頭之一併催督，其勢固然。下戶殘氓，</p> |

| | | |
|--|--|---|
| | <p>것과 미리 참작(參酌)해서 징봉(徵捧)하여 위열(慰悅)하는 도리로 삼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새로 봉납할 것이 많은 고을에서는 끝에 가서 견감해 준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처음에 일제히 독촉하는 그 형세가 진실로 그러하기 때문에 하호(下戶)의 잔氓(殘氓)은 두려워하고 겁을 내어 먼저 갚습니다. 그러나 토호(土豪)와 간리(奸吏)는 견감해 줄것을 바라고 바치지 아니하니, 그 견감하는 바가 공평하지 못한 폐단을 증가시키기에 적절합니다. 지금 기내(畿內)의 가까운 고을에서는 명령을 듣고 소요(騷擾)하여 죄다 이반(離叛)할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청컨대 유사(有司)로 하여금 신구(新舊)의 환자[還上]를 아울러 적절히 헤아려서 견감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 의논을 내렸다. 묘당(廟堂)에서 말하기를,</p> <p>“명분없는 은혜는 가볍게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청컨대, 여러 도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각 고을에 농사와 민력(民力)을 헤아려서 봉납(捧納)에 응할 수 있는 분수(分數)를 재정(裁定)해서 아뢰게 하고, 기전(畿甸)은 묘당에서 다른 도의 예(例)와 같이 재정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 <p>畏慄而先償；土豪奸吏，希望而不納，其所蠲減，適增不均之弊。目今畿內近邑，聞令搔擾，舉有離叛之心。請令有司，新舊還上，竝爲量宜蠲減。”</p> <p>上下其議，廟堂以爲：“無名之惠，有難輕施，只請令諸道監司，量度各邑農事民力，裁定應捧分數以啓，畿甸自廟堂裁定，如他道例。”從之。</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10월 22일(기미) 1번째기사</p> |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고, 청성 부원군(淸城府院君)김석주(金錫胄) 또한 자전(慈殿)의 하교(下敎)로 인하여 같이 입진(入診)하였는데, 이때부터 매번 같이 입진하게 하였으니, 대개 김석주가 의리(醫理)를 밝게 이해하였기 때문이었다. 약방에서 아뢰어 사옹원(司饗院)에다 시약청(侍藥廳)을 설치하였다.</p> | <p>○己未/藥房入診。淸城府院君金錫胄亦因慈殿下敎同入，自是每令偕入，蓋爲錫胄曉解醫理也。藥房啓設侍藥廳于司饗院。</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p> | <p>시약청(侍藥廳)에서 재차 입진(入診)하고,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 또한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의 환후(患候)가 오늘부터 비로소 기창(起脹)하였다.</p> | <p>○庚申/侍藥廳再次入診，左議政閔鼎重亦入侍。上候自今日始起脹。</p> |

| | | |
|--|--|--|
| 22년) 10월 23일(경신) 1번째기사 | | |
| 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10월 30일(정묘) 1번째기사 | 해조(該曹)에 명하여 깨끗하고 편안한 여염집을 골라서 송시열(宋時烈)로 하여금 들어가 거처하게 하고, 식물(食物)과 시탄(柴炭)을 내려 주게 하였다 | ○丁卯/命該曹，擇淨便閭家，使宋時烈入處，賜食物柴炭。 |
| 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11월 1일(무진) 3번째기사 | 약방(藥房)에서 양 대비전(兩太妃殿)에 소膳(素膳)은 진어(進御)하지 말고, 【두 환(痘患)의 금기(禁忌)로서 육膳(肉膳)을 진어(進御)하지 아니하였다.】 각전(各殿)에 공상(供上)하는 물膳(物膳)도 아울러 곧 평상시대로 회복하게 할 것을 계청(啓請)하니, 【임금의 환후(患候)가 불예(不豫)한 뒤로부터 공상(供上)도 아울러 정지하였다.】 왕대비전(王大妃殿)에서 오늘부터 비로소 상膳(常膳)으로 회복하라고 명하였다. | ○藥房啓請，兩太妃殿素膳，勿爲進御。【以痘患藥忌，不進肉膳。】各殿供上物膳，竝卽復常。【自上候不豫後，供上竝爲停止。】王大妃殿命自明日，始爲復常膳。 |
| 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11월 3일(경오) 1번째기사 | 좌윤(左尹) 이상(李翔)이 임금의 환후(患候)가 편안하지 않음을 듣고 들어오니, 식물(食物)과 시탄(柴炭)을 내려 주라고 명하였다. | ○庚午/左尹李翔聞上候不豫入來，命賜食物柴炭。 |
| 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11월 12일(기묘) 1번째기사 | 임금이 특별히 명하여 올해 각 고을의 세(稅)로 바치는 콩의 반을 면제 하게 하고, 도민(都民)의 각호(各戶)에 얼음과 쌀을 감(減)하여 저장하게 하였다. | ○己卯/上特命除今年列邑稅豆之半，都民各戶減藏冰米 |
| 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11월 25일(임진) 2번째기사 | 임금이 박세채(朴世采)와 이상(李翔)의 소(疏)가 정원(政院)에 머물러 있음을 듣고 가져오라고 명하여 보았는데, 박세채의 소는 대략에 이르기를,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큰 병이 새로 회복되면 장호(將護)하는 것이 꼭 필요하니, 조금이라도 과격(過激)하게 접촉하는 것이 있어 진기(眞氣)를 손상시키고 동요 시켜서는 아니된다.’ 하였는데, 요지는 음식을 절제(節制)하고 기거 | ○上聞朴世采、李翔疏留院，命取覽之。世采疏略曰： 朱子曰：“大病新復，正要將護，不可小有激觸，損動眞氣。”要在節飲食、慎起居、省思慮、專精神數者而已。 |

| | | |
|--|---|---|
| | <p>(起居)를 삼가며 사려(思慮)를 덜고 정신(精神)을 전일(專一)하게 하는 몇 가지에 있을 뿐입니다. 이른바 기(氣)와 덕(德)을 길러 합해서 하나로 한다는 것은 이에 지나지 않으나, 음식은 반드시 병을 돕고 이치에 맞는 것을 요지로 하고 기거는 반드시 기(氣)에 맞추고 절도(節度)에 응하는 것을 요지로 하며, 정신은 반드시 안정(安靜)하고 화평(和平)한 것을 요지로 하고, 사려(思慮)는 반드시 정밀하게 살피고 올바르게 하는 것을 요지로 삼습니다.”</p> <p>하고, 이상의 소는 대략에 이르기를,</p> <p>“옥문(獄門)을 활짝 연 것에서 비록 축망(祝網)의 성심(聖心)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천토(天討)의 법전(法典)은 사사로움을 용납할 수 없으니, 형장(刑章)을 문란(紊亂)케 하고 느슨하게 하는 것은 또한 어지러움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리고 재부(財賦)를 견감(蠲減)한 데서 비록 자식처럼 사랑하시는 본뜻을 볼 수 있다고는 하나, 나라에 저축(儲蓄)이 없어 완급(緩急)할 때가 염려스러우니, 반드시 은혜가 다하고 폐단을 이루는 데 이를 것입니다.”</p> <p>하니, 임금(君)이 모두 가납(嘉納)하였다.</p> | <p>所謂養氣養德，合而爲一者不外是矣。飲食必以補疾中理爲要，起居必以適氣應節爲要，精神必以安靜和平爲要，思慮必以精審端的爲要。</p> <p>翔疏大略以爲：</p> <p>洞開獄門，雖可見祝網之聖心，而天討之典不可容私，紊弛刑章，亦是致亂之道。蠲減財賦，雖可見子惠之本意，而國無儲蓄，緩急可憂，必至恩竭而致弊。</p> <p>上皆嘉納。</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12월 5일(임인) 2번째기사</p> | <p>처음에 자전(慈殿)이 병이 심해지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줄 알고 언문(諺文)으로 유교(遺敎)를 지어 봉(封)해 궁인(宮人)에게 맡기고, 또 상렴(喪斂)에 드는 의대(衣櫛)와 여러 물품들을 봉해 두었는데, 승하함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렸다. 그 유서에 이르기를,</p> <p>“습(襲)은 공주(孔珠)를 없이 할 것이며, 대렴(大殮)·소렴(小殮)의 의대(衣櫛)는 교포(絞布)로써 할 것이다. 그리고 입관(入棺)하는 의대(衣櫛)와, 초상(初喪) 때 명정(銘旌)과 발인(發靱) 때 명정의 소금저(素錦褚)와, 평상시에 덮는</p> | <p>○初，慈殿疾甚，自知其不興，以諺書作遺敎，封付宮人。又封置喪斂所用衣櫛諸物，及昇遐，始下之。其遺書曰：</p> <p>襲無孔珠，大小斂衣櫛絞布。入棺衣櫛、初喪時銘旌、發引時銘旌素錦褚、常時所覆柩衣、下玄宮時三重柩</p> |

| | | |
|--|--|---|
| | <p>구의(柩衣)와, 현궁(玄宮)에 내릴 때 삼중구의(三重柩衣)와, 영좌(靈座)의 휘장(揮帳)과, 신문(神門)의 휘장과, 영좌의 교의(交椅) 아래에 까는 옥(褥)과 제상(祭床)의 탁의(卓衣)와, 영상(靈床) 교의(交椅)의 방석(方席)과, 혼백(魂魄) 교의의 복(袂)과, 초상(初喪)에 쓰이는 홍초 탁의(紅綃卓衣)와, 산릉(山陵) 영침(靈寢)의 옥(褥)과, 퇴광(退壙)에 들이는 함자(函子)의 안팎 복(袂)과, 산릉(山陵) 찬궁(攢宮)의 현훈(玄纁)은 신묘년4565) 납채(納采) 때의 두 빛깔의 필단(疋段)이 있으니 예기(禮器)의 척도(尺度)에 의하여 재단(裁斷)해 쓰고 새로 직조(織造)하지 말 것이다. 발인(發靱) 때의 영침함(靈寢函)과, 유의함(遺衣函)과, 다른 것을 담은 함자(函子)와 복(袂)은 내간(內間)에 있는 것이 또한 쓸 만하니, 이것을 가져다 쓸 것이다. 중궁(中宮) 책례(冊禮) 때의 교서(敎書)와 옥보(玉寶)·책보(冊寶), 이 세 가지 물건의 안팎 복(袂)은 모두 새 필단(疋段)으로 바꾸어 이들 물건은 모두 글에 쓴 대로 이미 비치(備置)하였으니 즉시 먼저 분부(分付)하여 겹쳐서 만들지 않게 할 것이다. 삭망제(朔望祭)의 과실(菓實) 그릇의 수는 전례(前例)를 따르지 말고 모두 절반(折半)으로 할 것이며, 아침저녁의 전(奠)은 비록 행하지 않는다 해도 좋을 것이나, 만약 예(禮) 때문에 다 폐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유과(油果)와 이병(餌餅)을 한 그릇씩 차릴 것이며, 다른 전물(奠物)도 또한 반으로 감할 것이다. 그리고 각도(各道)와 각사(各司)의 진향(進香) 또한 정지(停止)시킬 것이다. 제사(祭祀)에 쓰는 상탁(床卓)은 혹 전날 쓰던 것이 있다면 그대로 다시 쓰도록 할 것이며, 초상(初喪)에서부터 발인(發靱)하여 현궁(玄宮)에 내리고 반우(返虞)하는 데 이르기까지의 여러 기구(器具)로서 만약 예전대로 쓸 만한 것이 있다면 또한 다시 만들지 말게 하여 폐단을 줄이는 바탕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혹 너무 검약(儉約)한 것을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위에서부터 감하고 줄이는 것과는 다름이 있는 것이다. 내 뜻은 본래 이와 같으니, 모릅지기 내 뜻을 유사(有司)에게 말하여 여러 사무(事務)를 줄이고 간략하게</p> | <p>衣、靈座帳、神門帳、靈座交椅下排平床褥、祭床卓衣、靈床交椅方席、魂魄交椅袂、初喪所用紅綃卓衣、山陵靈寢褥、退壙所納函子內外袂、山陵攢宮玄纁，則有辛卯納采時，兩色疋段，依禮器尺度，裁斷用之，勿爲新織。發靱時靈寢函、遺衣函、他所盛函子與袂，內間所有，亦足用之，以此取用。中宮冊禮時敎書、玉冊寶，此三物內外袂，俱以新段改之。此等物，依所書既已備置，卽先分付，勿令疊造。朔望祭果器數，勿循前例，皆折半爲之。朝夕奠，雖不行亦可，而如以爲禮不可盡廢，則油果、餌餅各一器，其他奠物亦減半。各道各司進香竝停止。祭用床卓，或有前日所用，仍復用之。初喪至發靱，下玄宮返虞諸具，苟有仍舊可用者，亦勿更造，以爲省弊之地。雖或有以太儉爲不可者，此與自上減削有異。予意本如此，須以予意，言于有司，諸事務從省約，是所望也。卽今地部蕩竭，民力亦盡，國事可謂罔極。今若勿循舊例，有所節損，則魂魄可以安矣。惟恃上心仁孝無違，故如是言之。</p> |
|--|--|---|

| | | |
|---|---|--|
| | <p>하는 것이 바라는 바이다. 지금 지부(地部)4566) 가 텅텅 비고, 민력(民力)이 또한 고갈되었으니, 국사(國事)가 망극(罔極)하다 할 것이다. 지금 만약 구례(舊例)를 따르지 않고 절손(節損)하는 바가 있다면 혼백(魂魄)이 편안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성상(聖上)의 마음이 어질고 효성스러워 어짐이 없을 것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p> <p>하였다. 총호사(摠護使) 민정중(閔鼎重)이 유교(遺敎)를 봉(封)하여 올리며 말하기를,</p> <p>“만약 유교(遺敎)에 의해 제수(祭需)를 감손(減損)한다면 마땅히 습전(襲奠)에서 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p> <p>하자, 임금이 모두 유교(遺敎)를 준수(遵守)하여 검소한 덕을 받들라고 명하였으나, 단지 주다례(晝茶禮)만은 예의(禮儀)대로 하라고 명하였으니, 그것은 유교(遺敎) 가운데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p> | <p>摠護使閔鼎重封進遺敎曰：“若依遺敎減損祭需，則當自襲奠始。”上命悉遵遺敎，以承儉德，只命晝茶禮如禮儀，以其不入於遺敎中故也。</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12월 17일(갑인) 1번째기사</p> | <p>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이 와서 곡(哭)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통곡(痛哭)하였다. 【국애(國哀) 때에 처음 입시(入侍)하는 사람을 임금이 매번 맞이하면서 곡하였다.】 송시열이 진위(進慰)한 뒤 이어서 슬픔을 절제하고 장차 조섭(調攝)하는 도리를 진달하였으며, 또 학문에 힘쓰는 것이 효(孝)의 큰 일이라고 말하였다. 임금이 지문(誌文)을 찬술(撰述)하는 일로 면류(勉留)한 것이 몹시 지극하였으며, 이어 식물(食物)과 시탄(柴炭)을 제급(題給)하라고 명하였다.</p> | <p>○甲寅/奉朝賀宋時烈赴哭，上引見痛哭。【國哀時，初入侍者則上每迎哭。】時烈進慰後，仍陳節哀將攝之道，又言勉學是孝之大者。上以誌文撰述事，勉留甚至，仍命題給食物、柴炭。</p>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12월</p> | <p>임금이 친히王大妃(王大妃)의 행록(行錄)을 찬(撰)하였다. 이어서 전교하기를,</p> | <p>○乙丑/上親撰王大妃行錄，仍敎曰：“王大妃平日行錄，纔已脫藁，送于清城府院君家，使之修潤遺漏處，而罔極</p> |

| | | |
|----------------------|---|---|
| <p>28일(을축) 1번째기사</p> | <p>“왕대비의 평일 행록을 이제 막 탈고(脫藁)하여 청성 부원군(淸城府院君)의 집으로 보내니, 빠진 곳을 다듬고 윤색(潤色)하게 하라. 망극(罔極)한 가운데 심신(心神)이 어지러워 지극한 덕(德)과 아름다운 행적(行蹟)을 능히 기억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p> <p>하고, 이어 청성 부원군으로 하여금 속히 행장(行狀)을 찬(撰)해 봉조하(奉朝賀)에게 보내어 지문(誌文)을 찬진(撰進)케 하였다. 그 행록에 이르기를,</p> <p>“기축년(4574) 5월에 선왕(先王)께서 이저(貳儲)에 오르시자 효묘(孝廟)께서 친히 비필(妃匹)을 간택(簡擇)하셨는데, 후(后)의 응대(應對)함이 예(禮)에 맞고 주선(周旋)함이 절도(節度)에 적중(的中)함을 보시고는 몹시 기특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었다. 이때 후(后)의 춘추(春秋)가 겨우 10세였는데, 대개 그 덕성(德性)은 하늘이 이룬 것이라 어려서부터 그리하였던 것이다. 후께서 드디어 응선(膺選)되자, 신묘년(4575) 11월에 세자빈(世子嬪)으로 책봉(冊封)하였고, 12월에는 가례(嘉禮)를 행하였다. 후께서 이미 대내(大內)로 들어오시자, 밤낮으로 부지런히 양전(兩殿)을 받들어 섬겼으며, 효성(孝誠)과 공경(恭敬)함이 날로 독실(篤實)해져 매번 기이(奇異)한 물건을 얻게 되면 곧 양전(兩殿)께 올리셨다. 비록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밤새도록 곁에서 모시었으며, 일찍이 게으른 기색이 있지 아니하니, 효묘(孝廟)께서 늘 가상하게 여기시며, ‘내가 좋은 아들과 며느리를 두었으니 다시 무엇을 근심할 것인가?’라고 하셨다.</p> <p>기해년(4576) 여름 효묘께서 빈천(賓天)4577) 하시자, 후께서는 예(禮)를 다하여 애모(哀慕)하셨고, 이미 중곤(中壺)에 정위(正位)하시자 더욱 길이 경외(敬畏)하시니, 음교(陰教)가 더욱 드러났다. 예(禮)로써 몸을 단속하시고, 정성의</p> | <p>中心神昏亂， 至德懿行， 多未能記憶。” 仍令淸城府院君速撰行狀， 送于奉朝賀， 撰進誌文。 其行錄曰：</p> <p>己丑五月先王進陞貳儲， 孝廟親簡妃匹， 見后應對合禮， 周旋中節， 甚奇愛之。 是時， 后春秋甫十歲， 蓋其德性天成， 自幼而然也。 后遂膺選， 辛卯十一月冊爲世子嬪， 十二月行嘉禮。 后既入大內， 夙夜匪懈， 承事兩殿， 孝敬日篤， 每遇異物， 輒獻于兩殿。 雖祈寒盛暑， 竟夕侍側， 未嘗有惰慢之色。 孝廟嘗嘉歎曰：“予有佳兒佳婦， 復何憂焉？” 己亥夏， 孝廟賓天， 后哀慕盡禮。 既正位中壺， 深加敬畏， 陰教益彰。 以禮飭躬， 以誠事上， 仁以接物， 義以御下， 一十六載， 終始如一， 宮闈之間， 和氣融洽。 服食器玩， 恒存儉約， 痛絕華美， 嘗對子姓， 下教戒飭曰：“由奢入儉難， 由儉入奢易， 卽古人之至訓， 汝曹其可不惕念於此乎？” 甲寅秋， 荐遭大喪， 后哭擗踰制， 然於送終之事， 無大無小， 必皆親執， 不委之女御， 務盡必誠必慎之道。 未發軔， 只歛糜粥， 哀子從傍涕泣， 力請則未嘗</p> |
|----------------------|---|---|

| | | |
|--|--|--|
| | <p>로 윗분을 섬기셨으며, 어둡으로써 사물(事物)에 접(接)하고 의(義)로써 아랫사람 다스리기를 16년 동안 시종 한결같이 하시니, 궁위(宮闈)에 화락(和樂)한 기운이 흘러넘쳤다. 복식(服食)과 기완(器玩)은 항상 검약(儉約)하게 하시고 화미(華美)한 것을 통렬히 끊으시어, 일찍이 자손(子孫)들에게 하교(下教)하여 계칙(戒飭)하시기를, 「사치스런 데서 검소한 데로 들어가기란 어렵고, 검소한 데서 사치스런 데로 들어가기란 쉽다.」는 것이 옛사람의 지극한 가르침이니, 너희들이 그것을 삼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갑인년(4578) 가을 거듭 대상(大喪)을 만나자, 후(后)께서 곡벽(哭擗)하심이 제도(制度)를 넘었으나, 송종(送終)하는 일에 있어서는 크건 작건간에 반드시 친히 주관(主管)하시고 여어(女御)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며, 반드시 정성스럽고 반드시 삼가는 도리를 힘써 다하셨다. 발인(發靱)하기 전에 단지 죽만 마시셨으므로, 애자(哀子)가 곁에서 울며 힘써 청하자 일찍이 힘써 따르지 아니하심이 없었으나, 반드시 빈전(殯殿)의 상식(上食)으로서 이미 진어(進御)한 것을 올리게 하셨으니, 이 또한 애모(哀慕)하는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던 것이다. 무릇 수재(水災)와 한재(旱災)의 재이(災異)가 있으면, 후(后)께서는 곧 근심스런 기색을 지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구징(咎徵)이 겹쳐 닥치고, 우우(憂虞)가 다단(多端)하니, 알지 못하겠거니와, 어떤 화기(禍機)가 어둠 속에 숨어 있어, 어지신 하늘이 견책(譴責)하여 알리심이 이와 같이 분명한가?’ 하셨다. 작년 가을에 농사가 대무(大無)하여 백성들이 장차 구령을 매우게 되자, 후(后)께서 들으시고는 슬퍼하시어 침식(寢食)이 편안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특별히 수진(壽進)·어의(於義) 두 궁(宮)에 명하여 쌀과 포(布)를 해당(該廳)에 넉넉히 주어 백성을 구제하는 물자에 보태게 하였으니, 그 나라와 백성을 근심하고 과궁(寡躬)을 교회(教誨)하신 것이 사표(辭表)에 흘러넘치고 지극한 정성에서 나와, 실로 곁에다 거짚으로 꾸민 것이 아니었다. 아! 슬프다. 후(后)께서는 천자(天姿)가 정정(貞靜)하시고, 자애(慈愛)롭고 효성(孝誠)스러우</p> | <p>不勉從，必以殯殿上食已進御者強進，此亦出於哀慕之至誠也。凡有水旱災異，后輒憂形于色曰：“國家不幸，咎徵沓臻，憂虞多端。未知何樣禍機，伏於冥冥，而仁天之譴告，若是丁寧耶？”昨年秋，穡事大無，民將填壑，后聞之愀然，寢食靡安。特命壽進、於義兩宮，優給米布于該廳，俾補賑民之資，其所以憂國憂民，教誨寡躬者，溢於辭表，而出於至誠，實非假飾於外也。嗚呼痛哉！后天姿貞靜，慈孝寬仁，至德懿行，舉可爲儀範，雖不安之節、燕居之時，必以禮自持。顧遇諸宮，周睦親戚，恩禮備至，一未嘗曲徑干澤，內外截如也。后自甲寅秋大喪，哀毀成疾，至癸亥十二月違豫之候忽亟，哀子日夜煎熬，凡所以保護之方，靡不用極，而誠孝淺薄，獲罪神明，竟遭終天罔極之慟。慈顏永隔，將何所恃？叫叩攀擗，五內摧裂。嗚呼痛哉！自初喪絞紵復褶之屬，以至大小祭奠，凡百貽弊於小民者，遵奉遺教，務從儉約，其深仁厚澤，豈但一國臣民之祇頌悲慕而已哉？抑將永有辭於萬世矣。嗚呼！仍竊惟念，眇末小子，積殃在身，</p> |
|--|--|--|

시며, 너그럽고 어지시어, 지극한 덕과 아름다운 행실이 모두 의범(儀範)이 될 만하였으니, 비록 편안하지 못한 절기(節期)와 한가롭게 계실 때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예(禮)로써 자신을 지키셨다. 여러 궁(宮)을 돌보고 대우하시고, 친척(親戚)에게 두루 화목(和睦)하시어 은혜와 예가 같이 미쳤으나, 일찍이 굽은 길[曲徑]로 간택(干澤)하심이 없었고 내외(內外)를 끊은 듯이 하셨다.

후(后)께서 갑인년 가을 대상(大喪) 때부터 애훼(哀毀)하신 것이 병이 되었는데, 계해년(4579) 12월에 이르러 위예(違豫) 4580) 한 환후(患候)가 문득 위중해졌다. 애자(哀子)가 밤낮으로 전오(煎熬)하여 무릇 보호(保護)하는 방법을 지극하게 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나, 정성과 효성이 친박(淺薄)하여 신명(神明)께 죄를 얻어 마침내 종천(終天)하는 망극(罔極)의 아픔을 당하게 되었다. 자안(慈顏)을 영원히 이별하니, 장차 어디에 의지하겠는가?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니, 오장이 찢어지는 듯하다. 슬프다. 초상(初喪)의 교금(絞紵)·복습(複褶) 등속에서부터 크고 작은 제전(祭奠)에 이르기까지, 무릇 소민(小民)에게 끼칠 백 가지의 폐(弊)는 유교(遺敎)를 준봉(遵奉)하여 힘써 검약(儉約)함을 따를 것이니, 그 길이 어둡고 두터운 은택을 어찌 다만 한 나라의 신민(臣民)만이 공경히 찬송하며 슬퍼하며 사모할 따름이겠는가? 또한 장차 만세(萬世)에 찬사(讚辭)가 있을 것이다. 아! 저으기 생각해 보건대, 보잘것없이 작은 소자(小子)의 몸에 재앙(災殃)이 쌓이어, 미처 약관(弱冠)의 나이가 되기도 전에 갑자기 천붕(天崩)의 아픔을 만났다. 그리하여 그 밤낮으로 우러러 모실 분은 오직 우리 자성(慈聖)뿐이었으므로, 복록(福祿)을 끝없이 받으시어 강릉(岡陵)과 같은 수(壽)를 누리시며, 뜻과 물건을 다해 봉양(奉養)할 것을 바랐는데, 황천(皇天)이 재앙을 내리었다. 근자에 소자(小子)가 병을 얻음으로 인하여 성모(聖母)께 근심을 끼쳐드리자, 더욱더 몸이 상하시어 숙환(宿患)이 갑자기 위중해지셨고, 자리에 누워 있는 나머지 관대(冠帶)의 봉양을 능히 다하지 못하였

年未弱冠，奄遭崩天之痛，其所以夙夜仰戴者，惟在我慈聖，則庶幾受祿無疆，永享岡陵之壽，以殫志物之養，而皇天降割，頃緣小子之遭疹，以貽聖母之憂念，輾轉積傷，宿患寢飢，致令床第之餘，不克自盡於冠帶之養，益復隕絕，直欲溘然也。嗚呼痛哉，嗚呼痛哉！

| | | |
|---|---|--|
| | <p>으므로 더욱더 운절(隕絶)4581) 하게 하였으니, 곧 죽고 싶다. 아! 슬프다. 아! 슬프다.”</p> <p>하였다.</p> | |
| <p>숙종 14권, 9년(1683 계해 / 청 강희(康熙) 22년) 12월 28일(을축) 2번째기사</p> | <p>김석주(金錫胄)가 왕대비의 행장(行狀)을 찬진(撰進)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p> <p>“삼가 공경히 생각하건대 우리 대행 왕대비(大行王大妃)의 성은 김씨로서, 세적(世籍)은 청풍(淸風)이며, 그 선조는 대개 신라(新羅) 왕자(王者)의 후예이다. 고려(高麗) 때 현달(顯達)한 분은 시중(侍中) 김대유(金大猷)이다. 3세 뒤 김창조(金昌祚)에 이르러 다시 벼슬이 시중에 이르렀으며, 청로 장군(淸虜將軍) 김중원(金仲源)을 낳았고, 이 분은 감찰(監察) 김정(金靜)을 낳았다. 비로소 아조(我朝)에 들어와 또 2세를 거친 뒤 김질(金耆)에 이르러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가 되었고, 집의가 성균 생원(成均生員) 김숙필(金叔弼)을 낳았으며, 생원이 김식(金湜)을 낳으니, 중종조(中宗朝)의 현량과(賢良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벼슬은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에 이르렀으며, 세상에서 기묘 명현(己卯名賢)이라 칭하는데, 곧 후(后)의 6대조[六世祖]이다. 고조(高祖) 김비(金槩)는 판관(判官)으로 좌찬성(左贊成)에 추증(追贈)되었고, 증조 김흥우(金興宇)는 생원으로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으며, 조(祖) 김욱(金埵)은 우리 인조(仁祖)·효종(孝宗) 두 조정을 섬겨 세 번 정승에 올랐는데, 졸시(卒諡)는 문정(文貞)이다. 고(考) 김우명(金佑明)은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로 청풍 부원군(淸風府院君)에 봉해졌고, 졸시(卒諡)는 충익(忠翼)인데, 증(贈) 찬성(贊成) 김흥록(金興祿)과 증(贈) 영의정(領議政) 김지(金址)는 또 충익의 후사가 된 조예(祖禰)4582) 관계가 되는 양세(兩世)이다. 충익의 배우(配偶)는 은진 송씨(恩津宋氏)로, 덕은 부부인(德恩府夫人)에 봉해졌으며, 증(贈) 좌찬성</p> | <p>○金錫胄撰進王大妃行狀。 其文曰：</p> <p>恭惟我大行王大妃姓金氏， 世籍淸風， 其先蓋新羅王者後也。 其顯於麗者曰大猷侍中。 三世至昌祚， 復官侍中， 生仲源， 淸虜將軍， 生澣， 監察。 始入我朝， 又二世至耆， 司憲府執義， 執義生叔弼， 成均生員， 生員生湜， 魁中宗朝賢良科， 官至成均館大司成， 世稱己卯名賢， 卽后六世祖也。 高祖槩判官， 贈左贊成， 曾祖興宇生員， 贈領議政， 祖埵事我仁祖、 孝宗兩朝， 三爲上相， 卒諡文貞。 考佑明領敦寧府事， 封淸風府院君， 卒諡忠翼， 而贈贊成興祿、 贈領議政址， 又忠翼之所後祖禰兩世也。 忠翼之配曰恩津宋氏， 封德恩府夫人， 贈左贊成國澤之女。 以崇禎壬午五月十七日辰時， 生后於長通坊私第。 宋夫人有娠， 纔八朔， 有飛鳥銜玉， 過寢房而墮之。 祖父埵心異之， 以焦易筮之， 得育賢之兆， 翌日而后誕</p> |

| | | |
|--|--|--|
| | <p>(左贊成) 송국택(宋國澤)의 딸이다.</p> <p>송정(崇禎)임오년(4583) 5월 17일 진시(辰時)에 장통방(長通坊) 사제(私第)에서 후(后)를 낳았다. 송 부인(宋夫人)이 잉태한 지 여덟 달에 어떤 새가 옥(玉)을 물고 날아와 침방(寢房)을 지나다가 떨어뜨리니, 조(祖) 김육(金堉)이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초역(焦易)으로 점을 쳐 어진이를 기를 조짐을 얻었는데, 그 다음날 후(后)께서 탄생하셨다. 후께서는 어려서부터 덕스런 용모가 하늘이 낸 듯하였고, 정한(貞閑)·완예(婉嫵)하여 말과 웃음과 행동거지에 모두 법도(法度)가 있었다. 신묘년(4584)에 효종(孝宗)께서 현종(顯宗)을 위하여 배우(配偶)를 가리셨는데, 후(后)께서 바야흐로 10세의 나이로 세 번 간선(揀選)에 들자, 효종께서 곧 더욱 기특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시어, 드디어 명하여 왕세자빈(王世子嬪)으로 삼으시고는 이어 극히 칭찬하며 말씀하시기를, ‘아리답다! 아 며느리여, 마침내 반드시 우리 나라의 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이해 12월에 가례(嘉禮)를 행하고, 후(后)께서 들어오시자 효종대왕(孝宗大王)과 인선 왕대비(仁宣王大妃)를 받아들여 섬김에 좌우에서 복근(服勤)4585) 하여 밤낮으로 게으르지 아니하셨다. 물러나 곧 다섯 공주(公主)와 한 집에서 거처하매, 여러 공주로서 후(后)보다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는 후(后)께서 더욱 공손히 하고 나이가 후(后)께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가까이하여 우애로 대하시니, 용용(雍容)·열목(悅睦)함이 시종 차이가 없어 궁위(宮闈)에 화기(和氣)가 흘러넘쳤다. 현묘(顯廟)께서 사복(嗣服)4586) 하시자, 후(后)께서도 또한 중곤(中壺)에 나아가 자리잡으셨는데, 더욱 윗사람을 섬기고 의(義)로써 아랫사람을 거느리셨으며, 더욱 내외(內外)를 막고 삼가 외가(外家)를 돌아봄에 일찍이 정례(程例)가 있어 여러 아우들에게 교태(驕恣)하지 말라고 훈계(訓戒)하니, 끝내 감히 털끝만한 것으로도 간택(干澤)하는 자가 없었다. 자성(資性)이 총예(聰睿)하여 한 번이라도 귀와 눈을 거친 일은 모두</p> | <p>焉。后自幼德容天成，貞閑婉嫵，言笑動止，俱有度則。歲辛卯，孝宗爲顯宗擇配，后年方十歲，三入揀選。孝宗輒益奇愛之，遂命冊后爲王世子嬪，仍亟稱之曰：“佳哉此婦！終必福我國家。”是歲十二月，行嘉禮，后入而承事孝宗大王及仁宣王大妃，左右服勤，夙夜靡怠。退則輒與五公主同處一室，諸公主年長於后者，后敬之彌恭，不及后者，后友之彌親，雍容悅睦，終始無間，宮闈之間，藹如也。及顯廟嗣服，后亦進位中壺，益小心謙畏，以誠事上，以義飭下，尤防慎內外，其顧視外家，嘗有程例，訓戒諸弟，以毋驕恣，終無敢以纖芥干澤者。資性聰睿，事之一經於耳、一接於目者，皆終身不忘，通曉書史，能知古今治亂，見識昭曠，度越倫萃。十六年之間，其所以內贊先王，寬仁恭儉之化者至矣。當孝廟大喪，常哀慕盡制，及至甲寅春，繼有仁宣太后之喪，而后適違豫日久，未得躬執饗餐，益悲悼不自勝。眷撫諸主，錫賚之恩，一如大妃在世時，無毫髮腴削，宮中之人，尤莫不感歎悅服。其秋顯廟禮陟，后於寢瘵之</p> |
|--|--|--|

종신토록 잊지 아니하였고, 서사(書史)에 통효(通曉)하여 능히 고금의 치란을 알았으며, 견식이 밝고도 넓고 도량이 빼어나니, 16년 동안 안으로 선왕(先王)의 관대하고 인자하여 공손하고 검소한 교화를 도운 것이 지극하였다. 효묘(孝廟)의 대상(大喪)을 당하자, 항상 애모(哀慕)하시며 제도(制度)를 다하셨고, 갑인년(4587) 봄 잇달아 인선 태후(仁宣太后)의 상(喪)이 있자, 후(后)께서는 마침 위예(違豫)하신 지 오래 되어 몸소 선찬(饌餐)을 잡지는 못하셨으나 더욱 슬픔을 이기지 못하셨으며, 여러 공주를 권무(眷撫)하시고 석뢰(錫賚)의 은혜를 한결같이 대비께서 세상에 계실 때와 같이 하여 털끝만큼도 감하거나 깎지 아니하시니, 궁인(宮人)들이 더욱 감탄(感歎)하고 열복(悅服)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그해 가을 현묘(顯廟)께서 예척(禮陟)하시자, 후(后)께서는 오랫동안 병을 앓으신 나머지임에도 곡벽(哭擗)하심이 제도를 넘었으며, 추도(鼓塗)가 열리기 전에는 단지 싸라기 죽만 잡수시니, 우리 전하께서 매년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울리기를 청하셨다. 그러나 그 송종(送終)하는 일에 있어서는 크건 작건간에 모두 손수 정리(整理)하시고 여어(女御)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며, 교금(絞紵)·복습(複褶)으로서, 재비(梓槨) 안에 주선할 것은 모두 안에서 주선하여 갖추게 하고 국력(國力)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셨다. 그때 우리 전하께서 어린 나이로 사위(嗣位)하시고, 또 계속하여 병이 있어 후(后)께서 항상 밤낮으로 몹시 걱정하시며 보도(輔導)하고 조호(調護)하는 방법을 다하셨다. 그런데 죄인(罪人) 종실(宗室) 정(楨)·남(柟) 형제 세 사람이 친숙으로 가장 가까와 금지(禁地)에 출입하고 또 가장 긴밀하였는데, 또 여러 외삼촌 형제와 빈객(賓客)이 우익(羽翼)이 되어 날이 갈수록 더욱 교만하고 방자하여 바랄 수 없는 일을 넘겨다 보았으니, 대개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다. 을묘년(4588) 봄에 청나라 사람이 조제(弔祭)하는 일로 왔는데, 빈신(賓臣) 오시수(吳始壽)는 남(柟)의 내형(內兄)이었다. 통관(通官)의 터무니 없는 공갈로 인하여 입으로 한 말을 키우고 부풀렸는데, 말이 선조(先朝)를 범(犯)하였으므로

餘，哭擗踰制，鼓塗未啓，只歡糜粥，我殿下每從傍涕泣，以請爲之強進。而其於送終之事，無大無小，皆手自整理，不委之女御，絞紵複褶之周於梓槨之內者，悉自內辦，不以煩國力。時，我殿下以沖弱嗣位，且繼有疾疴，后嘗日夜焦憂，以盡輔導調護之方，而罪宗楨、柟兄弟三人屬最近，出入禁地，又最密，又有諸舅兄弟賓客，爲之羽翼，惟日益驕恣，覬覦非望事，蓋有難言者。乙卯春，清人以弔祭來，賓臣始壽卽柟之內兄也。因通官虛喝，增益口語，語至犯先朝，朝臣皆駭愕，墨墨無以爲計。后聞之，大加痛畫，卽下教諸大臣，曾爲先王臣子者，何敢無辨？又命首相，往詰通官語言所出，而賓臣憑依幻惑之端露矣。已而，忠翼有疏，盡暴楨、柟與宮人交亂狀，請論其罪，而楨之舅挺昌，輒嗾其黨鏞及許穆，求爲急對，至以究問反罪爲言，忠翼遂蒼黃胥命於金吾之外。后聞之驚痛以爲：“楨、柟之事，先王之所知也。先王之教，未亡人之所聞也。吾不可以不言，而況吾親方陷於僂辱，則吾又何可深居內畫，而忘竊負之義乎？”

조신(朝臣)들이 모두 경악(驚愕)하였으나, 입을 다물고서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못하였다. 후(后)께서 들으시고 크게 통탄하고 슬퍼하시며, 즉시 여러 대신(大臣)에게 하교(下敎)하시기를, ‘일찍이 선왕(先王)의 신하가 되어 어찌 감히 변명(辨明)하지 않는가?’ 하시고, 또 수상(首相)에게 통관(通官)에게 가서 나온 곳을 힐문(詰問)하라고 하자, 빈신(僮臣)의 빙의(憑依)하고 환혹(幻惑)한 단서가 탄로났다. 얼마 지나서 충익(忠翼)이 소(疏)를 올려 정(楨)과 남(楠)이 궁인(宮人)과 더불어 교란(交亂)했던 실상을 죄다 폭로하고, 그 죄를 논할 것을 청하자, 정(楨)의 외삼촌 오정창(吳挺昌)이 곧 그 당류(黨類)인 윤휴(尹鑄)와 허목(許穆)을 사주(使嗾)하여 급히 대처(對處)할 것을 노리고, 심지어는 구문(究問)하여 죄를 되려 뒤집어 씌우겠다고 말하니, 충익이 마침내 창황(蒼黃)히 금오(金吾)의 밖에서 명(命)을 기다리게 되었다. 후(后)께서 들으시고 놀라고 애통해 하시며, ‘정(楨)과 남(楠)의 일은 선왕(先王)께서 아시던 바이고, 선왕의 교시(敎示)는 미망인(未亡人)이 들었던 바이니,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나의 친속(親屬)이 바야흐로 옥된 지경에 빠져 있으니, 내가 또 어찌 길이 거처해 마음만 애통해 하면서 절부(竊負)4589)의 의(義)를 잊을 수 있겠는가?’ 하시고는, 즉시 당시의 상신(相臣)과 여러 재신(宰臣)을 연전(簾前)에다 부르셨는데, 유지(諭旨)가 격절(激切)하니, 비록 완악하고 사특하다 하더라도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었다. 유사(有司)가 비로소 정(楨)과 연(煙)의 죄를 감정(勘定)하여 남쪽 변방에 곧 유배(流配)하였다. 후(后)께서는 을묘년(4590)부터 통명전(通明殿)으로 이어(移御)하셨는데, 환후(患候)가 미류(彌留)하시어 병진년(4591) 6월에 이르자 갑자기 심해지시니, 우리 전하께서 밤낮으로 탕제(湯劑)의 시중을 들고, 대신(大臣)들을 나누어 종묘(宗廟)·사직(社稷)·산천(山川)에 기도하라고 명하시었으며, 또 왕옥(王獄)을 활짝 열어 죄수를 풀어 주게 하니, 후(后)의 병이 다시 회복되었다. 성상께서 후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시어 즉시 대내(大內)로 돌아오실 것을 청하고, 아침저녁으

卽召時相及諸宰於簾前，諭旨激切，雖庶頑宿詐，亦有爲之出涕者。有司始議勘楨、煙罪，就配南邊。后自乙卯，移御通明殿，患疾彌留，至丙辰六月猝劇，我殿下晝夜侍湯劑，分命大臣，禱于廟社山川，又洞開王獄釋囚，后疾復甦。上俟后體康復，卽請反于大內，朝夕侍奉，歡洽融融，或於朝罷入對，有大事則必奉稟而後決焉。戊己之間，黨人柄事，計欲芟除異己，而竟不果。至庚申，楠與逆孽堅、台瑞等謀不軌，既伏誅，治其黨與有差，而如歸楨所後子於本生父母，俾除緣坐，內司辦治棺衾衣絮，移瘞罪宗於便地，其出於后敎者爲多矣。后素慈仁愛物，雖肖翹螟蠹之微，亦未嘗害傷。嘗御慶德之光明殿，有一小蛇入室，盤旋於御褥之下。宮人見者皆失色，后迥然下敎曰：“此殿邇山，有此物無怪，不必害也。”亦不令巫瞽祈筮。明善、明惠兩公主相繼早逝，明安公主又自少病弱，后甚憐愛之，及其出閣，衣服器玩饋餐之屬，俱損於舊制。又嘗戒之曰：“由儉入奢易，由奢入儉難，此乃古人之明訓，不可忽也。”時有水旱災異，后輒

| | | |
|--|---|--|
| | <p>로 모시고 봉양(奉養)하니 기쁨이 무르녹고 흘러넘쳤으며, 혹 조회(朝會)가 과(罷)하고 입대(入對)할 때, 큰 일이 있으면 반드시 받들어 여쭙 뒤에 결정하기도 하였다. 무오년(4592) 과 기미년(4593) 사이에 당인(黨人)이 권세를 다투어 자기와 다른 이들을 삼제(芟除)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끝내 성사되지 못하였고 경신년(4594)에 이르러 남(柁)과 여얼(餘孽)인 허견(許堅)·이태서(李台瑞) 등이 불궤(不軌)를 꾀하다가 이미 복주(伏誅)되자 그 당여(黨與)를 다스림에 차등(差等)이 있었는데, 정(楨)의 후사(後嗣)가 되었던 아들을 본생(本生) 부모(父母)에게 돌려주어 연좌(緣坐)를 면제하고, 내사(內司)에서 관금(棺衾)과 의서(衣絮)를 마련해 주어, 죄를 지은 종실(宗室)을 편한 곳에다 옮겨 매장하게 한 것은 후(后)의 하교(下敎)로부터 나온 것이 많았다. 후께서는 평소애 자애롭고 어지시며 사물을 사랑하시어, 비록 꿈틀거리는 미물(微物)이라 하더라도 또한 일찍이 상해(傷害)한 적이 없었다. 일찍이 경덕궁(慶德宮)의 광명전(光明殿)에 납시었는데, 작은 뱀 한 마리가 방으로 들어와 어욕(御褥) 아래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궁인(宮人)으로 이를 본 자가 모두 실색(失色)하니, 후(后)께서 태연히 하교하시기를, ‘이 전(殿)은 산과 가까이 있으니, 이러한 물건이 있어도 괴이할 것이 없다. 해칠 필요가 없느니라.’고 하시고, 무고(巫瞽)로 하여금 푸닥거리를 하지 말게 하셨다. 명선(明善)·명혜(明惠) 두 공주가 서로 잇달아 일찍 세상을 뜨고, 명안 공주(明安公主)도 또 어려서부터 병약(病弱)하여, 후께서 몹시 가엾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으나, 그 출함(出閣)함에 미처서는, 의복(衣服)·기완(器玩)·궤찬(饋餐) 등속이 모두 예전의 제도에 대해 손색이 있었다. 또 일찍이 경계(警戒)하시기를, ‘검소(儉素)한 데서 사치(奢侈)한 데로 들어가기란 쉬우나, 사치한 데서 검소한 데로 들어가기란 어렵다. 이는 옛사람의 밝은 가르침이니,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때 수재(水災)와 한재(旱災)의 재이(災異)가 들자, 후께서는 곧 근심스런 안색(顏色)을 지으시고 몇날 며칠 동안 풀지 않으셨다. 지난해 가을 팔로(八路)에서 모두</p> | <p>憂形於色，彌日不解。上年秋，八路皆告災，民復大困，后聞之，愀然至廢寢食，特命壽進、於義兩宮，發帑中所餘米布，盡歸于賑廳，以補活民之資焉。戊午秋，我殿下患病危重，后日夜憂煎，嘗齋身浴髮，籲天請代，上疾尋愈。后每以我殿下未經痘瘡，保護彌至，至癸亥十月，上感疾，兩日疹痘始見，后大驚慮，爲減匕箸，復齋沐請代，如戊午時。十一月，上漸向平復，而后已微示疾，疾小愈則親往上所，見上瘡痂已除，爲之欣然動容。未幾疾復亟，內局請設侍藥廳，上命大臣往禱廟社、山川如丙辰。至十二月初五日未時，后竟昇遐于儲承殿之西別堂，春秋四十有二。穹昊難諶，德壽無徵，加以邦慶纒頒，國哀旋酷，賀弔錯互，率土如喪。嗚呼痛哉！后有平日所書遺教，教中俱言後事。至是女官始取以告于上，上命傳示大臣。其教若曰，襲大小殮、入棺諸具、衣衾、銘旌、素錦褚、柩衣、下玄宮三重柩衣、靈座帳、神門帳、交椅、方席、床褥、卓衣、山陵靈寢褥、櫬宮褥、退壙所納函子、內外袱、發軔時靈寢函、遺</p> |
|--|---|--|

재이(災異)를 고하고, 백성들이 다시 곤궁(困窮)해지자, 후(后)께서 들으시고 슬퍼하시어 침식(寢食)을 전폐(全廢)하시기까지 하였으며, 특별히 수진(壽進)·어의(於義) 두 궁(宮)에 명하시어 내탕고(內帑庫)에 남아 있는 쌀과 포(布)를 죄다 진휼청(賑恤廳)으로 돌려 백성을 살리는 물자(物資)에 보태게 하셨다. 무오년(4595) 가을 우리 전하께서 이질(痢疾)을 앓아 위중(危重)해지시자, 후께서는 밤낮으로 근심하고 마음을 졸이시며, 몸을 재결(齋潔)하고 머리를 감으시면서 하늘에 호소하여 대신해 줄 것을 청하셨는데, 성상의 병이 얼마 안가 나왔다. 후(后)께서 매번 우리 전하께서 두창(痘瘡)을 겪지 않으셨다 하여 보호(保護)함이 더욱 지극하였는데, 계해년(4596) 10월 성상께서 감기가 들어, 이틀 만에 진두(疹痘)가 비로소 나타나니, 후께서 크게 놀라고 근심하시어 비저(匕箸) 4597) 를 줄이시고 무오년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목욕 재계하여 대신해 줄 것을 청하셨다. 11월에 성상께서 점차 평상시와 같이 회복되시었으나, 후께서는 이미 조금씩 병의 증후를 보이셨는데, 병이 약간 낫자 친히 성상께서 계신 곳으로 가시어 성상의 부스럼 딱지가 이미 떨어진 것을 보시고는 기뻐하시며 낫빰을 바꾸셨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다시 위중(危重)해지자, 내국(內局)에서는 시약청(侍藥廳)을 설치할 것을 청하고, 성상께서는 대신에게 명하시어 종묘(宗廟)·사직(社稷)과 산천(山川)에 가서 기도하게 하기를 병진년(4598) 과 같이 하였으나, 12월 초5일 미시(未時)에 후께서 마침내 저승전(儲承殿)의 서쪽 별당(別堂)에서 승하(昇遐)하시니, 춘추(春秋) 마흔 돌이셨다. 하늘도 믿기 어렵고 덕(德)과 수(壽)도 징효(徵效)가 없으며, 게다가 나라의 경사(慶事)가 반포(頒布)되자 국애(國哀)가 곧 흑독(酷毒)하니, 경하(慶賀)와 조문(弔問)이 서로 뒤섞여 온 나라가 망해버린 듯하다. 아! 슬프다. 후께서는 평일(平日)에 쓰신 유교(遺敎)를 가지고 계셨는데, 유교 안에 뒷일을 갖추어 말씀해 놓으셨다. 이에 이르러 여관(女官)이 가져다 성상께 고하니, 성상께서 명하여 대신(大臣)들에게 전하여 보이셨다. 그 유교에는 이렇게

衣函及他所盛函子與袱，內間所有件數，亦足用之，以此取用。中宮冊禮時敎命、玉冊寶，此三物內外袱，俱改以新段。已上各件，依所書既已備置，卽先分付，勿令自外疊造可矣。朔望祭果器數，勿用前例，須皆折半爲之，朝夕奠雖不爲亦好，而如以爲禮不可盡廢，則油果、餌餅各具一器，其他奠物亦須減半。至於各道各司諸宮家進香，并令停止則爲便。祭用床卓，或有前日所用者，仍復用之。且自初喪至發靸、下玄宮、返虞，一切應用諸具，苟有舊件可用者，亦勿更造，以爲省弊之地。雖或有以太儉爲不可者，此與自上徑自減削有異。予意如此，須以予意，下言于有司，而依此爲之。其餘諸事，亦務從省約，是予之望也。該曹所儲蕩竭，民力亦盡，卽今國事可謂罔極。今若勿爲徒循古例，而有所節損，則雖吾魂魄，亦可以安矣。惟恃上心仁孝無違，故如是言之。我殿下奉承訓命，哀痛彌切，自襲殯殮，俱命有司，一以遺敎從事，而當甲寅復土之役，方中象設，已用虛左之制，陵功又大省。噫！若后之徽旨懿烈，眞可

말씀하시었다. ‘습(襲)·대렴(大殮)·소렴(小殮)과 입관(入棺)하는 때의 여러 도구·의대(衣櫛), 그리고 명정(銘旌)·소금저(素錦褚)·구의(柩衣)·현궁(玄宮)을 내릴 때의 삼중 구의(三重柩衣)·영좌(靈座)의 휘장·신문(神門)의 휘장·교의(交椅)·방석(方席)·상욕(床褥)·탁의(卓衣)·산릉(山陵) 영침(靈寢)의 옥(褥)·찬궁(欖宮)의 옥(褥)·퇴광(退壙)에 들이는 함자(函子)의 안팎 복(袱), 발인(發靱) 때의 영침함(靈寢函)·유의함(遺衣函) 및 다른 것을 담는 함자(函子)와 복(袱)은 내간(內間)에 있는 몇 가지가 또한 족히 쓸 만하니, 이것을 가져다 쓸 것이다. 중궁(中宮) 책례(冊禮) 때의 교명(敎命)과 옥보(玉寶)·책보(冊寶) 이 세 가지 물건의 안팎 복(袱)은 모두 새로운 필단(疋段)으로 바꾸었는데, 이상의 각 물건은 글로 써 놓은 대로 이미 비치(備置)하였으니, 즉시 먼저 분부(分付)하여 밖에서 겹쳐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삭망제(朔望祭)의 과실 그릇의 수는 전례(前例)를 따르지 말고 모름지기 모두 절반(折半)으로 할 것이며, 아침저녁의 전(奠)은 비록 행하지 않는다 해도 좋을 것이나, 만약 예(禮) 때문에 다 폐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유과(油果)와 이병(餌餅)을 각각 한 그릇씩 차릴 것이며, 다른 전물(奠物)도 또한 반으로 감할 것이다. 그리고 각도(各道)·각사(各司)와 여러 궁가(宮家)의 진향(進香)도 아울러 정지(停止)시키는 것이 편하겠다. 제사(祭祀)에 쓰는 상탁(床卓)은 혹 전날 쓰던 것이 있다면, 그대로 다시 쓰도록 할 것이며, 또 초상(初喪)에서부터 발인(發靱)하여 현궁(玄宮)을 내리고 반우(返虞)하는 데 이르기까지 일체의 응용(應用)하는 여러 기구(器具)는, 만약 혹 예전의 물건으로 쓸 만한 것이 있다면, 또한 다시 만들지 않게 하여 폐단을 줄이는 바탕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혹 너무 검약(儉約)한 것을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위에서부터 곧장 감하고 줄이는 것과는 다름이 있는 것이다. 내 뜻은 이와 같으니, 모름지기 내 뜻을 유사(有司)에게 하언(下言)하여 이에 의거해 하도록 하라. 나머지 여러 일도 또한 절약을 따르는 데 힘쓸 것이니, 이것이 나의 바람이다.

以匹美任姒，而彼濯龍之誠、永寧之詔，其方斯則蔑矣。后於丙辰，曾受尊號曰顯烈，至是領議政臣金壽恒等共議后諡曰明聖，又上徽號曰貞獻文德。將以開歲甲子四月初五日，祔葬于崇陵，禮也。后誕有一男三女，男卽我殿下，三女明善、明惠、明安。兩主俱未字而歿，明安下嫁海昌尉吳泰周。殿下元妃仁敬王后金氏，領敦寧府事光城府院君萬基之女，繼妃卽今中宮殿下閔氏，驪陽府院君維重之女也。我殿下纔經厲虐，又遭巨創，當至慟在心之日，手纂先后行錄，仍泣涕命臣錫胄曰：“茲錄多有闕漏，予荒迷，摧裂不能纂綴，深恐先后懿德將無以垂詔于來後。卿屬在肺腑，又能悉甲寅以後事，其悉撰次爲狀，無辭。”臣承命震恐，欲辭則又有所不敢，乃敢哀錄中外所共覩聞者，序次如右。抑臣伏聞，近日朝議，方欲治妖巫之罪，而或有疑我先后之明睿燭理、不惑私邪，而尙有牽係於巫祝之事者，此蓋流聞者之誤也。國俗素畏疹瘡，其得之之家，輒以爲有神，帷床設席，懸百物而祝之，閭里皆然不可禁。我殿下初得疹疫，宮中之

| | | |
|--|--|--|
| | <p>해조(該曹)에서 저축한 바가 텅텅 비고, 민력(民力)이 또한 고갈되었으니, 지금의 국사(國事)는 망극(罔極)하다 이를 만하다. 지금 만약 한갓 옛 예(例)만을 따르지 말고 절손(節損)하는 바가 있다면, 비록 나의 혼백(魂魄)일지라도 또한 편안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오직 주상의 마음이 어질고 효성스러워 어김이 없을 것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우리 전하께서 가르침과 명을 받드시고는 애통(哀痛)해 하심이 더욱 격절(激切)하였는데, 습렴(襲殮)과 빈전(殯奠)에서부터 모두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한결같이 유교(遺敎)로 종사(從事)하게 하였다. 그리고 갑인년(4599) 복토(復土)의 역사(役事)4600) 때 바야흐로 가운데 표시를 해 두어, 이미 왼쪽을 비워 두는 제도를 썼기 때문에 능(陵)의 공력(功力)이 또 크게 절약되었다. 아! 후(后)의 아름다운 뜻과 공렬(功烈)과 같은 것은 진실로 임사(任姒)4601) 와 아름다움을 짝할 만하였는데, 탁룡(濯龍)의 경계와 영녕(永寧)의 가르침이 바야흐로 이것은 없어졌다. 후(后)께서는 병진년(4602) 에 ‘현렬(顯烈)’이란 존호(尊號)를 받으셨는데, 이에 이르러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 등이 같이 후의 시호(諡號)를 의논하여 ‘명성(明聖)’이라 하고, 또 휘호(徽號)를 올려 ‘정헌 문덕(貞獻文德)’이라 하였다. 장차 개새(開歲)하는 갑자년(4603) 4월 초5일에 승릉(崇陵)에 부장(祔葬)하는 것이 예(禮)이다. 후께서는 1남 3녀를 낳아 기르셨는데, 남자는 곧 우리 전하이시고, 여자는 명선(明善)·명혜(明惠)·명안(明安) 공주(公主)이다. 두 공주는 모두 미처 정혼(定婚)하기 전에 죽고, 명안 공주는 해창위(海昌慰) 오태주(吳泰周)에게 하가(下嫁)하였다. 우리 전하의 원비(元妃)는 인경 왕후(仁敬王后)김씨(金氏)로 영돈녕 부사(領敦寧府事) 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김만기(金萬基)의 딸이고, 계비(繼妃)는 지금의 중궁 전하(中宮殿下) 민씨(閔氏)로 여양 부원군(驪陽府院君)민유중(閔維重)의 딸이다. 우리 전하께서 막 여학(厲虐)을 겪으시자 또 거창(巨創)을 만나시어, 지극히 애통해 하심이 마음속에 있는 날을 당하여 손수 선후(先后)의 행록(行錄)을 찬(纂)하시고, 이어 눈물을 흘리</p> | <p>人既不能無是事，又有一巫自言能事疫神者，令自外宅別自供神。上疾既愈，外間浸傳宮中，將復迎巫送神，久而益喧。時，后病已飢，后弟錫翼、錫衍等以上命入侍湯藥，乘間遂白后曰：“外人所云云者，殊非宮禁所宜有，請特加禁止。”后驚曰：“豈有是耶？此非我所知，然當問之。”遂召女官之掌宮中事者詰之，仍敎曰：“毋擅作事，毋擾亂。”錫翼、錫衍等既退以所親承於末命者，言於臣，臣復得以詳錄於狀末，俾後之見者，知此一事與不禳蛇異同，爲后不惑怪神之至德云。</p> |
|--|--|--|

시며 신(臣) 김석주(金錫胄)에게 명하시기를, ‘여기 기록한 데 빠지고 누락된 것이 많으나, 내가 정신이 없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여, 능히 찬술(撰述)할 수 없으니, 선후(先后)의 아름다운 덕(德)을 장차 다가올 훗날에 드리워 알리지 못할까 깊이 두려워한다. 경(卿)은 폐부(肺腑)4604)에 속해 있으므로, 또 갑인년 이후의 일을 능히 다 알 것이니, 그 모든 것을 차례대로 찬술(撰述)하여 행장(行狀)을 짓되, 사양하지 말라.’고 하시었다. 신(臣)이 명(命)을 받들고 떨리고 두려워 사양하고자 하니, 또 감히 못할 바가 있어, 이에 감히 중외(中外)에서 같이 보고 들은 것을 모아서 기록하였으되, 서차(序次)를 위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신이 엿드려 들건대, 요사이 조정의 의논이 바야흐로 요무(妖巫)의 죄를 다스리려고 하고, 간혹 ‘우리 선후(先后)께서는 현명하시고 슬기로우시어 이치를 통촉하시니 사사(私邪)로움에 미혹(迷惑)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도 무축(巫祝)의 일에 이끌리고 관계됨이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개 뜬소문을 들은 사람의 잘못이다. 국속(國俗)이 평소에 진창(疹瘡)을 두려워하여, 이에 걸린 집에서는 곧 신(神)이 있다고 휘장과 상(床)에다 자리를 설치하고 온갖 물건을 걸고서 비는데, 민간에서 모두 그렇게 해도 금할 수 없다. 우리 전하께서 처음 진역(疹疫)에 걸리셨을 때, 궁중(宮中)의 사람들이 이미 능히 이러한 일이 없을 수 없다 하고, 또 스스로 역신(疫神)을 섬긴다고 말하는 어떤 무당이 있었으므로, 외택(外宅)에서 따로 스스로 공신(供神)하게 하였다. 그런데 성상의 병이 이미 낮자 외간에서 점차 ‘궁중에서 장차 다시 무당을 맞이하여 송신(送神)할 것이다.’라고 전언(傳言)하여, 오랫동안 더욱 떠들썩하였다. 그 때 후(后)의 병환(病患)이 더욱 위중해지자, 후(后)의 아우 김석익(金錫翼)과 김석연(金錫衍)이 성상의 명으로 들어가 탕약(湯藥)의 시중을 들었는데, 틈을 타 드디어 후께 아뢰기를, ‘외인(外人)들이 무어라고 하는 것은 정녕 궁금(宮禁)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바가 아니니, 특별히 금지(禁止)를 더하실 것을 청합니다.’ 하니, 후께서 놀라시며, ‘어찌 이

| | | |
|--|--|---|
| | <p>런 일이 있단 말인가? 이는 내가 아는 바가 아니나, 마땅히 물어보겠다.’ 하시고는, 드디어 궁중(宮中)의 일을 관장(管掌)하는 여관(女官)을 불러 힐문(詰問)하시었다. 그리고 이어 하교하시기를, ‘마음대로 일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요란스럽게 하지도 말 것이다.’고 하시었다. 김석익과 김석연이 이미 물러나와서 직접 말명(末命)에서 받들었던 바를 신(臣)에게 말하였으므로, 신이 다시 행장(行狀)의 말미에 기록하여, 후세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한 가지 일이 뺨을 기도해 물리치지 않은 것과 서로 같고 다름을 알게 하니, 후(后)의 괴신(怪神)에 미혹되지 않은 지극한 덕을 위함이다.”</p> <p>하였다.</p> | |
| <p>속중 15권, 10년(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2월 5일(신축) 5번째기사</p> | <p>판부사(判府事) 이상진(李尙眞)이 상차(上筭)하여, 조적곡(糶糶穀)4690) 을 거두어들이는 영을 늦추고 조적곡을 나누어 주는 정사(政事)를 고르게 하며, 관동(關東)4691) 의 양전(量田)을 멈추고 업유(業儒)의 고강(考講)을 멈추며, 삼법사(三法司)4692) 가 나가서 절도 없이 금속(禁束)하는 것을 경계하고, 더 쓰는 공물(貢物)의 값을 계산하여 주기를 청하고, 이어서 죄받아 폐고(廢錮)된 사람 가운데서 죄가 중하지 않으면서 쓸 만한 재능이 있는 자와 쓸 만한 영남(嶺南) 사람을 등용하기를 청하고, 또 먼저 탕평(湯平)4693) 을 힘써 치우치는 것을 없애고 자신을 반성하는 것을 더 힘써서 참되게 하늘에 응답하기를 임금에게 권하고, 끝에 또 언관(言官)을 특명으로 체직(遞職)한 잘못을 말하니, 임금이 도타이 비답(批答)하고 그 차자(筭子)를 묘당(廟堂)에 내려 시행·폐지를 복의(覆議)하게 하였다.</p> | <p>○判府事李尙眞上筭， 請緩收糶之令， 均分糶之政， 停關東量田， 寢業儒考講， 申飭三法司出禁之無節， 計給貢物加用之價。 仍請調用罪廢人中， 所坐不重有才可取者及嶺南人士之可用者。 且勸上先務蕩平， 克祛偏係， 反躬加勉， 應天以實。 末又言特遞言官之失， 上優批獎諭， 下其筭于廟堂， 使之覆議施罷。</p> |
| <p>속중 15권, 10년(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3월 3일(기사) 1번째기사</p> | <p>임금이 친히 대행 왕대비(大行王大妃)의 빈전(殯殿)에 제사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애자(哀子) 사왕(嗣王) 신(臣) 모(某)는 감히 대행 현열 왕대비(大行顯烈王大</p> | <p>○己巳/上親祭于大行王大妃殯殿， 其文曰： 哀子嗣王臣某， 敢昭告于大行顯烈王大</p> |

妃)의 영좌(靈座) 앞에 분명하게 고합니다. 생각하옵건대, 미미한 소자가 일찍이 재앙을 입어 나이가 약관(弱冠)4712) 이 못되어 붕천(崩天)4713)의 아픔을 당하였으므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우러러 모시어 길러 주신 큰 은혜에 보답할 바는 오직 우리 자성(慈聖)이시니, 변함 없이 모시고 수명과 복록(福祿)이 그지없으시어 뜻에 따라 바라시는 물건으로 봉양을 극진히 하여 강릉(岡陵)처럼 큰 축수를 길이 받들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작은 우환으로 갑자기 버리시어 나 소자에게 세상이 다하도록 그지없는 슬픔을 끼치셨습니까? 나 소자가 어렵고 큰 사업을 이어받은 것은 바로 어린 때이었으니, 선조(先朝)의 가르침과 뜻을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나 우리 성모(聖母)의 가르침과 권면(權勉)에 힘입었고, 서정(庶政)의 당부(當否)에 내가 미처 잘 살피지 못하는 것이 있으나 우리 성모의 분부와 경계에 힘입었으며, 근심하거나 앓을 때에도 우리 성모께서 곁에서 데리고 도와 이끌어 나 소자가 위태하고 괴로와 거꾸러지는 지경을 벗어나게 하셨으며, 지난 무오년(4714)에 감기·더위가 들어 시일을 끌고 오랴수록 더욱 괴로와지니, 우리 성모께서 문득 다시 재계(齋戒)하고 한데에서 비시며 모(某)의 목숨을 갈음하기를 청하기까지 하여, 종사(宗社)가 중한 것만을 생각하고 스스로 옥체가 존귀한 것을 잊으셨습니다. 아! 어느 사람들 어머니가 없겠으며 어느 어머니인들 인자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정애(情愛)의 지극함이 누구인들 우리 모자만하겠습니까? 소자가 지난 겨울 앓은 병도 성모께서 오래 전부터 근심하신 것인데, 부스럼이 이미 많이 돌아나서 증세가 비상하매, 밤낮으로 놀라고 근심하시는 것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하시어 하늘에 사무치는 정성은神明(神明)이 도왔으나, 편찮으신 기후는 도리어 순월(旬月) 사이에 더하여 침소에 누우시게 된 끝에, 마침내 관대(冠帶)를 벗지 않고 병구완하는 일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참으로 소자가 세상이 다하도록 지극히 슬픈 까닭입니다. 아! 비통합니다. 대저 지극한 성품과 아름다운 모범이 고금에 뛰어난신 우리 성모로서는 하늘

妃靈座前。伏以，眇末小子，夙負鸞禍，年未弱冠，奄遭崩天之痛。其所夙夜仰戴，以報鞠育之隆恩者，惟在我慈聖，則庶幾承顏不替，壽祿無疆，以克殫志物之養，以永奉岡陵之祝。而云何微恙，歎爾捐背，以遺我小子罔極終天之慟耶？念予小子，嗣承艱大，正在沖藐之日，則其於先朝有訓有志，予有所未及知者，而賴我聖母，是誨是勸。其在庶政，有當有否，予有所未克察者，而賴我聖母，是命是戒。憂虞之際，疾病之時，亦惟我聖母左右提將，擁佑開導，俾予小子，得免於危苦顛覆之城。而往在戊午之歲，偶得寒暑之感，荏苒沈綿，久而益苦，則惟我聖母，輒復齋身露禱，至有代某之請。唯念宗社之爲重，自忘玉體之尊貴，噫噫！誰人無母，誰母不慈，情愛之至，孰如我母子者耶？至於小子前冬之疾，又是聖母宿昔之所預以爲憂者也。瘡疹既多，證情不常，其所以日夜驚憂，有倍他時。格天之誠，神明所勞，而違豫之候，反飢於旬朔，致令床第之餘，終有所未能自盡於冠帶之養者，此實小子終天之至慟也。嗚呼，痛哉！

의 사랑과 도움을 받아 아름다운 상서가 모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마는, 선왕(先王)께서 편찮으시던 때에 성모께서 여러 해 동안 고심하신 것이 본디 많았던 데다가, 두 누이동생이 혼약(婚約)도 하기 전에 어려서 죽고 명안(明安)도 어린 나이에 병이 많았고, 인경 원비(仁敬元妃)4715)의 상(喪)이 뜻밖에 있었는데다가 홍수와 가뭄의 기근으로 재앙이 아주 이어져서, 우리 성모의 많은 염려를 끼치어 열 두어 해 동안 하루도 기쁘게 즐기실 만한 때가 없으시어, 옛사람이 이른바 엿을 물고 손주와 희롱하는 것을 길이 즐기는 경사라고 하는 것은 다 없으셨으니, 이것이 또 소자가 뒤미처 생각하고 깊이 사모하여 더욱 다 숨이 끊어질 듯한 것입니다. 아! 비통합니다. 정사년(4716)에 진연(進宴)한 뒤로 세월이 이미 일곱 번 바뀌었으나 사고에 얽매어서 아직까지 다시 거행하지 못하였고, 올해 갑자년(甲子年)은 바로 자의전(慈懿殿)4717)의 회갑이 되는 해이므로 잔을 올려 축수하는 것이 예(禮)에 있어서 당연하기 때문에, 못 신하가 진언(進言)하고 예관(禮官)이 일을 처리하여 올봄에 풍정(豊呈)4718)을 설행(設行)하기로 이미 정하였으니, 한 자리에서 양궁(兩宮)에 만년의 축수를 함께 드리는 것이 곧 소자가 늘 꾀하여 기다려 온 것인데, 잠깐 사이에 이런 해독(害毒)에 걸려 평소에 봉양하던 맛있는 물건으로 오늘 제사에 바치는 물건을 만들고 말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 안에서 내리신 유교(遺敎) 수백 마디는 곧 우리 성모께서 미리 써서 두신 것인데, 승하하신 날에 곧 대신(大臣)에게 전하고, 이어서 재궁(梓宮)을 만드는 관원에게 명하여 한결같이 유교대로 일하게 하고, 선릉(先陵) 왼쪽을 비워둔 제도도 일찍이 자전(慈殿)의 가르침을 따라서 만들었고, 흙을 되덮는 일도 대개 크게 줄였으니, 민역(民役)을 가볍게 하고 검약을 숭상하는 은택이 더욱 중외(中外)에 널리 미쳐서 어리석은 먼 지방의 백성도 누구나 다 덕음(德音)을 공경히 칭송하며 슬퍼하고 사모하여 눈물을 흘리는데, 더구나 소자처럼 돌보아 주신 사랑을 길이 생각하고 뜻대로 봉양하지 못한 비통을 길이 맺은 자는 장차 어떻게

夫以我聖母之至性懿範，冠絕今古，是宜受天眷祐，嘉祥竝臻。而第當先王未寧之日，聖母之積年焦煎，固已多矣。二妹未字，忽爲夭逝，明安弱齡，又多疾病。仁敬元妃之喪，又出於意慮之外，加之以水旱飢饉，災沴頻仍，以貽我聖母之殷念，十數年之間，曾無一日可以怡愉歡樂。而如古人所謂含飴弄孫，稱之爲長樂之慶者，皆未之有焉。此又小子之追懷永思，益復隕絕者也。嗚呼，痛哉！自丁巳進宴之後，歲月已七改矣，而事故絀礙，迄未再行。今年甲子，正是慈懿殿周六之期，稱觴慶壽，在禮宜然。群臣進言，禮官治事，豊呈之設，已定於今春，則一筵兩宮，同進萬年之祝者，是予小子之日常懸企而俟之者，而誰知轉頭，罹此荼毒，以平日甘旨之奉，而乃爲今日鉶豆之薦而已耶？嗚呼！自內所下遺教數百言，卽我聖母所預書而藏之者，臯復之辰，卽傳于大臣，仍命敦匠之官，一以遺教從事，而先陵虛左之制，亦嘗遵奉慈訓而爲之，復土之役，蓋亦大省，寬民尙儉之澤，愈益覃及於中外。而蠢愚遐遠之民，亦莫不祇頌德音，悲慕

| | | |
|---|---|---|
| | <p>마음먹어야겠습니까? 아! 비통합니다. 세월이 쉽게 가서 장례 날이 이미 다가와 발인할 날짜가 수순(數旬)만 남았으므로, 어쩔줄 몰라 사모하는 것도 점점 미칠 수 없게 되니, 한갓 제사를 장만하여 하늘에 사무치는 슬픔을 풀 뿐입니다. 우러러 바라건대, 존령(尊靈)이 여기에 내려오시어 소자의 정성을 한 번 살피소서, 아! 비통합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으로 신명께 바치는 음식을 차립니다.”</p> <p>하였다. 이날은 절일(節日)이므로 임금이 친히 제문(祭文)을 지어서 제사하였는데, 사연이 지극히 애절하므로 중외의 보는 자가 모두 감탄하여 눈물을 흘렸다.</p> | <p>而流涕。況如小子，長惟顧復之私，永結蓼莪之痛，其將何以爲心耶？嗚呼，痛哉！時月易邁，遠日已戒，厥車之期，只隔數旬。皇皇攀慕，漸無所及，徒將辦香之奠，以洩極天之哀，仰惟尊靈，陟降在茲，尙一鑑乎小子之忱誠。嗚呼，痛哉！謹以清酌庶羞，式陳明薦。</p> <p>是日乃節辰，故上親製祭文進香，而辭極悲切，中外見者，莫不感歎流涕。</p> |
| <p>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3월 13일(기묘) 1번째기사</p> |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단하(李端夏)가 사창(社倉)에 관한 절목(節目)을 바쳤는데, 그 첫째는 ‘대여하는 관곡(官穀)은 그 인구수를 헤아려 고르게 나누어 주되 치우치게 받는 호호(豪戶)가 있으면 그 유사(有司)를 죄주고 호호도 아울러 다스릴 것’이라 하고, 그 둘째는 ‘6년 동안 준수하여 거행하여 참으로 보람을 이룬 사창의 유사(有司)가 있으면 각 고을에서 진휼청(賑恤廳)에 알려서 낭계(郎階)로 상줄 것’이라 하고, 그 셋째는 ‘각 고을에서 향임(鄉任) 한 사람을 시켜 사창의 문서를 맡아보게 하되 그 근만(勤慢)을 살펴보아 혹 부지런히 봉행하지 않거든 경하면 향임을 죄주고 중하면 수령(守令)을 죄줄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것이 모두 일곱 조목이었고, 또 나아가 말하기를,</p> <p>“갑인년(4737)의 사목(事目)은 백성이 사창에 곡식을 모아 들이게 하였으므로 백성의 뜻이 바라지 않아서 마침내 폐기되고 시행되지 않았으니, 이제는 진휼청의 곡식을 덜어내어 사창에 대여하고 모곡(耗穀) 4738)을 10분의 2로</p> | <p>○己卯/引見大臣、備局諸臣。禮曹判書李端夏進社倉節目，</p> <p>其一曰。官穀稱貸者，計其口數，平均分給，而如有豪戶偏受者，罪其有司，竝治豪戶。其二曰。社倉有司，如有六年遵行，實有成效者，各邑報知賑廳，賞以郎階。其三曰。各邑以鄉任一人，旬管社倉文書，察其勤慢，如或不勤奉行，輕則罪鄉任，重則罪守令。如是者凡七條。</p> <p>又進曰：“甲寅事目，令民聚穀於社倉，故民情不願，終廢不行。今宜除出賑</p> |

| | | |
|--|--|---|
| | <p>정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6년 동안 모곡을 받아서 원곡(元穀)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올가을부터 각리(各里)에 사창을 두고 봄에 곡식을 내어 주었다가 가을에 거두어들이되, 반드시 그 고을에서 진휼청에 전보(轉報)하고 그 염산(斂散)을 통제하고 그 출입을 살펴계 하면, 관조(官糶)보다 나르느라 소비하는 폐단을 덜 수 있으므로 10분의 2를 받더라도 관조의 10분의 1보다 이해(利害)가 절로 판별될 것이니, 백성의 뜻이 누구인들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사창은 주(周)나라의 의창(義倉)의 유제(遺制)인데 수(隋)나라가 가멸진 것은 참으로 이 때문이었다.’ 하였는데, 이제 나라에는 한해의 저축이 없고 백성 중에는 사사로 축적한 집이 없으므로 사람들에게 모두 굳은 뜻이 없으니, 정자(程子)가 말한 ‘공사(公私)가 서로 저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오늘날 급히 힘쓸 일입니다. 양서(兩西)에는 진휼청의 곡식이 없으므로 신이 황해 감사(黃海監司) 이세백(李世白)과 이 일을 의논하였더니, 해서(海西)의 각 고을에는 관향곡(管餉穀)4739 이 있는데 마친가지로 백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니 이것을 대여하도록 허가하여도 안될 것이 없을 것이라 하였는데, 그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p> <p>하니, 임금의 모두 윤택하였다.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이 이선(李選)을 개성 유수(開城留守)의 직임에서 갈아서 국장 도감(國葬都監)의 당상(堂上)의 직임을 그대로 살펴계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택하였다. 이단하가 말하기를,</p> <p>“산릉(山陵)의 일이 끝난 뒤에는 안릉전(安陵奠)4740 과 선릉(先陵)에 고유(告由)하는 일을 거행해야 할 것인데, 《오례의(五禮儀)》에는 내상(內喪)이 먼저 있고 외상(外喪)이 뒤에 있으면 신좌(神座)의 전물(奠物)도 함께 진설하는 예(禮)가 있으나, 내상이 뒤에 있고 외상이 먼저 있었으며 함께 진설하는</p> | <p>廳之穀，以貸社倉，定爲什二之耗，則收耗六年，可償元穀。 自今秋置倉於各里，春糶秋糶，必自本邑，轉報賑廳，制其斂散，照管其出入，則比之官糶，可除轉輸耗費之弊。 雖取什二，其視官糶之什一，利病自別，民情孰不樂爲哉？ 朱子謂：‘社倉是周家義倉之遺制，隋之富庶，實由於此。’ 而今也國無一年之蓄； 民無私積之家， 故人莫有固志， 程子所謂：‘公私交有積儲。’ 此實今日之急務也。 兩西無賑廳穀， 故臣與黃海監司李世白議此事， 則以爲：‘海西各邑有管餉穀， 均是爲民而設， 則以此許貸， 亦無不可。’ 其言誠是矣。” 上竝可之。 左議政閔鼎重請遞李選開城留守之任， 使之仍察國葬都監堂上， 上允之。 端夏曰：“山陵事畢後， 當行安陵奠及先陵告由矣。 《五禮儀》， 內喪在先， 外喪在後， 則神座奠物， 有竝設之禮， 而若內喪在後， 外喪在先， 則無竝設之文， 蓋出於卑不援尊之義。 卒哭前大中小祀， 亦皆廢而不行， 則先陵告由， 宜無奠物， 而新陵方行安陵奠， 同時告由於先陵， 而獨不設奠， 實涉未安。 且陵役畢後告由，</p> |
|--|--|---|

| | | |
|--|--|--|
| | <p>글이 없는 것은 대개 낮은 이가 원존(援尊)하지 않게 하는 뜻에서 나왔을 것이며, 졸곡(卒哭) 전에는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도 다 폐지하여 거행하지 않으니, 선릉에 고유할 때에는 전물이 없어야 마땅하겠으나, 새 능에서 바야흐로 안릉전을 거행하고 때를 같이하여 선릉에 고유하는 데 선릉에만 전물을 진설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미안하고 또 능역(陵役)이 끝난 뒤에 고유하는 것도 전에 거행한 규례가 없으니, 제문(祭文)은 산릉의 일이 끝나서 고유하는 것으로 이룸해야 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졸곡 전에 제사를 폐지한다는 글이 있더라도, 안릉(安陵)을 고유하는 것도 때를 같이하여 거행하는 일이라면, 마찬가지로 전물을 진설하고 제문도 아뢰는 바대로 지어 바치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p> <p>하였다. 어영 대장(御營大將) 윤지완(尹趾完)이 말하기를,</p> <p>“강화 유수(江華留守) 이민서(李敏敘)가 백마(白馬)·문수(文殊)·진강(鎭江) 세 곳에 성을 쌓고 장진(長津)·주문(注文) 두 섬에도 진(鎭)을 두어서 강도(江都)의 문호(門戶)가 되게 하기를 바란다고 청하였습니다. 대개, 백마는 승천진(昇天津)에 있어서 요해(要害)가 아닌 듯하나 문수는 갑진(甲津)에 높이 솟아 강도를 임압(臨壓)하므로 반드시 성이 있어야 강도를 굳게 할 수 있으며, 또 얼음이 녹아 흘러 강물에 찻을 때에 적이 갑자기 온다면 앞에는 갑진이 있고, 뒤에는 쫓는 기병(騎兵)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때에 문수에 성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굳게 지키다가 편의한 때를 타서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장봉·주문은 참으로 문호 같으나 오히려 문수처럼 가장 긴급하지는 못합니다.</p> | <p>亦無已行之規，祭文宜以山陵事畢告由爲號矣。” 上曰：“卒哭前雖有廢祀之文，安陵告由，同時行事，則不可不一體設奠，而祭文亦依所奏，使之撰進。” 御營大將尹趾完曰：“江華留守李敏叙請城白馬、文殊、鎭江三處，長峰、注文二島，亦欲置鎭，爲江都門戶。蓋白馬則在於昇天津，似非要害，而文殊則高峙甲津，臨壓江都，必有城，可以固江都。且流澌滿江之時，賊若猝至，則前有甲津，後有追騎，當此際，文殊有城，則可以就此堅守，乘便渡江。長峰、注文誠若門戶，然猶未如文殊之最急也。江都軍餉不過七萬石，若值軍興，能支幾日，宜置海倉於延安、白川等處，仍築倉城，收置糶糴，以濟江都之急，則可爲萬全之圖也。” 上然之。</p> <p>【史臣曰：“嘗觀李選、尹趾完論江都事，固國之計，蓋亦至矣。然二人者，徒區區於城池，而以此爲制勝之良算，嗚呼，危哉！昔孝廟嘗與筵臣言丁丑江都事，謂姜晉昕既不能戰，又不能逃。今若復以晉昕輩守此城，表裏險阻，雖</p> |
|--|--|--|

| | | |
|---|---|---|
| | <p>강도의 군항(軍餉)은 7만 석(石)에 지나지 않으니, 군사가 일어날 때를 당하면 며칠이나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연안(延安)·배천(白川) 등에 해창(海倉)을 두고 이어서 창성(倉城)을 쌓고서 조적곡(糶糶穀)을 거두어 두었다가 강도가 급할 때에 구제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전한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君)이 윤희(兪希)하였다.</p> <p>사신(史臣)은 말한다. “전에 이선(李善)·윤지완(尹致完)이 강도(江都)의 일을 논한 것을 보니, 나라를 굳게 하려는 계획은 대개 또한 지극하나, 이 두 사람은 성지(城池)에만 잔달게 마음이 얽매어 이것으로 이기는 좋은 계책이라고 여기니, 아! 위태롭다. 예전에 효종(孝宗)께서 연신(筵臣)과 정축년(4741)의 강도(江都)의 일(4742)을 말할 때에 ‘강진흔(姜晉昕)은 싸우지도 못하였거니와 달아나지도 못하였다.’ 하셨다. 이제 다시 강진흔 같은 자를 시켜 이 성을 지키게 한다면, 안팎의 험조(險阻)가 모두 두 사람이 논한 것과 같더라도 꽤하게 되지 않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접때 돈대를 쌓은 일은 본디 일을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의 상받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나왔는데, 나라의 재력(財力)과 백성이 고향(膏血)이 여기에서 다하였거니와, 이 두 신하가 또 두 성을 쌓아서 더하기를 바라니, 참으로 천치만첩(千雉萬堞)(4743)이 절로 우뚝 높을 뿐이어서 사나운 적이 오지 않더라도 절로 무너지게 될 것이니, 한탄스러움을 견딜 수 있겠는가?”</p> | <p>一如二人者所論，其不至於債敗者幾希矣。向者築墩之舉，固出於喜事人微賞之計，而國之財力、民之膏血，已盡於此矣。是二臣者，又欲築兩城以益之，誠恐千雉萬堞，徒自巋然，而不待暴客將至自崩也，可勝歎哉?”】</p> |
| <p>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3월 14일(경진) 2번째기사</p> | <p>하지정사(賀至正使) 조사석(趙師錫)·부사(副使) 윤반(尹攀) 등이 청국(淸國)에서 돌아왔다. 임금(君)이 인견(引見)하여 저들의 사정을 물으니, 조사석이 말하기를,</p> | <p>○賀至正使趙師錫、副使尹攀等歸自淸國。上引見，問彼中事情。師錫曰：“鄭克塽受撫時，願住南方，不欲北遷，故將軍施琅稟命而許之。年少</p> |

| | | |
|---|---|--|
| | <p>“정극상(鄭克塽)이 귀순할 때에 남방에 살기를 바라고 북으로 옮겨지기를 바라지 않았으므로 장군(將軍) 시낭(施琅)이 여쭙어서 허락받았는데, 젊은 신하들의 의논은 다 ‘남방 사람은 교활하므로, 남방에 두면 반드시 후환이 될 것이니, 북방으로 옮겨서 화근(禍根)을 끊는 것만 못하다.’하여 과도(科道)가 함께 글을 올렸으나, 위아래가 다 실신(失信)을 염려하여, 군사 3천을 머물러 두어 그 섬을 지키게 하고, 또 예부 시랑(禮部侍郎) 소배(蘇拜)를 보내어 섬안의 형세를 가서 살피게 하였다 하니, 정극상이 귀순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헛된 소문이 아닙니다. 세초(歲初)에 태평연(太平宴)을 거행하였는데, 제왕(諸王)·대신(大臣) 및 신(臣)들은 영외(楹外)에 앉고 몽고(蒙古)의 사신과 팔고산(八高山) 등은 다 뜰아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 소반을 같이 받았는데, 광록시(廣祿寺)에서 준비하지 못하여 제왕에게 나누어 명하여 음식을 장만하게 하였고, 어공(御供)이라는 것은 궁중에서 나왔습니다. 또 팔고산 소속은 순치(順治)4744 이전에는 호령이 엄명(嚴明)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그 녹봉(祿俸)을 줄였고 출렵(出獵)할 때에는 스스로 양식을 장만하므로 인심이 점점 이반(離反)하여 원성이 자못 시끄럽다 하니, 그 허비가 심한 것을 알 만합니다. 청주(淸主)가 오삼계(吳三桂)를 쳐부수고 미녀(美女) 3백명을 빼앗아 이궁(離宮)에 두고 날마다 음란을 일삼고 문사(文辭)만을 숭상하여 정령(政令)이 많이 어그러지며, 태자(太子)는 나이가 열 셋인데 강팍(剛愎)하고 사람을 죽이기 좋아하므로, 사람들이 다 반드시 나라를 망칠 것이라 합니다.”</p> <p>하였다.</p> | <p>諸議皆以爲：‘南人狡黠，若置南方，必爲後患。不如移之北方，絕其禍根。’科道交章，而上下皆以失信爲慮，留兵三千，以守其島。又遣禮部侍郎蘇拜，往審島中形勢云。克塽歸順，誠非虛傳也。歲初行太平宴，而諸王、大臣及臣等坐楹外，蒙古使臣及八高山之屬皆在庭下。三人共一盤，而光祿寺不能辦，分命諸王，使備酒食，而所謂御供，則出自宮中。且八高山所屬，順治以前，號令嚴明，人無怨言，而今則減其稍食，出獵之時自備糒糧，故人心漸離，怨聲頗騰云，可想其虛耗之甚矣。淸主破吳三桂，取美女三百，貯之離宮，日事荒淫，徒尙文辭，政令多舛。太子年十三，剛愎喜殺人，皆謂必亡其國矣。”</p> |
| <p>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3월</p> | <p>울산(蔚山)의 괘전(藪田)4748) 을 용동궁(龍洞宮)에 그대로 붙여두라고 명하였다. 이 궁은 금중(禁中)의 사탕(私帑)4749) 이며, 울산의 괘전은 본디 한지(閑地)가 아니라 진공(進供)하는 데 쓰이는 것을 오로지 여기에서 가져가는데,</p> | <p>○癸未/命以蔚山藪田，仍屬龍洞宮，此宮乃禁中私帑也。蔚山藪田，本非閑地，進供所用，專取於此，間爲龍洞</p> |

| | | |
|--|---|--|
| <p>17일(계미) 1번째기사</p> | <p>이따금 용동궁에서 떼어 받았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서문중(徐文重)이 치계(馳啓)하여 본부(本府)에 도로 붙이기를 청하고, 해조(該曹)에서도 그리해야 한다고 복의(覆議)하였으나, 임금(君)이 겨우 받았다가 곧 그만두는 것도 매우 전도되는 것이라 하여 특별히 명하여 본궁(本宮)에 붙였다.</p> | <p>宮所折受。慶尙監司徐文重馳啓，請還屬本府，該曹覆議以爲可。上以纔受旋罷，亦甚顛倒，特命屬之本宮。</p> |
| <p>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강희(康熙) 23년) 3월 20일(병술) 3번째기사</p> | <p>예관(禮官)이 발인(發靚) 때의 의주(儀註)를 바쳤다. 임금(君)이 장차 교외에서 지송(祇送)하는 예(禮)를 거행하려 하였는데, 이때 임금(君)의 환후(還後)가 처음으로 나왔으나 아직 완전히 편안하지 못하므로 못사람의 뜻이 다 염려스럽게 여겼다. 내의원(內醫院) 도제조(都提調) 김수흥(金壽興) 등이 입대(入對)해서 극진히 말하여, 교외에 나가는 의례(儀禮)를 그만두고서 조섭(朝攝)하는 방도(方道)를 다하기를 청하니, 임금(君)이 말하기를,</p> <p>“자로(子路)4759)가 <전에 아버지를 위하여> 1백 리 밖까지 쌀을 지고 간 일을 하려 하여도 할 수 없었다고 했거니와, 평생에 맛있는 물건으로 봉양하는 일을 다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또 교외에서 지송(祇送)하지 못하면, 장차 종신토록 지극한 아픔이 될 것이다.”</p> <p>하므로, 신하(臣)들이 여러 번 굳이 간쟁(諫爭)하였으나, 끝내 윤택(允)하지 않았다. 김수흥(金壽興)이 또 열읍(列邑)에 신칙(申飭)하여 관곡(官穀)의 대역(代役)을 끊지 말고 농사를 권장(勸)하고 제언(堤堰)을 수리(修理)하고 가뭄(旱)에 대비(備)하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君)이 모두 윤택(允)하였다.</p> | <p>○禮官進發靚時議註。上將行郊外祇送之禮，時，上候初瘳，猶未全安，群情皆以爲慮。內醫院都提調金壽興等入對，極言請寢出郊之儀，以盡調攝之道，上曰：“子路欲百里負米，亦不可得。平生不能盡志物之養，而今又不得祇送於郊外，將爲終身之至痛。”諸臣縷縷固爭，終不允。壽興又請飭列邑，勿閉糶、勸農作、修堤堰、備旱暵，上竝可之。</p> |
| <p>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강희(康熙) 23년) 4월 18일(계축) 4번째기사</p> | <p>청성 부원군(淸城府院君) 김석주(金錫胄)가 부모의 무덤(墳)을 이장(遷葬)하는 일 때문에 사조(辭朝)하니, 임금(君)이 인견(引見)하였다. 김석주(金錫胄)가 자주 신하(臣)들을 만나기를 청하고 이어서 해서(海西)에 새로 설치한 진(鎭)에 곡물(穀)을 저축(貯蓄)하여 두는 일을 아뢰고, 또 말하기를,</p> | <p>○淸城府院君金錫胄以父母墳遷葬事辭朝，上引見。錫胄請頻接臣僚，仍陳海西新設鎭穀物儲峙事，且言：“能麼兒郎廳，舊以習兵事者差下，近爲宰</p> |

| | | |
|--|--|---|
| | <p>“능마아 낭청(能麼兒郎廳)을 예전에는 병사(兵事)를 익힌 자로 차출하였는데, 요즈음은 재상(宰相)의 서열(庶孽) 족속이 승천(陞遷)하는 벼슬자리가 되어 병사를 전혀 모르는 자도 다 이것이 되니, 구례(舊例)에 따라 군문(軍門)의 장교(將校) 중에서라도 병서(兵書)에 통하여 아는 자를 차출하소서.”</p> <p>하니, 모두 윤택하였다.</p> | <p>相孽屬陞遷之窠，全不知兵者皆爲之。請依舊例，雖軍門將校中，擇其通曉兵書者差下。” 竝許之。</p> |
| <p>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강희(康熙) 23년) 5월 6일(신미) 1번째기사</p> | <p>해조(該曹)에 명하여 쌀 50석(石), 면포(綿布)와 마포(麻布) 각 5백 필(疋)을 은성 부부인(恩城府夫人)을 천장(遷葬)하는 곳으로 수송(輸送)하게 하였다.</p> | <p>○辛未/命該曹以米五十石、綿布。麻布各五百疋，輸送于恩城府夫人遷葬所。</p> |
| <p>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강희(康熙) 23년) 6월 20일(갑인) 2번째기사</p> | <p>명하여 호남(湖南)의 곡식 5천 곡(斛)을 배로 운반하여 제주(濟州)의 3읍(邑)을 진제(賑濟)하게 하였다.</p> | <p>○命船運湖南穀五千斛，賑濟州三邑。</p> |
| <p>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강희(康熙) 23년) 7월 3일(정묘) 1번째기사</p> | <p>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 청대(請對)하여 말하기를,</p> <p>“전날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상진(李尙眞)의 차자(劄子)에, 조정[朝著]의 궤열(潰裂)과 생민(生民)의 침요(侵撓)가 오늘의 재앙을 초래한 근본이 됨을 가지고 반복하여 간곡하게 진달하였는데, 약석(藥石)의 말이 아님이 없습니니다. 대개 조정의 위에서 처음에 논의(論議)가 맞지 않음으로 인하여 엇치락 뒤치락 괴격(乖激)4897) 하여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상께서 먼저 탕평(蕩平)의 길을 넓히어 치우친 것을 엄하게 물리쳐서 못 신하로 하여금 각각 그 사심(私心)을 버리고 함께 화평(和平)으로 가게 하소서. 이것이 진실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함께 힘을 바입니다. 민생(民生)의 침요(侵撓)에 이르러서</p> | <p>○丁卯/領議政金壽恒請對言：“頃日判府事李尙眞之劄以朝著之潰裂、生民之侵撓，爲今日召災之本，反覆勸懇，無非藥石。蓋朝著之上，初因論議不合，輾轉乖激，以至於此，必自上先恢蕩平，痛祛偏係，使群下各捨己私，共底和平，此誠上下所共勉者也。至於民生之侵撓，庚申以後，朝家非有別樣舉措，而民怨日滋。大變通、大設施，固非可望，而至於糶糶，近緣連凶，只</p> |

| | | |
|--|---|--|
| | <p>는, 경신년(4898) 이후로 조가(朝家)에서 별다른 거조(舉措)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백성의 원망이 날로 더합니다. 큰 변통(變通)이나 큰 시설(施設)은 진실로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조적(糶糶)에 이르러서는 근래에 계속 흉년든 것으로 인연하여 다만 새로 준 것만을 거둔 까닭에, 백성도 또한 익숙하여 이를 예사로 여겨서 묵은 조곡(糶穀)은 반드시 미루어 그 면제를 바라고자 합니다. 만약 주 세종(周世宗) 4899의 자상(子償) 4900을 책(責)하지 않는 도리를 가지고 한다면, 다만 묵은 조곡을 감면(減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준 것도 거둘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능히 한결같이 모두 탕감(蕩減)하지 못한다면 관가(官家)의 수봉(收捧)이 점점 어렵고 백성도 해마다 침요(侵撓)를 당하여서는 끝없는 폐단이 될 것이니, 연사(年事)를 참작하여 헤아려서 점차로 수봉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의 수조(收糶)가 묵은 묵을 위주로 하고, 기전(畿甸)의 보리 수봉이 또한 묵은 조곡을 우선한 것이 대개 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말할 필요가 없으며, 한진(旱乾)이 이와 같은데다가 객행(客行) 4901이 또 이르니, 수봉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독려(督勵)할 수 없습니다.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다만 이미 수봉한 것에 의거하여 마감(磨勘)하고 수봉한 것이 절반도 차지 못하는 자는 서로 고찰(考察)하여 논죄하게 함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아된 대로 하라.”</p> <p>하였다. 김수항이 또 말하기를,</p> <p>“유생(儒生)의 고강(考講)은 배움을 권장(勸獎)하고 인재(人材)를 이루려는 뜻</p> | <p>捧新給，故民亦習以爲常，舊糶則必欲延拖，以冀其蕩滌。若以周世宗不責子償之道，則不但舊糶可減，新給亦不必收捧也。如不能一併蕩滅，則官家收捧漸難，民亦逐歲見侵，爲無窮之弊，參量年事，漸次收捧，在所不已。故上年收糶，以舊分爲主，畿甸捧牟，亦先舊糶者，蓋出於此。而既往不須言，旱乾如此，客行又到，雖有未捧，不可更督。令道臣只據已捧者磨勘，所捧未滿一半者，相考論罪爲宜。”上曰：“依爲之。”壽恒又曰：“儒生考講，出於勸學成才之意。法令解弛，不識一字者，只爲免役，冒屬校籍，良民偏苦，軍額難充。戶布之法，既不得行，大軍籍之舉，又難輕議，年例考講，只歸文具。且近來戶籍中，稱業儒者甚多，論其門地，反不如校生，而徒以不入校籍之故，永無落講之憂，終身優閑。以法繩之此類，當直定軍役，而不教先罰亦未安。分付各道都事，校生業儒，一併試講，本非新創擾民之舉，而怨咨之興，固已慮之。湖南道臣報備局之狀以爲，業儒外，中人、孽屬、軍保子枝等雜類之自稱幼學者，既</p> |
|--|---|--|

| | | |
|--|--|---|
| | <p>에서 나온 것인데, 법령(法令)이 헤이하여 한 글자도 모르는 자가 다만, 면역(免役)을 위하여 법을 범하여가면서 교적(校籍)에 소속되어, 양민(良民)이 편파적으로 괴롭고 군액(軍額)을 보충하기 어려우매 호포(戶布)의 법을 이미 시행할 수 없으니, 군적(軍籍)을 크게 하는 거조(舉措)를 또 가볍게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연례(年例)의 고강(考講)이 다만 문구(文具)로 돌아갔으며, 또 근래에 호적(戶籍) 안에 업유(業儒)를 일컫는 자가 매우 많은데, 그 문지(門地)를 논한다면 도리어 교생(校生)만도 못하건만 다만 교적에 들지 않은 까닭을 가지고 길이 낙강(落講)의 근심 없이 종신토록 우한(優閒)하니, 법으로써 이를 다스린다면 이 무리는 마땅히 곧장 군역(軍役)으로 정하여야 하나 가르치지도 않고 먼저 벌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습니다. 각도(各道)의 도사(都事)에게 분부하시어 교생과 업유를 한결같이 모두 시강(試講)하게 하소서. 본래 백성을 소요하게 하는 거조(舉措)를 새로 세운 것은 아니지만, 원자(怨咨)의 일어난을 진실로 이미 염려하였습니다. 호남(湖南)의 도신(道臣)이 비국(備局)4902)에 보고한 서장(書狀)에 ‘업유(業儒) 외에 중인(中人)·열속(孽屬)과 군보(軍保)의 자손[子枝] 등 잡류(雜類)의 유학(幼學)을 자칭(自稱)하는 자가 이미 교안(校案)에 들지 않고 또 업유에도 들지 않으면서 사강(查講) 중에 또한 고강(考講)을 청하는데 그 수가 5천 9백여 명에 이르며, 향족(鄉族)과 사족(士族)은 그 안에 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사강과 고강을 할 때에 소요(騷擾)스러운 것을 알 수 있으나, 어찌 서로 선동(煽動)하는 말을 가지고 도로 정지하기에 이른단 말입니까? 이는 다만 나라의 체통을 손상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도(道)에 비해서도 매우 균등(均等)하지 못합니다. 기로(耆老)의 대신(大臣)의 말이 우연한 것이 아닌데, 모두 우선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 <p>不入於校案，又不入於業儒，查講中亦請考講，其數至於五千九百餘人，而鄉族、士族則不入此中云。查考之際，騷擾可知，而安可以胥動之言，至於還寢乎？此不但國體傷損，其視他道，亦甚不均。第耆老大臣語非偶然，竝姑置之乎？”上曰：“既查仍置，有傷國體。今年則已判荒歉，固難舉行。可使之待年考講。”壽恒又曰：“筭末所陳徵斂之弊，則近來軍門太多，弊及外方。如有規外新創，貽害民間者，令一切停止。卽今民力盡矣，國計竭矣，百爾思量，無他可救。惟有惜財用、節浮費爲第一急務。凡干不緊事，勿論費用多少，皆可停罷。竊聞，近者有內下書法，令芸閣開刊，方取石於忠州地云。此等事，宜先停止，自上每以不作無益爲心，務從省約，仍勅有司，大小浮費，皆令停罷，庶有及民之益矣。”上曰：“節用愛人，有國之先務也。雖在常時，所當惕念，況今年事如此，芸閣刻役，其令停止，凡係浮費，一切停罷可也。”</p> |
|--|--|---|

| | | |
|--|---|--|
| | <p>“이미 살펴 알면서 그대로 둔다면 나라의 체통을 손상함이 있다. 금년은 이미 흉년으로 판정(判定)되어 진실로 거행하기 어려우니, 풍년을 기다려 고강함이 좋겠다.”</p> <p>하였다. 김수항이 또 말하기를,</p> <p>“차자(劄子)의 끝에 진술한 바 징렴(徵斂)의 폐단은 근래에 군문(軍門)이 매우 많아서 폐단이 외방(外方)에까지 미치니, 만일 법규(法規) 밖에 새로 만들어서 민간(民間)에 해를 끼치는 것이 있으면 일체 정지하게 하소서. 이제 민력(民力)이 다하고 국제(國計)가 다하여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아도 달리는 구제할 수 없고, 오직 재용(財用)을 아끼고 부비(浮費)를 절약하는 것이 제일 급무(急務)가 되니, 무릇 긴요하지 않은 일에 속하는 것은 비용의 많고 적음을 논할 것 없이 모두 정파(停罷)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가 듣건대, 서법(書法)을 내리시어 운각(芸閣)4903) 으로 하여금 개간(開刊)하게 하시어 바야흐로 돌을 충주(忠州) 땅에서 취하고 있다 하는데, 이런 일들은 마땅히 먼저 정지하여야 합니다. 성상께서 매양 무익(無益)한 것은 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먹고서 절생(節省)과 검약(儉約)을 따르기에 힘쓰시고 이어 유사(有司)에 신칙하여 대소(大小)의 부비를 모두 정파하게 하신다면 백성에게 미치는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절용(節用)하여서 백성을 사랑함은 나라를 다스리는 선무(先務)이니, 비록 평상시에 있어서도 마땅히 척념(惕念)하여야 하는데, 하물며 올해에 연사(年事)가 이와 같은 것이겠는가? 운각(芸閣)의 각역(刻役)4904) 을 정지하게 하고,</p> | |
|--|---|--|

| | | |
|---|--|---|
| | <p>무릇 부비에 관계되는 것은 일체 정파하는 것이 옳다.”</p> <p>하였다.</p> | |
| <p>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7월 6일(경오) 2번째기사</p> | <p>청(淸)나라 사신이 들어와 환경전(歡慶殿)에서 치제(致祭)하였다. 청나라 사람이 조제(弔祭)할 때의 가설(假設)할 처소(處所)를 처음에 창경궁(昌慶宮)의 명정전(明政殿)으로 의논하여 정하였으나, 임금(上)이 그 혼전(魂殿)에 너무 가깝다 하여 환경전으로 옮겨서 설치하게 한 것이다. 임금이 쇠복(衰服)을 갖추고 전계(殿階) 위에 자리를 마련하여서 곡하여 맞이하였으며, 두 칙사는 탁자(卓子) 앞에 서서 제문(祭文)을 읽고 향을 사르고 잔을 드리고 폐백을 태우고서 나갔다. 임금이 중문(中門) 밖에 이르기까지 곡하여 보내었다.</p> | <p>○淸使入，致祭于歡慶殿。淸人弔祭時，假設處所。初以昌慶宮明政殿議定，上以其逼近魂殿，令移設於歡慶殿。上具衰服，設次於殿階上，哭而迎。兩勅立卓前，讀祭文，炷香奠酌，焚幣而出，上哭送至中門外。</p> |
| <p>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7월 12일(병자) 1번째기사</p> | <p>대신(大臣) 2품(品) 이상과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고, 가뭄이 심함을 가지고 재앙을 사라지게 하는 계책을 물으려 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정지화(鄭知和)가 늙고 병들어서 잘 걷고 추창(趨蹌)하지 못하였으므로, 소환(小宦)을 시켜 부액(扶掖)하여서 전(殿)에 오르게 하고 일어나 절하지 말도록 명하였으니, 특별한 은전이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p> <p>“국가가 불행하여 재앙이 없는 해가 없다. 올해에는 비오고 별나는 것이 때에 맞아서 풍년들기를 바랐는데, 6월 이후로 바람이 맵고 불별이 내려쬐여 비내릴 징조가 막연하여 양맥(兩麥)4935 을 이미 잃고 공사(公私)의 일이 그대로 있어서 밤낮으로 근심하는 마음이 타는 듯하여 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이에 재앙을 사라지게 하는 계책을 듣고자 하니, 각각 마음을 다하여 진달하라.”</p> <p>하니,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 대답하기를,</p> <p>“오늘날의 고질적인 폐단은 사의(私意)가 횡류(橫流)하고 공도(公道)가 행하여</p> | <p>○丙子/引見大臣、二品以上、三司諸臣。以旱甚，將詢以弭災之策也。判府事鄭知和老病不良步趨，令小宦扶掖上殿，命勿起拜，異數也。上謂諸臣曰：“國家不幸，無歲無災，至今年，雨暘時若，庶望稍稔，六月以後，淒風杲日，雨意漠然，兩麥已失，公私赤立，夙夜憂煎，罔知攸措。茲欲聞所以消弭之策，其各悉陳。”領議政金壽恒對曰：“今日痼弊，在於私意橫流，公道不行，私之一字，萬善之賊也。聖人言治平之道，必曰克己復禮。己者，人慾之私也；禮者，天理之公也。人慾勝則天理滅，紀綱之頽廢，用舍之顛倒，朝論之乖貳，政令之不舉，皆由於</p> |

| | | |
|--|--|--|
| | <p>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私)라는 한 글자는 온갖 선(善)한 일의 적(賊)이니, 성인(聖人)이 치평(治平)4936) 의 도(道)를 말씀하시되 반드시 극기복례(克己復禮)를 가지고 하셨습니다. 기(己)는 인욕(人慾)의 사사로움이고 예(禮)는 천리(天理)의 공변된 것이니, 인욕이 이기면 천리가 멸합니다. 기강(紀綱)의 퇴폐(頹廢)와 용사(用舍)의 전도(顛倒)와 조정 의논의 어긋남과 정령(政令)의 행하여지지 않음은 모두 공(公)이 사(私)를 이기지 못하는 데에서 말미암습니다. 원컨대, 성상(聖上)께서는 먼저 스스로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다만 정령(政令)·사위(事爲)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비록 한 가지 생각의 미세(微細)한 것이라도 반드시 대공 지정(大公至正)의 도리를 보존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군신상하(君臣上下)가 사의(私意)를 끊어버려서 공도(公道)를 넓히며, 혹시라도 인순(因循)함이 없어서 빈말이 되는 데 이르지 않는다면, 나라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고, 정지화(鄭知和)는 말하기를,</p> <p>“옛사람이 이르기를, ‘한 여자가 원한을 품으면 3년을 가문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날에 권문(權門)에 발자취를 더럽힌 무리로서 좌폐(坐廢)된 자가 많고 금고(禁錮)된 지 여러 해가 되어 울적함이 지극하니, 쓸 만한 사람을 사이사이 거두어 쓰는 것 또한 화기(和氣)를 부르는 한 방도입니다.”</p> <p>하고, 우의정(右議政) 남구만(南九萬)은 말하기를,</p> <p>“사람의 벼슬이 떨어져서 울적한 것도 감상(感傷)하기에 족한데, 억울하게 무고(誣告)를 입어 악명(惡名)이 몸에 있는 자는 더욱 어떻겠습니까? 김환(金煥)의 국문(鞫問)은 신도 그 옳음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진정(鎮定)을 평계삼아</p> | <p>公不勝私。願聖上先自警惕，不但於政令事爲，雖一念之微，必存之以大公至正之道。君臣上下，絕祛私意，恢張公道，無或因循，不至爲空言而已，則國事庶可爲矣。”知和曰：“古人云：‘一女抱冤，枯旱三年。’向時染跡權門之類，坐廢者多，禁錮多年，幽鬱極矣。可用之人間間收拾，亦召和氣之一道也。”右議政南九萬曰：“人之落職幽鬱者，足以感傷，則橫被誣告，惡名在身者，尤何如哉？金煥之鞫問，臣亦不知其可也，而諉以鎮定，只施定配，有若無罪而強罪之者。金重夏則渠自上變無實，元無可恕之端，安有誣人大逆，而終得全活之理哉？如欲慰冤枉、明典刑，則莫如先正此事也。況今論議携貳，皆本於此，而舉措如此，何以致和同之休哉？朱子曰：‘諸葛亮以區區十分得一之蜀，能抗吳、魏，必先宮府爲一體。’此正藥石之論也。”上曰：“金煥元無可罪之事，重夏所告，設令無實，似非出於陷害誣告之意。且欲調停，已令遠配，今安有更問之事乎？”壽恒曰：“朴滲上疏，與上變無異，誣他人尙不赦，況滲誣誘有不忍</p> |
|--|--|--|

| | | |
|--|--|--|
| | <p>다만 정배(定配)를 시행하여서 마치 죄없는 것을 억지로 죄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중하(金重夏)는 그가 실정이 없는 것을 상변(上變)하여서 본래 용서할 만한 단서(端緒)가 없습니다. 어찌 사람을 대역(大逆)으로 무함하고서 마침내 몸을 온전히 하여 살아남을 이치가 있단 말입니까? 만일 원왕(冤枉)을 위로하고 전형(典刑)을 밝히고자 한다면 먼저 이 일을 바로잡음만 같지 못합니다. 하물며 이제 논의(論議)의 어긋남이 모두 여기에 근본하는데도 거조(舉措)가 이와 같으니, 무엇으로써 화동(和同)의 아름다움을 이르게 한단 말입니까?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제갈양(諸葛亮)4937) 이 구구하게 열로 나누어 하나를 얻은 촉(蜀)나라를 가지고 오(吳)나라와 위(魏)나라에 대항(對抗)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먼저 궁(宮)4938) ·부(府)4939) 를 일체(一體)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약석(藥石)4940) 의 의논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김환(金煥)은 본래 죄줄 만한 일이 없었다. 김중하(金重夏)가 고한 바가 설령 실정이 없다 하여도 함해 무고(陷害誣告)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닌 듯하며 또 조정(調停)하고자 하였다. 이미 먼 곳으로 정배(定配)하게 하였으니, 이제 어찌 다시 묻는 일이 있겠는가?”</p> <p>하였다. 김수항이 말하기를,</p> <p>“박헌(朴憲)의 상소는 상변(上變)과 다름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함하여도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박헌의 무함하여 비방함이 차마 말할 수 없음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때의 자교(慈教)4941) 의 사의(辭意)가 통절(痛切)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털이 쭈뼛하게 하였는데도, 이 도적으로 하여</p> | <p>言。其時慈教辭意痛切，令人髮竦，使此賊尚保首領，臣等之罪大矣。臣意，濫罪必依律正刑，然後重夏之事，亦從臺啓，方爲正當矣。”上曰：“朴憲之尚保首領，可謂失刑，固當更問，而當此憫旱之日，不必以罪重夏爲先務。此豈吾求助大臣之意哉？”因從容謂曰：“今日諸臣入侍，予當數心腹以諭，其各明聽。今茲亢旱，實未前有，究厥所由，無非寡昧之否德。不反己，而責臣隣，亦甚愧惡。但朝著之間，論議漸乖，情志離阻，三分四裂，莫可收拾。朝廷，四方之本，而氣象如此，其何能做得一事乎？古語云：‘和氣致祥，乖氣致異。’今日之災，亦安知不由於此哉？廉頗、藺相如，戰國之士也，亦能先國家之急，而後私讎。今日朝紳，豈非廉、藺之罪人乎？宜各着念改圖，革祛舊習，一意奉公，惟思共濟之義。此予所大望於諸臣者也。”諸臣一時起拜曰：“聖教丁寧，孰不惕然感激也？”判義禁南龍翼曰：“今日救災，莫如愛民。去歲徵逋欠，民怨頗多。十分撫摩，絕不爲撓民之舉，可庶幾也。京外儒生被罰頗多，</p> |
|--|--|--|

| | | |
|--|--|--|
| | <p>금 아직도 머리를 보전하게 하였으니, 신 등의 죄가 큼니다. 신의 뜻은, 박헌의 죄를 반드시 율에 의하여 정형(正刑)한 년후에 김중하의 일도 대계(臺啓)에 따르는 것이 바야흐로 정당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박헌이 아직도 머리를 보전하고 있는 것은 실형(失刑)이라고 이를 만하니, 진실로 마땅히 다시 물어야 한다. 이 가뭄을 근심하는 때를 당하여 반드시 김중하를 죄주는 것을 선무(先務)로 할 것은 없다. 이것이 어찌 내가 대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뜻이겠는가?”</p> <p>하였다. 이어서 조용히 말하기를,</p> <p>“오늘 여러 신하가 입시(入侍)하였으므로 내가 마땅히 진심을 토로하여 말할 것이니, 각각 밝게 들으라. 이제 이 심한 가뭄은 실로 전에 없던 것이며, 그 말미암은 바를 생각한다면 과매(寡昧)의 비덕(否德)이 아님이 없는데도, 돌이켜 나 자신에게서 구하지 않고 신하들을 책하니 또한 매우 부끄럽다. 다만 조저(朝著)의 사이에 논의가 점점 어긋나고 정지(情志)가 떠나고 막히어 셋으로 나뉘고 넷으로 쪼개어져서 수습할 수 없다. 조정은 사방의 근본인데도 기상(氣象)이 이와 같으니, 어찌 능히 한가지 일인들 할 수 있겠는가? 옛말에 이르기를, ‘화기(和氣)는 상서(祥瑞)를 부르고 괴기(乖氣)는 재이(災異)를 부른다.’라고 하였으니, 오늘의 재이가 또 어찌 이에서 말미암지 않는지 알겠는가? 염파(廉頗)와 인상여(藺相如)는 전국 시대(戰國時代)의 인사(人士)로서 또한 능히 국가의 급함을 우선하고 사사로운 원수를 뒤로 하였으니(4942) 오늘의 조신(朝紳)이 어찌 염파와 인상여의 죄인이 아니겠는가? 마땅히 각각 고쳐</p> | <p>屢歲不得赴慶科，此亦傷和氣之一端也。”上令分付解罰。又教曰：“今年三南進上物件，特爲停捧。凡百裁省等事，預爲商處。宗廟祭享，雖不敢省，而永昭殿祭享，則特爲減半，以示節省之意。”江華留守尹壻曰：“向時被罪之人，已過五年，天道亦一小變矣。洪宇遠年已八十，李袤既以老見釋，宇遠亦宜寬貴。”壽恒等曰：“宇遠語犯慈聖，何敢輕議？”知事趙師錫曰：“百隸怠官，實今之痼弊。諸司官專委胥吏，暫時開坐，慢不知何事，必用卯坐酉罷之規，庶責實效矣。”上命申飭各該司。工曹判書洪萬容曰：“奢侈近益甚，衣服之制，稱以宮樣，競相慕效。古人曰：‘奢侈之害，甚於天災。’一切痛禁，似合於節省之道。乞深留聖意，使之自然移易。”刑曹參判尹趾善曰：“軍門太多，興販歲增。上有損下之政，下有怨上之心。孟子曰：‘上下交征利，而國危。’不可不念也。”兵曹參判崔逸曰：“孔子云：‘舉枉錯諸直，則民不服。’近來直言之士放逐殆徧，終不召還。寇準曰：‘刑政平而民服。’金重夏、金煥國人皆曰可</p> |
|--|--|--|

| | | |
|--|--|--|
| | <p>도모할 것을 생각하여 구습(舊習)을 고쳐 버리고 한결같은 뜻으로 봉공(奉公)하여서 오직 함께 구제하는 의리(義理)를 생각하도록 하라. 이것이 내가 여러 신하에게 크게 바라는 바다.”</p> <p>하니, 여러 신하가 일시에 일어나 절하고 말하기를,</p> <p>“성교(聖敎)가 정녕(丁寧)하시니, 누군들 두려워하고 감격하지 않겠습니까?”</p> <p>하였다.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남용익(南龍翼)이 말하기를,</p> <p>“오늘의 재앙을 구함은 백성을 사랑함만 같지 못합니다. 지난해에 포흠(逋欠)을 징수(徵收)하여서 민원(民怨)이 매우 많으니, 십분 무마하여서 결코 백성을 동요시키는 거조를 하지 않는다면 거의 이를 바랄 수 있습니다. 경외(京外)의 유생(儒生)이 벌을 입은 것이 매우 많아서 여러 해를 두고 경과(慶科)4943)에 나아갈 수 없으니, 이 또한 화기를 상(傷)하는 한 가지 단서(端緒)입니다.”</p> <p>하니, 임금(君)이 벌(罰)을 풀어주도록 분부하게 하고, 또 하교하기를,</p> <p>“금년에 삼남(三南)에서 진상(進上)하는 물건은 특별히 정봉(停捧)4944) 하도록 하라. 무릇 여러 가지를 재생(裁省)하는 등의 일은 미리 생각해서 처리하고, 종묘(宗廟)의 제향은 비록 감히 줄이지 못하나 영소전(永昭殿)4945)의 제향은 반감(半減)하여서 절생(節省)의 뜻을 보이도록 하라.”</p> <p>하였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윤계(尹埜)가 말하기를,</p> | <p>殺，而尙今不從，刑政何以得清乎?”</p> <p>校理申啓華曰：“私意之弊，大臣言之，上亦面戒，疇敢不祇若休命？古語曰：‘源清則流潔。’ 殿下於內司宮家事，曲爲庇護，此亦出於私，而非廣大光明處也。” 仍請脫略繁文，頻接臣僚。</p> <p>戶曹判書鄭載嵩曰：“頃有別判付於內需司，令伐松板四百葉於江陵、三陟，而仍使減稅。此兩邑卽黃腸禁山，若許斫取，必有濫雜矣。” 上卽令勿施。</p> <p>校理李頤命請講究良役，申飭刑獄。修撰尹德駿請慎簡守宰，上竝賜開納。</p> <p>謹按，會詢廷僚，甚盛舉也。大小諸臣三十餘人所言，皆平平無可觀，上亦視以應文古事，竟無實效，其何以慰下民戴日之怨，而回上天降割之怒耶？宜其民心日離，而國勢不競，可勝歎哉？</p> |
|--|--|--|

| | | |
|--|---|--|
| | <p>“지난번에 죄를 입은 사람이 이미 5년을 지나서 천도(天道)가 또한 한 번 조금 변하였습니다. 홍우원(洪宇遠)은 나이 이미 80세입니다. 이무(李袤)는 이미 늙어서 석방되었으니, 홍우원도 너그럽게 용서하소서.”</p> <p>하니, 김수항 등이 말하기를,</p> <p>“홍우원은 말이 자성(慈聖)을 범하였으니, 어찌 감히 가볍게 의논하겠습니까?”</p> <p>하였다. 지사(知事) 조사석(趙師錫)이 말하기를,</p> <p>“은갓 예속(隸屬)들이 관청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 실로 오늘날의 고질적인 폐단입니다. 모든 관사의 관원은 오로지 서리(胥吏)에게 맡기고 잠시 개좌(開坐)4946) 하여서 막연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반드시 묘시(卯時)4947) 에 좌기(坐起)하고 유시(酉時)4948) 에 파(罷)하는 규칙을 써서 실효(實効)를 책(責)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명하여 각 해사(該司)를 신칙하게 하였다. 공조 판서(工曹判書) 홍만용(洪萬容)이 말하기를,</p> <p>“사치(奢侈)가 근래에 더욱 심하여 의복의 제도를 궁중 양식이라고 말하면서 다투어 서로 본뜨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사치의 해가 천재(天災)보다도 심하다.’하였으니, 일체 엄하게 금지하는 것이 절생(節省)의 도리에 맞을 듯합니다. 빌건대, 깊이 유의(留意)하시어 자연히 고쳐지게 하소서.”</p> | |
|--|---|--|

| | | |
|--|---|--|
| | <p>하고, 형조 참판(刑曹參判) 윤지선(尹趾善)은 말하기를,</p> <p>“군문(軍門)이 매우 많아 흥판(興販)4949) 이 해마다 늘어나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손상시키는 정치가 있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利)를 취하면 나라가 위태롭다.’고 하였으니, 유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고, 병조 참판(兵曹參判) 최일(崔逸)은 말하기를,</p> <p>“공자(孔子)가 말하기를, ‘굵은 자를 들어서 곧은 자의 위에 두면 백성이 복종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근래에 직언(直言)하는 인사(人士)를 쫓아보내어 거의 다 내 보내고 끝내 소환(召還)하지 않았습니다. 구준(寇準)4950) 이 말하기를, ‘형정(刑政)이 공평하여야 백성이 복종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중하(金重夏)와 김환(金煥)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도 아직 따르지 않으니, 형정(刑政)이 어떻게 맑아진단 말입니까?”</p> <p>하고, 교리(校理) 신계화(申啓華)는 말하기를,</p> <p>“사의(私意)의 폐단을 대신이 말하고 성상께서 또 면대(面對)하여 경계하셨으니, 누가 감히 아름다운 명(命)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근원이 맑으면 흐름이 깨끗하다.’고 하였습니다. 전하(殿下)께서 내수사(內需司)와 궁가(宮家)의 일에 있어 도리(道理)를 굽혀 비호(庇護)하시니, 이것 또한 사의(私意)에서 나와 광명 정대(廣明正大)한 것이 아닙니다.”</p> <p>하고, 이어 번거로운 글을 생략하여 없애고 자주 신료(臣僚)를 접견하기를 청</p> | |
|--|---|--|

| | | |
|---|---|---|
| | <p>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정재송(鄭載嵩)은 말하기를,</p> <p>“요즈음에 내수사(內需司)에 별판부(別判付)를 내려 송판(松板) 4백 장을 강릉(江陵)과 삼척(三陟)에서 벌채(伐採)하게 하고 이어 감세(減稅)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고을은 곧 황장 금산(黃腸禁山)4951) 이니, 만약 작벌(斫伐)하며 취함을 허락하신다면 반드시 남잡(濫雜)함이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곧 시행하지 말게 하였다. 교리(校理) 이이명(李頤命)은 양역(良役)을 강구(講究)하고 형옥(刑獄)을 신척하기를 청하고, 수찬(修撰) 윤덕준(尹德駿)은 수재(守宰)4952) 를 신중히 택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모두 개납(開納)을 내렸다.</p> <p>삼가 생각건대, 조정의 신료(臣僚)들을 모아 순문(詢問)함은 매우 성대(盛大)한 일이나, 대소 여러 신하 30여 명의 말하는 바가 모두 평범하여서 볼 만한 것이 없고, 임금 또한 문장(文章)에 응용(應用)하는 고사(古事)로 보아서 마침내 실효(實効)가 없으니, 그 무엇을 가지고 하민(下民)의 해[日]4953) 을 받드는 원망을 위로하겠으며, 상천(上天)의 재해를 내리는 노여움을 돌이키겠는가? 민심(民心)이 날로 떠나서 국세(國勢)가 떨치지 못함은 마땅한 일이니, 탄식함을 견딜 수 있겠는가?</p> | |
| <p>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7월 25일(기축) 6번째기사</p> | <p>좌참찬(左參贊) 이단하(李端夏)가 상소하여 사창(社倉)의 편의(便宜)를 진달(陳達)하였으니, 그 대략에 이르기를,</p> <p>“대저 왕자(王者)의 정치를 함은 반드시 백성의 산업(產業)을 제정(制定)함을 가지고 근본으로 삼습니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총재(冢宰)가 국용(國用)을 마련하여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지출을 하여서, 나라에 9년의 저축이</p> | <p>○左參贊李端夏上疏，陳社倉便宜，其略曰：</p> <p>夫王者爲治，必以制民之產爲本。 《禮記》曰：“冢宰制國用，量入而爲出。國無九年之蓄曰不足；無六年之蓄</p> |

| | | |
|--|--|--|
| | <p>없는 것을 부족(不足)하다 하고, 6년의 저축이 없는 것을 급(急)하다 하며, 3년의 저축이 없는 것을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라고 한다.’ 하였습니다. 3년 경작하면 반드시 1년 먹을 것이 있고, 9년 경작하면 반드시 3년 먹을 것이 있어서 30년 통산(通算)한 것을 가지면 비록 흉악한 가뭄과 물의 넘침이 있어도 백성이 굶주리는 기색이 없는 것 이것이 곧 주관(周官)의 위적(委積)4998)의 법으로서 주공(周公)이 만든 것입니다. 후세에 이 법이 폐(廢)하여 행하여지지 않았는데, 수(隋)나라 문제(文帝)의 개황(開皇) 5년(585)에 이르러 탁지상서(度支尚書) 장손평(長孫平)이 청하여서, 여러 주(州)의 백성 및 군인으로써 하여금 당사(當社)4999)에서 함께 의창(義倉)을 세우고 수확하는 때에 조와 보리를 내어 저장하였다가 당사에 굶주리는 자가 있으면 곧 이 곡식을 가지고 진급(賑給)하게 하였으니, 이때부터 여러 주(州)에서 <곡식을> 축적(蓄積)하였습니다. 당(唐)나라 제도에는 흉년들면 사창(社倉)이 있어 진급하고, 또 상평창(常平倉)을 두어 공사(公私)로 서로 구제하는 법을 행하였으며, 고종(高宗) 이후에는 차츰 의창(義倉)의 것을 빌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송(宋)나라 태조(太祖)의 건덕(乾德) 원년(963)에 이르러, 여러 주의 속현(屬縣)으로 하여금 각각 의창을 두어서 백성이 창숙(倉粟)을 빌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주·현에서 곧 지급(支給)하고 보고하게 하였다. 인종(仁宗)의 경력(慶歷) 1041~1048년) 초년에 가암(賈黯)이 또 민사 의창(民社義倉)을 세우도록 청하였으나 마침내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에 정백자(程伯子)5000)가 열 가지 일로 조정(朝廷)에 논하였는데, 그 첫째가 마땅히 고제(古制)에 따라 공사(公私)에서 서로 곡식을 저축하는 법을 행하여서 흉년의 대비로 삼자는 것이었으나 또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남도(南渡)5001) 한 뒤에 미쳐, 주자(朱子)가 비로소 그가 살고 있는 송안현(崇安縣)에 사창(社倉)을 세우고 관부(官府)에서 옮기는 곡식을 머물도록 청하여서 이를 행하였으니, 사대부(士大夫)로서 시골에 사는 자가 이를 본떠 행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주자는 아올러 기(記)를 지어 또</p> | <p>曰急;無三年之蓄曰國非其國。” 三年耕, 必有一年之食;九年耕, 必有三年之食。以三十年之通, 雖有凶旱水溢, 民無菜色。此乃《周官》委積之法, 而周公之所制也。後世此法廢而不行, 至隋文帝開皇五年, 度支尚書長孫平請令諸州百姓及軍人, 當社共立義倉, 收穫之日, 出粟麥貯之, 當社有飢饉者, 卽以此穀賑給。自是, 諸州儲峙委積。唐制凶荒則有社倉賑給, 又置常平倉, 爲公私交濟之法。高宗以後, 稍假義倉以給。至宋太祖乾德元年, 令諸州屬縣, 各置義倉, 民有欲借倉粟, 州縣卽給以聞。仁宗慶曆初, 賈黯又請立民社義倉, 而不果行。其後程伯子論十事於朝, 其一, 宜從古制, 公私交爲儲粟之法, 以爲凶歲之備, 又未施行。至南渡後, 朱子始建社倉於所居崇安縣, 請留官府移粟爲之, 士大夫鄉居多倣行者, 朱子竝爲之作記。又請於朝, 以其法頒於諸路, 皆令貸米, 設倉取息到十倍, 然後還納元米。我國州縣, 皆有倉設糶糴, 社倉則未嘗設置, 遠村之民咸仰官糶。惟幸昔時殖穀者, 里里有之, 民寧樂受富戶什伍</p> |
|--|--|--|

조정에 청하여서 그 법을 여러 도(道)에 반포(頒布)하고, 모두 쌀을 꾸어 주어서 창고를 세우고 이식(利息)을 취하여 10배에 이른 연후에 원미(元米)를 환납(還納)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주·현(州縣)마다 창고가 있어서 조적(糶糶)을 행하고 있으니, 사창은 일찍이 설치하지 아니하여서 먼 촌의 백성이 모두 관조(官糶)에 의지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옛날에는 곡식을 증식(增殖)하는 자가 마을마다 있어서, 백성이 차라리 부호(富戶)의 십오(什伍)5002)의 사채(私債)를 즐겨 받을지언정 관조(官糶)를 받는 자가 적었습니다. 또 연내로 주·현에서 강제로 사채를 봉쇄(封鎖)하여서 만일 환봉(還奉)하고자 하면 형화(刑禍)5003)에 빠지게 되니, 이로 말미암아 부호가 다시 곡식을 증식하지 않게 되어서 시골의 마을이 텅텅 비었습니다. 굶주리는 백성이 어쩔 수 없이 오로지 관곡(官穀)을 받는데, 침몰(侵沒)의 비용이 도리어 사채보다도 더하고 형장(刑杖)의 독촉이 또 따라서 급박하니, 백성의 곤고(困苦)의 심함이 진실로 이에 말미암습니다. 이제 이미 민간의 사저(私儲)로 하여금 쓸어버린듯이 끊어지게 만들고 또 사창을 설치하지 않으니, 소민(小民)은 멀리 내다보는 생각이 없어 아침 저녁으로 절약하지 않고 그 밖의 낭비로 만드시 힘을 다하고야 말아서, 봄·여름에 이르면 황황급급(遑遑汲汲)하다가 모두 굶어죽는 데에 이릅니다. 명(明)나라 고헥제(高皇帝)5004)가 천하를 평정함에 비록 무력(武力)을 가지고 하였으나, 그 어루만져 정착시키고 편안하게 불러모음이 실로 곡식을 증식(增殖)하는 사람을 높여서 권장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힘입음이 있게 하는 데에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다 근세(近世)의 관리(官吏)는 부호(富戶) 보기를 원수처럼 하여 침범하여 괴롭히고 억압하여 빼앗아서 비로 쓸어버린 듯이 끊어지게 만들었으며, 오늘날 조금이라도 스스로 이름을 좋아하는 자는 또 이것을 수치(羞恥)로 여기니, 예전의 풍속을 갑자기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사창(社倉)만이 사적(私的)인 것 속의 공적(公的)인 것이고, 또 침탈(侵奪)의 근심이 없으며 화식(貨殖)의 비방이 없어서, 다만 관리로 하여금 착

之私債，而尠受官糶矣。又自年來，州縣勒封私債，如欲還奉，陷於刑禍。由是，富戶不復殖穀，村閭蕩然，飢民不得已專受公穀，侵役之費，反加於私債。刑杖催督，又從而刻急，民困之甚，職由於此。今也既使民間私儲掃絕，而又不設社倉，小民無遠慮，不節於朝夕。其他濫費，必竭力乃已，至春夏遑遑汲汲，舉陌餓死。大明高皇帝之定天下，雖以征討，然其撫定安集，實由於崇獎殖穀之人，使齊民有賴。而奈何近世官吏，視富戶如讎敵，侵暴抑奪，以致掃絕。今稍知自好者，又以爲恥，故舊俗難以猝復，惟是社倉，此爲私中之公，又無侵奪之慮。貨殖之誚，但使官吏，着實勸諭，則興行不難矣。臣於丙午秋在鄉，與同里士民，聚私穀而設倉，各人所納，皆標其名。翌年夏，各以其穀分給，則人人皆喜曰：“若在吾家，則今豈餘存乎？”其效便可見也。取息至倍，然後還給元穀於私人，以其所息，並濟里中，追到者又添受公穀，前受者已還給本色。今則所息頗優，故里中尠受官糶，民大便之。庚申臣按畿輔，卽令

| | | |
|--|---|--|
| | <p>실하게 권유(勸諭)하게 한다면 일으켜 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신이 병오년(5005) 가을에 시골에 있으면서 같은 마을의 사민(士民)과 더불어 사곡(私穀)을 모아 창고를 세우고 각 사람마다 바친 것에 모두 그 이름을 표시하였다가 이듬해 여름에 각각 그 곡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사람마다 모두 기뻐하여 말하기를, ‘만약 내 집에 두었다면 어찌 남아 있겠는가?’ 하였으니, 그 효과를 곧 볼 수 있었습니다. 이식(利息)을 취하여 갑절의 수량에 이른 연후에 원곡(元穀)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그 이식으로 들어온 것만을 가지고 아울러 마을 안 사람들을 구제하였습니다. 추후(追後)로 이르는 자는 또 공곡(公穀)을 덧붙여 받고, 먼저 받은 것은 이미 본색(本色)을 돌려주었으며, 지금은 증식(增殖)이 매우 넉넉합니다. 그런 까닭에 마을 안에서 관조(官糶)를 받는 자가 매우 적어져서 백성이 크게 편리하게 여깁니다. 경신년(5006)에 신이 경기 감사(京畿監司)가 되어 곧 <사창의> 설립을 권유하였으나, 가을도 안 되어 벼슬이 갈렸으므로 각 고을이 다시 준행(遵行)하지 않았으며, 오직 여주(驪州)와 지평(砥平) 두 고을만이 신의 말을 익히 들어서 그대로 설립을 권유하였습니다. 신이 이번에 시골로 내려가 두 고을을 방문하였는데, 점점 그 이익을 입어서 그 편리함을 말하였습니다. 이 일의 이익됨을 신이 모두 세어 보고자 청합니다. 사창은 10분의 2의 이식이니, 관조에 비하여 겨우 1분이 더하고 사채(私債)에 비하여 3분을 덜하여서 이식을 거둬들이 알맞으니, 이것이 첫째 이로움입니다. 창고를 마을 안에 설립하여서 수납(受納)이 편리하고 가까우며 또 조종하고 침몰(侵沒)하는 폐단이 없으니, 이것이 둘째 이로움입니다. 마을 사람이 사창 보기를 가장(家藏)같이 하여서 그다지 독촉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능히 모두 같으니, 이것이 셋째 이로움입니다. 민간(民間)에 이미 적저(積儲)가 있어 관조를 받음이 적어서 관조가 비로소 창고에 머무를 수 있어 텅 비기에 이르지 않으니, 이것이 넷째 이로움입니다. 흉년들어 굶주리는 해에 공사(公私)가 모두 저장(儲藏)이 있다면 만일 변란(變亂)이 있어도 군</p> | <p>勸設，而未秋徑遞，故各邑不復遵行。惟驪州、砥平兩官，慣聞臣言，仍爲勸設，臣今下鄉，訪問兩邑，漸蒙其利，稱說其便。此事之益，臣請悉數之。社倉什二之息，視官糶加一，視私債減三，收息適中，此一利也。設倉里中，受納便近，又無操縱侵沒之弊，此二利也。里人視社倉，如其家藏，不甚催督，自能齊償，此三利也。民間既有積儲，則尠受官糶，官糶始可留庫，不至枵然，此四利也。凶年飢歲，公私俱有蓋藏，脫有變亂，軍糧亦足，此其爲利，又何可盡言也？夫生財之道，節用爲本。今國家以養兵之故，既無一年之蓄，而公卿大夫士，亦未聞量入爲出，稍存贏餘。況愚民能遠慮不濫費乎？然則使民節用，無如社倉。先正臣李珣、故儒臣尹宣舉各設於所處鄉社，卽今致仕臣宋時烈亦設於懷德、清州兩處，其爲便益，不獨臣驗之於鄉邑而已。惟是各邑倉吏等，常以出納侵沒，而分與各里，頗失其利，故此輩最厭之。守令之怠於奉行者，既不誠心曉諭，又聞朝論携貳，皆以爲不可行。士民識其便者，雖欲設行，官吏沮遏。</p> |
|--|---|--|

| | | |
|--|--|--|
| | <p>량(軍糧)이 또한 족할 것이니, 이에 그 이익됨을 또한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생재(生財)의 길은 절용(節用)을 근본으로 삼는데, 이제 국가에서 양병(養兵)한다는 이유로 이미 1년의 저축이 없는데도, 공경(公卿)·대부(大夫)·사(士)가 또한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하여서 조금이라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이 멀리 생각하여서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백성으로 하여금 절용(節用)하게 하는 것이 사창만함이 없습니다.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와 고(故) 유신(儒臣) 윤선거(尹宣舉)가 각각 그 살던 시골의 사(社)에 설립하였고, 지금의 치사(致仕) 신(臣) 송시열(宋時烈)도 회덕(懷德)과 청주(淸州)의 두 곳에 설립하여서, 그 편리하고 이익됨이 홀로 신이 향읍(鄉邑)에서 징험(徵驗)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직 각 고을의 창리(倉吏)들이 항상 출납(出納)의 침몰(侵沒)로써 각 마을에 나누어 주는데, 그 이익을 자못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무리가 가장 이를 싫어하며, 수령(守令)으로서 봉행(奉行)을 게을리 하는 자가 이미 성심(誠心)으로 개유(開諭)하지 않고, 또 조정의 의논이 서로 어긋남을 듣고 모두 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민(士民)이 그 편리함을 알아서 비록 시행하고자 하여도 관리가 이를 막습니다. 신이 바야흐로 시골에 있으니, 이 일의 형편에 대해 어찌 확실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조신(朝臣)이 범연(泛然)히 듣고, 억측하여 판단하여서 일찍이 깊이 이해(利害)를 궁구(窮究)하지 않고 뜻에 따라 비방하여 물리치니, 신은 마음속으로 슬프고 근심이 됩니다. 근일에 크게 가물어 팔도(八道)가 다 그러하여서 온갖 곡식이 모두 타 죽어 대명(大命)5007 이 멈추어지는 데 가까와서 난망(亂亡)의 화(禍)가 아침 저녁으로 박두하여 있습니다. 원컨대, 이 소(疏)를 묘당(廟堂)에 내리시고 다시 비변사(備邊司)와 상의(商議)하게 하소서.”</p> <p>하였는데, 말하기를,</p> | <p>臣方在鄉，於此事形，豈不的見，而朝臣則泛聽臆斷，不曾深究利害，率意非斥，臣竊慨然也。近日大旱，八路同然，百穀焦盡，大命近止，亂亡之禍，迫在朝夕。願下此疏于廟堂，更令商議。</p> <p>備邊司以爲：“其言皆有經據，其意不啻勸懇。自古作事之初，論議鮮能歸一，此固常理，不足爲怪。既頒事目，漸次興行，則雖未知畢竟成效之果如何，而至於因異議而中輟，非所可慮。且念法制雖美，必待其人而後行。論說雖詳，不如其身之自任，宜使端夏，從速還朝，以盡其職責。”上允之。</p> |
|--|--|--|

| | | |
|--|--|--|
| | <p>“그 말이 모두 바른 근거가 있어서 그 뜻이 근간(勸懲)할 뿐만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일을 일으키는 처음에 논의가 능히 하나로 귀결되기가 드무니, 이것은 진실로 상리(常理)로서 족히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반포(頒布)한 사목(事目)이 점차로 흥행(興行)하여서 비록 필경 효과(效果)를 이룸이 과연 어떨지 알지 못하겠습디만, 이의(異議)로 인하여 중간에 멈추는 것에 이르러서는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또 생각건대, 법제(法制)가 비록 훌륭하나 반드시 적당한 사람을 기다린 뒤에 행하여지고, 논설(論說)이 비록 상세하나 그 자신이 스스로 말씀만 같지 못하니, 마땅히 이단하(李端夏)로 하여금 속히 조정으로 돌아와 그 직책을 다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의 윤허하였다.</p> | |
| <p>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8월 2일(을미) 3번째기사</p> | <p>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p> <p>“전(前) 지평(持平) 정제선(鄭濟先)이 작년 연경(燕京)에 갈 때에 관서(關西)5014) 에 이르러서 반노(叛奴)를 추핵(推劾)하기 위하여 가는 곳마다 술에 취하여 혹독한 장형(杖刑)을 베풀다가, 제멋대로 운명(隕命)하게 한 자가 5명에 이르렀습니다. 사사로움으로 인하여 법을 무시하였으니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청컨대 잡아다가 추문하여 죄를 정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 <p>○諫院啓言：“前持平鄭濟先，上年赴燕時，行到關西，爲推叛奴，到處乘醉，酷施刑杖，橫致隕命，至於五名。因私蔑法，不可置之，請拿問定罪。”上從之。</p> |
| <p>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8월</p> | <p>고부(古阜)의 무인(武人) 김남두(金南斗)가 상소하기를,</p> <p>“오늘날의 민폐(民弊)는 자세하게 들 수는 없지만, 전정(田政)과 적정(糶政)과</p> | <p>○古阜武人金南斗上疏曰： 當今民弊，不可毛舉，而田政也，糶政</p> |

20일(계축) 4번째기사

진정(賑政)입니다. 무엇을 전정의 폐단이라고 이르는가 하면, 서원(書員)의 무리가 결부(結負) 【시속에서 곡식 10속(束)을 1부(負)라고 하고 10부를 1결(結)이라고 한다.】 를 속이는 것은 제도(諸道)의 공통된 병통인데, 호남이 더욱 심합니다. 작년에 조정에서도 이 폐단을 염려하여 사목(事目)을 거듭 밝히고 특별히 풍헌(風憲)·유사(有司)를 정하여 답험(踏驗)하게 하였기 때문에, 감히 속이거나 숨기지 못하여 거의 폐단을 없앨 만하였는데, 작부(作夫) 【시속에서 8결(結)을 1부(夫)라고 한다.】 할 때에 도리어 서원(書員)에게 위임하였으므로, 한 도의 손실이 몇 만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한 도를 미루어 생각하면 여러 도를 알 수 있으니, 마땅히 각 고을로 하여금 서원에게 맡기지 말고 별도로 유품(儒品)에서 가려서 풍헌 및 별유사(別有司)로 삼아서 상세하게 답험하도록 하고, 상하 인민(人民)을 모아놓고 서로 의논하여 작부(作夫)하게 하되, 혹시 사사로운 정에 따르는 바가 있거든 중한 율(律)로 다스리면, 속이고 숨기는 폐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적정(糴政)의 폐단이라고 이르는가 하면, 가만히 보건대, 근래에 백미(白米)와 정조(精租)는 아전의 무리와 호족[豪右]에게 많이 돌아가는데, 거두어 들일 때에는 오직 곤궁(困窮)한 백성들에게만 독촉하고 아전의 무리는 바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받아 먹는 것이 해마다 증가하기만 하며, 간혹 바치는 바가 있다 해도 모두 겨우 죽정(餓)을 섞어서 바치고, 또 분급(分給)할 때에는 반드시 정한 곡식을 가립니다. 탕감(蕩減)하거나 감봉(減奉)할 때에 혜택을 받는 자는 모두 이 아전의 무리와 호족이고, 소민(小民)은 반드시 인족(隣族)에게 책임지워 전량을 거두어 받습니다. 또 혹시 각 고을에서 이전하는 일이 있으면 민결(民結)에 분급(分給)하고 정곡(精穀)으로 고쳐서 이납(移納)하게 하니, 백성들이 보존하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이에 말미암는 것입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각도(各道)에 엄하게 신칙하여 거두어들이고 나누어 주는 것을 반드시 모두 균일하게 하면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진정(賑政)의 폐단이라고

也, 賑政也。 何謂田政之弊也, 書員輩, 偷竊結負, 【俗以穀十束爲負, 十負爲一結。】 諸路通患, 而湖南尤甚。 上年朝家, 亦軫此弊, 申明事目, 特令別定風憲有司踏驗, 故無敢欺隱, 庶可革弊矣。 作夫 【俗以一八結爲一夫云。】 之時, 反委書員, 一道所失, 不知幾萬。 推此一路, 諸路可知, 宜令各官, 勿任書員, 別擇儒品, 以爲風憲及別有司, 使之詳細踏驗, 聚會上下人民, 相議作夫, 而或有循私, 繩以重律, 則可無欺隱之弊矣。 何謂糴政之弊也, 竊觀近來, 白米精租, 多歸於吏輩豪右, 及其收捧, 全督窮民, 而吏輩則不惟不納, 又復受食, 逐年增加, 間有所納, 皆雜糠粃, 又於分給, 必擇精穀, 至於蕩減減奉之時, 則蒙惠者, 無非吏輩豪右, 而小民則必責隣族, 沒數微捧。 且或有各官移轉之舉, 則分給民結, 改精移納, 民之不保, 職由於此。 今計莫若嚴勅各道, 收捧分給, 必皆均一, 則民無呼冤之弊矣。 何謂賑政之弊也? 設粥無益。 已驗辛亥, 乾糧分給, 亦試上年。 而飢民成冊, 貧富相蒙, 邑底奸吏, 多有冒錄, 遠村窮民,

| | | |
|--|---|---|
| | <p>이르는가 하면, 죽(粥)을 먹이는 것이 보탬이 없는 것은 신해년(辛亥年)5057)에 이미 증험하였고, 건량(乾糧)을 나누어 주는 것도 작년에 시험하였습니다. 기민(飢民)의 성책(成冊)에 빈부(貧富)가 서로 섞여 있고 읍저(邑底)의 간리(奸吏)가 속여서 기록한 것이 많아서 먼 마을의 곤궁한 백성은 누락됨을 면치 못하여 떠도는 걸인이 있기에 이르는데, 임금의 백성이나 타관(他官)이라 칭탁하고 공소(控訴)를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앞드려 원하건대, 진정(賑政)을 거듭 밝히고 여러 고을에 엄하게 신칙해서 힘써 균일(均一)하게 하여 무고(無告)한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하소서. 진곡(賑穀)은 반드시 별도로 요리(料理)하여야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일찍이 전에 곡식을 바치고 찰방(察訪)·주부(主簿)의 자급(資級)을 받은 자가 도로 병영(兵營)에 소속되어 천역(賤役)과 다름이 없습니다. 작년에 곡식을 바치고 면강(免講)되기를 원하던 무리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문득 대오(隊伍)에 묶이니 누가 즐겨 곡식을 바치고 그 역(役)을 사겠습니까? 이번에 본도(本道)에서 중인(中人)·서얼(庶孽)을 뽑아 비국(備局)에 보낸 자가 무려 수천 명인데, 5, 6석(石)의 쌀을 바치게 하고 면강첩(免講帖)을 만들어 주어서 종신토록 침해하지 말게 한다면, 반드시 다투어 달려오는 자가 많아서 수천여 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봄의 애통(哀痛)한 하교를 여러 고을 수령들이 전해 보이지 아니한 자가 많아서, 궁벽한 마을의 어리석은 백성들은 들어 알지도 못하였는데, 유독 태인 현감(泰仁縣監) 조상우(趙相愚)만이 친히 성상의 유시(諭示)를 받들어 선비와 백성들에게 초유(招諭)하여 온 고을 사람들로 하여금 성상의 뜻을 소상하게 알도록 하고, 각각 곡물(穀物)을 내어 진제(賑濟)하는 것을 돕게 하였으니, 반드시 모든 고을에 엄하게 신칙하여 반포해 보이게 하고, 혹시 봉행(奉行)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즉시 전포(傳布)하지 아니하는 자는 명령에 태만한 율(律)로 다스리면 어찌 도움이 적겠습니까? 또 오늘의 곤수(闕帥)는 오직 위엄 세우는 것만을 위주로 하고, 무마(撫摩)하는 것을 마음에</p> | <p>未免落漏，至於流丐，莫非王民，而稱以他官，控訴不許。伏願申明賑政，嚴勅列邑，務令均一，使無告之民，得免死亡焉。賑穀必須別樣料理，可得一分之助，而曾前納穀，受察訪主簿之資者，反屬兵營，無異賤役。上年願納免講之類，未過一歲，使束隊伍，誰肯納穀，以買其役乎？今番本道中人庶孽抄送備局者，無慮數千，使納五六石米，成給免講帖，而終身勿侵，則必多爭趨，可得累千餘石矣。上年春哀痛之教，列邑守令，多不傳示，窮村愚民，不得聞知，獨泰仁縣監趙相愚，親奉聖諭，招諭士民，使一縣之人，曉知聖意，各出穀物，以助賑濟，必須嚴勅列邑，使之頒示，而其或怠於奉行，不即傳布者，繩以慢命之律，則豈少補哉？且今之闕帥，惟以立威爲主，不以撫摩爲心，莫若擇忠厚智略者，畀闕帥之任，切勿數遞，使之撫摩教鍊，則將知軍心，軍熟其將政矣。東伍乃臨亂先驅之卒，而率多疲殘之類，若不別樣賑護，則必將流散，待愛之計，殊甚虛踈。伏願別諭各道主將，別樣賑救其所管東伍，俾無流散之弊焉。且今日</p> |
|--|---|---|

| | | |
|--|--|--|
| | <p>두지 아니하니, 충후(忠厚)하고 지략(智略)이 있는 자를 가려서 곤수의 임무를 주고, 절대로 자주 바꾸지 말고 무마하고 교련하게 하면, 장수는 군사의 마음을 알 것이고, 군사는 그 장수의 정사(政事)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속오군(束伍軍)은 바로 난리에 임하여 앞장서는 병졸인데, 대개 피잔(疲殘)한 무리가 많으므로, 만약 특별히 진호(賑護)하지 않으면 반드시 장차 흩어질 것이니, 사변에 대비하는 계책이 자못 너무 허술합니다. 엿드려 원하건대, 각도의 주장(主將)에게 특별히 유시(諭示)하여 각별히 그 소관(所管)의 속오군(束伍軍)을 진구(賑救)하여 흩어지는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 또 오늘날의 근심은 진실로 남쪽에 있는데 영남의 조령(鳥嶺)과 호남의 팔영峙(八營峙)는 진실로 요해지(要害地)입니다. 오늘을 위하는 계책으로는 산성(山城)을 증축(增築)하는 것만한 것이 없으니, 남쪽 오랑캐의 정보가 있으면 대장(大將)을 나누어 보내어 두 성(城)에 의거해 지키게 하고, 해로(海路)의 방비는 오로지 통영(統營)과 수영(水營)에 책임지워야 할 것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묘당(廟堂)에 널리 하문하셔서 포상(苞桑)의 계책(5058)으로 삼으소서.”</p> <p>하였는데 답하기를,</p> <p>“응지(應旨)하여 진언(進言)한 것을 내가 아름답게 여긴다. 마땅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p> <p>하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복주(覆奏)하기를,</p> <p>“전정(田政)이 잘되고 잘못되는 것은 오직 수령(守令)의 능하거나 능하지 못함에 매어 있으나, 조적(糶糶)5059)을 균일(均一)하게 하지 못한 것은 진실로 지극히 한심합니다. 아울러 마땅히 신칙하여 드러나는 대로 중하게 다스리</p> | <p>之憂，實在於南，而嶺南之鳥嶺，湖南之八營峙，實是要害處也。爲今計，莫若增築山城，南夷有警則分遣大將，據守兩城，而海道之防，專責統水營。願殿下，廣詢廟堂，早爲苞桑之計焉。</p> <p>答曰：“應旨進言，予用嘉之。當令廟堂稟處。”備邊司覆奏言：</p> <p>田政之善不善，惟係守令之能否，糶糶之不能均一，誠極寒心。竝宜申飭，隨現重究，飢民之不能明覈，其責亦在守令，使之精查，毋或混雜。且納穀而既受影帖者，還屬軍伍，則朝家未免失信，宜令各道，更勿混侵。至於庶孽業儒之查出汰講，蓋欲以游食之民，充補闕額，今若又令納穀免講，終身勿侵，則國體殊涉苟簡，有難輕許。闕帥數易，雖曰有弊，不必輕變官方。關防要害，設險守備之策，不無意見，係是大段設施，有難輕議。</p> <p>寢不行。仍下教政院曰：“金南斗以遐荒武人，應旨封章，有足可尙。且疏陳之辭，亦不無意見，自本院詳察其爲</p> |
|--|--|--|

| | | |
|--|--|--|
| | <p>게 할 것이며, 기민(飢民)을 명확하게 핵실(覈實)하지 못하는 것은 그 책임이 또한 수령에게 있으니, 정밀하게 조사하여 혹시라도 혼잡(混雜)함이 없게 할 것입니다. 또 곡식을 바치고 영첩(影帖)을 받은 자를 도로 군오(軍伍)에 붙이면 조정에서 실신(失信)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각도(各道)로 하여금 다시 마구 침해하지 말게 해야 합니다. 유학(儒學)을 일삼는 서얼(庶孽)의 태강(汰講)을 조사해 내는 데 이르러서는 대개 놀고 먹는 백성으로 궤액(闕額)을 채우려는 것인데, 이제 만약 또 곡식을 바치고 면강(免講)하게 하고 종신토록 침해(侵害)하지 아니하면, 국체(國體)에 자못 구간(苟簡)하는 것이니, 가볍게 허락하기 어렵습니다. 곤수(閫帥)를 자주 바꾸는 것이 비록 폐단이 있다고 하나, 관방(官方)5060)을 가볍게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방(關防)의 요해지에 성(城)을 쌓아 수비(守備)하는 계획은 의견(意見)이 없지 아니하나, 이는 대단한 시설에 관계되므로, 가볍게 의논하기가 어렵습니다.”</p> <p>하니, 정지하고 행하지 아니하였다. 인하여 승정원(承政院)에 하교하기를,</p> <p>“김남두(金南斗)는 먼 지방의 무인(武人)으로서 응지(應旨)하여 상소하였으니 승상할 만하다. 또 소장에 진달한 말이 또한 의견이 없지 아니하니, 본원(本院)에서 그 사람됨을 자세히 살펴서 아뢰도록 하라.”</p> <p>하였는데, 승정원에서 대답하기를,</p> <p>“김남두가 소 올릴 때에 원본을 읽게 하니, 통효(通曉)하여 막힘이 없었으며, 묻는 데 따라 대답하는 데 자못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됨을 보니, 또한 근간(勤幹)한 듯 하였습니다.”</p> | <p>人以啓。” 政院對曰：“南斗呈疏之時，使讀元疏，則通曉無礙，隨問應對，頗有所見。聽其言辭，觀其爲人，亦似勤幹矣。” 上令該曹，相當職除授。</p> |
|--|--|--|

| | | |
|--|--|---|
| | 하니, 임금이 해조(該曹)로 하여금 상당한 벼슬을 제수하게 하였다. | |
| 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9월 1일(갑자) 1번째기사 | 임금이 영모전(永慕殿)에서 삭제(朔祭)를 친히 행하였다. 하고하기를, “혼전(魂殿)의 준여(餽餘)를 이미 몸소 시선(視膳)하지 못하였는데, 설사 삼가지 못한 바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알겠는가? 이 뒤로는 오향속절(五享俗節)의 예(例)에 의하여 제사한 뒤에 각색 제물을 대내(大內)에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 ○朔甲子/上親行永慕殿朔祭, 教曰: “魂殿餽餘, 既不得躬自視膳, 設有不謹, 何由知之? 今後依五享俗節例, 祭後各色內入。” |
| 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10월 3일(을미) 1번째기사 | 내당미(內帑米) 50석, 목면(木綿)5백 필, 마포(麻布) 3백 50필을 진휼청(賑恤廳)에 내려 명년 봄 진자(賑資)에 보충해 쓰도록 명하였다. | ○乙未/命下內帑米五十石, 木綿五百匹, 麻布三百五十匹于賑恤廳, 使補明春賑資。 |
| 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10월 7일(기해) 2번째기사 |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를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 “제도(諸道)의 재실(災實)은 마땅히 장문(狀聞)을 기다렸다가, 부역(賦役)을 견감(蠲減)하는 일을 품처(稟處)해야 하는데, 잇따라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사명(李師命)의 장계(狀啓)를 보니, 호남(湖南)의 피해가 여러 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한 23개 고을은 여러 가지 신역(身役)을 이미 전부 감하였는데, 비록 조금 나은 고을이라 하더라도 서울에 상납(上納)하는 곡물은 본도(本道)에 머물러 두도록 허락하여 진휼[賑賑]하는 데 보태게 하고, 서울 아문(衙門)에서 대신할 곡물을 갖추어 보상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 ○引見備局諸臣, 領議政金壽恒曰: “諸道災實, 當待狀聞, 稟處蠲役之事, 而連見全羅監司李師命狀啓, 則湖南被災, 最於諸路。 其中尤甚二十三邑, 諸般身役, 既已全減, 而雖其稍勝之邑, 京中上納之穀物, 許留本道, 以補賑賑, 自京衙門備償其代宜矣。” 上許之。 仍曰: “今歲凶荒, 八路同然, 而湖南尤甚, 數十萬生靈, 將何以救活? 良可於邑。” 右議政南九萬: “請以參議李濡, 差備局堂上, 兼管賑事。 又令李端夏, 速爲察任, 旬管賑政。” 上 |

| | | |
|--|--|---|
| | <p>하니, 임금의 이를 허락하였다. 인하여 말하기를,</p> <p>“금년의 흉황(凶荒)은 팔도가 똑같으나, 호남이 더욱 심하니, 수십만 생명을 장차 어떻게 구제해 살리겠는가? 진실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p> <p>하였다. 우의정(右議政) 남구만(南九萬)이 아뢰기를,</p> <p>“청컨대, 참의(參議) 이유(李濡)를 비국 당상(備局堂上)으로 임명하여 진휼(賑恤)하는 일을 겸관(兼管)하게 하고, 또 이단하(李端夏)로 하여금 빨리 직임을 살피게 하여 진정(賑政)을 구관(句管)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의 이를 윤택하였다. 김수항이 또 말하기를,</p> <p>“금년 각도의 여러 가지 신역(身役)에 당년(當年)의 조목(條目)에서 바치는 것은 일체 재해를 입은 경중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양감(量減)하고, 계해년 5213) 이상의 여러 가지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은 다소를 막론하고 작년의 예(列)에 의하여 단지 한 필(匹)만 받을 것이며, 호남은 그 봉납(捧納)을 모두 정지하게 하고, 삼남(三南)의 월과 군기(月課軍器)5214) 도 아울러 정지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의 모두 옳게 여겼다. 지훈련(知訓鍊) 신여철(申汝哲)이 말하기를,</p> <p>“체부(體府)를 과하여 관리청(管理廳)을 삼고, 또 대흥 산성(大興山城)을 이에 귀속시켜 청성 부원군(淸城府院君) 김석주(金錫胄)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는데, 배상(拜相)되자, 문부(文簿) 사이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 신으로 하여금 주</p> | <p>允之。 壽恒又曰：“今年各道諸般身役，當年條所捧，一從被災輕重，分等量減，而癸亥以上諸般未收，無論多少，依上年例，只捧一匹，湖南則竝令停捧，三南月課軍器，亦併停止。” 上竝可之。 知訓練申汝哲曰：“體府罷爲管理廳，而又屬之以大興山城，使淸城府院君金錫胄主管矣，及其拜相，以文簿間難便，使臣主管。 今錫胄已卒，宜令他大臣句管。” 上使領相主管，壽恒辭以非其任，請依永宗鎮移屬御營廳例，屬之訓局，使大將主管，上乃以命汝哲· 壽恒陳吏曹判書李翊方被臺參情勢難安之狀，請姑許遞。” 上許之。 上曰：“憲臣論趙聖輔事，而泛稱身有重謗，未知指何事耶？” 壽恒曰：“臣亦不知其何事也。 凡臺閣論人，不可不明白，雖有隱隱，當使人曉然知之可也。 而只稱重謗，似聞或有問於發論臺諫，則答以不忍言云，若使臺諫，詳知實狀，則何不明言正議乎？” 上曰：“監司秩二品，不可輕易抨彈，語甚朦朧，且關後弊。” 九萬曰：“國家用人之道，不覈其罪之有無而徑先除職，亦爲不當。 宜發緘問于臺諫，以定其是</p> |
|--|--|---|

| | | |
|--|--|---|
| | <p>관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김석주가 이미 졸(卒)하였으니, 다른 대신으로 하여금 이를 구관(句管)하게 함이 마땅합니다.”</p> <p>하자, 임금이 영상(領相)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는데, 김수항이 임무가 아니라고 사양하고, 영종진(永宗鎭)을 어영청(御營廳)에 이속(移屬)시킨 예(例)에 의하여 훈국(訓局)에 붙여서 대장(大將)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곧 신여철을 임명하였다. 김수항이,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익(李翊)이 대간의 탄핵을 받아 정세가 불안한 정상을 진달하고 우선 체임(遞任)하도록 허락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헌신(憲臣)이 조성보(趙聖輔)의 일을 논하면서 ‘스스로 중한 비방(誹謗)이 있다.’고 범연히 일컬었으니, 무슨 일을 가리킨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p> <p>하자, 김수항이 말하기를,</p> <p>“신도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릇 대각(臺閣)에서 사람을 논하는데는 명백히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비록 은뜰(隱慝)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그런데 단지 중한 비방이라고만 일컬었는데, 어떤 이가 발론(發論)한 대간에게 물으니, 답하기를, ‘차마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합니다. 만약 대간이 상세히 실상을 알았다면, 어찌하여 분명히 말하고 정당하게 의논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감사(監司)는 질서(秩序)가 2품이므로, 가볍게 탄핵할 수 없는데, 말이 매우</p> | <p>非可矣。” 上曰：“予意固如此，今卿言亦然，發緘可也。” 承旨金鎭龜曰：“發緘問之，宜審前例而爲之。” 師錫曰：“昔年金益廉與李翊有推諉之事，其時入直官員，皆被緘問，臣亦與其中，此有前例矣。” 上曰：“依此例，自政院發牌問之。” 政院承教招問，則發論臺官朴世勳對曰：“聖輔當其父病發之日，不自侍側，及喉司請牌之後，晏然出仕。其父之病，沈綿累朔，奄奄將盡，則君命雖重，何忍汲汲赴召，若平常無事之人哉？昨日行公，翌日出去，則病勢已無可爲，人子情理，於此掃地。若是而責之以移孝爲忠，臣未見其有得也，不特此也，尹灣府宰海邑，事多鄙瑣，務爲肥己。前後謗言，久而愈激，外臺風憲，決不可畀。不曰重累而曰重謗者，蓋附於忠厚之意。” 上曰：“鄙瑣肥己云者，既是風聞，不必盡信。‘至於父病危劇汲汲出仕等語。’未知其時事狀，一如所云云乎？諸承旨察啓。” 政院又啓曰：“臣等取考《日記》，‘則聖輔壬戌二月十九日，除同副承旨，二十日本院請招，而以父病不赴。其日夕，本院又以迎</p> |
|--|--|---|

| | | |
|--|--|--|
| | <p>몽롱(朦朧)하니, 또 후폐(後弊)에도 관계된다.”</p> <p>하였다. 남구만이 말하기를,</p> <p>“국가에서 사람을 쓰는 도리가 그 죄의 있고 없음을 핵실(覈實)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벼슬을 제수하는 것 또한 마땅하지 못합니다. 마땅히 대간(臺諫)에게 함문(緘問)5215) 을 보내어 시비(是非)를 정하는 것이 가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내 뜻이 진실로 이와 같았는데, 이제 경의 말도 또한 그러하니, 함문(緘問)을 보내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 승지(承旨) 김진귀(金鎭龜)가 말하기를,</p> <p>“함문(緘問)을 보내어 마땅히 전례(前例)를 살펴서 해야 합니다.”</p> <p>하였는데, 조사석(趙師錫)이 말하기를,</p> <p>“지난해에 김익렴(金益廉)과 이익(李翊)이 추위(推諉)5216) 하는 일이 있어서 그때 입직(入直)한 관원이 모두 함문(緘問)받았는데, 신도 그 가운데 참여하였으니, 이 전례가 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 <p>勅舉動時，承旨不可不備員，請於明日待開門牌招，故二十一日承牌出仕，過舉動，卽爲出去，二十二日政，聖輔在喪之，代尹以道爲之。以此推之，則聖輔之遭父喪，在於二十一日昏夜之間，而本院下吏，亦以爲二十二日曉，來到漏院，始聞其遭喪之報云。’其事狀如此。”上曰：“今觀啓辭，聖輔有何可論之疵，而世襲橫加罔極之罪案？噫！告君何等重事，而何敢以糊塗之說，隱然陷人於不孝之罪？殊無謂也。”掌令安圭啓言：“庭試壯元申必清，賦性陰險，處心回譎，鼓倡邪論，勇參凶疏，醜辱儒賢，無所不至，付黃之罰未解，偃然赴舉，至占魁科。如許凶邪罔測之人，不可置諸榜首，請命拔去。”上曰：“若令拔去，則科體未備甲乙丙矣。”仍詢諸臣。壽恒曰：“付黃與削籍，亦有差等。付黃者則不得齒於士類，故臺啓請其拔去矣。”九萬曰：“被儒罰者，冒赴庭試，謁聖雖是謬規，而既無禁令，故從前被罰而登科者，亦有之。今於必清，獨爲拔去，其於事體，何如也？”吏曹參判李選曰：“洪有阜以侮辱儒賢，一生不得赴舉，</p> |
|--|--|--|

| | | |
|--|---|--|
| | <p>“이 전례에 의하여 승정원에서 패(牌)를 보내어 묻도록 하라.”</p> <p>하였다. 승정원에서 전교를 받들고 불러서 물으니, 발론(發論)한 대관(臺官) 박세준(朴世勳)이 대답하기를,</p> <p>“조성보(趙聖輔)가 그 아버의 병이 위급한 날을 당하여 스스로 곁에서 모시지 아니하고 승정원에서 패초를 청한 뒤에 편안하게 출사(出仕)하였습니다. 그 아버의 병이 여러 달 동안 끌어 장차 숨이 끊어지려고 하면, 임금의 명령이 아무리 중하다 하더라도 어찌 차마 급급하게 부름을 받고 나아가기를 평소 일이 없는 사람과 같이 한단 말입니까? 어제 행공(行公)하고 이튿날 나가자, 병세는 이미 어찌할 수가 없었으니, 인자(人子)의 정리가 이에 흔적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효성(孝誠)을 옮겨서 충성(忠誠)을 하도록 권하였으나, 신은 성과를 얻은 바가 있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의주 부윤(義州府尹)과 해읍(海邑)의 수령으로 있을 때에도 아버지한 일이 많았으며, 제 몸만 살찌게 하는 데 힘썼습니다. 전후의 비방하는 말이 오래 갈수록 더욱 격렬해졌으니, 외대(外臺)와 풍헌관(風憲官)은 결단코 줄 수가 없습니다. 중루(重累)라고 하지 않고 중방(重謗)이라고 한 것은 대개 충후(忠厚)한 뜻을 부여한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아버하고 제 몸만 살찌게 하였다.’고 한 것은 이미 풍문(風聞)이므로, 모두 믿을 필요가 없다. ‘아버의 병이 위급한데, 급급하게 출사(出仕)하였다.’는 등의 말은 그때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한결같이 운운(云云)하는 바와 같겠는가? 여러 승지(承旨)는 살펴서 아뢰도록 하라.”</p> | <p>宋遇龍亦於辛酉講經，當得第，而以被罰冒赴，亦爲拔去，此可爲前例矣。”</p> <p>兵曹判書趙師錫曰：“旣被儒罰，不得赴他科，則何可於庭試謁聖，誘以君父親臨而獨爲冒赴乎？但已成謬規，此後不可不定法矣。”</p> <p>選曰：“必淸非但醜辱儒賢，與權大夏輩，譏貶仁廟，褒揚廢主，決不可置諸榜首矣。”</p> <p>護軍徐文重曰：“罪在其身則罪之可矣，而至於拔榜，若非科場不正之事，則似爲重難矣。”</p> <p>校理申啓華曰：“文重言是也。”</p> <p>上遂不允。仍令：“自今凡儒生被罰者，勿論庭試謁聖，勿許赴學，雖或有冒赴入格者，使之拔去。”仍爲論罪事定式。</p> |
|--|---|--|

| | | |
|--|--|--|
| | <p>하였다. 승정원에서 또 아뢰기를,</p> <p>“신 등이 《일기(日記)》를 가져다 상고해 보니, 조정보(趙聖輔)가 임술년 5217) 2월 19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제수되어 본원(本院)에서 부르기를 청하였으나, 아버지의 병 때문에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본원에서 또 칙사(勅使)를 맞이하는 일로 거동하실 때 승지는 인원(人員)을 채우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튿날 성문을 열기를 기다려 패초(牌招)할 것을 청하였기 때문에, 21일에 패초를 받고 출사(出仕)하였다가 거동하시고 나서 곧 나갔으며, 22일 정사에 조정보가 상중(喪中)에 있으므로 대신 윤이도(尹以道)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조정보가 부상(父喪)을 당한 것은 21일 밤 사이에 있었는데, 본원의 하리(下吏)도 말하기를, ‘22일 새벽에 누원(漏院)에 비로소 상(喪)을 당하였다는 통보를 들었다.’고 하니, 그 일의 실상이 이와 같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제 계사(啓辭)를 보건대, 조정보에게 무슨 논할 만한 허물이 있다고 박세준(朴世勳)이 함부로 망극한 죄안(罪案)을 가하는 것인가? 아! 임금에게 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한 일인데, 어찌 감히 애매한 말로써 은연히 사람을 불효한 죄에 빠뜨린다는 것인가? 자못 어이가 없다.”</p> <p>하였다. 장령(掌令) 안규(安圭)가 아뢰기를,</p> <p>“정시(庭試)의 장원(壯元)인 신필청(申必淸)은 성품이 음험(陰險)하고 마음씀</p> | |
|--|--|--|

| | | |
|--|--|--|
| | <p>이 간사하여, 사론(邪論)을 창도(唱道)하고 흉소(凶疏)에 참여하여 유현(儒賢)을 욕보이는 등 이르지 아니하는 바가 없었으며, 부황(付黃)의 벌(罰)이 아직 풀리지도 아니하였는데, 태연하게 부거(赴學)하여 괴과(魁科)5218) 를 차지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같이 흥측하고 간사하며 망측한 사람을 방수(榜首)에 둘 수 없으니, 청컨대, 발거(拔去)하도록 명하소서.”</p> <p>하자, 임금의 말하기를,</p> <p>“만약 발거(拔去)하면 과체(科體)의 갑(甲)·을(乙)·병(丙)이 갖추어지지 아니한다.”</p> <p>하고, 인하여 여러 신하에게 물었다. 김수항이 말하기를,</p> <p>“부황(付黃)과 삭적(削籍)5219) 은 차등이 있습니다. 부황한 자는 사류(士類)에 낄 수 없기 때문에, 대계(臺啓)에서 발거(拔去)할 것을 청한 것입니다.”</p> <p>하고, 남구만은 말하기를,</p> <p>“유벌(儒罰)을 받은 자가 함부로 정시(庭試)나 알성과(謁聖科)에 나아가는 것은 비록 그릇된 규례라 하더라도 이미 금령(禁令)이 없기 때문에, 종전에 벌을 받고 등과(登科)한 자가 또한 있었는데, 이제 신필청만 유독 발거(拔去)한다면 그 사체(事體)에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이조 참판(吏曹參判) 이선(李選)은 말하기를,</p> | |
|--|--|--|

“홍유부(洪有阜)는 유현(儒賢)을 모욕한 까닭에 일생 동안 부거(赴舉)하지 못하였고, 송우룡(宋遇龍)도 신유년(5220) 강경(講經)에서 마땅히 급제(及第)를 얻을 것인데, 벌을 받고도 함부로 부시(赴試)한 까닭에 또한 받거하였으니, 이것이 전례(前例)가 될 만합니다.”

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조사석(趙師錫)은 말하기를,

“이미 유벌(儒罰)을 받아 다른 과거에 나아갈 수 없다면, 어찌하여 정시와 알성과에는 임금이 친림(親臨)하는 것이라고 칭탁하여 유독 함부로 부거(赴舉)한다는 것입니까? 다만 이미 그릇된 규례가 이루어졌으니, 이 뒤로는 법을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선(李選)은 말하기를,

“신필청은 유현(儒賢)을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대하(權大夏)의 무리와 더불어 인조(仁祖)를 비난하고 폐주(廢主)를 찬양하였으니 결단코 방수(榜首)에 들 수 없습니다.”

하고, 호군(護軍) 서문중(徐文重)은 말하기를,

“죄가 그 사람에게 있으면 죄주는 것은 가하나, 방(榜)을 받거한다는 데 이르러서는 만약 과장(科場)의 부정이 아니면 중난(重難)할 듯합니다.”

하고, 교리(校理) 신계화(申啓華)는 말하기를,

| | | |
|---|--|---|
| | <p>“서문중의 말이 옳습니다.”</p> <p>하니, 임금의 드디어 윤택하지 아니하였다. 인하여 명하기를,</p> <p>“이제부터 무릇 유생(儒生)으로서 별을 받은 자는 정시(庭試)와 알성시(謁聖試)를 물론하고 부거(赴學)를 허락하지 말 것이며, 비록 혹시 함부로 부거하여 입격(入格)한 자가 있을지라도 받거하도록 하라.”</p> <p>하고, 인하여 논죄하는 일을 법으로 정하였다.</p> | |
| <p>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11월 6일(정묘) 1번째기사</p> | <p>예조에서 자의전(慈懿殿) 주갑 탄일(周甲誕日)에 진하(陳賀)하는 일을 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에게 문의(問議)하니, 말하기를,</p> <p>“공손히 생각하건대, 성상께서는 효성이 무궁하셔서 자의전(慈懿殿) 주갑(周甲)의 해에 경하(慶賀)의 예식(禮式)을 설행(設行)하려고 하시니, 무릇 보고 듣는 자로서 누가 흠양(欽仰)하고 감복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다만 가만히 생각하건대, 말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구석을 향하여 슬피하면 온 집안에 가득한 사람이 즐거워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성상께서는 상하 신인(神人)의 주인으로서 바야흐로 슬피하시는 가운데 계시고, 겸하여 또 영모(永慕)하는 혼전(魂殿)이 지척(咫尺)의 땅에 가까이 있는데, 자의전의 자애(慈愛)하시는 덕으로 미루어 생각하시더라도 어찌 경하의 예식을 받으시는 데 편안하시겠습니까? 자의전의 마음이 이와 같으신데, 성상께서 지극하신 정(情)에 절박하여 그 미안해 하시는 바를 억지로 행하시는 것 또한 마음에 순종하고 뜻을 받드는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인하여 삼가 생각하건대, 풍정(豐呈)5246) 을 양궁(兩宮)에 겸하여 베푼다는 논의는 예전부터 이미 있었는데, 오늘날 옥의(縟儀)를 홀로 받으시면, 자의전께서는 반드시 추억하여 차마 할</p> | <p>○丁卯/禮曹以慈懿殿周甲誕日陳賀事, 問議于奉朝賀宋時烈, 則以爲: “恭惟聖上, 孝思無窮, 欲以慈懿殿周甲之歲, 設行慶禮, 凡在瞻聆, 孰不欽仰化服哉? 但竊惟念, 語曰: ‘一人向隅, 滿堂不樂.’ 今聖上, 以上下神人之主, 而方在哀疚之中, 兼且永慕魂殿, 密邇咫尺之地, 以慈懿殿慈愛之德推之, 豈安於享受慶禮哉? 慈懿殿之心如此, 而聖上迫於至情, 強行其所未安者, 則亦非順心養志之道矣。 仍伏念, 兼設豐呈於兩宮之議, 自昔年已有之矣, 今日獨亨縟儀, 其在慈懿殿, 必有所迫思不忍之心, 而其在臣僚, 慶喜之心少而哀疚之情多也。 愚意以爲, 聖上於是日, 誠不欲味然經過, 則別有供獻, 以致喜</p> |

| | | |
|---|--|--|
| | <p>수 없는 마음이 게실 것이며, 신료(臣僚)에 있어서도 경사스러워하는 마음은 적고 슬퍼하는 심정이 많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성상께서 이 날에 진실로 매연(昧然)하게 지나치지 않고자 하시면 별도로 공헌(供獻)하는 것이 있어서 기쁘게 경하하는 뜻을 드리고, 아직은 영모전(永慕殿)의 부모(耐廟)5247) 를 기다린 뒤에 좋은 날을 가려서 추행(追行)하면 회갑의 해를 넘겨도 오랏수록 더욱 기쁘고 경사스러울 것입니다.”</p> <p>하였는데, 임금의 그 의논에 따랐다.</p> | <p>慶之意，而姑俟永慕殿耐廟之後，涓吉追行，則周甲踰年，愈久而愈可喜慶也。”上從其議。</p> |
| <p>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11월 7일(무진) 2번째기사</p> | <p>임금이 하교하기를,</p> <p>“이제 대왕 대비전의 주갑 탄일(周甲誕日)을 마침 이때에 당하였으나, 경하(慶賀)하는 예는 폐지 못하고 다만 반사(頒赦)하도록 하였다. 옛말에 이르기를, ‘내 노인(老人)을 공경하되, 남의 노인에게도 미쳐야 한다’ 하였으니, 특별한 은전을 추급(推及)하여 상하(上下)가 함께 경사스러워하는 뜻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조신(朝臣)과 서민, 공사천(公私賤)을 물론하고 나이 80세 이상은 특별히 가자(加資)하고, 인조조(仁祖朝)에 일찍이 시종(侍從)을 지낸 인원에게는 아울러 식물(食物)을 주게 하라.”</p> <p>하였다. 뒤에 또 인조조 상신(相臣) 이행원(李行遠)·이시백(李時白)·이후원(李厚源)의 아내가 아직 살아 있는데, 대왕 대비전에 외명부(外命婦)가 되므로 아울러 식물을 주게 하였다. 그 나머지 고(故) 대신(大臣)·재신(宰臣)의 아내로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는 일체로 존휼(存恤)케 하였는데, 영부사(領府事) 김수흥(金壽興)의 청에 따른 것이었다.</p> | <p>○上，下教曰：“今者大王大妃殿周甲誕日，適當此時，莫伸慶賀之禮，只令頒赦矣。古語曰：‘老吾老以及人之老。’不可不別樣推恩，以示上下同慶之意。朝臣及庶民，勿論公私賤，年八十以上，特爲加資，仁祖朝曾經侍從人員，竝給食物。”後又以仁祖朝相臣李行遠、李時白、李厚源之妻尙存，於大王大妃殿，爲外命婦，竝給食物。其餘故大臣宰臣妻年七十以上者，一體存恤，從領府事金壽興之請也。</p> |
| <p>숙종 15권,</p> | <p>식물(食物)을 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에게 주도록 명하였는데, 영부사</p> | <p>命給食物於奉朝賀宋時烈，從領府事金</p> |

| | | |
|--|---|---|
| <p>10년(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11월 15일(병자) 2번째기사</p> | <p>(領府事) 김수흥(金壽興)의 청에 따른 것이었다.</p> | <p>壽興之請也。</p> |
| <p>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11월 23일(갑신) 1번째기사</p> | <p>비변사(備邊司)에서 관향 모미(管餉耗米) 1천 5백 석과 관서(關西)5258) 의 요군 면포(遼軍綿布) 7백 50필과 본사(本司)에서 구관(句管)하는 병영 면포 (兵營綿布) 7백 50필을 해서(海西)5259) 에 획급(劃給)하여 칙수(勅需)에 보 태게 하고, 진휼청(賑恤廳)의 미두(米豆) 5, 60석과 고양(高陽) 등 고을의 회 부 미두(會付米豆) 각 20석을 경기(京畿) 역(驛)의 인마(人馬)에게 내어 주어 칙사의 행차에 인마가 서울에 머물 때 기르는 것과 송도(松都)에 왕복할 때의 양식으로 삼도록 청하였는데, 모두 양도(兩道) 도신(道臣)의 청에 따른 것이었 다.</p> | <p>○甲申/備邊司請以管餉耗米一千五百 石，關西遼軍綿布七百五十匹，本司句 管兵營綿布七百五十匹，劃給海西，以 補勅需，賑恤廳米豆五六十石及高陽等 邑會付米豆各二十石，出給京圻驛人 馬，以爲勅行人馬，留養京中，往返松 都時糧資，竝從兩道道臣之請也。</p> |
| <p>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11월 29일(경인) 1번째기사</p> |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都提調) 김수흥(金壽興)이 말하기를, “인조조(仁祖朝)에 시종신(侍從臣)과 대신(大臣)·재신(宰臣)의 아내로 나이가 7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식물(食物)을 주었는데, 그 때 시종관으로 대신과 재 신(宰臣)의 반열(班列)에 이른 자의 아내로서 현재 살아 있는 자는 3, 4인에 불과하니, 나이가 비록 70에 차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체로 주는 것이 마땅합 니다. 고(故) 필선(弼善) 정뇌경(鄭雷卿)과 고 부윤(府尹) 황일호(黃一皓)의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나이도 80인데, 이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아내는 조가(朝家)에서 더욱 진휼(軫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뇌경·황일호 두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정상은 지금 생각하여도 오히려 가</p> | <p>○庚寅/藥房入診。 都提調金壽興曰： “仁祖朝侍從臣及大臣宰臣妻年七十以 上人，既給食物矣，其時侍從之官，至 大臣宰列者之妻見存者，不過三四人， 年雖未滿七十，宜一體題給。 故弼善 鄭雷卿、故府尹黃一皓妻，至今生存， 年且八十，此等冤死人之妻，朝家尤宜 軫恤矣。” 上曰：“鄭雷卿、黃一皓兩 人冤死之狀，至今思之，尙且矜惻。 特給食物，餘皆依所白施行。” 副提調 尹趾善曰：“故判書朴長遠有賜諡之命， 而子孫以遺命不進諡狀， 宜使撰進諡 狀。” 從之。</p> |

| | | |
|---|---|--|
| | <p>없고 슬프다. 특별히 식물을 주고, 나머지도 모두 아된 바에 의하여 시행하라.”</p> <p>하였다. 부제조(副提調) 윤지선(尹趾善)이 말하기를,</p> <p>“고(故) 판서(判書) 박장원(朴長遠)에게 시호(諡號)를 내리라는 명이 있었는데, 자손이 유명(遺命)이라 하여 시장(諡狀)을 올리지 아니하고 있으니, 마땅히 시장을 올리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 |
| <p>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12월 3일(갑오) 3번째기사</p> | <p>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이 상소하여, 나라의 연제(練祭)에 나아가려고 하였으나, 병으로 미처 입참(入參)하지 못하였으니, 장차 능하(陵下)에서 곡림(哭臨)하겠다는 뜻을 진달하고, 인하여 인조조(仁祖朝)의 시종(侍從)에게 식물(食物)을 주라고 한 명을 사양하였는데, 임금(上)이 답하기를,</p> <p>“어제 도신(道臣)의 장문(狀聞)으로 인하여 비로소 경이 먼 길에 올라온 것을 알고는 마음으로 다행스럽게 여기고 날을 꼬아 기다렸는데, 뜻밖에 병이 이와 같다 하니, 염려스러움을 어찌 비유하겠는가? 식물(食物)을 준 것은 진실로 우연한 일이 아니니, 안심하고 사양하지 말 것이며, 조용히 멀리 떠나려는 마음을 돌이켜 길에 올라 상하(上下)가 바라는 바에 부응(副應)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 <p>○奉朝賀宋時烈上疏：“陳其爲赴國練而病未及入參，將哭臨於陵下之意，仍辭仁祖朝侍從食物之命，”上答曰：“昨因道臣狀聞，始知卿跋涉上來，心以爲幸，指日佇待，意外疾患如此，慮念曷喻？食物題給，實非偶然，安心勿辭，亟回遐心，從容登途，以副上下之望。”</p> |
| <p>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p> | <p>비변사(備邊司)에서 말하기를,</p> <p>“겨우 평안 감사(平安監司)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재해(災害)를 입은 고을에</p> | <p>○乙未/備邊司言：“纔因平安監司狀啓，災邑收米，許令量減矣，江邊六邑，生理艱苦，今年被災尤甚，收米六斗，</p> |

| | | |
|--|---|---|
| <p>12월 4일(을미) 1번째기사</p> | <p>서 거두는 쌀을 헤아려 감하도록 허락하였으나, 강변 여섯 고을은 생활이 간고(艱苦)한데다가 금년에 더욱 심하게 재해를 입었으니, 거두는 쌀 6두(斗)를 특별히 전감하여 조정에서 변민(邊民)을 우대해 구휼하는 덕의(德意)를 보이소서.”</p> <p>하니, 임금의 이를 옳게 여겼다.</p> | <p>特爲全減， 以示朝家優恤邊民之德意。” 上可之。</p> |
| <p>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12월 9일(경자) 1번째기사</p> | <p>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이 사양하고 이르지 아니하고, 식물(食物)을 굳이 사양하니, 임금이 다시 사관(史官)을 보내어 매우 지극하게 위유(慰諭)하였다.</p> | <p>○庚子/奉朝賀宋時烈辭不至， 固辭食物， 上復遣史官， 慰諭甚至。</p> |
| <p>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12월 11일(임인) 4번째기사</p> | <p>임금이 하교하기를,</p> <p>“정명 공주(貞明公主)는 나이가 많고 존속(尊屬)이기 때문에 특별히 식물(食物)과 의자(衣資)를 제급(題給)하게 하였는데, 이제 자의전(慈懿殿)의 주갑 경사를 당하여 무릇 자손의 서열에 있는 자는 일체로 추은(推恩)하지 아니할 수 없다. 숙안(淑安)·숙명(淑明)·숙휘(淑徽)·명안(明安) 네 공주와 경순 군주(慶順郡主)·승선군(崇善君) 이징(李澂)·낙선군(樂善君) 이수(李瀾) 또한 정명 공주의 예에 의해 식물(食物)과 의자(衣資)를 모두 제급하고,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금평위(錦平尉) 박필성(朴弼成), 금창위(錦昌尉) 박태정(朴泰定)과 졸(卒)한 경안군(慶安君)의 부인(夫人)에게도 등급을 나누어 제급(題給)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 <p>○上下教曰：“貞明公主年高屬尊， 故食物衣資， 特令題給， 而今當慈懿殿周甲之慶， 凡在子孫之列者， 不可不一體推恩淑安、淑明、淑徽、明安四公主， 慶順郡主、崇善君澂、樂善君瀾， 亦依貞明公主例， 食物衣資並爲題給， 東平尉鄭載崙， 錦平尉朴弼成， 錦昌副尉朴泰定， 卒慶安君夫人處， 亦爲分等題給。</p> |
| <p>숙종 15권,</p> | <p>비변사(備邊司)에서 말하기를,</p> | <p>○備邊司言：“在前藏冰時， 例捧價米</p> |

| | | |
|--|--|--|
| <p>10년(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12월 12일(계묘) 2번째기사</p> | <p>“전에 얼음을 저장할 때에는 으레 가미(價米)를 방민(坊民)과 시민(市民)에게서 받는데, 혹시 흉년을 만나면 진휼청(賑恤廳)에서 요리하여 충당해 준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작년에 이르러서는 특교(特敎)에서 나온 것으로서 도성의 백성을 위로해 기쁘게 할 바탕으로 삼은 것입니다. 금년에도 흉년을 면치 못하고, 또 칙사(勅使)의 행차를 당하여 백성의 역(役)이 평상시의 갑절이나 되니, 진휼(軫恤)이 없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상년(上年)의 예(例)에 의하여 거두어들이지 말고 진휼청으로부터 충당해 주게 하소서.”</p> <p>하였는데, 임금의 이를 옳게 여겼다.</p> | <p>於坊民及市民，而或值凶歲，則自賑廳料理充給，非止一再。至於昨年，出自特教也，爲慰悅都民之地矣。今年亦未免凶歉，又當勅行，民役倍常，不可無軫恤。請依上年例，勿爲收捧，自賑廳充給。”上可之。</p> |
| <p>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12월 16일(정미) 3번째기사</p> | <p>감자(柑子)를 나누어 주고 반궁(泮宮)에서 선비를 시험하여 수석을 차지한 사람 박태순(朴泰淳)에게 급제(及第)를 내려 주었다.</p> | <p>○頒柑試士于泮宮，賜居首人朴泰淳及第。</p> |
| <p>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12월 20일(신해) 2번째기사</p> | <p>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이 인조조(仁祖朝) 시종(侍從)의 은례(恩例)의 식물(食物)을 굳이 사양하고, 곧 수원(水原)으로부터 남쪽으로 돌아가니, 임금이 공홍도(公洪道)에 명하여 식물을 실어 보내게 하고, 또 승지(承旨)를 보내어 달려가서 돈유(敦諭)케 하였다.</p> | <p>○奉朝賀宋時烈固辭仁祖朝侍從恩例食物，仍自水原南歸，上命公洪道，輸送食物，且遣承旨，馳往敦諭。</p> |
| <p>숙종 15권, 10년(1684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12월 25일(병진) 2번째기사</p> | <p>지평(持平) 이두악(李斗岳)이 상소하여 청하기를, “재물을 손상하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폐단을 없애고, 위를 덜어서 아래에 보태주는 정치를 강구하고, 명선(明善)·명혜(明惠) 두 공주(公主)의 사우(祠宇)를 수진궁(壽進宮)에 옮겨 세워서 제사를 받들게 하되, 저축한 재물과 곡식은 모두 유사(有司)에게 돌려서 내년 봄 진구(賑救)하는 데 쓰게 하고, 각 아문(衙</p> | <p>○持平李斗岳上疏： 請鑷除傷財病民之弊，講究損上益下之政，明善、明惠兩公主祠宇，移建於壽進宮，使奉祭祀，所儲財穀，盡歸有司，以爲明春賑救之用，各衙門屯田，令所</p> |

| | | |
|----------------|--|---|
| | <p>門)의 둔전(屯田)은 소재(所在)한 고을로 하여금 그 곡물(穀物)의 수량을 기록해서 진휼청(賑恤廳)에 일체 위임하여 주관하게 하되, 본 아문(衙門)의 1년 비용을 아울러 적당하게 주고, 그 나머지를 계산하여 진제(賑濟)에 대비하게 하고, 전관(銓官)에게 밝게 타일러서 수령(守令)을 신중히 택용(擇用)하게 하고, 감사(監司)를 칙려(飭勵)하여 거듭 고과(考課)를 밝히게 하고, 어사(御史)가 염문(廉問)하였을 때에 혹시 수령으로서 불법(不法)이 가장 많은 자가 있으면 감사도 아울러 죄주게 하고, 별도로 추천한 사람이 적당하지 못하면 이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또한 거주(舉主)5297)도 잘못 천거한 율(律)로 다스리게 하소서. 김중하(金重夏)는 죄가 이미 환히 드러났는데 양사(兩司)에서 번갈아 다투어도 모두 윤택하지 아니하시고, 최석항(崔錫恒) 등은 당직(廳直)5298) 함이 숭상할 만한데 도리어 최절(摧折)함을 더하시니 마땅히 사랑하고 미워하심이 치우친 데 엷매여 있음을 경계하셔야 할 것입니다.”</p> <p>하였는데, 답하기를,</p> <p>“가(可)하다. 의논하여 처리할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두 공주(公主)의 궁장(宮庄)을 그대로 두고 따로 사우(祠宇)를 세우는 것은 진실로 선조(先朝)의 유의(遺意)로서 하교가 정녕(丁寧)하여 아직까지 귀에 생생한데, 사헌부에서 혁파할 것을 청한 논의에 이 뜻을 자세히 갖추어 말하였는데, 미처 들어 알지 못한 것이 아닌가? ‘사랑하고 미워함이 치우친 데 엷매었다’는 등의 말은 마땅한지 알지 못하겠으나, 극진하게 말하고 숨김이 없으니 내가 가상하게 여긴다.”</p> <p>하였다.</p> | <p>在邑，錄其穀物之數，一委賑廳，使之主管，本衙門一年之用，竝令量宜以給，而計其贏餘，以備賑濟，明諭銓官，慎擇守令，飭勵監司，申明考課，御史廉問之時，或有守令不法之最多者，竝與監司而罪之，別薦不得其人，則不徒斥退，且繩舉主以誤薦之律。金重夏罪既彰著，而兩司交爭，竝不允，崔錫恒等廳直可尙，而反加摧折，宜以愛惡偏係爲戒。</p> <p>答曰：“可以議處事，令廟堂稟處。兩公主之仍存宮庄，別立祀宇，實先朝遺意，下教丁寧，尙今在耳，頃於憲府請罷之論，備悉此意，無乃未及聞知乎？‘愛惡偏係等說。’未知其得當，而盡言無隱，予用嘉尙。”</p> |
| <p>숙종 16권,</p> | <p>옥당관(玉堂官)을 소대(召對)하여 《강목(綱目)》을 강하였다. 임금이 말하기</p> | <p>○壬辰/召對玉堂官，講《綱目》。上</p> |

| | | |
|---|---|--|
| <p>11년(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2월 2일(임진) 1번째기사</p> | <p>를,</p> <p>“이제 선제(宣帝)의 ‘아들이 부모를 숨겨주고, 아내가 남편을 숨겨주고, 손자가 할아버지를 숨겨주는 것은 다스리지 말라.’ 한 조서(詔書)를 보았다. 이는 참으로, 전대(前代)의 아름다운 일이었다. 여러 법률의 글을 참고하여 보니 또한 ‘자손(子孫)과 처첩(妻妾)으로서 부모나 가장(家長)을 고발하는 자는 교형(絞刑)에 처한다.’는 글이 있다. 그런데 근자에 형옥(刑獄)의 문안(文案)들을 보면, 어떤 것은 자손으로 하여금 그의 부모(父母)를 증거하게 하였고, 처첩(妻妾)으로 그의 가장을 증거하게 하였으니, 이는 매우 말할 것이 못된다. 또 외방(外方)의 옥수(獄囚)들이 엄체(淹滯)되어서 여러 번 해를 겪는 자까지 있다. 이와 같은 의옥(疑獄)은 마땅히 곧 계문하여 재량(裁量)하여 처단(處斷)하게 해야 한다. 이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처단(處斷)하기 어려운데 천취(遷就)하게 하느냐? 이 뒤에는 속히 처결(處決)하게 하라. 이 두가지의 일을 특별히 유지(諭旨)를 만들어서 팔로(八路)에 신칙하라.”</p> <p>하였다.</p> | <p>曰：“今觀宣帝勿治子匿父母，妻匿夫，孫匿大父之詔。此誠前代美意。考諸律文，亦有子孫妻妾告父母家長者處絞之文。”而近見刑獄文案，或使子孫，證其父母妻妾，證其家長，殊甚無謂。且外方獄囚淹滯，至有累經歲年者。若是疑獄，當即啓聞裁處。如其不然，何至遷就難斷？今後須速處決。此兩款，別爲諭旨，申飭八路。”</p> |
| <p>숙종 16권, 11년(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5월 11일(경오) 3번째기사</p> | <p>평양성(平壤城) 안에서 실화(失火)하여 불타 없어진 인가(人家)가 거의 1천 호(戶)에 가까웠다. 감사(監司)가 이를 장계(狀啓)하여 보고하니, 비국(備局)에서 관향미(管餉米) 5백 석(石)을 나누어 주고 1년의 신역(身役)을 건감(蠲減)하여 주기를 청하였으므로 이를 윤허하였다.</p> | <p>○平壤城中失火，燒燼人家，殆近千戶。監司狀聞，備局請分給管餉米五百石，蠲減一年身役，允之。</p> |
| <p>숙종 16권, 11년(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7월 11일(기사) 2번째기사</p> | <p>호조 판서(戶曹判書) 박신규(朴信圭)가 제물(祭物)을 진설할 때에 조두(俎豆) 넣는 갑(匣)을 떨어뜨렸는데 주워서 다시 올리고서는 승정원(承政院)에 나가 대죄(待罪)하니, 임금(上)이 대죄하지 말라고 명하였다.</p> | <p>○戶曹判書朴信圭薦俎之時，墜落俎匣，拾而復進，詣政院待罪，上命勿待罪。</p> |
| <p>숙종 16권, 11년(1685 을축 / 청</p> | <p>사간원(司諫院)에서 박신규(朴信圭)가 제물(祭物)을 담은 갑(匣)을 떨어뜨린 것은 불경(不敬)하다는 이유로 그의 파직(罷職)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p> | <p>○諫院以朴信圭墜落牲匣不敬，請罷不允。</p> |

| | | |
|---|---|--|
| <p>강희(康熙) 24년 7월 12일(경오) 4번째기사</p> | | |
| <p>숙종 16권, 11년(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7월 12일(경오) 7번째기사</p> | <p>부호군(副護軍) 박세채(朴世采)가 상소(上疏)하기를, “지난번에 신이 입조(入朝)하였다가 낭패(狼狽)하여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횡파(橫波)와 격랑(激浪)이 점점 더해져서, 조정에서 선인(善人)과 악인(惡人)을 등용하고 처벌하는 것과, 조정의 의논이 네모진 구멍에 둥근자루가 맞지 않듯 하는 것의 시말(始末)을 상고해 보면 대개는 신에게 관계가 됩니다. 이제 만일 망령되게 논열(論列)하는 것이 관계 없는 사람같이 되면 신의 엄의(廉義)가 상실(喪失)되는 것은 진실로 말할 것이 못됩니다만 또한 장차 성조(聖朝)께서 특별히 유시하신 거조(舉措)에 누(累)를 끼치게 될 것이니, 신이 어찌 대양(對揚)5368 하는 상례(常禮)를 어겨서 스스로 사유(赦宥)되지 못할 주벌(誅罰)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가만히 엎드려 듣건대 전하께서 재이(災異)를 만나매 경척(警惕)하시어 모든 죄책이 자신에게 있는 것같이 상심하여 구언(求言)하고 감膳(減膳)하며 소식(疏釋)하고 정성껏 빈다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홀로 있을 때도 과연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어서 상제(上帝)에게 답할 수 있는지요? 전(傳)에 이르기를, ‘지극한 정성이면 감동(感動)되지 않는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진실로 임금의 마음에 능히 그 정성을 이루면 계구(戒懼) 근독(謹獨)하여 몸을 바르게 하고 허물을 살피며 덕을 닦아 백성을 보전하는 술책이 모두 이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금석(金石)같이 단단한 것도 뚫을 수 있을 것이요 돈어(豚魚) 같이 미련한 동물도 교화할 수 있을 것인데, 하물며 상천(上天)이 군주를 인애(仁愛)하는데 어찌 감통(感通)하고 소격(昭格)하는 방도(方道)가 없겠습니까? 다만 전하께서 마음을 맑게 하여 반성하소서.”</p> | <p>○副護軍朴世采上疏曰： 頃臣入朝，狼狽而歸。中間橫波激浪，轉益層加，朝廷之臧否陟罰，朝議之柄鑿矛盾，考其源委，多麗於臣。今若妄肆論列，有若不干之人，則臣之廉義頓喪，固不足道，亦將貽累於聖朝特諭之舉，此臣寧違對揚之常禮，自納於罔赦之誅者也？抑竊伏聞殿下，遇災警惕，若桐在躬，求言減膳，疏釋虔禱，而第未知幽獨之際，果能眞實無妄，可以對越上帝乎？傳曰：‘至誠未有不動者。’苟聖心克致其誠，則戒懼謹獨，正身省過，修德保民之術，俱將不外於此。然則金石可開，豚魚可化，況上天仁愛人君，豈無感通昭格之道？惟殿下澄省焉。 答曰：“誠誨切至，敢不留心察納焉？”</p> |

| | | |
|---|---|---|
| | <p>하니, 답하기를,</p> <p>“정성스러운 가르침이 간절하고 지극하였으니 감히 유심(留心)하여 찰납(察納)하지 않겠는가?”</p> <p>하였다.</p> | |
| <p>숙종 16권, 11년(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7월 16일(갑술) 3번째기사</p> | <p>특명으로 박신규(朴信圭)를 잡아다 추고(推考)하게 하였다. 그것은 대간(臺諫)에서 아뢰던 것 가운데 ‘땅에 떨어졌던 제물(祭物)을 담은 갑(匣)을 주워서 다시 천진(薦進)하였다’는 말을 추가하였기에 임금의 듣고 놀라서 이 명이 있었던 것이다,</p> | <p>○特命朴信圭拿推。 臺啓中 ‘迨有收拾落地之牲匣。 更爲薦進之語。’ 上聞之驚駭， 有是命。</p> |
| <p>숙종 16권, 11년(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8월 16일(갑진) 5번째기사</p> | <p>예조(禮曹)에서 계청(啓請)하기를,</p> <p>“전라도(全羅道)와 경상도(慶尙道)에서 삭일(朔日)마다 진상(進上)하던 것과 단오(端午)의 납육(臘肉), 통영(統營)에서 특별히 진상하던 물종(物種)은 지난 가을에 양감(量減)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호남(湖南)은 명년(明年) 가을을 기한으로 하여 그대로 양감하여 주고, 영남(嶺南)은 10월 초하루날부터 시작하여 예전대로 회복시켜 봉진(封進)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답하기를,</p> <p>“아뢰던 대로 하라. 납육과 통영에서 특별히 진상하던 것 이외에는 명년 가을을 기한으로 하여 아직은 그대로 양감한다.”</p> <p>하였다.</p> | <p>○禮曹啓請以爲： “全羅、慶尙兩道， 逐朔進上及端午臘肉， 統營別進上物種， 前秋所量減者。 湖南則限明秋仍爲量減， 嶺南則自十月朔爲始復舊封進。 上答曰： “爲啓， 臘肉及統營別進上外， 限明秋， 今姑量減。”</p> |
| <p>숙종 16권,</p> | <p>정언(正言) 홍수점(洪受漸)이 전에 아뢰던 것을 거듭 말하고 이어서 논하기를,</p> | <p>○正言洪受漸申前啓， 仍論： “北兵使</p> |

| | | |
|---|--|--|
| <p>11년(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9월 10일(정묘) 3번째기사</p> | <p>“북병사(北兵使) 소두산(蘇斗山)은 행신(行身)이 근신(謹慎)하지 못하여 공의(公議)에 버림을 당하고 있으며, 향리(鄉里)에 있을 적에 무단(武斷)5433) 을 하였고 관리(官吏)가 되어서는 탐오(貪汚)하였으니 체직(遞職)을 청합니다.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수언(李秀彦)은 술을 경계하지 못하여서 일을 폐지할 때가 많이 있었으니, 파직(罷職)을 청합니다.”</p> <p>하니, 답하기를,</p> <p>“김중하(金重夏)의 일에 대하여 형률(刑律)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은 뒤 폐단과 크게 관계가 된다. 그런데도 한갓 미체(迷滯)하다는 견해(見解)만을 믿어 거의 완결(完結)될 기약(期約)이 없으니 옛부터 4년 동안이나 서로 버티는 대계(臺啓)가 어찌 있겠느냐? 실로 괴이(怪異)히 여길 만한 것이다. 사람을 의논하는 도리는 단점(短點)을 버리고 장점(長點)을 취하는 것이 너그럽고 큰 체통에 해롭지 않다. 그러니 설령 소두산에게 논할 만한 하자(瑕疵)가 있더라도 매양 탄핵만 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 하물며 대간(臺諫)들의 말도 반드시 다 옳은 것은 아니니, 내가 실로 개탄(慨嘆)하는 것이 다 이수언(李秀彦)에 대하여는 먼저 중중 추고(從重推考)하라.”</p> <p>하였다. 소두산은 재간(才幹)과 국량(局量)이 있었는데도 일찍이 전에 천거한 것이 다 김수항(金壽恒)과 민정중(閔鼎重)의 손에서 나왔었고, 또 그가 시론(時論)에 그다지 부회(附會)하지 않았던 까닭으로 뒤따라 반박하여 공격하게 된 것이다. 주계(朱槩)가 올린 상소는, 시의(時議)가 이수언(李秀彦)의 지시(指示)와 교사(教唆)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였으므로, 음주(飲酒)로 인한 과실을 핑계하여 탄핵하니, 여론(輿論)이 불복(不服)하였다.</p> | <p>蘇斗山行身不謹，見棄公議，居鄉武斷，爲吏貪汚，請遞。咸鏡監司李秀彦，不戒麴糶，多有廢事之時，請罷。” 答曰：“金重夏事，按律之請，大關後弊。而徒信迷滯之見，汔無了當之期，從古以來，安有四年相持之臺啓乎？實涉可怪也。論人之道，捨短取長，不害爲寬大之體。設令斗山，有可論之疵，不宜每加彈劾。況臺論未必盡是乎？予實慨嘆。李秀彦姑先從重推考。” 斗山有幹局，而曾前尉薦，皆出金壽恒、閔鼎重之手，且不甚附會時論，故隨加駁擊。朱槩之疏，時議頗疑秀彦之指教，假托酒失而劾之，物情不服。</p> |
|---|--|--|

| | | |
|--|--|---|
| <p>숙종 16권, 11년(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10월 14일(신축) 1번째기사</p> | <p>대신(大臣) 김수항(金壽恒)·김수흥(金壽興), 도승지(都承旨) 이사명(李師命)을 인견(引見)하고서 범죄인(犯罪人) 조사하는 일을 묻고 의논하였다. 김수항 등이 삼수 군수(三水郡守) 이관국(李觀國)을 붙잡아 오기를 청하였는데 그것은 범월인(犯越人)5455)의 지방관이었기 때문이다. 또 경기(京畿) 백성들의 부역이 무거워서 감당하기 어려운 폐해를 아뢰니, 임금이 직로(直路)에 있는 세개의 역참(驛站)과 풍덕(豐德) 등 고을의 수미(收米)를 감(減)할 것을 의논하게 하였다.</p> | <p>○辛丑/引見大臣。 金壽恒、金壽興、都承旨李師命， 問議犯罪人查得事。 壽恒等請拿來三水郡守李觀國，以犯越人地方官也。 又陳畿民役重難堪之弊，上令議減直路三站及豐德等邑收米。</p> |
| <p>숙종 16권, 11년(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10월 17일(갑진) 2번째기사</p> | <p>선혜청(宣惠廳)에서 ‘신유년5456)에 감(減)한 각전(各殿)에 올리던 5도(道)의 삭선(朔膳)과 경신년5457)에 감(減)한 대전(大殿)과 중전(中殿)에 올리던 경기(京畿)의 월령 물종(月令物種)을 그전대로 회복할 것’으로 계품(啓稟)하니, 임금이 이들을 모두 명년 가을까지를 기한으로 우선 감(減)해 주되 다만 산사슴[生鹿]의 진상(進上)만은 회복하게 하였다.</p> | <p>○宣惠廳， ‘以辛酉所減各殿五道朔膳及庚申所減大殿中殿京畿月令物種復舊事。’ 啓稟，上竝令限明秋姑減，而只復生鹿進上。</p> |
| <p>숙종 16권, 11년(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11월 3일(기미) 2번째기사</p> | <p>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조사석(趙師錫)이 지난해 가을에 영소전(永昭殿)의 오향 대제(五享大祭) 및 삭망(朔望)·속절(俗節)의 제사에 반(半)으로 줄였던 제물(祭物)을 그전대로 회복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특명으로 아직은 그대로 반으로 줄이라 하였다. 조사석이 또 첩가미(帖價米)5466)를 진구(賑救)에 쓰지 말기를 청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정재송(鄭載嵩)이 힘써 방색(防塞)하였기에 임금이 드디어 발락(發落)5467) 하지 않았다. 주자(朱子)가 이른바 ‘조정에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비용을 아끼는 마음보다 못하다’고 한 것이 어찌 참말이 아니겠는가?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민서(李敏叙)가 말하기를, “전일에 ‘전랑(銓郎)이 통색(通塞)5468)을 멋대로 한다’는 전교가 있었습니다. 당하관(堂下官)의 청망(淸望)을 통색하는 것은 이것이 낭관(郎官)의 직책(職責)입니다. 그러니 그 직임(職任)에 두고서도 통색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p> | <p>○引見大臣備局諸臣。 禮曹判書趙師錫請復上年秋永昭殿五享大祭及朔望俗節減半祭物。 上特令姑爲減半。 師錫又請勿捧帖價米之用於賑救者。 右議政鄭載嵩力爲防塞，上遂無發落。 朱子所謂朝廷愛民之心，不如惜費之心者， 豈不信哉？ 吏曹判書李敏叙曰：“前日有銓郎專擅通塞之教。 堂下淸望通塞，自是郎官之職。 置之其任而不許通塞，無是理矣。 郎官自是本曹僚屬。 堂上自爲選擬，堂下淸望，使郎官依前通塞，而堂郎相議可否，不爲專責郎官爲好。 如是則郎官不失職而</p> |

| | | |
|--|--|--|
| | <p>이러한 이치가 없습니다. 낭관(郎官)은 본조(本曹)의 요속(僚屬)들입니다. 당상관(堂上官)은 스스로 선발하여 의망(擬望)하지만 당하관(堂下官)의 청망(淸望)만은 낭관들로 하여금 전례에 의하여 통색하게 하고 당상관과 낭관이 서로 가부(可否)를 의논하게 하여 낭관에게 진적으로 책임지우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낭관은 직책(職責)을 잃지 아니하면서 폐습(弊習)은 저절로 변하여질 것입니다.”</p> <p>하니, 정재승이 아뢰기를,</p> <p>“이는 폐단이 없을 듯하니, 시행함이 좋겠습니다.”</p> <p>하므로, 임금이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기를 명하였다. 그때에 노비(奴婢)를 내사(內司)에 결급(決給)하는 명을 진고(進告)하는 이가 있었다. 정언(正言) 안세징(安世徵)이 전일의 계청(啓請)을 거듭 아뢰고 다시 생각한 것으로써 주달(奏達)하기를,</p> <p>“밖의 의논들은 다 이르기를, ‘일이 내사(內司)에 관계되는 것이면 임금께서도 반드시 머뭇거린다’고 말합니다만, 지난날 방진해(方振海)의 일만은 통쾌히 율종(允從)하셨기에 신이 매양 성덕(聖德)을 칭송(稱頌)하고 있는데, 어찌 유독 이 일만은 이와 같이 율허함을 아끼십니까? 국가에서 얻는 것은 사소하고 잃은 것은 너무나 큼니다. 통쾌히 따라 주시기를 청합니다.”</p> <p>하였다. 정재승이 아뢰기를,</p> <p>“대간(臺諫)의 말을 외부 의논들이 모두 옳게 여기고 있으니 마땅히 율종(允</p> | <p>弊習可變。”鄭載嵩曰：“此似無弊可行。”上命依此施行。時有陳告奴婢決給內司之命。正言安世徵申前啓，復以所懷達曰：“外議皆謂事關內司，則自上必持難云，而頃日方振海事，快賜允從，臣每頌聖德，何獨於此事，如是靳許乎？自國家所得些少，而所失甚大。請賜快從。”載嵩曰：“臺諫之言，外議皆以爲是，宜賜允從。”上遂依啓。世徵又請蠲減都下民人等所受賑恤廳還上費耗，上令該廳稟處。後覆啓勿施。</p> |
|--|--|--|

| | | |
|--|---|--|
| | <p>從)하셔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드디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안세징(安世徵)이 또 도하(都下)의 인민(人民)들이 받았던 진휼청(賑恤廳) 환상(還上)의 비모곡(費耗穀)을 견감하여 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뒤에 복계(覆啓)로 시행하지 말게 하였다.</p> | |
| <p>숙종 16권, 11년(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11월 4일(경신) 3번째기사</p> | <p>대사헌(大司憲) 이상(李翔)이 상소하여 사직(辭職)하며, 또 재해(災害)로 손실(損失)된 농사(農事)의 상황을 아뢰고 원결(元結) 중에서 견감(蠲減)해야 함을 청하니 임금이 답하기를,</p> <p>“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p> <p>하고, 이어서 불려서 위로하는 교지를 내리었다. 비국(備局)에서 재해(災害)를 아주 심하게 입은 곳에는 미곡(米穀)을 거두어 들이는 두수(斗數)를 양감(量減)하기를 청하니, 이를 윤택하였다.</p> | <p>○大司憲李翔上疏辭職，且陳農事災損之狀，請就元結中，有所蠲減。上答以令廟堂稟處。仍下招徠之旨。備局請於被災尤甚處，量減收米斗數，允之。</p> |
| <p>숙종 16권, 11년(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11월 10일(병인) 1번째기사</p> | <p>형조 판서(刑曹判書) 이사명(李師命)이 범월인(犯越人)을 사핵(查覈)하는 일로 청대(請對)하였다. 임금이 그 범인 중의 우두머리의 사람됨을 물으니, 이사명이 아뢰기를,</p> <p>“그의 사람됨은 매우 용맹스럽고 침착 강인하여 입밖에 나온 말은 다시 바꾸지 아니합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 <p>○丙寅/刑曹判書李師命以犯越人查覈事，請對。上問：“首犯者爲人，”師命曰：“其爲人甚梟鍵沈鷲，言出於口，不復變易矣。”上曰：“今番讖捕太廣，邊上騷擾，如經兵亂云，何以鎮定耶?”師命曰：“事畢後，當別爲開諭安集矣，且蓼禁不可不嚴。而此路既絕，小民生理亦艱，朝家不可不軫念，而預爲之所矣。”</p> |

| | | |
|--|--|--|
| | <p>“이번에 조사 체포하는 것이 너무 넓어서 변방이 소란스럽기가 마치 병란(兵亂)을 겪는 것과 같다고 하니, 어떻게 하여야 진정(鎮定)시키겠느냐?”</p> <p>하니, 이사명이 말하기를,</p> <p>“이 일이 끝난 뒤에는 마땅히 따로 개유(開諭)하여 안집(安集)시키겠습니다. 또 산삼(山蔘)의 채취(採取)를 금지함은 엄하게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길이 끊어지고나면 미천한 백성들의 살아갈 도리가 또한 어렵게 될 것이니 조가(朝家)에서 이를 진념(軫念)하시어 미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였다.</p> | |
| <p>숙종 16권, 11년(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11월 11일(정묘) 1번째기사</p> | <p>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p> <p>“충원 현감(忠原縣監) 홍득우(洪得禹)는 몸소 사창(社倉)에 이르러 곡물(穀物)을 가려서 바치게 하니 간사한 백성들이 작간(作奸)을 할 수 없게 되자, 바람을 이용하여 관원(官員)들의 기숙(寄宿)하는 방에 불을 질렀으니, 원근에서 이를 듣고 놀라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이를 만약 엄하게 조사하여 엄격히 징계(懲戒)하지 않는다면 장리(長吏)를 다투어 죽이는 변고(變故)가 장차 연달아 일어날 것입니다. 본도(本道)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그들에게 과죄(科罪)하기를 청합니다.”</p> <p>하니, 답하기를,</p> <p>“아뢴 대로 하라.”</p> | <p>○丁卯/司諫院啓: “忠原縣監洪得禹, 躬到社倉, 擇捧穀物, 姦民不得作奸, 因風縱火於官員所宿之房, 遠近聽聞, 莫不驚駭。若不嚴查痛懲, 則爭殺長吏之變, 將接跡而起。請令本道, 究覈科罪。” 答曰: “依啓。”</p> |

| | | |
|--|--|--|
| <p>숙종 16권, 11년(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11월 15일(신미) 1번째기사</p> | <p>하였다.</p> <p>임금이 선후(先后)의 대상일(大祥日)이 가까왔기 때문에 소찬(素饌)을 올리기를 명하였다. 약방 도제조(藥房都提調) 김수흥(金壽興) 등이 청대(請對)하여 아뢰기를,</p> <p>“주상의 체후(體候)가 미령(未寧)하니, 지금부터 소찬을 드시면 반드시 손상됨이 많을 것입니다.”</p> <p>하여 힘써 그 일수(日數)를 줄이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처음에는 이를 매우 어렵다고 여기다가 나중에야 허락하여 23일부터 소찬을 들기로 하였다. 김수흥이 말하기를,</p> <p>“후주(厚州) 및 폐사군(廢四郡)은 반드시 개창(開創)하여 범월(犯越)하는 폐단이 있게 해서는 안되고, 또 파수(把守)하는 계책이 이에 있지 아니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나의 뜻은 본래 혁과(革罷)하려고 했는데도 좌상(左相)이 어렵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소상히 알고서 처리하려 한다.”</p> <p>하였다.</p> | <p>○辛未/上以先后祥日之近，命進素饌。藥房都提調金壽興等請對，以爲：“上候方在未寧中，自今行素，必多傷損。”力請減其日數。上初甚持難，後乃許。自二十三日行素。壽興言：“厚州及廢四郡，不必開創，以致有犯越之弊，且把守之策不在於此。”上曰：“予意固欲革罷，而左相以爲難，故姑欲消詳而處之矣。”</p> |
| <p>숙종 16권, 11년(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11월 25일(신사)</p> | <p>칙사가 다시 삼공(三公)과 더불어 범월인(犯越人) 25명을 조사하여 인삼(人蔘)을 판매(販賣)한 곳과 판매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다. 또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수언(李秀彦)·남병사(南兵使) 윤시달(尹時達)·삼수 군수(三水郡守) 이관국(李觀國)을 불러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영외(楹外)에 나와 엎드리게</p> | <p>○辛巳/勅使復與三公，更查犯越人二十五名，問以人蔘賣處，所賣多少。又招入咸鏡監司李秀彦，南兵使尹時達，三水郡守李觀國，使進伏楹外，出</p> |

| | | |
|--|---|--|
| <p>1번째기사</p> | <p>하고 문목(問目)을 내 보이면서 이 일에 동모(同謀)하였는지 또는 고의로 놓아주었는지의 여부를 힐문하였고, 대통관(大通官)들로 하여금 한득완(韓得完) 등 6인을 형신(刑訊)하여 다시 동당(同黨)과 채취(採取)한 인삼(人蔘)이 얼마 인지를 물었다.</p> | <p>示問目，詰其同謀，故縱與否，令大通官等，刑訊韓得完等六人，更問同黨及所採人蔘多少。</p> |
| <p>속종 16권, 11년(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11월 27일(계미) 1번째기사</p> | <p>칙사(勅使)가 또 범월인(犯越人)을 붙잡아들여서 다시 동당(同黨)한 자들과 채취(採取)한 인삼(人蔘)이 많고 적은 것을 물어서 형장(刑杖)을 네 차례나 가한 뒤에 중지하였다. 또 함경 감사(咸鏡監司)와 병사(兵使)와 삼수 군수(三水郡守)를 불러서 추문하였다.</p> | <p>○癸未/勅使又爲捉入犯越人，更問同黨及所採人蔘多寡，加刑四度而止。又招問咸鏡監司、兵使、三水郡守。</p> |
| <p>속종 16권, 11년(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12월 13일(기해) 2번째기사</p> | <p>동부승지(同副承旨) 박태손(朴泰遜)이 소를 올려서 일을 말하였다. 그는 언로(言路)가 폐색(蔽塞)되는 폐단을 논(論)하기를,</p> <p>“가만히 10여 년 동안 지내온 일을 보건대, 대개 언론(言論)으로 견책(譴責)을 얻은 자는 있었습니다만, 간언(諫言)으로 장려(獎勵)를 받았다는 자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간혹 온비(溫批)와 우답(優答)을 입은 자가 있었습니다만, 이는 임금의 뜻에 맞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면 곧 시론(時論)에 부회(傳會)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어찌 ‘거슬리는 마음으로 도(道)에서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비도(非道)에서 구하는 뜻’이라 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당직(讜直)한 기풍(氣風)이 날로 쇠하여지고 순묵(循默)하는 습상(習尙)이 날로 커지게 됩니다.”</p> <p>하고, 또 말하기를,</p> <p>“홍수주(洪受疇)의 상소는 소설(小說)을 끌어다 썼으니 진실로 어리석고 망령된 것입니다마는 그의 본 마음은 처음부터 선현(先賢)을 무욕(誣辱)하는 데에</p> | <p>○同副承旨朴泰遜上疏言事。其論言路蔽塞之弊曰：“竊觀十餘年來，蓋有以言獲譴者矣，未聞以諫受獎者。間有蒙溫批優答者，非希合聖旨，卽傳會時論者耳。此豈逆心求諸道，遜心求諸非道之意耶？是以讜直之風日衰，循默之習日長。”又曰：“洪受疇之疏，引用小說，誠爲愚妄，而乃其本心，初不在於誣賢。至蒙投界之典，實非平恕之道。雖深斥受疇之人，私相論議，皆言其過重，而未聞有一陳黜績之下者，亦可知，今日朝廷之以言爲諱也。”且曰：“今番採參之民，本非潛自犯越，多出於邊將之所與知，宜嚴命有司，究問正法。南兵使專管參禁，</p> |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먼 변방에 던져 버리는 형벌을 받는 데에 이르렀으니 이는 실로 너그럽게 용서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홍수주를 비록 대단히 배척하던 사람들도 사사로이 서로 논의(論議)할 적에는 모두 과중함을 말하는데, 주광(註續)5484) 아래에 한 번이라도 진달(陳達)하는 자가 있음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또한 오늘날 조정에서 언론(言論)을 휘(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번에 인삼(人蔘)을 채취(採取)하였던 백성들은 본래 스스로 범월(犯越)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변장(邊將)들이 아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유사(有司)에게 엄하게 명하시어 정법(正法)으로 구문(究問)하여야 합니다. 남병사(南兵使)는 오로지 삼금(蔘禁)만을 관장(管掌)하고 있으니, 어찌 막연(漠然)하게 깨달아 살피지 못할 이치가 있었겠습니까? 마땅히 똑같이 나문하여 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監司)는 엄하게 신칙(申飭)하지 못하여 이러한 혼단(釁端)을 일어나게 했으니 저들이 벌을 가볍게 주었다는 이유로 전적으로 논책(論責)하는 거조(舉措)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고발(告發)된 죄인을 제외(除外)시키고 경한 자와 중한 자를 나누어 구분 처단하고 이어서 변경(邊境)의 관리(官吏)들을 신칙(申飭)하여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안집(安集)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나라 일을 근심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경계함을 아뢰었으니 내가 이를 가상(嘉尙)하게 여긴다. 각진(各鎭)의 변장(邊將)들은 이미 의금부(義禁府)로 하여

寧有漠然不覺察之理? 亦宜一體拿問定罪。 監司不能嚴飭, 啓此釁端, 不可以彼中薄罰, 而全無論責之舉。 除現告罪人外, 分輕重區處, 仍飭邊吏, 使之安集。” 答曰: “憂愛陳戒, 予用嘉尙。 各鎭邊將, 已令禁府拿囚, 自可究得實狀, 而處之。 監兵使論罪事及罪人分輕重區處事, 令該司稟處。”

| | | |
|--|--|---|
| | <p>금 잡아다가 가두게 하였으니 스스로 실상(實狀)을 살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감사와 병사의 죄를 논정(論定)하는 일과 죄인들을 경한 자와 중한 자로 나누어 구분 처리하는 일을 해사(該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p> <p>하였다.</p> | |
| <p>숙종 16권, 11년(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12월 18일(갑진) 2번째기사</p> | <p>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 호차(胡差)들이 죄인을 감죄(勘罪)하지 못한 일로 진품(進稟)하기를,</p> <p>“포(砲)를 쏘아 조전(助戰)한 자는 진실로 마땅히 죽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포(砲)는 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연(魚淵)5485) 10명도 마땅히 죽여야 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p> <p>“범월(犯越)한 자를 다 죽이는 것은 너무나 무겁다. 남쪽 변방으로 정배(定配)하라. 어연(魚淵)들을 또한 죽음을 용서하려고 하는데 대신들의 뜻은 어떠하냐?”</p> <p>하니, 김수항(金壽恒)과 우의정(右議政) 정재승(鄭載嵩)은 ‘죽음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였고, 좌의정(左議政) 남구만(南九萬)은 ‘죄가 가벼운 자 두세 사람은 죽음을 용서하는 것도 해로울 것이 없다’고 하였다. 임금(上)이 그들을 아직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가 진주사(陳奏使)의 돌아오기를 기다리라고 명하였다. 김수항이 또 전일(前日) 사간원(司諫院)의 계사(啓辭)를 들어 진품(進稟)하기를,</p> | <p>○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金壽恒, 以胡差未勘罪人事進稟曰: “放砲助戰者, 固當殺之。 雖不放砲而魚淵【領將之稱。】十名亦當殺矣。” 上曰: “犯越者盡殺過重。 定配于南邊。 魚淵亦欲貸死, 大臣之意如何?” 壽恒及右議政鄭載嵩, 以爲: ‘不可貸死,’ 左議政南九萬, 以爲: “貸其罪輕者數三人, 亦無所害。” 上命姑爲仍囚, 以待陳奏使之回。 壽恒又舉前日司諫院啓辭進稟曰: “禁斷參商, 爲循本之論, 而亦有聖礙處。 大概參商不但北路, 南方亦有之。 內局倭館所需, 專靠於此, 勢難一切嚴禁。” 上令諸臣各陳所見。 九萬與刑曹判書呂聖齊, 大司憲李翊相, 廣州留守尹趾善, 獻納李國芳, 校理徐文裕, 皆言 ‘嚴禁爲當,’ 載嵩及禮曹判書申晷 戶曹判書柳尙運, 禮曹參判徐文重以爲 ‘不可禁,’ 壽恒請 ‘嚴禁南北商參, 犯者以一罪論,’ 上</p> |

| | | |
|--|---|--|
| | <p>“삼상(蔘商)을 금단(禁斷)하는 것은 근본을 따르려는 의논이 되겠지만, 또한 방해되는 곳이 있습니다. 대개 삼상은 북쪽 길 뿐만 아니고, 남방(南方)에도 또한 있습니다. 내국(內局)과 왜관(倭館)의 수용(需用)이 오로지 이에 의지하고 있으니, 형세가 일체(一切)로 엄하게 금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각각 소견(所見)을 진달(陳達)하도록 하였다. 남구만이 형조 판서(刑曹判書) 여성제(呂聖齊)·대사헌(大司憲) 이익상(李翊相)·광주 유수(廣州留守) 윤지선(尹趾善)과 헌납(獻納) 이국방(李國芳)과 교리(校理) 서문유(徐文裕)와 더불어 모두 ‘엄하게 금단하는 것의 마땅하다’ 하였고, 정재승·예조 판서(禮曹判書) 신정(申暲)·호조 판서(戶曹判書) 유상운(柳尙運)·예조 참판(禮曹參判) 서문중(徐文重) 등은 ‘금단할 수 없다’ 하였다. 김수항(金壽恒)은 남북의 삼상들을 엄하게 금단하여서 이를 범하는 자는 일죄(一罪)로 논정(論定)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로써 법식(法式)을 정하게 하였다. 김수항이 또 박태손(朴泰遜)의 상소로 계품(啓稟)하기를,</p> <p>“함경도 감사(咸鏡道監司)와 병사(兵使)가 만일 더불어 꾀하였으면 그들의 죄는 진실로 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검칙(檢飭)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면 형률(刑律)을 더할 일은 없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겼다. 김수항(金壽恒)이 또,</p> <p>“삼수(三水)와 갑산(甲山) 등지가 수색(搜索)하여 붙잡는 소요(騷擾)를 가장 많이 당하였으므로 거의 텅비어 있는 지경이 되었으니, 청컨대 금년의 전조(田租) 및 크고 작은 신역(身役)들을 면제(免除)하여 조가(朝家)의 덕(德)을 베푸는 뜻을 보이소서.”</p> | <p>令以此定式。壽恒以朴泰遜疏啓稟曰：“咸鏡監司、兵使若與謀則罪固大矣。只是不能檢飭而已，則似無加律之事。”上然之。壽恒以“三水、甲山等地，最被搜捕之擾，殆至空虛之境，請免今年田稅及大小身役，以示朝家德意。”上允之。壽恒引宋時烈疏論‘洪受疇被罪之過重，’以爲：“是非之明，不係於被罪之輕重，配所之遠近，請加酌處。”上命就其道內移配稍近之地。尙運言：“海西管餉既罷之後，宜有句管之處。”壽恒曰：“欲屬戶曹，不無拘礙之端，亦不可使平安道句管，只令黃海道句管，仍令戶曹按察。”從之。壽恒陳“先正臣成守琛，道學淵源之正，請於賜諡之日，加贈領議政，以示朝家尊尙之意。”上命依徐敬德例，追贈議政。國芳申前啓，又以奉使嶺南時，所見災荒之慘，民事之急，請減捧尤甚被災邑之糶穀身役，上令廟堂稟處。又言：“金海比安公主房折受處，宮差藉勢，侵奪民田。請令本道，詳查啓聞，治宮差罪。”上曰：“臺官所聞，似出於好民誣訴矣。”不允。承旨李彥綱言：“臺官牌不進者，亦令</p> |
|--|---|--|

| | | |
|--|--|--|
| | <p>하니, 임금의 이를 윤택하였다. 김수항이 송시열(宋時烈)의 상소에서 홍수주(洪受疇)가 죄를 받은 것은 너무나 무겁다고 논(論)하였음을 인용(引用)하여 아뢰기를,</p> <p>“시비(是非)를 밝히는 것은 죄받는 것의 경중(輕重)이나 배소(配所)의 원근(遠近)에 관계되지 아니하니 참작(參酌)하여 처치(處置)하여 주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그 도(道)안에서 조금 가까운 곳으로 이배(移配)하기를 명하였다. 유상운(柳尙運)이 아뢰기를,</p> <p>“해서(海西)의 관향(管餉)을 이미 정파(停罷)한 뒤에라도 마땅히 구관(句管)하는 곳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p> <p>하고, 김수항이 말하기를,</p> <p>“이를 호조(戶曹)에 소속(所屬)시키려고 한다면 구애(拘碍)되는 단서(端緒)가 없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또한 평안도로 하여금 구관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황해도로 하여금 구관하게 하고, 그대로 호조로 하여금 안찰(按察)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 김수항이,</p> <p>“선정신(先正臣) 성수침(成守琛)은 도학(道學)의 연원(淵源)이 바르니, 그에게 시호(諡號)를 내리는 날에 영의정을 가증(加贈)하시어 조가(朝家)에서 존상(尊</p> | <p>帶推行公，而參謁不參者，見遞，似當一體變通。” 九萬曰：“違牌比不參，可謂事體尤重，而既令帶推行公，則一體變通無妨。” 上命今後參謁不參者，毋得引避。</p> |
|--|--|--|

| | | |
|--|--|--|
| | <p>尙)하는 뜻을 보이소서.”</p> <p>하니, 임금(李)이 서경덕(徐敬德)의 예(例)에 의거하여 영의정을 추증하기를 명하였다. 이국방(李國芳)이 전일의 계청(啓請)을 거듭 아뢰고 또한 그가 영남(嶺南)에 봉사(奉使)하였을 때에 재황(災荒)이 참혹(慘酷)하였고 민사(民事)가 급하였던 것을 보고 재해(災害)를 입은 것이 가장 심하였던 고을의 적곡(糶穀)과 신역(身役)을 감(減)하여 바치기를 청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또 아뢰기를,</p> <p>“김해(金海)는 비안 공주방(比安公主房)에서 절수(折受)한 곳인데 궁차(宮差)가 세력을 빙자하여 민전(民田)을 침탈(侵奪)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도(本道)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여 계문(啓聞)하게 하고 궁차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대관(臺官)들이 들은 것은 간사한 백성들의 무소(誣訴)에서 나온 것 같다.”</p> <p>하고는 윤희하지 않았다. 승지(承旨) 이언강(李彦綱)이 말하기를,</p> <p>“대관(臺官)들을 패초(牌招)하여도 나오지 않는 자는 또한 추고(推考)받고서도 행공(行公)하고 있는데 참알(參謁)에 불참(不參)한 자는 체직 당하고 있으니 이를 일체(一體)로 변통(變通)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p> <p>하고, 남구만은 아뢰기를,</p> | |
|--|--|--|

| | | |
|--|---|---|
| | <p>“패초(牌招)를 어기는 것은 불참하는 것에 비하면 일의 체통이 더욱 중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추고를 받고서도 행공하고 있으니, 이를 일체(一體)로 변통시키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의 지극부터는 참알에 불참한 자들에게 인피(引避)를 못하게 하기를 명하였습니다.</p> | |
| <p>숙종 16권, 11년(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12월 20일(병오) 1번째기사</p> | <p>비변사(備邊司)에서 방민(坊民)과 시민(市民)들은 칙사(勅使)의 행차(行次)를 당하여 사역(使役)한 것이 많았다고 하여 장빙(藏氷)하는 대가(代價)의 미곡(米穀)을 바치지 말게 하며 진휼청(賑恤廳)으로 하여금 마필(馬匹)의 대가(代價)를 충당해 주기를 청하니, 이를 윤허하였다.</p> | <p>○丙午/備邊司以坊民市民，當勅行多所使役，請勿捧藏氷價米，令賑恤廳充給馬價，允之。</p> |
| <p>숙종 17권, 12년 (1686 병인 / 청 강희 (康熙) 25년) 1월 6일 (신유) 1번째기사</p> | <p>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김수흥(金壽興)이 임금에게 아뢰기를,</p> <p>“봉조하(奉朝賀)5502) 송시열(宋時烈)이 올해로 나이가 80세에 참니다. 조신(朝臣)은 더러 자급(資給)을 올릴 수도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다시 더할 만한 자급이 없으므로, 별도의 은전(恩典)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옷감이나 먹을 것을 특별히 내려줌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봉조하의 나이가 80에 찼다는 것을 지금 비로소 들어 알았는데, 참으로 희귀한 일이다. 옷감과 먹을 것을 별도로 넉넉히 내려주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 이에 호조(戶曹)에서 미두(米豆) 각각 15석(石), 돼지 2구(口), 민어</p> | <p>○辛酉/領府事金壽興白上曰。 “奉朝賀宋時烈，今年恰滿八十，朝臣則或有加資之規，而此則更無可加之資，不可無別樣恩典。衣資食物，宜特題給。” 上曰：“奉朝賀之滿八秩。今始聞知，誠爲稀貴。衣資食物，別爲優給可也。” 戶曹啓請輸送米豆各十五石，豬二口，民魚二十尾，石魚三十束，綿紬十匹，綿布二十四。</p> |

| | | |
|--|---|---|
| | (民魚) 20미(尾), 석오(石魚) 30속(束), 면주(綿紬) 10필, 면포(綿布) 20필을 보내줄 것을 계청(啓請)하여 보내 주었다. | |
| 숙종 17권, 12년 (1686 병인 / 청 강희 (康熙) 25년) 4월 9일 (계사) 1번째기사 | <p>예조에서 아뢰기를,</p> <p>“숙의(淑儀)가 입궐한 뒤 물선(物膳)의 봉진(封進)은 의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신해년(5589)에 내관(內官)의 수본(手本) 5590에 의하여 장귀인방(張貴人房)에 삭선(朔膳) 5591을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금번에도 각도에 분부하여 전례를 상고하여 봉진토록 하였으나, 외부에서 모두 숙의가 궐내에 있을 때에는 일찍이 물선을 봉진한 사례가 없다고 말하므로, 다시 각도에 이문(移文)하였으나 역시 의거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4월의 삭선이 이제 들어 올 것인데, 청컨대, 우선 환송케 하고 옛 사례를 자세히 물은 뒤에 처리토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장귀인【곧 인조(仁祖)의 후궁(後宮)이다.】이 궐내에 있을 때에 물선을 봉진한 전례가 분명히 있다하여 그대로 봉진케 하였다.</p> | ○癸巳/禮曹言：“淑儀入闕後，物膳封進，無可考據。辛亥因內官手本，張貴人房朔膳仍進之故，今亦分付各道，考例封進矣，外議皆言，淑儀在闕時，曾無物膳封進之例，移文各道，亦無可據。四月朔膳，今將入來，請姑還送，詳問舊例後處置。”上，以張貴人【即仁祖後宮】在闕時進膳，明有前例，仍令封入。 |
| 숙종 17권, 12년 (1686 병인 / 청 강희 (康熙) 25년) 4월 26 일(경술) 1번째기사 | <p>부교리 박태만(朴泰萬)이 상소하여 아뢰기를,</p> <p>“숙의(淑儀)에게 삭선(朔膳)을 봉진하는 일은 의혹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고사(古事)에 후궁의 삭선은 선조(先朝) 때 빈어(嬪御)에게만 있었는데, 예조에서 널리 상고하지 않고 지레 계청(啓請)하였으니, 너무도 잘못되었습니다. 예전 제도가 한 번 변하고 그 길이 점점 넓어지면 존비(尊卑)의 등위(等威)까지도 그 정도(正道)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단석(李端錫)의 범한 것이 비록 다른 뜻이 없다 하더라도 존비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등위의 존엄성을 어지럽힌 것은 보통 잘못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더구나 봉표(封標)에도 타당하지 않은 바가 있었다고 하니, 대신(臺臣)이 파직하자는 계청은 곧 대수롭지 않은</p> | ○庚戌/副校理朴泰萬上疏言：“淑儀朔膳封進事，不勝訝惑。古事，後宮朔膳，獨於先朝嬪御有之，儀曹不爲博考，徑先啓請，已極謬戾。舊制一變，此逕漸廣，馴至尊卑等威，不得其正。李端錫所犯，雖曰無情，紊尊卑之序，亂等威之嚴者，非尋常錯認之比。況聞封標，有非所宜，臺臣罷職之請，直歇後語耳。”又論臺啓請罪使 |

| | | |
|--|--|---|
| | <p>말이었을 뿐입니다.”</p> <p>하고, 또 대간이 아뢰어 사신에게 죄줄 것을 청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논하고, 의리를 살펴 처리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p> <p>“장귀인(張貴人)이 궐내에 있을 적에 삭선을 진배(進排)5607) 한 사실이 분명히 증거가 있고, 이단석의 일은 비록 놀랄 만한 일이라 하더라도 실상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며, 사신이 극력 논쟁하지 못한 것도 사세가 부득이한 데서 연유한 것이니 파직과 삭직을 청한 것이 꼭 합당한 것인지 알 수 없다.”</p> <p>하였다.</p> | <p>臣之爲得，請察義理而裁處。</p> <p>答曰：“張貴人在闕時朔膳進排，明有可考，李端錫事，雖可駭異，實出無情，使臣之不得力爭，亦由於事勢之不獲已也，請罷請削，未知其恰當也。”</p> |
| <p>숙종 17권, 12년 (1686 병인 / 청 강희 (康熙) 25년) 윤4월 15일(무진) 1번째기사</p> | <p>전교하기를,</p> <p>“조정의 일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반드시 피차의 사리와 경중을 헤아려서 되도록 적중함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숙의방에 삭선(朔膳)을 진배(進排)하는 일도 자세히 헤아려 처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도에 다시 물어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양의 물종(物鍾) 및 숙설(熟設)5628) 할 때 탄(炭)·소목(燒木)·의전(衣纏)·말장(末醬)·양치장(養齒匠) 등의 일은 각전(各殿)의 상궁(尙宮)·시녀(侍女) 등에게도 진배하는 규정이 있는즉 어찌 도리어 6품 시녀의 밑에 두어서 그에게만 진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일의 체모로 헤아려 볼 때 반드시 그러할 리가 없다. 호조에서 이와 같은 곡절을 살펴보지도 않고 일례로 지레 경감하였으니 너무도 경솔하다. 각양의 공상(供上)을 응당 진배할 것을 한번 명백히 분부하지 않을 수 없다. 혼동해 경감하지 말고 전대로 거행하도록 각 관사에 분부하라.”</p> <p>하였다.</p> | <p>○戊辰/傳曰：“朝家事，毋論巨細，必須較量彼此事理輕重，務歸得中可也。今此淑儀房朔膳進排之事，不可不詳量處之，故使之更問於諸道矣。至如各樣物種及熟設炭、燒木、衣纏、末醬、養齒匠等事，各殿尙宮侍女等處，亦有進排之規，則豈可反居於六品侍女之下，而獨不進排乎？揆以事體，必無是理。戶曹未察如許曲折，一例徑減，殊涉率爾。不可不一番明白分付，各樣供上一應進排之事。勿爲混減，仍前舉行事，分付各司。”</p> |
| <p>숙종 17권, 12년</p> | <p>전교하기를,</p> | <p>○丁未/傳曰：“淑徽公主將往省墳山</p> |

| | | |
|---|---|--|
| <p>(1686 병인 / 청 강희 (康熙) 25년) 7월 25 일(정미) 1번째기사</p> | <p>“숙휘 공주(淑徽公主)가 장차 분묘에 가서 성분(省墳)을 하겠다고 하니 말미와 말[馬]·요전상(澆奠床)5710) 등을 주되 숙명 공주(淑明公主)의 예에 의하여 거행토록 하라.”</p> <p>하였다.</p> <p>전교하기를,</p> | <p>云，給由馬澆奠床等事，依淑明公主例舉行。”</p> |
| <p>숙종 17권, 12년 (1686 병인 / 청 강희 (康熙) 25년) 10월 6 일(정사) 1번째기사</p> | <p>“석회(石灰) 1백 섬을 선왕조(先王朝)에 졸(卒)한 봉보 부인(奉保夫人)5777) 산소의 역사에 보내 주라.”</p> <p>하였다. 해조(該曹)에 분부한 다음에 또다시 네모난 조그마한 상석(床石)을 만들어 주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승지(承旨)들의 복주(覆奏)로 인하여 명령을 거두어 중지시켰다.</p> | <p>○丁巳/傳曰：“石灰一百石，送于卒先朝奉保夫人山所事，分付該曹後，又下造給小方床之命。” 因承旨覆奏而還寢之。</p> |
| <p>숙종 17권, 12년 (1686 병인 / 청 강희 (康熙) 25년) 10월 23 일(갑술) 1번째기사</p> | <p>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단하(李端夏)가 아뢰기를,</p> <p>“지난번에 판부사(判府事) 이상진(李尙眞)은 박신규(朴信圭)와 신이 서로 겨룬 일을 가지고 아뢰는 적이 있었으나 신은 이미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조정에서 또한 어찌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앞서 박태보(朴泰輔)를 등용하는 일로 여러번 아뢰었으나 성상께서 아직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상소에도 신을 논박(論駁)한 것이 한 건이 있는데, 4년이나 버려두고 있으니, 공론이 모두 이를 애석하게 여깁니다. 마땅히 발탁해서 등용해야 할 것입니다.”</p> <p>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p> | <p>○甲戌/引見大臣備局諸臣， 右議政李端夏曰：“頃者判府事李尙眞， 以朴信圭與臣相較事， 有所陳達， 而臣既無嫌隙之心， 朝廷亦何可廢置也？ 前以朴泰輔收用事屢陳， 而自上尙未採納， 其疏亦有論臣一款， 而廢棄四年， 公議皆惜， 可當擢用矣。” 上曰：“豈可終棄乎？” 行司直李翻曰：“今歲凶荒， 湖南特甚， 士民之疏， 臺臣之啓， 其切急可想， 朝家非不欲矜念， 而國儲已罄， 更無措手處， 頃見道臣狀啓， 則欲減道內</p> |

| | | |
|--|---|--|
| | <p>“어찌 끝까지 버려둘 수야 있겠는가?”</p> <p>하였다. 행 사직(行司直) 이숙(李翹)이 아뢰기를,</p> <p>“금년의 흉년은 호남(湖南) 지역이 특별히 심한데, 사민(士民)들의 상소와 대신(臺臣)들의 계청(啓請)을 볼 때 그 절박함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불쌍히 여겨 대책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나라의 저축은 이미 바닥이 나서 다시 손쓸 곳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도신(道臣)의 장계(狀啓)를 보니, ‘도내의 군포(軍布)를 감축하려고 비축된 2백 동(同)을 경중(京中)에 수납(收納)하여 경야문(京衙門)에서 모자라는 숫자를 대여(貸與)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그 많은 포(布) 2백 동을 경중에 운반해 둔다는 것은 사실상 불편한 일입니다. 신이 편리한 방법에 따라 변통해 보자는 뜻으로 이사명(李師命)과 상의하였더니, ‘병조(兵曹)의 군포는 경솔하게 쓸 수가 없으나 진휼청(賑恤廳)의 은포(銀布)같은 것은 그래도 융통해서 충당해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각 아문에 보내 준 뒤에 본영(本營)에서 조치한 2백 동은 본도에 그대로 두고 재해를 입은 고을에 나누어 주어 진구(賑救)하는 밑천을 삼게 하여 조정에서 별도로 진휼(軫恤)하는 뜻을 보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p> <p>“일이 매우 타당하다. 그렇게 하라.”</p> <p>하였다. 집의(執義) 이이명(李頤命)이 이상진(李尙眞)을 논핵(論劾)하려고 하였으나, 정언(正言) 김홍복(金洪福)이 모나게 이견(異見)을 내어 인피(引避)하니</p> | <p>軍布，備置二百同，將爲收納京中，貸其未準之數於京衙門矣。許多布同之運置京中，實涉不便，臣以從長變通之意，相議于李師命，以爲兵曹軍布，雖不可輕用，如賑廳銀布則猶可推移充給云，以此移送各衙門後，本營措置二百同，則仍留本道，分給災邑，以爲賑救之資，以示朝家別樣軫恤之意何如?” 上曰：“事甚便當，依此爲之。” 執義李頤命以欲論李尙眞，而正言金洪福崖異引避，洪福亦避，玉堂處置出頤命遞洪福。</p> |
|--|---|--|

| | | |
|--|--|--|
| | <p>이이명도 인피하였는데, 옥당(玉堂)에서 처치하여 이이명은 출사(出仕)하고 김홍복은 체임(遞任)시키도록 하였다.</p> | |
| <p>숙종 17권, 12년 (1686 병인 / 청 강희 (康熙) 25년) 12월 3 일(계축) 2번째기사</p> | <p>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p> <p>“지난번에 제주 목사(濟州牧使)의 장계(狀啓)를 보니 재앙의 참혹함이 이전에 없던 바입니다. 섬 안은 육지와 다르니 만약 특별히 마음을 써서 구제하지 않는다면 세 고을의 백성들을 구제할 길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일찍이 신해년 5814) 에도 전후에 곡물을 운반한 것이 3만여 석(石)에 이르렀습니다. 그 때 양남도(兩南道)5815) 는 비록 심한 흉년이었지만, 연해(沿海)의 곡물들은 오히려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 보낸 것입니다. 지금은 양남도의 저축이 텅 비어서 본토(本土)의 백성을 진휼(賑恤)하는 데도 넉넉하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우선 연해의 조금 넉넉한 곳에서 7천여 석을 분정(分定)해서 이송하여 나누어 주게 한다면 이것으로 맨처음 백성을 구제할 밀천을 삼을 수는 있겠으나, 또한 장차 부족하게 될 것이니, 섬 안 백성들의 일이 진실로 매우 급박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제주도는 육지와 다른데 금년 농사가 이렇게 참혹하게 흉년이 들었으니, 7천여 석의 곡식으로 어떻게 허다한 백성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진휼하는 곡물을 계속 보내도록 진휼청(賑恤廳)의 당상관(堂上官)과 상의하여 요량해서 이송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p> <p>하니, 진휼청 당상관 이사명(李師命)이 아뢰기를,</p> | <p>○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金壽恒曰：“頃見濟州牧使狀啓， 被災之慘， 前所罕有， 島中異於陸地， 若不別爲顧濟， 則三邑之民， 決無救活之路， 曾在辛亥年， 前後移轉穀物， 至於三萬餘石， 其時兩南， 雖甚凶荒， 沿海穀物， 猶有餘裕， 故推移入送矣。 卽今兩南儲蓄蕩然， 賑救本土之民， 亦患不贍， 姑就沿海稍優處， 分定七千餘石， 使之移給， 以此爲初頭救活之資， 而亦將不足， 島中民事， 誠切急矣。” 上曰：“濟州異於陸地， 而年事之慘如此， 以七千餘石之穀， 何以救活許多民人耶? 繼賑之穀， 與賑廳堂上相議， 料理移轉可也。” 賑廳堂上李師命曰：“兩西田稅， 無上納之規， 而乙巳丁巳年， 兩次作布以用矣。 卽今兩西收租案， 未及上來， 未知田稅米石數之幾何， 而不但取來移送于濟州， 京中亦多經費之道， 酌定移轉之數， 以爲施行之地何如?” 上曰：“依爲之。” 壽恒曰：“頃者臣以俞世基等役民築堰事， 更查爲請， 而江都築堰， 曾有禁令與否， 未及考出， 只</p> |

| | | |
|--|--|---|
| | <p>“양서도(兩西道)5816) 의 전세(田稅)는 상납(上納)의 규정이 없는데, 을사년 5817) 과 정사년(5818) 에는 두 차례 베[布]를 받아서 썼습니다. 지금 양서도의 조세를 거두어들인 문서가 올라오지 않아 전세미의 수량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을 가져와서 제주도로만 이송할 것이 아니라 서울도 경비가 많이 드는 도이니 이송시킬 수량을 적절히 정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그대로 시행하라.”</p> <p>하였다.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p> <p>“지난날 신이 유세기(兪世基) 등이 백성을 동원하여 방죽을 쌓은 일을 다시 조사하도록 청하였으나, 강도(江都)에 방죽을 쌓는 일에 대해 일찍이 금령(禁令)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다만 보장(保障)의 중지(重地)에다가 사대부(士大夫)가 사사로이 방죽을 쌓아 장전(莊田)을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을 아뢰었습니다. 비로소 비국(備局)의 등록(謄錄)을 보니, 을미년(5819) 에 고(故) 상신(相臣) 홍중보(洪重普)가 유수(留守)가 되어 처음으로 방죽을 쌓았는데, 조정의 분부는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만 나누어 주되 백성을 모아들여 농사지어 먹을 수 있는 장소로 삼게 하라는 것이었을 뿐 본토(本土) 사대부들에게는 나누어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을사년(5820) 에 이르러 또 방죽을 쌓는 일로 인하여 별도로 사목(事目)을 만들었는데, 그 한 조항에, ‘방죽을 쌓아서 만든 농토를 농민과 군사를 모아 나누어 줄 때는 선왕</p> | <p>以保障重地，士夫不當私築設庄之意，仰達矣。始見備局謄錄，則乙未年故相臣洪重普爲留守，始爲築堰，而朝家分付，只令分給他處人，以爲募入耕食之地，本土人士大夫則勿許折給矣。至乙巳年，又因築堰事，別爲事目，其一款，以爲堰田折受募民束軍之時，依先朝定奪，原居人則切勿折給，雖他處人，如有密送奴子應募折受之後，以其土圖爲己物而現露，則勿論朝官士子，從重科罪，斷不饒貸云云。前後事目，極其嚴明，送奴應募者，猶且禁斷，士夫何敢私自築堰，以爲設庄之計？本府官員，亦何敢擅許立案乎？今番世基輩築堰之事，既已現發科罪，此後使之申明禁斷，而乙巳事日後，士夫家築堰設庄者，亦多有之云，令本府一一查出啓聞，屬公似當矣。”上曰：“依爲之。”上曰：“近來百隸，怠慢成習，恪謹供職，雖難盡責，而循例輪直，亦且曠闕，事之寒心，莫此爲甚，至於宗簿寺，則奉安《濬源錄》，事體之重，異於他司，而以冬三朔省記觀之，十月以假官代直七日，十一月則多至十三日，昨夜摘奸，又爲代直，其偃然自便之習，已</p> |
|--|--|---|

| | | |
|--|--|--|
| | <p>조(先王朝)의 결정에 따라 원래부터 거주하던 사람에게는 절대로 나누어 주지 말 것이며, 비록 타처의 사람이라도 만약 노비를 몰래 보내어 응모하게 하여 나누어 받은 후에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나면, 조정의 관원이나 사인(士人)을 물론하고 무거운 죄를 부과하여 결코 용서해서는 안된다.’라고 하여 전후의 사목이 지극히 엄명합니다. 노비를 보내어 응모하는 것도 오히려 또한 금지했는데, 사대부가 어찌 감히 사사로이 스스로 방축을 쌓아 장전(莊田)을 만들 계획을 하겠으며, 본부(本府)의 관원이 또한 어찌 감히 마음대로 입안(立案)을 허락하겠습니까? 지금 유세기(兪世基) 무리들이 방축을 쌓는 일은 이미 드러나 죄를 받았으니, 이후로는 거듭 밝혀 금단(禁斷)하게 하고, 또 을사 사목(乙巳事目) 후에도 사대부의 집안에서 방축을 쌓아 장전을 만드는 일이 또한 많이 있다고 하니, 본부(本府)로 하여금 낱낱이 조사해 내어 계문(啓聞)해서 속공(屬公)께 하는 것이 마땅한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그대로 시행하라.”</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근래 백관들의 태만함이 습관이 되어 버렸다. 성실하게 직임을 다해도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운데, 전례에 따라 돌아가며 하는 숙직(宿直)도 빼어 먹으니, 이보다 더 한심한 일이 없다. 종부시(宗簿寺)의 경우는 선원록(璿源錄)을 봉안하는 곳이니 사체(事體)의 중함이 다른 관아와 다른데도 겨울 석달 동안의 생기(省記)5821) 를 살펴보건대 10월에는 가관(假官)으로서 숙직을 대신한 것이 7일이요, 11월은 더 많아 13일이나 되었다. 어젯밤에 적간(摘奸)하매</p> | <p>極駭然，如使國家，少有紀綱，何敢連以假官，修整御覽省記中，而略無忌憚乎？主簿尹譚直長宋曇，竝拿問定罪。”上曰：“正則無入直之事乎？”壽恒曰：“吏曹正郎入直，則各司皆以長官爲省記，常時則正無入直之規，而僚員俱有故，則豈可自以爲長官而不爲入直乎？”上曰：“然則本寺正李著晚，亦爲一體拿問可也。”</p> |
|--|--|--|

| | | |
|--------------------|--|---------------------------|
| | <p>또 속직을 대신하였으니, 그들이 거만한 태도로 제 편안만을 하려는 습관이 이미 극도에 다달아 놀랄 만하다. 만약 국가에 조금이라도 기강이 있다면 어찌 감히 연달아 가관으로 하고 어람 생기(御覽省記) 중의 것을 수정하면서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가?”</p> <p>하고, 주부(主簿) 윤담(尹譚)과 직장(直長) 송담(宋曇)을 모두 잡아들여 문초하여 정죄(定罪)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정(正)은 입직하는 일이 없는가?”</p> <p>하니,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p> <p>“이조 정랑(吏曹正郎)이 입직하면 각 관아는 모두 장관(長官)이 생기(省記)를 하도록 합니다. 평상시에는 정(正)이 입직하는 규정이 없으나, 관리들이 모두 연고가 있을 때에는 어찌 스스로 장관이라고 해서 입직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그렇다면 본시(本寺)5822) 의 정(正) 이시만(李蕃晚) 역시 함께 잡아다 죄를 묻는 것이 옳을 것이다.”</p> <p>하였다.</p> | |
| <p>숙종 17권, 12년</p> | <p>헌납(獻納) 민진주(閔鎭周)와 정언(正言) 심권(沈權)이 계청(啓請)하기를,</p> | <p>○丁巳/獻納閔鎭周, 正言沈權啓請:</p> |

| | | |
|---|--|--|
| <p>(1686 병인 / 청 강희 (康熙) 25년) 12월 7 일(정사) 1번째기사</p> | <p>“내수사(內需司)와 각 군문(軍門) 및 충익부(忠翊府)·사복시(司僕寺) 등의 은전(銀錢)과 미포(米布)를 모두 함께 진휼청(賑恤廳)으로 이송하여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데 보태 쓰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답하기를,</p> <p>“내수사에 만약 옮겨서 진휼(賑恤)에 보탬 자본이 있다면 어찌 그대들의 논청을 기다렸겠는가? 다른 나머지의 일은 곡절을 자세히 알 수 없으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품처(稟處)케 하라.”</p> <p>하였다.</p> | <p>“內需司各軍門及忠翊府司僕寺等銀錢米布，一竝移送於賑恤廳，以裨荒政救民之資。” 答曰：“內需司若有推移補賑之資，則奚待爾等之論乎？他餘事，未詳曲折，令該司稟處。”</p> |
| <p>숙종 17권, 12년 (1686 병인 / 청 강희 (康熙) 25년) 12월 27 일(정축) 1번째기사</p> | <p>상평청(常平廳)에서 아뢰기를,</p> <p>“갑자년(5842) 의 사창 사목(社倉事目)내에 금년부터 시작하여 공곡(公穀)을 백성에게 대여하는 것은 6년 동안 매년 일분(一分)이 소모된다는 것을 모두 계산하여 관창(官倉)에다 환납하는 것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각 고을에서 조곡(糶穀)을 준봉(準捧)하는 때는 없었으나, 사창에는 다 바치지 않음이 없으며, 어지럽던 이의(異議)들로 점차 사라졌으니, 민간에서도 또한 그 편리함을 알게 되어 다투어 설치하려고 하나, 다만 매년 소모되는 것을 함께 계산하여 환납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백성에게 편리한 정사를 온 나라에 두루 시행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그 호리(毫釐)를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관청에 치우치게 이익이 되게 하고자 하나, 민심이 기꺼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곡식을 환납할 때에 다만 본곡(本穀)에다 1년의 소모분만 바치게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의 관조(官糶)가 감축되는</p> | <p>○丁丑/常平廳啓曰：“甲子社倉事目內，自今年爲始，公穀貸下者，六年竝計每年一分耗，還納于官倉事磨鍊矣。今過三年，各邑糶穀，未有準捧之時，而社穀則無不畢納，異議之紛紜者漸息，民間亦知其爲便，爭欲設置，而但以每年耗竝計還納爲難，國家便民之政，如欲遍行於一國，則不當計其毫釐，必欲偏利於公，而使民情不樂趨令，還納時，只捧本色一年之耗，猶勝於卽今官糶之減捧縮耗，而藏富於民，公私兩便，則此爲大益，更以此意，行會於諸道，以爲勸設之地何如？” 傳曰：</p> |

| | | |
|--|--|--|
| | <p>것보다는 나올 것입니다. 부를 백성에게 저축하고, 공사(公私)가 다 편리하게 되면 이것이 큰 이익이 되는 것이니, 다시 이러한 뜻을 제도(諸道)에 잘 알려서 사창을 세우도록 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윤허한다.”</p> <p>하였다.</p> | <p>“允。”</p> |
| <p>숙종 18권, 13년 (1687 정묘 / 청 강희 (康熙) 26년) 5월 16 일(계사) 2번째기사</p> | <p>명안 공주(明安公主)6015) 가 졸(卒)하였다. 임금이 소복(素服)차림으로 거애(擧哀)하고, 이어 전교(傳敎)하기를,</p> <p>“몹시 슬프고 애통스러워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장(禮葬) 이외에 비단과 쌀·무명 등의 물건을 숙정 공주(淑靜公主)6016) 의 예대로 시급하게 마련하여 실어보내고, 각가지 상사(喪事)에 쓰는 것을 각사(各司)의 관원들이 몸소 친히 진배(進排)하여 미진하게 되는 폐단이 없게 하라.”</p> <p>하였다. 평안 감사(平安監司) 오두인(吳斗寅)이 바야흐로 임소(任所)에 있었는데, 본직(本職)을 즉시 개차(改差)하여 교귀(交龜)를 기다리지 말고 밤낮없이 올라오도록 하고, 그의 대신을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즉각 의논해서 추천하여 3일 이내에 사조(辭朝)하게 하도록 하니, 윤이제(尹以濟)를 그의 대신으로 삼았다.</p> | <p>○明安公主卒。上素服擧哀，仍敎曰：“驚慘痛悼，無以爲心，禮葬外匹段米布等物，依淑靜公主例，斯速磨鍊輸送，凡百喪需，各司官員，躬親進排，俾無未盡之弊。”平安監司吳斗寅，方在任所，本職卽爲改差，勿待交龜，罔夜上來。其代令備局，卽爲議薦，三日內辭朝，以尹以濟代之。</p> |
| <p>숙종 18권, 13년 (1687 정묘 / 청 강희 (康熙) 26년) 5월 17</p> | <p>임금이 명안 공주의 상사로 10일 동안 소선(素膳)6017) 을 행하도록 명하자, 약방(藥房)에서 여러 차례 진청(陳請)하니, 비로소 4일 동안 소선(素膳)하라고 명했다. 또 상차(喪次)에 친히 행행(幸行)할 절차를 《오례의(五禮儀)》대로</p> | <p>○甲午/上於明安公主之喪，命十日行素，藥房屢次陳請，始命以四日進素膳，又命親幸喪次，如《五禮儀》。</p> |

| | | |
|---|---|---|
| 일(갑오) 1번째기사 | 하도록 명하니, 약방·승정원과 대신 이하가 이런 더위를 당해 빈소(殯所)도 차리기 전에 곡림(哭臨)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하여 상세히 진청했으나 마침내 윤희(允許)하지 않았다. 드디어 명안 공주의 집에 행행하여 상차에 나아가 슬픔이 다하도록 곡을 하고, 또 녹봉(祿俸)을 3년 동안 실어보내도록 명하였다. | 藥房、政院大臣以下，以當此炎熱，不宜哭臨於未殯之前，縷縷陳請。終不許，遂幸明安公主第，臨喪哭盡哀，又命祿俸限三年輸送。 |
| 숙종 18권, 13년 (1687 정묘 / 청 강희 (康熙) 26년) 10월 29 일(갑술) 1번째기사 | 밤에 옥당(玉堂)의 관원을 소대(召對)하고, 이어 선운(宣醞)하며 각기 취하게 마시도록 명하므로, 밤중이 되어서야 파했다. | ○甲戌/夜召對玉堂官，仍宣御醞，命各盡醉，夜分乃罷。 |
| 숙종 19권, 14년 (1688 무진 / 청 강희 (康熙) 27년) 2월 26 일(기사) 3번째기사 | 미시(未時)에 임금이 광주 산성(廣州山城)에 이르러 대신(大臣)을 불러 보고 하교(下敎)하기를, “여기가 바로 인묘(仁廟)께서 연(輦)을 머물렀던 곳인데, 지금 50 년을 지난 뒤에 내가 다시 여기에 와서 보니 슬픈 감회를 견딜 수 없다.” 하고, 인하여 양주(楊州)·광주(廣州)·여주(驪州)·이천(利川) 4읍(邑)의 봄 세금을 견감(蠲減)해 주고, 또 여주의 백성으로 나이 70이상인 자에게는 음식물을 주게 하였으니, 대개 능침(陵寢)이 있기 때문이었다. | ○未時，上次廣州山城，召見大臣下敎曰：“此是仁廟駐輦之所，而今過五十年後，予復來此，不勝感愴。”仍令蠲減楊、廣、驪、利四邑春稅，又給食物于驪州民人年七十以上者，蓋以陵寢所在故也。 |
| 숙종 19권, 14년 (1688 무진 / 청 강희 (康熙) 27년) 2월 29 일(임신) 4번째기사 | 임금이 병자년(丙子年)에 산성이 포위되었을 때에 관례(官隸)로서 생존(生存)한 자에게 음식물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 ○上命賜食物于丙子圍城時官隸生存者。 |
| 숙종 19권, 14년 (1688 무진 / 청 강희 (康熙) 27년) 3월 16 일(기축) 1번째기사 | 회양 부사(淮陽府使) 조종저(趙宗著)가 기근(饑饉)과 여역(癘疫)으로 죽는 읍민(邑民)이 많다고 상소(上疏)하여 봄 세금을 감(減)하여 줄 것을 청하고, 진휼창(賑恤倉)의 쌀로 구제(救濟)할 것을 원하니, 임금이 허가하고, 인하여 철원(鐵原)·김화(金化)·안협(安峽) 등의 읍(邑)에 쌀 각각 3백 석(石)을 하사(下賜)하였다. | ○己丑/淮陽府使趙宗著，以邑民饑疫死者多，上疏請減春稅，乞得賑倉米濟之。上許之，仍賜鐵原、金化、安峽等邑米各三百石。 |
| 숙종 19권, 14년 | 지문(誌文)에 이르기를, | ○誌文曰： |

(1688 무진 / 청 강희
(康熙) 27년) 12월 16
일(을묘) 2번째기사

“삼가 생각건대 우리 장렬 왕후(莊烈王后)는 인조 대왕(仁祖大王)의 계비(繼妃)이다. 중곤(中壺)에 계신 지가 12년이고, 동조(東朝)에 계신 지가 39년이었는데, 일찍이 내전의 말이 밖에 나갔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또한 일찍이 한 가지의 정사에라도 간여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극한 덕(德)은 깊고 엄숙하여 자연스러운 음화(陰化)가 생명(生靈)에 두루 흡족하였다. 또 우리 성상(聖上)께서도 받들어 섬기는데 정성을 다하고 예를 다하여, 위로는 사랑하는 은혜를 받고, 아래로는 효도하는 도리를 미루게 되니, 온 나라 신민(臣民)이 모두가 왕후의 강릉(岡陵)6357) 같은 장수(長壽)를 빌었다. 그러나 곧 금상(今上) 14년인 무진년(6358) 3월부터 병환이 심하여지더니 성상께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마음을 졸이시면서 시약청(侍藥廳)을 설치할 것을 명하셨는데, 후(后)께서 각사(各司)의 업무가 폐지될까 염려하여 중지시켰다. 임금이 약방(藥房)에 영을 내려 중앙과 지방의 이름나고 훌륭한 의술(醫術)을 가진 자를 불러 모으고 시종하는 신하로서 약리(藥理)를 잘 아는 자도 동참시켜 약을 의논하고 백방으로 기술을 다하게 하였으나, 능히 효력을 보지 못하였다. 임금이 재차 종묘·사직·산천에 기도하고 제사할 것을 명하고, 또 옥문(獄門)을 열어 사수(死囚) 이하는 모두 석방할 것을 명하였으니 무릇 기도하는 방법이 지극하지 않은 바가 없었는데도 황천(皇天)이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므로 마침내 8월 26일 병인(丙寅)에 창경궁(昌慶宮)에서 승하(昇遐)하시었으니, 춘추가 예순 다섯이었다.

부음(訃音)이 내리자 궁촌(窮村)·여염(閭閻)의 서민(庶民)도 슬퍼서 통곡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시전(市廛)의 늙은이들은 더욱 왕후가 일호(一毫)도 재물을 손상하거나 백성을 해치는 일이 없었다고 칭송하였으며, 사대부(士大夫)는 서로 말하기를, ‘선조(先朝)로부터 오면서 왕후의 사가(私家) 친족에 대하여 사

恭惟我莊烈王后，仁祖大王之繼妃也。履中壺十二載，位東朝三十九載，而未嘗聞內言出外，亦未嘗聞干政一事。然至德淵凝，自然之陰化，周洽於生靈。又惟我聖上承事，竭誠盡禮，上受慈恩，下推孝理，一國臣民，咸祝后岡陵之壽，而乃於上之十四年戊辰，自三月有疾寢。上夙夜焦煎，命設侍藥廳，則后慮各司廢務而止之。上令藥房，招集中外名能醫術者·從臣之曉藥理者，亦使同參議藥，技殫百方，罔克奏效。上再命禱祀于廟社山川，又命洞開獄門，盡釋死囚以下，凡所以祈禳之方，無所不至。而皇天不弔，竟以八月二十六日丙寅，昇遐于昌慶宮，春秋六十有五。諱音之下，窮閭民庶，莫不悲號，市廛父老，尤頌后無一毫傷財害民之事，士大夫相語曰，自先朝以來，后之私親，人常不知爲戚里，於此蓋可見后之聖矣。群臣議諡法，履正志和曰莊，秉德遵業曰烈，遂上尊諡曰莊烈，徽號曰貞肅溫惠，殿號曰孝思，陵號曰徽，以十二月十六日，葬于楊州健元陵傍坐西之原。

람들이 항상 척리(戚里)가 되는 줄을 몰랐다.’고 하니, 이에서 대개 왕후의 성스러움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여러 신하들이 시법(諡法)을 의논하였는데, 정도를 이행하고 화합해 뜻을 두는 것이 장(莊)이고 덕을 지키고 업을 따르는 것이 열(烈)이다. 그리고 마침내 존시(尊諡)를 올리기를 ‘장렬(莊烈)’이라 하고, 휘호(徽號)는 정숙 온혜(貞淑溫惠)라 하고, 전호(殿號)는 효사전(孝思殿)이라 하고 능호(陵號)는 휘릉(徽陵)이라 하였다. 12월 16일에 양주군(楊州郡) 건원릉(健元陵) 옆 유좌(西坐)의 언덕에 장사하였다. 임금이 또 행록(行錄)을 뽑아 기록하시고, 신(臣) 이단하(李端夏)에게 현궁(玄宮)에 지문(誌文)을 짓도록 명하시니, 신이 글을 못한다고 사양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신이 기록하신 뜻으로 형용한 것을 보건대 화공(化工)6359)에 싹이 될 만하니, 신이 그 사이에서 모사(摸寫)하여 그려낼 수가 없다.

삼가 행록(行錄)을 상고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后)의 성은 조씨(趙氏)인데 가계(家系)는 양주(楊州)의 한양현(漢陽縣)에서 나왔다. 시조(始祖) 조잠(趙岑)은 고려조(高麗朝)에 벼슬하여 관원사(判院事)에 증직(贈職)되었고, 아조(我朝)로 들어와서는 휘(諱) 조말생(趙末生)이 있는데 문학(文學)과 재기(才器)로써 헌릉(獻陵)6360)의 지우를 얻어 대사마(大司馬)6361)·대제학(大提學)을 지냈고 영중추(領中樞)의 관직으로 죽으니 시호는 문강(文剛)이었다. 5대조 휘 조방좌(趙邦佐)는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증직되었고, 고조 휘 조준수(趙俊秀)는 용인 현령(龍仁縣令)이었으며, 증조 휘 조남(趙擘)은 좌찬성(左贊成)에 증직되었는데, 좌찬성이 동종(同宗)으로 출계하여 판서(判書)에 증직된 조연손(趙連孫)을 아버지로, 한천위(漢川尉) 조무강(趙無疆)을 할아버지로 삼았으니, 한천위는 곧 문강공(文剛公)의 4세 지손(支孫)이다. 조(祖)휘 조존성(趙存性)은 문과(文科)에 올라 내외(內外)의 관직을 두루 거쳐 벼슬이 지돈녕(知敦寧)에 이르렀고 영의정(領議政)에 증직되었으며, 시호는 소민(昭敏)이다. 고(考)

上又撰次行錄，命臣端夏，誌諸玄宮，臣以不文，辭不獲。然臣伏觀聖筆之所形容者，可侔化工，無容臣模畫於其間也。謹稽行錄，若曰：“后姓趙氏，系出楊州之漢陽縣。上祖岑，仕麗朝，贈判院事。入我朝，有諱末生，以文學才器，遭遇獻陵，歷大司馬·大提學，卒官領中樞，諡文剛，五代祖諱邦佐，贈兵曹判書。高祖諱俊秀，龍仁縣令。曾祖諱擘，贈左贊成。贊成出後同宗，以贈判書連孫爲考，漢川尉無疆爲祖，漢川，卽文剛四世支孫也。祖諱存性，登文科，歷踐內外，官至知敦寧，贈領議政，諡昭敏。考諱昌遠，屢典郡邑，績著循良，擢授軍資監正，人稱爲厚德長者，爲國舅，封漢原府院君領敦寧府事，贈諡惠穆，配完山府夫人崔氏，大司諫鐵堅女也。生三女，后於序居季，以天啓甲子十一月丁巳，府夫人誕后于稷山縣之衙舍，方有娠，府夫人夢月入懷，將誕之夕，又夢祥虹滿至，仙樂自天，玉女數群，彩服炷香而至曰，貴人已降，玉冊將啓，俄而分娩。傍人亦夢虹光月精，輝映室中，

휘 조창원(趙昌遠)은 여러 번 군읍(郡邑)을 맡아 법을 지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 치적이 드러났으며, 군자감 정(軍資監正)으로 발탁 제수되었는데, 사람들이 후덕(厚德)한 장자(長者)라고 일컬었다. 국구(國舅)가 되어 한원 부원군(漢原府院君)·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에 봉해져 혜목(惠穆)이란 시호를 받았다. 배위(俳位) 완산 부부인(完山府夫人) 최씨(崔氏)는 대사간(大司諫) 최철견(崔鐵堅)의 따님으로, 딸 셋을 낳았는데 왕후가 순서로는 끝이었다.

천계(天啓)6362) 갑자년(6363) 11월 정사(丁巳)에 부부인이 왕후를 직산현(稷山縣)의 관사에서 탄생하였는데, 바야흐로 임신할 때에 달이 품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고, 막 탄생하려는 저녁에는 또 상서로운 무지개가 방안에 가득 찼으며, 하늘에서 선악(仙樂)이 울리더니, 몇 무리의 옥녀(玉女)들이 채색옷에 향을 태우면서 와서 말하기를, 「귀인(貴人)이 이미 내려갔으니 옥책(玉冊)을 장차 열 것이다.」고 하는 꿈을 꾸고서 조금 있다가 분만(分娩)하였다. 옆에 있던 사람도 무지개의 빛과 달의 정기가 방 안을 비추는 꿈을 꾸고 놀라 일어나 기다리니 왕후는 이미 탄생하였다.

겨우 두어살 때에 성질이 보통 사람과 다르고 말이 적었으며, 동무들과 희롱하며 놀 때는 반드시 높은 곳에 앉았는데 동무들도 떠받들었다. 차분하고 조용하여 욕심이 없었으므로 어른이 주는 것이 아니면 비록 하찮은 먹을 것이라도 일찍이 스스로 청하는 일이 없었다. 부부인이 일찍이 예쁜 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의 하는 짓을 보려고 옆에 있던 아이를 가리키며, 「벗어 줄 수 있느냐?」 하자, 후는 곧 벗어주면서 아까와 하는 빛이 없었다. 또 도로 입히려 하니, 「이미 주었던 것을 어찌 차마 다시 가지겠습니까?」 하였다. 부부인이 또 구슬 몇 개를 얻어 유독 후에게만 주니, 후가 받아서는 그 언니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부모가 주신 것을 어찌 혼자서 독차지 하겠는가?」 하였는데,

驚起候之, 后已誕矣。甫數歲, 性質異常, 言語簡默, 與同輩嬉戲, 必坐高處, 同輩亦嘗推而爲尊, 恬靜無欲, 非長者所與, 雖食物之微, 未嘗自請, 府夫人嘗製姣服而衣之, 欲觀其爲, 指傍兒曰: ‘可解與否?’ 后即與之, 無忤色, 又令還着, 則曰: ‘已與之, 何忍復取?’ 府夫人, 又得數顆珠, 獨與后, 后既受而分與其姊曰: ‘父母之賜, 何可獨專? 於他物, 類如是。’ 稍長, 孝敬益至, 親癢則心憂色沮, 未嘗須臾離側, 若見所嗜之物, 則必謹藏以待進, 於同氣, 友愛甚篤, 推及於群從姊妹, 宗黨莫不稱歎。自幼念絕枝害, 心存仁愛, 若見寒飢者, 惻傷達於面目, 必思濟恤, 恩撫婢御, 和氣藹然, 人皆感戴, 以是惠穆公常奇愛之。戊寅夏, 祥虹立于駝駱洞本第, 是冬, 膺選行嘉禮。后既正位坤極, 飭躬以禮, 事上以誠, 居常服飾, 絕祛華靡, 儉約敬畏, 終始如一。后每以謙慎戒飭本家曰: ‘自昔宮闈不嚴, 率由威畹不謹, 可不戒哉?’ 府夫人時或入闕, 微請宮裏事。后曰: ‘母氏在吾雖至親, 於國家則外人, 內裏事, 不須知。’ 府夫人歸語家人曰:

| | | |
|--|--|---|
| | <p>다른 물건도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점점 자라서는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더욱 지극하여 아버지가 병환이 나면 마음으로 근심하고 안색은 풀이 죽어서 잠깐도 곁을 떠나지 않았고, 만약 좋아하는 물건을 보면 반드시 조심스럽게 간직하였다가 드렸으며, 동기간에 우애가 돈독하여 여러 종자매(從姊妹)에게 까지 미치니, 종족(宗族)들 간에서도 칭찬하고 감탄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어려서부터 남을 헤치려는 생각을 끊고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여 만약 추위에 떨고 굶주리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서 반드시 구휼하려고 생각했다. 은혜로 비복(婢僕)을 거느리니, 화기(和氣)가 가득차 사람들이 모두 감복하고 떠받들었다. 이 때문에 혜목공(惠穆公)이 항상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하였다.</p> <p>무인년(6364) 여름 상서로운 무지개가 타락동(駝駱洞) 본집에 서더니, 이해 겨울에 간선(揀選)을 받아 가례(嘉禮)를 행하였다. 후가 이미 곤극(坤極)의 자리에 앉게 되자 예로써 몸을 단속하고 정성으로 윗분을 섬겼으며, 평상시의 복식(服飾)은 화려하고 사치한 것을 버리고 검소하고 절약하며 공경하고 조심함이 시종 한결같았다. 후는 매양 겸손하고 삼가는 것으로써 본가(本家)를 계칙(戒飭)하여 「예로부터 궁위(宮闈)가 엄정(嚴正)하지 못한 것은 대개 척완(戚腕)6365) 이 근신하지 않은 데서 말미암았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부부인이 때때로 흑시(黑池)에 들어와 궁(宮)안의 일을 조금이라도 청하면 후가 이르기를, 「어머니께서 나에게 비록 지친(至親)이 되지만 국가(國家)에서는 외인(外人)이니, 내전의 일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부부인이 돌아가 집안 사람에게 말하기를, 「후의 분부가 이에 이르니 진실로 왕실(王室)과 나라의 복이 된다」 하였다.</p> <p>기축년(6366) 여름에 인조(仁祖)가 세상을 떠나자 후가 비록 땅을 치며 통곡</p> | <p>‘后教至此，實爲家國之福也。’ 己丑夏，仁祖賓天，后雖在哭擗之中，衾絞衣稱之屬，必親檢視，務盡誠信。孝廟卽阼，尊后爲王大妃，辛卯上尊號曰慈懿。顯廟辛丑，加上尊號曰恭愍。小子於丙辰，又上尊號曰徽獻。后連遭大戚，常懷悲疚，前後上號之禮，未嘗親臨，每遇寒暑之感，災異之警，爲小子保護教戒，既勗且切，歲在閏茂，八路阻飢。后命罄出宮儲，俾補賑資，周睦親戚，顧遇諸宮，恩義雖備至，絕不許曲逕干澤。兩朝暨予，三進宴慶壽，而后每以時誦，不肯受，反覆力請，然後始勉從。甲子，以周甲之慶，頒赦國內，推恩至于士庶，加資賜物，時以明聖王后喪制未終，不得進宴。丙寅夏，追舉豐呈縟禮，而亦遵后旨，省其節目，又加上尊號曰康仁。孝廟嘗以后御所不便，爲建萬壽殿以奉之。至丁卯秋，忽被回祿之災。后上畏天戒，不遑寧處，逮至今夏，遑豫之候忽亟，小子遑遑，籲天祈祝，竟遭罔極之痛，茫茫穹壤，叩叫靡逮，當惟幾之日，神氣已昏，而憂念小子，無異平昔，顧謂曰：‘日暮可退休，毋致傷，且痛人心</p> |
|--|--|---|

하는 중에 있으면서도 효금(絞衾)6367) 과 습의(襲衣)의 등속을 만드시 친히 점검해 보고 힘껏 정성을 다하셨었다. 효종(孝宗)이 즉위(卽位)하자, 후를 높여王大妃(王大妃)로 삼고, 신묘년(6368) 에 존호(尊號)를 올려 ‘자의(慈懿)’라 하였다. 현종(顯宗) 신축년(6369) 에 존호를 더 올려 ‘공신(恭愼)’이라 하였다. 그리고 소자(小子)는 병진년(6370) 에 또 존호를 올려 ‘휘헌(徽獻)’이라 하였다. 후가 연달아 대척(大戚)6371) 을 만나 항상 슬픔을 품고 스스로 번민하였으므로, 전후 존호를 올리는 예식에는 일찍이 친히 임석하는 일이 없었다. 매양 춥거나 더울 때의 감촉이나 천재(天災)나 지변(地變)의 경계를 만나면 소자를 위하여 보호하고 경계하시기를 이미 부지런하고 간절하게 하셨으니,

경술년(6372) 8도에 기근(饑饉)이 들었을 때 후가 명하여 궁중에 쌓아둔 곡식을 털어내어 진휼(賑恤)하는 자본에 보태게 하시었다. 친척에게 돈목(敦睦)하고 여러 궁(宮)을 돌보고 대우하심에 은의(恩義)가 비록 갖추어지고 지극하였으나, 절대로 부정으로 혜택을 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양조(兩朝)6373) 와 내가 세 번이나 진연(進宴)하여 장수를 축하하였으나, 후는 매양 때가 좋지 않다고 받기를 즐겨하지 않으므로 반복해 힘써 칭찬 뒤에서야 비로소 억지로 따르셨다. 갑자년(6374) 에 회갑의 경사로 국내(國內)에 반사(頒赦)하고 은혜로 미루어 사대부와 서민에게까지 미치어 자금(資級)을 올려주고 물품을 하사하였으나, 그때 명성 왕후(明聖王后)의 상제(喪制)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진연(進宴)하지 못하였다.

병인년(6375) 여름에 추후로 풍정(豐呈)과 옥의(縟儀)를 거행하려 하였으나, 또한 후의 분부에 따라 그 절목(節目)을 생략하고 또 존호를 더 높여 ‘강인(康仁)’이라 하였다. 효종(孝宗)께서 일찍이 후의 거소가 불편하다고 만수전(萬壽殿)을 지어서 모셨는데, 정묘년(6376) 에 이르러 갑자기 화재의 재앙을

偷薄，世道危險。’ 執予手而歔唏曰：‘一二宮女蕩滅國禁者，指虛謂實，指無爲有，隱然嘗試，不少顧忌，昨年一相臣之被誣，亦無足怪，此而不懲，其何以息浮言乎?’ 伊時兩宮人之進逐，實體后嚴宮禁之意也。聖筆行錄止此，無容臣摸 [畫]，而竊以數語，間補闕漏而已。嗚呼! 后之德行，可與任姒同其聖，而獨無《麟趾》之慶，天道不可知也。然母儀三朝，慈孝無間，至于當宁，保佑之功益著，天之生后而畀聖德，於是乎可徵矣! 臣又竊惟，后大德，生于名門，嬪于聖祖，得其位矣。長樂之奉，極一國之養，徽稱之上，集衆善之美，得其祿·得其名矣。萬年之祝，雖缺臣民之願，然齡算之永，視前世后妃，實尠其倫，則亦可謂得其壽矣。聖言之取必於四者，斯又盡驗，於戲盛哉!

입으니, 후가 위로 하늘의 경계함을 두려워하여 편안히 거처하지 못하시다가 올 여름에 이르러 편안하지 못한 기후가 문득 심해졌다. 소자가 황급히 하늘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으나 끝내는 망극한 슬픔을 만났으니, 망망한 천지에 부르짖어도 미치지 못하였다. 병이 위독한 날을 당하여 신기(神氣)가 이미 흐리면서도, 소자를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평상시나 다름이 없어 돌아보고 이르시기를, 「날이 저물었으니 물러가 쉬고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시었다. 또 인심(人心)이 투박(儉薄)하고 세도(世道)가 위험(危險)한 것을 슬퍼하면서 내 손을 잡고 흐느끼며 이르시기를, 「한두 궁녀(宮女)로서 나라의 금법을 탕멸(蕩滅)한 자가 허위를 가리켜서 진실이라고 하고, 없는 것을 가리켜서 있다고 하면서 은연히 시험해 보고 조금도 돌아보고 꺼리지 않으니, 작년에 한상신(相臣)이 무함을 당한 것도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다. 이런데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뜯소문을 가라앉히겠는가?」 하시니, 그 때에 두 궁인을 쫓아낸 것도 실은 후의 궁금(宮禁)을 엄중히 하신 뜻을 본받은 것이다.’ 성상(聖上)께서 쓰신 행록(行錄)이 이에 그치니 신이 모사하여 그려낼 필요가 없으므로 가만히 두서너 마디 말로써 간혹 빠진 것만 보충했을 뿐이다.

아! 후의 덕행(德行)은 태임(太任)과 태사(太姒)와 더불어 그 거룩한 덕을 같이 하셨는데, 유독 인지(麟趾)6377)의 경사가 없었으니, 천도(天道)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삼조(三朝)에 모의(母儀)를 보이시어 사랑과 효도에 차이가 없었고, 당저(當宁)에 이르러 보우(保佑)하신 공이 더욱 나타나시니, 하늘이 후를 내시고, 성덕(聖德)을 주신 것을 이에서 징험하겠다. 신이 또 가만히 생각건대 후께서 큰 덕으로 명문(名門)에 태어나서 성조(聖祖)의 배필이 되시니, 그 위(位)를 얻은 것이며, 장락궁(長樂宮)의 받들므로 온 나라의 봉양을 극진히 하고 휘호(徽號)의 칭호를 올려 모든 착한 것의 아름다움을 모았으니, 그 녹(祿)을 얻고 그 명성을 얻은 것이다. 만년을 축원하던 일이 비록 신민(臣民)

| | | |
|--|--|--|
| | <p>의 소원과 어긋났으며, 수명의 긴 것은 전대(前代) 후비(后妃)에 비해 실로 견줄 이가 적었으니, 또한 그 장수(長壽)하였다고 하겠다. 성상의 말씀을 반드시 네 가지에 취하여 보면 이것이 또한 모두 증험할 만하다. 아! 융성하다.”</p> <p>하였다.</p> | |
| <p>숙종 20권, 15년 (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1월 24일(임진) 2번째기사</p> | <p>성균관 유생(成均館儒生)에게 황감(黃柑)을 내려 주고 인하여 제술(製述)을 시험하였다. 유봉서(柳鳳瑞)가 수석(首席)을 차지하였으므로, 급제(及第)를 내려 주었다.</p> | <p>○頒柑于成均館儒生，仍試製述，柳鳳瑞居首，賜及第。</p> |
| <p>숙종 20권, 15년 (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2월 7일(을사) 3번째기사</p> | <p>강화부(江華府)에 역질(疫疾)이 크게 발생하였으므로 임금의 명하여 의관(醫官)을 차정(差定)하여, 약물(藥物)을 가지고 가서 구료하게 하였다.</p> | <p>○江華府大疫。上命定醫官，持藥物救之。</p> |
| <p>숙종 20권, 15년 (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4월 28일(갑오) 1번째기사</p> | <p>중궁(中宮)의 유사(有司)에게 날마다 공진(供進)하던 물품을 중지하라고 명하였다. 좌의정 목내선이 청대(請對)하니 인견(引見)하였다. 목내선(睦來善)이 아뢰기를, “조석(朝夕)의 공물(供物)을 올리지 못하게 한다면 궁중(宮中)의 식도(食道)를 계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어찌 민망하고 박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그러이 용서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이 이것 때문에 왔는가?” 하고는 끝내 듣지 않았다.</p> | <p>○甲午/命停中宮有司日供之物。左議政睦來善請對引見，來善言：“朝夕之供亦不進，則宮中食道，無可繼者矣，豈不悶迫？乞寬之。”上曰：“大臣爲此來耶？”遂不聽。</p> |
| <p>숙종 21권, 15년</p> |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임금이 말하기</p> | <p>○戊寅/引見大臣備局諸臣。上曰：</p> |

(1689 기사 / 청 강희
(康熙) 28년) 6월 13
일(무인) 1번째기사

를,

“내가 이조(吏曹)에서 아뢴 바를 보건대, 음관(蔭官)이 출사(出仕)하지 아니함이 많으니, 지극히 방자하다.”

하자, 권대운(權大運)이 말하기를,

“이 무리들은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문득 출사하지 아니하니, 기강(紀綱)이 이와 같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하였다. 목내선(睦來善)이 말하기를,

“군현(郡縣)의 수령(守令)도 관직을 버리는 것이 많아서 공무(公務)를 비우는 것이 걸핏하면 4, 5삭(朔)에 이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요즈음 출사하지 아니하는 무리 등은 모두 이름을 써서 들이되, 이 뒤로는 이조(吏曹)에서 출사하지 아니한다는 장계(狀啓)는 받아들이지 말 것이며, 만일 반드시 스스로 사면하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또한 마땅히 이유를 갖추어서 상문(上聞)하여 처분을 기다릴 것이다. 수령으로서 관(官)을 버리는 자는 여러 도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직임으로 돌아오기를 재촉하게 하고,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죄를 청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권대운이 말하기를,

“予見吏曹所奏，蔭官多不仕，極其縱恣矣。” 權大運曰：“此輩不滿於心，則輒不仕，紀綱如此，何以爲國？” 睦來善曰：“郡縣守令，亦多棄官，公務之曠，動至四五朔矣。” 上曰：“近日不仕之類，並書名以入。今後吏曹，勿納不仕之狀。如有必欲自免者，則亦宜具由上聞，以待處分。守令棄官者，使諸道觀察使，趣其還任，而不聽命，則可請罪也。” 大運言：“安東府使崔錫鼎，特命補外，而父病方劇，難於遠離，宜加矜惻。” 上命遞之。大運言：“李萬亨等，聚哭闕下之爲可惡。” 刑曹判書尹以濟曰：“上疏諸人，請與萬亨等，同被罪罰，日詣刑曹，請臣奏于上，此亦可駭耳。” 上曰：“同被罪罰之請，非可言於刑曹者。而聚會作挈。事甚可惡，摘發科罪。” 大運又爲李玄逸，請給柴炭及饌物。上從之。

| | | |
|---|---|---|
| | <p>“안동 부사(安東府事) 최석정(崔錫鼎)은 특명으로 외직(外職)에 보임(補任)되었는데, 아버지의 병이 바야흐로 급하여 멀리 떠나기가 어려우니, 긍측(矜惻)을 더하심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임금이)이 체차(遞差)하라고 명하였다. 권대운이 말하기를,</p> <p>“이만형(李萬亨) 등이 대궐 아래 모여 곡(哭)하는 것이 가증스럽습니다.”</p> <p>하고, 형조 판서 윤이제(尹以濟)는 말하기를,</p> <p>“상소한 여러 사람이 이만형 등과 더불어 같이 죄벌(罪罰)을 입기를 청하며 날마다 형조에 나와서 신에게 청하여 성상께 아뢰게 하니, 이것도 또한 해괴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같이 죄벌을 받기를 청하는 것은 형조에 말할 것이 아닌데, 모여서 소란을 떨니, 일이 심히 가증스럽다. 적발하여 과죄(科罪)하라.”</p> <p>하였다. 권대운이 또 이현일(李玄逸)을 위하여 시탄(柴炭)과 찬물(饌物)을 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 |
| <p>숙종 21권, 15년 (1689 기사 / 청 강희 (康熙) 28년) 10월 28</p> | <p>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가 청나라 사신이 장차 이를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임금이 좌상(左相)·우상(右相)을 인견(引見)하니, 김덕원(金德遠)이 말하기를,</p> | <p>平安道觀察使, 報以清使將至。 上引見左、右相。 金德遠曰: “一年三勅, 西路受病, 請依前例, 賜管餉穀取耗</p> |

| | | |
|--|---|---|
| <p>일(신묘) 3번째기사</p> | <p>“1년에 세 번 칙사(勅使)가 와서 서로(西路)가 병폐를 받으니, 청컨대 전례에 의하여 관향곡(管餉穀)6962) 의 취모(取耗)6963) 한 것을 내려 주게 하소서.”</p> <p>하니, 드디어 평안도에 2천 석, 황해도에 1천 석을 내려 주라고 명하였다. 이때 영의정 권대운(權大運)이 병을 끌어 대어 사직을 고하던 중이었는데, 목내선(睦來善)이 돈독히 권하여 일을 보게 할 것을 청하자, 임금(命)이 그대로 따라서 승지(承旨)를 보내어 여러번 타일렀으나, 권대운이 그대로 병을 말하며 명(命)에 응하지 아니하였다.</p> | <p>者。” 遂命賜平安道二千石，黃海道一千石。 時領議政權大運引疾在告，睦來善請敦勉視事，上從之。 遣承旨屢諭之，大運猶言病不應命。</p> |
| <p>숙종 21권, 15년 (1689 기사 / 청 강희 (康熙) 28년) 11월 4 일(정유) 2번째기사</p> | <p>좌의정 목내선(睦來善)이 청대(請對)하여 말하기를,</p> <p>“역로(驛路)의 폐해가 심하여 칙사를 지대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병조와 상평청(常平廳)에서 전미(錢米)를 내리게 함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보다 앞서 성천(成川) 사인(士人)이 문목공(文穆公) 정구(鄭述)의 서원(書院)에 사액(賜額)하기를 청하였으니, 정구가 일찍이 성천의 수령을 지냈기 때문이었다. 성주(星州)는 바로 정구의 장수(藏修)6965) 하던 땅이라 회연 서원(檜淵書院)을 세웠는데, 성천에 먼저 사액한 까닭으로 첩설(疊設)을 금하는 것에 저촉되므로 사액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목내선이 임금에게 말하여 비로소 시행하기를 명하였다. 목내선이 또 말하기를,</p> <p>“고(故) 대사헌(大司憲) 조수익(趙壽益)은 염정 경개(恬靜耿介)하여 만년(晩年)에 한가로이 물러가 있을 때에, 조경(趙綱)의 죄없음을 상소로 변명하다가 당시 사람에게 거슬려서 폐처(廢處)되었는데, 일찍이 이로써 상경(上卿)에 증직</p> | <p>○左議政睦來善請對言：“驛路弊甚，難以支勅。 自兵曹常平廳，宜賜錢米。” 從之。 先是，成川士人請賜文穆公鄭述書院之額，述常守成川故也。 星州卽述藏修之地。 建檜淵書院。 而以成川先賜額。 故格於疊設之禁，不許賜額。 來善言于上，始命施行。 來善又言：“故大司憲趙壽益，恬靜耿介，晩年閑退時，疏辨趙綱之非罪，忤時人廢處。 曾以此贈上卿。 而亦宜賜諡，以示嘉獎。” 都承旨柳命賢亦言之，上可之。</p> |

| | | |
|--|---|---|
| | <p>되었으니, 또한 시호(試號)를 내려 가장(嘉獎)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고, 도승지(都承旨) 유명현(柳命賢)도 말하니, 임금의 좋다고 하였다.</p> | |
| <p>숙종 21권, 15년 (1689 기사 / 청 강희 (康熙) 28년) 12월 6 일(무진) 2번째기사</p> | <p>대사성(大司成) 이봉징(李鳳徵)이 상소하기를,</p> <p>“연하(輦下)의 친병(親兵)은 처음에 왕실(王室)을 호위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훈국(訓局)·어영(御營)이 창설되고 수어(守禦)·총융(總戎)·금위(禁衛) 세 영(營)을 또 설치하였으니, 군용(軍容)이 국용(國容)6993)에 섞여서 기병(騎兵)·보병(步兵)·정병(正兵)·수군(水軍)·조군(漕軍)의 여러 군사 외에 명목이 이미 많으므로 첩관(簽括)이 더욱 복잡하여, 한 집안에 세 남자를 모두 초(抄)6994)하고, 네 남자를 모두 편입(編入)하니, 포(布)를 내는 것이 많은 자는 10여 필(匹)에 이르러 그 사정이 진실로 애통할 만합니다. 조곡(糶穀)에서 모(耗)6995)를 취하는 것은 적곡(糶穀)을 보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손실된 비용을 염려한 것인데, 요즘은 모곡(耗穀)을 받아서 거두고 나누어 주는 것이 본 조곡(糶穀)과 같으니, 실로 옛 법이 아니며, 백성들이 이로써 초과(催科)6996)에 고달픕니다. 돈이란 것은 부귀(富貴)의 병(柄)이므로, 무릇 남은 곡식이 있는 자는 돈으로 바꾸어 가난한 백성에게 꾸어 주는데, 1냥(兩)을 꾸어 주면 값이 4두(斗)인데 값을 때에는 1곡(斛)을 쓰더라도 오히려 부족합니다.</p> <p>대저 민생(民生)이 스스로 보전될 수 없어서 서로 도적이 되는 것은 군포(軍布)가 무겁기 때문이며, 조적(糶糶)이 많기 때문이며, 전폐(錢幣)가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도적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군사를 감하</p> | <p>○大司成李鳳徵上疏曰：</p> <p>輦下親兵，初欲衛王室也。訓、御創而守、摠、禁三營又設矣。軍容雜於國容，騎、步、正、水、漕諸軍之外，名目既多。簽括益繁，一家之內，三男子而盡抄之，四男子而盡編之。出布多者，至十餘匹，其情良可哀痛。糶之取耗，非欲補糶，祇慮損費也。近者取耗斂散如本糶，實非古法，民以此困於催科。錢者，富貴之柄。凡有餘粟者，質錢與貧民假貸，貸一兩，直三四斗。及其償也，費一斛，猶不能。蓋民生不能自保，相與爲盜者，以軍布重也，糶糶多也，錢幣殖也。欲使民無盜。則不可不減軍而蠲布，不可不除糶而去耗，不可不行錢而禁殖也。殿下誠能詢問於相臣、將臣，罷新設禁旅及籌司騎省無名無用之餘丁，移充於諸軍逃故者，限年不爲歲抄，則</p> |

고 군포를 줄이지 아니할 수 없고, 조적을 덜고 모곡(耗穀)을 없애지 않을 수 없으며, 돈을 시행하지 않고 이식(利殖)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진실로 능히 상신(相臣)·장신(將臣)에게 물으시어 새로이 설치한 금려(禁旅)와 주사(籌司)·기성(騎省)의 명목이 없고 쓸데없는 여정(餘丁)을 옮겨서 제군(諸軍)의 도고자(逃故者) 6997로 채워서 연한을 정해 세초(歲抄)하지 아니한다면, 한 집에 3, 4명 남자의 군포(軍布)를 저절로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를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성(騎省)의 군포는 차고 넘쳐 계산할 수 없으니, 수년의 경비(經費)를 헤아려서 족히 그 쓰임을 넉넉하게 한다면 8도의 1년의 민포(民布)를 모두 없애어 덕의(德意)를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적(本糶) 외에 다시 그 모곡(耗穀)은 기록하지 말고, 단지 그 수량만 줄지 아니하게 하며, 또 그 예전의 포흠(逋欠)을 모두 탕감한다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한 방도가 될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낮추고 올리는 것은 비록 백성이 하는 대로 맡길지라도, 이식(利殖)을 취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미곡(米穀)을 쓰도록 하여 그 이(利)를 3, 4배(倍)로 취하는 폐단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면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모두 생업(生業)을 즐길 것입니다. 요사이 남쪽에 흰 기운이 수십 일 동안 빠져 있다가 이제 없어졌으니, 하늘의 경고(警告)가 이와 같은데, 전하께서는 스스로를 꾸짖으시는 하교가 없으시고, 백관은 한 마디 말로 경계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데에 두어, 다시 크게 경동(警動)하고 크게 진작(振作)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까? 풍속의 이병(利病)과 백성의 질고(疾苦)는 자사(刺史) 6998와 수령이 아니면 다스릴 수 없으니,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대신(大臣)·육경(六卿)·삼사(三司)로 하여금 빈청(賓廳)에 모여 인재(人

一家三四男之布, 自可除矣。 如以此爲不便, 則有一焉。 騎省軍布, 充溢無算, 量數年經費, 足贍其用, 則盡除八路一年民布, 以示德意可也。 本糶之外, 更不錄其耗, 只使其數不縮, 且盡蕩其舊欠, 則爲安民之一道矣。 錢價低仰, 雖任民之爲。 而至如取殖, 必使用米穀, 以絕其賭利三四倍之弊, 則貧富樂於生業矣。 近日南方白氣, 亘數十日而乃滅, 天之警告如此。 而殿下無責己之教, 百僚亦無一言亡。 其置於末如之何, 而不復有大警動, 大振作之舉耶? 俗之利病, 民之疾苦, 非刺史守長, 莫以砭劑之。 願殿下使大臣、六卿、三司, 會於賓廳, 薦進人才, 典以州事, 有茂績異能, 則以次補公卿, 如漢代故事, 仍以釋菜之式, 養士之具, 有古今差異者, 具別單以進。 其論釋菜之式, 有曰: ‘釋菜時迎神送神, 亞獻終獻, 俱無樂章。’ 所用樂章, 亦於八句之中, 或去三句, 或去四句, 此宜有釐正也。 從享名字爵號中, 塗陽侯之塗字, 或書以滌。 狄墨之墨字, 或書以黑。 祈卿侯之卿字, 或書以鄉。 廉潔之潔, 或書以絮。 江都伯,

| | | |
|------------------------------------|---|---|
| | <p>才)를 뽑아 올려서 고을의 일을 맡게 하되, 큰 공적과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차례로 공경(公卿)에 보임(補任)하여 한대(漢代)의 고사(故事)와 같게 하소서.”</p> <p>하고, 인하여 석채(釋菜)6999) 의 법과 선비를 양성하는 제도가 고금에 차이가 있음을 별단(別單)에 갖추어 올렸다. 석채(釋菜)의 예식을 논한 말에 이르기를,</p> <p>“석채할 때에 영신(迎神)·송신(送神)·아헌(亞獻)·종헌(終獻)에 모두 악장(樂章)이 없으며, 쓰는 악장도 8구(句) 가운데 혹은 3구를 없애기도 하고 혹은 4구를 없애기도 하니, 이는 마땅히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종향(從享)의 이름자와 작호(爵號) 가운데, 도양후(塗陽侯)의 도(塗) 자(字)를 혹은 부(滂)로 쓰기도 하고, 적묵(狄墨)의 묵(墨) 자를 혹은 흑(黑)으로 쓰기도 하며, 기경후(祈卿侯)의 경(卿)을 혹은 향(鄉)으로 쓰기도 하고, 염결(廉潔)의 결(潔)을 혹은 혈(絜)로 쓰기도 하며, 강도백(江都伯)을 혹은 광천백(廣川伯)으로 쓰고, 백자(伯字)를 혹은 상(相)으로 쓰기도 하며, 정강성(鄭康成)을 혹은 현(玄)으로 쓰기도 하니 또한 개정하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임금의 비답(批答)에 나라를 근심하고 사랑한다는 말로써 권장하였다. 묘당(廟堂)에 확의(確議)하기를 명하여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였으나 시행한 바는 없었고, 오직 악장(樂章)만 예조(禮曹)로 하여금 유신(儒臣)에게 물어서 처리하게 하고, 작호(爵號)와 이름자의 개정은 향사(享祀) 때를 기다려서 다시 품(稟)하여 고치게 하였다.</p> | <p>或書以廣川伯，伯字又或書以相。鄭康成，或書以玄，亦乞釐正。”</p> <p>上批。獎之以憂愛，命廟堂確議。備局覆奏，無所施行。惟樂章，使禮曹問于儒臣處之。爵號名字之釐正，許待享祀時，更稟改之。</p> |
| <p>숙종 21권, 15년 (1689 기사 / 청 강희</p> | <p>이해 겨울에 얼음이 얼지않아 주경관(主梗官)을 보내어 협강(峽江)의 음냉(陰冷)한 얼음이 언 곳에 나아가 얼음을 취하였는데, 두꺼운 것이 겨우 두 치</p> | <p>○是冬無冰，遣主梗官，就峽江陰凝處，取水厚者僅二寸，以船載下，藏于</p> |

| | | |
|--|--|---|
| <p>(康熙) 28년 12월 25일(정해) 2번째기사</p> | <p>(寸)였다. 배로 실어와 빙고(氷庫)에 저장하였다.</p> | <p>庫。</p> |
| <p>숙종 21권, 15년 (1689 기사 / 청 강희 (康熙) 28년) 12월 25일(정해) 3번째기사</p> | <p>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옥(李沃)이 상소하여 말하기를,</p> <p>“경기 백성은 한 해를 지낼 저축이 없고 상호(上戶)가 양서(兩西)의 하호(下戶)를 당하지 못하고, 3호(戶)가 양서의 1호(戶)를 당하지 못하는데 요부(徭賦)는 양서보다 갑절 이상 댕급절은 됩니다. 거기에다 객사(客使)의 책응(策應)은 두어 달의 휴식도 없을 정도로 빈번하고, 더군다나 우졸(郵卒)은 더욱 고달파서 객사가 이르면 말[馬]을 버리는 자가 많습니다. 여섯 역(驛)에서 전례(前例)에 따라 백금(白金) 5백 냥(兩)을 바치는데, 네 번의 객사를 계산하면 소비하는 바가 2천 냥이 되니, 어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내수사(內需司)에 재물의 많음이 대농(大農)과 같다고 하니, 만약 남아서 썩는 물건을 거두어 보낸다면 경기 백성이 반드시 기뻐하여 말하기를, ‘우리 임금의 백성을 사랑하시기를 이와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니, 어찌 기록하지 아니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비답(批答)하기를,</p> <p>“내수사의 저축한 바가 조금 여유가 있어야 백성을 보조할 수 있으니, 내가 무슨 마음으로 아끼는 바가 있겠는가? 근래에 흉년으로 인하여 세입(稅入)이 감축되어 모든 용도를 오로지 양창(兩倉)7012) 과 해조(該曹)7013) 에 의지 하니, ‘남아서 썩는다.’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는 말이다. 내수사의 재물이 이미 이와 같으니, 빨리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헤아려서 처리하게 하라.”</p> <p>하였다. 비국(備局)에서 본사(本司)의 여정포(餘丁布) 2백 50필을 내려 주기</p> | <p>○京畿觀察使李沃上疏言：</p> <p>畿民無經歲之畜， 上戶莫當兩西之下戶， 三戶莫當兩西之一戶。 而徭賦倍蓰於兩西， 策應客使， 曾無數月之休， 況郵卒尤困客使之至， 馬多棄者？ 六驛例納白金五百兩， 計四使所費爲二千， 惡得不怨哉？ 臣聞內司貨財， 富埒大農， 倘以紅腐貫朽之物， 舉而遺之， 則圻民必欣欣然曰： ‘吾王之愛民如此。’ 豈不盛哉？” 上批曰： “內司所儲， 稍有贏餘， 可以補民。 顧予何心， 有所吝惜哉？ 比因歲歉， 稅入減縮， 凡百用度， 專靠於兩倉。 該曹則紅腐貫朽， 是爽實之說也。 內司之財， 既如此， 速令廟堂量處。” 借局請： “賜本司餘丁布二百五十疋。”</p> <p>上可之。</p> |

| | | |
|--|---|---|
| <p>숙종 22권, 16년 (1690 경오 / 청 강희 (康熙) 29년) 1월 15 일(정미) 2번째기사</p> | <p>를 청하니, 임금(王)이 좋다고 하였다.</p> <p>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권대운(權大運)이 말하기를,</p> <p>“칙사(勅使)의 행차가 멀지 않아 입경(入京)할 것인데, 저들이 만약에 장계(狀啓)의 사연과 같이 과연 고명(誥命)의 간 곳을 묻는다면 대답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신(臣)들이 강정(講定)한 것이 있습니다. 만수전(萬壽殿)이 화재(火災)를 입은 지 오래지 않으니, 이때에 역시 먼저 탄 가운데에 들어갔다고 핑계하여 말하면, 저들이 반드시 믿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王)이 말하기를,</p> <p>“이것이 궤사(詭辭)이기는 하나, 조리는 무망(誣妄)하지 않으니, 그렇게 대답하면 다시 묻는 일이 없을 듯하다.”</p> <p>하였다. 권대운(權大運)이 또 말하기를,</p> <p>“광주(廣州)에 다시 유수(留守)를 둔 뒤로 점점 폐단이 생겨서 군향(軍餉)이 줄어들고 군정(軍政)이 허술해졌으니, 모두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다시 수어사(守禦使)를 차출하여 경중(京中)에서 관할하고, 유수·경력(經歷)의 벼슬을 모두 폐지하되, 부윤(府尹)만을 두어 전관(專管)하게 하면, 온당할 듯합니다.”</p> <p>하고,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來善)·우의정(右議政) 김덕원(金德遠)도 다 올게 여기니, 임금(王)이 그대로 따랐다. 우참찬(右參贊) 민종도(閔宗道)가 말하기를,</p> | <p>○上引見大臣備局諸宰。 領議政權大運曰：“勅行入京不遠， 彼若如狀啓辭緣， 果問誥命去處， 則無以答之。 臣等有所講定矣。 萬壽殿回祿之災未久， 托言此時， 亦入於延燒中， 則彼必信聽矣。” 上曰：“此雖詭辭， 理則不誣。 以此答之， 則似無更問之舉矣。” 大運又言：“廣州改置留守之後， 漸生弊端， 軍餉之耗縮， 戎政之踈虞， 俱極可慮。 若更差出守禦使， 自京中管轄， 而竝罷留守經歷之官， 只置府尹專管， 則似爲便當。” 左議政睦來善、右議政金德遠皆以爲然， 上從之。 右參贊閔宗道曰：“向者柳命天， 有三南收米蠲減之請， 而每結減二斗， 則通計所減， 多至七萬一千八百餘石， 勢難遽減。 宣惠廳有虎贖木收捧之規， 無論山郡海邑， 一從家戶， 合力備納。 若許減除， 則下戶殘氓， 可以均蒙惠澤矣。” 上問于諸宰而許之。 戶曹判書吳始復言：“客使連續， 經用匱乏， 無以充用。 各道各邑採銀處， 請悉自戶曹， 旬管收稅， 以爲補用之地。” 上許之。 右議政金德遠曰：“奏請使， 意外以文字執頃於</p> |
|--|---|---|

| | | |
|--|---|---|
| | <p>“지난번에 유명천이 삼남(三南)의 수미(收米)를 감면하기를 청하였으나, 결(結)마다 2두(斗)를 줄이면 통틀어 계산하여 줄이는 것이 7만 1천 8백여 석(石)에 이르도록 많아질 것이니, 갑자기 줄이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선혜청(宣惠廳)에서 호속목(虎贖木)7033 을 거두는 규례가 있는데, 산군(山郡)·해읍(海邑)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가호(家戶)에 따라 힘을 합쳐서 장만하여 바치니, 이것을 감면하여 주면 하호(下戶)의 잔민(殘民)이 혜택을 고루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上)이 재신들에게 물어서 윤택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오시복(吳始復)이 말하기를,</p> <p>“객사(客使)가 잇달아 오므로 경비가 모자라도 채워 쓸 수 없으니, 각도(各道) 각읍(各邑)의 은(銀)을 캐는 곳을 죄다 호조에서 맡아 세를 거두어서 채워 쓰는 바탕으로 삼게 하소서.”</p> <p>하니, 임금(上)이 윤택하였다. 우의정 김덕원이 말하기를,</p> <p>“주청사(奏請使)가 뜻밖에 문자 때문에 저들 땅에서 허물을 쓰고 치욕이 성상에게까지 미친 일이 있었으니, 신들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객사에게 글을 올려서 그가 돌아가 황제에게 아뢰도록 청하려 하나,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p> <p>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p> | <p>彼中，至有辱及上躬之事。 臣等欲率百官呈文于客使，請其歸奏皇帝。 而自下不敢擅自爲之， 敢此仰陳。” 上曰：“唯。” 大運曰：“前日筵中，有將才抄啓之命。 而凡用人之道，歷試而後可知。 將任至重， 有難率爾抄啓矣。” 德遠曰：“以闕帥可合人爲目，則似好矣。” 上曰：“然則以闕帥可合人抄啓，宜矣。” 於是，大運薦黃徵、金夢良、李世選。 德遠薦李雲徵。 兵曹判書閔黯薦盧銓、黃徵、李世選。 上許以留意用之。</p> |
|--|---|---|

| | | |
|--|--|---|
| | <p>“그리하라.”</p> <p>하였다. 권대운이 말하기를,</p> <p>“전일 연중(筵中)에서 장재(將才)를 초계(抄啓)하라는 명이 계셨는데, 무릇 사람을 등용하는 방도로는 두루 시험해 본 후에야 알 수 있고, 장임(將任)은 매우 중대하므로, 갑자기 초계하기 어렵습니다.”</p> <p>하고, 김덕원이 말하기를,</p> <p>“곤수(闕帥)7034) 에 적합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면 좋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그렇다면, 곤수에 적합한 사람을 초계하는 것이 마땅하겠다.”</p> <p>하였다. 그래서 권대운이 황징(黃徵)·김몽량(金夢良)·이세선(李世選)을 천거하고, 김덕원이 이운징(李雲徵)을 천거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암(閔黯)이 노전(盧銓)·황징·이세선을 천거하니, 임금이 허락하여 유의하여 등용하게 하였다.</p> | |
| <p>숙종 22권, 16년 (1690 경오 / 청 강희 (康熙) 29년) 1월 16 일(무신) 1번째기사</p> | <p>호당(湖堂)에 뽑힌 사람 이현조(李玄祚)·권중경(權重經)·채팽운(蔡彭胤)·홍돈(洪墩) 등을 권중(闕中)에 모이도록 명하여 오칠언 십운 율시(五七言十韻律詩)를 시험하고, 대제학(大提學) 민암(閔黯)을 시켜 살펴서 차례를 매기게 하였으며, 지어 바친 자에게 차등을 두어 물건을 내리고 이어서 선운(宣醞)7055) 하였다.</p> | <p>○戊申/命會湖堂被抄人李玄祚、權重經、蔡彭胤、洪墩等於闕中，試五七言十韻律詩，招大提學閔黯，使之考次。製進者，賜物有差，仍宣醞。</p> |

| | | |
|--|---|---|
| <p>숙종 22권, 16년 (1690 경오 / 청 강희 (康熙) 29년) 1월 25 일(정사) 2번째기사</p> | <p>간원(諫院)에서 아뢰기를, “금부(禁府)의 규례에 중수(重囚)는 남간(南間)7071) 에 두고 공가(公家)에서 음식을 장만하여 주게 되어 있는 것은 대개 외인과 교통하고 독을 마시어 스스로 죽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제 이 흉악한 이상(李翔)은 서간(西間)에 가두고 끝내 옮겨 두지 않아서 이처럼 바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극히 마땅하지 못한데다가, 엄하게 형신(刑訊)하라고 특별한 판부(判付)가 이미 내려진 뒤에도 일찍 거행하지 않고 여러 날 동안 늦추어 끝내 한 차례도 형신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니, 금부의 당상(堂上)을 모두 중중 추고(從重推考)하소서. 이상의 아들 이만초(李晩初)는 증거를 세워 옥사(獄事)를 만든 죄가 그 아버지와 다를 것이 없으니,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도록 명하소서. 근년에 성상께서 이상을 삭판(削版)하라는 명을 특별히 내리셨는데, 정언(正言) 김우항(金宇杭)은 감히 비호하려는 생각을 일으켜 어그리진 말을 장황히 하였으므로, 그 임금을 업신여기고 당(黨)을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하는 버릇이 참으로 미우니, 멀리 귀양보내소서.”</p> <p>하니, 임금이 이만초·김우항의 일만을 들어주었다.</p> | <p>○諫院啓言：“禁府之規，重囚則置之南間。自公家備饋，蓋所以防其交通外人。飲毒自死也，今此凶翔則仍囚西間，終不移置，有此徑斃，已極無謂。而至於嚴刑別判付既下之後，又不趁卽舉行，遷延累日，終不得一次施刑。請禁府堂上竝從重推考。翔之子晩初證成獄情之罪，與其父無間。請命絶島定配。頃年聖上，特下李翔削版之命。而正言金宇杭，敢生庇護之計，張皇悖謬之辭，其慢君死黨之習，誠可惡也。請遠竄。”上只從李晩初金宇杭事。</p> |
| <p>숙종 22권, 16년 (1690 경오 / 청 강희 (康熙) 29년) 4월 25 일(병술) 2번째기사</p> | <p>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하치않은 나 소자(小子)가 외람되게 어렵고 큰 사업을 이어받아 온 백성 위에 임한 지 이제 1기(紀)7101) 하고 4년이 되었다마는, 덕이 모자라서 하늘의 노여움을 받아 큰물·가뭄·바람·서리의 재앙과 인요(人妖)·물괴(物怪)의 변이 거의 거르는 날이 없이 거듭 나타나니, 마음이 근심되고 위태로운 것이 마치 범의 꼬리를 밟는 듯하고 봄날의 얼음을 건너는 듯하다. 전사(前史)를 두루 보건대, 재이(災異)가 일어난 것은 모두가 두려운 것이나, 근심이 절박한</p> | <p>○上，下敎曰：“眇子小子，叨承艱大之業，臨乎兆民之上，于今一紀有四載矣。祇德不類，逢天禪怒，水旱風霜之災，人妖物怪之變，疊見層出，殆無虛日，心之憂危，如蹈虎尾，若涉春冰也。歷觀前史，災異之作，罔非可怕。而切急之憂，莫如旱乾者。誠以君依於國，國依於民，民天既絕，國隨</p> |

| | | |
|--|---|---|
| | <p>것으로는 가뭄만한 것이 없다. 참으로 임금은 나라에 의지하고 나라는 백성에게 의지하므로, 민천(民天)7102) 이 떨어지면 나라가 따라서 망하니, 어찌 크게 두렵지 않겠는가? 아아, 이번 가뭄은 또한 매우 혹독하다. 닳새·열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보리가 없고 벼가 없다 하는데, 봄의 농사철을 당하여 가뭄이 재앙이 되매, 비를 바라고 바란 지 거의 몇 열흘이 지나서, 밀보리가 말라 죽고 모내기가 제때를 잃었다. 가없는 우리 백성은 장차 죽음이 가까왔으니, 백성의 부모가 되어 다시 어찌하여야 하겠는가?</p> <p>밤낮으로 어쩔 줄 모르면 온갖 신명에게 제사하였으나, 하늘을 보면 분명하지 않아 비가 내릴 뜻은 아득하니, 말이 여기에 미치면 속이 타는 듯하여 차라리 움직이지 않고 죽고 싶으나 그럴 수 없다. 정부(政府)에서 직언(直言)을 널리 구하되 위로는 군덕(君德)의 부족한 것과 아래로는 시정(時政)의 잘잘못을 모두 숨김없이 아뢰게 하라. 말이 광망(狂妄)하더라도 내가 죄주지 않을 것이다. 이어서 생각하건대, 이번에 재변을 가져온 것은 오직 내가 덕이 없기 때문이니, 내가 더욱 유의하여야 할 것인데, 또한 어찌 못 신하를 칙려(勅勵)하고 위아래가 서로 덕을 닦는 도리가 없겠는가? 아! 너희 대소 신료(大小臣僚)는 내 지극한 뜻을 몸받아 사심을 없애도 공도(公道)를 넓혀서 함께 삼가고 공경하도록 힘쓰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조금이라도 하늘의 꾸중에 보답하여 현시의 어려움을 구제하라. 감선(減膳)·금주(禁酒)와 격고(擊鼓)하지 말게 하는 등의 일도 해조(該曹)를 시켜 거행하라.”</p> <p>하였다. 처음에 정원(政院)에 명하여 교지(教旨)를 대찬(代撰)하게 하였는데, 정원에서 말하기를,</p> <p>“열 줄의 분부는 말이 슬픔니다. 신(臣)들처럼 졸렬한 말로는 감히 성의(聖</p> | <p>而顛隳也，豈不大可懼哉？噫嘻！今茲之旱，亦孔之酷矣。五日十日之不雨，尚云無麥無禾。而節屆東作，旱魃爲虐，其雨其雨，殆涉數旬，兩麥焦枯，注秧愆期。哀我民斯，大命近止。爲民父母，當復如何？夙夜遑遑，靡神不舉。而視天夢夢，雨意逾邈。興言及此，如惓如焚。寧欲無訛而不可得也。宜自政府，廣求直言，上以君德之闕遺，下以時政之得失，悉陳無隱。言雖狂妄，予不得罪焉。仍念今茲召災，曷由否德，則予當益加留意。而亦豈無勅勵群工，上下交修之道乎？咨！爾大小臣僚，體予至意，克祛已私，恢張公道，務盡寅協精白一心，少答天譴，以濟時艱。至於減膳禁酒勿擊鼓等事，亦令該曹舉行。始命政院，代撰教旨。”政院言：“十行絲綸，辭旨惻怛。臣等荒拙之辭，不敢形容聖意之萬一。請直以上教，頒布中外。”再啓，上乃許之。</p> |
|--|---|---|

| | | |
|---|--|--|
| | <p>意)의 만분의 일도 형용할 수 없으니, 곧바로 위에서 분부하신 것을 중외(中外)에 반포하소서.”</p> <p>하였다. 두 번을 아뢰니, 임금이 윤허하였다.</p> | |
| <p>숙종 22권, 16년 (1690 경오 / 청 강희 (康熙) 29년) 7월 3일 (임진) 2번째기사</p> |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來善)이 말하기를,</p> <p>“올해의 가뭄은 심하여 가는데, 영남(嶺南)·호남(湖南)은 재해를 입은 것이 더욱 참혹합니다. 진라 감사(全羅監司)가 장계(狀啓)하여 본도(本道)에 있는 각 아문(衙門)·각 군문(軍門)에서 상납(上納)하는 곡식을 머물러 두어 진자(賑資)로 삼기를 청하였는데, 이미 배에 실은 것은 머물러 둘 수 없을 듯하나, 미처 배에 싣지 않은 것은 머물러 두는 것이 온편할 듯합니다.”</p> <p>하고, 우의정(右議政) 김덕원(金德遠)이 함경도·강원도의 곡식을 옮겨서 영남에 주고 양서(兩西)7122)의 곡식을 호남에 주기를 청하고, 또 진홀 당상(賑恤堂上) 2원(員)을 따로 차출하여 혜청 당상(惠廳堂上)과 상의하여 진정(賑政)을 전관(專管)하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모두 따랐다. 이 뒤에 유명천(柳命天)·이봉징(李鳳徵)을 진홀 당상으로 삼았다. 교리(校理) 심중량(沈仲良)이 말하기를,</p> <p>“이조 참판(吏曹參判) 이현일(李玄逸)을 불러온 지 이미 오래 되었으나, 상후(上候)가 편찮으셔서 아직 사대(賜對)하지 못하였으니, 앞으로 인견하실 때에 입시(入侍)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p> | <p>○引見大臣備局諸宰。 左議政睦來善曰， 今年旱暵轉甚， 嶺南湖南被災尤慘。 全羅監司狀請：“留置本道所在各衙門各軍門上納之穀， 以爲賑資。 其已載船者， 似不可留。 而未及載船者， 留置似便。” 右議政金德遠請：“移咸鏡、江原道穀， 給嶺南。 兩西穀給湖南。” 又請：“別出賑恤堂上二員， 與惠廳堂上相議， 專管賑政。” 上竝從之。 是後， 以柳命天、李鳳徵爲賑恤堂上。 校理沈仲良言：“吏曹參判李玄逸招來已久。 而上候未寧， 尙無賜對之舉。 前頭引接時， 宜令入侍。” 上許之。 是後， 玄逸詣闕開政。 召見慰諭之。</p> |

| | | |
|--|--|--|
| | <p>하니, 임금이 윤희하였다. 이 뒤에 이현일이 대궐에 나아가 개정(開政)7123) 하니, 소견(召見)하여 위유(慰諭)하였다.</p> | |
| <p>숙종 22권, 16년 (1690 경오 / 청 강희 (康熙) 29년) 7월 13 일(임인) 1번째기사</p> | <p>대신(大臣)과 비국(批局)의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임금이 신하들과 저들의 소식이 염려스러움을 논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태극 달자(太極撻子)는 병마(兵馬)가 강성하므로 저들이 번번이 4,50만 금을 뇌물로 보내어 기미(羈糜)7127) 하는 바탕으로 삼는데도, 이른바 청태길(靑台吉)·황태길(黃台吉)이라는 자가 또 난을 일으켰으니, 저들이 영고탑(寧固塔)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나라의 근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북경(北京)에서 이미 군사를 보냈다면 우리에게도 다시 군사를 청할 것이니, 이는 염려스럽다. 우리 나라는 전쟁의 대비와 보장(保障)할 땅이 없거니와, 믿을 만한 땅도 없으니, 어찌 매우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p> <p>하였는데,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來善)이 말하기를,</p> <p>“강도(江都)의 군항(軍餉)은 급할 때에 쓸 것이니, 흉년을 당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강도는 장관(將官) 이하를 본부(本府) 사람으로 전차(填差)하여 봉료(俸料)를 주고 조용(調用)하므로 사람들이 다 조용되는 것을 즐겨워하나, 남한(南漢)은 성안의 무사(武士) 수가 1천에 가까운데 지금 수어사(守禦使)의 막하(幕下)를 죄다 다른 곳 사람으로 전차하였으므로 성안의 무사들이 다 원망하는 마음을 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수어사 이우정(李宇鼎)에게 물었다. 이우정이 그 사세가 불편함을 아뢰고, 이어서 목내선과 서로 논란하였는데, 사기(辭氣)가 다 발끈하여</p> | <p>○壬寅/引見大臣備局諸宰，上與諸臣，論彼中消息之可慮。上曰：“太極撻子，兵馬強盛，彼人每以四五十萬金賂遺，爲羈糜之地。而所謂靑台吉、黃台吉者，又作亂。彼人若避歸於寧固塔，則我國之憂，不可勝言。且北京既發兵，則將復請兵於我，是可慮也。我國既無陰雨之備，保障之地，亦無可待之地，豈非可憂之甚者乎？”左議政睦來善曰：“江都軍餉，乃緩急之需。雖值凶荒，不宜移轉於他處。且江都則將官以下，皆以本府人填差，給料調用，故人皆樂用。而南漢則城內武士，其數近千。而卽今守禦使幕下，盡以他處人填差，故城內武士，皆懷怨心。上問守禦使李宇鼎。”宇鼎陳其事勢不便。仍與來善相難，辭氣俱勃然，至欲相詬，人皆駭之。右議政金德遠曰。全羅監司李玄紀狀請：‘斫取宜松山雜木煮鹽。收稅以補賑資。’而此則不可從。道內諸宮家各衙門鹽盆，限明年專屬本道，收稅補賑似好。且</p> |

| | | |
|--|---|---|
| | <p>서로 헐뜯으려고까지 하므로, 사람들이 다 놀랐다. 우의정(右議政) 김덕원(金德遠)이 말하기를,</p> <p>“전라 감사(全羅監司) 이현기(李玄紀)가 장계(狀啓)하여 송산(松山)의 잡목(雜木) 중에서 소금을 굽는 데에 쓸 만한 것을 베게 하고 세를 거두어 진자(賑資)에 보태기를 청하였는데, 이것은 들어줄 수 없으나, 도내(道內)의 여러 궁가(宮家)와 각 아문(衙門)의 염분(鹽盆)을 내년까지만 본도에 전속(專屬)시켜 세를 거두어 진자에 보태게 하면 좋을 듯합니다. 또 외방(外方)의 월과 군기(月課軍器)7128) 를 이제 잠시 멈추고 재해를 입은 고을에서 그 가미(價米)를 받아 두어 진자에 보태게 하고, 군기시(軍器寺)에서 삼명일(三名日)7129) 에 진상(進上)하는 갑주(甲冑)·조총(鳥銃)도 올해만 멈추고 그 가면포(價綿布)를 진청(賑廳)에 보내어 보태어 쓰게 하여야 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의 윤허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오시복(吳始復)이 말하기를,</p> <p>“백관(百官)에게 나누어 줄 녹(祿)이 모자라니, 대미(大米)7130) 10석(石)의 녹에 2석의 조미(糙米)7131) 를 끼어 주고 각 아문의 원역(員役)과 군병(軍兵)의 방료(放料)에도 두(斗)의 조미를 끼어 주소서.”</p> <p>하니, 임금의 윤허하였다. 정언(正言) 성준(成儁)이 나아가 아뢰기를,</p> <p>“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 이건명(李健命)은 이사명(李師命)의 종제(從弟)로서 외람되게 사천(史薦)을 받았습니다. 이사명이 처형된 뒤에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고 임금의 언동(言動)을 적게 할 수 없으니, 사천을 삭제하소서.”</p> | <p>外方月課軍器，今姑停止。令被災邑，捧留其價米，以補賑資。軍器寺三名日進上甲冑鳥銃，亦宜限今年停止，以其價綿布，送賑廳補用。”上可之。戶曹判書吳始復言：“百官頒祿不足，請於大米十石之祿，參以二石糙米。各衙門員役及軍兵放糧，亦參一斗糙米。”上許之。正言成儁進啓：“承文院副正字李健命，以師命之從弟，濫被史薦。師命伏法之後，不可使昵侍左右，記人主之言動。請削其史薦。”上從之。吏曹參判李玄逸進前，請從合啓，亟正閔鼎重之罪，申復不已，上終不許。</p> |
|--|---|---|

| | | |
|--|--|---|
| | <p>하니, 임금의 따랐다. 이조 참판(吏曹參判) 이현일(李玄逸)이 앞에 나아가, 합계(合啓)를 따라서 빨리 민정중(閔鼎重)의 죄를 바꾸기를 청하고 거듭 아뢰어 그치지 않았으나, 임금이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p> | |
| <p>숙종 22권, 16년 (1690 경오 / 청 강희 (康熙) 29년) 7월 23 일(임자) 1번째기사</p> |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來善)이 말하기를,</p> <p>“전라도에서 가장 심하게 재해를 입은 고을은 진정(賑政)을 빨리 강구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경창(京倉)에 저축한 각색 곡식을 배로 강진(康津)에 날라서 나누어 가장 급한 고을을 구제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우의정(右議政) 김덕원(金德遠)이 말하기를,</p> <p>“비용을 절약하고 백성을 아끼는 것은 왕정(王政)의 먼저 힘쓸 일인데, 더구나 흉년을 당하여 더욱 절손(節損)하여야 마땅하니, 동지사(冬至使)의 행차 때에 상방(尙方)에서 무역하는 것도 적당히 줄여서 절검(節儉)하는 뜻을 보여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p> | <p>○壬子/引見大臣備局諸宰。 左議政睦來善言：“全羅道被災尤甚邑，賑政不可不速講。 京倉所儲各穀，船運庚津，使之分救最急之邑。” 上可之。 右議政金德遠曰：“節用愛民，王政之所先。 況當凶歲，尤宜節損？ 冬至使行時，尙方貿易，亦須量宜省減，以示節儉之意。” 上許之。</p> |
| <p>숙종 22권, 16년 (1690 경오 / 청 강희 (康熙) 29년) 7월 27 일(병진) 3번째기사</p> | <p>예조(禮曹)에서 장렬 왕후(莊烈王后)를 태묘(太廟)에 합부(祫祔)한 뒤의 진하(陳賀)·반교(頒敎)·음복연(飲福宴) 등의 절차를 계품(啓稟)하니, 임금이 모두 멈추라고 명하였다. 예조에서 다시 아뢰기를,</p> <p>“삼년상(三年喪)이 끝나고 부모례(祔廟禮)를 지낸 뒤에 조정에 납시어 진하받고 팔방에 반교하는 것은 열성(烈聖)께서 이미 행하신 제도입니다. 음복연은 신묘년(7138) 이후 세 번의 부모(祔廟) 때에도 다 권정하였으나, 진하·반교는</p> | <p>○禮曹以莊烈王后祔太廟後，陳賀頒敎飲福宴等，節次啓稟。 上竝命停止。 禮曹復啓曰：“三年制畢，祔廟禮成後，臨朝陳賀，頒敎八方，乃列聖已行之制也。 飲福宴則辛卯祔廟時，因下敎議大臣權停。 辛丑後三度祔廟時，亦皆權停。 而陳賀頒敎則未嘗不行。 誠</p> |

| | | |
|---|--|--|
| | <p>행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 참으로 열성께서 행하신 예(禮)를 폐지할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드디어 음복연은 멈추고 진하·반교만은 행하라고 명하였다</p> | <p>以列聖所行之禮，不可停廢而然也。” 上遂命停宴，而只行陳賀頒教。</p> |
| <p>숙종 22권, 16년 (1690 경오 / 청 강희 (康熙) 29년) 8월 7일 (을축) 1번째기사</p> |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來善)이 청하기를,</p> <p>“휘릉(徽陵)에 전알(展謁)할 때에 휘릉·송릉(崇陵)에는 위에서 친히 전알하시고 그 나머지 세 능에는 대신(大臣)을 보내어 섭행(攝行)하게 하소서.”</p> <p>하였다. 대개 임금이 편찮던 기후가 막 나았기 때문이었는데, 임금이 처음에는 굳이 거절하다가 마침내 윤허하였다. 목내선이 또 청하기를,</p> <p>“황해도의 대미(大米)·소미(小米)7143) ·피곡(皮穀)7144) 1만 석(石)을 먼저 경강(京江)에 배로 날라 와서 얼음이 풀리거든 양남(兩南)에서 날라 가게 하고, 평안도의 대미 4만 석을 오는 2월에 옮겨 보낼 것으로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암(閔黯)이 말하기를,</p> <p>“신(臣)이 통진(通津)으로부터 강도(江都)의 형세를 두루 보니, 문수산(文殊山)이 강화부성(江華府城)의 주산(主山)인데, 동북으로 갑곶이[甲串]·강화 성중(江華城中)까지 다 눈 안에 들어옵니다. 예전부터 다들 강화(江華)를 지키려면 문수산(文殊山)에 성을 쌓아야 한다고 말하거니와, 5리를 미처 쌓지 않아서 곧 강에 이르니, 이 성이 무너지기 전에는 적이 오더라도 사방에 손댈 곳이 없습니다. 뒷날에 혹 대가(大駕)가 와서 머무는 때가 있더라도 도인(都人)·사</p> | <p>○乙丑/引見大臣備局諸宰。 左議政睦來善：“請於徽陵展謁時，徽陵、崇陵則自上親謁。 而其餘三陵，遣大臣攝行。” 蓋以上未寧之候新差故也。 上始靳而終許之。 來善又請：“黃海道大小米皮穀一萬石， 先爲漕運於京江， 待解冰使兩南運去。 平安道大米四萬石， 以來二月運來， 以爲轉送之地。” 上可之。 兵曹判書閔黯曰：“臣自通津， 周觀江都形勢， 則文殊山爲江華府城之主山。 東北至甲串、江華城中， 皆在眼中。 自古皆言欲守江華， 則當就文殊山築城。 築之未及五里而直至于江， 則此城未破之前， 敵兵雖至， 四無着手處。 設令他日， 或有大駕臨駐之時， 都人士女， 守之甚便。 而山多峻阻， 不必作城， 以女牆築之。 如仁王、白岳， 則此不過數里許。 用力小而見功多， 役卒則通津一邑， 足以當之。 因自袖中出一幅圖， 以手指陳曰： ‘此爲高麗山， 彼爲穴窟山。’ 兩山湊</p> |

| | | |
|--|---|--|
| | <p>녀(士女)가 지키기 매우 편리한데, 산은 높고 막힌 데가 많으므로 성을 만들 것 없이 인왕산(仁王山)·백악(白岳)처럼 여장(女牆)을 쌓으면, 이는 두어 리쯤에 지나지 않으므로 드는 힘은 적고 나타나는 공은 많을 것이고, 일할 균줄은 통진(通津) 한 고을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고, 따라서 소매 안에서 한 폭의 그림을 내어 손으로 가리키며 아뢰기를,</p> <p>“이것이 고려산(高麗山)이고 저것이 혈굴산(穴窟山)인데, 두 산이 모여 합친 곳은 겨우 두어 리쯤 되고 또 그 가운데에 작은 고개가 있으니, 참으로 하늘이 베풀어 성을 만든 곳입니다. 그 터는 남한(南漢)과 다를 것이 없는데, 남한은 산 위가 트였으나, 이 산은 위가 높고 아래가 낮으므로 좌우에 용도(甬道)7145) 를 쌓아서 조운(漕運)을 통하면 곧바로 성밑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니, 지키고 싸우기가 다 편리하고 혹 지키지 못하더라도 바다에 떠서 피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王)이 수상(首相)이 출사(出仕)하거든 상의하여 처치하라고 명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관징(李觀徵)이 말하기를,</p> <p>“휘릉(徽陵)에 친히 거둥하실 때에 곡례(哭禮)를 행하는 것으로 마련하였습니 다마는, 근시(近侍)하는 신하들은 위에서 곡하는 데에 따라서 곡하겠으나, 배제(陪祭)하는 백관(百官)은 혼전(魂殿)에서 배제할 때에 곡례가 없고, 《오례의(五禮儀)》에도 연제(練祭) 뒤에 백관이 곡림(哭臨)한다는 글이 없으니, 이번(今)에 능소(陵所)에 배종(陪從)하는 백관은 곡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王)이 윤허하였다.</p> | <p>合處，僅數里許，又有小山峙其中，實是天設作城之處也。其基址無異南漢。而南漢則山上開局，此山則上高下低，若左右築甬，以通漕運，則可以直抵城下，守戰俱便。而設或失守，又有浮海可避之路矣。”上命待首相出仕後，商議處之。禮曹判書李觀徵曰：“徽陵親幸時，以哭禮磨鍊矣。近侍諸臣，從上哭而陪祭。百官則魂殿陪祭時，無哭禮。《五禮儀》，亦無練後百官哭臨之文。今番陵所陪從百官，當勿哭。”上可之。</p> |
|--|---|--|

| | | |
|---|--|---|
| <p>숙종 22권, 16년 (1690 경오 / 청 강희 (康熙) 29년) 8월 17 일(을해) 2번째기사</p> | <p>예조(禮曹)에서, “지난해에 본조(本曹)에서 삼명일(三名日)에 바치는 각도의 방물(方物)을 회복 하기를 청하였는데, 특별히 명하여 정조(正朝)·탄일(誕日)에만 바치게 하셨습 니다. 올해 동지(冬至)의 방물도 줄곧 권도(權道)로 줄이지 말아야 하니, 예전 대로 회복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上)이 지금은 아직 권도로 줄이도록 명하였다.</p> | <p>○禮曹言：“上年本曹，請復三名日諸 道方物。特命只封正朝誕日矣。今 年冬至方物，不當一向權減，宜復 舊。”上命今姑權減。</p> |
| <p>숙종 22권, 16년 (1690 경오 / 청 강희 (康熙) 29년) 11월 18 일(을사) 1번째기사</p> | <p>임금이 올해의 흉작은 영남(嶺南)이 가장 심하다 하여, 본도(本道)에서 바치는 대전(大殿)·중전(中殿)·세자궁(世子宮)의 삭선(朔膳)7212) 을 내년 가을까지 권감(權減)하라고 명하였는데, 예조(禮曹)에서 신해년7213) ·임자년7214) 의 전례에 따라 약간의 새로 난 것은 참작하여 그대로 두기를 청하니, 임금이 운 허하였다.</p> | <p>○乙巳/上以今年凶歉，嶺南尤甚，命 本道大殿、中殿、世子宮朔膳，限明秋 權減。禮曹請依辛亥。壬子例，若干 新產物種，參酌仍存，上可之。</p> |
| <p>숙종 22권, 16년 (1690 경오 / 청 강희 (康熙) 29년) 11월 21 일(무신) 2번째기사</p> | <p>밤에 옥당관(玉堂官)을 소대(召對)하고 선은(宣醞)하였다. 승지(承旨) 민창도 (閔昌道)가 말하기를, “홍만수(洪萬遂)는 경악(經幄)의 신하로서 부자(父子)가 다 눈이 멀었으니, 그 정세가 가엾습니다.” 하니, 임금(上)이 특별히 녹을 주라고 명하였다.</p> | <p>○夜召對玉堂官宣醞，承旨閔昌道言： “洪萬遂以經幄之臣，父子俱廢明，其 情勢可矜。”上命特爲付祿。</p> |
| <p>숙종 22권, 16년 (1690 경오 / 청 강희 (康熙) 29년) 12월 14 일(경오) 2번째기사</p> |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권대운(權大運)이 말하기를, “면전(綿田)의 급재(給災)는 본디 규례 밖의 일이므로, 삼남(三南)의 감사(監 司)가 잇따라 치계(馳啓)하였으나, 모두 다 막았습시다마는, 뒤미처 남쪽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듣건대, 삼남의 백성을 국가에서 특별히 돌보지 않으면 모두</p> | <p>○引見大臣備局諸宰。領議政權大運 曰：“綿田給災，自是規外。故三南監 司連續馳啓，而舉皆防塞矣。追聞南 來人之言，三南之民，朝家若不別樣顧 恤，舉將填壑云，不可不念。綿田之 稅，例收黃豆，而戶曹遺儲，足以繼用</p> |

| | | |
|--|---|--|
| | <p>구령을 매우게 될 것이라 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면전의 세는 으레 황두(黃豆)로 거두는데, 호조(戶曹)의 남은 저축이 넉넉히 대어 쓸 만하다 하니, 올해 삼남 각 고을의 면전재(綿田災)는 죄다 감면하여 혜택을 베풀어야 하겠으나, 철이 이미 늦어서 재실(災實)을 살펴 낼 수 없으니, 영남(嶺南)에서 가장 심한 고을과 가장 심한 가운데에서도 더욱 심한 고을과 양호(兩湖)에서 가장 심한 가운데에서도 더욱 심한 고을의 면전세(綿田稅)를 특별히 다 감면하여 주면,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것입니다.”</p> <p>하고,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來善)도 말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p> <p>“내 뜻도 본디 그렇게 하려 하였다. 아뢰는 대로 감면하라.”</p> <p>하였다. 권대운(權大運)이 말하기를,</p> <p>“고부(古阜) 등 일곱 고을 수령(守令)의 소(疏)에 ‘신역(身役)이 세 필(疋)을 바치는 자는 한 필을 줄였더라도, 세 필의 신역은 그 수가 매우 적으므로, 두 필의 신역도 줄여 주지 않으면, 이름은 신역을 줄여 준다 하더라도, 실속은 혜택을 입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당초 묘당(廟堂)에서는 종래의 구규(舊規)를 따르고 또 경비가 넉넉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였으므로, 전에 탐진(榻前)에서 시행하지 말자는 뜻을 다 아뢰었습니다마는, 삼남의 흉년은 근고(近古)에 없던 것이니, 염려하고 돌보아서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워낙 마땅합니다. 영남과 양호의 버금가는 고을의 포(布) 두 필을 바치는 자도 모두 반 필을 줄여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上)이 윤허하였다. 공조 판서(工曹判書) 민종도(閔宗道)가 말하기를,</p> | <p>云。今年三南列邑之綿田災，宜盡蠲除，以施惠澤。而節序已晚，災實無以查出。嶺南之尤甚及尤甚之尤甚邑，兩湖之尤甚之尤甚邑，綿田稅特皆許給，則當爲一分之惠矣。”左議政睦來善亦以爲言。上曰：“予意本欲如此，依所達蠲減。大運曰：“古阜等七邑守令之疏，以爲身役納三疋者，雖減一疋，三疋之役，其數甚少。二疋之役，若不許減，則名雖蠲役，實未蒙惠云。當初廟堂一遵流來舊規，而且慮經費之不贍，故曾於榻前，悉陳其勿施之意矣。三南凶歉，近古所無，固當軫恤，以慰民心。嶺南及兩湖次邑納布二疋者，並減半疋，恐爲得宜。”上可之。工曹判書閔宗道曰：“嶺南木花之失稔，朝廷之所知。而賑恤廳所納虎贖布，本道監司李聘命馳報請減。其在恤民之道，似當許施。既減嶺南則兩湖亦不宜異同。三南庚午條虎贖布，合而計之，乃八十餘同，並許全減，以施恩澤，似或無妨。”上可之。大運曰：“江都築城，實是陰雨之備。軍門之器械已辦，始役之期日已近，似難中止。而三南大飢，民將填壑，一邊設賑，一</p> |
|--|---|--|

| | | |
|--|--|--|
| | <p>“영남의 목화 흉년은 조정(朝廷)에서 아는 바인데, 진휼청(賑恤廳)에 바치는 호숙포(虎贖布)를 본도(本道)의 감사 이담명(李聃命)이 치보(馳報)하여 줄여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백성을 돌보는 도리로서는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듯한데, 영남을 줄여주고 보면 양호도 달리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삼남의 경오년(7219) 호숙포를 합계하면 80여 동(同)이니, 모두 전감(全減)하여 은택을 베풀어도 무방한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윤택하였다. 권대운이 말하기를,</p> <p>“강도(江都)에서 성을 쌓는 일은 실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인데, 군문(軍門)의 기계도 이미 장만되고 일을 시작할 날도 이미 가까와졌으므로 중지하기 어려울 듯하나, 삼남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구령을 메우게 되었는데, 한편으로 진휼(賑恤)을 베풀고 한편으로 성을 쌓는 것은 듣기에 놀라울 뿐더러 백성의 원망을 가져올 것이니, 우선 멈추고 가을이 되거든 일을 시작하는 것만 못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강도에서 성을 쌓는 것은 나라의 중대한 일인데, 기계가 이제 이미 장만되었고 기일도 멀지 않았으니, 결코 멈출 수 없다.”</p> <p>하였다. 이조 참판(吏曹參判) 권유(權愈)·형조 판서(刑曹判書) 유명현(柳命賢)이 이어서 불가함을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 <p>邊築城，非但有駭聽聞，抑恐必致民怨，不如姑停，待秋始役矣。”上曰：“江都築城，國之重事。器械今已辦備，期日亦且不遠，決難停止也。”吏曹參判權愈、刑曹判書柳命賢繼言不可。上曰：“保障之地，虛跡莫甚。而彼國消息，亦且可憂。故予意定欲築之，不可中輟。”來善曰：“臣之請使三軍門赴役者，蓋出於恤民之意也。即今器械，皆已辦備，而若退秋後，歲又不登，則勢將更退。如此之際，許多物力，盡歸虛套，此甚可慮。”大運與諸臣，迭陳其宜停。上曰：“一邊設賑，一邊築城，實爲未安，予非不知此也。我國本來悠泛，無一實事。丙子以後五十餘年，保障重地，無所措置。而今以年凶，又爲中止，則此後幾年可以完役？此予所以持難也。”大運曰：“此則聖明之下教允當。而廟議既定，雜物既備，今雖姑停，終無不成之理。況聖教之勸懇至此，諸臣安敢不爲奉行乎？”來善曰：“諸臣所達，爲民也，非爲遷就計也。”上曰：“築斯城以爲日後駐蹕之所。故雖值凶歲，不欲停止者此也。以丙子事言之，自義州到京</p> |
|--|--|--|

| | | |
|--|--|--|
| | <p>“보장(保障)하는 땅이 허술하기가 막심하고, 저 나라의 소식도 근심스러우므로, 내 뜻은 반드시 쌓으려 하니, 중간에 그만둘 수 없다.”</p> <p>하였다. 목내선이 말하기를,</p> <p>“신(臣)이 삼군문(三軍門)을 시켜 부역(赴役)하게 하기를 청한 것은 대개 백성을 돌보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기계가 모두 장만되었는데 가을 뒤로 물린다면, 또 흉년이 들면 형세가 장차 다시 물릴 것이고, 이렇게 할 즈음에 허다한 물력(物力)이 죄다 허비로 돌아갈 것이니, 이것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p> <p>하고, 권대운과 여러 신하가 멈추어야 마땅하다고 번갈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p> <p>“한편으로 진흙을 베풀면서 한편으로 성을 쌓는 것은 참으로 미안한 일이지니와,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는 본래 느릿하여 하나도 성실한 일이 없다. 병자년(7220) 이후 50여 년 동안 보장하는 중요한 땅에 조치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 흉년이라 하여 또 중지하면 이 뒤로 몇 해나 지나야 일을 끝낼 수 있겠는가? 이것이 내가 지난(持難)하는 까닭이다.”</p> <p>하였다. 권대운이 말하기를,</p> <p>“이는 성명(聖明)의 하교(下敎)가 마땅하나, 묘당의 의논이 이미 정하여졌고 여러가지 물건도 이미 장만되었으므로, 이제 잠시 멈추더라도 끝내 성취하지 못할 리가 없는데, 더구나 성교(聖敎)가 이토록 간절하시니, 신하들이 어찌</p> | <p>城, 千有餘里。而胡兵長驅, 如入無人之境, 渡江三日, 已到慕華館。大駕蒼黃, 將出都門, 而江都路絕, 無他可往。故殿坐于崇禮門, 下詢駐蹕之處, 遂幸南漢。其時若不築山城, 將何所避兵乎? 至今思之, 心骨俱寒。今卿等之必欲姑停者, 實爲生民, 予非不知此言之爲是也。或慮一年二年, 漸至遷就, 終不能完役也。”諸臣齊聲而對曰: “聖明以遷就爲慮, 此則臣等之罪也。日後駐蹕之所, 臣等雖甚無狀, 安敢遷就, 不爲奉承聖教乎?” 上曰: “初使三軍門赴役者, 爲其不煩民力也。予意則斷不欲中輟, 而卿等之言如此, 姑令停止, 待秋始役可也。” 大運曰: “聖上既允臣等之言, 有此停役之教, 孰不欽仰殿下恤民之盛德也哉? 似當別爲備忘, 以示聖明爲民停止之至意也。” 上許之。大運曰: “頃者備忘記, 實出於勸獎文學之意也。賜暇讀書, 雖是盛事, 支供之際, 糜費不貲, 如此凶年, 不可爲也。曾前湖堂被抄人, 月終書呈, 製述則大提學逐月科次, 此所謂朔啓也。若先行此法, 可無支供之弊, 而亦不失勸課之道</p> |
|--|--|--|

| | | |
|--|---|-----------------|
| | <p>감히 봉행하지 않겠습니까?”</p> <p>하고, 목내선이 말하기를,</p> <p>“신하들이 아뢴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고, 미루려는 생각이 아닙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 성을 쌓아서 뒷날에 주필(駐蹕)하는 곳으로 삼으려는 것이므로, 흉년을 당하였다더라도 멈추지 않으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병자년의 일로 말하면, 의주(義州)에서 경성(京城)까지는 1천여 리인데, 호병(胡兵)이 장구(長驅)하여 마치 사람이 없는 지경을 들어오듯 하여 압록강을 건넌 지 사흘 만에 이미 모화관(慕華館)에 이르렀다. 대가(大駕)가 황급히 도문(都門)을 나가려 하였으나, 강도로 가는 길이 끊어지고 달리 갈 만한 데가 없으므로, 숭례문(崇禮門)에 전좌(殿坐)하여 주필할 곳을 하문하여 드디어 남한(南漢)으로 거둥하였다. 그때 산성(山城)을 쌓지 않았다면, 어디에서 군사를 피하였을 것인가? 이제 와서 생각하면 심골(心骨)이 다 오싹하다. 이제 경들이 반드시 우선 멈추려는 것은 참으로 백성을 위한 것이니, 내가 그 말이 옳다는 것은 모르는 것은 아니나, 혹 한 해 두 해 점점 미루게 되어 마침내 일을 끝내지 못할까 염려스럽다.”</p> <p>하였다. 신하들이 말소리를 같이하여 대답하기를,</p> <p>“성명(聖明)이 미루게 될 것을 염려하시니, 이는 신들의 죄입니다. 뒷날에 주필할 곳인데, 신들이 매우 변변치는 못하더라도 어찌 감히 미루고 성교를 받</p> | <p>矣。” 上允之。</p> |
|--|---|-----------------|

| | | |
|--|---|--|
| | <p>듣지 않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당초에 삼군문을 시켜 부역하게 한 것은 백성의 힘을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한 것이니, 내 뜻으로는 결단코 중간에서 그만두고 싶지 않으나, 경들의 말이 이러하니, 우선 멈추고 가을이 되거든 일을 시작하도록 하라.”</p> <p>하였다. 권대운이 말하기를,</p> <p>“성상께서 신들의 말을 윤택하시어 일을 멈추라는 분부가 계셨으니, 누구인들 전하께서 백성을 돌보시는 성대한 덕을 공경히 우러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비망기(備忘記)를 만들어서 성명이 백성을 위하여 멈추게 하신 지극한 뜻을 보여야 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윤택하였다. 권대운이 말하기를,</p> <p>“지난번의 비망기는 참으로 문학을 권장하시는 뜻에서 나왔으니, 사가 독서(賜暇讀書)는 성대한 일이기 하나, 지공(支供)할 즈음에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흉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호당(湖堂)에 뽑힌 사람이 월말에 제술(製述)을 써서 바치면 대제학(大提學)이 달마다 차례를 매겼는데, 이것이 이른바 삭계(朔啓)입니다. 먼저 이 법을 시행하면, 지공하는 폐단을 없앨 수 있고 또한 권과(勸課)하는 도리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윤택하였다.</p> | |
|--|---|--|

| | | |
|---|--|---|
| <p>숙종 22권, 16년 (1690 경오 / 청 강희 (康熙) 29년) 12월 15 일(신미) 2번째기사</p> | <p>삼남(三南)의 전조(田租)를 줄였다. 이때 팔도에 큰 흉년이 들었으므로, 각도의 감사(監司)가 잇따라 치계(馳啓)하여 혹 급재(給災)을 청하기도 하고, 진자(賑資)를 청하기도 하고, 신역(身役)을 감면하기를 청하기도 하였는데, 다섯도(道)의 흉년은 삼남과 같지는 않으므로 비국(備局)에서 방계(防啓)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영남은 재실(災實)을 5등으로 나누어 가장 심한 곳과 가장 심한 가운데에서도 더욱 심한 곳인 상주(尙州) 등 31읍(邑), 양호(兩湖)는 4등으로 나누어 호남의 가장 심한 가운데에서도 더욱 심한 영암(靈巖) 등 12읍과 호서의 가장 심한 가운데에서도 더욱 심한 황간(黃澗) 등 심한 4읍의 여러 가지 전세(田稅)를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고, 갖가지 신포(身布)를 모두 감면하였다. 그 나머지 조금 나은 고을들은 재해의 경중을 헤아려서 반을 줄이기도 하고 3분의 1을 줄이기도 하고, 포(布) 3필(疋)을 바치는 자는 1필을 줄이고 2필을 바치는 자는 반 필을 줄였다. 경창(京倉)과 서북 두 도(道)의 곡식은 내년 봄 이전에 옮겨서 진휼(賑恤)의 밑거리로 삼게 하고, 한정(閑丁)의 세초(歲抄)도 다 정지하였다. 강원도·함경도의 재해를 입은 약간의 고을은 미포(米布)를 재량하여 줄이고 진자(賑資)를 재량하여 주었다.</p> | <p>○減三南田租，時八路大饑，各道監司連續馳啓，或請給災，或請賑資，或請蠲身役。而五道失稔，不至三南，故備局防啓不許。嶺南則分災實五等，尤甚及尤甚之尤甚尙州等三十一邑。兩湖分爲四等，而湖南之尤甚之尤甚靈巖等十二邑，湖西之尤甚之尤甚黃澗等四邑，諸般田稅，舉皆停捧。各樣身布，一竝蠲減。其餘稍勝諸邑，量災輕重，或減半或三分減其一。納布三疋者減一疋，納二疋者減半疋。京倉及西北兩道米粟，趁明春移轉，以爲賑恤之資。至於閑丁歲抄，亦皆停止。江原、咸鏡兩道被災若干邑，裁減米布，量給賑資。</p> |
| <p>숙종 22권, 16년 (1690 경오 / 청 강희 (康熙) 29년) 12월 23 일(기묘) 2번째기사</p> | <p>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來善)이 청대(請對)하여, 소매 안에서 차기(筭記)를 내어 바치고,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담명(李聃命)이 조정(朝廷)에 품의(稟議)하지 않고 마음대로 신역(身役)을 감면하여 준 잘못을 극진히 아뢰고 이어서 엄중히 추고(推考)하기를 청하고, 또 말하기를, “어사(御史)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 삼남(三南)에서 진휼(賑恤)을 베푼 뒤에 자주 보내어 진정(賑政)의 근만(勤慢)을 살펴서 상벌(賞罰)을 분명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어사에 합당한 사람을 비국(備局)에서 뽑아 아뢰게 하고 이담명</p> | <p>○左議政睦來善請對，袖進筭記，極陳慶尙監司李聃命不稟朝廷任自蠲役之失，而仍請從重推考。又言抄擇御史可合人，三南設賑之後，頻頻發送，察賑政勤慢，以明賞罰。上命御史可合人，令備局極擇以啓。李聃命從重推考。來善曰：“外方之民，凡干繇役，無不謀避。至於大同收米，則雖值凶歉，亦不敢不納，爲守令者，不當任意自斷。而臣取考三南所報宣惠廳文書，</p> |

| | | |
|---|--|--|
| | <p>은 엄중히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목내선이 말하기를,</p> <p>“외방(外方)의 백성은 모든 부역에 관한 것을 무엇이나 다 피하려고 피합니다. 대동 수미(大同收米)에 있어서는 흉년을 만났더라도 감히 바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수령(守令)인 자가 뜻대로 결단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신(臣)이 삼남(三南)에서 선혜청(宣惠廳)에 신보(申報)한 문서를 가져다 살펴보니, 빌어준 자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도 있고 마음대로 읍기기도 하고 남에게 주어 이익을 꾀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이 지극히 놀라우므로, 이미 각도로 하여금 그 관리를 사핵(查覈)하게 하였거니와, 그 보장(報狀)이 오면 본디 매우 징계하여야 하겠으나, 진휼(賑恤)을 베푸는 이때에 교체하는 것은 폐단이 있으니, 시임(時任) 수령은 영문(營門)에서 결곤(決棍)하고 이미 갈린 자는 나수(拿囚)하여 결곤하고 색리(色吏)는 영문에 잡아다가 각별히 엄하게 형신(刑訊)하고 곡물은 내년 가을이 되거든 빠짐없이 독촉하여 받아들이라고 해청(該廳)과 각도에 부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 <p>則或有許貸者，或有不捧者，或擅自那移，或給人牟利，事極可駭。故已令各道，查覈其官吏矣。待其報狀，固當痛懲。而當此設賑之時，遞易有弊，時任守令，營門決杖。已遞者拿囚決杖，色吏拿致營門，各別嚴刑。其穀物待明秋無遺督捧事，分付該廳及各道，似爲便好。”從之。</p> |
| <p>숙종 23권, 17년 (1691 신미 / 청 강희 (康熙) 30년) 1월 1일 (정해) 1번째기사</p> | <p>비국(備局)7224) 에서 옥천 군수(沃川郡守) 정이상(鄭履祥) 등 네 고을 수령(守令)의 소(疏) 때문에 회계(回啓)하기를,</p> <p>“양진창(楊津倉)의 곡식 1만 석(石)을 영남(嶺南)으로 옮겨 보내는 것 이외는 도신(道臣)7225) 을 시켜 참작하여 갈라 주게 하고, 진청(賑廳)7226) 의 잡곡 1천 석도 본도(本道)를 시켜 얼음이 녹거든 배로 양진창에 날라가게 하되, 네 고을 가운데 양진에서 자못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가까운 고을의 적곡(糶穀)을 옮겨다가 대체하여 주어서 날라 가는 폐단을 덜게 하소서.”</p> | <p>○朔丁亥/備局以沃川郡守鄭履祥等四邑守令疏，回啓曰：“楊津倉穀一萬石，移送嶺南之外，令道臣參酌劃給。賑廳雜穀二千石，亦令本道，待解水船運於楊津倉。而四邑之距楊津頗遠處，以近邑糶穀，推移替給，以除輓輸之弊。”上允之。</p> |

| | | |
|---|---|--|
| <p>숙종 23권, 17년 (1691 신미 / 청 강희 (康熙) 30년) 1월 3일 (기축) 1번째기사</p> | <p>하니, 임금(允許)하였다.</p>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권대운(權大運)이 말하기를,</p> <p>“정중만(鄭重萬)의 아내가 상지(上旨)를 빙자하여 어찰(御札)을 속여 만들고 거짓말을 만들어 내서 바깥에 퍼뜨렸으므로,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성상께서는 법을 굽히고 은혜를 베풀어 마침내 엄중히 처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뒤로는 더 염려하고 일체 엄금하여, 밖의 말이 들어오지 못하고 안의 말이 나가지 못하게 하시면, 궁금(宮禁)이 엄숙하여질 것입니다.”</p> <p>하니, 임금(允許)하였다.</p> <p>“정중만의 아내는 내가 그 참화(慘禍)끝에 살아남은 것을 가엾게 여겨서 때로 물건을 내려 주고 더러 만나 보기도 하였는데, 그 사람됨이 경박하고 외람되어 진실보다 불려서 뽑내어 이렇게 되었으니, 참으로 개탄할 만하다.”</p> <p>하였다. 우의정(右議政) 김덕원(金德遠)이 말하기를,</p> <p>“여염의 부녀자는 흔히 무당의 말을 믿는데, 궁중에도 여인이 많으니, 이런 일이 반드시 없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들이 드나들 즈음에 안의 일을 누설하는 것이 많으니,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p> <p>하니, 임금(允許)하였다.</p> <p>“유의하겠다.”</p> | <p>○己丑/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權大運曰：“鄭重萬之妻，憑藉上旨，矯作御札，做出虛罔之言，傳說外間，罪不可容貸。 而自上屈法伸恩，終不重處，此後宜加惕慮，一切嚴禁，使外言不入，內言不出，則宮禁嚴肅矣。” 上曰：“重萬妻，予憐其慘禍餘生，時有賜與，或與之相接，其爲人浮濫，矜誇過實，以至於此，良可慨也。” 右議政金德遠曰：“閭巷婦女，多信巫覡之言。 宮中亦多女人，安知其必無此事？ 此輩出入之際，多泄內間事，是可慮也。” 上答以留心。 大運。 德遠，以三南凶歉，請減尤甚邑田稅大同。 上從之。 大運曰：“危疑之際，當選武將。 而鎮服軍情，亦在於重其名位也。 其意蓋在於陞擢訓練大將李鏞。” 上可之。 時世子年幼，尙未接宮僚。 左議政陸來善，請使宮官，有時入見，上許令待春和輪替入見。 來善又請於歲首，百歲及過九十老人，令該曹訪問，特施優老之典。 上可之。 大運以前承旨朴廷薛，頗有廉稱而年今八十，請加資，來善又以故府尹黃一</p> |
|---|---|--|

| | | |
|--|---|---|
| | <p>하였다. 권대운·김덕원이 말하기를,</p> <p>“삼남(三南)7227) 에 흉년이 들었으니, 가장 심한 고을의 전세(田稅)·대동(大同)7228) 을 감면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권대운이 말하기를,</p> <p>“위의(危疑)할 때에는 무장(武將)을 선택하여야 하며, 군정(軍政)을 진압하여 복종시키는 것도 그 명위(名位)를 중하게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p> <p>하였다. 그 뜻은 대개 훈련 대장(訓練大將) 이집(李鑣)을 발탁하려는 데에 있었는데, 임금이 윤택하였다. 이때 세자(世子)는 나이가 어려서 아직 궁료(宮僚)7229) 를 만나 보지 않았는데,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來善)이 말하기를,</p> <p>“궁관(宮官)을 시켜 때때로 들어가 만나보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봄날이 화창하여지거든 번갈아 들어가 만나보게 하도록 허락하였다. 목내선이 또 말하기를,</p> <p>“세수(歲首)에 1백 세 또는 90세가 넘는 늙은이를 해조(該曹)를 시켜 찾아서 늙은이를 우대하는 은전(恩典)을 특별히 베푸소서.”</p> <p>하니, 임금이 윤택하였다. 권대운이 말하기를,</p> | <p>皓，死於國事，其妻自先朝特給月廩。而今聞身死，無以返葬，請給喪需擔軍。竝從之。大運曰：“新生大君不幸後，其折受田地，移屬於義宮。而楊根邑內田結，亦入其中，近畿殘邑，失此無以成樣，宜速還給。此外折受處，無論遠近，竝令諸道，查啓出給，則非但除民弊，實光聖德。”來善、德遠繼陳之，上始許之。德遠陳奢侈之弊，仍曰：“臣聞宣廟未寧時，諸臣入侍，則設木綿染色帳，至着木綿袴，以此諸臣朝服，不敢如今日之鮮明，宦寺輩則不敢着錦段云。癸卯，臣爲假注書，偕內官摘奸祈雨祭所，歸路入關王廟修啓時，見其內官，姓名卽強義忠也。打話間，問內帑多寡，義忠以爲。‘仁祖大王起自閭閻，洞知民事之艱難，躬儉節用。故內司所儲，陳陳相仍。孝宗大王塞外風霜，備嘗艱苦，故凡事務從簡約，不至罄乏。至今上朝，生長深宮，節用之道，不如兩朝。卽今內藏，頗匱竭云。’其言誠切實，願益加儉約，以務節用之道。”上初頗開納，及聞義忠之言，遽怒曰：“《書》云：‘爾有嘉謨嘉猷，入告爾后</p> |
|--|---|---|

| | | |
|--|---|---|
| | <p>“전 승지(承旨) 박정설(朴廷諱)은 자못 청렴하다고 일컬어지는데, 나이가 80세이니, 가자(加資)하소서.”</p> <p>하고, 목내선이 또 말하기를,</p> <p>“고(故) 부윤(府尹) 황일호(黃一皓)는 나라의 일을 하다가 죽었으므로, 그 아내에게 선조(先朝)에서 특별히 월름(月廩)을 주었는데, 이제 듣건대, 죽었으나 고향에 돌아가 묻힐 수 없다 합니다. 청컨대, 상수(喪需)와 담군(擔軍)을 주소서.”</p> <p>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권대운이 말하기를,</p> <p>“새로 태어난 대군(大君)이 불행하게 된 뒤 절수(折受)하였던 전지(田地)는 어의궁(於義宮)에 이속(移屬)하였는데, 양근(楊根) 읍내의 전결(田結)도 그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근기(近畿)의 잔읍(殘邑)이 그 땅을 잃어서 모양을 이룰 수 없으니, 빨리 돌려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 밖의 절수하였던 곳도 멀고 가까운 것을 논할 것 없이 모두 본도(本道)를 시켜 살펴서 아뢰게 하여 내어 주면, 민폐를 덜 뿐더러 참으로 성덕(聖德)을 빛낼 것입니다.”</p> <p>하였는데, 목내선·김덕원이 잇달아 아뢰니, 임금이 비로소 윤허하였다. 김덕원이 사치의 폐단을 아뢰고, 이어서 말하기를,</p> <p>“신(臣)이 듣건대, 선묘(宣廟)께서 편찮으실 때에 신하들이 입시(入侍)하였더니 무명에 물들인 포장을 치고 무명 바지를 입으시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신하들의 조복(朝服)이 감히 오늘날처럼 고울 수 없었고, 환시(宦侍)들은</p> | <p>于內.’ 今以義忠言爲嘉謨而陳達乎? 朝臣宦官, 固不當與之酬酢。 而況敢評論先朝事者乎? 古人云: ‘當用宦官宮妾不知名者.’ 身爲大臣, 敢以義忠凶慘之言, 告達, 殊極駭然。” 仍教入侍宦官曰: “先朝雖有此事, 義忠宜不敢評論。 況以先朝所無之事, 肆然傳說於外朝? 論其心跡, 極爲凶慘。 渠雖死, 其姓名亟去內侍案, 其子、壻、弟、姪竝削名。 此後若有如此事, 則予當臬示。” 大運爲德遠陳暴其本心無他。 上終不霽怒。 德遠趨出, 上卽命罷職。 大運、來善及入侍諸臣, 相繼陳達, 以爲: “一言妄發, 遽爾譴斥, 非待大臣之體。” 上曰: “雖於敵以下, 不敢對其子弟而說父兄事, 爲臣子者, 豈敢以先朝事, 肆然陳達, 語犯先朝? 不可以大臣而寬恕也。” 大司諫陸林一、持平金文夏, 俱發德遠罷職還收之請, 皆不從。</p> |
|--|---|---|

감히 비단옷을 입지 못하였다 합니다. 계묘년(723) 신이 거주서(假注書)였을 때에 내관(內官)과 함께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는 곳에 가서 적간(摘奸)하였는데, 돌아오는 길에 관왕묘(關王廟)에 들어가서 계사(啓辭)를 쓸 때에 강의충(強義忠)이라는 그 내관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내탕(內帑)의 다과(多寡)를 물었더니, 강의충이 말하기를 ‘인조 대왕(仁祖大王)께서는 여염에서 사셔서 백성의 일이 어려움을 환히 아시므로, 몸소 검소하여 절약해서 쓰셨으므로 내사(內司)의 저축이 계속 풍부했었습니다. 효종 대왕(孝宗大王)께서는 변방 밖의 풍상(風霜)에 괴로움을 고루 겪으셨으므로, 모든 일에 힘써 간약(簡約)하게 하셔서 저축이 모자라지는 않았습시다. 금상(今上)의 조정에 이르러서는 깊은 궁중에서 태어나 자라셨으므로, 절약하여 쓰는 방도가 두 조정만 못하여 지금은 내장(內藏)이 자못 비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참으로 절실하니, 더욱 검약(儉約)하여 절약해서 쓰는 방도에 힘쓰소서.”

하니, 임금이 처음에는 자못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다가, 강의충의 말을 듣게 되어서는 문득 분노하여 말하기를,

“《서경(書經)》에 ‘그대에게 좋은 계책이 있거든 안에 들어가 그대의 임금에게 고하라.’ 하였는데, 이제 강의충의 말을 좋은 계책이라고 여겨서 아뢰었는가? 조신(朝臣)과 환관(宦官)은 본디 함께 수작하지 않아야 마땅한데, 더구나 감히 선조(先朝)의 일을 평론하는 것이었겠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환관·궁첩(宮妾)은 이름을 모르는 자를 써야 한다.’ 하였는데, 자신이 대신이면서 감히 강의충의 흉참(凶慘)한 말을 아뢰니, 지극히 놀랍다.”

하고, 이어서 입시한 환관에게 분부하기를,

| | | |
|--|--|--|
| | <p>“선조에 비록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의충이 감히 평론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더구나 선조에 없었던 일을 방자하게 외조(外朝)에 퍼뜨렸으니, 그 마음 쓴 자취를 논하면 지극히 흉참하다. 그가 죽었을망정 그 성명을 내시안(內侍案)에서 빨리 없애고, 그 아들·사위·아우·조카도 모두 이름을 삭제하라. 이 뒤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 내가 효시(梟示)7231) 하겠다.”</p> <p>하였다. 권대운이 김덕원을 위하여 그 본심에 다른 뜻이 없었다고 아뢰었으나, 임금의 끝내 분노를 풀지 않았다. 김덕원이 종종걸음으로 달려 나가니, 임금이 곧 파직(罷職)하라고 명하였다. 권대운·목내선과 입시한 신하들이 한마디 망발하였다 하여 문득 꾸짖어 내치는 것은 대신을 대우하는 예(禮)가 아니라고 서로 잇달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동등 이하일지라도 감히 그 자제에게 부형의 일을 말하지 못하는데, 신하로서 어찌 감히 선조의 일을 방자하게 아뢰 수 있는가? 말이 선조를 범하였으니, 대신이라 하여 용서할 수 없다.”</p> <p>하였다. 대사간(大司諫) 목임일(睦林一)·지평(持平) 김문하(金文夏)가 다 김덕원의 파직을 도로 거두어 달라는 청을 냈으나, 다 따르지 않았다.</p> | |
| <p>숙종 23권, 17년 (1691 신미 / 청 강희(康熙) 30년) 1월 19일(을사) 2번째기사</p> |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권대운(權大運)이, 도하(都下)에서 굶주려 고생하는 것이 특별히 심하다 하여, 호조(戶曹)에 사들여 둔 곡식 1만여 석을 내어 싸게 팔 것을 청하고, 이어서 임금이 특별히 비망기(備忘記)를 내려서 시행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드디어 하교(下敎)하여 누누이 도하의 백성을 염려하는 뜻을 자세히 보이므로, 해조(該曹)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였다. 권대운이 말하기를,</p> | <p>○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權大運， 以都下饑困特甚， 請出戶曹買置穀萬餘石， 從輕發賣。 而仍請自上特下備忘記以行之。 上遂下敎縷縷， 備示軫念都民之意， 令該曹舉行。 大運曰：“新折受處， 既有還給之教矣。 伊川有訓練</p> |

| | | |
|--|---|--|
| | <p>“새로 절수(折受)한 곳은 이미 돌려주라는 분부가 계셨습니다. 이천(伊川)7239) 에 훈련 도감(訓練都監)의 둔전(屯田) 한 곳과 황장소봉(黃腸所封)7240) 세 곳이 있는데, 모두 절수에 들어갔다고 어의궁(於義宮)에 이속(移屬)되었습니다. 양근(楊根) 읍내도 그 가운데에 들었으니, 돌려주도록 명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윤택하였다. 권대운이 말하기를,</p> <p>“경외(京外)의 백성이 이 큰 흉년을 당하여 모두 구렁을 메워 죽는데, 녹봉(祿俸)에서만 줄이지 않으니, 참으로 미안합니다. 연신(筵臣)이 많이 말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우리 나라의 녹봉은 원래 박하니, 참으로 충신(忠信)으로 대우하고 녹봉을 후중(厚重)하게 주는 뜻이 아니다. 나는 줄이고 싶지 않으나, 신하들이 아뢰는 것이 이러하니, 마지 못하여 따른다.”</p> <p>하였다.</p> | <p>都監屯田一處及黃腸所封三處，竝入於折受，移屬於義宮。 楊根邑內，亦入其中，請命還給。” 上可之。 大運曰：“京外民生，值此大無，舉皆填壑，而獨於祿俸，不爲減省，實未安矣。” 筵臣多以爲言。 上曰：“我國祿俸，元來薄略，實非忠信重祿之義。 予意則不欲減省。 而諸臣所達如此，不得已從之。”</p> |
| <p>숙종 23권, 17년 (1691 신미 / 청 강희 (康熙) 30년) 1월 28 일(갑인) 1번째기사</p> | <p>진선(進善) 정시한(丁時翰)이 지방에서 상소(上疏)하여 시폐(時弊)를 아뢰었다. 정원(政院)에서 말하기를,</p> <p>“소(疏) 가운데에 폐서인(廢庶人)을 별궁(別宮)에 살게 하고糯米(麩料)를 주</p> | <p>○甲寅/進善丁時翰從縣道，上疏陳時弊。 政院言：“疏中有廢庶人處別宮給麩料之語，此等疏，曾有勿捧之令，何以爲之？ 上，下教曰：“鼓簧邪說，愈</p> |

| | | |
|--|--|--|
| | <p>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는 일찍이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의 하교(下敎)하기를,</p> <p>“현혹[鼓簧]하는 사설(邪說)이 갈수록 심하여지니, 각별한 정치(懲治)가 있어야 하겠다.”</p> <p>하고, 이어서 그 소를 받아들이라고 명하였다. 그 소는 이언적(李彦迪)의 일강십목소(一綱十目疏)7242 가운데에서 임금의 마음을 바꾸고[正君心], 집안의 다스림을 엄하게 하고[嚴家政], 세자를 교양하고[養國本], 조정을 바꾸고, 사람을 쓰고 버리는 것을 삼가고[慎用舍], 언로를 연다[開言路]는 여섯 조목을 따서 그 대략을 서술하고 이어서 자기 의견을 붙인 것인데, 첫번째에 이르기를,</p> <p>“마음을 바꾸는 도리는 반드시 학문을 힘쓰는 데에서 말미암아야 합니다. 신(臣)이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점차로 깊고 두텁게 수양하는 공부가 혹 모자라시고, 마음을 가라앉혀 치밀하게 생각하는 기상이 아주 없으시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개 경쾌(輕快)한 데에 손상되거나 조급(粗急)한 데에 실추(失墜)되는 바가 많고, 희로(喜怒)가 정도에 지나친 바가 없지 아니하여 사기(辭氣)가 혹 분노에 이르기까지도 하십니다. 바라건대, 마음에 돌이켜 반드시 삼가서 이를 살피, 이 마음의 대용(大用)이 순수하여 한결같이 크게 공변되고 지극히 바른 길에서 나오게 하소서.”</p> <p>하고, 두 번째에 이르기를,</p> | <p>往愈甚，宜有別樣懲治，仍命捧入其疏。”就李彦迪一綱十目疏中，取其正君心、嚴家政、養國本、正朝廷、慎用舍、開言路六條，述其大略，仍附己意：“一曰，正心之道，必由於懋學。臣竊念殿下，或欠涵養深厚底工夫，殊無沈潛縝密之氣象，發於外者，率多傷於輕快，失於粗急，喜怒不無過差，辭氣或至忿懣。伏願反之於心，必謹而察之，使此心之大用，粹然一出於大公至正之路。二曰，前代治亂，未嘗不由於家道之正不正。今殿下，聖德光明，以御家邦。而中宮殿新陞壺極，以贊內治。閨門之內，自當整肅，而先事之戒，不可不存。向者，戚里至於私謁便殿，以售奸謀。宦寺至於交結搢紳，以作權勢，若一向信用，則不幾於亡殿下國哉？今當正始之日，必須痛自懲艾，如有宦寺便嬖之類，交通內外，復開邪徑者，即付有司，繩以重律焉。自古人君，多以威屬爲肺腑之臣，而信任不疑，以致專擅威福，貽禍於國。戚里之竊據兵柄，釀成禍階，非但國家之不幸，亦非保全之道也。殿下撫愛宗戚，無間親疎，況在先王同氣</p> |
|--|--|--|

“전대(前代)의 치란(治亂)은 일찍이 가도(家道)의 정부정(正不正)에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성덕(聖德)이 광명(光明)하여 국가를 다스리시고, 중궁전(中宮殿)은 새로 곤극(壺極)7243)에 올라 내치(內治)를 도우시니, 규문(閨門)안이 절로 정숙(整肅)하여야 하고, 앞서 있던 일의 경계를 간직하지 않아서는 안되는데, 지난번에 척리(戚里)가 편전(便殿)에서 사알(私謁)하여 간사한 꾀를 부리기까지 하였고, 환시(宦寺)가 진신(摺紳)과 교결(交結)하여 권세를 만들기까지 하였으니, 만약 한결같이 믿고 쓰시면 전하의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시(正始)할 때를 당하였으므로 반드시 매우 스스로 징계해야 하니, 환시·편폐(便嬖)7244)의 무리로서 안팎으로 교통하며 간사한 길을 다시 여는 자가 있으면, 곧 유사(有司)에 붙여서 중률(重律)로 다스려야 합니다. 예전부터 임금이 흔히 척속(戚屬)을 폐부(肺腑)의 신하로 삼고 신임하고 의심하지 않아서 위복(威福)을 마음대로 하여 나라에 재앙을 끼쳤으니, 척리가 병권(兵權)을 차지하여 재앙의 계제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불행일 뿐더러 그를 보전하는 방도도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종척(宗戚)을 사랑하여 친소(親疎)에 차이를 두지 않으시는데, 더구나 선왕(先王)의 동기(同氣)이겠습니까? 아아, 두 공주가 젊은 나이에 홀로 되어, 어질지 못한 아들이 하늘에 죄를 지었으나, 부인(婦人)의 좁은 본성 때문에 그 아들의 악한 것을 모르고 근심하여 병이 된다면, 어찌 슬퍼서 감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후하게 은례(恩禮)를 더하여 그 마음을 위로하여 풀어 주어서 친족을 친애하는 의리를 두텁게 하소서.

폐비(廢妃)는 전하께서 짝하신 지 거의 10년이나 되므로, 전하께서는 배필로 대우하시고 신민(臣民)은 어머니에 대한 도리로 섬겼으니, 이제 폐기되기는 하였으나, 별궁(別宮)에 살게 하고, 예(禮)로 대우하여 전일의 은의(恩義)를

乎? 噫! 兩貴主青年孀居, 有子無良, 獲戾于天。 婦人褊性, 莫知其子之惡。 憂傷成疾, 則豈不惻然傷感哉? 伏望曲加恩禮, 慰解其心, 以篤親親之義焉。 廢妃配體殿下, 幾至十年。 殿下以伉儷遇之, 臣民以母道事之。 今雖見廢, 猶當處之別宮, 待之以禮, 以全舊日之恩義。 而今乃不然, 加以庶人之號, 置諸閭閻之中, 待之無已太薄乎? 殿下雖引漢光武爲證, 而光武猶聽邳惲之言, 厚待郭后。 處之沛國, 恩禮不替。 未聞其爲庶人而處之閭閻也。 其後明帝, 克追先志, 禮待陰郭, 每事必均。 光武之事, 卽我殿下今日處變之道也。 明帝之事, 卽我東宮他日取法之地也。 語云: ‘君子交絕, 不出惡聲。’ 詩述谷風, 悲其薄送我畿。 古人於相絕之際, 不能不全其恩義, 以存不得已之心也。 今殿下。 殊欠惻怛黽勉之意, 反有迫切少恩之舉, 此中外人心所以久而愈鬱者也。 頃因儒臣大臣之所達, 有修理別宮, 繼給廩料之命, 而旋即停罷。 此聖德之既光而復晦者也。 臣竊惜之。 三曰, 世子生稟異質, 岐嶷夙成, 教養輔導, 不可少

온전히 하여야 마땅한데, 이제 그렇지 못한데다가 서인(庶人)이라는 이름으로 여염 가운데에 두었으니, 대우가 너무 박하지 않습니까? 전하께서는 한(漢)나라 광무제(光武帝)의 일(7245) 을 인용하여 증거로 삼으시나, 광무제도 질운(鄧曄)의 말을 듣고 곽후(郭后)를 후하게 대우하여 패국(沛國)에 살게 하고, 은례를 변하지 않았으며, 서인을 만들어서 여염에 살게 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에 명제(明帝)도 선왕의 뜻을 따라 음후(陰后)·곽후를 예로 대우하여 일마다 반드시 고르게 하였습니다. 광무제의 일은 곧 우리 전하께서 오늘날 처변(處變)하실 방도이며, 명제의 일은 곧 우리 동궁(東宮)께서 뒷날 본받을 바탕입니다. 옛말에 ‘군자는 교제가 끊어질 때에 나쁜 소문을 내지 않는다.’ 하였고, 《시경(詩經)》 곡풍(谷風)7246) 에, ‘나를 문턱에서 전송할 뿐이다.’라고 슬피하였으니, 옛사람은 서로 끊을 때에 그 은의를 온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마치 못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제 전하께서는 슬피하고 애쓰시는 뜻이 아주 없고, 도리어 박절하게 은혜를 적게 하시는 일이 있으니, 이것이 중외(中外)의 인심이 오렐수록 더욱 답답하게 여기는 까닭입니다. 지난번에 유신(儒臣)·대신(大臣)이 아뢰어 바로 인하여 별궁을 수리하고 능료(廩料)를 잇대어 주라는 명이 계셨으나 곧 그만두셨으니, 이것은 성덕(聖德)이 빛났다가 다시 어두워진 것입니다. 신은 적어 애석하게 여깁니다.”

하고, 세 번째에 이르기를,

“세자께서는 특이한 자질을 타고나서 어려서부터 빼어나게 숙성하니, 교양하고 보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세자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가 되면, 미처 글을 가르치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궁료(宮僚)에게 명하여 차례로 들어가 보고 반드시 먼저 효제(孝悌)·충신(忠信) 등의 일을 대강 이야기하게 하고, 또 반드시 보는 물건이나 익히는 일로

緩。臣愚以爲，世子若到始學言語之時，則雖未及授書，而當命宮僚，以次入見，必先以孝悌忠信等事，略略說過。而亦必因所見之物，所習之事，觸類寓戒，以養其良知良能，則化與心成，中道若性矣。雖然保養之功，專在內侍阿保之流。必須選其溫良慈惠重厚小心者，與之居處出入，以謹保護，切勿敢以戲慢嫖狎之習，奇衰誕雜之言，賭一時之喜悅，致心志之流蕩。衣冠器用，務存朴素。珠玉錦繡，不近於身。飲食供養，亦使簡淡。肥柔膏膩，不接於口。此非但養生養德之要，亦所以介爾景福之道也。今我世子之誕降也，凡我東方億萬生靈，莫不願戴，況立殿下之朝，食殿下之祿者，其忻慕愛悅，宜無輕重之殊？當初殿下，詢問諸臣，以定名號。伊時二三宰臣，雖有異同之論，究其本心，豈有他哉？不過各陳所見，而今乃以此爲罪，一併斥退，至於除拜宮僚之時，亦不參合彼此，以廣揀選之路，舉措偏重，剖析太甚。此豈所以係一國之心而措國勢於磐石之安者哉？四曰，朝廷之所由正者，在於上下交孚，群工和

인하여 각각 유(類)에 따라 경계를 붙여서 그 양지 양능(良知良能)을 양성(養成)하게 하면 기질의 변화가 천심(天心)에 더불어 이루어져서 도리에 맞는 것이 마치 천성(天性)처럼 될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보양(保養)하는 공은 오로지 내시(內侍)·아보(阿保)의 무리에게 달려 있으므로, 반드시 온량(溫良)하고 자혜(慈惠)하고 중후(重厚)하고 소심(小心)한 자를 가려서 함께 거처하고 출입하며 삼가서 보호하게 하되, 일체 감히 버릇 없이 장난하여 친압(親狎)하는 버릇이나 상리(常理)에 벗어난 잡된 말로 한때의 기쁨을 걸어서 심지(心志)가 방탕한 데에 이르지 않도록 하고, 의관(衣冠)·기용(器用)은 소박한 것을 유지하도록 힘써서 주옥(珠玉)·금수(錦繡)를 몸에 가까이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음식의 공양도 간약하고 담박하게 하여 기름지고 부드러운 것을 입에 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양생(養生)·양덕(養德)하는 요체일 뿐만 아니라, 큰 복을 더하는 방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세자께서 탄강(誕降)하셨는데, 무릇 우리 동방의 억만 생명(生靈)으로서 받들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없는데, 더구나 전하의 조정(朝廷)에 서서 전하의 녹을 먹는 자이겠습니까? 그 혼모(忻慕)하고 애열(愛悅)하는 데에는 경중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당초 전하께서 신하들에게 물어서 명호(名號)를 정하게 하시자, 그 때에 두세 재신(宰臣)이 이론(異論)이 있었다 하나, 그 본심을 헤아려 보면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각각 소견을 아뢰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이제는 이것을 죄로 삼아 모두 물리치셨고, 궁료(宮僚)를 제배(除拜)할 때에도 피차를 섞어 함하여 선택하는 길을 넓히지 않고 거조(舉措)가 편중(偏重)되어 부식(副析)이 매우 심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한 나라의 인심을 묶어서 나라의 형세를 반석처럼 편안한 데에 두는 방도이겠습니까?”

하고, 네 번째에 이르기를,

穆, 同寅協恭, 以臻至理而已。 庚申年間, 因一妖逆, 機穽大作, 無辜含冤。 幸賴天心大悟, 幽冤畢伸。 第其更革之餘, 誅竄相繼。 此人等, 以殺戮導殿下, 而反受其殃。 然彼初非不告於殿下而擅爲之也, 乃欺誣殿下, 以售其計, 則今當悔悟之始, 殿下以前日見欺者爲戒, 朝臣以前日逞憾者爲懲。 君臣上下, 互相勸戒, 毋踵前習, 實國家之福也。 況我朝仁厚立國, 禮遇臣隣, 不妄誅殺? 豈有屢誅大臣, 如殿下之朝者乎? 夫大臣者, 人主之所禮貌也。 殿下曾不少難, 屢加誅戮, 而其所誅戮, 輒當翻覆之際, 此所以不能釋然於人心, 而國脈以之漸傷, 臣竊悶焉。 朋比之習, 其來已久, 風聲所及, 誰能脫然於色目之中? 而若其善惡心術之所在, 則雖父母兄弟, 亦有所不同, 豈可曰彼皆不善而此皆善也; 此則皆是而彼皆非也? 今乃混其心跡, 無所辨別, 當路之類則不察賢否而汲汲引進。 失志之徒則不究情罪而一切屏逐, 使屏退者含恨次骨, 得意者恣行報復。 臣恐殿下之朝廷, 征戰無已時也。 而況才難之歎, 莫甚於此時? 苟使今日諸

“조정(朝廷)이 바르게 되는 방도는 위아래가 서로 믿어서 못 신하가 화목하게 함께 삼가고 공경하여 지극한 도리에 이르는 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경신년(7247) 에 한 요역(妖逆)이 함정을 크게 만든 것으로 인하여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마음을 품었는데, 다행히 천심(天心)이 크게 깨달음에 힘입어 억울한 일이 다 풀렸습니다. 다만 개혁(更革)하는 끝에 죽고 귀양간 사람이 잇달았는데, 이 사람들은 살륙(殺戮)하는 데로 전하를 인도하다가 도리어 그 재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당초에 전하에게 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전하를 속여서 제 계책을 부린 것이니, 이제 뉘우쳐 깨달은 시초(始初)를 당하여 전하께서는 전일에 속은 것을 경계로 삼아야 하고, 조신(朝臣)은 전일에 유감을 갚은 것을 징계로 삼아서, 군신(君臣) 상하(上下)가 서로 권계(勸戒)하여 옛 버릇을 다시 밟지 않는 것이 참으로 국가의 복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아조(我朝)는 인후(仁厚)로 나라를 세워 신하를 예우(禮遇)하고 함부로 죽이지 않았었으니, 어찌 전하의 조정에서처럼 대신을 여러 번 죽인 일이 있었겠습니까? 대저 대신이란 임금이 예모(禮貌)로 대우하는 바인데, 전하께서는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고 여러 번 죽이고, 또 그 죽인 바가 문득 번복(翻覆)될 때를 당하니, 이것이 인심(人心)에 석연하지 못하고 나라의 명맥이 점점 손상되어 가는 까닭입니다. 신은 답답합니다. 봉비(朋比)의 버릇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풍성(風聲)이 미치는 바라면 누구인들 색목(色目)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선악의 심술이 있는 바로 말하면 부모 형제 간이라도 같지 않은 바가 있는데, 어찌 저들은 다 착하지 않고 이들은 다 착하며, 이들은 다 옳고 저들은 다 그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 심적(心跡)을 혼동하고 분별하는 것이 없으므로, 당로(當路)한 무리는 현부(賢否)를 살피지 않고서 서둘러 끌어다가 등용하고, 실지(失志)한 무리는 죄정(罪情)을 헤아려 보지 않은 채 일체 물리치시니, 내쫓긴 자들은 원한이 뼈에 사무치고 뜻을 얻은 자는 보복을 자행합니다. 그러니 신은 전하의 조

臣, 知有國事而不知有偏黨, 克恢甄拔之道, 同心竝力, 則庶可以盡一世之人才矣。 五曰, 用舍得失, 安危所係。 用人之道, 固在推誠。 而又須審擇其人而後, 乃可以推誠信任之矣。 遺逸之士, 用之爲尤難。 列聖以來, 未嘗輕用遺逸。 曹植、成守琛之賢, 亦不過遷轉六品。 而至宣廟初年, 始許未出身臺諫之路, 舉皆人望。 而亦未有驟升濫受之譏矣。 厥後朋比之習漸熾, 而各引草野中, 稍有名論者, 借以吹噓之力, 務爲樹黨之計。 而其人亦不量其才分, 毅然自當, 相率而陷於欺君之罪。 此三四十年以來膏肓之弊也。 殿下亦嘗累用此等人, 而初以待賢之禮招之, 終以誅姦之罪隨之, 豈不亦前後乖刺而傷則哲之明乎? 苟能先察其眞僞, 不受其欺誣, 則初無輕用爵賞之失, 後無陷入罪戾之弊。 臣故曰, 莫如辨之於早而審之於始也。 六曰, 殿下有求言之旨而無翁受之誠; 有咨訪之名而無採用之實。 噫! 朴泰輔、吳斗寅之死, 尙忍何言? 其言之是與不是, 姑舍勿論。 殿下試觀前史, 撲殺言者, 果是何如主哉? 桁楊之下, 見者喪魄,

정에서 싸움이 그칠 때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더구나 인재를 얻기 어려운 한탄이 지금보다 심한 때가 없으니, 진실로 오늘날의 신하들로 하여금 국사(國事)가 있음을 알되, 편당(偏黨)이 있음을 알지 못하게 하여 인재를 가려 뽑는 도리를 회복하고, 마음과 힘을 합친다면, 일세(一世)의 인재를 죄다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다섯 번째에 이르기를,

“용사(用舍)의 득실(得失)은 안위(安危)가 달려 있는 것으로서, 사람을 쓰는 도리는 진실로 추성(推誠)하는 데에 달려 있고, 또 반드시 그 사람을 살펴서 가려야 추성(推誠)하여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유일(遺逸)의 선비는 등용하기가 더욱 어려우므로, 열성(列聖) 이래로 유일(遺逸)을 섭사리 등용한 적이 없었으니, 조식(曹植)·성수침(成守琛) 같은 어진 이도 6품(品)에 천전(遷轉)되는 데에 지나지 않았으며, 선묘(宣廟) 초년에 비로소 출신(出身)이 아니라도 대간(臺諫)이 되는 길을 허락하였는데, 모두 인망이 있었고, 또 갑자기 오르고 외람되게 받았다는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 뒤에 봉비의 버릇이 점점 고질이 되어 각각 초야(草野) 가운데에서 조금 명망이 있는 자를 끌어들이어 천거하는 힘을 빌어 당(黨)을 세우는 계책으로 삼기를 힘쓰고, 그 사람도 제 재분(才分)을 헤아리지 않고 의연(毅然)하게 스스로 감당하며 서로 이끌어서 임금을 속이는 죄에 빠졌으니, 이것이 3, 40년 이래의 다스리기 어려운 병폐입니다. 전하께서도 일찍이 이러한 사람들을 쓰셨는데, 처음에는 어진 이를 대우하는 예(禮)로 불렀으나, 마침내 간사한 자를 죽이는 죄로 이를 쫓으셨으니, 어찌 또한 전후가 어그러져서 사람을 알아보는 명철(明哲)을 손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먼저 그 진위(眞僞)를 살펴서 그 속임을 받지 않았다면, 당초에 작상(爵賞)을 경솔히 쓰는 잘못이 없었을 것이고, 뒤에도 죄에 빠져들 폐단이 없

道路之傳聞者, 掉心。 而滿庭臣僚, 無一人忘身敢諫, 退自相謂曰: ‘上怒如此, 吾輩無如之何云爾。’ 則吾君不能, 莫大乎此, 臣竊痛之。 且殿下, 每於所厭聞之事, 則必先立禁令, 或云論以一罪, 或云切勿捧入, 甚非盛世之所宜有也。 不可用則置之而已。 何必先自拒絕, 使不得言乎?。 上覽疏後, 卽下備忘曰: “奸黨屏黜之後, 一種怪鬼之輩, 矢志怏怏, 怨憾次骨, 輿訛造謗, 惑亂民心, 危疑之端, 指不勝屈。 乃者丁時翰, 投進一疏, 而語意絕悖, 有不忍正視。 噫! 致祥之罪, 上通于天, 而誅止其身。 廷輔等之負犯, 亦非細故。 而編配未久, 旋即賜環者, 皆出於軫念。 貴主則未知所欲加者, 何禮也? 所欲解者, 何事也? 庶人之惡, 浮於尹氏, 則此實宗社之罪人。 而敢以人心久而愈鬱等語, 肆然筆之於奏御文字, 以資邪論之嚆矢。 至若厚待郭后, 克追先志之說, 尤非人臣之所敢發口者。 春坊僚屬, 既極一時之選, 則寧有舉措之偏重, 剖析之太甚? 而乃以二三臣之用與不用, 有若關人心之向背國勢之安危者然。 是何遺辭之危險,

| | | |
|--|---|--|
| | <p>있을 것입니다. 신은 그러므로 일찍이 변별하고 처음에 살피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p> <p>하고, 여섯 번째에 이르기를,</p> <p>“전하께서는 구언(求言)7248) 하는 분부는 있으나 흠수(翕受)7249) 하는 정성이 없고, 자문한다는 이름은 있으나 채용하는 실상이 없으십니다. 아! 박봉보(朴奉輔)·오두인(吳斗寅)의 죽음은 오히려 차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말이 옳고 옳지 못한 것은 잠시 버려두고 말하지 않더라도, 전하께서 전사(前史)를 살펴보시면 말하는 자를 박살(撲殺)한 것이 과연 어떠한 임금이었습니까? 차꼬에 묶인 것을 보는 사람은 넋을 잃고 길에서 전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정신을 잃어도 온 조정의 신하들 가운데 제 몸을 잊고 감히 간(諫)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러가서 서로 말하기를, ‘성상께서 저렇게 노하시니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할 뿐이라면, 우리 임금은 불능(不能)하다는 것이 이보다 클 수 없으니, 신은 가슴 아픕니다. 또 전하께서는 번번이 싫은 일을 들으시면, 반드시 먼저 금령(禁令)을 세워서 일죄(一罪)7250) 로 논하라고 하시거나 혹 일체 받아들이지 말라고도 하시니, 성세(盛世)에 있어서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채용할 수 없으면 버려두고 말 것인데, 어찌하여 반드시 먼저 거절하여 말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p> <p>하였다. 임금이 소를 본 뒤에 곧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p> <p>“간당(奸黨)을 내친 뒤로 일종(一種)의 귀괴(鬼怪)한 무리가 뜻을 잃고 불평하며 원망이 뼈에 사무쳐 거짓말과 비방하는 말을 만들어 내어 백성의 마음을 어지럽히니, 위의(危疑) 한 꼬투리를 이루 손꼽을 수 없다. 지난번에 정시한</p> | <p>一至於此耶? 大慙伏法, 神人胥悅。而敢曰: ‘國脈漸傷, 忘君死黨, 在法當鞫。’ 而又曰: ‘撲殺言者, 隱然歸朝廷於不韙之地。’ 而爲他日立節之計。其心所在, 誠不可測也。 丁時翰姑先削奪官爵。” 持平洪萬紀啓請還收曰: “草野疎遠之臣, 未諳朝家處分之意, 敢有條陳, 其所爲言, 雖不稱停, 固當從容開示, 以賜辨破。 而況時翰, 行誼著聞, 爲殿下所嘗禮遇, 則固與凡官庶僚有間。 而今因言語之過, 遽加譴罰, 其於待儒臣之道, 不亦太薄乎?” 答曰: “時翰疏語, 乖謬不正。 其黨附之態, 誠難自掩。 而一則曰不亦太薄, 一則。 曰不諒本情, 顯有救解之意, 臺閣風采, 豈容若是乎? 良可異也。 亟停勿煩。” 右議政閔黯又因入侍, 白上曰: “時翰疏頗有好處, 而辭意亦多謬戾。 近來稱以山人者, 率多黨論, 誤國亡身。 此人嘗自憤慨於斯, 未免矯枉而過直。 昔漢武殺隆慮公主子昭平君, 史稱用法嚴明。 洪致祥罪關宗社, 沈廷輔所坐亦非細, 向來公主, 連姻貴族, 往來行言, 既多干涉, 以古言之, 殆近於太平公主。 而自上有所裁</p> |
|--|---|--|

| | | |
|--|---|--|
| | <p>(丁時翰)이 한 소(疏)를 올렸는데, 뜻이 아주 도리에 어그러져 차마 바로 볼 수가 없었다. 아아, 홍치상(洪致祥)의 죄는 위로 하늘에 사무치는데 그 자신만 죽이는 데에 그쳤고, 심정보(沈廷輔) 등의 죄도 작은 일이 아닌데 귀양보낸 지 오래지 않아서 곧 돌아오게 하였는데, 이는 다 공주를 염려한 데에서 나왔으니, 무슨 예(禮)를 더하기를 바라는 것이며, 무슨 일을 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서인(庶人)의 악이 윤씨(尹氏)보다 더하면, 이는 참으로 종묘(宗廟)·사직(社稷)의 죄인데, 감히 인심이 갈수록 더욱 답답하여진다는 따위 말을 방자하게도 아뢰는 글에 써서 사론(邪論)의 효시(嚆矢)가 되게 하였고, 곽후(郭后)를 후대(厚待)하여 선왕의 뜻을 잘 따랐다는 따위 말로 말하면 더욱이 신하로서 감히 입에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춘방(春坊)7251)의 요속(僚屬)은 한때의 선택을 극진히 하였으니, 어찌 거조(舉措)가 편중(偏重)하고 부석이 매우 심한 일이 있었겠는가? 두세 신하를 쓰고 안 쓴 것을 마치 인심의 향배(向背)와 국세(國勢)의安危(安危)에 관계되는 것처럼 하였으니, 이는 어찌하여 말하는 것이 위험하기가 모두 이 지경이 되었는가? 대대(大憝)7252)가 복주(伏誅)된 것은 신인(神人)이 다 기뻐하는데, 감히 ‘나라의 명맥이 점점 손상되어 간다.’ 하여 임금을 잇고 당을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하니, 법에 따라 국문(鞫問)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또 ‘말하는 자를 박살하였다.’ 하여 넉지시 조정을 옳지 않은 처지로 돌리고, 뒷날 절의(節義)를 세울 계책을 삼았으니, 그 마음의 소재(所在)를 참으로 헤아릴 수 없다. 정시한은 우선 먼저 삭탈 관작(削奪官爵)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지평(持平) 홍만기(洪萬紀)가 명을 도로 거두기를 계청(啓請)하여 말하기를,</p> <p>“초야의 소원(疏遠)한 신하가 조정에서 처분한 뜻을 잘 몰라서 감히 조목으로</p> | <p>斷， 廷輔之放歸田里， 實出於全安之意。 聖上待公主之道， 可謂得中。 時翰之言， 其不明理甚矣。 但時翰待遇之隆自別， 而一言妄發， 遽加譴罰， 恐有妨於言路。” 上曰：“廢人之罪， 實關宗社。 而厚待郭后等語， 豈人臣所敢發口者？ 元子定號， 實係一國之人心。 而故爲延拖遷就之計， 則謂之究其本心， 豈有他哉？ 壽恒、時烈， 乃元惡大憝， 則天討宜行而曰。 不能釋然於人心。 朴泰輔忘君死黨而曰。 撲殺言者， 此非黨附而何？” 黯曰：“雖或妄發， 而包容寬恕， 豈不有光於聖德乎？” 都承旨沈檀曰：“時翰疏， 言多謬戾， 而禁令一款， 搢紳中亦曾有疏陳者， 非時翰創之也。” 上曰：“今後大小臣僚， 以廢人事， 敢有提起者， 當繩以重辟。 頒布中外， 咸使知之。”</p> |
|--|---|--|

아뢰었으므로, 그 말한 것이 맞지 않더라도 본디 조용히 개시(開示)하여 밝혀 주셔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정시한은 행의(行誼)가 잘 알려져서 전하께 일찍이 예우(禮遇) 받았으니, 진실로 여느 벼슬의 신하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말의 허물로 인하여 갑자기 견벌(譴罰)을 더하신다면, 유신(儒臣)을 대우하는 도리에 있어서 또한 너무 박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정시한의 소의 말은 도리에 어그러져서 바르지 못하고, 그 당부(黨附)하는 꼴은 참으로 스스로 엄폐하기 어려운데, 또한 너무 박하지 않느냐느니 본정(本情)을 알지 못한 것이라느니 하여 뚜렷하게 구제하려는 뜻이 있으니, 대각(臺閣)의 풍채가 어찌 이럴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이상하다. 빨리 멈추고 번거롭히지 말라.”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민암(閔黯)이 인하여 또 입시(入侍)하여 임금에게 아뢰기를,

“정시한의 소에는 자못 좋은 데가 있으나, 사의(辭意)에는 어그러진 데도 많습니다. 근래 산인(山人)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대개 당론(黨論)이 많아서 나라를 그르치고 몸을 망치는데, 이 사람은 일찍이 스스로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폐단(弊端)을 바로잡으려 하다가 도리어 중도(中道)를 잃었습니다. 예전에 한무제(漢武帝)가 용려 공주(隆慮公主)의 아들 소평군(昭平君)을 죽였는데, 사가(史家)는 법을 쓴 것이 엄명(嚴明)하다고 일컬었습니다. 홍치상의 죄는 종묘·사직에 관계되고 심정부가 좌죄(坐罪)된 것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공주가 귀족과 혼인하고, 왕래하며 행동하고 말하는 가운데 이미 간섭하는 것

이 많았습니다. 옛일로 말하면 태평 공주(太平公主)7253) 의 일과 거의 같으나, 성상께서 재단하신 바가 있어서, 심정보의 방귀 전리(放歸田里)는 참으로 안전하게 하려는 뜻에서 나왔으니, 성상께서 공주를 대우하신 도리는 중도를 얻었다 하겠습니다. 정시한의 말은 사리에 밝지 못한 것이 심합니다. 단지 정시한에게 대우가 융숭한 것이 본디 달랐었는데, 한 마디 망발 때문에 갑자기 견벌(譴罰)을 더하신다면, 언로(言路)에 방해되는 바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폐인(廢人)의 죄는 참으로 중요·사직에 관계되는데, 곽후를 후대하였다는 따위 말이 어찌 신하로서 감히 입으로 낼 수 있는 것이겠는가? 원자(元子)의 명호를 정하는 것은 참으로 한 나라의 인심에 관계되는데, 고의로 끝어서 늦출 생각을 하였는데, ‘그 본심을 헤아려 보면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느냐?’ 하였고, 김수항(金壽恒)·송시열(宋時烈)은 원악 대대(元惡大憝)이므로, 천토(天討)를 행해야 마땅한데, ‘사람들의 마음에 석연하지 못하다.’ 하였으며, 박태보(朴泰輔)는 임금을 잇고 당을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하였는데 ‘말한 자를 박살하였다.’ 하였으니, 이것이 당부(黨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였다. 민암이 말하기를,

“혹 망발하였더라도 포용하여 용서하시면, 어찌 성덕(聖德)에 빛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도승지(都承旨) 심단(沈檀)은 말하기를,

| | | |
|---|---|--|
| | <p>“정시한의 소에는 어그러진 말이 많으나, 금령(禁令)에 관한 일은 진신(摺紳) 가운데에도 상소하여 아뢴 자가 있었으니, 정시한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 뒤로 대소 신료(大小臣僚) 가운데 폐인의 일을 감히 제기하는 자가 있으면 중벌로 다스리겠으니, 반드시 중외(中外)에 선포하여 모두 알게 하라.”</p> <p>하였다.</p> | |
| <p>숙종 23권, 17년 (1691 신미 / 청 강희 (康熙) 30년) 2월 4일 (경신) 1번째기사</p> | <p>비국(備局)의 계청(啓請)으로 인하여, 함경 도사(咸鏡都事)를 급히 보내어, 길을 더욱 빨리 달려가서 본도(本道)의 곡식 1만 5천 석을 독촉하여 날라다가 영남(嶺南)의 굶주린 백성을 진구(賑救)하게 하였다.</p> | <p>○庚申/因備局啓，促送咸鏡都事，使之倍道馳往，督運本道穀一萬五千石，以賑嶺南飢民。</p> |
| <p>숙종 23권, 17년 (1691 신미 / 청 강희 (康熙) 30년) 3월 4일 (경인) 1번째기사</p> |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민창도(閔昌道)가 말하기를,</p> <p>“동방의 풍속은 본디 백의(白衣)를 숭상하나, 선조(先朝)에서 소복(素服)은 평시에 입을 것이 아니라 하여 중외(中外)에서 청의(青衣)를 입게 하였는데, 이제 와서 구습(舊習)을 따라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다시 신칙(申飭)하라고 명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오시복(吳始復)이 말하기를,</p> | <p>○庚寅/御晝講。參贊官閔昌道，陳：“東俗素尙白衣，先朝以素服，非常時所可着，令中外着青衣。到今不可因循廢閣。”上命更申勅。戶曹判書吳始復曰：“查使出來後，恐喝操縱，必倍他勅。請以別庫小米一萬石發賣銀貨，以資勅需。”上許之。</p> |

| | | |
|--|---|---|
| | <p>“사사(查使)가 나온 뒤로 공갈하고 조종하는 것이 반드시 다른 칙사(勅使)보다 갑절이나 더할 것이니, 별고(別庫)의 소미(小米)7274) 1만 석을 내어 은화(銀貨)를 사서 칙수(勅需)를 돕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윤택하였다.</p> | |
| <p>숙종 23권, 17년 (1691 신미 / 청 강희 (康熙) 30년) 3월 22 일(무신) 1번째기사</p> | <p>전교(傳敎)하기를,</p> <p>“옥산 부원군(玉山府院君)의 사당을 내사(內司)에서 이제 지어 줄 것인데, 요미(料米)와 전화(錢貨)도 해조(該曹)로 하여금 넉넉히 실어 보내게 하라.”</p> | <p>○戊申/傳曰: “玉山府院君祠宇, 自內司今將造給。 而料米及錢貨, 亦令該曹, 從優輸送。”</p> |
| <p>숙종 23권, 17년 (1691 신미 / 청 강희 (康熙) 30년) 6월 19 일(계유) 2번째기사</p> | <p>임금이 종신(宗臣)들을 편전(便殿)에 불러서 만나보고, 시재(試才)하고 선은(宣醞)하였다. 이어서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p> <p>“가난한 종신이 매우 많아서 보기에 가없으니, 종친부(宗親府)로 하여금 초계(抄啓)한 뒤에 해조(該曹)에서 옷감과 먹을 것을 넉넉히 주어 내가 두텁게 친애(親愛)하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p> | <p>○上召見諸宗臣於便殿, 試才宣醞, 仍下備忘記曰: “宗臣之貧窶者甚多, 見之矜憐, 其令宗親府抄啓後, 自該曹優給衣資食物, 以表予惇親之意。”</p> |
| <p>숙종 23권, 17년 (1691 신미 / 청 강희 (康熙) 30년) 윤7월 3 일(병진) 1번째기사</p> |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右議政) 민암(閔黯)이 말하기를,</p> <p>“기로에게 잔치를 내리는 것은 수백 년 사이에 드물게 있는 일인데, 오정위(吳挺緯)는 기로 당상(耆老堂上)으로서 바야흐로 죄적(罪籍)에 들어 있으므로 홀로 참여하지 못하니, 오정위는 죽어도 유한(遺恨)이 있을 것입니다.”</p> <p>하고, 권대운(權大運)·목내선(睦來善)은 다 진정(賑政)이 겨우 끝났고 기근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하여 겸양(謙讓)하는 말을 하였다. 목내선(睦來善)이 이어서 말하기를,</p> | <p>○丙辰/引見大臣備局諸臣。 右議政閔黯曰: “耆老錫宴, 數百年罕有之事, 而吳挺緯以耆老堂上, 方在罪籍中, 獨不得與。 挺緯雖死, 必有遺恨矣。” 權大運、睦來善, 俱以賑政纔了, 饑饉未蘇, 引爲謙讓之辭。 來善仍曰: “祖宗朝耆老賜宴時, 從二品亦有參宴之例, 罷散人等抄啓, 使之進參似好。” 上命挺緯敘用, 從二品年七十以上, 亦令抄啓。 又命侍從臣母年七十以上, 食物題給。 是後抄二十餘人, 賜米</p> |

| | | |
|--|---|---|
| | <p>“조종(祖宗) 때에는 기로에게 잔치를 내릴 때에 종2품(從二品)도 잔치에 참여한 예가 있으니, 파산(罷散)한 사람들을 초록(抄錄)하여 아뢰어 진참(進參)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오정위를 서용(敍用)하라고 명하고, 종2품으로서 70세 이상인 자도 초록하여 아뢰게 하고, 또 시종신(侍從臣)의 어머니로서 70세 이상인 자에게 먹을 것을 제급(題給)하되, 이 뒤로는 20여 인을 뽑아 쌀과 고기를 내려 주라고 명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유하익(兪夏益)이 말하기를,</p> <p>“신(臣)이 지난번에 헌릉(獻陵)에 가서 옛 영릉(英陵)의 비석이 헌릉의 오른편에 있는 옛 능혈(陵穴)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세(地勢)가 파이고 물이 고여서 용머리만 겨우 나오고 물이 석면(石面)을 침식하여 그 글자를 알아볼 수 없으나, 이것이 안평 대군(安平大君)의 글씨라 합니다. 비문(碑文) 가운데에 반드시 어휘(御諱)가 있을 것이니, 보기에 매우 미안하였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날을 가려서 깨끗한 곳에 매안(埋安)하도록 명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오시복(吳始復)이 말하기를,</p> <p>“지난해 삼남(三南)의 세입(稅入)이 크게 줄었는데, 전세(田稅)와 노비 공포(奴婢貢布)7339를 받지 못한 것이 매우 많으니, 군자창(軍資倉)의 묵은 콩 1만 석을 돈[錢]으로 바꾸어 보태어 쓰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윤희하였다. 대사간(大司諫) 권해(權璫)가 유일(遺逸)7340을 찾아서 주연(胄筵)7341에 시종(侍從)하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해조(該曹)로 하여금 각별히 찾게 하였다. 집의(執義) 이만령(李萬齡)이 오정위를 서</p> | <p>肉。 禮曹判書兪夏益曰：“臣頃往獻陵，見舊英陵碑石，仆在獻陵右邊舊陵冗前。 地勢汚陷，水潦停滯，僅出龍頭，而水浸石面，不能審其文字，而云是安平大君之筆矣。 碑文中必有御諱，所見甚未安。” 上命擇日埋安于淨潔處。 戶曹判書吳始復曰：“上年三南稅入大縮，而田稅及奴婢貢布，未捧者甚多。 請以軍資倉陳豆一萬石，作錢補用。” 上可之。 大司諫權璫請搜訪遺逸，以待胄筵。 上令該曹，另加搜問。 執義李萬齡請還收吳挺緯敍用之命。 不從。</p> |
|--|---|---|

| | | |
|--|--|--|
| | 용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 |
| 숙종 23권, 17년 (1691 신미 / 청 강희 (康熙) 30년) 8월 11 일(계사) 3번째기사 | 임금이 종친부(宗親府)에서 전일에 인견(引見)하고 선온(宣醞)한 은전(恩典)이 있었으므로, 옛일에 따라 잔치를 베풀 것이라는 말을 듣고, 특별히 명하여 풍악을 내려 주게 하였다. | ○上聞宗親府， 以前日有引見宣醞之恩， 遵故事將設宴， 特命賜樂。 |
| 숙종 23권, 17년 (1691 신미 / 청 강희 (康熙) 30년) 9월 1일 (임자) 1번째기사 | 임금이 김포(金浦) 장릉(章陵)에 전알(展謁)하였다. 특별히 명하여 능행(陵行)때에 부역(赴役)한 여러 고을의 가을 수미(收米)를 결(結)마다 각각 2두(斗)씩 줄이게 하였다. | ○朔壬子/上謁金浦章陵特命減陵幸時赴役諸邑， 秋收米每結各二斗。 |
| 숙종 23권, 17년 (1691 신미 / 청 강희 (康熙) 30년) 9월 7일 (무오) 1번째기사 | 임금이 장형(張炯)의 집에서 연시(延諭)7390) 할 것이라 하여 특별히 해조(該曹)에 명하여 잔치에 드는 쌀·돈·면포(綿布)를 넉넉히 실어 보내고 선시(宣諭)하는 날에 내외(內外)의 선온(宣醞)을 하고 일등악(一等樂)을 내려 주게 하고, 또 공경(公卿)과 재신(宰臣)으로 하여금 일체히 잔치에 가게 하였는데, 대개 전에 없던 일이었다. | ○戊午/上以張炯家將延諭， 特命該曹， 宴需米錢綿布， 從優輸送。 宣諭日， 內外宣醞， 賜一等樂。 且令公卿諸宰， 一齊赴宴， 蓋無前之事也。 |
| 숙종 23권, 17년 (1691 신미 / 청 강희 (康熙) 30년) 9월 13 일(갑자) 2번째기사 |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육신(六臣)의 일로 신하들이 소견을 번갈아 아뢰었다. 《춘추(春秋)》의 존자(尊子)를 위하여 휘(諱)하고 친자(親者)를 위하여 휘하는 의리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숨기고 신하가 임금을 위하여 숨긴다는 설(說)을 인용하여 어렵게 여기는 자가 많았는데, 이것은 대개 허목(許穆)의 의논에서 나온 것이었다. 여러 사람의 의논이 마침내 하나로 돌아가지 않으니, 임금이 외방(外方)에 있는 유신(儒臣)의 헌의(獻議)와 출강(出疆)한 대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결정하게 되었다. 그 뒤에 이현일(李玄逸)·민암(閔黯)이 모두 승장(崇獎)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전의 명령을 거듭 밝혀서 거행하게 하였다. 임시로 줄였던 조신(朝臣)의 녹봉(祿俸)을 회복하라고 명하였다. 처음에 삼남(三南)의 흉년 때문에 5품(品) 이상의 녹에서 1등(等)7393) 에 1석(石)을 줄이게 하였었는데, | ○引見大臣備局諸宰， 以六臣事， 諸臣迭陳所見， 多引春秋諱尊諱親之義及子爲父隱臣爲君隱之說， 以爲難， 此蓋出於許穆之論也。 諸議終未歸一。 上令待在外儒臣獻議及出疆大臣還朝而決之。 其後李玄逸、閔黯， 皆以崇獎爲當。 上遂申前命而行之， 命復朝臣祿俸權減之數。 初因三南凶歉， 五品以上祿， 一等減一石。 至是， 因左議政陸來善言：“自明年正月， 還復其舊制。” 兵曹判書閔宗道曰：“露梁閱武 |

| | | |
|------------------------------------|---|---|
| | <p>이때에 이르러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來善)의 말로 인하여 내년 정월부터 도로 옛 제도대로 회복하게 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종도(閔宗道)가 말하기를,</p> <p>“노량(露梁)에서 열무(閱武)할 때에 기화전(起火箭)7394) 의 한 가지가 어막차(御幕次)의 차일죽(遮日竹)에 날아와 떨어져서 매우 놀랐습니다. 각영(各營)의 중군(中軍)이 약속을 삼가지 않아서 이렇게 잘못 쏘게 되었으니, 나치(拿治)하지 않아서는 안되겠습니다.”</p> <p>하고, 영의정(領議政) 권대운(權大運)이 말하기를,</p> <p>“대장(大將)도 죄가 없을 수 없으니, 아울러 추고(推考)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것은 대장(大將)의 죄가 아니다. 네 영(營)의 중군(中軍)만을 나핵(拿覈)하게 하라.”</p> <p>하였다. 대사간(大司諫) 권환(權煥)이 대장을 추고하기를 청하였으나, 또한 따르지 않았다. 이에 앞서 경외(京外)의 사족(士族)의 부녀로서 나이가 90 이상인 자를 모두 초계(抄啓)하게 하여 봉작(封爵)하는 은전(恩典)을 베풀려 하였는데, 외방에서 신보(申報)한 것에 남잡(濫雜)한 것이 많아서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식물(食物)만 주도록 하였다</p> | <p>時，起火一枝，飛落於御幕次遮日竹，驚愕甚矣。各營中軍，不謹約束，致此誤放，不可不拿治。”領議政權大運謂：“大將亦不可無罪，請竝推考。”上曰：“此非大將之罪，只令拿覈四營中軍。”大司諫權煥，請推大將，亦不從。先是，京外士族婦女年九十以上者，竝令抄啓，將施以封爵之典，因外方所報多濫雜，難以區別，只許給食物。</p> |
| <p>숙종 23권, 17년 (1691 신미 / 청 강희</p> | <p>밤에 옥당관(玉堂官)을 소대(召對)하였는데, 신하들이 변방의 허술한 정상을 여러 가지로 아뢰었다. 과할 즈음에 선은(宣醜)하였다.</p> | <p>○夜對玉堂官，諸臣雜陳邊鄙踈虞之狀，臨罷宣醜。</p> |

| | | |
|---|---|---|
| (康熙) 30년) 9월 17 일(무진) 2번째기사 | | |
| 숙종 23권, 17년 (1691 신미 / 청 강희 (康熙) 30년) 10월 2 일(계미) 1번째기사 | 이조 참판(吏曹參判) 이현일(李玄逸)이 부름을 받고 입경(入京)하였는데, 임금 이 특별히 해조(該曹)로 하여금 땔나무·숯·쌀·고기를 주게 하였다. | ○癸未/吏曹參判李玄逸承召入京, 上 特令該曹, 給柴炭米肉。 |
| 숙종 23권, 17년 (1691 신미 / 청 강희 (康熙) 30년) 10월 11 일(임진) 2번째기사 | 밤에 이조 참판(吏曹參判) 이현일(李玄逸)과 옥당관(玉堂官)을 불러서 선운(宣 醞)하였다. 호당(湖堂)에 뽑힌 사람인 채팽윤(蔡彭胤)이 바야흐로 춘방(春坊) 에 입직(入直)하였으므로, 특별히 명하여 들어오게 하였다. 임금이 채팽윤에 게 말하기를, “평생에 임금 얼굴 모르고 지냈는데, 지척에서 옥지에 둘러 있는 꿈꾸었네 [平生不識君王面一夢尋常繞玉墀]’라는 글귀를 너는 기억하는가?” 하였는데, 대개 채팽윤이 전에 이 시를 지었을 때 임금이 듣고서 아름답게 여 겼기 때문이다. 드디어 같이 술을 내리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야대(夜對)는 사가(私家)의 부자 간의 예(福)와 같으니, 마음놓고 실컷 먹고 마시도록 하라.” 하였다. | ○夜召吏曹參判李玄逸及玉堂官宣醞, 以湖堂被選人蔡彭胤, 方直春坊, 特命 引入。上謂彭胤曰: “平生不識君王 面, 一夢尋常繞玉墀之句, 爾其記之 乎?” 蓋彭胤嘗有是作。上聞而嘉之 也。遂同賜酒, 仍教曰: “夜對如家人 父子之禮, 須安意醉飽也。” |
| 숙종 23권, 17년 (1691 신미 / 청 강희 (康熙) 30년) 12월 22 일(임인) 1번째기사 | 친히 도목정(都目政)을 살폈다. 권중경(權重經)을 부응교(副應教)로 삼았다. 정사가 끝나고서 선운(宣醞)하고 파하였다. | ○壬寅/親視都目政, 以權重經爲副應 教。政訖, 宣醞而罷。 |
| 숙종 24권, 18년 | 반궁(泮宮)에 감귤[柑]을 반사(頒賜)하고 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여, 수석한 진 | ○丁巳/須柑泮宮試士, 居首進士李震 |

| | | |
|---|---|--|
| <p>(1692 임신 / 청 강희 (康熙) 31년) 1월 7일 (정사) 1번째기사</p> | <p>사(進士) 이진수(李震壽)에게 급제를 내렸다.</p> | <p>壽賜第。</p> |
| <p>숙종 24권, 18년 (1692 임신 / 청 강희 (康熙) 31년) 4월 24일(계묘) 2번째기사</p> | <p>이때 경기(京畿) 안이 크게 흉년들자, 관찰사(觀察使) 권해(權楷)가 계문(啓聞)하니, 강도(江都)에 있는 군량미를 내어서 구제하도록 명하였다.</p> | <p>○時畿內大饑。 觀察使權楷以聞。 命發江都軍餉米以賑之。</p> |
| <p>숙종 24권, 18년 (1692 임신 / 청 강희 (康熙) 31년) 8월 27일(갑진) 2번째기사</p> | <p>옥당(玉堂)의 관원들을 야대(夜對)하여, 입시(入侍)한 여러 신하에게 각기 ‘야기(夜氣)’를 글제로 시(詩)를 짓도록 명하고, 이어 선운(宣醞)하였다. 대제학(大提學) 권유(權愈)도 부름을 받고 참여하였다. 지어 올리자 각각 종이·붓·먹을 차등이 있게 내렸다. 승지(承旨) 심발(沈撥)이 호얼(湖泉)7583)로 있다가 체직하여 돌아왔는데, 인하여 연변(沿邊)의 수해(水害)를 극력 진달하니, 임금 이 측은하게 여기며 하교(下敎)하기를,</p> <p>“올해의 수해는 팔도(八道)가 다 같다. 경기(京畿)·호서(湖西)·해서(海西) 등 세 도는 이미 급제(給災)하도록 허락하고, 또한 익사한 사람은 신포(身布)를 감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러 도(道)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건대, 집이 부서져 버리기도 하고 전답이 매몰되어 버리기도 하여서 빈 몸으로 피해 나와 살림살이를 탕진해 버린 사람들은 비록 요행으로 죽음은 면했지만, 실패하고서 유리(流離)하느라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니, 불쌍하고 측은함이 죽은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여러 도의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별도로 뽑아내어 계문(啓聞)하도록 하여서 일체 역사(役事)를 면제해 주어, 조가(朝家)에서 백성을 돌보아 주는 덕의(德意)를 널리 보이도록 하라.”</p> <p>하였다.</p> | <p>○夜對玉堂官，命入侍諸臣，各賦夜氣詩，仍宣醞。 大提學權愈，亦宣召與焉。 既製進，各賜紙筆墨有差。 承旨沈撥自湖泉，遞歸屬耳，仍極陳沿邊水災。 上惻然下敎曰：“今年水災，八路同然。 京甸湖西海西等三道，既許給災，且減滄死人身布矣。 抑念諸道民人，或有家舍覆沒，田疇沈壓，赤身奔避，蕩盡家產之類，雖幸免死，顛頓流離，無以保存。 其爲矜惻，與死者何異？ 其令諸道道臣，別爲抄出以聞，一體蠲役，廣示朝家恤民之德意。”</p> |

| | | |
|---|--|--|
| <p>숙종 24권, 18년 (1692 임신 / 청 강희 (康熙) 31년) 11월 12 일(정사) 3번째기사</p> | <p>삼복(三覆)을 거행하여 사형 죄수 8명을 단죄(斷罪)했다. 특별히 명하여 사형을 감하여 절도(絶島)에 관노(官奴)로 삼은 것이 한 사람이었는데, 법으로는 마땅히 사형해야 했지만 정상이 용서할 만한 데가 있어서였다. 영의정 권대운(權大運)이 아뢰기를, “도성(都城) 안 백성들의 굶주림이 심하니, 장빙미(藏氷米)7603) 를 징수하지 말고 진휼청(賑恤廳)으로 하여금 나누어 주도록 하여, 민원(民願)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했다. 경기(京畿)의 모든 읍수(邑守)와 변장(邊將)의 병부(兵符)가 감영(監營)의 병부와 틀리는 것이 많으므로, 감사(監司)가 상황을 계문(啓聞)하여 바로잡기를 청하였다. 승지가 품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실지로 그러하다면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증거로 믿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또한 다른 도(道)도 모두 그러한 지 염려되니,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여러 도(道)의 감사에게 유시(諭示)를 내려 소재지(所在地)마다 증험해 보아 틀리는 것은 바로잡게 하라.” 하였다.</p> | <p>○行三覆， 斷死囚八人， 特命減死絶島， 爲奴者一人， 以其法當死而情有可恕也。 領議政權大運曰：“都民飢甚， 請無徵藏氷米。 令賑恤廳劃給， 以從民願。” 上許之。 京畿諸邑守邊將兵符， 多與營符差違， 監司啓其狀請釐改。 承旨以稟。 上曰：“審如是， 緩急無以憑信， 且慮他道皆然， 令政院下諭諸道監司， 所在合驗， 以正其誤。”</p> |
| <p>숙종 25권, 19년 (1693 계유 / 청 강희 (康熙) 32년) 2월 5일 (기묘) 1번째기사</p> | <p>감귤[柑]을 반사(頒賜)하고 반궁(泮宮)7672) 에서 시사(試士)하였는데, 수석을 차지한 진사(進士) 홍형(洪滢)에게 급제(及第)를 내려 주었다.</p> | <p>○己卯/頒柑試士于泮宮， 賜居首進士洪滢及第。</p> |
| <p>숙종 25권, 19년 (1693 계유 / 청 강희 (康熙) 32년) 2월 20 일(갑오) 2번째기사</p> | <p>양주(楊州)의 유생(儒生) 이제화(李齊華) 등이 상소(上疏)하여, 본 고을의 전세(田稅)와 수미(收米) 두 가지 구실 중 한 가지를 영원히 감해 주어서 백성들의 힘을 펼 수 있도록 청하자, 임금이 묘당(廟堂)에서 품지(稟旨)하여 처리하도록 명하였다. 묘당에서 아뢰기를, “유정지공(惟正之供)7685) 은 백성들의 청으로써 경솔하게 의논하여 영원히</p> | <p>○楊州儒生李齊華等上疏。 請永減本州田稅收米兩役之一， 以紓民力。 命廟堂稟處。 廟堂以爲：“惟正之供， 不可以民人之請， 輕議永減， 請置之。” 上判曰：“國之爲政， 愛民爲大， 矧今謁陵歸路， 爲之駐駕， 招集父老， 降手</p> |

| | | |
|--|--|--|
| | <p>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그대로 두소서.”</p> <p>하니, 임금이 판정(判定)하기를,</p> <p>“나라에서 정치를 하는 데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큰 것이 된다. 더구나 지금 능침(陵寢)을 알현(謁見)하고 돌아오는 길에 대가(大駕)를 멈추고 부모(父老)들을 불러 모아, 수찰(手札)을 내려 위로하고 유시(諭示)했는데, 한 고을 전체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실로 보통이 아닌 거조(舉措)이다. 열성(列聖)7686) 의 아홉 능(陵)이 양주(楊州)에 있으니, 요역(徭役)의 과중함과 백성들의 힘이 곤궁함에 진실로 처리하기 어려운 바가 있다. 지금 서민[齊民]들이 똑같은 소리로 향안(香案)7687) 과 지척(咫尺)이 되는 거리 앞에서 애처롭게 호소하니, 백성들의 부모(父母)가 되어 측은(惻隱)한 마음이 저절로 몽글하게 일어나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니, 깊숙한 궁궐에 조용히 앉으면 한밤중에라도 잊어버리지 못할 일이다. 아! 내가 이미 그 정원(情願)을 찾아서 물었도다. 전날의 역사에서 찾아보아도 또한 이를 시행한 이가 있었도다. 양주(楊州) 한 고을의 수미(收米)를 특별히 영원히 감해 주어 나의 진휼(軫恤)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p> <p>하였다. 좌의정 목내선(睦來善)이 아뢰기를,</p> <p>“한(漢)나라 문제(文帝)는 천하에 큰 영토를 소유하고서도 오히려 1년 전세(田稅)의 절반을 감해 주었으며, 당(唐)나라 경종(敬宗)은 봉선현(奉先縣) 한 고을에 여덟 능(陵)을 홀로 받들도록 하여, 지공(支供)하고 판비(辦備)하는 일이 번거롭게 중복되었어도 또한 조세(租稅)의 절반을 감해 주었을 뿐입니다. 지금 양주(楊州)는 아홉 능(陵)이 있는 곳이라고 하여, 이미 위로하여 유시하</p> | <p>札而慰諭，舉一邑而施惠，實是非常之舉。列聖九陵，在於楊州，徭役之重，民力之困，誠有所難處者。今此齊民，同聲哀籲於香案咫尺之前，爲民父母，惻隱之心，自不覺油然而生。靜坐深宮，中夜耿耿。噫！予既訪問其情願矣。求之前史，亦有行之者。楊州一邑收米，特爲永減，以示軫恤之意。”</p> <p>左議政睦來善啓言：“漢文帝以天下之大，猶減一年田稅之半。唐敬宗，以奉先一縣，獨奉八陵，供辦繁，併亦減一半租而已。今楊州以九陵所在，既蒙慰諭大惠之澤，而且令永減收米，似太過矣。本州之米，凡七百五十七石五斗。勿論豐凶，以其收米劃給者，乃大同不易之定式也。今若永減，則無他逐年推移代給之道，此不可不慮。而既施之典，又不可旋寢。田稅雖惟正之供，他道收米不足之處，亦有田稅米豆劃給之規，而楊民所望，又在於兩役之一減。如以田稅米豆，或限年或折半蠲減似好。”上然其言，特命永減田稅。</p> |
|--|--|--|

| | | |
|--|--|--|
| | <p>는 큰 혜택(惠澤)을 입었는데, 또 수미(收米)를 영원히 감하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듯합니다. 본 고을의 수미는 모두 7백 57석(石) 5두(斗)인데, 풍년이 나 흉년을 논하지 말고 그 수미를 나누어 주는 것은 곧 대체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정식(定式)입니다. 지금 만약 영원히 감하게 한다면, 달리 해마다 쌀을 미루어 옮겨다가 대신 지급할 방법이 없으니,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행한 전례(典例)를 또 곧바로 정지할 수도 없습니다. 전세(田稅)가 비록 유정지공(惟正之供)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도(道)의 수미가 부족한 곳에는 또한 전세로 바치는 쌀·콩을 나누어 주는 규정이 있으며, 양주 백성들이 바라는 것도 또 두 가지 구실 중에서 한 가지를 감해 주는 데에 있으니 만약 전세로 바치는 쌀·콩을 혹은 연한(年限)을 한정하거나 혹은 수량을 절반 감해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그 말을 그럴듯하게 여겨, 특별히 전세(田稅)를 영원히 감해 주도록 명하였다.</p> | |
| <p>숙종 25권, 19년 (1693 계유 / 청 강희 (康熙) 32년) 5월 25 일(무진) 1번째기사</p> | <p>사은사(謝恩使) 임양군(臨陽君) 이환(李桓)과 신후명(申厚命) 등이 청(淸)나라로 떠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선운(宣醞)을 차등있게 내려 주었다.</p> | <p>○戊辰/謝恩使臨陽君桓、申厚命等，赴淸國。上引見宣醞，頒賜有差。</p> |
| <p>숙종 25권, 19년 (1693 계유 / 청 강희 (康熙) 32년) 9월 1일 (임인) 3번째기사</p> | <p>임금이 전교를 내리기를, “그저께 영부사(領府事)가 진달한 것을 들으니, 중종(中宗) 때에 제릉(齊陵)을 전알(展謁)하고 송도(松都)에 도착하여 본부(本府)의 성균관(成均館)에 알성(謁聖)하고, 인해서 유생(儒生)들에게 쌀과 베를 제급(題給)하도록 한 일이 있었다고 하였다. 지금 비록 알성은 할 수 없으나 쌀과 베는 중종조(中宗朝)의 전례에 의거하여 제급(題給)하도록 하라.”</p> | <p>○上，下教曰：“再昨聞領府事所達，中廟時，展謁齊陵，到松都，謁聖於本府成均館，仍有儒生等米布題給之事。今雖不得謁聖，而米布則依中廟朝例題給，仍以綿布一百匹分給。”</p> |

| | | |
|--|---|--|
| | 하고, 인해서 면포(綿布) 1백 필(匹)을 나누어 주게 하였다. | |
| 숙종 25권, 19년 (1693 계유 / 청 강희 (康熙) 32년) 9월 26 일(정묘) 1번째기사 |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來善)이 청대(請對)하고 소매 속의 차기(筭記)를 올렸는데, 그 제1조(條)에서는 선정신(先正臣) 조광조(趙光祖)가 말한 바에 의거하여 세자(世子)로 하여금 어좌(御座) 곁에서 모시게 하여 상시 고금(古今)의 다스려진 것과 어지러워진 것 그리고 정사(政事)의 장점과 단점을 듣게 할 것을 청하였고, 2조(條)에서는 경기(京畿)의 내수사(內需司)의 쌀 3천여 석(石)을 감해주어 실질적인 혜택을 베풀 것을 청하였는데,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 | ○丁卯/左議政睦來善請對，進袖中筭記，其第一條：“請依先正臣趙光祖所言，令世子侍御座側，常聞古今理亂政事得失。”其一條：“請減畿內需米三千餘石，以施實惠。”上是其言。 |
| 숙종 26권, 20년 (1694 갑술 / 청 강희 (康熙) 33년) 2월 25 일(계사) 2번째기사 | 임금이 연로(輦路)를 새로 개통하는데 부역하는 백성이 적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우대하여 구휼(救恤)하기를 명하니, 선혜청(宣惠廳)에서 광주(廣州)의 금년 봄 대동미(大同米)를, 전지(田地) 1결(結)마다 각기 2두(斗)씩을 감면해 주기를 청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上以輦路新開，役民不少，命優恤之。宣惠廳請廣州今年春大同米，每田一結，各在二斗。從之。 |
| 숙종 26권, 20년 (1694 갑술 / 청 강희 (康熙) 33년) 3월 6일 (갑진) 1번째기사 | 이조 판서 이현일(李玄逸)이 고향에 돌아감을 고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서 선운(宣醞)하였다. 이현일이 임금에게 ‘현인(賢人)을 임용하고 사인(邪人)을 제거하며, 검약(儉約)을 숭상하고 일욕(佚欲)을 금지하며, 실덕(實德)을 닦고 천계(天戒)를 조심할 것’을 청하였으며, 또 아뢰기를, “영남(嶺南)에 전(前) 익찬(翊贊) 이유장(李惟樟)이란 사람은, 사물(事物)을 널리 들어 견식이 많아서, 한 시대의 노성(老成)한 숙덕(宿德)이 되었으며, 또 문동도(文東道)란 사람은 일찍이 자의(諮議)에 의망(擬望)되기도 하여 남보다 뛰어난 재주와 학식으로 명성이 있으며, 서울 안에서는 참봉 이택(李澤)이란 사람이 또한 평소부터 선비의 명망을 깊어지고 있으니, 지금 만약 발탁하여 임용하여 경석(經席)과 서연(書筵)에 드나들게 한다면 반드시 도움됨이 많을 것입니다.” | ○甲辰/吏曹判書李玄逸告歸。上引見宣醞。玄逸，“請任賢去邪，崇儉約禁佚欲，修實德謹天戒。”且曰：“嶺南有前翊贊李惟樟者，博聞多識，爲一時老成宿德。又有文東道者，曾擬諮議，卓然以才學名。都下有參奉李澤者，亦素負士望，今若擢而用之，使出入經席書筵，則必多補益。”上嘉納之。 |

| | | |
|---|--|---|
| | <p>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겨서 들었다.</p> | |
| <p>숙종 26권, 20년 (1694 갑술 / 청 강희 (康熙) 33년) 4월 17일(갑신) 1번째기사</p> | <p>영의정(領議政) 남구만(南九萬)이 배명(拜命)하니, 임금이 명하여 인견(引見)하고 위유(慰諭)가 지극하였다. 남구만이 말하기를,</p> <p>“신(臣)은 묘당(廟堂)에서 모여 의논하라는 분부에 대하여 지나치다고 생각하며 정원(政院)에서 아뢰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희빈(禧嬪)이 곤위(壺位)에 오르려 할 때라면 신하가 된 자로서는 예경(禮經)으로 쟁집(爭執)하는 것이 옳겠으나, 대저 명호(名號)가 이미 정하여지고 곤극(坤極)에 정위(正位)하게 되어서는 신하가 된 자는 또한 이미 군모(君母)로 섬겼던 것인데, 이제 또 도로 낮추는 변절(變節)이 있게 되었으니, 신하의 마음에 있어서는 기사년(7999)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신하의 의리도 또한 어찌 죽음으로 쟁집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마는, 이제 중궁 전하께서 이미 복위(復位)하셨는데, 희빈의 강호(降號)에 대하여 다시 다룬다면, 이는 또 한 나라에 두 존위(尊位)가 있는 것이 될 것이니, 이것이 오늘날 신하가 이미 복위를 경축하고 또 강호를 슬퍼하여 당황함을 형용할 수 없고 놀라와서 안정하지 못하고 또 감히 아뢰 바가 있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이제 전하의 처분을 살피고 삼가는 도리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여겨 도리어 신하들을 시켜 모여서 의논하게 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아들이 어머니를 의논하는 것이고 신하가 임금을 의논하는 것이 될 것이니, 천하에 어찌 이런 도리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모여 의논하는 일은 중하게 하려다가 도리어 경하여지고 마땅하게 하려다가 도리어 잘못되는 것만을 볼 것이니 신하가 감히 할 수 없는 것일 뿐더러, 전하께서도 신하에게 하문하셔야 할 것이 아닌 듯합니다.”</p> <p>하고, 승지(承旨) 박태순(朴泰淳)이 말하기를,</p> | <p>○甲申/領議政南九萬拜命，上命引見，慰諭備至。九萬曰：“臣於會議朝堂之教，竊以爲過。政院之啓，甚是失當。禧嬪將陞壺位之時則爲臣子者，以禮經爭執可也。及夫號名已定，正位坤極，則爲臣子者，亦既事之以君母矣。今又有還降之變節，其在臣子之心，與己已何異？臣子之義，亦豈不以死爭之哉？但今中宮殿下，既已復位，而復爭禧嬪之降號，則是又一國而有二尊矣。此今日臣子所以既以復位爲慶，且以降號爲感，愴怳難狀，驚愕靡定，而亦不敢有所陳白者也。今若以殿下處分，爲有欠於審慎之道，而反欲使諸臣會議，則是子而議母，臣而議君，天下寧有是理哉？今此會議之舉，祇見其欲重而反輕，欲當而反失，非但臣子之所不敢爲，亦恐非殿下之所當下詢於臣子者也。”承旨朴泰淳曰：“姝事至重且大，故臣等以爲，廟堂不可不與聞，非謂有可更議也。而倉卒之際，誤下會議二字，臣等旋覺其爲失，欲暴本意而煩瀆是懼，不敢更有言耳。”上曰：“政院之啓，只以廟堂不得親承傳教，</p> |

| | | |
|--|---|---|
| | <p>“이 일은 지극히 중대하므로, 신들은 묘당에서도 참여하여 듣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다시 의논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데, 갑작스러운 즘에 잘못하여 회의(會議) 두 자를 썼습니다. 신들이 곧 그 잘못을 깨닫고 본의를 드러내려 하였으나, 번거롭게 아뢰는 것이 두려워서 감히 다시 말할 수 없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정원에서 아뢴 것은 묘당에서 전교를 친히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일을 신중히 하려 하였을 뿐이다. 대신의 말이 이러하니 모여 의논하는 것을 멈추라.”</p> <p>하였다. 남구만이 말하기를,</p> <p>“이제 희빈의 강호는 중궁 전하께서 복위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왕비가 있을 수 없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폐출(廢黜)된 것과 같지 않으니, 아마도 분수에 따라 스스로 안정할 것이고, 궁위(宮闈) 사이는 화목하여 화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원에서 아뢴 데에 ‘곤위(壺位)의 승출(陞黜)’이라 하였는데, 낮은 것[降]을 내친 것[黜]이라 한 것은 그 사실에 크게 어그러집니다. 지극히 공경스럽고 지극히 엄한 곳에 이토록 부당하게 말을 썼으므로, 승지(承旨)들은 무겁게 책벌(責罰)을 가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으나, 갑자기 변절을 만나 당황할 즘에 문자를 가리지 못한 것은 또한 매우 허물하기 어려우니, 추고(推考)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 <p>故欲重其事也。大臣言如此，其停會議。”九萬曰：“今禧嬪降號，乃因中宮殿下復位，不可有二后而然耳。其與有罪見黜者不同，想必引分自安，宮闈之間，庶幾雍穆和平矣。政院之啓有曰：‘壺位陞黜。’以降爲黜，大非其實，至敬至嚴之地。措語失當至此，諸承旨不可不重加責罰，而猝遇變節，愴之際，不擇文字，亦難深咎，請推考。”上曰可，仍命宣醜而罷。謹按國無二尊，古今通誼也，九萬以政院之請會議爲非。且曰：“中宮復位，復爭禧嬪之降號，則是一國有二尊，此非不知無二尊之義者，然尙曰：‘以復位爲慶，降號爲感。’今日臣子之心，與己巳何異？至以以死爭之爲言，惡在其無二尊之義也？所謂無二尊者，蓋以臣子於君母，既有所尊，則不當復有竝其尊焉耳。不當復竝其尊，則降號誠爲是，又安有感之之理哉？況己巳之事，尊卑易位，倫彝失序，在上躬爲失德，在群下爲至痛，中宮復位，張氏降號，在上躬爲盛德，在群下爲大慶，宜不敢比而論之。而九萬方且愴驚愕，謂有以死爭之之義者，殆無人臣禮也。噫嘻！</p> |
|--|---|---|

“그리하라.”

하고, 이어서 선온(宣醞)하고 파하였다.

삼가 살피건대, 한 나라에 두 존위(尊位)가 없다는 것은 고금의 통의(通誼)이다. 남구만은 정원에서 회의를 청한 것을 그르다 하고, 또 ‘중궁이 복위하였는데 회빈의 강호에 대하여 다시 쟁집하면 이는 한 나라에 두 존위가 있는 것이 된다.’ 하였으니, 이것은 두 존위가 없다는 의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복위를 경축하고 강호를 슬퍼한다. 오늘날 신하의 마음이 기사년과 무엇이 다르냐?’ 하고, 죽음으로 쟁집한다고까지 말하였으니, 그 두 존위가 없다는 의리가 어디 있는가? 두 존위가 없다는 것은 대개 신하가 군모(君母)에 대하여 이미 높이는 이가 있으면 다시 함께 높이는 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니, 다시 함께 높이는 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 강호는 참으로 옳은 것인데, 또 어찌 슬플 리가 있겠는가? 더구나 기사년의 일은 존비(尊卑)가 지위를 바꾸고 윤리가 차서를 잃은 것이므로, 임금에게 있어서는 덕을 잃은 것이고 못 신하에게 있어서는 매우 통탄한 것이며, 중궁이 복위하고 장씨가 강호된 것은 임금에게 있어서는 성덕(盛德)이고 못 신하에게 있어서는 큰 경사이므로, 감히 견주어 논할 수 없을 것인데, 남구만이 바야흐로 또한 당황하고 놀라고 죽음으로 쟁집할 의리가 있다고 한 것은 거의 신하의 예(禮)가 없는 것이다. 아아, 남구만은 조정이 자주 변하고 당화(黨禍)가 이어져서 정권을 잡던 대신이 전후하여 죽은 것을 친히 보았는데, 경시(更始)하는 처음을 당하여 자신이 상상(上相)이 되어 나와서 국정(國政)을 맡았으니, 문득 두려워하여 스스로 피하기를, ‘뒷날 민암(閔黯)의 무리가 다시 득지(得志)하면 나도 다시 죽게 될 것인데, 어찌하여 면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고, 드디어 민암 등의 뜻을 잃지 않는 것을 근본 삼았으므로, 처음 입시(入侍)하여 그

九萬，親見朝廷數變，黨禍相仍，秉政大臣，前後就死，而當更始之初，身爲上相，進任國政，則輒瞿然自謀曰：‘他日黯黨，若復得志，則吾其復及於死矣，盍思所以免之？’遂以不失黯等意爲主，故首初入侍，其言如此，殊不覺其爲反常悖理之歸。” 仍又白于上曰：“世皆目臣以他日誅戮之人。【見于下。】雖爲君德有所勉戒，而肝肺所在，終不得自隱耳。是以，於希載謀害國母之罪，又極力護之，舐排公議，拂逆衆心，假借兇逆之魁，偃息覆載之間，吁亦痛矣！徐文重倡上章之議，尹趾完爲供奉之論，【見于下。】以自媚於黯黨，然文重齷粗，趾完朴魯，俱無學識，本不足深責。惟是九萬，老而有機警，獨當鼎軸，費盡心計，思量於禍福之幾，經營仿趨避之間，纖悉無遺策。趾完文重輩，競相引重，其勢難動。上意亦一循九萬所言，終使堂堂聖朝，討罪正法之大義，慶而不舉，闕而不行，其罪可勝誅哉？”

| | | |
|--|--|--|
| | <p>말이 이리하였으니, 그것이 도리어 상리(常理)에 어그러지는 데로 돌아가는 것을 아주 깨닫지 못하였다. 이어서 또 임금에게 아뢰기를, ‘세상에서 신을 뒷날에 죽일 사람으로 지목합니다. 【아래에 보인다.】 임금의 덕을 위하여 권면하고 경계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진심이 있는 곳은 끝내 스스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였다. 때문에 장희재(張希載)가 국모(國母)를 해치려 꾀한 죄에 대하여서도 힘을 다하여 감싸서, 공론을 막아 물리치고 못사람의 마음을 떨쳐 거슬러 흥역(兇逆)의 우두머리를 용서하여 천지 사이에서 편히 쉬게 하였으니, 아! 또한 통탄스럽다. 서문중(徐文重)이 상소하자는 의논에 앞장서고 윤지완(尹趾完)이 공봉(供奉)하자는 논의를 하여 【아래에 보인다.】 스스로 민암의 무리에게 아첨하였으나, 서문중은 거칠고 윤지완은 어리석어 모두 학식이 없으므로 본디 매우 책망할 것도 못된다. 오직 남구만은 늙었는데도 기지가 있으며 혼자 정승을 맡았으므로 심계(心計)를 다하여 화복(禍福)의 기미를 헤아리고 취사(取捨) 사이를 경영하되 상세함을 다하여 유책(遺策)이 없었는데, 윤지완·서문중의 무리가 서로 앞다투어 추중(推重)하여 그 세력을 움직이기 어려웠다. 임금의 뜻도 남구만이 말하는 것을 모두 따랐으므로, 마침내 당당한 성조(聖朝)에서 죄를 치고 법을 바루는 대의(大義)가 버려지고 막혀서 거행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죄를 이루 주벌(誅罰)할 수 있겠는가?</p> | |
| <p>숙종 26권, 20년 (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5월 13일(경술) 1번째기사</p> |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이내 평안도 관찰사 이유(李濡)를 인견(引見)하였다. 막 사조(辭朝)하려고 하는데, 도승지 이언강(李彦綱)이 아뢰기를, “이정(李禎)이 성천 부사(成川府使)로서 간관(諫官)이 되어 상소하여 말하기</p> | <p>○庚戌/御晝講， 仍引見平安道觀察使李濡， 以方辭朝也。 都承旨李彦綱曰：“李禎以成川府使爲諫官上疏言， 品官是公私賤之裔。 儒生是流離編伍之曹，</p> |

| | | |
|---|--|---|
| | <p>를, ‘품관(品官)은 공천(公賤)·사천(私賤)의 후손이고 유생(儒生)들은 유리(流離)·편오(編伍)8022)의 무리로서 불효(不孝)와 불자(不慈)를 보통으로 여긴다.’고 하여 전 도(道)를 들어서 모욕을 가하니, 본도(本道)의 유생들이 글을 올려 스스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해당 관서에서 복주(覆奏)하여 이정의 말을 옳다고 하니, 서인(西人)이 더욱 분하고 억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품관과 유생들 중에 비록 미천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 이정의 말과 같기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이정을 파직시키라고 명령하였다. 이유가 평안도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진휼청(賑恤廳)의 곡식을 가지고 구제해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 의논해 보도록 하여 묘당이 2만 석(石)을 주라고 허락하였다. 복주(覆奏)가 늦었고 짐을 실어 보내기도 길이 멀었는데, 초가을에 나누어 주었던 것을 금방 다시 징수해 들이니 백성이 모두 원망하였다.</p> | <p>不孝不慈，視以爲常，舉一道而詬辱之。本道儒生，上章自辨，該曹覆奏，以禎言爲是。西人尤憤鬱，品官儒生，雖或有卑微者，何至如禎言哉？”上命罷禎職。濡以本道年饑，請得賑恤廳穀以濟之。上使議于廟堂，廟堂許與二萬石，覆奏既晚，轉運又遠，近秋始散，旋復徵納，民皆怨之。</p> |
| <p>숙종 26권, 20년 (1694 갑술 / 청 강희 (康熙) 33년) 윤5월 3일(기사) 2번째기사</p> | <p>대신과 비변사(備邊司)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남구만이 아뢰기를,</p> <p>“국가에 경사가 있어 백성이 환희에 차 있으므로 위열(慰悅)의 도리가 있어야 하니 봄 가을의 대동세(大同稅) 가운데 마땅히 한 등급을 감면해 주어야 할 것이며, 서북(西北)지방에 세 도(道)는 대동세를 시행하지 않으니 또한 대동세와 상당한 것을 가지고 감면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유사(有司)로 하여금 그 용도(用度)를 헤아려 품처(稟處)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뒤에 대동세를 한 등급을 감면하였다. 남구만이 아뢰기를,</p> | <p>○引見大臣備局諸臣，南九萬曰：“國家有慶，民生歡聳，合有慰悅之道。春秋大同中，宜減一等，西北三道，不行大同，亦就其與大同相當者而減之，然宜使有司，量其用度，稟處之。”上從之，後大同減一等。九萬曰：“李師命事，既有嚴教，不敢舉論。其罪雖重，亦當誅止其身，一番人恐其爲害於己，流配其妻孥，與金錫胄妻，同時行遣，遐裔烟瘴，不保朝夕，合加放釋。”上命放釋。上以追復庚申勳籍</p> |

| | | |
|--|---|---|
| | <p>“이사명(李師命)의 일은 이미 엄중한 분부가 계셨기에 감히 거론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죄질이 비록 무겁다고는 하지만 또한 마땅히 그 자신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한쪽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힐까 염려해서 그 아내와 자식들을 유배시켜 김석주(金錫胄)의 아내와 동시에 보냈습니다. 먼 시골에서 풍토병에 시달리며 조식을 보전하지 못하오니 응당 석방시켜 주어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석방시키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경신년의 훈적(勳籍)을 추복(追復)시키는 일의 가부를 가지고 남구만에게 물으니, 남구만이 그 사위인 조태상(趙泰相)이 일찍이 훈적에 참여되었기 때문에 혐의스럽게 여겨 대답하지 않았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이것을 어찌 물어보고 알기를 기다리겠는가? 그 명을 즉시 거행토록 하라. 추록(追錄)할 때에 좌상(左相) 【박세채(朴世采)】를 가리킨다.】 이 주차(奏筭)가 있었는데, 이미 감정(勘定)을 거쳐서 갑자기 변경할 수 없으니 지금 굳이 아울러 추복할 것은 없다.”</p> <p>하였다. 승지 박태순(朴泰淳)이 아뢰기를,</p> <p>“훈적(勳籍)이 이미 추복되었으니, 옥안(獄案)도 마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청컨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상고하여 열람해 처리토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옳다고 하였다. 의금부에서 마침내 대신에게 의논할 것을 청하니,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p> | <p>事當否，問九萬，九萬以其壻趙泰相曾參勳籍，嫌不對。上曰：“此奚待問而知之？其命卽爲舉行。”追錄時，左相【指朴世采。】有奏筭，而已經勘定，不得猝變。今不必竝復也。承旨朴泰淳曰：“勳籍已復矣，獄案亦當釐正。請使該府，考閱而處之。”上曰可。禁府遂請就議于大臣，備局啓言：“庚申逆獄之明白，己巳群奸之欺誣，聖明旣盡洞燭。該府亦已詳讞，今無可更陳者。功臣之追復勳籍，還賜賞典及罪人之緣坐籍沒，竝從當初處置，令攸司舉行，追錄勳籍，雖勿舉論，而若其竝命於拷掠之下，則亦甚冤痛。復其官爵，還其籍沒，似不可已。追錄時伏法罪人，逆節昭著，與當初承服者無別，凡緣坐籍沒等事，亦當一體爲之。”上從之。</p> |
|--|---|---|

| | | |
|---|---|---|
| | <p>“경신년(8083) 역옥(逆獄)의 명백함과 기사년에 여러 간사한 무리들이 기만한 것은 성상께서 이미 모두 환희 알고 계시고 해당 관서에서도 이미 상세히 논죄를 하였으니, 지금 무어라 다시 진언할 것이 없습니다. 공신(功臣)에 대해 훈적을 추복시키고 상전(賞典)을 다시 내리는 것과 죄인에 대해 연좌(緣坐)·적몰(籍沒)시키는 일은 아울러 당초에 내렸던 조치에 따라 유사(攸司)로 하여금 거행토록 해야 합니다. 훈적을 추복하는 문제는 비록 거론할 수 없겠지만 만일 고문한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면 역시 매우 원통한 일이니, 그 관작(官爵)을 회복시키고 적몰한 가산(家産)을 되돌려 주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인 듯합니다. 추록(追錄)할 때에 복주(伏誅)한 죄인은 역모의 정상이 소상이 드러나 당초에 승복(承服)한 자들과 구별이 없으니, 무릇 연좌·적몰 등의 일을 또한 마땅히 한결같이 하여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 |
| <p>숙종 26권, 20년 (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윤5월 15일(신사) 6번째기사</p> | <p>장령(掌令) 김연(金演)이 상소하여 박상경의 위험함과 박권(朴權)의 경솔함을 논핵하고, 또 아뢰기를,</p> <p>“박상경을 멀리 귀양보내고 박권을 특채한 것이 조정을 더욱 어그러지게 하고, 인심을 분율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대신이 마음을 고쳐 도성에 들어왔으니, 박상경과 박권에게도 또한 전명(前命)을 거두시어 조정하고 진정시키는 방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빨리 양사(兩司)의 청을 윤택하여 【장희재를 엄중히 국문하란 말이다.】 왕법을 빨리 바로잡으소서.”</p> <p>하고, 끝에 가서 또 아뢰기를,</p> | <p>○掌令金演上疏論：“朴尙綱之危險，朴權之率爾，又言遠配尙綱特遞權，以致朝著益乖，人心愈鬱，今大臣幡然入城，則尙綱、權亦宜寢前命，以爲調劑鎮服之地。且願亟允兩司之請，【指希載嚴鞫之論。】夫正王法，末言朴世堂早年勇退，樂道畎畝，文章清節，可謂聖世之逸民，有子泰輔，能樹大節，而年迫七十，貧窶轉甚，宜加命德之典，且施周急之惠。朴世采奉其偏母，菽水不繼，亦宜優賜食物衣資，以示老老</p> |

| | | |
|--|---|---|
| | <p>“박세당(朴世堂)은 조년(早年)에 용감히 물러나 농촌에서 도(道)를 즐겨 문장과 깨끗한 절개가 성세(聖世)의 일민(逸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박태보(朴泰輔)도 능히 큰 절의(節義)를 세웠는데, 나이가 70이 다 되어 더욱더 가난하게 지내니, 마땅히 명덕(命德)8118)의 은전을 더하시고 도와주는 혜택도 베풀어 주소서. 또 박세채(朴世采)는 그의 편모(偏母)를 봉양하고 있는데 숙수(菽水)8119)도 잇기가 어려운 형편이니, 또한 식물(食物)과 의복을 넉넉히 하사하시어 늙은이를 대우하는 의리를 보여주소서.”</p> <p>하였다. 임금이 예(例)에 따라 답하고 아래의 두 가지 일은 본조(本曹)를 명하여 품(稟)하여 행하게 했다.</p> <p>삼가 살피건대, 박세당이 비록 편안히 물러나 가난함을 이기고 지낸 절개는 있지만 농촌에서 도(道)를 즐긴 성세(聖世)의 일민(逸民)이라고 칭허(稱許)한 것은 그 동류(同類)에 맞지 않은 비김이라 할 수 있고, 박세채는 유학(儒學)으로 정승에 임명되어 막 빙소(聘召)에 응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께서 의식(衣食)의 자료를 하사하기를 청하였으니, 대간(臺諫)의 청함이 어찌 그리도 보잘 것이 없는가? 김연(金演)의 사리(事理)를 모름이 심한 편이다.</p> | <p>之義。”上例報之。下端二事，命該曹稟行。謹按世堂，雖有恬退固窮之節，而許之以樂道畎畝，聖世逸民，則可謂擬非其倫。世采以儒學拜相，方應聘召，而請賜其母衣食之資，臺諫之請，何其細也？演之不識事甚矣。”</p> |
| <p>숙종 26권, 20년 (1694 갑술 / 청 강희 (康熙) 33년) 윤5월 29일(을미) 1번째기사</p> | <p>우의정 윤지완(尹趾完)이 배명(拜命)하자,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윤지완이 돛자리를 짊어지고 함문(閤門) 밖에 이르자, 임금이 중관(中官) 네 사람에게 명하여 부축하고 편전으로 올라오도록 하니, 윤지완이 이내 아뢰기를,</p> <p>“주상의 명단(明斷)은 천부적으로 타고나신 것이나 일을 당해서는 총명과 날카로움이 지나치시니, 만일 소상(消詳)하고 신중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함양(涵養) 공부에 부족함이 있는 듯합니다.”</p> | <p>○乙未/右議政尹趾完拜命。上引見，趾完擔席到閤門外，上命中官四人，扶上殿。趾完言病不可任事。上慰勉不許，趾完仍曰：“上明斷天啓，而當事敏銳過之，若不消詳慎重，則必有後悔，此於涵養工夫，似有不足。又陳開言路輔世子之道，仍曰，上教有曰：</p> |

| | | |
|--|---|---|
| | <p>하고, 또 언로(言路)를 열고 세자를 보양하는 방도를 진달하였다. 이어 아뢰기를,</p> <p>“주상께서 하교하신 가운데 ‘국본(國本)을 동요시키면 역율(逆律)로 논죄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저 국본(國本)을 동요시키는 것은 바로 역적인데, 어찌 먼저 금령(禁令)을 제정해서 처단하기를 기다릴 수 있단 말입니까? 가만히 생각하건대, 성상께서는 지난번 죄를 입은 여러 신하들에 대해서 오히려 다소 석연하게 여기시지 아니하는 점이 있으신 듯합니다. 이는 미안한 일입니다. 신은 이 하교를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윤지완이 또 조적(糶糶) 가운데서 매우 오래되어 바치지 못한 것들을 탕감해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 품의하여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승지 이언강(李彦綱)이 아뢰기를,</p> <p>“적곡(糶穀)을 자주 탕감하는 것은 그 형편상 지탱하기 어렵습니다.”</p> <p>하니, 윤지완이 아뢰기를,</p> <p>“승지의 말이 진실로 옳으니, 어찌 대신의 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p> <p>하였다. 임금이 비로소 뒷날에 가서 다시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윤지완이 또 일을 신중히 처리하고 용도를 절약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또 아뢰기를,</p> | <p>‘動搖國本，論以逆律。夫動搖國本，是逆也。何待先立禁令而處之乎?’ 竊意聖明，於向時被罪諸臣，猶有未盡釋然者，此爲未安。臣謂宜收此教。” 上許之。趾完又請減糶糶之最久不納者，上命廟堂稟行。承旨李彦綱曰：“數減糶穀，其勢亦難支。” 趾完曰：“承旨之言誠是，豈可以大臣言而必行之乎? 上始命待後日更議。趾完又陳敬事節用之義，且曰：“春秋陵幸，宜一切省民弊。” 上然之。又曰：“咸以完之獄，諸人始或自服，或罪著而未究，雖竝被放釋，鞫獄方急，未暇更問，而後日似當按治，今問閔黯，宜勿舉誣獄一事也。” 上曰：“不然。以完事，與金廷說獄事，一也。閔黯之入告，以廷說及金慶咸爲張本，過一日，金吾諸臣，請設鞫，苟如是也。何不使以完告，而大臣自告乎? 閔黯欺誣之狀，死有餘罪，今欲按治以完所引諸人，則金吾諸臣絕島安置者，皆當放，此不可爲也。康晚泰·崔格·韓重嫻，非爲謀逆也，其言是非，姑勿論，不過復坤宮一節，而黯必欲魚肉搢紳，故特罪之矣。” 趾完曰：“中宮復位，自上覺悟</p> |
|--|---|---|

| | | |
|--|--|---|
| | <p>“봄가을로 능(陵)에 거둥하실 때에 마땅히 일체 민폐(民弊)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또 아뢰기를,</p> <p>“함이완(咸以完)의 옥사는 여러 사람이 처음에 자백을 하기도 하고, 또는 죄상이 드러났지만 구문(究問)을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모두 석방을 시키고 국옥(鞠獄)이 바야흐로 급하여 다시 심문할 겨를이 없지만 뒷날 마땅히 조사를 해야 될 듯합니다. 지금 민암(閔黯)을 심문하는 데 있어서는 무옥(誣獄)한 가지 일은 거론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그것은 그렇지 않다. 함이완의 일과 김정열(金廷說)의 옥사는 동일한 것이다. 민암이 입고(入告)했을 때 김정열과 김경함(金慶咸)을 장본(張本)으로 삼았고, 하루가 지나서 의금부의 여러 신하들이 국청(鞠廳)을 설치할 것을 청하였다. 진실로 이와 같았다면 어찌해서 함이완으로 하여금 고발하게 하지 않고 대신(大臣)이 스스로 고발하였겠는가? 민암의 기만하고 무함한 죄상은 죽어도 남는 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 함이완이 인정한 여러 사람들을 문초하려 하면 의금부 여러 신하로서 절도(絶島)에 안치(安置)된 자들을 모두 석방해야 마땅한데, 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강만태(康晩泰)·최격(崔格)·한중혁(韓重赫)은 역모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그 말의 옳고 그른 것은 논할 것이 없고 곤궁(坤宮)을 추복(追復)하려 한 일절(一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데, 민암이 반드시 진신(摺紳)을 어육(魚肉)으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특별히 처벌한 것이다.”</p> | <p>而行之，愚夫愚婦，莫不欣喜，此豈渠輩所敢圖者，其言誠痛甚矣。” 上曰：“非謂以渠輩真有是事，當時治獄者，欲以此張大之耳。” 趾完曰：“自上臨御二十年，不幸朝著屢變，群臣多死，其人邪正賢愚，姑勿論，彼入則殺此，此入則殺彼，死者多是翹楚，人材之出有限，而刑戮之禍相仍，國將空虛，誰與爲治？今若就國人皆曰可殺者而不貸之，至於可以死可以無死者，宜致寧失不經之意，俾無濫刑之患。” 上曰：“卿言誠然，仍命宣醢。” 趾完言：“扶掖有駭觀瞻，寧匍匐以出？” 上可之。遂坐而匍匐，章服沾泥。 彥綱白上曰：“左相既到城外，吏曹參判尹拯，負士林重望，與左相無異，若以禮招徠，則裨益弘多。” 上曰：“予固欲敦勉之矣。”</p> |
|--|--|---|

| | | |
|--|--|--|
| | <p>하였다. 윤지완이 아뢰기를,</p> <p>“중궁의 복위(復位)는 주상께서 깨달으시어 시행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조차 모두 기쁘게 생각한 바이니, 이것이 어찌 저들의 가히 도모할 일이겠습니까? 그 말은 참으로 절통함이 심합니다.”</p> <p>하니, 임금의 말이,</p> <p>“저들이 참으로 이런 일을 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 옥사를 다스리는 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과장 확대했을 뿐이다.”</p> <p>하였다. 윤지완이 아뢰기를,</p> <p>“주상께서 재위하신 지 20년 동안 불행히도 조정이 여러 번 변화를 겪어 여러 신하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정(邪正)과 현우(賢愚)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저쪽 편이 들어오면 이쪽 편을 죽이고, 이쪽 편이 들어오면 저쪽 편을 살해하는데, 죽은 사람들 중에는 출중한 인물이 많았습니다. 인재가 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형륙(刑戮)의 재화가 계속 이어져 나라가 장차 텅 비게 되었으니 누구와 더불어 정치를 하시렵니까? 지금 온 국민이 모두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마시고 죽어도 그만 안죽어도 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차라리 형벌에 실수를 할지라도 형벌을 남용하는 근심이 없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의 말이,</p> | |
|--|--|--|

| | | |
|---|--|--|
| | <p>“경(卿)의 말이 진실로 옳다.”</p> <p>하고, 이내 술을 하사하도록 명하였다. 윤지완이 아뢰기를,</p> <p>“겨드랑이를 부축하는 것은 남보기에 해괴하니, 차라리 엉금엉금 기어서 나가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옳다고 하였다. 드디어 앉아서 기어가니, 장복(章服)에 진흙이 묻었다. 이언강이 임금에게 아뢰기를,</p> <p>“좌상(左相)은 이미 성 밖에 와 있습니다. 이조 참판 윤중(尹拯)이 사림(士林)의 중망(重望)을 잃어진 것은 좌상과 다름이 없으니, 만일 예(禮)로써 불러 위로한다면 도움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내가 진실로 돈면(敦勉)하려고 하노라.”</p> <p>하였다.</p> | |
| <p>숙종 27권, 20년 (1694 갑술 / 청 강희 (康熙) 33년) 8월 6일 (신축) 2번째기사</p> | <p>좌의정 박세채(朴世采)가 차자를 올리기를,</p> <p>“해서(海西) 일대는 국가의 근기(近畿)인데, 부역이 번다하고 무거워 민중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더욱이 습속이 궁벽하고 누추하여 조정에 있는 이름 있는 사대부(士大夫)가 민간의 병폐를 위에 진달하기를, 선정신(先正臣)이</p> | <p>○左議政朴世采上劄曰：“海西一路，爲國家近甸，賦役煩重，民不聊生，況其俗僻陋，無名士大夫立於朝，可得以民瘼上徹，如先正臣李珥陳啓之爲者？方伯守令，率多苟度目前，不敢爲變通</p> |

이(李珥)가 진계(陳啓)하였듯이 한 경우가 없습니다. 방백(方伯)이나 수령(守令)들은 대개 모두가 구차하게 눈앞의 일만 하고 과감하게 변통하는 계책을 세우지 않으므로, 민생들의 곤궁과 폐해가 극도에 달했습니다. 신이 이 고장을 왕래한 지가 또한 거의 30년이나 되는데, 다른 여러 도에서 실시하는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개 그 법의 기원은 이에게서 시작된 것인데, ‘해주(海州)는 1결(結)에 1두(斗)다.’라는 말을 혹자는 ‘주자(朱子)가 말한 「금곡(金谷)의 지출할 경비를 모두 계산하여 따져 보고서 균등하게 조절하여, 빈부(貧富)가 서로 동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한 글과 합치되니, 진실로 공법(貢法) 중에 좋은 규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선혜청(宣惠廳)을 두었음은 자못 우연히 한 것이 아니었고, 먼저 관동(關東)과 경기(京畿)에 시행했는데, 명칭은 달랐지만 실속은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호남(湖南)과 영남(嶺南)에도 미루어 시행하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민중들이 모두 신뢰(信賴)했으니, 이른바 대동법이 이것입니다. 지금 서북(西北)의 두 도(道)는 변방의 메마르고 거친 땅이어서 이 법을 시행하기 어렵지만, 이 밖의 5도에서는 바야흐로 모두 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유독 해서(海西)만 그렇지 못합니다. 의논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북쪽에 가는 사신(使臣)의 수용(需用)은 진실로 경기(京畿)의 전례대로 선혜청에서 맞추어 주면 되지만, 이른바 별도로 청구하는 수백금(數百金)은 경기의 고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도리어 처리하기 어려운 듯하다.’ 합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에 이는 오직 유사(有司)가 잘 요량해서 하기에 달린 것이어서, 혹은 특별히 더 넉넉하게 주거나 혹은 민간의 실정을 잘 살피어 처리한다면, 마땅히 편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여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양전(量田)하는 한 가지 일을 먼저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개 해주(海州)·평산(平山)·황주(黃州)·안악(安岳)의 큰 고을 넷은 이미 성안(成案)했고, 나머지는 모두 작은 고을이어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올해의

之計，生民之困弊極矣。 臣之往來茲土，亦幾三十年，頗聞其恨，不能與諸道通行大同之法，蓋其法之源，起於李珥，海州一結一斗之說，或者以爲，有合於朱子所謂摠計金谷支費。 究考而均節之，使其貧富不相懸之文，誠貢法之良規也。 其間宣惠廳之設，殊非偶然。 先施於關東·京畿，名異而實無不同焉。 厥後湖南、嶺南，無不爲之推行，民皆賴之，所謂大同法是也。 今西北兩路，爲邊圉磽确之地，難行此法，自餘五道，皆方享其利，而獨海西不然，議者多言，北使之需，固可依京畿例，自宣惠廳準給，而至如所謂別求請數百金，非畿邑之所有，却似難處，然以臣慮之，此惟在有司善爲商度，或別加優給，或深察民情而處之，宜無不得其便，最是量田一事，不可不先行。 蓋海、平、黃、安四大邑，既已成案，餘皆小邑而無難，今年農事，雖曰未稔，亦不至於因此遂廢，則利病大略，如斯而已。 臣謹與首相及度支之臣相議，幸無異指。 今者新監司金夢臣，爲人精確，留心世務，年力又強，必能任此而無不勝之患，伏乞殿下，於辭陞

| | | |
|---|---|--|
| | <p>농사는 비록 잘 여물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또한 이로 인해 드디어 폐하지는 않을 것이니, 이해(利害)가 대략 이와 같을 뿐입니다. 신이 삼가 수상(首相) 및 탁지(度支)의 신하와 상의해 보니 다행히도 이의(異議)하는 뜻이 없었고, 이번의 새 감사(監司) 김몽신(金夢臣)이 사람됨이 정밀하고 정확하여 세상 일에 마음을 두는 사람인데다 나이와 체력이 왕성하니, 반드시 맡아도 감당하지 못할 염려는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사폐(辭陞)할 때 특별히 탑전(榻前)으로 다가오도록 하여 그런 법을 시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되,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여기신다면 단정코 시행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의 대답을 내려 아름답게 여기며 받아들였다.</p> | <p>之時，特令進前，俾詢其法之可行與否，以爲有益於民，則斷而行之。”上賜批嘉納之。</p> |
| <p>숙종 27권, 20년 (1694 갑술 / 청 강희 (康熙) 33년) 9월 7일 (임신) 1번째기사</p> | <p>이때 숙명 공주(淑明公主)의 여러 아들이 장차 공주를 위해 헌수(獻壽)하려고 하자, 임금이 듣고 잔치 도구를 내렸다. 그리고 또한 선운(宣醞)하고 사악(賜樂)하도록 명하였다. 정명 공주(貞明公主)를 대접한 고사에 의한 것이다.</p> | <p>○壬申/時淑明公主諸子，將爲主獻壽。上聞之，命賜宴具，又宣醞賜樂，倣饗貞明公主故事</p> |
| <p>숙종 27권, 20년 (1694 갑술 / 청 강희 (康熙) 33년) 10월 4일(무술) 2번째기사</p> |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이때 좌의정 박세채(朴世采)가 조정으로 돌아와 같이 입시(入侍)했다. 임금이, ‘술에 빠지다.’라고 한 대문을 진강(進講)하자, 이르기를,</p> <p>“술은 해로운 것이니 인신(人臣)은 또한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내직(內職)에 있는 사람도 많이 마시면 반드시 일을 폐하게 되는데 외직(外職)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심하니, 오늘날의 신료(臣僚)들은 마땅히 더 경계하고 성찰(省察)해야 한다.”</p> <p>하였다. 박세채가 또 정승의 직을 해면(解免)하기를 바라며 서추(西樞)로서 즉</p> | <p>○御晝講，時左議政朴世采還朝同侍。上，講至酗于酒曰：“酒之爲害，人臣亦所當戒也。居內職，崇飲必廢事，外職爲尤甚，今日臣僚，宜加警省也。”世采仍乞解相職，以西樞時入前席。上慰勉不許。世采言：“臣所嘗進冊子，既命廟堂議處矣。然其綱領〔綱領〕條目，皆有本源來歷，亦未易究，臣請更以冊子或帖子，詳陳之。”上曰可。又曰：“宦官文撤，爲臺諫所</p> |

| | | |
|--|--|---|
| | <p>시 탐전(榻前)의 자리로 입시(入侍)하니, 임금의 면유(勉諭)하며 위로하고 윤희하지 않았다. 박세체가 아뢰기를,</p> <p>“신이 일찍이 올린 책자(冊子)를 이미 묘당(廟堂)에서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강령(綱領)과 조목(條目)이 모두 본원(本源)과 내력이 있는 것이어서 또한 구명(究明)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다시 책자나 혹은 첩자(帖子)로 자세하게 진달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p> <p>“환관(宦官) 문철(文徹)이 대간(臺諫)의 논박받은 것을 전하께서 원통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신다면, 단지 ‘죄가 명백하지 못하니 잡아다가 심문하여 핵실(覈實)해서 처리하라.’고만 분부하시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제수(祭需)와 유관(遊觀) 두 가지 일을 들어 앞질러 변석(辨釋)하셨으니, 이는 왕정(王政)의 대체에 있어, 그욕이 생각하건대 손상됨이 있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 이 다음에는 반드시 경계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였다. 지경연사 유상운(柳尙運)이 아뢰기를,</p> <p>“사간 임원구(任元耆)가 윤지완(尹趾完)을 지론(持論)이 구차하고 화복(禍福)에 요동된다고 지척(指斥)했는데, 이는 사실에 근거해 그 일 자체를 논한 것이 아니라 실지로 심술(心術)의 본원(本源)을 논한 것이어서, 자못 과격하게 되었습니다.”</p> | <p>論，殿下疑其爲冤，則只諭之以罪未明白，拿問覈處可也。今乃特舉祭需遊觀二事，先爲之辨釋，此於王政大體，竊恐有傷，願殿下後必爲戒。”上嘉納之。知經筵柳尙運言：“司諫任元耆，斥尹趾完，持論苟且，動於禍福，此非就事論事，實攻心術本源，殊爲過激。”世采言：“權大運之疏，雖未盡善，亦頗優於諸人，今雖被謫，或有惜之者，然己巳之事，責將誰歸？曾未數月，直請放宥，恐非調劑之道。禍福之說，未必有深意，且臺言固過中，惟在殿下警責臺官，慰安大臣，善爲裁處耳。”尙運及承旨李光夏共言：“宜辨其不然，而警責似爲過。”上曰：“大臣之言，雖未恰當，本心無他，予已知之。”翌日世采上筭言：“更考大運之疏，反涉於承順，則臣果失對，且所謂警責慰安者，是指今日批曉臺官，遣近臣於大臣兩事，而冀其終始善處，追聞物議頗致疑，非臣本意也。”上優答之。尙運言：“權璫方竄，其母臨沒，戒其家人曰：‘其勿蓋棺。’雖過十年，必待璫至。璫罪固重，其情可悲。”世采曰：“璫嘗預論宋時烈固難遽釋，</p> |
|--|--|---|

| | | |
|--|--|--|
| | <p>하고, 박세채가 아뢰기를,</p> <p>“권대운(權大運)의 상소는 비록 모두가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또한 모든 사람들보다는 펴 나왔기에, 비록 지금 귀양가 있기는 하지만 더러 애석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년(8346)의 일은 책임이 장차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몇 달이 채 되지 않아 바로 놓아주기를 청한 것은 조정(調停)하는 방도가 아닌 듯 싶습니다. 화복에 대한 말은 반드시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닐 것이고, 또한 대관(臺官)의 말은 진실로 과중(過中)한 것이니, 오직 전하께서 대관을 경계하여 책망하고 대신을 위로하여 안정시켜 잘 재량하여 처리하시기에 달렸습니다.”</p> <p>하고, 유상운과 승지 이광하(李光夏)가 함께 아뢰기를,</p> <p>“마땅히 그런 것이 아님을 변석하기만 해야 하고, 경계하여 책망함은 과당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의 이르기를,</p> <p>“대신의 말이 비록 함당하지는 못하지만 본심(本心)에 딴 뜻이 없는 것임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p> <p>하였다. 이튿날 박세채가 차자를 올리기를,</p> <p>“다시 권대운의 상소를 고찰해 보건대 도리어 승순(承順)한 것이었으니, 신이 과연 잘못 주대(奏對)한 것입니다. 또 이른바 ‘경계하여 책망하고, 위로하여</p> | <p>然用申命圭·尹世紀·李彥純已行之例，只許其歸葬，似無不可。” 上從之。</p> |
|--|--|--|

| | | |
|---|--|--|
| | <p>안정시킨다.’는 말은 곧 오늘날 대관에게 비답을 내려 효유(曉諭)하고, 근신(近臣)을 대신에게 보내는 두 가지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종시 선처(善處)하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뒤쫓아 들어보건대, 물의(物議)가 자못 의아하게 여긴다 하니, 신의 본뜻이 아닙니다.”</p> <p>하니, 임금이 우악(優渥)하게 비답했다. 유상운이 아뢰기를,</p> <p>“권해(權階)가 바야흐로 귀양가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죽음에 임하여 가족들에게 경계하기를, ‘관(棺) 뚜껑을 덮지 말라. 비록 10년이 지나게 되더라도 반드시 권해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합니다. 권해의 범죄가 비록 무겁기는 하지만 그의 정상이 애처롭습니다.”</p> <p>하고, 박세채가 아뢰기를,</p> <p>“권해는 일찍이 송시열(宋時烈)의 논박에 참여한 사람이기에 진실로 갑자기 놓아주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명규(申命圭)·윤세기(尹世紀)·이언순(李彦純)에게 이미 시행했던 예대로 돌아와서 장사하도록 윤허하시는 것은 불가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 |
| <p>숙종 27권, 20년 (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10월 21일(을묘) 3번째기사</p> | <p>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이 본사(本司)에 모였는데, 임금이 특별히 명하여 인견(引見)했다. 병조 판서 윤지선(尹趾善)이 아뢰기를,</p> <p>“요사이 은전(恩典)과 상전(賞典)이 매우 외람되니, 마땅히 짐작해서 해야 하겠습니다.”</p> | <p>○大臣與備局諸臣，會于本司，上特命引見。兵曹判書尹趾善曰：“近者恩賞太濫，宜有斟酌。”領議政南九萬曰：“文殊城三軍門，并力築之。將校輩，俱加資級，苟有爲國效命者，將何以加</p> |

| | | |
|--|--|--|
| | <p>하고,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이 아뢰기를,</p> <p>“문수성(文殊城)은 세 군문(軍門)이 힘을 합쳐서 쌓은 것인데, 장교(將校)들에게 모두 자급(資級)을 올려주었으니, 진실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면 장차 무엇으로 그에게 상을 주겠습니까?”</p> <p>하고, 호조 판서 이세화(李世華)가 아뢰기를,</p> <p>“복훈 도감(復勳都監)의 쌀과 베로 주는 상을 밤에 당직한 하례(下隸)와 차(茶)를 맡은 여인에게까지 주었으니 매우 외람되다 하겠습니까.”</p> <p>하고, 남구만이 아뢰기를,</p> <p>“이런 때문에 상문(上聞)하게 된 것이니, 당상(堂上)은 벌이 없을 수 없고 낭관(郎官)은 마땅히 추고(推考)해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임금이 군문(軍門)의 조총(鳥銃)과 염초(焰硝)의 품질을 묻자, 남구만이 아뢰기를,</p> <p>“초(楚)나라의 철검(鐵劍)이 예리하므로 진(秦)나라 임금이 두렵게 여겼습니다. 지금 듣건대 청(淸)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조총을 구해 가서 드디어 자신들이 제작했는데, 그 제작이 매우 묘하여 우리 나라에서 만든 것처럼 쉽게 벌어지지 않고, 또한 달리는 말 위에서도 쏠 수 있다고 합니다. 기계(器械)를 이처럼 정밀하고 예리하게 하니 극성스러운 적이라 하겠습니까.”</p> | <p>其賞乎?” 戶曹判書李世華曰: “復勳都監米布之賞, 及於直夜之隸, 掌茶之女, 可謂猥甚。” 九萬曰: “以此上聞堂上不可無罰, 郎官宜推考。” 上可之。 上問軍門鳥銃焰硝之品, 九萬曰: “楚之鐵劍利而秦王畏之。 今聞淸人, 求我鳥銃以去, 遂自制作, 其制甚妙, 不如我國所造之易坼, 且能於走馬之上放之, 器械精利如此, 可謂劇敵耳。” 上曰然。 世華曰: “金錫胄功存社稷, 十世可宥, 而其子道淵, 曾有絕島定配之命未及行而已死矣。 今猶在罪籍, 乞殿下愍之。” 上曰: “卿言誠是, 仍許復官。”</p> |
|--|--|--|

| | | |
|---|--|---|
| | <p>하니, 임금의 ‘그렇다.’고 하였다. 이세화가 아뢰기를,</p> <p>“김석주(金錫胄)는 사직(社稷)에 공이 있었으니 10대가 가도록 죄를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김도연(金道淵)을 일찍이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라는 명이 계셨으나 미처 길을 떠나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적(罪籍)에 있으니, 전하께서 측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경(卿)의 말이 진실로 옳다.”</p> <p>하고, 이어 관작(官爵) 복구를 윤허했다.</p> | |
| <p>숙종 27권, 20년 (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11월 17일(신사) 1번째기사</p> | <p>장령 김호(金灝)가 승선군(崇善君)의 집에 선은(宣醞)하고 사악(賜樂)함은 불가하다고 거듭 논계(論啓)하기를,</p> <p>“일간(日間)에 있을 주가(主家)의 수연(壽筵)에 또한 이런 명이 있었는데, 양사(兩司)에서 간하지 않았으므로 물론(物論)이 그르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전하께서 자신을 허물하며 구언(求言)하기를 간절하고 측은하게 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간(臺諫)이 논계하는 세미한 일을 오히려 또한 굳게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하늘에 응답하기를 실속이 있게 해야 한다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p> <p>하고, 또 논계하기를,</p> | <p>○辛巳/掌令金灝申論崇善君家宣醞賜樂之爲不可，有曰：“日間主家壽筵，亦有是命，兩司不爭，物論非之，且殿下罪已求言，不趨懇惻，而臺諫論微細之事，尙且堅拒不納，惡在乎應天以實之意也？”又論新榜及第李相周庭對之策，論當今之弊曰：“楚獄多濫，冤枉莫伸，是斥朝廷之治逆也。一二伏法，皆是匈徒首惡之賊，猶追天誅，而反謂之濫，語意悖謬，考試諸臣，或諉之有嫌，或稱以官卑，終至擢置高選，請大提學朴泰尙以下，諸考官從重推考。”</p> |

| | | |
|--|--|--|
| | <p>“신방(新榜) 급제(及第) 이상주(李相周)가 정대(庭對)한 대책(對策)에 당면한 지금의 폐해에 관하여 논하기를, ‘초옥(楚獄)에는 외람된 일이 많은데도 원통함을 씻을 길이 없다.’고 했으니, 이는 조정이 역적 다스린 일을 배척한 것입니다. 한두 사람은 복법(伏法)했지만 모두 흉악한 무리이어서이고, 우두머리 죄악의 역적도 오히려 천주(天誅)를 면했건만 도리어 외람했다고 하여 말이 패류(悖謬)했는데도, 고시(考試)를 맡은 여러 신하들이 더러는 혐의(嫌疑)가 있어서라고 핑계하고 더러는 관직이 낮아서라고 핑계하며 고선(高選)에 뽑아 놓았으니, 청컨대 대제학 박태상(朴泰尙) 이하의 모든 고관(考官)들을 종종 추고(從重推考)하소서.”</p> <p>하였다. 대개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이 독권관(讀券官)이었는데 이미 합사(合司)하여 논계(論啓)한 것을 그르게 여겼고 보면, 감히 대신을 추고하기를 청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김호가 단지 박태상 이하의 제신만 논계한 것이다. 임금이 비답하기를,</p> <p>“선옥과 사악은 본래부터 응당 행해야 할 은전(恩典)이고, 본래 풍형(豐亨)의 뜻이 아니었다. 공주(公主)와 왕자(王子)의 집에 이러한 은전을 쓰지 않는다면 장차 어디에다 쓸 것인가? 종종 추고하라는 청(請)은 문구(文句)를 따내어 말을 많이 하여 논열(論列)한 것으로, 그 뜻이 대신까지 아울러 배척한 것이다. 아, 노성한 대신의 의견이 하나의 대관(臺官)만도 못하겠는가? 모두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p> <p>하니, 김호가 따라서 인혐(引嫌)하기를,</p> <p>“천재(天災)가 두렵고 당장의 사세가 썩들리게 되면 비록 응당 거행해야 할</p> | <p>蓋領議政南九萬爲讀券官，而既非合司之論，則不敢請推大臣，故灝只論奉尙以下諸臣。上批曰：“宣醞賜樂，自是應行之典，本非豐亨之意也。公主王子家，不用如此恩例，則將焉用哉？重推之請，抉摘文字，費辭論列，其意竝與大臣而斥之。噫！老成大臣，意見不及於一臺官乎？竝勿煩論。”灝乃引嫌曰：“天災可畏，時勢孔棘，雖應行之典，有時而絀，況此特恩，本非應行者乎？相周對策所論，物情駭憤，臣之規警，初非故爲抉摘也。”持平李廷謙處置遞之。</p> |
|--|--|--|

| | | |
|---|--|---|
| | <p>은전도 때로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번 특은이 본시 응당 시행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이겠습니까? 이상주가 대책(對策)에다 논한 말은 물정(物情)이 해괴하게 여기며 분개해 하므로 신이 규계(規戒)한 것이고, 당초에 고의로 문구를 따낸 것이 아닙니다.”</p> <p>하자, 지평 이정겸(李廷謙)이 처치(處置)하여 체직했다.</p> | |
| <p>숙종 27권, 20년 (1694 갑술 / 청 강희 (康熙) 33년) 11월 20 일(갑신) 4번째기사</p> | <p>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들에게 감귤을 내리고, 이어 제술(製述) 시험을 보여 김우화(金遇華)에게 급제(及第)를 내렸다.</p> | <p>○賜柑于成均館儒生，仍試製，賜金遇華及第。</p> |
| <p>숙종 27권, 20년 (1694 갑술 / 청 강희 (康熙) 33년) 11월 23 일(정해) 1번째기사</p> | <p>옥당 관원들을 야대하고, 또한 감귤과 배를 내렸다.</p> | <p>옥당 관원들을 야대하고, 또한 감귤과 배를 내렸다.</p> |
| <p>숙종 27권, 20년 (1694 갑술 / 청 강희 (康熙) 33년) 12월 6 일(기해) 2번째기사</p> | <p>호조 판서 이세화(李世華)가 청대(請對)하여 아뢰기를, “함경도는 흉년이 특히 심하니, 인삼(人蔘)·우황(牛黃)의 대가로 응당 바칠 가포(價布)와 전세(田稅)의 미포(米布) 및 군민(軍民)의 역포(役布)를 차등이 있게 감하여 대중의 심정을 위로해 주어야 하고, 제도(諸道)는 각각 역사를 감해 주는 혜택을 입었지만 오직 도성(都城)백성은 유독 끼지 못했으니, 올해는 장빙(藏氷)하는 곳에 내는 쌀을 마땅히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했다.</p> | <p>○戶曹判書李世華請對言：“咸鏡道年飢特甚，人蔘牛黃應納價布，田稅米布及軍民役布，差等蠲之，以慰群情，諸道各被蠲役之惠，而惟都民，獨不與焉。今年藏氷所出之米，宜除之。”上竝許之。</p> |
| <p>숙종 28권, 21년 (1695 을해 / 청 강희 (康熙) 34년) 4월 9일 (경자) 1번째기사</p> | <p>예조에서 《오례의(五禮儀)》의 관례조(冠禮條)에 단지 예주(醴酒)8544) 를 맞본 뒤에 재배(再拜)하는 것만 있고, 예주를 받을 때에 재배하는 것이 없어 고례(古禮)에 어긋나며, 그 축사(祝辭)에 이미 ‘절하여 받고 제사드린다.’ 하였는데, 절하여 받는 절차가 없는 것을 가지고 개정하여 옛날의 예(禮)를 따를 것을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p> | <p>○庚子/禮曹以《五禮儀》冠禮條，只有啐醴後再拜，而無受醴時再拜，有違古禮，其祝辭既曰拜受祭之，而無拜受之節，請改從古禮，上可之。</p> |

속종 28권, 21년
(1695 을해 / 청 강희
(康熙) 34년) 6월 20
일(경술) 3번째기사

지난해에 접위관(接慰官) 유집일(兪集一)이 조정에 돌아왔는데, 차왜(差倭) 굴진중(橋眞重)이 오히려 제2서(第二書)의 회답(回答)을 요구하자, 남구만이 말하기를,

“교활한 왜(倭)의 정상이 절통(絶痛)하다. 어찌 또 그 제2서에 답서를 보낼 수가 있겠는가? 더구나 두 서신(書信)의 내용은 동일한 것이니, 한 번 답장을 했으면 충분하다.”

하고,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굴진중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돌아가지 않고는 기어코 자신이 청한 것을 성사시키려 하였는데, 마침 왜국(倭國)에서 굴진중을 소환하여 귀국(歸國)하라고 하니, 굴진중이 드디어 6월 15일을 길을 떠나는 시기로 잡고 동래부에 편지를 보내 네 가지 조항을詰問(詰問)하며 이를 조정에 전달해서 개시(開示)해 줄 것을 청하였다. 그 첫째 조항에 이르기를,

“답서(答書) 가운데, ‘수시로 공차(公差)8625)를 파견하여 왕래하며 수색하고 검사하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인번(因幡)·백기(伯耆) 두 주(州)의 변민(邊民)들이 해마다 죽도(竹島)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여, 2주(州)가 해마다 그 섬의 복어(鰻魚)를 동도(東都)에 바치는데, 그 섬은 바람과 물결이 위험하므로, 해상(海上)이 안온(安穩)할 때가 아니면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귀국(貴國)에서 만일 실지로 공차(公差)를 파견한 일이 있다면 역시 분명히 바다가 안온할 때였을 것입니다. 대신군(大神君)으로부터 지금까지 81년 동안 우리 나라 백성들이 일찍이 귀국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사자(使者)들과 그 섬에서 서로 만났다는 사실을 상주(上奏)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회답하는 서신 가운데는 ‘수시로 공차(公差)를 파견하여 왕래하며 수색하고 검사하게 하였다.’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前年接慰官兪集一還朝，而差倭橋眞重，猶索第二書之回答，南九萬以爲：“狡倭情狀絶痛。豈可又答其第二書乎？況兩書之意，自是一事，一答書足矣。”終不許。眞重久留不歸，期於得請，會倭國召眞重歸。眞重遂以六月十五日，爲發行之期，貽書萊府，詰問四條，以請轉達朝廷而開示之。其一曰：

答書中時遣公差，往來搜檢云。謹按因幡、伯耆二州邊民，年年往竹島漁採，二州年年獻彼島鰻魚於東都，彼島風濤危險，非海上安穩之時，則不得往來。貴國若實有遣公差之事，則亦當海上安穩之時。自大神君至今八十一年，我民未曾奏與貴國公差相遇于彼島之事，而今回答書中，言時遣公差往來搜檢者，未知何意也？

其二曰：

回答書中，不意貴國人自爲犯越云，貴國人侵涉我境云。謹按兩國通好之後，往來竹島之漁民，漂到于貴國地，禮曹

| | | |
|--|--|---|
| | <p>하였고, 둘째 조항에는 이르기를,</p> <p>“회답하는 서신 가운데, ‘뜻밖에 귀국의 사람이 스스로 범월(犯越)하였다.’ 하고, ‘귀국의 사람들이 우리 국경을 침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양국(兩國)이 통호(通好)한 이후에 죽도(竹島)를 왕래하던 어민(漁民)들이 표류하여 귀국 땅에 이르면 예조 참의(禮曹參議)가 표류민(漂流民)을 되돌려 보내는 일로 폐주(弊州)에 서신을 보낸 것이 모두 세 차례입니다. 우리 나라의 변방 백성들이 그 섬에 가서 고기잡이한 실상은 귀국이 일찍이 알고 있던 바인데, 아주 오래 전에 우리 백성들이 그 섬에 가서 고기잡이한 것을 범월(犯越)이나 침섭(侵涉)한 것으로 여겼다면, 일찍이 종전 세 차례의 서신 가운데에서는 어찌하여 범월과 침섭의 뜻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p> <p>하였고, 세째 조항에는 이르기를,</p> <p>“회답하는 서신 가운데, ‘동일한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다만 우리 나라 서적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귀주(貴州)의 사람들도 또한 다 안다.’고 하였습니다. 귀국이 일찍이 동일한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서적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상고하고, 또 ‘동일한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폐주(弊州)의 사람들도 또한 다 안다.’고 생각하였다면, 첫번째의 답서(答書)에서는 어찌하여 ‘귀계(貴界)의 죽도(竹島)는 폐경(弊境)의 울릉도(鬱陵島)이다.’라고 말하였습니까? 만일 애당초 죽도가 바로 울릉도인 줄 알지 못하고 두 섬이 두 이름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였다면, 지금의 답서(答書)에서는 어찌하여, ‘동일한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실상은 다만 우리 나라 서적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귀주(貴州)의 사</p> | <p>參議以送返漂民， 與書於弊州總三度矣。 本邦邊民往漁于彼島之狀， 貴國所曾知也， 以上上年我民往漁于彼島， 爲犯越侵涉， 則曾前三度書中， 何不言犯越侵涉之意乎?</p> <p>其三曰：</p> <p>回答書中一島二名之狀， 非徒我國書籍之所記， 貴州之人， 亦皆知之云。 貴國曾考一島二名之狀， 載于書籍之中， 而又謂一島二名之狀， 弊州之人， 亦皆知之， 則初度答書， 何言貴界竹島弊境鬱陵島乎? 若初不知竹島卽鬱陵島， 而爲二島二名， 則今之答書， 何言一島二名之狀， 非徒我國書籍之所記， 貴州之人亦皆知之乎?</p> <p>其四曰：</p> <p>謹按八十二年前， 弊州寄書於東萊府， 以告看審磯竹島之事， 府使答書云：“本島卽我國所謂鬱陵島者， 今雖荒廢， 豈可容他人之冒占， 以啓鬧釁耶?” 其再答書亦然。 七十八年前， 本邦邊民</p> |
|--|--|---|

| | | |
|--|--|---|
| | <p>람들도 또한 다 안다.’고 말하였습니까?”</p> <p>하였고, 네째 조항에는 이르기를,</p> <p>“삼가 살펴보건대, 82년 전 폐주(弊州)에서 동래부에 서신을 보내어 의죽도(礮竹島)를 자세히 조사하는 일을 알리니, 동래 부사의 답서(答書)에 이르기를, ‘본도(本島)는 바로 우리 나라의 이른바 울릉도(鬱陵島)라는 곳으로서 지금은 비록 황폐해져 있으나, 어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점거하는 것을 허용하여 시끄럽게 다투는 단서를 열겠는가?’ 하였고, 그 두번째 답서도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78년 전에 본방(本邦)의 변민(邊民)이 그 섬에 고기잡이하러 갔다가 표류하여 귀국 땅에 이르렀을 때 예조 참의가 폐주(弊州)에 보낸 서신에, ‘왜인(倭人) 마다삼이(馬多三伊) 등 7명이 변방의 관리에게 체포되었기에 그들이 온 연유를 물어보니, 울릉도에 고기잡이하러 왔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여 온 자였다. 이에 왜선(倭船)에 태워 귀도(貴島)로 돌려보낸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82년 전에 ‘어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점거하는 것을 허용해서 시끄럽게 다투는 단서를 열겠는가?’라고 말하였다면, 78년 전에 다른 사람이 가서 고기잡이한다는 것을 듣고 허용하였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답하는 서신 가운데, ‘동일한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귀주(貴州)의 사람들도 또한 다 안다.’고 말한 것은 82년 전 동래부의 답서에 ‘의죽도(礮竹島)란 실은 우리 나라의 울릉도이다.’라고 한 문구가 있기 때문입니까? 82년 전의 서신과 78년 전의 서신의 내용이 서로 부합되지 않으니, 지금 청문(請問)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였으므로, 조정(朝廷)에서 답하기를,</p> | <p>往漁于彼島，漂到于貴國地之時，禮曹參議與弊州書云：“倭人馬多三伊等七名，被獲於邊吏，問其來由，則乃往漁于鬱陵島，遇風漂到者也。茲付倭船，送回貴島。”蓋八十二年前，言可容他人之冒占，以啓鬧釁耶，則無七十八年前，聞他人往漁而容許之理矣。今回答書中，言一島二名之狀，貴州之人，亦皆知之者，以八十二年前東萊府答書，有礮竹島者，實我國之鬱陵島也之句乎？八十二年前書，七十八年前書，辭意不相合，今不可不請問之。</p> <p>朝廷答曰：</p> <p>八十二年前甲寅，貴州頭倭一名、格倭十三名，以礮竹島大小形止探見事，持書契出來，朝廷以爲猥越而不許接待，只令本府府使朴慶業答書。其略曰：“所謂礮竹島，實我國之鬱陵島，介於慶尙、江原兩道海洋，而載在輿圖，烏可誣也？今雖廢棄，豈可容他人冒居，以啓鬧釁耶？貴島我國往來通行，唯有一路，此外則無論漂船眞假，皆以賊船論斷。弊鎮及沿海將官，唯嚴守約束</p> |
|--|--|---|

“82년 전 갑인년(8626)에 귀주(貴州)에서 두왜(頭倭) 한 명과 격외(格倭) 13명이 의죽도(礮竹島)의 크고 작은 형편을 탐사(探查)하는 일로 서계(書契)를 가지고 나왔는데, 조정에서 이를 함부로 경계를 넘었다 하여 접대(接待)를 허락하지 않고, 다만 본부(本府)의 부사(府使)인 박경업(朴慶業)으로 하여금 답장을 하도록 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이른바 의죽도(礮竹島)란 실은 우리 나라의 울릉도로서, 경상(慶尙)·강원(江原) 양도(兩道)의 해양(海洋)에 끼여 있는데, 여도(輿圖)에 기재되어 있으니,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은 비록 폐기(廢棄)되어 있지만, 어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점거하는 것을 허용해서 시끄럽게 다투는 단서를 열겠는가? 귀국(貴國)과 우리 나라가 왕래하고 통행하는 것은 다만 이 한 길이 있을 뿐이며, 이 밖에는 표선(漂船)의 진가(眞假)를 따지지 않고 모두 적선(賊船)으로 논단(論斷)할 것이다. 폐진(弊鎭)과 연해(沿海)의 장관(將官)들은 다만 약속을 엄중히 지킬 뿐이니, 바라건대 귀도(貴島)는 구토(區土)의 분간이 있음을 살피고, 제한(界限)의 침략하기 어려움을 알아 각각 신의(信義)를 지켜서 사리(事理)에 어그러지는 일을 초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하였고, 지금 이 서신의 내용은 보내온 서신에도 기재되어 있다. 의문을 제기한 네 가지 조항은 상세하고 간략한 것은 비록 다르지만 대지(大旨)는 동일한데, 만일 이 일의 전말(顛末)을 알고자 한다면 이 한 장의 서신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 뒤에 세 차례에 걸쳐서 표류해 온 왜인이 있어 혹은 울릉도에 고기잡이하러 왔다고 하고, 혹은 죽도에 고기잡이하러 왔다고 하였는데, 아울러 귀선(歸船)에 태워 귀도(貴島)로 돌려보내고 범월(犯越)·침섭(侵涉)으로 책망하지 않았던 것은 전후의 일이 나름대로 각각 의의(意義)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두왜(頭倭)가 왔을 때 신의(信義)로써 꾸짖었던 것은 침월(侵越)의 정상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표류해 온 배가 정박하였을 때 다만 돌아가는 인편에 딸려 보내도록 하였던 것은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 살아남은 목숨이 빨리 송환시켜 주기를 원해 살려 보내는 일이 급하므

而已，唯願貴島，審區土之有分，知界限之難侵，各守信義，免致謬戾。”云。今此書辭，亦載於來書。疑問第四條，詳略雖異，大旨則同，若欲知此事源委，此一書足矣。其後三度漂倭，或稱往漁于鬱陵島，或稱漁採于竹島，而竝付歸船，送回貴島，而不以犯越、侵涉爲責，前後意義各有所在。頭倭之來，責以信義者，以有侵越之情也。漂船之泊，只令順付者，沈溺餘生，乞得速還，則資送是急，不暇問他，與國之禮，有當然者。夫豈有容許我土之意乎？時遣公差，往來搜檢事，我國《輿地勝覽》，詳記新羅、高麗及本朝太宗、世宗、成宗三朝，屢遣官人於島中之事。且前日接慰官洪重夏下去時，貴州總兵衛稱號人，言於譯官朴再興曰：“以《輿地勝覽》觀之，鬱陵島果是貴國地。”云。此書乃貴州人所嘗見，而丁寧言說於我人者也。近間公差之不常往來，漁氓之禁其遠入，蓋爲海路之多險故也。今者舍自前記載之書而不信，乃反以彼我人之不相逢值於島中爲疑，不亦異乎？一島二名云者，朴慶業書中，既有礮竹島實我國鬱陵島

로 다른 것은 물어볼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이웃 나라와 친근(親近)하는 예의로서 당연한 일인 것이었다. 어찌 우리 국토를 허용할 의사가 있어서였겠는가? 수시로 공차(公差)를 파견하여 왕래하여 수색하고 검사한 일은, 우리 나라의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신라(新羅)·고려(高麗)와 본조(本朝)의 태종(太宗)·세종(世宗)·성종(成宗) 삼조(三朝)에서 여러 번 관인(官人)을 섬에 파견한 일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 전일에 접위관(接慰官) 홍중하(洪重夏)가 내려갔을 때 귀주(貴州)의 총병위(摠兵衛)라 일컫는 사람이 역관(譯官) 박재흥(朴再興)에게 말하기를, ‘《여지승람》으로 본다면 울릉도는 과연 귀국(貴國)의 땅이다.’라고 하였다. 이 책은 바로 귀주(貴州)의 사람이 일찍이 본 바이고, 틀림없이 우리 나라 사람에게 말한 것이다. 요사이 공차(公差)가 항상 왕래하지 않고 어민(漁民)들에게 멀리 들어가는 것을 금지시켰던 것은 대개 해로(海路)에 위험한 곳이 많기 때문이었다. 이제 예전에 기재한 서적은 버리고 믿지 않는 채 도리어 왜인과 우리 나라 사람이 섬 가운데에서 서로 만나지 않은 것을 의심하니,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동일한 섬인데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한 것은 박경업(朴慶業)의 서신 가운데 이미 ‘의죽도(礮竹島)는 실은 우리 나라의 울릉도이다.’라고 한 말이 있다. 그리고 또 홍중하(洪重夏)가 정관(正官)8627인 왜인(倭人)과 서로 만났을 때 그 정관이 곧 우리 나라 《지봉유설(芝峰類說)》에 있는 내용을 발설하였는데, 《지봉유설》에는 이르기를, ‘의죽도는 바로 울릉도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동일한 섬인데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설은 비록 본래 우리 나라 서적에 기재된 것이지만, 그 말이 발달된 것은 사실 귀주(貴州)의 정관(正官)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의 답서(答書) 가운데 이른바, ‘동일한 섬인데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다만 우리 나라 서적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귀주(貴州)의 사람들도 또한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이것이 어찌 의문을 제기하여 청문(請

之語。且洪重夏與正官倭相見時，正官乃發我國《芝峰類說》之說。《類說》曰：“礮竹卽鬱陵島也。”然則一島二名之說，雖本載於我國書，發其言端，實自貴州正官之口。答書中所謂一島二名之狀，非徒我國書籍之所記，貴州人亦皆知之者，乃指此而言也。此豈可疑而請問者乎？癸酉年初度答書，有若以竹島與鬱陵島，爲二島者然，此乃其時南宮之官不詳故事之致，朝廷方咎其失言矣。此際貴州出送其書而請改，故朝廷因其請而改之，以正初書之失，到今惟當一以改送之書，考信而已。初書既以錯誤而改之，則何足爲今日憑問之端乎？

此書未及達，而眞重又自以己意，作爲文字，請於回答書啓，依此改之，萊府峻責却之。眞重遂進定行期於六月初十日，又貽書萊府曰：

去年所受回答書中，有可疑之辭意。然再度書契，不爲回答，則貴國之意，未可窮知，故只請再度答書，既受之答書，不爲疑問，而裁判平成常入和館，

| | | |
|--|--|--|
| | <p>問)할 만한 것이겠는가? 계유년8628)의 첫번째 회답한 서신에 죽도와 울릉도를 마치 두 섬으로 여긴 것 같은 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때 남궁(南宮)8629)의 관원이 고사(故事)에 밝지 못했던 소치로서, 조정이 바야흐로 그 실언(失言)을 나무랐었다. 그때에 귀주(貴州)에서 그 서신을 돌려보내어 고쳐 주기를 청했기 때문에, 조정에서 그 청에 따라 첫 서신의 잘못된 점들을 고쳐서 바로잡았으니, 오늘날에 있어서는 오직 마땅히 한결같이 고쳐서 보낸 서신을 상고해 믿어야 할 것이다. 첫 서신은 이미 착오로 인해서 개정하였으니, 그것이 어찌 족히 오늘의 빙고(憑考)해 질문할 단서가 될 수 있겠는가?”</p> <p>하였다. 이 서신이 미처 전달되기 전에 글진중이 또 스스로 자기의 의사로 문장을 만들어 회답하는 서계(書啓)를 여기에 따라 고쳐 줄 것을 청하니, 동래부(東萊府)에서 준엄하게 꾸짖고 물리쳤다. 글진중이 드디어 귀국하는 시기를 6월 10일로 앞당겨 정하고, 또 동래부에 서신을 보내어 말하기를,</p> <p>“지난해에 받은 회답서(回答書) 가운데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서계(書契)에 대하여 회답을 앓으니, 귀국(貴國)의 의사를 끝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두번째의 답서(答書)만을 요구하고, 이미 받은 답서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재판(裁判) 평성상(平成常)이 화관(和館)에 들어와서 형부군(刑部君)이 저에게 귀국하라고 하였다는 본부를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이내 답서 가운데 의문스러운 내용을 청문(請問)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5월 15일에 의문서(疑問書)를 부사(府使)에게 올려서 경도(京都)에 전달해 주기를 청하고, 6월 15일을 귀국하는 시기로 잡았습니다. 귀국(貴國)에서 의문서를 열람하여 이 일의 정상을 살펴서 제가 귀국하는 배를 타기 전에 회답하는 서계(書契)의 내용을 다시 고쳐 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5월 23일에 저의 의견(意見)으로 답서 문자(答書文字)</p> | <p>傳刑部君，令某歸州之命。某仍以爲答書中可疑之辭意，不可不請問，五月十五日呈疑問書於府使，以請轉達于京都，以六月十五日爲乘船之期。欲貴國閱疑問書，而察此事之情狀，某未乘船之前，再改回答書契之微意也，故五月廿三日，以某之意見，增損答書文字，錄爲一本，呈府使大人，以請轉達于京都。其後訓導來，述府使之意，其所言如不知是非者。某悟此事不成，因減所期之日數，以六月十日爲乘船之期。自呈疑問書，至于今二十五日，而貴國未賜開示者，卽是無可開示之辭也。既無可開示之辭，則答書不可不改作。不爲改作而欲令帶去者，豈止輕侮弊州？實是侵陵本邦也。貴國輕侮弊州，侵陵本邦，則某之處此事，不可不直赴東萊府，面接府使大人，以見不辱君命之節義。然刑部君召某之意，有不可量知者，故含羞抱憤，以歸弊州，府使大人可以憐察某之情也。某之歸州，不帶回答書契，使訓導、別差封之，以授之館守。是乃欲刑部君遣使之日，館守授之使者，使者繼述某之志事，以決此事之成否者也。因惟兩</p> |
|--|--|--|

| | | |
|--|---|--|
| | <p>를 더하고 줄여 한 벌을 써서 부사 대인(府使大人)에게 올려 경도(京都)에 전달해 주기를 요망했습니다. 그 뒤에 훈도(訓導)가 와서 부사(府使)의 의사를 설명하였는데, 그의 말은 시비(是非)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닫고 기약했던 날짜를 단축하여 6월 10일을 승선(乘船)하는 시기로 잡았습니다. 의문서(疑問書)를 올린 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5일이 지났는데도, 귀국에서 거기에 대해 개시(開示)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해명할 만한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명할 만한 말이 없다면 답서(答書)는 고쳐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쳐 쓰지 않고서 가져가게 하려는 것이 어찌 폐주(弊州)를 경멸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까? 사실은 본방(本邦)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귀국(貴國)에서 폐주를 경멸하고 본방을 업신여겼으니, 저는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곧바로 동래부(東萊府)로 달려가서 부사 대인(府使大人)을 면접(面接)하고, 임금의 명령을 욱되게 하지 않는 절의(節義)를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부군(刑部君)이 저를 소환할 뜻을 헤아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치와 분노를 품고 폐주로 돌아가는 것이니, 부사 대인께서는 저의 심정을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폐주로 돌아감에 있어 회답하는 서계(書契)를 가져가지 않고 훈도(訓導)와 별차(別差)8630)로 하여금 그것을 봉(封)해서 관수(館守)8631)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부군(刑部君)이 사신을 보낼 때 관수가 그것을 사자(使者)에게 주어 그 사자가 저의 뜻과 일을 계술(繼述)하도록 해서 이 일의 성사 여부를 결정지으려는 것입니다. 인하여 생각해 보니, 양국(兩國)의 화호(和好)는 답서(答書)를 화관(和館)에 남겨 두는 데 있었습니다. 답서가 한 번 바다를 건너가게 되면 두 나라는 아마 백년(百年)의 우호(友好)를 상실할 듯합니다.”</p> <p>하였다. 굴진중(橋眞重)이 이미 배를 띄워 절영도(絶影島) 근처에 이르렀으나,</p> | <p>國之和好，在留答書於和館之間。答書一越海，則兩國恐失百年之和好云云。</p> <p>眞重雖發船，到絶影島下，東萊府追送朝廷所答開示書，眞重乃復貽書萊府，大肆罵辱。其書曰：</p> <p>今日裁判送達開示書於船上，某謹讀之，開示不明。是所謂過而順之，又從而爲之辭者也。開示不明之旨趣，論之如左。一八十二年前書，卽述新羅、高麗、國初，彼島屬於貴國之辭而已，彼島屬於本邦者，八十年來之事，則何以八十二年前書，爲盡今番一件之源委乎？開示書，漂船之泊，只令順付者，沈溺餘生，乞得速還，則資送是急，不暇問他，與國之禮，有當然者。夫豈有容許我土之意乎云？是乃遁辭之窮也。所謂禮者，何禮乎？非禮之禮，大人不爲。某竊歎貴國無開示之辭也。摠兵衛所言，以《輿地勝覽》觀之之意也，《輿地勝覽》，卽二百年前之書籍，而彼島屬於本邦者，八十年來之事也。以《輿地勝覽》，爲今番一</p> |
|--|---|--|

동래부에서 뒤쫓아가서 조정에서 개시(開示)하는 답서를 전달하니, 굴진중이 이에 다시 동래부에 서신을 보내 욕설을 마구 퍼부었다. 그 서신에 이르기를,

“오늘 재판(裁判)이 개시(開示)하는 서신을 선상(船上)에 보내왔기에 제가 삼가 읽어 보았더니, 개시(開示)한 바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과오를 그대로 계속하고 또 뒤따라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개시가 분명하지 않은 취지를 논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82년 전의 서신은 바로 신라(新羅)·고려(高麗)·국초(國初)에 저 섬이 귀국(貴國)에 소속되었다는 내용을 기술하였을 뿐이요, 저 섬이 본방(本邦)에 소속된 것은 80년 이래의 일이니, 어찌 82년 전의 서신으로 이번 이 1건(件)의 전말(顛末)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개시한 서신에, ‘표류해 온 배가 정박하였을 때 다만 돌아가는 인편에 태워 보내도록 하였던 것은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 살아남은 목숨이 빨리 송환해 주기를 원해 살려 보내는 일이 급하므로, 다른 것은 물어볼 여가가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이는 이웃 나라와 친근(親近)하는 예의로서 당연한 일인 것이었다. 어찌 우리 국토(國土)를 허용할 의사가 있어서이겠는가?’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궁색한 둔사(遁辭)입니다. 이른바 예(禮)라는 것이 무슨 예입니까? 예가 아닌 예는 대인(大人)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삼가 귀국(貴國)의 개시(開示)한 내용이 없는 것을 탄식하는 바입니다. 총병위(摠兵衛)가 말한 바, ‘《여지승람(輿地勝覽)》으로 본다면 울릉도는 과연 귀국의 땅이다.’는 내용에 있어선 《여지승람》은 바로 2백 년 전의 서적이고 저 섬이 본방(本邦)에 소속된 것은 80년 이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지승람》으로 이번 이 건(件)의 증거로 삼으니, 어찌 그다지도 고금(古今)의 변역(變易)을 살피지 못하는 것입니까? 80년 이래로 우리 나라의 변방 백성들이 해마다 죽도(竹島)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였지만, 일찍이 귀국의 공차(公差)와 그 섬에서 서로 만난 적이 없었는데, 이제 개시(開示)하는 서신에는 《여지승람》을 증거로 삼았으니,

件之證驗，何其不察古今之變易乎？八十年來我國邊民，年年往漁于竹島，未曾與貴國公差相逢于彼島，而今開示書，以《輿地勝覽》爲證驗，則今之答書，言時遣公差，往來搜檢者，豈不爲虛僞之說乎？不能開示某之所問，而却著書中辭意之虛僞者，某竊爲貴國恥之。某與朴再興相見時，發《芝峰類說》之說者，欲使貴國，知弊州有《芝峰類說》書也。今開示書，以《類說》爲一島二名之證驗，則某亦可以《類說》，爲鬱陵島屬於本邦之證驗。某曾考之《類說》自序，卽八十二年前所識也。《類說》亦有近聞倭人，占據礮竹島之語。知他人占據而容許之，知他人往漁而容許之，則是八十年來，貴國自棄彼島，以令爲他人之有也。往事如是，而今番以我民往彼島，爲犯越侵涉者，不思之甚也。今之答書，與初度答書，辭意不相合，而貴國今歸罪於南宮之官，以隱前後答書辭意不相合之失。今番一件，固兩國之大事，則無南宮所作答書朝廷不閱之理矣。某今讀開示書，而深爲貴國恥之。

지금 답서(答書)에서 말한, ‘수시로 공차를 파견하여 왕래하며 수색하고 검사하게 하였다.’는 것이 어찌 허위(虛僞)의 설명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문한 바에 대해서는 개시(開示)하지 못하고, 도리어 서신에다 허위를 드러내었으니, 저는 삼가 귀국을 위하여 수치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제가 박재흥(朴再興)과 서로 만났을 때 《지봉유설(芝峰類說)》에 있는 설(說)을 발설했다는 것은 귀국(貴國)으로 하여금 폐주(弊州)에 《지봉유설》이란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시한 서신에 《지봉유설》로 동일한 섬에 두 가지 이름이 있는 증거로 삼았는데, 그렇다면 저도 《지봉유설》로 울릉도가 본방(本邦)에 소속되었다는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찍이 《지봉유설》의 자서(自序)를 상고해 보니, 바로 82년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지봉유설》에도 또한, ‘요사이 들으니 왜인(倭人)이 의죽도(礮竹島)를 점거했다고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점거한 줄 알면서도 그것을 허용하고, 다른 사람이 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허용하였으니, 이는 80년 이래로 귀국이 스스로 그 섬을 버려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일이 이와 같은데도 이번에 우리 백성들이 그 섬에 간 것을 가지고 범월(犯越)과 침섭(侵涉)으로 여기는 것은 매우 생각을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의 답서(答書)와 첫번째의 답서가 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데도, 귀국(貴國)에서는 지금 남궁(南宮)의 관원에게 잘못을 돌리고, 전후(前後)의 답서 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실수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번의 이 사건은 진실로 양국(兩國)의 대사(大事)이니, 예조에서 지은 답서를 조정에서 살펴보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개시한 서신을 읽고 매우 귀국을 위해 수치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하였다. 처음에 굴진중이 2년을 왜관(倭館)에 머무르며 반드시 요구를 달성하려고 기약하였다. 그래서 스스로 사신의 임무를 성취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이

初，眞重兩年留館，必期得請。自以使事不成，朝家循例供給之物，一不取用，穿弊乞食，辛苦萬狀，而終不變易焉。及至渡海之時，乃取朝家前後所給白米一千八百六十石，貽書萊府而還送之。時，以眞重事，中外洶洶，皆以爲：“壬辰之變，不日將作。”人心波蕩，靡有止泊，久而後乃定。

| | | |
|--|---|---|
| | <p>유로 조정에서 준례에 따라 공급하는 물품을 일체 취용(取用)하지 않았고, 해진 옷을 입고 밥을 구걸해 먹으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초를 겪었지만, 마침내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바다를 건너 귀국할 때에 이르러 조정에서 진후에 걸쳐 공급한 백미(白米) 1천 8백 60섬을 가져다 동래부로 서신과 함께 환송(還送)하였다. 이때 굴진중의 일로 인하여 중외(中外)가 흥흥(洶洶)하여 모두 말하기를, ‘임진년(8632)과 같은 변란이 멀지 않아 장차 일어날 것이다.’고 하였다. 인심(人心)이 물결처럼 흔들려 불안에 차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안정되었다.</p> | |
| <p>숙종 29권, 21년 (1695 을해 / 청 강희(康熙) 34년) 7월 23일(계미) 1번째기사</p> |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유상운(柳尙運)과 우의정(右議政) 신익상(申翼相)이 밖에 있는 원임(原任) 두 대신을 불러들여 국사(國事)를 함께 하기를 청하였으니, 이때에 남구만(南九萬)이 잠시 소분(掃墳)8653) 으으로써 말미를 받아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유상운이 말하기를,</p> <p>“유집일(兪集一)을 당초에 논죄(論罪)할 때에 다만 과직(罷職)하여 서용(敍用)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장차 그 죄를 더하려 한 것입니다. 대관(臺官)의 소안에, 그 기사(欺詐)를 제 마음대로 자행하였다고 말한 것은, 그 실상(實狀)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에 왜인(倭人)이 회답받기를 청하였을 때에 유집일이 엄사(嚴辭)로 준절(峻截)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도리어 조정에 계청(啓請)하였으니 이미 준절함을 잃었으며, 하물며 회보(回報)를 기다리지 않고 경솔하게 앞질러 올라왔으니, 조가(朝家)에서 비록 답서(答書)를 만들어 준다고 한들 누구를 시켜 이를 전한단 말입니까? 신(臣)의 뜻은 이것으로써 바로 감죄(勘罪)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 <p>○癸未/引見大臣、備局諸宰。 左議政柳尙運、右議政申翼相，請召致原任兩大臣之在外者，共做國事。 時，南九萬纔以掃墳，受由出去故云然，上從之。 尙運曰：“兪集一當初論罪時，只爲罷職不敍者，蓋將以加其罪也。 臺官疏中逞其欺詐云者，其實狀未必然，而但當初倭人請受回答之時，集一不爲嚴辭峻斥，乃反啓請於朝廷，已欠峻截，況不待回報，徑先上來，自朝家雖成給答書，誰使傳之耶？ 臣意則以此直爲勘罪，似可矣。” 翼相之言亦然，上命削職。 尙運仍陳宮家折受事曰：“每宮二百結折受，乃是定式，而今則過於定限者甚多。 若於二百結定限之外，</p> |

| | | |
|--|--|--|
| | <p>하고, 신익상의 말도 또한 그러하였으니, 임금이 명하여 삭직(削職)하였다. 유상운이 이어 궁가(宮家)의 절수(折受)의 일을 진달하여 말하기를,</p> <p>“궁(宮)마다 2백 결(結)을 절수하는 것이 곧 정식(定式)인데, 이제 정한(定限)을 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만약 2백 결의 정한 이외의 것은 모두 혁과(革罷)하고, 조가(朝家)에서 미(米)·포(布)·은화(銀貨)를 양급(量給)하여 해궁(該宮)으로 하여금 스스로 장토(庄土)를 마련하여 모양을 이루게 한다면 좋겠습니다.”</p> <p>하고, 신익상도 또한 이를 찬성하고 또 말하기를,</p> <p>“2백 결을 주는 것은 반드시 실결(實結)로써 채워 주고, 이것 외에는 결코 절수를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p> <p>하였다. 유상운이 말하기를,</p> <p>“장토를 아직 갖추기 전에는 연도(年度)를 한정(限定)하여 공부세(公賦稅)를 내려 준다면 공·사(公私)가 모두 편리하겠습니다.”</p> <p>하고, 형조 판서(刑曹判書) 민진장(閔鎭長)은 말하기를,</p> <p>“2백 결은 그 좋은 곳을 스스로 선택케 함이 좋습니다.”</p> <p>하였다. 유상운이 또 말하기를,</p> | <p>盡爲革罷，自朝家量給米、布、銀貨，使該宮自備庄土，得以成樣則好矣。”</p> <p>翼相亦贊之，又曰：“所給二百結，則必以實結充給，此外切勿許折受可也。”</p> <p>尙運曰：“庄土未備之前，限年賜以公賦稅，則公私俱便矣。”</p> <p>刑曹判書閔鎭長曰：“二百結則使之自擇其好處可矣。”</p> <p>尙運又曰：“壽進、明禮、於義、龍洞則事體異於他宮事，曾有別判付矣，此四宮及明善、明惠兩房則以戊辰年爲限，戊辰以前折受處則仍存，以後折受則盡爲革罷，似好矣。”</p> <p>上皆從之，仍曰：“此後永勿折受可也。”</p> <p>鎭長曰：“辛未年間，因湖南人鄭武瑞等之疏，追削故相臣鄭澈官爵矣。上年冬間，湖南儒生朴礪等，又爲陳疏，請罪武瑞，批答中，有武瑞罪狀，令該曹稟處之命，而尙未回啓，故臣待罪本曹之後，取見其疏，則以爲己丑、庚申兩獄，首尾相關，臣以此嫌不敢回啓矣。下詢大臣而處之何如？”</p> <p>尙運曰：“其疏論己丑獄事，仍及庚申，以此白惟讓、李潑、李洁等，皆復爵，鄭澈則至於追削，此人不可不罪矣。”</p> <p>翼相曰：“誣陷鄭澈，至於追削，已極無據，</p> |
|--|--|--|

| | | |
|--|--|---|
| | <p>“수진(壽進)·명례(明禮)·어의(於義)·용동(龍洞)은 사체(事體)가 다른 궁가의 일과 달라서 일찍이 별판부(別判付)가 있었으니, 이 네 궁가 및 명선(明善)·명혜(明惠)의 두 궁방(宮房)은 무진년8654) 을 한계(限界)로 하여, 무진년 이전의 절수한 곳은 그대로 두고 이후의 절수는 모두 혁파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르고, 이어 말하기를,</p> <p>“이 뒤로는 영구히 절수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p> <p>하였다. 민진장이 말하기를,</p> <p>“신미년8655) 사이에 호남(湖南) 사람 정무서(鄭武瑞) 등의 소를 인하여 고(故) 상신(相臣) 정철(鄭澈)의 관작(官爵)을 추삭(追削)하였는데, 상년(上年)의 겨울 사이에 호남의 유생(儒生) 박윤(朴堧) 등이 또 진소(陳疏)하여 정무서를 죄주기를 청하니, 비답 안에 정무서의 죄상을 해조(該曹)8656) 로 하여금 품처(稟處)케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계(回啓)하지 않았으므로 신이 본조(本曹)에 대죄(待罪)한 뒤에 그 소를 취하여 보았는데, 기축 옥사(己丑獄事)8657) 와 경신 옥사(庚申獄事)8658) 의 두 옥사(獄事)가 수미(首尾)로 서로 관련되었으므로, 신은 이 혐의를 가지고 감히 회계치 못하였습니다. 대신에게 하순(下詢)하시어 처리하심이 어떻겠습니까?”</p> <p>하였다. 유상운은 말하기를,</p> <p>“그 소(疏)가 기축 옥사를 논하여 이어 경신 옥사에 미쳐서, 이것으로써 백유</p> | <p>至及於庚申獄事，則其罪尤大矣。” 尙運曰：“伸救一獄，猶爲護逆，況竝救兩獄，其罪尤何如也？” 上曰：“鄭武瑞邊遠定配。”</p> |
|--|--|---|

| | | |
|---|--|--|
| | <p>양(白惟讓)·이발(李潑)·이길(李洁) 등은 모두 복작(復爵)되고, 정철은 추삭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은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고, 신익상은 말하기를,</p> <p>“정철을 무함(誣陷)하여 추삭(追削)에 이르렀으니 이미 극히 근거가 없으며, 경신 옥사에 미친 데에 이르러서는 그 죄가 더욱 큼니다.”</p> <p>하였으며, 유상운이 말하기를,</p> <p>“한 옥사를 신구(伸救)함도 오히려 호역(護逆)이 되거든, 하물며 두 옥사를 모두 구(救)하려 했으니, 그 죄가 더욱 어떻다 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정무서를 변방의 먼 곳에 정배(定配)하라.”</p> <p>하였다.</p> | |
| <p>숙종 29권, 21년 (1695 을해 / 청 강희 (康熙) 34년) 8월 3일 (임진) 1번째기사</p> |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유상운(柳尙運)이 이 해가 흉년들을 가지고 청하기를,</p> <p>“경술년(8668)의 전례에 의거하여 어공(御供)의 물건 및 종묘(宗廟)의 천신(薦新)에 쓰는 소목(燒木)과 각사(各司)의 공물의 값을 감하고, 경아문(京衙門) 및 외방(外方)의 각 영문(營門)의 저축(儲蓄)한 은(銀)·포(布)·미곡(米穀)의 수</p> | <p>壬辰/引見大臣、備局諸宰。 左議政柳尙運，以年凶，請依庚戌例，減御供之物及宗廟薦新所用燒木、各司貢物價，京衙門及外方各營門所儲銀、布、米穀之數，使之從實上聞，以備取用，京外營繕及凡係擾民之事，一切停止，</p> |

| | | |
|--|--|---|
| | <p>(數)를 실지대로 상문(上聞)케 하여 이를 취하여 씬에 대비(對備)하며, 경외(京外)의 영선(營繕) 및 무릇 백성을 소요(騷擾)케 하는 일은 일체 정지하소서. 문수 산성(文殊山城)의 창고(倉庫)의 역사(役事)와 낙선군(樂善君) 이축(李瀾)의 묘소에 돌을 끄는 역사 및 경외의 추노(推奴)8669)·징채(徵債)8670) 같은 것을 모두 정지하고 외방의 관원으로서 말미를 받는 자는 친병(親病) 외에는 일체 허락하지 마소서.”</p> <p>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우의정(右議政) 신익상(申翼相)이 새로 생긴 왕자(王子)의 궁(宮)을 영조(營造)하는 역사와 사행(使行) 때에 상방(尙方)8671)의 물건 무역(貿易)을 정지하기를 청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서문중(徐文重)은 강도(江都)의 영전(影殿) 보수(補修)의 역사를 정지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세화(李世華)가 내의원(內醫院)의 약재(藥材) 무역의 일을 정지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약재는 곧 일용(日用)의 물건이니, 그 중에서 긴요치 않은 것은 재감(裁減)하여도 가하다.”</p> <p>하였다. 유상운이, 양서(兩西)가 흉년들을 가지고 삼남(三南) 연해(沿海)의 여러 고을의 신포(身布)를 민원(民願)의 어떠한을 물을 것 없이 그 값을 조금 감하여서 쌀로 대봉(代捧)하여 곡식을 모으는 터전으로 삼기를 청하니, 임금이 제신(諸臣)에게 물었는데, 제신이 모두 이것이 아니면 곡식을 모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임금이 이를 허락하여 말하기를,</p> <p>“난편(難便)의 형세(形勢)가 있다면 도신(道臣)이 마땅히 계문(啓聞)하여야 한다.”</p> | <p>如文殊山城倉舍之役、樂善君瀾墓所曳石之役及京外推奴、徵債， 竝皆停止， 外方官受由者， 親病外一切勿許， 上皆從之。 右議政申翼相， 請停新生王子宮營造之役、使行時尙方貿易之物， 兵曹判書徐文重， 請停江都影殿修補之役， 上皆從之。 戶曹判書李世華， 請停內局藥材貿易之事， 上曰：“藥材乃日用之物， 其中不緊者， 裁減可也。” 尙運以兩西凶荒， 請三南沿海邑諸色身布， 不問民願之如何， 稍減其直， 以米代捧， 以爲聚穀之地， 上問于諸臣， 諸臣皆以爲非此， 無以聚穀， 上許之曰：“如有難便之勢， 則道臣自當啓聞矣。” 尙運曰：“李世華疏中所陳兩件事， 誠合事宜， 而其疏批答， 有於義宮折受， 酌定結數而革罷之教。 自上量定結數而下教宜矣。” 上曰：“戊辰以後折受四千結中， 以一千結劃給可也。” 尙運曰：“戊辰以前折受者， 有四百餘結。 此亦入於一千結之數耶?” 上曰：“不然。 只以戊辰以後折受者， 劃給一千結可也。” 尙運曰：“三宮折受革罷之代， 量給銀貨米豆事， 今當稟定矣。 某處【指禮嬪房。】今則後宮，</p> |
|--|--|---|

| | | |
|--|--|--|
| | <p>하였다. 유상운이 말하기를,</p> <p>“이세화(李世華)의 소 안에 진달한 두 건(件)의 일이 진실로 사의(事宜)에 맞습니다. 그 소의 비답(批答)에, ‘어의궁(於義宮)의 절수(折受)할 결수(結數)를 작정(酌定)해 주어야 하는데 헛과되었다.’는 하교(下敎)가 계셨으니, 정상께서 결수를 양정(量定)하시어 하교하심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무진년(8672) 이후에 절수한 4천 결 중에서 1천 결을 획급(劃給)하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 유상운이 말하기를,</p> <p>“무진년 이전에 절수한 것이 4백여 결이 있는데, 이것도 또한 1천 결의 수에 들어가는 것입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그렇지 않다. 다만 무진년 이후에 절수한 것을 가지고 1천 결을 획급하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 유상운이 말하기를,</p> | <p>而異於他宮，故丙寅年，有二百結劃給之命。二百結，乃王子、翁主房折受之數也。使之同於王子房者，聖意似有所在矣。戊辰因大臣陳達，諸宮家職田之代，王子、翁主房，則給銀四千兩事定奪矣。今番三宮房，依戊辰所定，以四千兩定數何如？”上曰：“新設宮，何以爲之耶？”對曰：“新生王子宮耶？”上曰：“然矣。”對曰：“當一體爲之矣。”上許之。尙運曰：“宮庄未備之前，當給米豆。其碩數則當自下酌定，而年限不敢擅定，未知當以幾年爲限耶？”上曰：“以五年爲限可也。”尙運曰：“然則王子宮，每年自宣惠廳輸送米二百石，軍資監輸送豆一百石，三宮房，亦當依此爲之也。”上允之。</p> <p>【史臣曰：“柳尙運，位在大臣，凡係宮府之事，只當直陳所見，以俟聖明之裁處，而今乃不然，知於義宮一千四百結之爲過，而不敢明言，乃以戊辰以前四百結，亦入於此數等語，佯若不知者然，以俟上之顏色，上豈不能燭其情狀耶？且禧嬪稱號，有何不敢言之事，而乃以某處稱之耶？禧嬪雖誕生東宮，東</p> |
|--|--|--|

| | | |
|--|--|---|
| | <p>“세 궁방(宮房)의 절수를 혁파하는 대신으로 은화(銀貨)와 미·두(米豆)를 양급(量給)하는 일을 이제 마땅히 품정(稟定)하여야 합니다. 모처(某處)【장 희빈방(張禧嬪房)을 가리킨다.】는 지금은 후궁(後宮)이지만 다른 궁방과 다른 까닭에 병인년(8673)에 2백 결의 획급의 명이 있었는데, 2백 결은 곧 왕자방(王子房)과 옹주방(翁主房)의 절수의 수이니, 이를 왕자방과 함께 함은 성의(聖意)의 속셈이 있는 듯합니다. 무진년에 대신의 진달을 인하여 제궁가(諸宮家)의 직전(職田)의 대신으로 왕자방·옹주방은 은(銀) 4천 냥을 주는 일로 정탈(定奪)하였으니, 이번 세 궁방도 무진년의 정한 바에 의거하여 4천 냥으로 수를 정함이 어떠합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신설(新設)되는 궁은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p> <p>하므로, 대답하기를,</p> <p>“새로 생기는 왕자궁 말입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그렇다.”</p> <p>하므로, 대답하기를,</p> <p>“마땅히 일체(一體)로 하여야 합니다.”</p> | <p>宮爲中宮之子，則禧嬪亦一後宮，何以曰異於他宮耶？ 況丙寅乃未誕元良之前，則何以曰二百結劃給，聖意似有所在耶？ 況兩宮房，有何異於他宮之事，而亦與禧嬪，比例於王子房耶？ 巧飾諂媚之辭，欲以迎合上意，而不自覺其言之不成說，其情之不可掩，噫！鄙夫可與事君也哉？ 上之以新生王子房之見漏爲慮，別爲提起而問之者，亦不免溺於小愛而忽於大體也，可勝惜哉！”】</p> <p>尙運仍論李三碩事曰：“金鎮龜不可永廢，三碩之言誠過矣。 但爲邪論左袒，實三碩之情外也。” 翼相繼陳之，上曰：“予非直以三碩右命賢也。以其時在濟州之金鎮龜，爲若同參於某事者然，然則罪命賢之意，安在哉？” 翼相請退行大比科於明秋，上從之。 尙運請以百官祿俸，依辛亥例，以散料分給，上以有乖於忠信重祿之道，不許，尙運、翼相等固請，上從之。</p> |
|--|--|---|

| | | |
|---|---|---|
| | <p>하였더니, 임금의 이를 허락하였다. 유상운이 말하기를,</p> <p>“궁장(宮庄)을 아직 갖추기 전에는 마땅히 미·두를 주어야 하니, 그 석수(碩數)는 밑에서 작정(酌定)하겠지만 연한(年限)은 감히 함부로 정하지 못하오니, 마땅히 몇 년을 기한으로 하여야 할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5년을 기한으로 함이 가하다.”</p> <p>하였다. 유상운이 말하기를,</p> <p>“그렇다면 왕자궁에는 매년 선혜청(宣惠廳)에서 쌀 2백 석을, 군자감(軍資監)에서 콩 1백 석을 실어 보내고, 세 궁방도 또한 마땅히 이에 의거하여 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윤허(允許)하였다.</p> | |
| <p>숙종 29권, 21년 (1695 을해 / 청 강희 (康熙) 34년) 9월 1일 (경신) 1번째기사</p> | <p>충주 목사(忠州牧使) 송상기(宋相琦)가 상소하여 백성의 일의 절급(切急)한 상황을 진달하고 청하기를,</p> <p>“한전(旱田)에 급재(給災)하고, 적곡(糶穀)8708 을 거두는 것은 3분의 1을 율(率)로 하며, 갑술년(8709) 이전의 포흠(逋欠)은 한결같이 모두 탕척(蕩滌)하고, 양진창(楊津倉)의 적곡(糶穀)은 전미(田米)로써 대봉(代捧)하며, 또 그 소</p> | <p>○朔庚申/忠州牧使宋相琦上疏， 陳民事切急之狀， 請旱田給災， 捧糶以三分之一爲率， 甲戌以前逋欠， 一併蕩滌， 楊津倉糶穀， 以田米代捧， 又除其耗， 專作本邑賑恤之資， 且言：</p> |

| | | |
|--|--|--|
| | <p>모(消耗)된 것을 면제하여서 오로지 본읍(本邑)의 진휼의 바탕으로 삼게 하소서.”</p> <p>하고, 또 말하기를,</p> <p>“순무사(巡撫使)가 와서 병조(兵曹)의 여정(餘丁)을 조사하여 가려내고 또 수어청(守禦廳)의 아약(兒弱)을 세초(歲抄)8710)의 도고(逃故)의 원액(元額)에 옮겨 기록하여 넣어서 해를 거듭하던 인징(隣徵)·족징(族徵)의 폐해(弊害)가 일분(一分)의 감소(減少)가 없지 않았는데, 수어청에서 곧 이를 빼앗아 타역(他役)으로 정함은 사리(事理)에 부당하니, 그대로 둔다면 원한(怨恨)을 사고 신의(信義)를 잃는 것이 전보다도 심할 것입니다. 조가(朝家)의 거조(舉措)가 이미 이와 같이 끌어당기고 뒤흔든다면 수령(守令)된 자가 또한 어떻게 봉행(奉行)한단 말입니까?”</p> <p>하고, 이미 신미년8711) 이후의 신역(身役)을 수봉(收捧)하지 못한 것을 모두 탕감(蕩減)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그 소(疏)를 묘당(廟堂)에 내리니, 양진창의 적곡(糶穀)이 소모(消耗)된 것을 면제하는 일 및 수어청의 아약을 정역(定役)하는 일 외에는 일체 시행한 것을 본 것이 없었다. 또 수어사가 경솔하게 앞질러 관문(關文)을 행한 것과 송상기의 ‘끌어당기고 뒤흔든다[牽拖搖颺]’는 등 말이 모두 사체(事體)를 잃음을 면치 못했다 하여, 모두 문비(問備)8712)의 벌을 시행하였다.</p> | <p>巡撫使之來，查出兵曹餘丁，又守禦兒弱，移簽於歲抄逃故之額，積年隣、族之害，不無一分之減，而守禦廳乃以奪定他役，事理不當，使之仍存，斂怨失信，視前有甚。朝家舉措，既如是牽拖搖颺，則爲守令者，亦何以奉行乎？</p> <p>仍請辛未以後身役未捧者，盡爲蕩減，上下其疏于廟堂。楊津糶穀除耗事及守禦兒弱定役事外，無一見施。又以守禦使之徑先行關，宋相琦之牽拖搖颺等語，俱未免失體，竝施問備之罰。</p> |
| <p>숙종 29권, 21년 (1695 을해 / 청 강희 (康熙) 34년) 9월 20</p> | <p>임금의 환후(患候)가 평복(平復)함으로써 백관(百官)이 진하(陳賀)하고, 사전(赦典)과 교서(敎書)를 반포(頒布)하였는데, 그 교서(敎書)의 글에 이르기를,</p> | <p>○以上候平復，百官陳賀，頒赦頒敎。其敎文曰：</p> |

일(기묘) 3번째기사

“왕(王)은 말하노라. 한번 병에 걸리자 오래도록 낫지 아니하여 잠자고 일어남이 절도(節度)를 잃었는데, 황천(皇天)의 묵우(默祐)를 힘입어 약이(藥餌)가 효력을 나타냈도다. 이에 하의(賀儀)를 거행하여 이 일로써 널리 고하노라. 생각건대, 내가 덕이 박한 몸으로 외람되게 큰 기업(基業)을 이어받았다. 연령(年齡)이 바야흐로 강성(強盛)함을 생각하고 섭생(攝生)의 방도(方途)에 소홀함은 아니었으니, 돌아보건대, 영위(榮衛)의 소박(素薄)함이 병을 받는 근원이 되었다. 더욱 스스로 절선(節宣)8754 을 삼가서 차츰 건강(健康)하게 된 것을 느꼈는데, 근일에 육려(六沴)8755 의 빌미로 인연(因緣)하여 드디어 양순(兩旬)의 미령(未寧)을 불렀도다. 조야(朝野)가 창황(蒼黃)하여 다만 여정(輿情)이 모두 황급할 뿐만 아니라, 침석(枕席)에서 괴롭고 위태로움으로 사실 만기(萬機)의 오래 버려짐을 근심하였다. 다행스럽게도 무망(无妄)의 재앙을 돌려 병이 낫는 기쁨을 얻었다. 시원스럽게도 아픔과 가려움증이 몸에서 떠나고 드디어 새로운 광명(光明)을 맞게되니, 몸이 깊은 못에 임한 듯, 얽은 얼음을 밟은 듯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조금 나은 데 오히려 경계하였네. 경사를 칭송하는 청(請)을 억지로 좇다보니, 겸양(謙讓)의 회포를 이루지 못하였다. 생례(牲醴)8756 의 제전(祭典)을 바쳐 종사(宗社)을 위안(慰安)하였고, 교서(敎書)의 성전(盛典)을 내려 원근에 널리 반포하였다. 이로 좇아 비바람이 순조롭고 신(神)과 사람이 모두 기뻐할 것이다. 경시(更始)8757 의 덕화(德化)를 높일 것을 생각하여 이에 사죄(赦罪)의 은전(恩典)을 펴노라. 이달 20일 매상(昧爽)8758 이전의 잡범(雜犯)으로서 사죄(死罪) 이하는 모두 용서하여 면제하고, 벼슬에 있는 자는 각각 한 자급(資級)을 더하되, 자급이 다한 자는 대가(代加)한다. 아! 하늘이 실로 우리 동방(東方)을 권고(眷顧)하였으니, 이 몸이 감히 임금[南面]의 즐거움을 편안히 누리기만 하겠는가? 바라는 바는 해마다 백성이 무고(無故)하여 재앙이 길이 사라지고, 기상(氣象)이 모두 화평(和平)하여 복록(福祿)이 더욱 모임을 보리로다. 이에 교시(敎示)하노니, 마땅

王若曰，嬰一疾而彌留，寢興違度；賴皇天之默祐，藥餌奏功。茲舉賀儀，庸錫敷告。惟予涼德，叨承丕基。念歲齡之方強，匪忽攝生之道；顧榮衛之素薄，斯爲受病之源。益自謹於節宣，覺稍臻於康勝。近緣六沴之爲崇，遂致兩旬之未寧。朝野憂遑，不但輿情之交迫；枕席困殆，實慮萬機之久拋。幸轉无妄之災，得占乃瘳之喜。爽然痛痒之去體，聿迓新休；凜乎淵冰之在心，猶戒少愈。勉循稱慶之請，未遂執謙之懷。獻牲醴之明禋，慰安宗社；降絲綸之渙號，頒布邇遐。從茲風雨之無淫，庶幾神人之胥悅。思隆更始之化，爰推蕩垢之恩。自本月二十日昧爽以前，雜犯死罪〔以外〕，咸宥除之，在官者各加一資，資窮者代加。於戲！天實眷顧於東方，予敢逸樂於南面？所冀歲民之無恙，疵厲永除；可見形氣之俱和，福祥益臻。故茲敎示，想宜知悉。

| | | |
|--|---|---|
| | <p>히 알 줄로 생각한다.”</p> <p>하였다.</p> | |
| <p>숙종 29권, 21년 (1695 을해 / 청 강희 (康熙) 34년) 10월 1 일(경인) 3번째기사</p> | <p>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 이광하(李光夏)가 하직[辭陞]하니, 인견(引見)하 고 칙유(勅諭)하여 보냈다. 이광하가 말하기를,</p> <p>“영남(嶺南)의 연해(沿海)의 미곡(米穀) 3만 석을 북로(北路)에 획급(劃給)하 였는데, 영남의 감사(監司)가 5천 석을 감하기를 청하였다고 합니다. 영남은 추이(推移)의 길이 없지 않으니, 감한 5천 석을 마땅히 전대로 이급(移給)하 기를 허락하셔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다시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품처(稟處)케 하였다.</p> | <p>○咸鏡道觀察使李光夏辭陞，引見勅諭 以遣之。光夏言：“嶺南沿海米穀三萬 石，劃給北路，而嶺南監司請減五千石 云。嶺南則不無推移之路，所減五千 石，宜許仍爲移給。”上更令該廳稟處</p> |
| <p>숙종 29권, 21년 (1695 을해 / 청 강희 (康熙) 34년) 10월 4 일(계사) 1번째기사</p> | <p>홍문관(弘文館)에서 응지(應旨)하여 진차(陳筮)하기를,</p> <p>“근래에 경연(經筵)이 점점 드물어져서, 신 등이 용안(龍顏)을 우러러뵈지 못 한 지가 이미 월여(月餘)입니다. 어찌 와내(臥內)8772) 에 끌어들여 혹 경의 (經義)를 토론(討論)하며 혹 시사(時事)를 강문(講問)하여서, 덕(德)에 나아가 고 업(業)을 닦는 보익(輔益)에 이바지하지 않습니까?”</p> <p>하고, 또 말하기를,</p> <p>“조적(糶糶)의 포흠(逋欠)이 부호(富豪)한 집에 많이 있는데도, 전번에 한 외 관(外官)의 진소(陳疏)로 인하여 제도(諸道)의 포흠을 모두 감하여 문득 누만 석(累萬石)의 군향(軍餉)을 잃었으니, 나라를 운영하는 데 오활함이 이와 같습 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아무런 단서(端緒)도 없이 조세(租稅)를 견감(蠲</p> | <p>○癸巳/弘文館應旨陳筮曰：</p> <p>近來經筵漸至疎間， 臣等不得仰瞻玉 色， 已月餘矣。 何不引入臥內， 或討 論經義， 或講問時事， 以資進修之益 乎？</p> <p>又言：</p> <p>糶糶之逋欠， 多在豪右之家， 而頃因一 外官之陳疏， 竝減諸道逋欠， 遽失累萬 軍餉， 謀國之疎迂， 有如是者。 前夏 無他端， 而蠲租除役， 以爲慰悅之政，</p> |

| | | |
|--|---|---|
| | <p>減)하고 부역(賦役)을 면제하여 백성을 위안(慰安)시키는 정사를 베풀었는데, 이제 재정(財政)이 다하고 백성이 곤궁하여진 뒤에 미쳐, 명년 봄의 진휼(賑恤)할 계획을 생각하여 그릇 경오년(8773) 과 신미년(8774) 의 구례(舊例)를 따라 빈사(濱死)(8775) 의 백성에게 침징(侵徵)을 가(加)하니, 그 또한 생각하지 않음이 너무 심합니다.”</p> <p>하고, 또 말하기를,</p> <p>“전세(田稅)의 미두(米豆)를 또한 마땅히 양감(量減)하여, 곤궁한 백성에게 일분(一分)의 혜택(惠澤)이라도 베풀어야 합니다.”</p> <p>하였으며, 또 말하기를,</p> <p>“무록관(無祿官)(8776) 의 선상(選上)은 전에 있어서는 변통(變通)의 거조(舉措)가 없었으나, 지난번에 탁지(度支)(8777) 의 신하가 별달리 건의(建議)하여 일체로糯米(廩料)를 발급(頒給)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충신(忠信)의 도리를 하는 데 족하지 못하고, 실로 절약의 본의(本意)가 아닙니다.”</p> <p>하고, 또 말하기를,</p> <p>“근시(近侍) 중에서 재능(才能)과 성망(聲望)이 있는 자를 극히 가려 8도(八道)에 나누어 보내어, 애통(哀痛)의 교서(敎書)를 선포(宣布)하여서 곤궁한 백성으로 하여금 그 생업에 편안케 하고, 또한 내탕금(內帑金)을 하사(下賜)한 성대한 뜻으로써 효유(曉諭)하여 부호(富戶)로 하여금 이를 본받아 그 이웃을 구제하게 하며, 각읍(各邑)의 불치 불법(不治不法)의 우심(尤甚)한 자를 두루</p> | <p>而及今財竭民窮之後，爲慮明春賑資之策，膠守庚辛舊例，侵徵濱死之民，其亦不思之甚矣。</p> <p>又言：</p> <p>田稅米豆，亦宜量減，以爲窮民一分之惠。</p> <p>又言：</p> <p>無祿官之選上，在前無變通之舉，而向者度支之臣，別爲建白，一體頒料，此未足爲忠信之道，而實非節損之本意也。</p> <p>又言：</p> <p>極擇近侍中有才能聲望者，分送八道，播告哀痛之教，使窮民安其生業，亦諭以發帑之盛意，令富戶有所觀感而濟其隣里，遍廉各邑不治不法之尤甚者，許令啓聞，則可以一舉而兩得矣。</p> <p>又言：</p> |
|--|---|---|

| | | |
|--|---|--|
| | <p>염탐(廉探)하여 계문(啓聞)케 한다면, 일거 양득(一舉兩得)이 될 수 있습니다.”</p> <p>하고, 또 말하기를,</p> <p>“서북 지방의 백성에게 우리의 지경 안에서 채삼(採蔘)을 허락한다면, 다만 백성을 구제하는 실혜(實惠)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변방을 굳게 하는 한 방도(方途)가 될 수 있습니다.”</p> <p>하고, 또 말하기를,</p> <p>“조제(調劑)의 계획은 오직 전하의 용사(用捨)가 한결같이 지극히 공정(公正)한 도리에서 나옴에 있습니다. 장희재(張希載)를 아직도 복주(伏誅)하지 않음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처치(處置) 중에 크나큰 과오(過誤)로서 논의(論議)의 격화(激化)됨이 실로 이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속히 양사(兩司)의 계청(啓請)을 윤택하신다면, 스스로 서로 믿어선 진정(鎮定)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답하기를,</p> <p>“조진(條陳)8778)의 일은 마땅히 해사(該司)로 하여금 각별히 채납(採納)하여 시행케 하겠다. 말단(末段)의 일은 여러 번 나의 뜻을 다 효유(曉諭)하였다.”</p> <p>하였다. 이 뒤에 좌의정(左議政) 유상운(柳尙運)이 앞서 말한 바, 여러 조목이</p> | <p>西北之民，許以我境採蔘，則不但爲救民之實惠，亦可爲固圉之一道也。</p> <p>又言：</p> <p>調劑之策，惟在殿下用捨，一出於大公至正之道也。至於希載之尙不伏法，固處置中失宜之大者，而論議之轉激，實由於此。亟允兩司之請，則自可至於交孚鎮定之域矣。</p> <p>答曰：“條陳之事，當令該司，各別採施，而末段事，屢悉予意矣。”是後左議政柳尙運，以所陳諸條有難施行之意陳達，勿施。</p> |
|--|---|--|

| | | |
|--|--|--|
| <p>숙종 29권, 21년 (1695 을해 / 청 강희 (康熙) 34년) 10월 8 일(정유) 2번째기사</p> | <p>시행하기 어려움이 있는 뜻으로써 진달하여 시행치 않았다.</p> <p>부호군(副護軍) 조형기(趙亨期)가 응지(應旨)하여 상소하여서 황정(荒政)을 논하기를,</p> <p>“엎드려 어제의 비망기(備忘記)를 보건대, 심지어는 먹기에 임하면 목이 메인다. 권분(勸分)8783) 하여, 서로 도와서 혼자만 살아나는 일이 없게 하라는 유시(諭示)가 있었으니, 전하(殿下)께서 이 마음을 확충(擴充)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아시고, 이 말을 실천(實踐)하지 않을 수 없음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사장(私藏)을 모두 꺼내시어 아끼지 말 것을 생각하소서. 경술년(8784) 과 신해년(8785) 의 진정(賑政)이 반드시 진선 진미(盡善盡美)하다고 할 수는 없었으니, 수레에 시체를 가득 실어 하루에도 6, 7차례 성문(城門)을 나아가서, 온 나라의 사망(死亡)이 거의 백만에 가까왔습니다. 이제 그 그릇된 것을 되풀이 하여 행하고자 한다면, 이는 장차 노약(老弱)을 모두 밀어 구렁텅이에 떨어뜨린 뒤에야 그만둘 것이니, 어찌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내부(內府)의 제고(諸庫)의 저축을 금년에 한하여 반드시 그 반을 덜어서 유사(有司)로 돌리고, 공물(貢物)의 각양(各樣)의 종목은 명년 가을에 한하여 반을 감하여서 진자(賑資)에 충당하며, 선혜청(宣惠廳)의 미두(米豆)를 전(錢)·포(布)로 대신 충당하고 모두 진휼청(賑恤廳)으로 옮겨서,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 진구(賑救)하되, 사람 수를 가지고 쌀을 계산한다면, 스스로 부족할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조가(朝家)가 징독(徵督)하는 바는 곧 조곡(糶穀)인데, 독촉하여 거두는 것은 이익은 없고 도리어 도적질과 분산(分散)함을 재촉하는 것이니, 그 강력하게 독촉하여도 마침내 받지 못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차츰 권분(勸分)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독촉한다는 것은 마침내 그 강요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넉넉한 자에게 권분(勸分)함은 혹시 그 조금 쉽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순무(巡撫)의 관원을 급히 보내어 이 한가지 절</p> | <p>○副護軍趙亨期應旨上疏，論荒政曰：</p> <p>伏觀日昨備忘，至有臨餐嗚咽。勸分相資，毋或獨活之諭，未知殿下果有是心，果發斯言乎？殿下念是心之不可不擴，思斯言之不可不踐，必思所以盡發私藏，毋所靳惜焉。庚、辛之政，未必盡善，車載積尸，日六七而出城門，一國死亡，殆近百萬。今欲襲其謬而行之，是將盡擠老弱於溝壑而後已，豈不危哉？內府諸庫之儲，姑限以今年，必除其半，歸之有司，貢物各樣之目，可限以明秋，十減其五，以充賑資，宣惠米、豆，以錢、布代充，盡移賑廳，以此分賑，則以口計米，自無不給之患矣。朝家之所徵督者，乃糶穀，而督徵無益，反促其盜散，與其強督而終不可得，無寧稍開勸分之路。督貧終知其難強，勸優或意其差易。臣意欲急送巡撫之官，兼管此一節，以聖明勸懇勸分之教，諭導父老，則必大有獲矣。鑄錢一事，不可不趁今亟行。不獨京城，廣及八路，功力之可以辦此者，竝許官鑄，而只禁質私收稅之路可也。</p> |
|--|--|--|

| | | |
|--|--|--|
| | <p>목(節目)을 겸관(兼管)하여서, 성명(聖明)의 간곡하신 권분의 하교(下教)로써 부로(父老)를 유도(諭導)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크게 얻음이 있을 것입니다. 주전(鑄錢)의 한 가지 일은 오늘에 이르러 속히 행하지 않아서는 안되니, 경성(京城)뿐만 아니라, 널리 팔로(八路)에 이르기까지 공력(功力)의 이를 할 수 있는 자는 모두 관주(官鑄)를 허락하시고, 다만 사사로이 임대(賃貸)하여 수세(收稅)하는 길을 금하여야 됩니다. 각양(各樣)의 군병(軍兵), 각색(各色)의 공장(工匠), 각사(各司)의 노비(奴婢) 및 그 밖의 무릇 포(布)를 바치는 관계된 종류에 있어서는, 모두 값을 감하여 쌀을 바치게 하던 것도 잡곡도 가릴 것 없이 힘에 따라 갖추어 바치게 하소서. 한 고을의 백성의 목숨은 수령(守令)에게 매였으니, 이는 오로지 도신(道臣)에게 맡겨 그 공죄(功罪)를 살피고, 그 현부(賢否)를 분별하여 즉시 논주(論奏)케 하고, 또한 급히 안무(按撫)의 신하를 보내어 수재(守宰)를 출척(黜陟)하여서, 생령(生靈)을 보존하여 살리는 책임을 맡기고 겸하여 도신의 치적(治績)을 살피게 하며, 각 군문(軍門), 각 아문(衙門), 각 부(府)·사(司)의 둔전(屯田)에게 거둔 곡물(穀物)에 이르러서는, 모두 그 고을에 주어 진자(賑資)에 충당케 한다면, 굶주리는 자가 은혜를 입음이 클 것입니다. 서북지방의 채삼(採蓼)은 가장 사단(事端)을 일으키기 쉬우나, 한번 이익을 잃으면 생활의 길이 금방 끊어집니다. 해가 연거푸 흉년들었는데 금년이 가장 흑심하니, 만약 우리의 지경(地境)에서 채삼을 허락한다면, 그 힘을 얻음이 한 곳집을 여는 이익에 그칠 뿐이 아닙니다. 원컨대, 묘당(廟堂)에 물으시어 처리하소서. 공물(貢物) 중에 기인(其人)8786) 이 가장 큰 것으로서 값이 누만(累萬)에 이르니, 이제 만약 사산(四山)8787) 의 고송(枯松)으로써 허락한다면, 또한 한 가지方便(方便)의 길이며, 이는 장차 무용(無用)을 돌려 유용(有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치도(治盜)의 방책(方策)에 이르러서는, 그 기미(幾微)를 비밀히 하고 그 은덕(恩德)을 크게 하며, 그 기운을 격동(激動)하여서 용기(勇氣)있는 자로 하여금 그 용기를 바치기를 생각하게 하</p> | <p>各樣軍兵、諸色工匠、各司奴婢及其他凡係納布之類，竝令減價納米，毋擇雜穀，隨力備納焉。一邑民命，係於守令，是宜專委道臣，按其功罪，別其賢否，劃卽論奏，亦宜急遣按撫之臣，委以黜陟守宰，存活生靈之責，兼察道臣之治行，至於各軍門、各衙門、各府司屯田所收穀物，竝付該邑，俾充賑資，則饑餓之蒙惠大矣。西北採蓼，最易生事，而一失此利，生理頓絕。荐歲歉荒，今年最酷，若得許採我境，則其爲得力，不啻發一倉之利。願詢廟堂而處之。貢物之中，其人最大，價至累萬，今若許以四山枯松，亦一方便之道，是將轉無用爲有用也。至於治盜之策，密其機、大其恩、激其氣，使勇者思效其勇，材者思效其材，亦安知無同黨之中，起而爲我用者？</p> <p>又言：</p> <p>聖明求治之大志未立，圖治之實政未舉，人之情僞、事之是非，不及徐究而審察。廟堂之上，少直前擔當之志，銓選之地，無爲官擇人之意，本兵之</p> |
|--|--|--|

| | | |
|--|---|--|
| | <p>며, 재주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재주를 바치기를 생각하게 한다면, 또 같은 당(黨)안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쓰임이 되는 자가 없을지 어찌 알겠습니까?”</p> <p>하고, 또 말하기를,</p> <p>“성명(聖明)은 다스림을 구(求)하는 큰 뜻이 아직 서지 않고, 다스림을 도모(圖謀)하는 실정(實政)을 아직 펴지 않았으며, 사람의 정위(情僞)8788)와 일의 시비를 천천히 생각하고 밝게 살피기에 미치지 못하셨습니다. 묘당(廟堂)의 위에는 곧장 앞으로 나아가서 <일을> 담당할 뜻이 적고, 전선(銓選)의 땅에는 벼슬을 위하여 사람을 선택할 뜻이 없으며, 본병(本兵)8789)의 관원은 오로지 규례(規例)만을 힘쓰고, 재부(財賦)의 직임(職任)은 뜻이 상규(常規)만을 고집함에 있으며, 논사 언의(論思言議)의 벼슬아치는 군덕(君德)을 성취(成就)함이 아득하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나라의 걱정과 백성의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 망연히 살피지 못하니, 백예(百隸)가 모두 게으르고 백직(百職)이 모두 퇴폐(頹廢)합니다. 과연 남의 말을 들어서 반성(反省)하고 나라가 망할까 슬퍼하여 발분(發憤)하며, 진심으로 다스림을 원하고 지성(至誠)으로 도(道)를 구한다면, 천하를 비치는 덕(德)과 하늘을 감동시키는 공업(功業)을 이루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p> <p>하니, 답하기를,</p> <p>“공물(貢物) 1관(款)은 결코 또 감삭(減削)할 수 없다. 다른 나머지 일은 해사(該司)로 하여금 품처(稟處)케 하라.”</p> <p>하였다. 묘당(廟堂)에서 진휼(賑恤)을 맡은 신하로 하여금 헤아려 채택(採擇)</p> | <p>官, 專務規例, 財賦之職, 意在膠守, 論思言議之官, 成就君德, 漫不知爲何說, 國憂民戚, 恬不省其何物, 百隸俱怠, 百職皆廢。 果能聞人言而反省, 痛國亡而發憤, 眞心願治, 至誠求道, 則光天之德, 格天之業, 不難致矣。</p> <p>答曰: “貢物一款, 決不可又爲減削也。 他餘事, 令該司稟處。” 廟堂請令主賑之臣, 量度採施, 而卒無施焉。 上下備忘記曰: “趙亨期疏中一款語, 全不擇發, 於予心實有所慨惋者。 噫! 當庚、辛大侵之歲, 先王所以夙宵憂勤, 哀傷惻怛, 不啻若救焚拯溺者, 出於至誠, 使斯民得免靡孑之慘者, 莫非先王之至德, 而乃敢譏議辛、亥之賑政, 至以不足取法爲辭, 噫嘻, 是何言也! 今年八路之飢饉, 殆有甚於庚、辛, 進言者若曰: ‘擺脫已行之例, 別圖拯濟之策。’ 云, 則不患無辭, 而今其爲言, 若是其肆然。 果若不足取信, 則先王至誠拯民之厚澤, 歸於虛套矣, 在予之道, 其將默默受之, 不爲明言痛斥乎? 求言之下, 雖不必譴責, 而不可不一番說破, 俾知告君之辭, 不得不致</p> |
|--|---|--|

| | | |
|------------------------------------|--|---|
| | <p>하여 시행케 하기를 청하였으나, 마침내 시행함이 없었다. 임금(備忘記)을 내려 이르기를,</p> <p>“조형기(趙亨期)의 소 안의 1관(款)의 말은 전혀 분수없이 지꼈으니, 나의 마음에 실로 분개하는 바가 있다. 아! 경술년(8790) 과 신해년(8791) 의 크게 흉년든 해를 당하여, 선왕(先王)께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근심하사, 일에 부지런하시고 슬퍼하고 애처롭게 여기심이, 불에 타는 것을 구하고 물에 빠진 것을 건져내듯이 한 것이 지성(至誠)에서 나왔을 뿐 아니라,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남김없는 죽음의 비참에서 모면함을 얻게 한 것은 선왕의 지덕(知德)이 아님이 없다. 그런데도 감히 신해년의 진흙의 정사(政事)를 비방하고, 심지어는 죽히 본받을 것이 없다고 말했으니, 아! 이것이 무슨 말인가? 금년(今年)의 8로(八路)의 기근(飢饉)이 거의 경술년과 신해년보다도 심함이 있으니, 진언(進言)하는 자가 만약 말하기를, ‘이미 행한 구례(舊例)를 파탈(擺脫)하고, 별달리 증제(拯濟)의 계책을 도모한다.’고 한다면, 할말이 없어서 근심하지는 않을 텐데, 이제 그 말함이 이와 같이 방자하다. 과연 취신(取信)하기에 부족할 것 같으면, 선왕이 지성으로 백성을 증제한 후한 은택(恩澤)이 허투(虛套)로 돌아가니, 나의 도리에 있어 어찌 묵묵히 이를 받아들이고 밝게 말하여서 통척(痛斥)하지 않겠느냐? 구언(求言)한 이상, 비록 견책(譴責)할 필요는 없으나, 불가불 한번 설파(說破)하여 임금에게 고하는 말은 근신(謹慎)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리기 위하여 일부러 이처럼 여러 말을 한다.”</p> <p>하였다.</p> | <p>愼，故如是縷縷也。”</p> |
| <p>숙종 29권, 21년 (1695 을해 / 청 강희</p> | <p>장령(掌令) 임호(林濩)가 응지(應旨)하여 상소하면서 도적이 성하게 퍼지는 근심을 말하고, 이어 도적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네 조목을 진달(陳達)하였으니,</p> | <p>○乙巳/掌令林濩應旨上疏，言盜賊滋蔓之患，仍陳治盜之方四條，一曰信賞</p> |

| | | |
|--|---|--|
| <p>(康熙) 34년) 10월 16일(을사) 1번째기사</p> | <p>첫째 상전(賞典)을 믿음 있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토포(討捕)를 넓히는 것이며, 세째는 생로(生路)를 열어 주는 것이요, 네째는 쓸 만한 사람을 얻는 데 힘쓰는 것이었다. 또 백성을 살리는 요도(要道) 네 조목을 진달하였으니, 첫째는 재해(災害)를 입은 전지의 조세를 감면하는 것이고, 둘째는 조적(糶糶)을 거두는 것을 정지하는 것이며, 세째는 널리 흩어진 백성을 모으는 것이며, 네째는 사치(奢侈)가 심해지는 〈습속(習俗)을〉 버리는 것이었다. 임금이 그 소(疏)를 묘당(廟堂)에 내려서 묘당에서 복계(覆啓)하였으나, 채용된 사실은 없었다.</p> | <p>格, 二曰廣討捕, 三曰開生路, 四曰務得人。 又陳活民之要四條, 一曰給田災, 二曰停收糶糶, 三曰廣聚散, 四曰去泰甚。 上下其疏于廟堂, 廟堂覆啓, 無採用之實。</p> |
| <p>숙종 29권, 21년 (1695 을해 / 청 강희 (康熙) 34년) 10월 18일(정미) 2번째기사</p> | <p>대사헌(大司憲) 이수언(李秀彦)이 응지(應旨)하여 상소하기를, “엿드려 원하건대, 전하(殿下)께서는 두려워하고 삼가는 마음을 항상 재앙을 만난 처음과 같이 하시고, 더욱 전학(典學)8797)의 공부(功)를 독실(篤實)히 하시며, 더욱 태만(怠慢)에 대한 경계를 간직(間)하시, 하늘(天)께 영명(永命)을 기원(祈願)하는 근본(根本)으로 삼으시고, 왕세자(王世子)를 보도(輔導)하는 방법은 마땅히 그 지극한 도리(道理)를 쓰지 않음이 없어야 합니다. 엿드려 원하건대, 전하(殿下)께서는 더욱 사방(四方)의 숨은 인사(人士)를 구(求)하시 널리 부르(呼)고 찾으(求)시며, 진선(進善)·자(諮)의(諮) 등 벼슬아(朝)치(治)로 하여금 모두 진강(進講)의 반열(班列)에 참여(參)케 하소서. 전하(殿下)께서는 깊이 조정(朝廷)의 논의(論議)의 서로 어긋(誤)남(南)을 염려(憂)하사, 공경(恭)하고 화협(和協)하는 미덕(美德)으로써 책(責)하시니, 심히 성대(盛大)한 뜻(意)입니다. 그러나 공자(孔子)는 말(言)하기를, ‘곧은 이(是)를 들어서 굽은 이(非) 위에 두면 백성(民)이 복종(服)하고, 굽은 이(非)를 들어서 곧은 이(是) 위에 두면 백성(民)이 복종(服)하지 않는다.’라고 하(言)했습니다. 만약(若) 조정(朝廷)으로 하여금 거조(舉措)가 마땅(當)함을 얻(得)게 한(令)다면 인심(人心)이 모두 복종(服)할 것이니, 이(異)론(論)이 어디(何)로 좃(追)아 생(生)기(起)겠습니까? 그렇지(若) 아니(不)하고 억(抑)지로 모호(模)糊(糊)하고 흐(混)리게 하(令)여 시비(是非)의 소재(所在)를 돌아보(回)지 않(不)고 오직(唯) 화동(和同)을 일(一)삼(三)한다면, 이는 이</p> | <p>○大司憲李秀彦應旨上疏曰： 伏願殿下，兢業之心，常如遇災之初，益篤典學之工，益存怠忽之戒，以爲祈天永命之本，王世子輔導之方，宜無所不用其極。 伏願益求四方遺逸之士，旁招博訪，使進善、諮議等官，並參於進講之列。 殿下深慮朝廷論議之携貳，責之以寅協之美，甚盛意也。 然孔子曰：“舉直錯諸枉則民服，舉枉錯諸直則民不服。” 若使朝廷，舉錯得宜，人心咸服，則異論何從而生乎？不然而強使之罔圖渾定，不顧是非之所在，惟以和同爲事，則此所謂相助匿非，非國家之福也。 目今民窮滋甚，當年條自己身布，亦不能備納，況逃故隣族之前未收番布，何能辦出乎？ 甲戌以上未收各</p> |

| | | |
|--|--|--|
| | <p>른바 ‘서로 도와 잘못을 숨긴다.’는 것으로서, 국가의 복(福)이 아닙니다. 현재 백성의 곤궁함이 자심(滋甚)하여 당년조(當年條)의 자기의 신포(身布)도 능히 갖추어 바치지 못하거든, 하물며 도망하였거나 사망한 이웃 사람이나 일족(一族)의 전의 미수(未收)의 번포(番布)를 어떻게 마련하여 낸단 말입니까? 갑술년(8798) 이전의 미수된 각양(各樣)의 신포를 모두 탕감(蕩減)한다면, 거의 덕의(德意)를 선포(宣布)하여 곤궁한 백성의 일분(一分)의 폐해(弊害)를 덜 수 있습니다. 신은 들으니, 금년의 각양 신포는 한결같이 재실(災實)의 분등(分等)에 따라 그 신포를 감하고, 기병(騎兵)과 보병(步兵)은 15달씩 윤번(輪番)하기 때문에 그 속에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번차(番次)가 비록 매우 먼 것 같으나, 이 전고(前古)에 없던 흉년을 당하여 홀로 2필(疋)을 바치게 한다면, 반드시 칭원(稱冤)의 단서(端緒)가 있을 것이니, 다른 예에 의하여 모두 1필로 감한다면, 거의 한결같은 혜택(惠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청주 등 10여 읍(邑)의 조세(租稅)를 배[船]로 운반하여 상납(上納)하는 것을, 산군(山郡)(8799)의 예에 의하여 작전(作錢)하여 상납하고, 아산(牙山)·안흥(安興)·양진(楊津) 등 창고의 곡식은 경창(京倉)에 대납하며, 각읍의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를 본관(本官)에 수봉(收奉)하여 유치(留置)한다면, 기민(飢民)의 혜택을 입음이 매우 큼니다. 해가 흉년들고 백성이 가난하면 일어나 도적이 되는 것은 진실로 반드시 이르는 세(勢)입니다. 그옥이 듣건대, 10여 년 전에는 그 진고(陳告)하여 도적을 잡은 자는 비록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한 은상(恩賞)을 입었는데, 중간에 상전(賞田)이 너무 남발(濫發)되므로 반드시 다섯 사람이 승복(承服)한 연후에야 비로소 상(賞)을 논하니, 상전이 이미 어려운데다 간혹 도적의 무리가 앙심을 품어 도륙(屠戮)하는 자가 있으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두 도적을 고발하는 것을 경계로 삼아 관(官)에 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말지 않는다면, 도적이 무엇을 두려워함이 있어서 이를 징계하여 금지하겠습니까? 옳드려 원하건대, 상규(常規)에 구애(拘礙)받지</p> | <p>樣身布，一併蕩減，則庶可以宣布德意，而除窮民一分之弊矣。臣聞今年各樣身布，一從災實分等，減其身布，而騎、步兵則以十五朔輪番之故，不入其中云。此輩番次，雖似稀闊，當此振古所無之凶荒，獨納二疋，則必有稱冤之端，亦依他例竝減一疋，則庶可蒙一視之惠澤矣。清州等十餘邑租稅之船運上納者，依山郡例，作錢上納，以牙山、安興、楊津等倉之穀，代納於京倉，而各邑田稅、大同，捧留本官，則飢民之蒙惠甚大矣。歲飢民貧，則起而爲盜，固是必至之勢。竊聞十餘年前，則其陳告捕賊者，雖一人，亦蒙恩賞，中間以賞典太濫，必五人就服然後，始爲論賞，賞典既艱，而間復有賊徒，中毒屠戮者，故人皆以告賊爲戒，不以告官。若此不已，則賊何所畏懼而懲戢乎？伏願勿拘常規，別立賞格，嚴加譏捕，庶不至於滋蔓也。</p> <p>上下廟堂，多見施。</p> |
|--|--|--|

| | | |
|---|--|--|
| | <p>말고 따로 상격(賞格)을 세워, 엄중히 기포(譏捕)를 더한다면, 거의 자만(滋蔓)8800) 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묘당에 내려 시행(施行)을 본 것이 많았다.</p> | |
| <p>숙종 29권, 21년 (1695 을해 / 청 강희 (康熙) 34년) 10월 29 일(무오) 1번째기사</p> | <p>부수찬(副修撰) 민진형(閔震炯)이 상소하여 접위관(接慰官)으로 왕환(往還)할 때에 연로(沿路)에서 듣고 본 것을 진달(陳達)하고, 영남(嶺南)의 재황(災荒)의 상황을 갖추 말하여서 청하기를,</p> <p>“각양(各樣)의 포(布)를 거두는 것과 금년의 신역(身役)을 모두 견감(蠲減)하고, 수전(水田)·한전(旱田)의 3세(稅)와 대동미(大同米)를 모두 견감하며, 한전의 급재(給災)는 결코 상규(常規)만을 굳게 지켜서는 안되니, 만약 전감(全減)할 수 없다면 전지의 풍흉(豐凶)을 헤아릴 것 없이, 다만 부민(富民)의 묵은 곡식이 있거나 전곡(田穀)이 조금 성숙한 것을 가려, 작결(作結)8811) 을 허락하고 수전도 또한 이를 본떠 본읍(本邑)에 봉류(捧留)케 하여서 진자(賑資)에 보충한 연후에, 조정에서 따로 명년의 종자를 마련하여 주도록 하소서. 왜공(倭供)8812) 외의 상납(上納)도 또한 본읍에 봉류케 하고, 각읍의 수포(收布)를 견감(蠲減)하는 유(類)도 또한 마땅히 타도(他道)에 비하여 그 수(數)를 감(減)하되, 1필(疋)을 바치는 자는 돈으로 환산하여서 그 반을 양감(量減)하며, 영남의 세입(稅入)은 그 반을 왜공(倭供)으로 돌리는데, 금년에는 반드시 그 수도 능히 채우지 못할 것이니, 속히 변신(邊臣)으로 하여금 저들에게 사리에 맞도록 <회유하여> 풍년을 기다려 물리어 지급(支給)케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묘당에 내려 묘당에서 복계(覆啓)하여서, 왜공을 뒤로 물리어</p> | <p>○戊午/副修撰閔震炯上疏， 陳接慰官往還時沿路聞見， 備言嶺南災荒之狀， 請盡蠲各樣收布者、今年身役， 而水·旱田三稅、大同， 一竝蠲免， 旱田給災， 決不可膠守常規， 若不可全減， 則不計田之豐歉， 而只擇富民之有舊穀， 而其田稍稔者， 姑許作結， 水田亦令倣此， 捧留本邑， 以補賑資然後， 朝廷別辦明年種子以給。 倭供外上納者， 亦令捧留本邑， 各邑收布蠲減之類， 亦宜比他道， 更減其數， 而納一疋者， 以錢折計而量減其半， 嶺南稅入， 半歸倭供， 今年必不能充其數， 速令邊臣， 停當於彼人， 待年退給。 上下廟堂， 廟堂覆啓， 倭供退給一款外， 無見施。</p> |

| | | |
|--|---|--|
| | <p>지급하는 1관(款) 외에는 시행을 본 것이 없었다.</p> | |
| <p>속종 29권, 21년 (1695 을해 / 청 강희 (康熙) 34년) 11월 2 일(경신) 1번째기사</p> | <p>북평사(北評事) 민진후(閔鎭厚)가 상소하여 북쪽 백성의 굶주리고 곤궁한 상황을 갖추어 진달하고, 이외 구황(救荒)의 대책을 논하여서 청하기를,</p> <p>“경술년8815) 과 신해년8816) 의 전례에 의하여, 내노비(內奴婢)8817) 와 각사 노비(各司奴婢)의 쌀을 바쳐 면천(免賤)하는 것과 역노(驛奴)의 이속(吏屬)으로 승진하는 법을 설행(設行)함을 허락하되, 그 쌀의 수량은 경술년과 신해년에 비교하여 또한 마땅히 양감(量減)하여야 하고, 본도(本道)의 사천노(私賤奴)는 조가(朝家)에서 값을 정하여 속량(贖良)을 허락함이 이미 사목(事目)이 있으니, 그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쌀로 환산하여 거두게 하고, 진휼청(賑恤廳)에서 본주(本主)에게 대신 은자(銀子)를 주며, 내어 버린 아이를 거두어 길러서 종으로 삼은 것도 또한 경술년과 신해년의 이미 행한 것에 의하여 속히 조제(條制)를 내리소서.”</p> <p>하고, 또 청하기를,</p> <p>“도신(道臣) 및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재산이 넉넉한 자를 가리게 하여 진휼감관(賑恤監官)의 임무로써 맡기고, 그 마을 안의 기민(饑民)의 명부를 만들어 주며, 또 약간의 관곡(官穀)을 주어서 관곡이 다한 뒤에는 자기의 곡물(穀物)을 가지고 진휼케 하며, 진휼을 마치기를 기다려 그 곡식을 많이 내어 백성을 많이 살린 자를 가려, 즉시 실직(實職) 혹은 변장(邊將) 벼슬을 주어서 향년(向年)의 서성(徐盛)의 예(例)와 같게 하고, 그 다음은 혹 변장 승전(邊將承傳)을 주고, 혹 다른 상(賞)을 베푸소서.”</p> | <p>○庚申/北評事閔鎭厚上疏, 備陳北民饑困之狀, 仍論救荒之策, 請依庚、辛年例, 許設內奴婢、各司奴婢納米免賤及驛奴陞吏之法, 而其米數視庚辛, 亦宜量減, 本道私賤奴, 朝家定價許贖, 已有事目, 令其所在官, 以米折捧, 而自賑廳代給銀子於本主, 遺棄兒收養爲奴, 亦依庚、辛所已行者, 亟降條制。又請令道臣及守令, 擇勤幹饒財產者, 差以賑恤監官之任, 以其里中饑民, 籍名而付之, 且給若干官穀, 使於官穀既盡之後, 以自己穀物而往賑之, 待畢賑, 擇其出穀多而活民衆者, 卽授實職或邊將, 如向年徐盛例, 其次或給邊將承傳。或施以他賞, 末言:</p> <p>夏間疏決之所蒙宥者, 率皆曾在朝班之人, 常漢、賤流全家徙邊之類, 多不得與焉。此輩積年流遷, 屢經大霈, 或放或移, 恐不害爲寬大之政。諸邑徙民, 饑餒最甚, 主客俱困, 若命刑官十分詳閱, 錄其中情或可原, 在配已久者, 就議大臣, 斯速疏釋, 亦可爲救民</p> |

| | | |
|--|--|---|
| | <p>하였으며, 끝에 말하기를,</p> <p>“여름의 소결(疏決)8818) 에서 사유(赦宥)를 입은 자는 모두 일찍이 조반(朝班)에 있던 사람이고, 상한(常漢)·천류(賤流)의 전가 사변(全家徙邊)의 무리는 많이 이에 참여함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들은 여러 해를 두고 유리 표박(遊離漂泊)하여서 여러 번 대사(大赦)를 거쳤으니, 혹 놓아주고 혹 옮겨 주어도 관대(寬大)한 정치에 해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 여러 고을의 사민(徙民)의 굶주림이 가장 심하여서 주객(主客)이 모두 곤궁하니, 만약 형관(刑官)에게 명하여 십분 상세하게 검열(檢閱)하여서, 그 가운데 정상(情狀)이 혹은 용서할 만하고 배소(配所)에 있는 지 이미 오래인 자를 기록하여, 대신(大臣)에게 나아가 의논하여서 소식(疏釋)케 하는 것도 또한 백성을 구제하는 일조(一助)가 될 수 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 내렸으나, 역노(驛奴)의 이속(吏屬)으로 승진하는 1관(款) 외에는 시행을 본 것이 없었다.</p> | <p>之一助。</p> <p>上下廟堂，驛奴陞吏一款外無見施者。</p> |
| <p>숙종 29권, 21년 (1695 을해 / 청 강희 (康熙) 34년) 11월 2 일(경신) 2번째기사</p> | <p>광주 부윤(廣州府尹) 박태순(朴泰淳)이 상소(上疏)하여, 본부(本府)의 군항미(軍餉米)의 대신으로 대두(大豆)와 소두(小豆)로 배납(倍納)을 허락하여, 명년 봄에 나누어 주고 가을을 기다려 본미(本米)로 환봉(還捧)하기를 청하고, 또 말하기를,</p> <p>“강도(江都)의 곡식은 비록 흩어도 모으기 쉽고, 남한(南漢)의 곡식은 이미 흩었으면 모으기 어려우니, 국가가 불행하여 곳집을 기울일 일이 있다면 또한 마땅히 먼저 그 모으기 쉬운 곳의 것을 흘리고, 반드시 어쩔 수 없는 연후에 모으기 어려운 곳의 것을 취하여 써야만 경영(經營)하여 저치(儲置)하는 본의(本意)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p> | <p>○廣州府尹朴泰淳上疏，請本府軍餉米之代，以大小豆，許令倍納，明春分給，待秋還捧本米，又言：</p> <p>江都之穀，雖散易聚，南漢之穀，既散難聚。 國家既不幸有傾困之事，亦當先散其易聚處，必不得已然後，乃可取用於難聚處，庶不失經營儲置之本意耳。</p> |

| | | |
|---|---|---|
| | <p>하고, 또 말하기를,</p> <p>“국가에서 본성(本城)을 설치함에, 그 백성을 모집(募集)하는 어려움을 생각하여, 타향(他鄉)에서 옮겨 들어오는 자에게는 신역(身役)을 면제하고, 또 전지백결(結)을 주어서 입거(入居)의 백성을 넉넉하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묘당(廟堂)에서 호수(戶數)가 너무 많음을 염려하여 그 모집하여 들이고 신역을 면제하는 법규(法規)를 정지하고 있는데, 만약 이산(離散)한 뒤에 호수가 매우 적어지면 반드시 다시 당초의 사목(事目)을 써서 모집하여 들이게 할 것입니다. 신(臣)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그 액수(額數)를 정하여 성 안의 모호(募戶)로 하여금 항상 1천에 차게 하고, 이것 외에는 제역(除役)8819) 과 복호(復戶)8820) 를 허락하지 않음을 길이 정식(定式)으로 한다면, 폐단없이 준행(遵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제(百濟)의 시조왕묘(始祖王廟)가 성 안에 있는데, 대개 이 성(城)을 경영하기 시작한 것이 본디 백제의 시조에서 나온 때문입니다. 묘정(廟庭)이 황무(荒蕪)하고 장벽(牆壁)이 퇴락(頽落)하였는데, 다만 한 빈호(貧戶)로 하여금 부역(賦役)을 면제하여서 수직(守直)케 하고 있으니, 또한 마땅히 몇 사람의 노비(奴婢)를 양급(量給)하여 그 췌소(灑掃)에 대비(對備)하고, 또 성 안의 군교(軍校)를 정하여 윤번(輪番)으로 수직(守直)케 함이 실로 마땅할 것입니다.”</p> <p>하였으니, 임금이 묘당에 내려 시행을 본 것이 많았다.</p> | <p>又曰：</p> <p>國家之設置本城也，慮其募民之難，他鄉移入者，除其身役，又給田百結，以贍入居之民。今者廟堂，爲慮戶數之猥多，停其募入除役之規，而若其離散之後，戶數尠少，則必須更用當初事目，以爲募入之地。臣愚以爲定其額數，令城中募戶，常滿一千，此外則不許除役、復戶，永爲定式，則可以無弊遵行矣。百濟始祖王廟，在於城中，蓋以此城經始，本出於濟祖也。廟庭荒蕪，墻壁頽落，只令一貧戶，蠲役守直。亦宜量給數口奴婢，備其灑掃，又定城中軍校，輪番守直，實爲得當矣。</p> <p>上下廟堂，多見施。</p> |
| <p>숙종 29권, 21년 (1695 을해 / 청 강희 (康熙) 34년) 11월 19</p> | <p>사수(死囚)를 초복(初覆)8831)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남구만(南九萬)이 전일에 차왜(差倭)가 받지 않은 쌀을 취하여 진자(賑資)에 쓰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 <p>○丁丑/初覆死囚。領議政南九萬，請以前日差倭所不受之米，取用於賑資，上曰：“此後彼無更推之事耶？”左議政</p> |

| | | |
|--------------------|--|--|
| <p>일(정축) 1번째기사</p> | <p>“이 뒤에 그가 다시 추심(推尋)하는 일이 없을까?”</p> <p>하니, 좌의정(左議政) 유상운(柳尙運)은 말하기를,</p> <p>“이 뒤에 비록 다시 준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이를 받을 리 없습니다.”</p> <p>하고, 이조 판서(吏曹判書) 윤지선(尹趾善)은 말하기를,</p> <p>“이미 차왜에게 준 물건을 다시 취하여 쓰는 것이 사체에 미안합니다.”</p> <p>하였다. 임금이 왕성(王城)의 명화적(明火賊)을 아직도 체포하지 못함을 가지고 명하여, 포도 대장(捕盜大將)을 추고(推考)하여서 기한을 정하여 체포케 하였다.【이 뒤로 끝내 체포함을 얻지 못하였다.】 이보다 앞서 남구만이 말하기를,</p> <p>“영남(嶺南)의 곡식은 북로(北路)로 이송(移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근래에 외방(外方)에서 조정의 명령을 봉행(奉行)하지 않는 자가 많으니, 마땅히 경관(京官)을 보내어 독운(督運)하여야 하며, 반드시 삼사(三司)안의 사람을 가려 보내야만 호령할 수 있으니, 청컨대, 독운관(督運官)을 이름으로 하여 보내소서.”</p> <p>하였다. 이조(吏曹)에서 박권(朴權)으로써 명에 응하도록 했는데, 교리(校理) 이익수(李益壽)는 경악(經幄)에 사람이 핏절(乏絶)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보내기를 청하니 임금이 비로소 이를 허락하였다가, 유상운이 또 여전히 박권을</p> | <p>柳尙運曰：“此後雖更給，彼決無受之之理矣。” 吏曹判書尹趾善曰：“既給差倭之物，更爲取用，事體未安矣。” 上以輦轂下明火賊，尙未捕捉，命推捕盜大將刻期捕捉。【是後終不得捕捉。】先是，南九萬以爲：“嶺南穀不可不移送北路，而近來外方，多不奉行朝令，宜送京官督運，而必擇送三司中人，可以號令。請以督運官爲號而遣之。” 吏曹以朴權應命，校理李益壽，以經幄乏人，請送他人，上始許之，柳尙運又請仍送權，上又從之。 大司諫宋昌、吏曹參判李奮皆言：“朝廷不能號令一藩臣，至於別送京官，事體未安。嶺民聞之，必將譁然駭動。” 上不從。 至是，九萬又言：“若以倭作米所減者及嶺南近海諸邑田稅，移給北路，則南民不至失望，亦可副北民望哺之情。此則雖不送督運官，監司亦可奉行。” 遂不遣。 初，李奮力陳外方營門，宜皆許鑄錢，以補賑資，廟堂執不許。 義城縣令李益著，素與南九萬親切，適因事上京言：“外方形勢，非鑄錢，則無以充償蠲減之代。” 九萬遂白上而許之。 奮聞之曰：“以備局堂</p> |
|--------------------|--|--|

| | | |
|--|--|---|
| | <p>보내기를 청하니 임금의 또 그대로 따랐다. 대사간(大司諫) 송창(宋昌)과 이조 참판(吏曹參判) 이여(李畬)가 모두 말하기를,</p> <p>“조정이 능히 한 번신(藩臣)을 호령하지 못하여서 별도로 경관을 보내기에 이르니, 사체(事體)가 미안합니다. 영남 백성이 이를 들으면, 반드시 장차 떠들썩하여 놀랄 것입니다.”</p> <p>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이에 이르러 남구만이 또 말하기를,</p> <p>“만약 왜(倭)의 작미(作米)를 감한 것과 영남 근해(近海)의 여러 고을의 전세(田稅)를 북로에 옮겨 준다면, 남쪽 백성이 실망(失望)하기에 이르지 않고, 또한 북쪽 백성의 먹여 주기를 바라는 뜻에 부응(副應)할 수 있으니, 이는 비록 독운관(督運官)을 보내지 않더라도 감사(監司)가 또한 봉행(奉行)할 수 있습니다.”</p> <p>하니, 드디어 <독운관을> 보내지 않았다. 처음에 이여가, 외방의 영문(營門)에 마땅히 모두 주전(鑄錢)을 허락하여서 진자(賑資)에 보충하기를 힘써 진달하였으나, 묘당에서 고집(固執)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의성 현령(義城縣令) 이익저(李益著)가 본디 남구만과 친절하였는데, 때마침 일로 인하여 서울에 올라왔다가 말하기를,</p> <p>“외방의 형세가 주전이 아니면 견감(蠲減)의 대가를 충상(充償)할 수 없다.”</p> <p>하니, 남구만이 드디어 임금께 여쭙어서 이를 허락하였다. 이여가 듣고 말하기를,</p> | <p>上，而廟堂之待之，反出於一縣令之下，若是而可以與聞國政耶？”云。</p> |
|--|--|---|

| | | |
|---|---|---|
| | <p>“비국(備局)의 당상(堂上)을 묘당에서 대우함이 도리어 한 현령(縣令) 밑에 나오니, 이와 같다면 국정(國政)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p> <p>하였다.</p> | |
| <p>숙종 29권, 21년 (1695 을해 / 청 강희 (康熙) 34년) 11월 30 일(무자) 1번째기사</p> | <p>황감(黃柑)을 반사(頒賜)하고 성균관(成均館)에서 시사(試士)하였는데, 진사(進士) 한영휘(韓永徽)가 수석(首席)을 차지하였으니, 직부 전시(直赴殿試)를 명하였다.</p> | <p>○戊子/頒柑，試士于成均館。進士韓永徽居首，命直赴殿試</p> |
| <p>숙종 29권, 21년 (1695 을해 / 청 강희 (康熙) 34년) 12월 1 일(기축) 1번째기사</p> | <p>병조 판서(兵曹判書) 서문중(徐文重)이 소(疏)를 올려 혜민국(惠民局)과 진흥청(賑恤廳)의 재곡(財穀)이 탕갈(蕩竭)된 상황을 진달하고, 더욱 공검(恭儉)을 닦을 것과 항상 절손(節損)을 더하기를 청하니, 임금(上)이 가상하게 여겨 장려하였다.</p> | <p>○朔己丑/兵曹判書徐文重，疏陳惠民局、賑恤廳財穀匱竭之狀，請益修恭儉，恒加節損，上嘉獎之。</p> |
| <p>숙종 29권, 21년 (1695 을해 / 청 강희 (康熙) 34년) 12월 10 일(무술) 6번째기사</p> | <p>옥당(玉堂)의 관원을 소대(召對)하였다. 시독관(侍讀官) 남정중(南正重)이 말하기를,</p> <p>“반궁(泮宮)8857) 에서 황감(黃柑)을 반사(頒賜)할 때에 사자(士子)의 무리가 분쟁(紛爭)하여 모두 흩었으니, 거조(舉措)가 매우 놀랍습니다. 이 뒤에 만일 이와 같은 해괴(駭怪)한 거조가 있다면, 나타나는 대로 적발(摘發)하여 유벌(儒罰)으로써 시행하지 말고 마땅히 유사(有司)에게 붙여 별양(別樣)으로 처치(處置)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 <p>○召對玉堂官。侍讀官南正重曰： “泮宮頒柑時，士子輩紛爭散盡，舉措甚可駭。此後如有如許怪舉，隨現摘發，勿以儒罰施之，宜付有司，別樣處之。”從之。</p> |
| <p>숙종 30권, 22년 (1696 병자 / 청 강희 (康熙) 35년) 1월 1일</p> | <p>장령(掌令) 조석주(趙錫周)가 상소(上疏)하기를,</p> <p>“고(故) 상신(相臣) 이단하(李端夏)는 나라와 백성을 근심하여, 번번이 곡식을</p> | <p>○掌令趙錫周上疏曰： 故相臣李端夏，憂國憂民，每以儲穀賑</p> |

| | | |
|--|---|--|
| <p>(무오) 5번째기사</p> | <p>저축해서 굶주린 자를 진구(賑救)할 것을 말하고, 마치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걱정이 눈앞에 닥쳐 있는 듯이 하였으니, 이제 와서 보면 선견(先見)과 원려(遠慮)가 있었다고 이를 만합니다. 그 곡식을 저축하는 방법은 사창(社倉)8881) 이고, 그 굶주린 자를 진구하는 방법은 솔잎인데, 사창은 수령(守令)이 게을리하고 받들어 거행하지 않아서 이름만 있고 실속이 없게 되었으나, 솔잎으로 말하면 지금 관가에는 옮길 만한 곡식이 없고 사가에는 먹을 만한 물건이 없으므로, 바로 올해 힘을 얻기에 합당하니, 진청(賑廳)8882)에 명하여 그때의 사목(事目)을 가져다가 상고하여 열읍(列邑)에 반포하게 하소서. 도둑을 막는 일에 이르러서는 참으로 좋은 방법이 없으나,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각방(各坊) 각면(各面)에 다 동서 남북의 길이 있어 한 방에서 네 길을 나누었으니, 무릇 도둑의 걱정이 있는 데에서는 각각 맡은 길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거나 그 뒤를 밟기도 하며, 편호(編戶) 가운데 사대부(士大夫)도 있으니 주관(主管)하여 수령에게 알리게 하면, 혹 도둑을 막는 한가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p> <p>하였는데, 이 일을 진청·병조(兵曹)에 내리자, 모두 이에 따라 알려져 신칙(申飭)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p> | <p>飢爲言，常若饑饉之患，迫在目前。以今觀之，可謂有先見遠慮矣。其儲穀之策則曰社倉也，其賑飢之術則曰松葉也，社倉則守令慢不奉行，歸於有名無實，若其松葉，即今公無可移之粟，私無可食之物，正合今年得力也。乞命賑廳，取考其時事目，頒布列邑，而至如防禁盜賊，實無善策。臣愚以爲各坊、各面，皆有東西南北之路，就一坊分四道，凡有賊患，各從所主之道，或要其歸，或跟其後，編戶之中，亦有士夫，使之主管，報知邑宰，則或爲止盜之一助。</p> <p>事下賑廳、兵曹，俱請依此知委申飭，允之。</p> |
| <p>숙종 30권, 22년 (1696 병자 / 청 강희 (康熙) 35년) 1월 19 일(병자) 4번째기사</p> | <p>진휼청(賑恤廳)에서 굶주린 백성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설죽소(設粥所)를 동대문 밖에 더 설치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p> | <p>○賑恤廳以飢民多聚，請加設粥所於東大門外，允之。</p> |
| <p>숙종 30권, 22년 (1696 병자 / 청 강희 (康熙) 35년) 1월 23 일(경진) 2번째기사</p> |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남구만(南九萬)이 강도(江都)8912)의 쌀을 평안도에 1만 석(石), 황해도에 5천 석을 주고, 경기에는 강도와 남한(南漢)의 쌀을 합하여 1만 석을 나누어 주고, 강원도에는 충주(忠州) 양진창(楊津倉)의 쌀 2천 석을 주고, 산협(山峽)에</p> | <p>○引見大臣、備局諸臣。領議政南九萬，請給江都米於平安道一萬石、黃海道五千石，京畿分給江都、南漢米合一萬石，江原道給忠州楊津倉米二千石，</p> |

| | | |
|--|--|---|
| | <p>있는 네 고을과 개성부(開城府)에는 각각 강도의 쌀 4백 석을 주어서 진구(賑救)에 쓰게 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민진장(閔鎭長)이 전가 죄인(全家罪人)을 소석(疏釋)하는 것이 마땅하겠는지를 여쭙니, 임금이 남구만에게 물었는데, 남구만이 말하기를,</p> <p>“국초(國初)에 변방(邊方)을 충실하게 할 계획으로 전가 사변(全家徙邊)8913) 한 무리는 영구히 그 곳의 백성이 되게 하였으니, 사유(赦宥)로 인하여 놓아 주어 돌려보내는 규례가 없는데, 이제 문득 폐지한다면 어찌 조종(祖宗)께서 법을 만드신 본의에 맞겠습니까? 근년에 평안 감사(平安監司)가 재해 때문에 도내의 조금 곡식이 여문 고을로 옮기기를 청하였는데, 이미 윤희하였으니, 함경도도 이대로 함이 마땅합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 남구만이 또 말하기를,</p> <p>“지난날 유신(儒臣)이 고(故) 병사(兵使) 이제신(李濟臣)·고(故) 지평(持平) 임숙영(任叔英)에게 다 시호(諡號)를 내리도록 명하시기를 진달(陳達)하였는데, 두 사람의 청조(淸操)·절행(節行)은 참으로 일대(一代)에서 매우 칭찬하나, 시호는 선인(善人)을 위하여 베풀 뿐 아니라 선악(善惡)에 다 시호가 있으니, 반드시 정2품(正二品)의 실직(實職)을 지내야 시호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종(儒宗)과 순절(殉節)한 자에게는 특별히 시호를 내리되, 그 밖에 문장(文章)·절행(節行)이 있는 자에게 시호를 내렸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외(法外)에 관계되므로 시초의 폐단이 참으로 염려스러우니, 그 명을 모두 도로 거두셔야 마땅합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 <p>峽中四邑及開城府各給江都米四百石，以爲賑救之用，從之。刑曹判書閔鎭長，以全家罪人疏釋當否仰稟，上問九萬，九萬曰：“國初爲實邊之計，全家徙邊之類，永爲其地之民，則無因赦放還之規。今若遽廢，豈祖宗設法之本意？頃年平安監司，以被災請移道內稍實之邑，旣已許之，咸鏡道亦宜依此爲之。”從之。九萬又陳：“向日儒臣陳達故兵使李濟臣、故持平任叔英，俱命賜諡。兩人淸操、節行，誠爲一代艷稱，而但諡非但爲善人設也，善惡皆有諡，必曾經正二品實職然後，方許賜諡。然儒宗及殉節者，則別爲賜諡，其他有文章、節行者，未聞有贈諡者。此係法外，濫觴之弊，誠爲可慮，宜竝還收其命。”從之。</p> |
|--|--|---|

| | | |
|--|---|--|
| <p>숙종 30권, 22년 (1696 병자 / 청 강희 (康熙) 35년) 1월 25 일(임오) 2번째기사</p> | <p>전교(傳敎)하기를, “설죽소(設粥所)에 지난번 별감(別監)을 보내어 굶주린 백성이 먹는 죽을 가져오게 하였더니, 홉수(合數)가 자못 넉넉하고 쌀알이 많았는데, 시종 이러한 지 보려고 또 가져오게 하였더니, 홉수가 전보다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쌀알도 매우 드물었다. 이렇게 하여 그치지 않으면 설죽의 본의에 매우 어그러지고, 굶주린 백성이 결코 이에 힘입어 살리가 없을 것이니, 동서의 설죽소에 이 뜻으로 각별히 신칙(申飭)하도록 하라.” 하였다.</p> | <p>○傳曰：“設粥所，頃送別監，持來飢民所喫之粥，合數頗優，米粒稠厚矣，欲觀終始之如何，又令持來，則非但合數大不及於前，米粒亦甚稀淡。若此不已，殊非設粥本意，飢民決無賴此生活之理。東西設粥所，以此意各別申飭。”</p> |
| <p>숙종 30권, 22년 (1696 병자 / 청 강희 (康熙) 35년) 2월 3일 (기축) 1번째기사</p> |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남구만(南九萬)이 말하기를, “전라도 열 고을의 수령(守令)이 재황(災荒)이 더욱 심한 것으로써 연명(聯名)으로 상소하여, 전세미(田稅米)를 모두 면포(綿布)로 환작(換作)하여 가을이 되거든 바치게 하기를 청하였는데, 조정에서 이미 급재(給災)8921) 하고, 또 세액(稅額)의 반을 줄였으므로 다시 줄이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나, 민간에 매우 급박한 사정이 있음도 생각지 않을 수 없으니, 모두 허가하여야 마땅합니다. 또 열 고을 이외에 남원(南原)·창평(昌平)·옥과(玉果) 같은 곳도 재상(災傷)을 입은 것이 열 고을과 다를 바 없으나, 듣건대 그 수령이 유고(有故)하여 연명하지 못하였다 하니, 마찬가지로 허가하여야 마땅할 듯합니다. 다만 운봉(雲峰)은 이미 죄다 줄이도록 허가하였는데, 현감(縣監) 맹양호(孟養浩)도 연명하였습니다. 직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이러하므로, 진정(賑政)을 맡기기 어려워 그대로 둘 수 없을 듯하나, 지금 영송(迎送)하는 것은 폐단이 있으니, 우선 종종 추고(從重推考)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 <p>○己丑/引見大臣、備局諸臣。領議政南九萬曰：“全羅道十邑守令，聯名上疏，以災荒尤甚，請以田稅米，並作綿布，待秋上納。朝家既已給災，又減稅一半，不當復減，而民間有燃眉之急，亦不可不念，並宜許之。且十邑之外，如南原、昌平、玉果被災，與十邑無異，而聞其守令有故，不得聯名云。似當一體許之。但雲峰則已許盡減，而縣監孟養浩，亦爲聯名。尸居如此，難責賑政，似不可仍置，而此時迎送有弊，姑先從重推考何如？”上曰：“諸邑所請，並許之。雲峰宜罷，而姑爲從重推考。【十邑，錦山、淳昌、龍潭、高山、珍山、任實、鎮</p> |

| | | |
|--|---|--|
| |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제읍(諸邑)에서 청한 것을 모두 허가하라. 운봉은 파직하여야 하겠으나, 우선 종종 추고하라.”</p> <p>하였다. 【열 고을은 금산(錦山)·순창(淳昌)·용담(龍潭)·고산(高山)·진산(珍山)·임실(任實)·진안(鎭安)·장수(長水)·동복(同福) 및 운봉(雲峰)이다.】 남구만이 또 이조 판서(吏曹判書) 윤지선(尹趾善)을 갈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이때 윤지선이, 유생(儒生)이 상소하여 배척한 일 때문에 오래도록 인퇴(引退)한 채 나오지 않아서 대정(大政)이 점점 늦추어져 가므로, 남구만이 아뢰어 갈게 된 것이다. 이때 도성(都城) 안에 명화적(明火賊)이 일어났는데도 아직 잡지 못하였으므로, 남구만이 좌포도 대장(左捕盜大將)·우포도 대장(右捕盜大將)을 추고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p> <p>“기전(畿甸)8922 은 넉넉히 구휼(救恤)하여야 마땅하니, 호조(戶曹)·선혜청(宣惠廳)의 돈으로 부족한 곡물의 수를 대급(代給)하여 씨앗을 사서 쓰는 밑거리로 삼게 하소서.”</p> <p>하니, 윤허하였다. 남구만이 전 응교(應教) 김진규(金鎭圭)를 서용하라는 명이 오래도록 내리지 않은 것은, 온당하지 않다 하여 거두어 서용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들어 주지 않았다. 또 강민저(姜敏著)를 사유(赦宥)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는 더욱 거론할 수 없다.”</p> | <p>安、長水、同福及雲峯也。】 九萬又請遞吏曹判書尹趾善，允之。時，趾善以儒生疏斥，久引入不出，大政漸至遷就，故九萬啓遞。是時都城中明火賊竊發，而尚未跟捕，九萬請推考左、右捕盜大將，允之。左議政柳尙運言：“畿甸理宜優恤。請以戶曹、宣惠廳錢文，代給穀物不足之數，以爲貿用種子之地。”允之。九萬以前應教金鎭圭之久斬絞命，爲不安，請收斂，上不聽。又請宥姜敏著，上曰：“此則尤不可舉論矣。”</p> |
|--|---|--|

| | | |
|--|--|---|
| | 하였다. | |
| 숙종 30권, 22년 (1696 병자 / 청 강희 (康熙) 35년) 2월 20 일(병오) 2번째기사 |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심평(沈枰)이 말하기를,</p> <p>“상주(尙州)의 사인(士人) 유성우(柳盛雨)는 관가에 곡식을 많이 바쳐서 진구(賑救)에 보탬이니, 마땅히 등용하여 다른 백성을 권장하소서.”</p> <p>하니, 윤허하였다. 이때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고을에서 진구를 많이 베풀었는데, 상인(商人)을 시켜 곡식을 들여오는 것을 허가하여, 서인(庶人)에게는 자급(資級)을 주고 사족(士族)에게는 이따금 정직(正職)을 제수(除授)하기도 하니, 심평이 상주목(尙州牧)에서 체임(遞任)되어 고을 사람을 베풀시키려고 이 청을 한 것이다. 제도(諸道)의 방백(方伯)도 곡식을 바친 자를 전후 열 두어 번 장문(狀聞)하여 풍도가 넉넉한 사람에게 베풀을 제수하기를 청하였으니, 관서(關西)의 김후징(金厚徵)과 해서(海西)의 김효흥(金孝興) 등이 다 일명(一命)8938 을 받아 전야(田野)에서 일어나 조정(朝廷)의 반열(班列)에 끼었다. 서인으로서 자급을 받은 자는 더욱 많아서, 농부·목자(牧子)로서 옥관자(玉冠子)를 달고 붉은 띠를 띤 자가 길에 두루 찼다. 조정의 의논이 구황(救荒)하는 데에 급하다 하나, 식자(識者)는 명기(名器)가 날로 가벼워지는 것을 근심하였다.</p> | ○御晝講。參贊官沈枰言：“尙州士人柳盛雨，多納粟官家以補賑。宜加調用，以勸他民。”允之。時國大饑，郡邑多設賑，許令商人入粟，庶人與之資級，士族往往除正職。枰新遞尙州牧，欲官邑人，有是請。諸道方伯，亦以納粟者狀聞，前後十數，請除官風富人。關西之金厚徵、海西之金孝興等，皆得霑一命，起身田野，廁之朝班。其庶人得資級者尤衆，耕夫、牧子，鬢玉帶絳，遍滿於街路。朝議雖急於救荒，識者憂名器之日輕。 |
| 숙종 30권, 22년 (1696 병자 / 청 강희 (康熙) 35년) 2월 29 일(을묘) 1번째기사 |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남구만(南九萬)이 말하기를,</p> <p>“전에 경기에 쌀 1만 석을 주었으나, 그 급한 것을 구제하기에 부족하니, 1만 석을 더 주어야 하겠습니다.”</p> | ○乙卯/引見大臣、備局諸臣。領議政南九萬言：“前給畿甸米一萬石，不足以濟其急，宜加給一萬石。”許之。九萬曰：“故監司李端錫，有苦節，臣已請施愍典。故判書朴長遠、故監司 |

| | | |
|--|---|--|
| | <p>하니, 윤희하였다. 남구만이 말하기를,</p> <p>“고(故) 감사(監司) 이단석(李端錫)은 고절(苦節)이 있었으므로, 신(臣)이 이미 청하여 민전(愍典)을 베풀었습니다. 고 판서(判書) 박장원(朴長遠)·고 감사姜유후(姜裕後)는 청조(淸操)가 있었는데, 자손이 다 관록(官祿)이 있으니 이제 베풀 만한 은혜가 없습니다. 고 판서 남선(南銑)·고 장령(掌令) 조극선(趙克善)·고 수사(水使) 양칙(梁弼)·고 부제학(副提學) 조지겸(趙持謙)·고 집의(執義) 한태동(韓泰東) 같은 사람은 다 청검(淸儉)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이제 그 처자가 곤궁하여 굶주림을 면하지 못하므로 또한 돌보아야 하겠으니, 이단석의 예(例)에 따라 관가에서 그 처자를 찾아서 돌보아 구제하고, 이단석과 남선 등의 친아들 중에 일명(一命)을 제수할 만한 자가 있으면, 또한 찾아서 등용하여야 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민진장(閔鎭長)이 말하기를,</p> <p>“사사로이 돈을 주조(鑄造)한 자는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가리지 않고 다 사죄(死罪)로 논하는데, 접주인(接主人)8949) 에 대하여만 그 율(律)을 정하지 않았으니, 이제 이를 정하여야 마땅합니다.”</p> <p>하고, 남구만 등이 다 말하기를,</p> <p>“죄에 경중이 없으니, 그 율을 같이 하여야 마땅합니다.”</p> | <p>姜裕後，有淸操，而子孫皆有官祿，今無可施之惠。 如故判書南銑、故掌令趙克善、故水使梁弼、故副提學趙持謙、故執義韓泰東，皆以淸儉著聞，今其妻子不免窮餓，亦宜周恤，請依端錫例，自官訪問其妻兒周救，而端錫與銑等親子，如有可除一命者，亦宜訪問調用。” 上從之。 刑曹判書閔鎭長曰：“私鑄錢者，不分首從，皆以死論，而獨於接主人，未定其律，今宜定之。” 九萬等皆以爲：“罪無輕重，宜同其律。” 上命竝論以死律。 鎭長又請：“私鑄未成者，依刼奸、強盜未成者例，降其律。” 九萬曰：“刼奸則女人在，強盜則贓物在，其罪犯之成不成，皆有憑核之道，此則雖鑄成千貫，見發之後，卽云我未及鑄成云爾，則爐冶不能言，更無憑證核實之道，此而減等，私鑄終無伏法者矣。” 諸臣言多異同，上曰：“此當審慎，可問他大臣議定。” 大司成崔奎瑞曰：“見今饑民，皆蒙賑濟，禮待之臣，尤當存恤。 如尹拯、朴世堂，皆不受祿俸，宜周其窮急。” 上從之。 應教沈權曰：“丁時翰之疏，殊極無狀。 其疏以兩賢臣理氣之說，</p> |
|--|---|--|

| | | |
|--|---|--|
| | <p>하니, 임금이 사율(死律)로 논하라고 명하였다. 민진장이 또 청하기를,</p> <p>“사사로이 주조하려다가 이루지 못한 자는, 겁간(劫奸)이나 강도(強盜)를 하려다가 이루지 못한 자의 예에 따라 그 율을 낮추소서.”</p> <p>하고, 남구만이 말하기를,</p> <p>“겁간에는 여인이 있고 강도에는 장물(贓物)이 있으므로, 그 죄범(罪犯)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다 증빙하여 핵실(核實)할 방도가 있으나, 이것은 1천 관(貫)을 주조하였더라도 발견된 뒤에, ‘나는 미처 주조하지 아니하였다.’ 한다면, 노야(爐冶)는 말하지 못하므로 다시 증빙하여 핵실할 방도가 없을 것인데, 이러하여도 감등(減等)한다면, 사사로이 주조하고도 끝내 처형될 자가 없을 것입니다.”</p> <p>하고, 제신(諸臣)의 말에도 이동(異同)이 많으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것은 심밀(審密)하고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이니, 다른 대신에게 물어서 의논하여 정하도록 하라.”</p> <p>하였다. 대사성(大司成) 최규서(崔奎瑞)가 말하기를,</p> <p>“지금 굶주린 백성이 다 구제받으니, 예대(禮待)하는 신하는 더욱 존홀(存恤)해야 합니다. 윤증(尹拯)·박세당(朴世堂) 같은 사람은 다 녹봉(祿俸)을 받지 않으니, 그 궁급(窮急)을 돌보아야 하겠습니까.”</p> | <p>與文純公李滉不同，謂不合於從祀。前古儒賢，於先賢所論，意見或有參差，隨其所見，著書立論，自不害於發前人未發之義，何嘗以此爲罪？至於先正臣宋時烈，以執拗不正，斥之。時烈之德性、學力，上所洞燭，言之無據，胡至於此？此尤聖上不可不痛斥者矣。” 上曰：“時翰之疏，誠極無狀，儒臣所達，尤爲明白矣。”</p> |
|--|---|--|

| | | |
|--|--|--|
| | <p>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 응교(應敎) 심권(沈權)이 말하기를,</p> <p>“정시한(丁時翰)의 소(疏)는 매우 무상(無狀)합니다. 그 소에서 두 현신(賢臣)의 이기(理氣)의 설(說)이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과 같지 않다 하여 종사(從祀)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옛 유현(儒賢)은 선현(先賢)이 논한 것에 대하여 의견이 혹 차이나는 것이 있으면, 그 소견에 따라 글을 지어 논의를 세워도 본디 전인(前人)이 나타내지 못한 것을 나타낸다는 의리에 해롭지 않으니, 어찌 일찍이 이로써 죄로 삼은 적이 있었습니까?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에 이르러서는 집요하고 부정하다고 배척하였으나, 송시열의 덕성(德性)과 학력(學力)은 성상께서 환히 아시는 바인데, 말이 근거 없는 것이 어찌 이토록 심합니까? 이것은 더욱 성상께서 더욱 준절히 배척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정시한의 소는 참으로 지극히 무상(無狀)하니, 유신(儒臣)이 아뢰는 것이 더욱 명백하다.”</p> <p>하였다.</p> | |
| <p>숙종 30권, 22년 (1696 병자 / 청 강희(康熙) 35년) 3월 12일(무진) 2번째기사</p> | <p>이때 백성의 굶주림이 날로 급하여져서 서울과 각 고을에서 다 설진(設賑)하여 구제하였는데, 먹으러 오는 자가 날로 늘어나 서울은 1만 명이 넘고 팔도는 각각 수만 명이며, 영남(嶺南)에서 신보(申報)한 것은 56만여 인에 이르렀으며, 죽은 것은 전후에 모두 수만 인이었다.</p> | <p>○時民飢日急，京師及郡縣，皆設賑以濟之，就哺者日增，京師過萬，八道各累萬，嶺南所報，至五十六萬餘人，死亡前後凡數萬人。</p> |
| <p>숙종 30권, 22년</p> | <p>영의정(領議政) 남구만(南九萬)이 약방(藥房)8961) 의 일 때문에 입시(入侍)하</p> | <p>○辛未/領議政南九萬，因藥房入侍言：</p> |

| | | |
|--|--|--|
| <p>(1696 병자 / 청 강희 (康熙) 35년) 3월 15 일(신미) 1번째기사</p> | <p>였다가 말하기를, “경기 백성은 곤궁이 날로 심하여지는데다가 또 농사철을 당하였으므로, 빨리 곡식을 다시 주어 파종(播種)을 도와야 하겠으니, 진청(賑廳)의 조(租) 1만 석과 광주(廣州)의 군저(軍儲) 1천여 석을 경기 고을에 나누어 주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p> | <p>“畿民窮乏日甚，而又當東作之時，亟宜復給穀粟，助之播種。請以賑廳租一萬石、廣州軍儲千餘石，分于畿邑。”上允之。</p> |
| <p>숙종 30권, 22년 (1696 병자 / 청 강희 (康熙) 35년) 3월 23 일(기묘) 1번째기사</p> | <p>비변사(備邊司)에서 진청(賑廳)에 획급(劃給)한 강도(江都)의 쌀 1만 석에서 2천 석을 덜어 내어, 용천(龍川)·철산(鐵山)·선천(宣川)·곽산(郭山) 네 고을에 각각 5백 석씩 주어, 보리가 나기 전의 진휼(賑恤)을 이어 갈 밀거리로 삼게 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때 팔도의 기근은 대저 같았으나 관서(關西)가 더욱 심하였고, 관서 지방 안에서도 네 고을의 흉재(凶災)가 가장 혹독하였는데, 돌아오는 사신(使臣)이 지나는 길에서 본 것을 전에 연석(筵席)에서 아뢰었으므로, 묘당(廟堂)의 이러한 품계(稟啓)가 있었던 것이다.</p> | <p>○己卯/備邊司請以江都米一萬石，劃給賑廳者，除出二千石，各給五百石於龍、鐵、宣、郭四邑，以爲麥前繼賑之資，從之。時，八路飢饉，大抵同然，而關西爲尤甚，關西一方之內，四邑凶災最酷，回還使臣，以經塗所觀，前已陳達於筵席，故廟堂有此稟啓矣。</p> |
| <p>숙종 30권, 22년 (1696 병자 / 청 강희 (康熙) 35년) 4월 18 일(계묘) 3번째기사</p> | <p>황해 관찰사(黃海觀察使) 이징명(李徵明)의 장계(狀啓)에 따라, 비변사(備邊司)에서 강도(江都)의 쌀 2천 석과 콩 1천 석을 본도(本道)에 획급(劃給)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p> | <p>○以黃海觀察使李徵明狀啓，備邊司請以江都米二千石、大豆一千石，劃給本道，允之。</p> |
| <p>숙종 30권, 22년 (1696 병자 / 청 강희 (康熙) 35년) 5월 19 일(갑술) 1번째기사</p> | <p>왕세자(王世子)의 가례(嘉禮)가 있었다.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초례(醮禮)를 거행하였다. 책빈례(冊嬪禮)·초례·친영 동리의(親迎同牢儀)부터 빈조현의(嬪朝見儀)·외선온의(外宣醞儀)까지 다 한결같이 《오례의(五禮儀)》의 구의(舊儀)대로 하였다.</p> | <p>○甲戌/王世子嘉禮。上御仁政殿，行醮禮。自冊嬪禮、醮禮、親迎同牢儀，至嬪朝見儀、外宣醞儀，皆一依《五禮儀》舊儀。</p> |
| <p>숙종 30권, 22년 (1696 병자 / 청 강희</p> | <p>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백관(百官)의 하례(賀禮)를 받고, 사유(赦宥)를 반포하고, 중외(中外)의 대소 신료(大小臣僚)에게 하교(下敎)하였는데, 그</p> | <p>○上御仁政殿，受百官賀，頒赦，敎中外大小臣僚。其文曰：</p> |

(康熙) 35년) 5월 20
일(을해) 2번째기사

글에 이르기를,

“지위는 이미 세자(世子)를 미리 세우는 데에 정하여졌으니, 방명(邦命)이 터잡은 것이요, 예(禮)는 친영(親迎)보다 중한 것이 없으니 인륜이 비롯한 것이다. 이에 포고하는 뜻을 펴서 기뻐하는 마음을 보인다. 나를 생각하면 어진 후사(後嗣)를 늦게 얻었고, 장부(丈夫)가 나서 아내를 갖기 바라는 것은 진실로 부모의 지극한 뜻이요, 여자가 시집와서 집안을 화평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천지의 큰 의리이니, 반드시 그윽하고 고요한 아름다운 덕(德)을 힘써서 부탁하는 깊은 근심을 늦추어야 할 것이다. 왕세자빈(王世子嬪) 심씨(沈氏)는 아름다운 바탕이 천제(天帝)의 누이에 견줄 수 있고, 꽃다운 명성이 대대로 이어 오며 의로운 법도와 아름다운 가르침이 근래 이름난 재상의 집에 전하고, 모범이 되는 바탕과 아름다운 조짐이 일찍부터 원귀(元龜)8979)의 점[卜]에 맞으니, 이에 합근(合窹)8980)의 성례(盛禮)를 올려 종묘(宗廟)의 제사를 맡는 세자를 돕게 한다.

하루에 세 번 문안하여 애연(藹然)히 화기(和氣)가 모두 모이고, 자손 백대에 분명히 보록(寶籙)8981)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니, 아름다움은 사방과 함께 기쁨을 같이할 것이요, 참으로 한 사람의 사사로운 기쁨이 아니다. 이미 이해 5월 19일에 길일(吉日)을 가려 의례(儀禮)를 갖추어서 왕세자의 가례(嘉禮)를 거행하였으니, 이달 19일 매상(昧爽)이전부터 사죄(死罪) 이하의 잡범(雜犯)을 모두 용서하며, 벼슬에 있는 자는 각각 한 자급(資給)을 올리되 자궁(資窮)8982) 한 자는 대가(代加)8983) 한다.

아! 집안부터 나라까지 반드시 인지(麟趾)8984)가 관저(關雎)8985)에 응하여 복록(福祿)을 거두어 이 백성에 내리려고 힘쓰면, 홍범(洪範)8986)의 황

位已定於豫建，邦命所基；禮莫重於親迎，人倫攸始。茲申播告之旨，庸示欣慶之懷。言念眇躬，晚得賢嗣。丈夫生而願有室，固是父母之至情；之子歸而宜其家，實惟天地之大義。必求幽閑之令德，可寬付託之深憂。王世子嬪沈氏，美質倪天，芳聲奕世。義方嘉訓，近傳名弼之門；法相休徵，早協元龜之卜。爰修合窹之盛禮，俾相主鬯之宗儲。定省三朝，藹然和氣之竝集；本支百世，昭哉寶籙之方綿。嘉與四方而同歡，諒非一人之私喜。已於本年五月十九日，涓吉備儀，行王世子嘉禮。自本月十九日昧爽已前，雜犯死罪以下，咸宥除之，在官者各加一資，資窮者代加。於戲！自閨門而達于國，窮期《麟趾》之應《關雎》；斂福祿而錫斯民，庶追《洪範》之建皇極。共圖更新之化，咸歸竝生之仁。故茲教示，想宜知悉。

| | | |
|--|---|---|
| | <p>극(皇極)을 세운 데에 거의 미치게 되어, 함께 경신(更新)하는 교화를 도모하여 모두 함께 사는 인(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교시(敎示)하니, 잘 알아야 할 것이다.”</p> <p>하였다.</p> | |
| <p>숙종 30권, 22년 (1696 병자 / 청 강희 (康熙) 35년) 10월 13일(병신) 2번째기사</p> |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윤지선(尹趾善)이 말하기를,</p> <p>“안용복(安龍福)의 일을 외방(外方)에 있는 대신에게 물었더니, 영돈녕(領敦寧) 윤지완(尹趾完)은 말하기를, ‘안용복은 사사로이 다른 나라에 가서 외람되게 나라의 일을 말하였는데, 그가 혹 조정(朝廷)에서 시킨 것처럼 하였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니, 그 죄를 논하면 마땅히 죽여야 하는 데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단지 대마도(對馬島) 사람이 전부터 속여 온 것은 우리 나라에서 강호(江戶)와 교통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이제 다른 길이 따로 있는 것을 알았으니, 반드시 크게 두려움이 생길 것이나, 안용복이 주살(誅殺)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또 그 길이 영구히 막힌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안용복을 죽이는 것이 법으로는 옳겠지만 계책으로는 그릇된 것이므로, 법을 폐기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不可)하나 계책을 잃는 것도 아까운데, 대마도에 통보하고 왜관(倭館) 밖에 효시(梟示)하여 교활한 왜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데 이르러서는 스스로 손상하는 데로 돌아가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영부사(領府事) 남구만(南九萬)은 말하기를, ‘안용복이 계유년(9067)에 울릉도(鬱陵島)에 갔다가 왜인에게 잡혀 백기주(伯耆州)에 들어갔더니, 본주(本州)에서 울릉도는 영구히 조선에 속한다는 공문(公文)을 만들어 주고 증물(贈物)도 많았는데, 대마도를 거쳐서 나오는 길에 공문과 증물을 죄다 대마도 사람에게 빼앗겼다 하나, 그 말을 반드시 믿을 만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p> | <p>○己丑/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南九萬曰：“全羅道十邑守令，聯名上疏，以災荒尤甚，請以田稅米，竝作綿布，待秋上納。 朝家既已給災，又減稅一半，不當復減，而民間有燃眉之急，亦不可不念，竝宜許之。 且十邑之外，如南原、昌平、玉果被災，與十邑無異，而聞其守令有故，不得聯名云。 似當一體許之。 但雲峰則已許盡滅，而縣監孟養浩，亦爲聯名。 尸居如此，難責賑政，似不可仍置，而此時迎送有弊，姑先從重推考何如？” 上曰：“諸邑所請，竝許之。 雲峰宜罷，而姑爲從重推考。 【十邑， 錦山、淳昌、龍潭、高山、珍山、任實、鎮安、長水、同福及雲峯也。】 九萬又請遞吏曹判書尹趾善，允之。 時，趾善以儒生疏斥，久引入不出，大政漸至遷就，故九萬啓遞。 是時都城中明火賊竊發，而尚未跟捕，九萬請推考左、</p> |

마는, 이제 안용복이 다시 백기주에 가서 정문(呈文)한 것을 보면 전의 말이 사실인 듯합니다. 안용복이 금령(禁令)을 무릅쓰고 다시 가서 사단(事端)을 일으킨 죄는 진실로 주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마도의 왜인이 울릉도를 죽도(竹島)라 거짓 칭하고, 강호의 명이라 거짓으로 핑계대어 우리 나라에서 사람들이 울릉도에 왕래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려고 중간에서 속여 농간을 부린 정상이 이제 안용복 때문에 죄다 드러났으니, 이것은 또한 하나의 쾌사(快事)입니다. 안용복에게 죄가 있고 없는 것과 죽여야 하고 죽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천천히 의논하여 처치할 것이고, 대마도에 주는 쌀·베·종이를 줄이는 자질구레한 일은 다 거론하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나, 울릉도를 변환(變幻)하고 속인 정상에 관계되는 일에 이르러서는 이 기회로 인하여 동래부(東萊府)로 하여금 대마도에 글을 보내어 조목으로 열거하여 힐문해서 명확하게 분별하여 매우 배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들이 만약에 다시 교묘히 꾸며서 승복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에서 또 글을 보내어 묻기를, 「너희가 두 나라 사이에 있으면서 모든 일에 이렇게 신의가 없으니, 안용복이 풍랑에 표류한 잔약(殘弱)한 백성으로서 국서(國書)가 없이 스스로 정문(呈文)한 것은 진실로 믿을 수 없으므로, 조정에서 따로 사신(使臣)을 일본에 보내어 그 허실(虛實)을 살피게 하려는데, 너희는 장차 어떻게 처치하겠는가?」 하면, 대마도의 왜인이 반드시 크게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뒤에 안용복의 죄를 우리 나라에서 그 경중을 의논하여 처치하고, 울릉도의 일은 왜인이 감히 다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면, 교활한 왜인이 시험하여 보려는 생각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상책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또한 동래부로 하여금 도주(島主)에게 글을 보내어 먼저 안용복이 마음대로 정문한 죄를 말하고, 다시 본도(本島)에서 죽더라고 거짓 칭한 잘못을 말하되, 이치를 가려서 타이르고 자세히 조사(措辭)하고서 그 회답을 기다란 뒤에 처치하는 것이 옳겠고, 안용복을 단죄(斷罪)한다는 뜻은 결코 서계(書契) 가운

右捕盜大將，允之。 左議政柳尙運言：“畿甸理宜優恤。 請以戶曹、宣惠廳錢文，代給穀物不足之數，以爲質用種子之地。” 允之。 九萬以前應教金鎮圭之久靳敍命，爲不安，請收斂，上不聽。 又請宥姜敏著，上曰：“此則尤不可舉論矣。”

| | | |
|--|--|--|
| | <p>데에 말하여서는 안되니, 이것이 중책(中策)입니다. 대마도에서 간사한 술책으로 우리를 속인 정상은 힐문하지 않고서 버려두고, 안용복이 정문하여 변정(辨正)한 죄는 먼저 논하여 죽인다면, 도주의 원한을 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약한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도주의 뜻은, 속으로는 원한을 풀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더라도 겉으로는 반드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감사해 하지 않을 것이니, 이 뒤로 모든 일에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안용복의 일을 핑계거리로 삼아 우리 나라를 모욕하고 헐뜯는 말의 근본을 삼고 오래지 않아 울릉도의 일로 말을 고집하여 잇달아 차인(差人)을 보낼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것은 하책(下策)일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외방에 있는 대신의 뜻은 다 안용복을 죽이는 것을 옳지 않다 하나, 남구만의 상책은 쉽사리 의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용복을 죄주지 않고 오로지 대마도를 꾸짖으면, 마치 국가에서 시킨 것인 듯할 것이니, 안용복·이인성(李仁成)은 우선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가 수상(首相)이 출사(出仕)하기를 기다린 뒤에 처치하고, 그 나머지 위협 때문에 따른 자는 이미 살리는 의논에 붙었으니, 먼저 석방하여야 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영상(領相)이 출사한 뒤에 상의하여 품처(稟處)하고, 사람들은 먼저 놓아 보내도록 하라.”</p> <p>하였다. 지사(知事) 신여철(申汝哲)이 말하기를,</p> <p>“안용복의 일은 매우 놀랍기는 하나, 국가에서 못하는 일을 그가 능히 하였으므로 공로와 죄과가 서로 덮을 만하니, 일죄(一罪)9068) 로 결단할 수 없겠습</p> | |
|--|--|--|

| | | |
|--|--|--|
| | <p>니다.”</p> <p>하고, 윤지선이 말하기를,</p> <p>“안용복을 죽이지 않으면, 말세(末世)의 간사한 백성 중에 반드시 다른 나라에서 일을 일으키는 자가 많아질 것이니, 어찌 죽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영상이 출사한 뒤에 처치하라.”</p> <p>하였다. 윤지선이 패선(敗船)의 쌀을 해변 고을에 나누어 준 것은 우선 기한을 물려서 받아들이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신여철이 호조(戶曹)의 을해조(乙亥條)에서 재감(裁減)한 면포(綿布) 7백 90동(同)은 옮겨서 군사의 옷감에 보충하여 주기를 청하고,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세백(李世白)이 경비가 다 없어진 것을 상세히 아뢰어 진청(賑廳)으로 하여금 헤아려 품처(稟處)하게 하기를 청하고, 신여철도 이를 굳이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4백 동은 호조에서 먼저 주고, 그 나머지는 병조와 진청에서 상의하여 나누어 주도록 하라.”</p> <p>하였다. 이세백이 말하기를,</p> <p>“수인(囚人) 홍수성(洪壽星)은 여덟 차례나 형신(刑訊)을 받았는데, 익명서(匿名書)를 써 낸 정상은 이미 곧바로 공초(供招)하였으므로 다시 숨긴 정상이</p> | |
|--|--|--|

| | | |
|--|---|--|
| | <p>없고, 이세우(李世遇)도 이미 곧바로 공초하였으나 홍수성 때문에 옥에 오래 지체하여 있으니, 홍수성은 형신을 멈추고 다른 죄인과 마찬가지로 조율(照律)하여 결단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홍수성은 이세우의 사인(私人)으로, 이세우와 함께 익명서를 만든 자이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신완(申琬)이 묘현(廟見) 때의 절목(節目)을 품정(稟定)하였는데, 묘현 때에는 전알(展謁)만을 행하고 독축(讀祝)·전폐(奠幣)하는 일은 없으며, 동시에 행례(行禮)하면 방해(妨礙)되는 일이 많으므로, 임금이 먼저 전배(展拜)하고 다음에 중궁전(中宮殿)이 그 다음에 세자(世子)가 그 다음에 빈궁(嬪宮)이 행하는 것으로 정탈(定奪)하였다. 신완이 외의(外議)가 혹 태묘(太廟)에 알현(謁見)하면 영녕전(永寧殿)에도 알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고 아뢰니, 임금이 윤지선에게 물었다. 윤지선이 말하기를,</p> <p>“신은 예문(禮文)을 모르므로 요상(僚相)에게 물어야 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부교리(副校理) 조태채(趙泰采)가 말하기를,</p> <p>“이것은 어려울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그러면 곧 정지하라.”</p> <p>하였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최규서(崔奎瑞)가 병자년(9069)의 사절인(死節)인</p> | |
|--|---|--|

| | | |
|---|---|---|
| | <p>人) 강흥업(姜興業)에게 서손(庶孫)이 있는데, 가난하므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니, 임금이 수용(收用)하라고 명하였다.</p> | |
| <p>숙종 30권, 22년 (1696 병자 / 청 강희 (康熙) 35년) 10월 20 일(계묘) 1번째기사</p> |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사(知事) 이세백(李世白)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신여철(申汝哲)이 무명을 옮겨서 사용할 것을 아뢰어 윤휴받았는데, 본조(本曹)의 경비가 고갈되었으니, 본조에서 보낼 것은 2, 3백 동(同)을 줄이고, 관서(關西)에서 보낼 1만 5천 석(石)은 본조에서 7천 석까지만 날라 보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진청(賑廳)에서 요리하여 채워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참찬관(參贊官)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고(故) 상신(相臣) 이단하(李端夏)를 이제 천장(遷葬)하려 하니, 도와 주어야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또한 따랐다. 또 말하기를, “송자(訟者) 유위린(柳緯隣)이, 판윤(判尹) 임상원(任相元)이 무슨 소견이 있는냐고 말한 것은 매우 놀라우니, 그 상언(上言)을 시행하지 말고, 그 밖에 송관(訟官)을 침욕(侵辱)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침욕한 죄를 먼저 다스린 뒤에야 다시 송사하는 것을 허가하여야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말하기를,</p> | <p>○癸卯/御晝講。 知事李世白曰：“頃日申汝哲，以木綿移用事， 陳達蒙允，而本曹經費匱竭，本曹所送，減其二三百同， 關西所送一萬五千石，自本曹限七千石輸送，其餘請竝令賑廳，料理充送。” 從之。 參贊官閔鎭厚言：“故相臣李端夏，今將遷窆，似宜顧助。” 亦從之。 又陳訟者柳緯隣，以判尹任相元有何所見爲言，殊可駭然。 其上言勿施，其他有侵辱訟官者，必先治侵辱之罪而後，方許更訟爲宜。” 從之。 又陳：“今番弘文錄圈點苟簡，停當者或漏，不停當者或倖參，宜削罷更圈。” 上問諸臣，皆以改錄爲未安，上遂不許。</p> |

| | | |
|---|---|--|
| | <p>“이번 홍문록(弘文錄)의 권점(圈點)은 구차하고 간약(簡約)하여, 적당한 자가 혹 빠지고 적당하지 않은 자가 혹 요행히 참여하였으니, 삭파(削罷)하고 다시 권점하여야 하겠습니다.”</p> <p>하였는데, 임금이 신하들에게 묻자, 모두 개록(改錄)하는 것을 미안하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윤허하지 않았다.</p> | |
| <p>숙종 30권, 22년 (1696 병자 / 청 강희 (康熙) 35년) 11월 29 일(임오) 2번째기사</p> | <p>비변사(備邊司)에서 양남(兩南)의 연해(沿海) 고을의 별회조(別會租) 각 1천 석(石)을 함경·평안 두 도에 옮겨 보내어 남관(南關)·청북(淸北)에 나누어 줄 거리로 삼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p> | <p>備邊司請以兩南沿海邑別會租各一千石，移送咸鏡、平安兩道，以爲分給南關、淸北之地，允之。</p>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 (康熙) 36년) 1월 1일 (계축) 2번째기사</p> | <p>강화 유수(江華留守) 이이명(李頤命)이 치계(馳啓)하여 청하기를,</p> <p>“정축년(9085) 병란(兵亂) 때 살아남은 노인(老人)으로 나이 80세 이상 된 남자는 가자(加資)하고, 여자 및 절개를 지키다 죽은 사람의 자손으로 효자(孝子)·순손(順孫)·열부(烈婦) 등에게는 쌀과 콩을 나누어 주어 풍성(風聲)9086)을 격려하게 하시며, 장녕전(長寧殿)의 참봉(參奉) 한 자리가 비었으니 문관(文官)인 참하관(參下官)을 뽑아 보내어 유사(儒士)를 권과(勸課)하게 하시고, 본부(本府)9087)의 장관(長官)은 반드시 본부 관할의 변장(邊將)을 뽑는 것을 영구히 정식(定式)으로 하여 억울한 심정을 위로하도록 하소서.”</p> <p>하니, 비변사(備邊司)에 계하(啓下)하자, 비변사에서 모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막았으므로, 단지 절개를 지키다 죽은 사람의 자손으로 효자 등에게 쌀을 주도록 하는 것만 허락하였다.</p> | <p>○江華留守李頤命馳啓請：“丁丑兵亂時餘存老人年八十以上，男子加資，女人及死節人子孫孝子、順孫、烈婦等，分給米、斗，以激厲風聲，長寧殿參奉一窠，以文參下擇差，以勸課儒士，本府將官，必差本府所管邊將，永爲定式，以慰抑鬱之情。”啓下備邊司，備邊司竝防之，只許死節人子孫孝子等給米。</p>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p> | <p>비망기(備忘記)를 함경도(咸鏡道)·평안도(平安道) 두 도(道)의 감사(監司)에게 내려 그들로 하여금 민생(民生)을 구제(救濟)하고 병폐가 되는 것은 즉시 보</p> | <p>○辛酉/下備忘記于咸鏡、平安兩道監司，使之救濟民生，登聞弊瘼。又以</p> |

| | | |
|--|--|---|
| <p>(康熙) 36년) 1월 9일 (신유) 1번째기사</p> | <p>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북도(北道)는 재해(災害)와 흉년이 매우 심하다고 하여 삼명일(三名日)9102) 의 물선(物膳)을 명년(明年) 가을까지 기한하여 봉(封)하여 올리는 것을 정지하도록 명하였다.</p> | <p>北道災荒孔棘，命三名日物膳，限明秋停封。</p>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 (康熙) 36년) 1월 15 일(정묘) 2번째기사</p> | <p>이조 판서 최석정(崔錫鼎)이 차자(筭子)를 올려 시폐(時弊) 10조목을 진달하기를, “1. 양전(量田)은 차례로 정돈하되 어사(御史)를 파견할 필요가 없이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맡아 단속하게 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도사(都事)가 순심(巡審)하면서 핵실(覈實)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여러 궁가(宮家)에 세금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실로 편방(偏邦)의 잘못된 규례이니, 한번 지난날의 규례를 변경시켜 그들로 하여금 법대로 세금을 바치게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3. 우리 나라의 백성들은 전역(田役)은 가볍고 신역(身役)은 무거워 수십 년 사이에 군문(軍門)이 증설(增設)되어 병액(兵額)9127) 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또 피곤한 백성들이 신역을 피할 소굴과 간사한 서리(胥吏)가 이익을 독점하는 전대가 되고 있는가 하면, 각양(各樣)의 사속(私屬)9128) 과 각 고을의 봉족(捧足) 【곧 보인(保人)의 유(類)로 전재(錢財)를 내어 실제로 출역(出役)한 사람의 생활을 의뢰하게 하는 자이다.】 같은 것은 각기 숫자가 남아돌아 아전들이 인연하여 간사한 짓을 하고 있으니, 이제 병액(兵額)을 헤아려서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며, 사천(私賤)도 수를 줄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천인(賤人)이 양인(良人)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식에 대하여 어미의 신분을 따르게 하는 법은 어떤 때는 행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없애기도 하는데, 그것도 어미의 신분을 따른다는 법을 거둬 밝혀서 장정(壯丁) 뽑는 길을 넓혀</p> | <p>○吏曹判書崔錫鼎，筭陳時弊十條： 一，量田以次整頓，而不必發遣御史，只令守令，句檢歸正，都事巡審覈實。 二，諸宮家免稅，實偏邦之謬例，宜一變前規，使之如法納稅。三，我國之民，田役輕而身役重，數十年間，軍門增設，兵額日廣，又有疲民避役之淵藪，奸胥罔利之囊橐。如各樣私屬，各邑捧足，【即保人之類，出錢財以資其元役人者也。】各有剩數，吏緣爲奸。今宜量罷兵額，亦宜減損私賤。娶良所生從母役，或行或罷，亦宜申明從母之法，俾廣簽丁之路。四，大同之法，本爲便民，而法久弊生，至於海西，各設私大同，以供進上，而邑各異規，輕重不倫，宜令道臣，改爲一道大同，略倣北關詳定之制。五，我國常年稅入，不過十三萬石，宗廟、百官之奉，居三分之一，其二爲養兵之需。今宜量減兵額，以紓經費。六，貢物給價，乃是大同之法，而年飢乏儲，無</p> |

| | | |
|--|--|--|
| | <p>야 합니다.</p> <p>4. 대동법(大同法)9129) 은 본래 백성들에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나, 법이 시행된 지 오래에 따라 폐단이 생겨서 심지어 해서(海西)9130)에서는 각기 사대동(私大同)을 마련하여 진상(進上)에 이바지하는데, 고을마다 각기 규정이 달라 경중(輕重)이 같지 않습니다. 그리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한 도(道)가 대동(大同)이 되도록 고쳐서 북관(北關)9131) 에서 상정(詳定)한 제도를 대략 모방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p> <p>5. 우리 나라가 해마다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13만 석(石)에 불과(不過)한데, 종묘(宗廟)의 경비와 백관(百官)의 봉록(奉祿)이 3분의 1을 차지하며, 그 3분의 2는 군사를 양성하는 비용으로 삼으니, 이제 병액(兵額)을 헤아려서 줄여 경비가 풀리도록 해야 합니다.</p> <p>6. 공물(貢物)에 대하여 값을 지급하는 것은 바로 대동법(大同法)인데, 해마다 기근(饑饉)이 들어 저축한 곡식이 부족하므로, 수요(需要)를 충족할 수가 없는데, 주인(主人)9132) 의 무리들은 언제나 원통함을 호소하니, 공물의 원액(元額)에 따라 종수(種數)를 헤아려 감해 주어서 소비를 줄이고 씹음을 넉넉하게 하는 바탕으로 삼아야 합니다.</p> <p>7. 재해(災害)로 손상을 입은 전지(田地)에 대한 한 가지 일은 오로지 본고을에 위임하고, 경차관(敬差官)이 답험(踏驗)9133) 하는 것은 한두 고을을 추천하여 책임을 면하는 데 불과하니, 지부(地部)9134) 에서 묘당(廟堂)에 나아가 의논하여 당년(當年)의 재실(災實)9135) 을 헤아려 각도(各道)에 실결(實結)을 나누어 정한다면 수조(收租)의 다과(多寡)를 알아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p> | <p>以充給，主人輩每每呼冤。宜就貢物元額，量減種數，以爲省費足用之地。</p> <p>七，災傷一事，專委本官，而敬差踏驗，不過抽牲一二邑以塞責。宜自地部，就議廟堂，量其當年災實，分定實結於各道，則收租多寡，可坐而知。八，穀粟有限，飢民無數，設粥以饋，其勢誠難。饑民聚成疾癘，散爲寇盜，司賑吏隸，又有穿穴耗費之害。前頭賑政，宜以抄民給糧，減價發賣爲主，設粥一款，有難舉行。九，賑荒之政，雖以聚穀爲主，官質民穀，弊端滋多。朱子所謂救荒無善策，誠是知言。惟有官發米穀，以平市價。市價既平，則穀多而民易售，其爲賑救也大矣。</p> <p>十，卽今乘輿供奉，多所減損，而竊見大內修理價米，多至三千石。姑令安徐，以待稍稔，此外可以酌損者，併留聖意，則爲益實大。至於閭巷之間，奢汰日甚。此雖由於諸宮貴近之家，不務儉約，以致如此，而亦在殿下之躬率。宜自內間，每加勅戒，以爲下民之表準。</p> <p>答曰：“陳戒之說，予當體念。大內修</p> |
|--|--|--|

| | | |
|--|--|--------------------------------|
| | <p>8. 곡식의 수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굶주린 백성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죽(粥)을 쑤어 먹이는 것도 그 형세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은 모여들면 전염병이 생기게 되고 흩어지면 도적이 되며, 진흙을 맡은 관리와 하례(下隸)들이 또 부정하게 소비시키는 피해마저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진흙하는 정책은 백성을 가려서 양식을 지급하고 가격을 줄여 곡식을 내어 파는 것을 주로 삼는 것이 적당하겠으며, 죽을 쑤어 먹이는 한 가지 일은 거행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p> <p>9. 흉년을 구휼하는 정책은 곡식을 모으는 것을 주로 삼는 것이지만, 관(官)에서 백성들의 곡식을 사들이는 데는 폐단이 매우 많습니다. 주자(朱子)가 이른바 ‘흉년을 구제하는 데는 좋은 계책이 없다.’고 한 것은 참으로 이치에 닿는 말입니다. 생각하건대 관에서 미곡(米穀)을 풀어 시중(市中)의 가격을 공평하게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시중의 가격이 이미 공평하게 되면 곡식이 많아져 백성들이 쉽게 살 수 있을 터이니, 그것이 진구(賑救)하는 방법 중에 큰 것입니다.</p> <p>10. 지금 승여(乘輿)9136) 의 공봉(供奉)9137) 에 줄인 것이 많기는 하지만, 가만히 대내(大內)의 수리(修理)하는 가미(價米)를 보니, 3천 석(石)이나 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우선 잠시 보류하도록 하여 조금 풍년이 들기를 기다리게 하며, 이 밖에도 참작하여 줄일 만한 것은 성상의 뜻으로 모두 보류시킨다면, 보탬이 되는 것이 실로 클 것입니다. 그리고 여항(閭巷) 사이에 사치가 날마다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여러 궁가(宮家)와 귀근(貴近)의 집안에서 검소와 절약에 힘쓰지 않은 것을 연유하여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그것도 전하(殿下)께서 몸소 통솔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내간(內</p> | <p>理，姑勿分定，而條陳之事，令廟堂商確採施焉。”</p> |
|--|--|--------------------------------|

| | | |
|--|--|--|
| | <p>間)에서부터 언제나 경계를 더하시어 하민(下民)들의 표준(表準)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p> <p>하니, 답하기를,</p> <p>“경계를 진달한 말은 내가 마땅히 체념(體念)하겠다. 그리고 대내(大內)의 우리는 우선 나누어 정하지 말도록 하고, 조목으로 진달한 일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상의해서 채택하고 시행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 (康熙) 36년) 1월 23 일(을해) 1번째기사</p> |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함경도 감진 어사(咸鏡道監賑御史) 조태구(趙泰耆)가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였다.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이 수군(水軍)과 육군(陸軍)의 조련(操鍊)을 정지시켜 한마음으로 농사에 힘쓰도록 하라고 청하자, 그대로 따랐다. 부응교(副應敎) 이인엽(李寅燁)이 관서(關西)9141) 에서 설죽(設粥)하여 기민을 먹이는 데 대한 폐단을 말하니, 【이인엽이 평안도 감진 어사(平安道監賑御史)로 지금 내려가려는 참이었다.】 임금(上)이 말하기를,</p> <p>“내려간 뒤에 도신(道臣)과 함께 상의(相議)하여 편리하고 적당하도록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처리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이인엽(李寅燁)이 해서(海西)의 전세(田稅)로 거둬들인 미곡(米穀)을 관서(關西)에다 첨가하여 보내 줄 것을 청하고, 유상운(柳尙運)이 먼저 강도(江都)9142) 의 미곡을 들여보낼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인엽이 또 양향(糧餉)9143) 인 둔곡(屯穀)9144) 을 얻기를 청하자, 임금(上)이 1천 석(石)을</p> | <p>○乙亥/引見大臣、備局諸臣。 咸鏡道監賑御史趙泰耆，請對入侍。 領議政柳尙運請停水、陸軍操鍊， 一意勸農，從之。 副應敎李寅燁，言關西設粥之有弊，【寅燁以平安道監賑御史，今將下去。】上曰：“下去後，與道臣相議，便宜從事。” 寅燁請以海西田稅米，添送關西，尙運請先以江都米入送，從之。 寅燁又請得糧餉屯穀，上命給千石。 寅燁又言：“近來貪風大振，守令如有貪汚者，請啓聞論罪。” 上曰：“罪狀顯著者啓聞，繩以重律。” 寅燁又陳私賑人除職之意，上曰：“從速收用，使有聳動。” 寅燁又陳宜祀箕子廟，以爲祈禳之道，允之。 泰耆請</p> |

| | | |
|--|---|---|
| | <p>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이인엽이 또 말하기를,</p> <p>“요즈음 탐욕을 부리는 기풍이 크게 진작되었습니다. 수령(守令)으로 만일 탐오(貪汚)하는 자가 있으면, 청컨대 계문(啓聞)하여 논죄(論罪)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죄상(罪狀)이 뚜렷하게 드러난 자는 계문(啓聞)하여 엄한 율(律)로 다스리도록 하라.”</p> <p>하였다. 이인엽이 또 사사로이 곡식을 풀어 기민을 진휼한 사람에게는 관직에 임명하도록 하는 뜻을 진달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빨리 거두어 써서 보는 자들로 하여금 용동(聳動)함이 있게 하라.”</p> <p>하였다. 이인엽이 또 기자묘(箕子廟)에 제사를 지내어 기양(祈禳)하는 방법을 삼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진달하자, 그대로 윤허하였다. 조태구(趙泰耆)가 영남(嶺南)의 곡식으로 수량을 더 보태어 관서로 운송하도록 청하자, 임금이 6천 석(石)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조태구가 영남에서 세금으로 거둔 소금을 얻으려고 청하니, 임금이 저자를 열어 소용되는 소금을 지급하게 하도록 명하였다. 조태구가 또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에게 속천(贖賤)을 바치도록 허락하고, 그들이 속천으로 바친 곡식은 진휼하는 밀천으로 보충하여 활용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이인엽(李寅燁)이 말하기를,</p> <p>“이미 북도[北路]에 허락하셨으니, 서도[西路]도 달리할 수 없습니다.”</p> | <p>以嶺南穀，加數移轉，上命給六千石。泰耆請得嶺南稅鹽，上命給開市所用之鹽。泰耆又請公、私賤許贖，以其所贖之穀，補用賑資，許之。寅燁曰：“既許北路，則西路亦不可異同矣。”上曰：“一體許贖。”泰耆言：“御史不得專黜陟之權，則不可號令列邑。請隨其罪犯，勿論堂上、堂下決杖。”左議政尹趾善曰：“監司亦官通訓以下自斷，堂上則不可直杖。”上曰：“通訓以下直斷，通政以上啓聞處之，兩道一體爲之。”上曰：“昨見柳重茂之避，李徵明事無據。重茂之疏，非攻斥金榦，蓋欲擇春坊也。設令所論謬誤，自有公論，而參政之人，勒令自處，已極可怪，而至於吾入銓曹，當斥補遠惡地云者，尤極放恣。徵明罷職不斂。”趾善曰：“重茂之論金裁，殊未穩當。裁是可人，而至以碌碌無用可笑之人，目之，榦則斥以鄉生，尤極非矣。”錫鼎曰：“故執義權讓，以侍從臣父，陞資未下批前身死，殊無推恩之實。且讓恬退不仕，物論嘉之，贈職似宜。”上允之。</p> |
|--|---|---|

| | | |
|--|--|--|
| |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일체로 속전 바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조태구(趙泰耆)가 말하기를,</p> <p>“어사(御史)가 출척(黜陟)하는 권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여러 고을을 호령(號令)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그 죄범(罪犯)에 따라 당상관(堂上官)이나 당하관(堂下官)을 논하지 말고 장형(杖刑)을 집행하게 하소서.”</p> <p>하니, 좌의정(左議政) 윤지선(尹趾善)이 말하기를,</p> <p>“감사(監司)도 통훈 대부(通訓大夫) 이하의 벼슬아치는 스스로 처단할 수 있지만, 당상관(堂上官)에게는 곧바로 곤장을 칠 수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통훈 대부(通訓大夫) 이하는 곧바로 처단하고 통정 대부(通政大夫) 이상은 계문하여 처리하되, 두 도(道) 모두 일체로 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어제 유중무(柳重茂)가 인피(引避)한 것을 보니, 이정명(李徵明)의 일은 근거가 없다. 그리고 유중무의 소(疏)는 김간(金幹)을 공격하여 배척한 것이 아니</p> | |
|--|--|--|

| | | |
|------------------------------------|---|--|
| | <p>고 대체로 춘방(春坊)을 가려 뽑으려는 것이었다. 설령 논(論)한 바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저절로 공론(公論)이 있을 터인데, 정사(政事)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자처(自處)하게 하는 것도 이미 매우 괴이하게 여길 만한데, 심지어 ‘내가 전조(銓曹)에 들어가면 마땅히 배척하여 멀고 나쁜 지방에다 보임(補任)시키겠다.’고 말한 것은 매우 방자(放恣)한 행동이다. 이징명을 파직(罷職)시켜 서용(敍用)하지 말도록 하라.”</p> <p>하였다. 윤지선(尹趾善)이 말하기를,</p> <p>“유중무(柳重茂)가 김재(金栽)를 논척한 것은 매우 온당(穩當)하지 못합니다. 김재는 바로 쓸 만한 사람인데도 심지어 녹록(碌碌)하여 쓸모가 없고 웃음거리가 될 사람이라는 것으로 지목하였으며, 김간(金幹)의 경우는 시골의 서생이라는 것으로 배척하였으니, 매우 잘못입니다.”</p> <p>하였다. 최석정(崔錫鼎)이 말하기를,</p> <p>“고(故) 집의(執義) 권양(權讓)은 시종신(侍從臣)의 아비라고 하여 자급(資級)을 올리려고 하였는데, 비답을 내리기 전에 본인이 죽어버렸으므로, 은혜를 미루어 주는 실상이 너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양은 염퇴(恬退)하여 벼슬하지 않았으므로, 물론(物論)이 아름답게 여겼으니, 증직(贈職)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p> |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p> | <p>강원 감사(江原監司) 유득일(兪得一)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진휼하는 정책에 마음을 다하고 농사를 권과(勸課)하는 뜻으로 유시하고, 인하여</p> | <p>○乙酉/江原監司兪得一陞辭, 上引見, 諭以盡心賑政, 勸課農務之意, 仍命以</p> |

| | | |
|--|---|---|
| <p>(康熙) 36년) 2월 4일 (을유) 1번째기사</p> | <p>전야(田野)가 황폐해지고 개간되는 것으로 수령(守令)들의 전최(殿最)9152)를 삼도록 명하였다. 유득일이 진구(賑救)할 자료로 영남(嶺南)의 곡식 6, 7천 석(石)과 진휼청(賑恤廳)의 돈[錢] 8, 9천 냥(兩), 그리고 보리 종자 6, 7백 석을 청하고, 또 노비 신공(奴婢身貢)9153) 및 재해(災害)를 당한 고을에 대동법(大同法)에 의하여 거두는 쌀과 전세(田稅)를 감해 주도록 청하자, 임금이 아울러 묘당(廟堂)과 해사(該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였다.</p> | <p>田野荒闕，爲守令之殿最。得一請得賑資嶺南穀六七千石、賑廳錢八九千兩、麥種六七百石，又請減奴婢身貢及災邑大同收米田稅，上竝令廟堂該司稟處。</p>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 (康熙) 36년) 2월 11 일(임진) 3번째기사</p> | <p>비변사(備邊司)에서 관동(關東)에다 보리 종자 6백 석(石)을 지급하고, 본도(本道)의 재해(災害)를 당한 고을은 <대동법에 의하여> 거두는 쌀을 줄여 주되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두어 진휼하는 데 보충하도록 해주기를 청하였는데, 감사(監司) 유득일(俞得一)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p> | <p>○備邊司請給關東種麥六百石，本道災邑減捧收米，令仍留補賑。從監司俞得一之請也。</p>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 (康熙) 36년) 2월 13 일(갑오) 1번째기사</p> | <p>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민진후(閔鎭厚)가 하직 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면유(勉諭)하였다. 민진후가 충주(忠州)·안흥(安興)·야산(牙山) 세 곳의 창고 곡식 중에 각 고을에서 거두어 보관해 둔 것을 그 고을에다 되돌려주고, 또 각 고을의 저치미(儲置米)를 덜어 내어 아울러 진휼하는 밀천으로 보충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 <p>○甲午/忠淸道觀察使閔鎭厚陞辭，上引見勉諭之。鎭厚請忠州、安興、牙山三倉穀捧留各邑者，還給本邑，且除出各邑儲置米，竝補賑資，上從之。</p>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 (康熙) 36년) 2월 15 일(병신) 4번째기사</p> | <p>동부승지(同副承旨) 김홍복(金洪福)이 상소(上疏)하기를, “지금의 기근(飢饉)이 지난 봄과 다름이 없어 얼어죽고 굶어 죽은 자들이 길에 즐비합니다. 그러니 유랑하는 거지들을 세밀하게 가려서 죽(粥)을 쑤어 주기도 하고 양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되,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삼동(三冬)에 눈이 내리지 않아 가을같이 한 보리가 얼고 손상이 되었으니, 또 만약 흉년이 든다면 백성들의 명맥(命脈)은 바로 봄갈이가 잘되느냐 안되느냐에 판결이 납니다. 그러나 전지(田地)가 있는 사람도 파종(播種)할 곡식이 없으니, 의당 유사(有司)로 하여금 공공의 비용을 요량(料量)하여 남겨두게 하고, 그 나머지 돈과 베는 짐작하고 헤아려 경기(京畿)의 여러 고을에다</p> | <p>○同副承旨金洪福上疏曰： 卽今饑饉，無異去春，凍餓致斃，相望於途。精抄流丐，或粥或糧，不容少緩也。三冬無雪，秋牟凍損。又若失稔，則民之命脈，立判於春耕得失，而有田之人，無粒可播。宜令有司，量留公用，其餘錢布，斟量分給於畿內列邑，待秋還捧，似有補於春農。田稅及奴婢、軍保米·布之將納者，亦宜停</p> |

| | | |
|--|--|--|
| | <p>나누어 주었다가,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도로 바치도록 하는 것이 봄농사를 짓는 데 보탬이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대동법(大同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전세(田稅) 및 노비(奴婢)·군보(軍保)의 쌀과 포목으로 장차 바쳐야 할 것들도 바치는 것을 정지시켜, 그들로 하여금 참혹하게 되는 근심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고, 또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들을 특별히 파견하여 여러 도(道)에 나누어 보내어 유시하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도록 청하니, 비변사(備邊司)에서 회계(回啓)하기를,</p> <p>“유량하는 거지들은 등급을 나누어 식량을 지급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한도(道)에다 흠어서 꾸어주는 것은 일의 형세와 재력으로는 장만하기가 어렵고, 전세(田稅)를 물려서 바치게 하는 것도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원을 파견하여 나누어 유시한다는 것은 의도가 훌륭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형식적인 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할 듯합니다.”</p> <p>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p> | <p>捧，俾免推剝之患。</p> <p>又請特遣三司諸臣，分諭諸道，慰悅民情，備邊司回啓：“流丐請分等給糶。散貸一道，事力難辦，田稅退捧，不可輕議。遣官分諭，意非不善，而恐不免爲文具之歸。”允之。</p>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 (康熙) 36년) 2월 16 일(정유) 2번째기사</p> | <p>비국(備局)에서 흉년이 든 것으로 기전(畿甸)9167)에서 봄에 대동법(大同法)에 의하여 당연히 바쳐야 할 전곡(錢穀)은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물려서 바치게 하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p> | <p>○備局以飢荒，請畿甸春大同當納者，待秋退捧，從之。</p>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 (康熙) 36년) 2월 30</p> | <p>당시 유량하는 거지의 무리가 모여서 도둑질을 하므로, 여염(閭閻)에서 편치 못했는데, 옥당(玉堂)의 관원 조태채(趙泰采)와 정제태(鄭齊泰)가 경연(經筵)에서 아뢰어 도성(都城) 밖으로 내보내도록 청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형조 관</p> | <p>○辛亥時，流丐之徒，屯聚爲盜，閭閻不寧，玉堂官趙泰采、鄭齊泰，筵白請出送城外。至是，刑曹判書李世華，</p> |

| | | |
|--|---|--|
| <p>일(신해) 1번째기사</p> | <p>서(刑曹判書) 이세화(李世華)가 상소하여 기내(畿內)의 바닷가 여러 섬으로 내 보내어 변장(邊將)과 감관(監官)으로 하여금 쌀죽[米粥]을 쭈어 나누어 먹이도록 해서 도성의 피해도 없애고, 겸하여 구제해 살리는 방법으로도 삼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p> | <p>疏請出送畿內沿海諸島，使邊將監官，分饋米粥，以除都城之害，兼爲濟活之道，從之。</p>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 (康熙) 36년) 3월 18일(기사) 3번째기사</p> | <p>비변사(備邊司)에서 충주목(忠州牧)의 대동미(大同米) 5백 석(石), 남한(南漢)의 쌀 1천 석, 강도(江都)의 쌀 5백 석을 강원도(江原道)에다 나누어 주어 진구(賑救)하는 자료로 보충하도록 계청(啓請)하였는데, 관찰사(觀察使) 유득일(兪得一)의 장청(狀請)을 따른 것이었다.</p> | <p>○備邊司啓請以忠州牧大同米五百石、南漢米一千石、江都米五百石，劃給江原道，以補賑資。從觀察使兪得一狀請也。</p>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 (康熙) 36년) 윤3월 23일(계묘) 3번째기사</p> | <p>비변사(備邊司)에서 강도(江都)의 쌀 3백 석(石)과 진휼청(賑恤廳)의 돈 1천냥을 개성부(開城府)에 지급하도록 청했는데, 유수(留守) 조상우(趙相遇)가 장계(狀啓)로 청한 것을 따른 것이었다.</p> | <p>○備邊司請給江都米三百石、賑廳錢一千兩於開城府。從留守趙相遇狀請也。</p>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 (康熙) 36년) 4월 13일(임술) 1번째기사</p> | <p>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를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동래(東萊)의 공작미(公作米)는 공무(公貿)하는 면포(綿布)의 대가(代價)로 대마도(對馬島)에다 바꾸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심(柳滄)이 부사(府使)가 되었을 때에 임시로 쌀과 바꾸도록 허락한 것이 마침내 잘못된 전례가 되어 1년에 지급하는 것이 1만 6천여 석(石)입니다. 당초에 작정(酌定)하기는 간혹 10년을 기한하기도 하고, 간혹 5년을 기한하기도 하였는데, 지금 와서는 그 기한을 모른다고 하니, 정상(情狀)이 교활하고 간악합니다. 여러 대신들은 지금부터 쌀로 지급하는 것을 막고 도로 면포로 지급하는 규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하문(下問)하였다. 좌참찬(左參贊) 이세화(李世</p> | <p>○壬戌/引見大臣、備局諸臣。領議政柳尙運曰：“東萊公作米，卽公貿綿布之換給於對馬島者。柳滄爲府使時，權許換米，遂成謬例，一年所給一萬六千餘石。當初酌定，或限十年，或限五年，今乃云不知年限，情狀巧惡。諸大臣以爲自今防塞給米，還復給布之規，爲宜云矣。”上問諸臣。左參贊李世華曰：“換米後，民弊滋甚，故相臣李尙眞，常以爲柳滄創此無限弊端云矣。今若欲還復給布之規，則島倭必以死爭，其勢終難不許。姑以年限爭之可矣。”禮曹判書申琬曰：“此非當</p> |

| | | |
|--|---|---|
| | <p>華)가 말하기를,</p> <p>“쌀로 바꾼 뒤에 백성들의 폐단이 더욱 심해졌기 때문에 고(故) 상신(相臣) 이상진(李尙眞)은 유심(柳滄)이 한없는 폐단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만약 도로 면포로 지급하는 규정을 회복시키고자 한다면, 도왜(島倭)가 틀림없이 죽기로 다툼 것이니, 그 형세도 끝내 허락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연한(年限)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가하겠습니다.”</p> <p>하고, 예조 판서 신완(申琬)은 말하기를,</p> <p>“이것은 당초에 약조(約條)한 것이 아니니, 이제 옛날의 규례를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다투다면 조종(操縱)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애처롭게 빌도록 한 뒤에 형세를 관찰하면서 허락하는 것이 가합니다.”</p> <p>하고, 좌윤(左尹) 이유(李濡), 한성군(韓城君) 이기하(李基夏), 부제학(副提學) 서종태(徐宗泰),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이명(李頤命)의 말도 대략 같았다. 임금(上)이 말하기를,</p> <p>“다만 변방을 맡은 신하로 하여금 힘껏 다투게 하여 그들이 만약 애처로이 빈다면 다시 허락하는 것도 해로울 것은 없다.”</p> <p>하였다. 신완(申琬)이 말하기를,</p> <p>“유학(幼學)으로 수군(水軍)에 충정(充定)된 자에게 이미 부거(赴學)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생원(生員)·진사(進士)·조사(朝士)로서 충군(充軍)된 자는 물건 사</p> | <p>初約條，今以復舊例之意爭之，則操縱在我。乞哀之後，觀勢許之可矣。”</p> <p>左尹李濡、韓城君李基夏、副提學徐宗泰、江華留守李頤命之言，亦略同。</p> <p>上曰：“第使邊臣力爭，而彼若哀乞，則更許無妨。”琬言：“幼學充水軍者，既許赴學，則生·進、朝士之充軍者，勿揀赦前，反重於幼學之罰，似爲不均。”尙運請除去勿揀赦前之律，上從之。頤命以賑民請得二千石穀，尙運請給三之一，上命給七百石。尙運曰：“鬱陵島事，今已明白歸一，不可不間間送人巡檢。”上命間二年入送。</p> |
|--|---|---|

| | | |
|--|---|---|
| | <p>전(勿揀赦前)9217) 케 하심은 도리어 유학에게 적용하는 처벌보다 중하여 균일(均一)하지 못한듯 합니다.”</p> <p>하고, 유상운(柳尙運)은 물간 사전의 율(律)을 없애기를 청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 이이명이 백성을 진구(賑救)하는 데 사용하려고 2천 석(石)의 곡식을 청하였는데, 유상운이 3분의 1을 지급하도록 청하자, 임금이 7백 석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유상운이 말하기를,</p> <p>“울릉도(鬱陵島)에 대한 일은 이제 이미 명백하게 한 곳으로 귀착되었으니, 틈틈이 사람을 보내어 순시하고 단속해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2년 간격으로 들여보내도록 명하였다.</p> |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 (康熙) 36년) 4월 22 일(신미) 1번째기사</p> | <p>임금이 직접 사단(社壇)에 기도하였다. 진작관(進爵官) 오도일(吳道一)이 술에 취하여 넘어져 음복주(飲福酒)를 엎질렀다.</p> | <p>○辛未/上親禱社壇。進爵官吳道一，乘醉顛仆，傾覆福酒。</p>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 (康熙) 36년) 4월 22 일(신미) 2번째기사</p> | <p>임금이 궁궐로 돌아오는 길에 대가(大駕)가 의금부 앞길에 이르자, 연(輦)을 길거리에 멈추게 하고 승지(承旨)·사관(史官) 및 대신, 삼사(三司)·의금부(義禁府)·형조(刑曹)의 당상관(堂上官)을 불러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한재(旱災)가 이렇게 심하므로 직접 기우제(祈雨祭)를 지냈지만 미미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하여 비가 내릴 기상이 아득하다. 백성의 일을 생각하면 실로 그지없이 걱정된다.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백성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도리는 할 수 있는 일이면 하지 않는 것이 없이 하여야 마땅하다. 내가 생</p> | <p>○上還宮之路，駕臨義禁府前路，駐輦街上，召承旨、史官及大臣、三司、禁府刑曹堂上入侍。上曰：“旱災此酷，親自禱雨，而微誠未格，雨意邈然。言念民事，實爲罔極。應天恤民之道，宜無所不用其極。予意禁府、典獄時囚罪人中，綱常、殺獄、強盜外，皆欲疏釋之。”領議政柳尙運、左議政尹趾善曰：“纔經親禱，行過此地，駐輦</p> |

| | | |
|--|--|---|
| | <p>각하건대, 의금부와 전옥서(典獄署)에 현재 갇혀 있는 죄인 가운데 강상(綱常)에 관계되거나 살인범·강도범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대하게 처결하여 석방시키려 한다.”</p> <p>하였다. 영의정 유상운, 좌의정 윤지선이 말하기를,</p> <p>“친히 기도하시기를 겨우 마치고 이곳을 지나시다가 연(輦)을 멈추시고 하문(下問)하여 죄인을 관대하게 용서하여 석방하려 하시니, 이것은 실로 백성을 위한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인데,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p> <p>하고, 지평(持平) 조태로(趙泰老)는 지방의 죄수도 아울러 석방하도록 청하였으며 유상운이 또 포도청(捕盜廳)의 죄인도 아울러 석방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모두 석방하라 명하고 또 세초(歲抄)9223)에 들어가야 할 자를 모두 탕척(蕩滌)하도록 명하였다. 의금부 당상관과 형조 당상관이 죄수의 장부를 가지고 그들의 죄목(罪目)을 아뢰니, 임금이 의금부와 전옥서의 죄수 60여 명을 부르도록 명하여 모두 대가(大駕) 앞으로 나오게 하고 유시(諭示)하기를,</p> <p>“지금 연(輦)을 멈추고 사면(赦免)을 행하는 것은, 사실 재앙을 만나 백성을 걱정하는 어쩔 수 없는 데서 나온 일이며, 너희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각자가 경계하고 조심하여 다시 죄를 범하지 말도록 하라. 만약 후시라도 재범(再犯)하면 다시는 너희들을 석방하지 않겠다.”</p> <p>하였는데, 죄인들이 감격하여 우는 자가 많았다. 임금이 죄인들이 험크러진 머리에다 귀신 모양으로 기력이 없어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것을 보고 가엾게 여겨 말하기를,</p> | <p>下詢，欲爲疏釋，實出爲民之至意，何所不可?” 持平趙泰老請竝釋外方罪囚，尙運又請竝釋捕盜廳罪人，上命竝放之，又命應入歲抄者，皆蕩滌。禁府、刑曹堂上持囚案，奏其罪目，上命招禁府、典獄囚人六十餘名，悉詣駕前諭之曰：“今此駐輦行赦，實出遇災憂民不得已之舉，非以汝爲無罪也。汝輩各自警飭，勿復犯罪。若或再犯，更不汝釋也。” 罪人多有感泣者。上見罪人蓬頭鬼形，蹣跚顛倒，惻然曰：“天之生民，厥初何異，而此屬陷罪久囚，皆成鬼形，大禹之泣辜，信然矣。且見此屬流丐慘然之狀，可以推想。昔我宣廟，值癸、甲凶荒，除出御供米，以賑飢民。此實聖祖恤民之盛德，豈非今日之可法乎？其令該曹，御供米參酌除出，以補粟島粥資。非以升斗之米，謂能普濟，欲示予猶已飢之意也。” 副提學徐宗泰曰：“聖上憫旱憂民之意至此，天意豈不感動？伏願務積誠意，毋少間斷。宋高宗禱雨將出而天大雨，時人謂之方寸來雨。人君誠心對越，則感應之理如是矣。” 上曰：“當體念焉。”</p> |
|--|--|---|

“하늘이 백성을 태어나게 하면서 애당초 무엇이 달랐겠는가마는, 이 무리들이 죄에 빠져 오래도록 갇혀 있었으므로 모두 귀신의 모양이 되었으니 우(禹)임금이 죄인을 보고 울었다는 것이 참으로 그러했겠다. 이 무리들을 보니, 떠돌아다니는 거지들의 참혹한 형상은 미루어 상상할 수 있겠다. 옛날 우리 선조 [宣廟]께서 계사년(9224)·갑오년(9225)의 흉년을 만나 어공미(御供米)9226)를 덜어내어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게 하셨는데, 이는 실로 성조(聖祖)께서 백성을 가엾게 여기신 성대한 덕(德)이니, 어찌 오늘날에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해조(該曹)로 하여금 어공미를 참작해서 덜어내어 울도(栗島)에서 굶주린 백성에게 죽(粥)을 끓여 주는 밀천으로 보충하게 하라. 얼마 안되는 쌀로 널리 구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굶주리는 것과 같다는 뜻을 보이려는 것이다.”

하였다. 부제학(副提學) 서종태(徐宗泰)가 말하기를,

“성상께서 가뭄을 민망하게 여기고 백성을 근심하시는 뜻이 여기에 이르렀는데, 하늘의 뜻이 어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힘써 성의(誠意)를 쌓기를 조금도 중단(間斷)이 없게 하소서. 송(宋)나라 고종(高宗)이 비를 빌려고 나가려 하자, 하늘이 큰 비를 내렸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정성스런 마음이 비를 내리게 했다고들 하였습니다. 인군(人君)이 정성스런 마음으로 천지神明(天地神明)을 대한다면 감응(感應)하는 이치가 이와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체념(體念)하겠다.”

| | | |
|--|---|---|
| | <p>하였다.</p> |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 (康熙) 36년) 4월 22 일(신미) 3번째기사</p> | <p>궁궐로 돌아온 뒤에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p> <p>“아! 하늘이 상란(喪亂)9227) 을 내려 기근이 거듭 들어 길에는 굶주려 죽은 사람이 서로 연달아 즐비하게 널려 있어 눈으로 보기에 참혹하고 마음이 상한다. 아버가 자식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사람들이 용과 뱀처럼 악독하여 이곳 저곳에서 도둑으로 일어나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차마 하지 못할 짓을 하고 선량하지 못한 짓을 하는 데 이르게 하고 있으니, 통탄스런 마음을 감당할 수 없다.</p> <p>아! 내가 백성들을 잘 따르게 하고 보호하지 못하여 이 지경이 되었으니, 모두 나의 잘못이다. 밤낮으로 마음 아프게 여기고 탄식하느라 임금으로서의 즐거움이 없다. 가뭄의 참혹함이 여기에 이를 줄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찬바람과 독기(毒氣)서린 안개가 거의 한 달 동안 잇달아 대지(大地)는 붉게 타고 모든 백성들은 훌쩍훌쩍 울고 있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인류(人類)가 모두 죽을 것이다. 상림(桑林)에서 대신 희생(犧牲)이 되어 자신을 태우려고 한 <탕(湯)임금과 같은 마음은> 참으로 간절하나, 미미한 정성이 하늘의 감응을 이르게 하지 못해 하늘을 보니 흐릿하기만 하도다. 아! 창고의 곡식도 다 떨어지고 개인의 비축도 거덜이 났으니, 장차 그들이 죽는 것만을 가만히 서서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p> <p>아! 옛날 계사년(9228) 과 갑오년(9229) 의 흉년을 당하여 굶주려 죽는 사람이 날마다 쌓이므로, 선조께서 ‘먼저 죽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전교가 계셨는데, 오늘날 소자(小子)의 마음은 바로 성조(聖祖) 당시의 마음과 같</p> | <p>○還宮後，下備忘記曰：</p> <p>嗚呼！天降喪亂，饑饉荐臻，道殣相枕，慘目傷心。父而殺子，人而食人，化爲龍蛇，在在嘯聚，使斯民爲此至不忍至不善之事，可勝痛哉？嗚呼！予不能懷保，致此境界，一則予咎，一則予愆，夙夜痛歎，無樂南面。不料亢旱之慘，又至於此，淒風毒霧，殆浹三旬，大地焦赤，萬姓啜泣。失今不雨，人類將盡。代犧桑林，誠切自焚，而微誠未格，視天夢夢。噫！倉庫罄而私蓄竭，將立視其死耶？嗚呼！昔當癸、甲凶荒，餓莩日積，宣廟至有先死不可得之教。今日小子之心，聖祖當日之心也。自今避正殿，益加寅畏修省之道，政府廣求直言，君德闕遺，朝政得失，以至調濟之方，悉陳無隱。苟有利於生民，吾何愛髮膚乎？嗚呼！二紀臨民，不穀無良，自速災沴，反躬慙慙，夫復何言，而但念上下交修，有不可已，則豈無一二可言乎？今日朝廷，可謂極渙散矣。各立門戶，習成傾軋，</p> |

| | | |
|------------------------------------|--|---|
| | <p>다. 지금부터 정전(正殿)을 피하고 더욱 반성하고 수양하는 도리를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스럽게 할 터이니, 정부에서는 널리 바른 말을 구하여 군덕(君德)의 부족한 것과 조정(朝廷)의 득실, 그리고 진흙하고 구제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숨김없이 모두 진술하게 하라. 진실로 백성들에게 이로운 것이 있다면 내 어찌 몸을 아끼겠는가? 아! 2기(紀) 동안 백성을 다스리면서 훌륭하게 하지 못하여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으니, 자신을 반성하며 부끄러워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다만 생각하건대, 상하(上下)가 서로 수양하면서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어찌 한두 가지 말할 만한 것이 없겠는가?</p> <p>오늘의 조정은 극도로 흐트러져 있다고 말할 만하다. 각기 문호(門戶)를 세우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경알(傾軋)하는 것이 풍습을 이루어, 남의 조그마한 과실을 들으면 좋은 기화(奇貨)를 얻은 듯이 많은 사건의 단서를 겹겹이 만들어 내어, 의심과 노여움이 한이 없이 하루 이틀 반복(反覆)하여 침고(沈痼)가 되어 가는데도, 한결같이 앞을 다투어 나라를 망치는 대부(大夫)가 되기를 달갑게 여기고 있으니, 그것이 과연 도리에 합당한가? 아! 그대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은 나의 교훈을 분명하게 듣고 그대들 마음을 깨끗이 하여, 가뭄의 재앙이 우연한 것이라고 말하지 말며, 당론(黨論)은 깨뜨릴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잘 공경하여 받들어 조금이라도 하늘의 건책(譴責)에 응답하도록 하라. 그리고 죄과를 씻어 주고, 막혀 있는 이들을 소통(疏通)시켜서 인재를 구별하여 발탁하되, 수령[守牧]을 신중히 가려 뽑는 데 이르러서는 역시 국가의 시급한 업무이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별도로 품처(稟處)하게 할 것이며, 감선(減膳)하고, 술을 금하고, 격고(擊鼓)를 하지 말라는 등의 일은 모두 즉시 거행하도록 하라.”</p> | <p>聞人微過，如得奇貨，枝節層生，疑怒無限，一日二日，反覆沈痼，一向泄泄，甘爲亡國大夫，其果合於道理耶？咨爾大小臣僚，明聽予訓，精白乃心，毋曰旱災是適然，毋曰黨論不可破，式克欽承，少答天譴。至於滌蕩垢瑕，疏通滯鬱，甄拔人才，慎簡字牧，亦有國之急務，其令廟堂，別爲稟處，而減膳、禁酒、勿擊鼓等事，劃卽舉行。</p>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p> | <p>호조(戶曹)에서 덜어낸 어공미(御供米) 6석(石)을 울도(栗島)의 진제소(賑濟所)로 옮겨 보내고, 포도청(捕盜廳)에서 도둑질한 죄인 70여 명을 석방하였는</p> | <p>○戶曹除出御供米六石零，移送栗島賑濟所，捕盜廳放釋偷竊罪人七十餘名。</p> |

| | | |
|---|---|--|
| <p>(康熙) 36년) 4월 23일(임신) 2번째기사</p> | <p>데, 모두 임금의 전교 때문이었다.</p> | <p>俱以上教也。</p>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 (康熙) 36년) 4월 23일(임신) 6번째기사</p> | <p>장악원 정(掌樂院正) 유신일(兪信一)이 상소하기를,</p> <p>“성상께서 치벽(植璧)9232) 하던 날에 신이 수행(隨行)하여 향관(享官)의 끝 자리에 참석하였는데, 사단(社壇)에서 의식을 미리 연습할 때에 보건대, 작주관(爵酒官) 오도일(吳道一)이 비틀거리며 버티고서 혼미하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곧장 지존(至尊)의 앞자리를 밟고서 구역질을 하는 듯 몹시 취(醉)한 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간혹 정신이 어지러워서 넘어지기도 하였으며, 몸을 단상(壇上)에 비스듬히 서서 손으로 수복(守僕)을 불러 허리의 띠를 고쳐 매도록 하기도 하였으니, 그의 거만한 형상을 모두 열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한데서 거처하시며 경건한 정성으로 밤이 새도록 조용히 기도하기를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으시니, 제사 의식을 미리 연습하는 것은 얼마나 경건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할 처지인데, 그가 어떻게 감히 방자하게 술을 잔뜩 마시고 예의를 손상시키기를 이와 같이 무엄(無嚴)하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대신과 삼사(三司)에서 한 사람도 그의 죄를 청하는 자가 없으므로, 신이 감히 한(漢)나라 성제(成帝) 때 괴리령(槐里令) 주운(朱雲)의 고사(故事)9233) 를 본받아 임금을 무시하고 하늘을 업신여긴 실상을 갖추어 진달하니, 삼가 바라건대 살펴주소서.</p> <p>신은 오도일을 어릴 적부터 알아 그의 사람됨을 익숙하게 압니다. 그의 마음은 거짓되고 뜻은 거만하며 외모는 사납고 내면은 나약하며, 재주를 끼고 교분을 맺어 모람되게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여 사로(仕路)의 통색(通塞)과 인재(人才)의 진퇴(進退)를 마음대로 조종을 하니, 염치(廉恥)를 잃어버리고 부끄러움을 무릅쓰는 무리들이 아주 도리에 어긋난다는 욕이라도 달갑게 받으면</p> | <p>○掌樂正兪信一上疏曰：</p> <p>聖上植璧之日，臣隨參享官之末，社壇肄儀之時，目見爵酒官吳道一，蹣跚扶持，迷不省事，直躡至尊之前席，若嘔若噎，不勝沈醉，或至昏倒，側身壇上，手招守僕，改束腰帶。其慢蹇之狀，不可悉舉。我殿下露處虔誠，達宵默禱，不少怠忽，則預習祭儀，何等敬謹之地，而渠何敢肆然引滿，爽儀爽禮，若是其無嚴乎？大臣、三司，無一人請其罪者，臣敢效槐里令故事，備陳無君慢天之實狀，伏願垂察焉。臣識道一於童丱之年，熟諳其爲人。心譎而志慢，外厲而內荏，挾藝結交，冒居要地，通塞進退，惟意操縱，喪廉冒恥之輩，甘受絕悖之辱，推爲領袖，以圖榮宦，故一政而樹其所私，再政而植其所昵，以爲扶持盤礴之計。鄭濞耿介清節，有乃祖風，而一忤道一，栖遲下邑，李秀彥良善沈厚，世傳忠勤，而一論道一，留滯鄉曲，臣竊惜之。今日之事，雖使周親石友言之，亦無以解其罪。</p> |

서 추앙하여 영수(領袖)로 삼고 좋은 벼슬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사(政事)에서는 그와 사사로이 지내는 이를 심어두고 두 번 정사에서는 그와 친하게 지내는 이를 심어서 서로 부지해 갈 세력을 넓히는 계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호(鄭澮)는 곧고 맑은 지조가 그의 할아버지의 풍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한번 오도일에게 거스림을 당하자 먼 하읍(下邑)에 지체(遲滯)되어 있으며, 이수언(李秀彦)은 어질고 착하며 침착하고 후덕한, 대대로 충성과 근면을 전해 받은 사람인데, 한번 오도일을 논박하였다가 시골에 머물러 있게 되었으니, 신은 그옥이 애석하게 여깁니다. 오늘날의 일은 비록 가까운 친척이나 교분이 두터운 친구를 시켜서 말하게 하더라도 그 죄를 해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해명하는 자가 있다면 어찌 임금을 속이고 하늘을 업신여기는 데 그칠 뿐이겠습니까? 마침내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것(9234)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 오도일의 죄를 분명하게 시행하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틀림없이 비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아! 크고 작은 제사에 있어 공경을 다하지 아니할 곳이 없겠지만, 기우제(祈雨祭)에 이르러서는 더욱 조출하고 깨끗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제 사단(社壇)에서 행사하려고 할 때에 작주관(爵酒官) 오도일은 술기운이 안면에 가득 차고 행동거지가 괴이하고 놀라왔다. 아! 술을 금지하는 영(令)을 금방 내렸는데, 자신이 재신(宰臣)이 되었으니 며칠 동안 술을 끊는 것이 무슨 어려운 일이기에 바로 군부(君父) 앞에서 방자하게 몹시 취하기를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으니 보기가 이미 극도로 한심스러웠으며, 엄숙하고 경건히 해야 할 곳에서 얻어지는 일이 있을까 두려워했는데 조금 있다가 정말 음복주(飲福酒)를 얻지르고 말았다. 그 당시 내 마음이 불안하기가 실제로 자신이 얻지른 것과

若有解之者，奚止於欺君慢天而已？終無異於指鹿爲馬矣。今若不明施道一之罪，天必不雨矣。

答曰：“噫！凡大小享祀，何莫非致敬之地，而至於祈雨，尤宜蠲潔也。昨日社壇將事之時，爵酒官吳道一，酒氣滿面，舉措怪駭。噫！禁酒之令才下，則身爲宰臣，數日斷酒，顧日難事，而乃於君父之前，肆然被酒，略無忌憚，所見已極寒心，而肅敬之所，恐有顛覆之舉矣，俄而果顛福酒。其時予心之不安，實無異於自覆也。及見上疏，托以脚氣，隱然自明，其誰欺乎？侍從之臣，執事壇墮者，誰不目見耶？意謂必有糾劾之論，姑且遲待矣。兩司終無一言，今日公議，可謂泯滅矣。頃年親禱之日，度支之長，以顛覆薦俎牲匣就理，則揆以事體，決不可置之。以此爲罪可也，而掇拾排擯之言，遣辭至深，而指鹿爲馬云者，亦涉不韙也。吳道一令金吾拿推焉。”

| | | |
|--|---|---|
| | <p>다름이 없었다. 그런데 상소하여 언급한 것을 보니 다리 기운을 핑계대면서 은연중에 스스로 변명하니, 그 누구를 속이려는 것인가? 시종(侍從)한 신하나 단유(壇墪)9235) 에서 일을 맡은 자로 누가 직접 보지 않았겠는가? 생각하기를 틀림없이 규탄하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우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양사(兩司)에서 끝내 한마디 말도 없었으니, 오늘날 공의(公議)가 없어졌다고 이를 만하다. 지난해 직접 기도하던 날에 탁지(度支)의 장관이 도마에다 올리는 희생 그릇을 엮질렀다고 하여 취리(就理)9236) 하였었으니, 사체(事體)로 헤아려 보면 결단코 방치할 수 없어, 이것으로 죄주는 것이 가하다. 그런데 배척하는 말을 주워 모아 꾸짖은 말이 너무 심하며,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것은 역시 옳지 못한 것이었다. 오도일은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추고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 (康熙) 36년) 5월 12 일(신묘) 3번째기사</p> | <p>대사간 박태순(朴泰淳)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p> <p>“힘써 절약하여 줄이면서 낭비를 억제하되, 곡물(穀物)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국(內局)에서 담그는 술은 약(藥)으로 쓰는 것 외에는 일체 없애고, 지방의 군읍(郡邑)에도 아울러 모두 금단(禁斷)할 것이며, 혼인(婚姻)하는 집안의 신부(新婦)가 으레 장만하는 반찬과 제사에 쓰는 유밀과(油蜜果)와 사성(使星)9255) 의 쌍교마(雙驕馬)·일산(日傘) 등에 관한 일도 풍년 들기를 기한으로 일체 금지시켜 정지하소서. 또 요성(遼省)에 이자(移咨)하여 중강(中江)에서 호시(互市)할 때에 종이·가죽 종류로 곡물(穀物)을 바꾸어다 관서 지방의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게 하소서. 그리고 영변(寧邊)은 지세(地勢)가 요해처인데다 뱃길이 편리하니, 금년부터 시작해서 창고를 나란히 설치하여 강도(江都)와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예와 같이 곡물(穀物)을 모아 뒷날의 기근</p> | <p>○大司諫朴泰淳上疏，大略請：</p> <p>務節損抑浮費，而當自穀物始。內局釀酒藥用外，一切罷之，外方郡邑，竝皆禁斷，婚姻家新婦例饌、祭享所用油蜜果、使星雙驕馬·日傘等事，限年豐一切禁停。且移咨遼省，互市中江，以紙、皮革之類，貿取穀物，以救關西之饑。寧邊地勢要而船路便，自今年始，列置倉庫，募諸穀物，如江都、南漢例，以備日後饑饉，春川、格浦，竝依此設置。卽今大弊，無過於黨論，</p> |

| | | |
|--|---|---|
| | <p>(飢饉)에 대비하게 하고, 춘천(春川)의 격포(格浦)에도 아울러 여기에 의거하여 설치하도록 하소서. 지금 당장의 큰 폐단은 당론(黨論)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한 두 세력이 있는 집안으로 청의(淸議)에 비방받는 자가 근거없는 말과 방자한 의논으로 반드시 조정을 어지럽히려 하고 있습니다. 이견명(李健命) 같은 자는 이사명(李師命)의 종제(從弟)로서 사사로운 혐의를 돌보지 않고 상소하여 대신을 배척하면서 훈신(勳臣)을 죄로 몰아 죽이고 허물을 성주(聖主)에게 돌렸다는 말을 하였으니, 방자하고 지극히 무엄(無嚴)합니다. 견벌(譴罰)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김춘택(金春澤)은 훈척(勳戚)의 자식으로 불량배들과 교분(交分)을 맺어 간사하고도 외람된 온갖 정상이 드러났으니, 금년 봄의 여러 적(賊)들은 모두 그와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상변(上變)할 때에도 그 집안에서 시종드는 하인이 대궐 아래까지 따라왔다가 붙잡혀 곤장을 맞았습니다. 만약 서울에 머물러 있도록 하시면, 마침내 반드시 국가를 흉(凶)하게 하고 집안을 해롭게 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빨리 재처(裁處)하여 물리쳐서 멀리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p> <p>“조목으로 진달한 일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각별히 채택하여 시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견명(李健命)의 상소 내용은 정말 그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은 아니지만, 견벌(譴罰)은 지나치다. 상소 끝부분에 운운(云云)한 것을 어찌 꼭 준거(準據)하여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p> <p>하였다. 비변사에서 복계(覆啓)하기를,</p> <p>“위의 항목에 관한 일은 청컨대 거듭 신칙하여 금단(禁斷)하게 하소서. 변경</p> | <p>一二巨室，見訾淸議者，流言橫議，必欲亂朝著。如李健命，以師命從弟，不顧私嫌，疏斥大臣，有誅戮勳臣，歸咎聖主之語，縱恣無嚴極矣。宜示譴罰。金春澤以勳戚之子，締交無賴，姦濫萬狀，今春諸賊，俱其腹心，上變之時，其家僮人，隨至闕下，見捉受棍。若令留在京輦，終必凶國害家。伏望早加裁處，放而遠之。</p> <p>答曰：“條陳之事，令廟堂各別採施，而李健命之疏語，果非渠所當言，而譴罰則過。疏末云云，何必準信？”備邊司覆啓：“上款事，請申飭禁斷。邊市姑難輕議，設倉事，令道臣條列啓聞。”上判以香醞停進，邊市事，更爲議處。</p> |
|--|---|---|

| | | |
|--|---|---|
| | <p>(邊境)에서 교역하는 것은 아직 경솔하게 의논하기 어려우며, 창고를 설치하는 일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조목으로 열거하여 계문(啓聞)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향온(香醞)9256) 의 진상(進上)을 정지하고 변경의 교역에 관한 일은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라는 것으로 관하(判下)하였다.</p> |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 (康熙) 36년) 5월 25 일(갑진) 1번째기사</p> | <p>율도(栗島)의 굶주린 백성들을 놓아 보냈다. 율도에서 전후하여 죽(粥)을 끓여 구제하는 데로 나아간 수가 남녀를 합하여 8백 75명이었는데, 물고(物故)되었거나 병에 전염된 자를 제하면 남은 수효가 7백여 명이였다. 이때에 이르러 보리를 추수할 시기가 벌써 이르렀다고 하여 그들의 청원을 따라 내보내면서 그 노정[程道]의 멀고 가까움을 따져 각기 양식을 지급하여 보냈다. 그러나 나간 뒤에도 얻어 먹을 곳이 없어 죽은 자가 또한 절반이 넘었다.</p> | <p>○甲辰/放送栗島飢民。 栗島前後就粥之類，男女竝八百七十五名，而除物故染病者，餘數七百餘名。 至是以麥秋已至，從其願出送，而計其程道遠近，各給糧以遣之。 然既出之後，無所得食，死者又過半。</p>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 (康熙) 36년) 7월 3일 (신사) 4번째기사</p> | <p>평안도(平安道)의 감진 어사(監賑御史) 이인엽(李寅燁)이 복명(復命)하였다. 이인엽이 전후하여 곡식 2만 7천 5백 80여 석(石)을 청하여 20고을에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곡물(穀物)이 넉넉하지 않아 실질적인 혜택을 두루 베풀 수 없어 인민(人民)들의 사망(死亡)이 다른 지역의 감절이나 되었다. 그래서 이인엽이 강도(江都)의 곡식은 기한을 물려서 바치게 하며, 노비공(奴婢貢)9319)을 탕감(蕩減)해 주고, 여러 궁가(宮家)에 떼어 준 제언(堤堰)을 혁파하며, 태천(泰川)은 문관(文官)을 뽑아 보내어 여러 고을을 탄압(彈壓)9320) 하게 하고 선비들에게 일을 맡겨 권장하도록 청하자, 비국(備局)에 내렸는데, 기한을 물려서 바치는 일에 대해서는 비국에서 복계(覆啓)하여 윤택하지 말도록 청하니, 임금이 판부(判付)하기를,</p> <p>“백성들의 재력이 틀림없이 미치지 못할 바가 있을 것이니, 병인년9321) 과 정묘년9322) 두 해의 경우는 세금을 징수하고, 을해년9323) 의 경우는 물려</p> | <p>○平安道監賑御史李寅燁復命。 寅燁前後請穀二萬七千五百八十餘石，分給二十邑。 然穀物不敷，實惠不能遍究，人民死亡，倍於他處。 寅燁請退捧江都穀，蕩減奴婢貢，罷諸宮家堰，泰川以文官差送，以憚壓諸邑，勸課士子。 下備局。 退捧事，備局覆啓請不許，上判曰：“民力必有所不逮，丙、丁兩年則收捧，乙亥則退捧，蕩減事，許之，罷堰事，令定年限出給，泰川事，許之。</p> |

| | | |
|---|--|---|
| | <p>서 바치게 하는 것과 탕감해 주는 것을 허락하고, 제언(堤堰)을 혁파하는 일은 연한(年限)을 정하여 내어 주도록 하며, 태천(泰川)의 일은 이를 허락한다.”</p> <p>하였다.</p> |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 (康熙) 36년) 8월 3일 (경술) 1번째기사</p> | <p>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유상운(柳尙運)의 말로 경기·강원·충청·황해 네 도(道)의 적곡(糶穀)9342) 및 무릇 대미(大米)로 상납(上納)해야 하는 데 관계되는 것은 그 절반을 소미(小米)9343) 로 대봉(代捧)하도록 하고, 사산(四山)의 말라 죽은 소나무는 모두 베어다 팔도록 하고, 중인(中人)이나 서얼(庶孽)출신으로 벼슬길에 통한 자는 찰방(察訪)을 지낸 뒤에 수령으로 임명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명하였다. 유상운이 말하기를,</p> <p>“정시(庭試)와 알성시(謁聖試)의 과거는 초시(初試)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응시하는 선비들이 몹시 북적거리며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 동안에 급제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컨대 백일장(白日場)의 규례에 의거하여 경외(京外)의 유생(儒生)을 합쳐서 부(賦)와 표(表) 두 가지 제목을 내어 6백 인을 시취(試取)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시(庭試)에 응시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입시(入侍)한 여러 신하들에게 하문(下問)하였다. 신완(申琬)과 이유(李濡)는 말하기를,</p> <p>“초시(初試)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당합니다.”</p> | <p>○庚戌/引見大臣、備局諸臣。以領議政柳尙運言，命京畿、忠淸、江原、黃海四道糶穀及凡係以大米上納者，其一半，並許以小米代捧，四山枯松，盡斫發賣，中人、庶孽通仕者，經察訪後，許除守令。尙運言：“庭試、謁聖之科，不設初試，故舉子甚紛沓。且必於一日內出榜，故多未精察。請依白日場之規，合京外儒生，出賦、表兩題，試取六百人，使赴庭試。”上問入侍諸臣。申琬、李濡以設行為宜，李彥綱難之，上命議于諸大臣。南九萬以爲：“稍廣六百額數，設行為宜。”尹趾善、申翼相、徐文重，俱以爲不可行，上以群議不一，命姑置之。咸鏡北道監賑御史趙泰耆復命，上命入侍，細問其賑政、農形。泰耆請差出北評事，以爲彈壓之地。時以年凶，權停差遣故也。又請設行別科，以聳士民，並許之，別科則以荐飢，命於明秋設</p> |

| | | |
|---|---|--|
| | <p>하였는데, 이언강(李彦綱)은 그것이 어렵다고 하자, 임금(李熙)이 여러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남구만(南九萬)은 말하기를,</p> <p>“6백 인의 정원보다 조금 넓혀서 설행(設行)하는 것이 적당합니다.”</p> <p>하고, 윤지선(尹趾善)·신익상(申翼相)·서문중(徐文重)은 모두 말하기를,</p> <p>“시행할 수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여러 사람의 의논이 한결같지 않다고 하여 우선 그대로 두도록 명하였다. 함경북도(咸鏡北道)의 감진 어사(監賑御史) 조태구(趙泰耆)가 복명(復命)하니, 임금이 입시하도록 명하고, 그곳의 진휼 정책과 농사 형편을 상세하게 하문(下問)하자, 조태구가 북평사(北評事)를 차출(差出)하여 탄압(彈壓)하는 바탕을 삼도록 청하였는데, 당시 흉년이 들었다고 하여 임시로 차출하여 보내던 것을 정지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별과(別科)를 설행하여 사민(士民)들을 권장하도록 청하자, 모두 허락하였는데, 별과의 경우는 기근(飢饉)이 거듭 든 것으로 명년(明年) 가을에 설행하도록 명하였다.</p> | <p>行。</p>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 (康熙) 36년) 8월 10일(정사) 2번째기사</p> | <p>예조(禮曹)에서 여러 도(道)의 삭선(朔膳)9348) 과 삼명일(三名日)의 물선(物膳)을 앞서 금년 가을까지 기한하여 재단해서 감해 주도록 명하였는데, 10월 초하루부터 옛날처럼 회복시킬 것을 청하니, 임금이 또 명년 가을까지 기한하여 그대로 감하도록 명하였다.</p> | <p>○禮曹以諸道朔膳、三名日物膳，前命限今秋裁減，請自十月朔復舊，上又命限明秋仍減。</p>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 (康熙) 36년) 9월 13일(경인) 1번째기사</p> | <p>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최석정(崔錫鼎)이 말하기를,</p> <p>“큰 흉년을 당한 해에는 비용을 줄이고 절약하기에 힘쓰는 것이 당연한데, 주</p> | <p>○庚寅/引見大臣、備局諸臣。右議政崔錫鼎言：“大侵之歲，當務省約，無主管人，有難統理。請別設裁省廳，差出堂上，使之專管。”上不許設廳，</p> |

| | | |
|--|---|--|
| | <p>장하여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통제하여 다스리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컨대 별도로 재성청(裁省廳)을 설치하고 당상관(堂上官)을 차출(差出)하여 오로지 관장하게 하소서.”</p> <p>하였으나, 임금의 재성청의 설치를 허락하지 않고, 단지 비국(備局)의 당상관으로 하여금 겸해서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뒤에 최석정이 또 청하였지만, 끝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이 비국의 당상관 이유(李濡)·이광하(李光夏)로 하여금 맡아서 관리하도록 청하고, 호조 판서 이세백(李世白)과 선혜청(宣惠廳)의 당상관 민진장(閔鎭長)·최규서(崔奎瑞)가 참여하여 그 일을 논하니, 그대로 따랐다. 최석정이 또 전 목사(牧使) 조형기(趙亨期)도 함께 참여시키도록 청하였다. 최석정이 서로(西路)에는 두 차례의 칙사(勅使)의 행차를 겪어 백성들의 구실이 치우치게 과중하다 하여 거둬들일 쌀을 헤아려서 감해 주기를 청하니, 두 말씩 감해주도록 명하였다. 또 경기와 호서의 대동미(大同米)를 감해주도록 청하고, 승지 김홍복(金洪福)도 말을 하자, 임금이 정축년(9358) 조(條)의 경기의 춘추(春秋) 양등(兩等)과 호서의 대동미로 거둬들이는 쌀 여섯 말씩을 감해 주도록 명하였다.</p> | <p>只令備局堂上兼管。 其後錫鼎又請之，終不許。 領議政柳尙運，請令備局堂上李濡、李光夏句管， 戶曹判書李世白、宣惠廳堂上閔鎭長、崔奎瑞，參論其事，從之。 錫鼎又請以前牧使趙亨期同參。 錫鼎以西路經兩勅行，民役偏重，請量減收米，命減二斗。 又請減畿、湖大同， 承旨金洪福亦以爲言，上命除丁丑條京畿春秋兩等，湖西減大同收米六斗。</p>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康熙) 36년) 9월 28일(을사) 1번째기사</p> | <p>좌의정 윤지선(尹趾善)이 천둥의 변고로 상소하여 스스로 인책(引責)하고, 인해서 양남(兩南)9366) 의 옛 적곡(糶穀)을 적당하게 헤아려 감해서 바치게 하기를 청하고, 또 말하기를,</p> <p>“충청 감사 신후명(申厚命)은 친구(親舊)에게 사사로이 도살(屠殺)·판매하는</p> | <p>○乙巳/左議政尹趾善以雷變上疏引咎，仍請兩南舊糶，量宜減捧，且言：“忠清監司申厚命，許親舊私設屠販，平安監司閔鎭周、黃海監司李德成，冒禁乘驕，宜有責罰。” 上優批納之，命削黜</p> |

| | | |
|--|--|--|
| | <p>시설을 갖추도록 허락하였고, 평안 감사 민진주(閔鎭周)와 황해 감사 이덕성(李德成)은 금지하는 것을 무릅쓰고 가마를 탔으니, 마땅히 책벌(責罰)이 있어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을 내려 받아들여 민진주·이덕성은 삭출(削黜)하고, 신후명은 잡아다 추문하고, 옛 적곡을 감해서 바치게 하는 일은 묘당(廟堂)에 내려서 시행하도록 명하였다.</p> | <p>鎭周、德成，拿問厚命，減糴事，下廟堂施行。</p>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康熙) 36년) 10월 5일(임자) 1번째기사</p> | <p>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유상운이 경기와 호서의 여러 가지 신역(身役)을 전부 감하게 한 뒤에는 진휼청(賑恤廳)에서 당연히 그것을 대신 지급해야 하는데, 추심하여 옮겨 올 곳이 없다는 것으로 강도(江都)의 은(銀) 2만 냥(兩)과 면포(綿布) 4백 동(同), 남한(南漢)의 면포 3백 동을 진휼청으로 옮겨 보내도록 청하였다. 또 강도의 면포 1백여 동을 경기와 호서에 나누어 주어 진구(賑救)하는 자료로 삼되, 입본(立本)9373) 을 구하지 말고, 곡식을 사서 그대로 곡식을 보관하였다가, 해를 기다려 면포로 환산하여 바치도록 청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병조 판서 이세화(李世華)가 윤지완(尹趾完)을 주급(周急)9374) 하도록 청하자, 우의정 최석정(崔錫鼎)이 말하기를,</p> <p>“주급(周急)은 매년 번거롭게 청할 수 없으니, 월廩(月廩)을 잇따라 지급하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그가 사는 고을의 전세(田稅)를 덜어서 보내도록 명하였다. 이보다 먼저 경상도와 전라도의 감사(監司)가 주변 산(山)의 마른 소나무를 베어다 소금을 구워 진구하는 데 보충하도록 계청하였는데, 남구만이 한 번 허락하게 되면 그 형세가 틀림없이 지나치는 데 이를 것이므로, 결</p> | <p>○壬子/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柳尙運， 以畿、湖諸般身役全減之後， 自賑廳當給其代， 而無推移處， 請以江都銀二萬兩·綿布四百同、南漢綿布三百同， 移送賑廳。 又請分給江都綿布百餘同於畿、湖， 以爲賑資， 勿責立本， 使之貿穀， 仍以穀捧留， 待年還作綿布以納， 竝從之。 兵曹判書李世華請周急尹趾完， 右議政崔錫鼎曰：“周急則不可每每煩請， 宜以月廩繼給。” 上從之， 命以本邑田稅除送。 先是， 慶尙、全羅監司， 啓請斫邊山枯松， 煮鹽補賑， 南九萬以爲一許之， 則勢必濫及， 決不可許， 遂不許其請。 至是， 判尹閔鎭長發之於榻前， 上問諸臣。 柳尙運、尹趾善欲許之， 群議多言可許， 崔錫鼎難之， 李世華尤力言其不可曰：“錢、穀則雖傾困倒廩， 若遇</p> |

| | | |
|--|---|--|
| | <p>단코 허락할 수 없다고 하여, 마침내 그 청을 허락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판윤(判尹) 민진장(閔鎭長)이 탐전(榻前)에서 그 말을 꺼내자, 임금(上)이 여러 신하들에게 하문(下問)하였다. 유상운·윤지선(尹趾善)은 그것을 허락하게 하려고 하고, 여러 사람의 의논도 허락할 만하다고 말하는 이가 많았는데, 최석정은 그것을 어렵게 여겼으며, 이세화는 더욱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극력 말하기를,</p> <p>“돈과 곡식의 경우는 비록 곳간의 것을 모두 기울여 쓰더라도 풍년을 만날 것 같으면 1, 2년 사이에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재(船材)는 수십 년을 기르지 않으면 이룩할 수 없는 것이니, 하루아침에 벌거숭이 산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허락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윤지선이 말하기를,</p> <p>“수양(收養)의 입안(立案)9375) 은 지난번에 이미 막았으나, 지금은 굶주린 백성들이 곳곳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 그 형세가 허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도하(都下)부터 허락하고 잇따라 경기와 호서에 허락하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p> <p>하고, 유상운도 말하기를,</p> <p>“명년 봄에 경기와 호서에 허락하는 것이 마땅하며, 지금은 우선 경조(京兆)로 하여금 오부(五部)에 분부하여 수양(收養)을 원하는 사람을 뽑아내어 입안(立案)을 만들어 주게 하소서.”</p> | <p>豐登，一二年間可以復舊，船材則非累十年長養，不能成，不可一朝赅之。”上命勿許。趾善言：“收養立案，頃已防塞，而即今飢民，在在顛連，其勢不得不許。宜先許都下，繼許畿、湖。”尚運亦言：“明春當許畿、湖，而即今先令京兆，分付五部，募出願養人，成給立案。”從之。錫鼎以無屬處，請陞出蔡明胤、楊萬榮六品。兩人俱以文參下不仕故也。上從之。</p> |
|--|---|--|

| | | |
|---|---|--|
| | <p>하니, 그대로 따랐다. 최석정이 소속된 곳이 없다는 것으로 채명윤(蔡明胤)·양만영(楊萬榮)을 6품(品)으로 승진시켜 출사하도록 청하였다. 두 사람은 모두 문관(文官) 참하관(參下官)으로 출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康熙) 36년) 10월 13일(경신) 2번째기사</p> | <p>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서울 안의 적곡(糶穀) 2천 석(石)의 절반은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하고, 훈련 대장(訓練大將) 신여철(申汝哲)을 추고(推考)하게 하였으며, 한 달에 세 차례씩 전례대로 습진(習陣)하게 하고, 금군(禁軍)도 한 달에 한차례씩 습진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제방미(除防米)9385 를 거두어 진휼청(賑恤廳)으로 옮겨 보내도록 명하였는데, 대신 윤지선(尹趾善)·최석정(崔錫鼎) 및 병조 판서 이세화(李世華)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또 윤지선의 말을 따라 충청 감사 김세익을 체임하도록 명하였는데, 대간의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p> | <p>○引見大臣、備局諸臣。命都下糶穀二千石，折半以錢代捧，推考訓練大將申汝哲，使一朔三次依例習陣，禁軍亦使一朔一次習陣。命停武科出身赴防，收除防米，移送賑廳。從大臣尹趾善、崔錫鼎及兵曹判書李世華言也。又從趾善言，命遞忠清監司金世翊。以其有臺言也。</p>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康熙) 36년) 10월 17일(갑자) 3번째기사</p> | <p>한성부(漢城府)와 진휼청(賑恤廳)에 명하여 도로에서 유랑하는 거지를 가려내어 지의(紙衣)와 짚자리를 각각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승지(承旨) 김홍복(金洪福)이 상소하여 청한 것을 따른 것이었다.</p> | <p>○命漢城府、賑恤廳，抄出道路流丐，各給紙衣、秸席。從承旨金洪福疏請也。</p>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康熙) 36년) 11월 14일(경인) 1번째기사</p> | <p>평안 감사 이정명(李徵明)이 아뢰기를, “본도(本道)의 논농사가 더욱 흉년이 들었으므로, 명년 봄에 씨앗을 뿌릴 방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서(海西)의 황주(黃州)·봉산(鳳山)·재령(載寧)·신천(信川)·안악(安岳)·장련(長連)·은울(殷栗) 등의 고을에는 논곡식이 자못 풍년이 들었으니, 청컨대 일곱 고을의 벼를 옮겨다 종자(種子)를 삼게 하고, 본도에서 바칠 소미(小米)9413 를 추심하여 옮겨다 갖게 해서 전세(田稅)에 충당하게 하소서.”</p> | <p>○庚寅/平安監司李徵明啓言：“本道水田尤失稔，明春無播種之路。海西黃州、鳳山、載寧、信川、安岳、長連、殷栗等邑，水田之穀頗登，請移七邑之租爲種，而以本道所捧小米，推移還償充田稅。”備局覆啓施行。</p> |

| | | |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 (康熙) 36년) 12월 2 일(무신) 1번째기사</p> | <p>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복계(覆啓)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p> <p>사수(死囚)의 초복(初覆)을 행하였다. 영의정 유상운이 아뢰기를,</p> <p>“영남(嶺南)의 면포(綿布) 1백 동(同)을 도내(道內)의 바닷가 고을의 대동법(大同法)에 의해 쌀로 환산하여 바쳐야 할 곳에다 나누어 주고, 면포로써 쌀을 대신하여 쇠마(刷馬) 등의 값으로 활용하게 하고, 유치(留置)시켜 둔 저치미(儲置米)는 봄이 되거든 바치도록 하여 명년 봄의 선혜청(宣惠廳) 용도(用度)로 삼게 하소서. 그리고 호남(湖南)의 면포 1백 동도 영남의 방법에 의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민진장(閔鎭長)이 양호(兩湖)9420)의 각종의 쌀과 경기 감영(京畿監營)의 각기 쓰이는 쌀값을 모두 신해년(9421)의 예(例)에 의거하여 재량해서 감해 주도록 청하니, 그것도 그대로 따랐다. 대사간(大司諫) 한성우(韓聖佑)가 이의만(李宜晩)의 상소 가운데 이른바 이씨(李氏) 성(姓)을 가진 사람의 일을 추핵(推覈)하기를 논청(論請)하고, 이어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을 아직 조사해 내지 못한 것으로 형조(刑曹)의 당상관(堂上官)과 낭청(郎廳)을 주고(推考)하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p> | <p>○戊申/行死囚初覆。 領議政柳尙運曰：“嶺南綿布百同， 分給道內沿海邑大同作米處， 使以布代米， 用之於刷馬等價， 其留儲米， 趁春上納， 以爲明春宣惠廳用度。 湖南綿布百同， 亦依嶺南爲之何如？” 上從之。 刑曹判書閔鎭長請兩湖各樣米、畿營各需米價， 並依辛亥年例裁減， 亦從之。 大司諫韓聖佑， 以李宜晩疏中所云李姓人事， 論請推覈， 仍以李姓人尙未查出， 請推考刑曹堂郎， 從之。</p>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 (康熙) 36년) 12월 11 일(정사) 1번째기사</p> | <p>옥당(玉堂)의 관원을 소대하였다. 강관 김시걸(金時傑)이 아뢰기를,</p> <p>“들으니, 강계 부사(江界府使) 신건(申鍵)이 인삼(人蔘)을 조신(朝紳)들에게 나누어 선물했다는 이야기가 떠들썩합니다. 청컨대 의금부로 하여금 엄하게 형신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보다 먼저 좌의정 윤지선이 김시걸이 사복시</p> | <p>○丁巳/召對玉堂官。 講官金時傑曰：“聞江界府使申鍵， 分餽人蔘於朝紳， 傳說譁然。 請令禁府， 嚴刑得情。” 上從之。 先是， 左議政尹趾善， 陳時傑以司僕正， 私役本寺軍， 請罷職。 時傑後陳疏自咎， 語觸趾善， 趾善怒， 仍言：“時傑事多不謹。 臣不欲索言，</p> |

| | | |
|---|---|--|
| | <p>정(司僕寺正)으로 사사로이 본시(本寺)의 군사를 부렸다고 진달하고 과직하도록 청했는데, 뒤에 김시걸이 상소하여 자신을 책망하면서 말이 윤지선에게 저촉되었으므로, 윤지선이 노여워하여 말하기를,</p> <p>“김시걸은 조심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신이 허물을 찾아내어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선 미미한 일을 가지고 경계하는 것입니다.”</p> <p>하였는데, 김시걸이 이 때문에 오랫동안 칩거(蟄居)한 채 출사하여 직임을 말지 못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출사하여 신건(申鍵)의 일을 진달하였는데, 대체로 윤지선도 신건에게 인삼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윤지선을 골탕먹이려 한 것이니, 당시의 의논이 그를 야박하게 여겼다.</p> | <p>姑以微事警之。”時傑因此久蟄，不得出而供職。至是始出，陳鍵事，蓋以趾善，亦受鍵蓼，故欲以此燠趾善，時議薄之。</p>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 (康熙) 36년) 12월 15 일(신유) 1번째기사</p> | <p>좌의정 윤지선, 우의정 최석정, 영돈녕부사 윤지완, 병조 판서 이세화, 예조 판서 신완(申琬), 우윤(右尹) 김석연(金錫衍), 한성군(韓城君) 이기하(李基夏), 평안도 관찰사 이정명(李徵明), 사간 여필용(呂必容), 교리 조태체가 신건(申鍵)에게 인삼을 선물로 받았다는 일을 가지고 잇따라 상소하여 자수하였고, 동래 부사 박권(朴權)도 이 때문에 자수하여 체직(遞職)되고, 부임하지 못하였다.</p> | <p>○辛酉/左議政尹趾善、右議政崔錫鼎、領敦寧尹趾完、兵曹判書李世華、禮曹判書申琬、右尹金錫衍、韓城君李基夏、平安觀察使李徵明、司諫呂必容、校理趙泰采，以受申鍵餽蓼事，連上疏自首，東萊府使朴權，亦以此自首，遞職不赴。</p> |
| <p>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 (康熙) 36년) 12월 20 일(병인) 3번째기사</p> | <p>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세백(李世白)이 상소하여 판의금부사를 해임해 주기를 빌기를,</p> <p>“지난해 겨울에 신건(申鍵)이 신에게도 다섯 냥(兩)의 인삼(人蔘)을 선물하였었는데, 우연하게도 받지 않았습시다. 그것은 신이 사양하거나 받는 절제가 엄해서가 아니고, 대체로 서로 아는 친분의 정도가 본래 알았기 때문이었고, 또 금령(禁畵)을 거듭 밝혔고, 신이 분에 넘치게 평안도 관찰사의 직책을 말</p> | <p>○吏曹判書李世白上疏，乞解判義禁曰：“上年冬申鍵亦於臣，餽五兩蓼，而偶然不受。非臣嚴於辭受之節，蓋以相識素淺，且其禁令申明。是臣忝在西藩時事，故適如此耳。今忝金吾，行當按治其人。究覈之際，自不無難安之嫌矣。”答以勿辭行公。</p> |

| | | |
|---|---|--|
| | 고 있을 때의 일이었기 때문에, 마침 이와 같이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부의 직책을 맡기셨으니, 업무를 집행하게 되면 그 사람을 조사하여 다스려야 합니다. 사실을 구핵(究覈)하는 즈음에 스스로 마음이 편하지 못한 혐의가 없지 않습니다.” | |
| | 하니, 사양하지 말고 공무를 행하라는 것으로 답하였다. | |
| 숙종 31권, 23년 (1697 정축 / 청 강희 (康熙) 36년) 12월 22 일(무진) 3번째기사 | 승릉(崇陵)9448) 에 실화(失火)하여, 왕후(王后)의 능 윗부분으로 불길이 번져서 탔다. 임금의 의복을 갈아 입고 정전(正殿)을 피하여 거처하였으며, 수릿상의 반찬 가짓수를 줄이게 하고, 3일 동안 음악 연주를 중지하게 하였는데, 조정에서 문안(問安)하였다. 임금이 변고를 일으킨 사람을 기한을 정하여 체포하도록 명하였다. | ○崇陵失火，延燒王后陵上。上變服避正殿，減膳撤樂三日，朝廷問安。上命作變人，刻期捕捉。 |
| 숙종 32권, 24년 (1698 무인 / 청 강희 (康熙) 37년) 1월 2일 (무인) 2번째기사 | 청(淸)나라에서 개시(開市)를 허락하고는 속미(粟米)9456) 4만 석을 수로(水路)와 육로(陸路)로 나누어 운반하여, 이부(吏部)·호부(戶部)의 두 시랑(侍郎)으로 하여금 나와서 시장(市場)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 ○淸許開市，粟米四萬石，分運水、陸，使其吏、戶部兩侍郎，出來管市。 |
| 숙종 32권, 24년 (1698 무인 / 청 강희 (康熙) 37년) 1월 6일 (임오) 1번째기사 | 우의정 최석정(崔錫鼎)과 호조 판서 이유(李濡)가 청대(淸對)하고 접제(接濟)9462) 하기 위하여 개시(開市)하는 일을 품정(稟定)하였다. 청(淸)나라 좁쌀 4만 석을 서울·기호(畿湖)9463) ·서로(西路)에 각각 1만 석씩 나누어 주고, 좁쌀을 보내 준 일로 사은사(謝恩使)를 7월 초에 차출해 보내도록 명하였는데, 이는 모두 최석정이 말하였기 때문이다. | ○壬午/右議政崔錫鼎、戶曹判書李濡請對。爲接濟開市事稟定也。命以淸米四萬石，都下畿、湖、西路各分給一萬石，以給米事，差送謝恩使於七月初。俱以錫鼎之言也。 |
| 숙종 32권, 24년 (1698 무인 / 청 강희 (康熙) 37년) 1월 15 일(신묘) 2번째기사 |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 최석정(崔錫鼎)이 호미(胡米)9476) 로 서울의 위급함을 먼저 구제할 것을 청하자, 예조 판서 신완(申琬)이 말하기를, “금번에 곡식을 청한 것은 오로지 관서(關西) 지방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만약 서울 백성들을 먼저 구제한다면 관서 지방의 백성들이 반드시 | ○引見大臣、備局諸臣。右議政崔錫鼎，請以胡米，先救都下之急，禮曹判書申琬曰：“今此請穀，專爲西民，而今若先救都民，則西民必缺望。”上曰：“此非公然白奪。前頭當代給矣。”錫鼎請更問本道後，議定其數， |

| | | |
|--|---|---|
| | <p>실망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이는 까닭없이 공연히 빼앗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마땅히 대체(代替)하여 지급할 것이다.”</p> <p>하였다. 최석정이 본도(本道)에 다시 물어본 뒤에 그 수량(數量)을 의논하여 확정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임금이 형판(刑判)과 관윤(判尹)의 자리가 비었는데도 정경(正卿) 중에 마땅한 인물이 없다 하여 최규서(崔奎瑞)·이현석(李玄錫) 두 사람을 승진시켜 비의(備擬)하도록 명하였다. 병조 판서 이세화(李世華)가 말하기를,</p> <p>“경기 수사(京畿水使) 민섭(閔暹)이 교동(喬桐)이 장단(長湍)에 소속된 까닭으로 자신이 수사(水使)가 되었으면서도 언제나 도내(道內)의 수령(守令)에게 첩정(牒呈)9477) 하는 것은 사체(事體)가 미안하며, 바다가 막힌 지역에 문서(文書) 보고가 왕래하는 것도 대단히 불편하므로, 교동에 독진(獨鎭)의 토포사(討捕使)를 별도로 설치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청컨대 대신(大臣)에게 하문(下問)하소서.”</p> <p>하니, 최석정이 말하기를,</p> <p>“체면에 구애되는 것이 참으로 보고한 바와 같으니, 교동에 토포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 <p>上可之。 上以刑判、判尹有闕，而正卿中乏人，命以崔奎瑞、李玄錫二人陞擬。 兵曹判書李世華言：“京畿水使閔暹，以喬桐屬於長湍，身爲水使，每牒呈於道內守令，事體未安，隔海之地，文報往來，亦甚難便，故喬桐別設獨鎭討捕使爲請，請下詢大臣。” 錫鼎曰：“體面妨礙，誠如所報。 喬桐別設討捕使爲好。” 上從之。 校理趙泰采，極陳論議携貳之害，請於前頭朝參卿士咸集時，親加勅厲，上曰：“此非一番朝參所可責諭。 若在下者，常以公字自持，則是非不眩，而國有庶幾之望矣。”</p> |
|--|---|---|

| | | |
|--|--|---|
| | <p>하자,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교리 조태채(趙泰采)가 논의(論議)가 나뉘어지는 해로움을 극력 진달하고, 앞으로 조참(朝參)에 경사(卿士)가 모두 모인 때에 친히 계척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이것은 단 한 번 조참에 책망하여 하유(下諭)할 일이 아니다. 만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공(公)’이란 글자로 자신을 지킨다면 시비가 어지럽지 않게 되어 나라가 어느 정도 희망이 있을 것이다.”</p> <p>하였다.</p> | |
| <p>숙종 32권, 24년 (1698 무인 / 청 강희 (康熙) 37년) 1월 21 일(정유) 1번째기사</p> | <p>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거둥하여 조참(朝參)을 거행하였다. 우의정 최석정(崔錫鼎)이 죄로 축출당한 한편의 사람들을 소석(疏釋)하고 선발하여 임용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후일 등대(登對)할 때에 다시 여러 대신(大臣)들에게 문의(問議)하여 정탈(定奪)해서 초계(抄啓)하라.”</p> <p>하였다. 응교 김시걸(金時傑)이 권농 어사(勸農御史)를 여러 도(道)에 차출(差出)하여 보낼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각도(各道)의 도사(都事)로서 삼사(三司)에 출입한 사람을 각별히 선택 차출해서 보내고 권농 어사도 겸임하도록 하라.”</p> <p>하였다. 호조 판서 이유(李濡)가 서울에서도 소를 도살(屠殺)하는 것을 아울러 금지하고 반인(泮人)9479) 들도 역시 2개월을 한정하여 도살을 금지하며, 호미(胡米)가 도착한 뒤에 2천 석을 내어 1개월마다 5백 석씩 나누어 지급해</p> | <p>○丁酉/上御仁政門，行朝參。右議政崔錫鼎請疏釋一邊罪黜人，以爲調用之地，上曰：“後日登對時，更爲問議諸大臣，定奪抄啓。”應教金時傑，請差遣勸農御史於諸道，上曰：“各道都事，別擇三司出入之人差遣，令兼勸農御史。”戶曹判書李濡，請竝禁京中宰牛，泮人亦限二朔禁屠，胡米來到後，許出二千石，每一朔分給五百石，以濟其生理，上從之。</p> |

| | | |
|--|--|---|
| <p>숙종 32권, 24년 (1698 무인 / 청 강희 (康熙) 37년) 2월 9일 (갑인) 1번째기사</p> | <p>그들의 생활을 구제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p> <p>황감(黃柑)을 반사(頒賜)하고 반궁(泮宮)9492) 에서 선비들을 시험보였다. 수석(首席)을 차지한 유생(儒生) 이만견(李晩堅)은 바로 전시(殿試)에 응시하도록 명하였다.</p> | <p>○甲寅/頒柑，試士于泮宮。 居首儒生李晩堅，命直赴殿試。</p> |
| <p>숙종 32권, 24년 (1698 무인 / 청 강희 (康熙) 37년) 2월 20 일(을축) 1번째기사</p> |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이에 앞서 우의정 최석정(崔錫鼎)이 한쪽 사람도 선발하여 쓸 것을 진달하니, 임금이 대신(大臣)에게 문의(問議)해서 정탈(定奪)하여 초계(抄啓)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최석정이 다시 순문(詢問)하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좌의정 윤지선(尹趾善)이 말하기를,</p> <p>“명의(名義)에 관계된 자를 제외하고는 해조(該曹)에서 마땅히 전례(前例)에 따라 선발하여 임용할 뿐입니다. 지금 만약 별도로 초계(抄啓)한다면, 입참(入參)한 사람은 필시 편안하지 못한 생각이 없지 않을 것이며, 누락된 사람도 역시 영구히 버림받는 한탄이 있을 것 같으니, 조정(朝廷)의 사체(事體)가 아마도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p> <p>하고,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서문중(徐文重)도 역시 윤지선과 같이 말하였다. 최석정이 또 말하기를,</p> <p>“금번에 석방된 사람도 또한 많습니다. 비록 일시에 다 쓸 수는 없어도 그 중에서 혹 능력을 인정받거나 혹 청백(淸白)으로 이름이 난 사람들은 마땅히 별도로 선발해 써야 할 것 같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그가 어떤 사람들이냐고 묻자, 최석정이 이서우(李瑞雨)는 청백</p> | <p>○乙丑/引見大臣、備局諸宰。 先是，右議政崔錫鼎，以一邊人調用事陳達，上令問議大臣，定奪抄啓。 至是錫鼎，復請詢問。 左議政尹趾善以爲：“關係名義者外， 該曹惟當循例調用而已。 今若別爲抄啓，則入參者必不無難安之意， 見漏者亦似有永棄之嘆。 朝家事體，恐不當如是矣。” 判敦寧府事徐文重，亦如趾善言。 錫鼎又言：“卽今蒙放者亦多。 雖不能一時盡用， 其中或以才諳見稱，或以淸白著名者，似當別爲調用。” 上問是爲誰人，錫鼎薦李瑞雨淸白過人，權愈持身頗謹，李鳳徵居官稱職，上命寢抄啓，特令該曹，廣加調用。 持平尹趾仁啓曰：“畿內賑民之資，只恃糶穀，而各邑守令，或捧空殼之租， 虛張會計之數， 惟冀罪責之苟免，不顧賑政之無實。 請依年前定奪，發遣京官，明加究覈，其所捧租尤甚不實之守令，從重論罪，仍令賑廳，別爲</p> |

| | | |
|---|---|--|
| | <p>함이 남보다 뛰어나고, 권유(權愈)는 몸가짐이 펴 조심스러우며, 이봉징(李鳳徵)은 벼슬살이를 함에 직책을 완수하였다고 천거하니, 임금이 초계(抄啓)를 정지하도록 명하고, 특별히 해조(該曹)로 하여금 널리 선발해 쓰도록 하였다. 지평 윤지인(尹趾仁)이 아뢰기를,</p> <p>“경기(京畿) 안의 백성들을 진휼(賑恤)하는 자료는 다만 조곡(糶穀)만 믿고 있는데, 각읍(各邑) 수령(守令)들이 간혹 빈 껌데기 벼를 거둬들여 거짓으로 회계(會計) 숫자만 채워, 오직 죄책(罪責)이나 구차스럽게 모면하기를 바라고 진휼하는 정사(政事)가 부실(不實)한 것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청컨대 연전(年前)의 정탈(定奪)에 의하여 경관(京官)을 보내어 명백하게 조사하도록 해서 그 거두어들인 벼가 더욱 심하게 부실한 곳의 수령은 중중 논죄(從重論罪)하고, 이어서 진휼청(賑恤廳)으로 하여금 별도로 참작해서 곡식을 본현(本縣)에 지급하여 균일하게 구제하도록 방도를 세우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 <p>酌給穀物於本縣，以爲均一救濟之道。”上從之。</p> |
| <p>숙종 32권, 24년 (1698 무인 / 청 강희 (康熙) 37년) 3월 10일(을유) 1번째기사</p> |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청백리(清白吏)로 뽑힌 사람의 처자(妻子)로서 가난하여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휼청(賑恤廳)으로 하여금 을해년(9518)의 전례에 의하여 녹미(祿米)를 주어 곤궁함을 구휼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판윤(判尹) 민진장(閔鎭長)의 소청에 따른 것이다.</p> | <p>○乙酉/引見大臣、備局諸臣。清白吏被抄人妻子，貧不能自存者，令賑恤廳，依乙亥年例，廩給周急。從判尹閔鎭長請也。</p> |
| <p>숙종 32권, 24년 (1698 무인 / 청 강희 (康熙) 37년) 4월 1일(을사) 1번째기사</p> | <p>사헌부에서 논계하기를,</p> <p>“금산(禁山)의 마른 소나무를 내다 파는 것은 대개 진휼에 보충해 쓰려는 뜻인데, 주관하는 낭청(郎廳)이 이를 점검하여 살필 생각은 아니하고, 한 장의 첩문(帖文)에도 여러 날을 두고 마구 찍어 낸 나무를 헤아린 것이 없으며, 친</p> | <p>○朔乙巳/憲府論：“禁山枯松發賣，概是補賑之意，而主管郎廳，不思檢察，一帖累日，亂斫無算，親踈別價，貧殘受害。下吏又從而作奸，潛作帖文，斫賣屋材，請漢城府當該郎廳汰去。”</p> |

| | | |
|--|--|---|
| | <p>소에 따라 값을 달리하니, 가난하고 쇠잔한 백성들이 해를 입습니다. 서리배(胥吏輩)도 또한 부정을 범하여 몰래 첩문을 만들어 집 제목을 찍어내어 파니, 청컨대 한성부(漢城府)의 해당 낭청을 도태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 <p>從之。</p> |
| <p>숙종 32권, 24년 (1698 무인 / 청 강희(康熙) 37년) 4월 5일 (기유) 1번째기사</p> | <p>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고, 강화(江華)의 쌀 2천 석을 옮겨 한강 이남의 여러 고을에 나누어 주고, 육로로 운반해 온 북미(北米) 2천 석은 호서(湖西) 지방에 나누어 주고, 6천 석은 기전(畿甸) 지방에 나누어 주되, 가을 수확을 기다려 모곡(耗穀)9530) 을 빼고 대미(大米)9531) 로 바꾸어 강화도로 수송하여 남부하도록 명하니, 모두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의 말을 따른 것이다. 부응교 이건명(李健命)이 김세흠(金世欽)이 정시운(丁時潤)의 말을 주워 모아 온 세상을 크게 기망한 상황을 갖추어 아뢰니, 임금의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장령 김德基(金德基)가 논계(論啓)하여 김세흠을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말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p> | <p>○己酉/引見大臣、備局諸臣。 命移江都米二千石，分給漢南諸邑，陸運北米二千石，劃給湖西，六千石劃給畿甸，待秋成，除耗換作大米，使輸納江都。 皆從領議政柳尙運言也。 應教李健命，盛陳金世欽掇拾時潤餘論，厚誣一世之狀，上是其言。 掌令金德基論啓，請世欽罷職不敍，允之。</p> |
| <p>숙종 32권, 24년 (1698 무인 / 청 강희(康熙) 37년) 4월 10일(갑인) 1번째기사</p> | <p>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우의정 최석정(崔錫鼎)의 장계에 의하여 관서(關西) 지방에 호미(胡米)9533) 5백 석을 더 주도록 하였으니, 화매(和買)할 때에 관서 백성의 노고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황해도에도 7백 석을 획급(劃給)하였으니, 이 또한 관찰사의 청을 들어 준 것이다.</p> | <p>○甲寅/引見大臣、備局諸臣。 因右議政崔錫鼎狀啓，加給胡米五百石於關西。 以和買之際，西民勞費最多故也。 劃給七百石於黃海道。 亦因道臣之請也。</p> |
| <p>숙종 32권, 24년 (1698 무인 / 청 강희(康熙) 37년) 4월 20일(갑자) 1번째기사</p> | <p>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이 아뢰기를, “먼저 온 북미(北米)가 이제 막 배로 도착하였으니, 경기에 획급(劃給)하는 5천 석(石) 이외의 것은 당연히 진휼청에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조적(糶糶)으로 도민(都民)에게 나누어 준다면 가을에 일제히 거두어 들이기가 어</p> | <p>○甲子/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柳尙運曰：“先來北米，纔已到泊。五千石劃給京畿之外，當自賑廳區處，而若以糶糶分給都民，則秋間難得一齊收捧，地部雜費之物，亦不可不還充定價發賣，別爲料理，以充所費銀貨，恐</p> |

| | | |
|--|---|--|
| | <p>려울 것이고, 호조에서 잡비로 쓴 물건도 역시 도로 충당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값을 정하여 별도로 처리하여 소비한 은화(銀貨)를 충당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좌의정 윤지선(尹趾善)이 앞서 정시윤(丁時潤)을 거두어 서용할 것을 경연에서 여러 번 아뢰었는데, 이에 이르러 또 아뢰니, 그 말이 비록 지나치기는 하였으나, 모두 없는 것을 날조하여 하는 말은 아니었다. 부응교 이견명(李建命)이 아뢰기를,</p> <p>“정시윤은 작은 것을 가리켜 크다 하고, 미미한 것을 현저하게 드러난 양하였으니, 이는 실로 남을 헐뜯고 모함하는 수단입니다. 대신의 말은 신의 소견과는 크게 다른바 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답하기를,</p> <p>“마음 쓰는 것이 아름답지 않으니, 그를 거두어 쓰는 문제는 가볍게 논의할 수 없다.”</p> <p>하였다. 당초 갑술년(9554)에 무신(武臣) 장한상(張漢相)을 파견하여 울릉도(鬱陵島)의 지세(地勢)를 살펴보게 하고, 왜인으로 하여금 그 곳이 우리 나라의 땅임을 알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내 2년 간격으로 변장(邊將)을 보내어 수색하여 토벌하기로 했는데, 이에 이르러 유상운이 아뢰기를,</p> <p>“금년이 마땅히 가야 하는 해이기는 하지만, 영동(嶺東) 지방에 흉년이 들어 행장(行裝)을 차려 보내기 어려운 형편이니, 내년 봄에 가서 살펴보게 하는</p> | <p>得宜。” 上可之。 左議政尹趾善， 前以丁時潤收斂事， 屢達筵中， 至是又言：“語雖過中， 皆非構虛之言也。” 副應教李健命曰：“時潤指小爲大， 以微爲顯， 實讒人手段。 大臣之言， 大異臣之所見矣。” 上答以用意不美， 不可輕議收斂。 始甲戌， 遣武臣張漢相， 視鬱陵島地勢， 使倭人知其爲我國地， 而仍定以間二年送邊將搜討之。 至是尙運言：“今年卽當往之年， 而嶺東凶歉， 勢難治送， 宜使明春往審。” 從之。</p> |
|--|---|--|

| | | |
|--|---|--|
| | <p>것이 좋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p> | |
| <p>숙종 32권, 24년 (1698 무인 / 청 강희 (康熙) 37년) 4월 26 일(경오) 2번째기사</p> | <p>청(淸)나라 이부 시랑(吏部侍郎) 도대(陶岱)가 쌀 3만 석을 압령(押領)하고 중강(中江)에 도착하였다. 크고 작은 선박이 모두 1백 십여 척이나 되었는데, 우의정 최석정(崔錫鼎)이 국경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이르러 차원(差員)·장관(將官)·백성들을 이끌고 청나라 대궐을 향하여 고두 사은(叩頭謝恩)하니, 낭중(郎中) 한 사람이 최석정에게 한 통의 글을 전하여 내보였다. 그 글에 대개 이르기를,</p> <p>“그대의 임금이 해마다 기근이 들어 중강에 개시(開市)할 것을 간곡히 청하므로 황제께서 중신을 파견하시어 대창미(太倉米) 1만 석을 풀어 천리를 항해(航海)하여 구휼하게 하시고, 아울러 무역할 쌀 2만 석을 허락하시어서 그대 나라 만백성의 생명을 구제토록 하셨으니, 그대의 임금은 예(禮)로 보아 마땅히 몸소 황제께서 내려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할 것이나, 오랜 질환으로 나올 수 없어 사자(使者)를 보내어 황제께서 주신 것을 대신 받게 하였으니, 사자는 의당 그대의 임금을 대신하여 배신(陪臣)을 보내어 내리신 것을 받고 북향하여 고두 사은한다는 뜻을 꿰어 엮드려 아뢰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항해에 노고가 많은 도대인(陶大人)에게도 감사하는 뜻을 표하여 천조(天朝)를 공손히 섬기는 예를 잃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p> <p>하였다. 또 통관(通官)을 시켜 역관(譯官)에게 말하기를,</p> <p>“자문 가운데 ‘몸소 직접 점검하여 받는다.’는 말이 있었으니, 대신은 쌀을 직접 영수한 후에 올라 가야 한다.”</p> | <p>○淸吏部侍郎陶岱領米三萬石，來到中江，大小船總一百十餘隻也。右議政崔錫鼎往待境上。至是率差員、將官、民人，向闕叩謝，郎中一人，傳示一紙於錫鼎。概曰：</p> <p>爾主以連歲飢饉，乞請中江開市，皇帝特遣重臣，發倉米一萬石，千里航海賑濟，竝許貿米二萬石，以救爾國萬民之命。爾主禮宜親領欽賜，而宿有疾病，不能前來，遣使者代領皇賞，使者宜代爾主，跪奏以遣陪臣領賞向北叩謝之意，兼致謝陶大人航海勞甚，不失恭事天朝之禮云。</p> <p>且令通官，言于譯官曰：“咨文中，既以身親驗受爲辭，大臣不可不領受後上去。”云。</p> |

| | | |
|--|---|---|
| | <p>하였다.</p> | |
| <p>속중 32권, 24년 (1698 무인 / 청 강희 (康熙) 37년) 9월 11 일(임오) 5번째기사</p> | <p>영부사(領府事) 남구만(南九萬)이 휴가를 받고 용인(龍仁)에 갔다가 돌아왔다. 상소(上疏)하여 경기 감사(京畿監司) 이징명(李徵明)의 말을 아뢰기를,</p> <p>“남한 산성(南漢山城)에 속해 있는 각종 군병(軍兵)들이 도망갔거나 죽어 정원이 모자라는데 아직 채우지 못하였으며, 적곡(糴穀)을 수봉(收捧)하는 데에도 방해가 될 염려가 있으니, 금년 가을의 습조(習操)를 정지하게 하소서.”</p> <p>하고, 또 광주 부윤(廣州府尹) 이굉(李宏)과 용인 현령(龍仁縣令) 박태익(朴泰翊)의 말로 아뢰기를,</p> <p>“비록 씨앗을 심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굶주려 죽어서 진폐(陳廢)9644) 한 것을 면치 못하는 자들에게 급재(給災)9645) 하지 못하는 것 또한 매우 가엾은 처지인데, 당초 씨앗을 심어 보지도 못한 자에게 풍년 때와 같이 세금을 전액 징수한다면, 이는 실로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수전(水田)에 대해서 급재하도록 윤희해 주소서.”</p> <p>하였는데, 임금(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이때에 남한 산성에 습조(習操)하는 것을 금년 가을에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는데, 냇물이 넘쳐서 모래가 덮힌 농토를 제외하고서는 급재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신(大臣)의 이런 청이 있었던 것이다. 그 후에 우의정(右議政) 이세백(李世白)이 탐전(榻前)에서 아뢰기를,</p> <p>“습조(習操)에 있어서는 제도(諸道)에서도 이미 다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보장</p> | <p>○領府事南九萬，受暇往龍仁還，上疏奏京畿監司李徵明之言：“以南漢所屬諸色軍兵，逃故闕額，未及充定，糴穀收捧，亦有妨掣之患，請停今秋習操。” 奏廣州府尹李宏、龍仁縣令朴泰翊之言以爲：“雖是落種處，飢餓死亡，未免陳廢者之不給災，亦可矜悶，而初不落種者之徵以豐年之全稅，實甚未安。請許水田給災。” 上令廟堂稟處。時，南漢習操，以今秋定行，川反覆沙外，不許給災，故大臣有此請。其後右議政李世白，陳稟榻前，習操則諸道已令皆行，保障重地，不可獨廢。令依前定仍行，水田初不付種處，許給全災。” 時，各道請給水沈處及綿田災，狀聞相續，世白又請尤甚被災及全不摘取處，詳查給災，上亦可之。</p> |

| | | |
|---|--|--|
| | <p>(保障)해야 할 중요한 곳에만 폐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앞서 결정한 그대로 시행하게 하되, 당초 씨앗을 심어보지도 못한 논에 대해서는 전액 급재(給災)하게 하소서.”</p> <p>하였다. 당시에 각도(各道)에서 침수(沈水)가 된 곳과 목화 밭에 대해서는 급재를 요청하는 장계(狀啓)가 계속되었고, 이세백(李世白)이 또다시 재해를 더욱 심하게 입은 곳과 전연 수확을 거두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급재하기를 계청(啓請)하였는데, 임금도 옳게 여겼다.</p> | |
| <p>숙종 32권, 24년 (1698 무인 / 청 강희 (康熙) 37년) 10월 12 일(계축) 1번째기사</p> | <p>강원도(江原道)에서 감시(監試) 초시(初試)를 실시할 때에, 다른 도(道)의 유생(儒生)들이 호적(戶籍)을 위조하여 응시(應試)하러 왔는데도, 시관(試官)이 이를 금단하지 아니하여 장옥(場屋)에 난잡한 일이 생겼는데, 유생 이후(李垸)가 마침내 상경(上京)하여 상소하였다. 임금이 해조에서 품처(稟處)하라고 명하였다. 예조(禮曹)에서 계청하기를,</p> <p>“본도(本道)로 하여금 호적을 고찰해서 분명히 조사하게 하여, 호적을 위조해서 응시하여 합격한 자는 우선 뽑아내고, 시관은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려 논죄하소서.”</p> <p>하고, 사헌부(司憲府)에서 논핵하기를,</p> <p>“유생(儒生)들이 일제히 시관이 인정을 쓴 것과 거자(舉子)들이 호적을 위조하여 응시한 것에 대해 격분해서 스스로 그 과거를 정지하고 상경하여 상소하였으니, 옥장의 난잡을 대개 알 수가 있습니다. 호적을 위조하여 응시한 거자는 조사한 후에 자연 처리가 될 것이겠지만, 시관도 우선 과죄(科罪)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과직하소서.”</p> | <p>○癸丑/江原道監試初試時，他道儒生冒籍來赴，試官不爲禁斷，以致場屋雜亂，儒生李垸遂上來陳疏，上命該曹稟處禮曹請令本道，考籍明查，冒赴參榜者，爲先拔去，試官待查論罪，憲府論：“儒生等齊憤試官之用情，舉子之冒赴，自停其科，上來陳疏，場屋亂雜，蓋可知矣。冒赴舉子，行查後自當處置，而試官不可不爲先科罪，請罷職。”再啓始允。又論：“今歲癘疫大熾，涉冬尤甚。東西郊結幕，殆累百計，篤疾露處，衣不能掩體，食不能充腹，勢將盡化爲異物。請令五部，無遺捧甘，明知其人口實數，自賑廳分給若干穀物，以爲全活之地。”從之。</p> |

| | | |
|--|---|---|
| | <p>하니, 재차 계청(啓請)한 다음에야 비로소 윤택하였다. 또 논핵하기를,</p> <p>“올해는 돌림병이 크게 기세를 부렸는데 겨울을 거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동쪽과 서쪽 교외(郊外)에 막(幕)을 지은 것이 거의 여러 백 채가 되며, 병이 심해진 곳에는 몸을 가릴 옷이 없고 배를 채울 음식이 없어 모두 시체로 변할 형편입니다. 청컨대 오부(五部)9674) 로 하여금 빠짐없이 봉감(捧甘)9675) 하게 하여 그 인구(人口)의 실재수를 분명히 알게 하는 한편, 진휼청(賑恤廳)에서 약간의 곡물(穀物)을 나누어 주어 모두 살리는 대책을 강구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 |
| <p>숙종 32권, 24년 (1698 무인 / 청 강희 (康熙) 37년) 10월 15일(병진) 2번째기사</p> | <p>사간원(司諫院)에서 논핵하기를,</p> <p>“함경 감사(咸鏡監司) 이동옥(李東郁)은 당초 천거를 의논할 때, 천망(薦望)을 청탁했다는 말은 입이 있는 이는 모두 말했습니다. 그후 물의(物議)가 크게 일어나자 서둘러 사패(辭陞)하였으며, 대사간(大司諫)의 논척(論斥)하는 소(疏)도 겹으로 모르는 것처럼 하고서, 밤사이에 달려가 마음대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서읍(西邑)에 있을 적에는 몇 개의 도상(圖像)을 그려서 전후의 부임하는 고을마다 우민(愚民)들을 유혹하여 번번이 생사(生祠)를 설치하였으나, 체임되어 돌아갈 때에는 백성들이 모두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탄했습니다. 현재의 직임을 맡고서도 실질적인 은혜를 베푸는 데는 힘쓰지 않고, 군관(軍官)인 서후적(徐後績)을 감영(監營) 안에 데려다 놓고서 자신의 심복[爪牙]으로 삼아, 감영 안에서 용사(用事)하게 하여 뇌물을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또 본도(本道)의 사재감(司宰監)의 공물가미(貢物價米)는 으레 감영 안에서 책</p> | <p>○諫院論：“咸鏡監司李東郁，當初議薦之時，圖囑薦望之說，有口皆言。及其物議喧騰之後，汲汲辭陞，諫長論斥之疏，陽若不知，星夜驅馳，冒赴耐過。且其在西邑也，摸出數件圖像，前後所莅之邑，誑誘愚民，輒設生祠，至其遞歸，民皆指點而罵詈之。及莅本任，不務實惠，軍官徐後績，率置營中，作為爪牙，從中用事，賄賂公行。且本道司宰監貢物價米，例自營中責出，而乙亥後，自本營料理，備納價米，則自各邑收捧，以補賑資，而東郁以十數邑所捧之米，運致監營，督迫轉輸，</p> |

| | | |
|--|---|--|
| | <p>정하여 내게 하며, 을해년(9677) 이후로는 본영(本營)에서 이를 요리하여 공물 값으로 바치는 쌀은 각 고을에서 받아들여 진휼(賑恤)의 자료로 대비하게 하였는데, 이동욱(李東郁)은 10여 고을에서 바친 쌀을 감영으로 운반하게 하여 이를 독촉하여 수송하고 있으므로, 그 일대가 술렁거리고 있으며 쌀을 운반한 다음에는 그것을 태반이나 유흥비로 소모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파직시켜 서용(敍用)하지 마소서.”</p> <p>하니, 답하기를,</p> <p>“이동욱은 재능이 있어 지방 장관에 적임자인데, 어찌 촉탁을 도모한 다음에 천망(薦望)될 수 있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p> <p>하고, 여러 번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 <p>一路騷然，運來之後，太半花消於閑漫之費。請罷職不敍。”答曰：“東郁才諳，合於方面，則何待圖囑而後薦望耶？決知其不然也。”屢啓不聽。</p> |
|--|---|--|

